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80-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6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6)

---

2012. 9.



- 목 차 -

1. 영조실록 <3> 기사자료집 : 영조 42년 7월 ~ 영조 52년 3월 ..... 1
2. 정조실록 기사자료집 ..... 193



# 1. 영 조 실 록 <3> 기 사 자 료 집



# 영조실록 <3> 기사자료집 : 영조 42년 7월 ~ 영조 52년 3월

출처	내용	원문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7월 7일 (을해) 1번째기사 진연을 베풀겠다고 유시하다</p>	<p>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대신(大臣)과 호조 판서가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유시(諭示)하겠다. 13세 때 일을 73세에 또 당했으니, 또한 귀한 일이다.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석 달을 전기하여 도감(都監)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자오니, 흠탄(欽歎)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진연(進宴)은 한결같이 고례(古例)에 따라 할 것입니다. 성후(聖候)가 여러 달 편찮으신 나머지 이제 지난 역사에 드문 경사를 만났으니, 이날에 종(鍾)·고(鼓)·관(管)·악(簫)의 음악을 듣고 남산(南山)과 북두(北斗)의 수(壽)를 절하며 올린다면, 신 등이 물러가 구렁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여한(餘恨)이 없습니다.” 하매, 전 병술년(1653) 내외연 의궤(內外宴儀軌)를 가지고 들어오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외연(外宴)을 허락하였으니, 내연(內宴)도 옛 해의 예(例)에 따라서 허락할 것이다. 아! 나의 추모(追慕)하는 마음으로써 나이 더욱 늙고 기운이 더욱 쇠한데, 흥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니, 아무리 힘써 강권(強勸)할지라도</p>	<p>乙亥/內局入診。 大臣戶判同爲入侍。 上曰：“予當諭之矣。 十三歲時事， 七十三又當之， 其亦貴矣。 予欲小酌爲之， 不必前期三朔設都監矣。” 領議政洪鳳漢曰：“伏承聖教， 不勝欽歎。 第今年進宴， 當一遵古例爲之。 聖候積月違和之餘， 逢此往牒滄有之慶， 其日若聞鍾鼓管簫之音， 拜獻南山北斗之壽， 臣等雖退填溝壑， 實無餘恨矣。” 命持入前丙戌年內外宴儀軌， 上曰：“既許外宴， 則內宴亦宜仰遵昔年例許之。 而噫！ 以予追慕之心， 年益衰氣益繭， 年未登民猶困， 其雖勉強， 心豈樂爲？ 大小饌， 依昨年例停止， 人蔘正果， 遵故例特減， 皆用紙花五味， 進爵首大臣及國舅·宗親·儀賓·首堂·戶判爲之， 參宴諸臣， 宗親·文蔭</p>

	<p>마음에 어찌 즐거워하겠는가? 모든 찬품(饌品)은 작년의 예(例)에 의하여 정지하고 인삼정과(人蔘正果)는 고례(古例)를 따라 특별히 감하며, 모두 지화(紙花)와 오미(五味)를 쓰고, 진작(進爵)은 수대신(首大臣)16532) 과 국구(國舅)·종친(宗親)·의빈(儀賓)·수당(首堂)·호관(戶判)이 하며, 연회에 참여하는 여러 신하는 종친·문(文)·음(蔭)·무(武) 정1품, 기사 제신(耆社諸臣), 의정부 서벽(議政府西壁), 시임 비당(時任備堂), 훈부 유사 당상(勳府有司堂上), 판윤(判尹)·도위(都尉)·부위(副尉)·육승지(六承旨)·한림(翰林)·주서(注書)·유신(儒臣)은 시임(時任)·원임(原任)을 물론하고, 양사(兩司)의 시임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진참(進參)하며, 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 시위(侍衛), 내승(內乘) 군직(軍職), 선전관(宣傳官), 춘방(春坊) 배위인(陪衛人)은 일체로 반(盤)16533) 을 허락한다.”</p> <p>하였다.</p>	<p>武正一品，耆社諸臣，政府西壁，時任備堂，勳府有司堂上，判尹·都尉·副尉·六承旨·翰林·注書·儒臣無論時原任，兩司時任在京者進參，都摠府兵曹侍衛內乘軍職，宣傳官春坊陪衛人，一體許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7월 13일(신사) 1번째기사 진연의 의식에 대해 하교하다</p>	<p>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p> <p>“이번 내연(內宴)에 좌차(座次)를 북벽(北壁)에다 전례에 의하여 자리를 배설(排設)하고, 시각이 되면 중엄(中嚴)과 외판(外辦)은 보통 의식과 같다. 왕비(王妃)가 자리에 오를 때에 악(樂)을 시작하고 봉보(奉寶)가 앞에서 인도하여 자리에 오른 뒤에 악을 그친다. 산선(繖扇)·시위(侍衛)는 보통 의식과 같다. 왕세손(王世孫)이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고 왕세손빈(王世孫嬪)도 배위에 나아간다.</p> <p>‘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을 창(唱)하면, 왕세손과 왕세손빈이 국궁하고 악(樂)을 시작하며,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여령(女伶) 두 사람이 나아가서 정문(正門) 밖에 당하여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먼저 창(唱)하고 뒤에 찬(饌)을 올리면 악을 시작한다. 휘건(揮巾)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p>	<p>○辛巳/內局入診。敎曰：“今番內宴排筵座次於北壁依例，而時至中嚴外辦如常儀。王妃陞座時樂作，奉寶前導，王世孫先就拜位，王世孫嬪亦就拜位。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孫王世孫嬪鞠躬四拜興平身樂作，四拜·興·平身樂止。女伶二人，進當正門外，先唱新製樂章，後進饌樂作。進揮巾樂作，進訖樂止。進花樂作，進訖樂止。典賓引王世孫，由東門入詣壽亭北向立，尙食以致詞盞進王世孫，王世孫受盞，詣座前跪，尙宮前奉置于座</p>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꽃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전빈(典賓)이 왕세손을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거쳐 수정(壽亭)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고, 상식(尙食)이 치사(致詞)하는 잔(盞)을 왕세손에게 올리면 왕세손이 잔을 받아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상궁(尙宮)이 앞에서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왕비(王妃)가 잔을 받으면 악을 시작하고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왕세손이 부복(俯伏)하면 상궁(尙宮)이 나아가 잔을 받아 왕세손에게 올리고, 왕세손이 잔을 받아서 상식(尙食)에게 주어 수정(壽亭)에 놓는다.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궤(跪)’를 창하면, 왕세손이 꿇어앉는다. 상의(尙儀)가 나아가 자리 앞에 당하여 치사(致詞)를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상궁이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청한다. 동쪽 계단 위에서 서쪽을 향해 서서 전교하기를, ‘옛날 거룩한 행사에 따라서 그 술잔을 올린다.’고 하면, 상식(尙食)이 만두(饅頭)를 올린다. ‘부복·흥·사배·흥·평신’을 창하면 왕세손이 부복하고 악을 시작하며, 흥·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전빈(典賓)이 왕세손을 인도하여 동문을 거쳐 좌석에 나아간다.

전빈이 왕세손빈을 인도하여 서문(西門)을 거쳐 수정(壽亭)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상식(尙食)이 치사(致詞)하는 잔을 왕세손빈에게 올리면, 왕세손빈이 잔을 받아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상궁이 앞에서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왕비가 잔을 받으면 악을 시작하고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왕세손빈이 부복(俯伏)하고 상궁이 나아가 잔을 받아 왕세손빈에게 올리면, 왕세손빈이 받아서 상식(尙食)에게 주어 수정(壽亭)에 놓게 한다.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궤’를 창하면, 왕세손빈이 꿇어앉는다. 상의(尙儀)가 나아가 자리 앞에 당하여 치사(致詞)를 읽고, 마치면 상궁이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청한

前。王妃受盞樂作，飲訖樂止。王世孫俯伏，尙宮進受盞，進于王世孫，王世孫受盞，授尙食，置于壽亭。詣拜位唱跪。王世孫跪。尙儀進當座前，讀致詞。訖尙宮跪，請傳敎。東階上西向立，傳敎曰，‘遵昔盛事，以舉其觴’，尙食進饅頭。唱俯伏·興·四拜·興·平身，王世孫俯伏樂作，興·四拜·興·平身樂止。典賓引王世孫，由東門入就座席。典賓引王世孫嬪，由西門入詣壽亭北向立。尙食以致詞盞進王世孫嬪，王世孫嬪受盞，詣座前跪，尙宮前奉置于座前。王妃受盞樂作，飲訖樂止。王世孫嬪俯伏，尙宮進受盞，進于王世孫嬪，王世孫嬪受盞，授尙食，置壽亭。詣拜位，唱跪，王世孫嬪跪。尙儀進當座前，讀致詞，訖尙宮跪，請傳敎。西階上東向立，傳敎曰，‘遵昔盛事，以舉其觴’，尙食進茶麪。唱俯伏·興·四拜·興·平身，王世孫嬪俯伏樂作，興·四拜·興·平身樂止。典賓引王世孫嬪，由西門入就座席。典饌進王世孫饌，典饌進王世孫嬪饌，典饌進王世孫嬪花。典賓引命婦俱入，就

다. 서쪽 계단 위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전교하기를, ‘옛날 거룩한 행사에 따라 그 술잔을 올린다.’고 하면 상식이 다면(茶麵)을 올린다. ‘부복·흥·사배·흥·평신’을 창하면, 왕세손빈이 부복하고 악을 시작하며, 흥·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전빈(典賓)이 왕세손빈을 인도하여 서문을 거쳐 좌석에 나아가게 한다.

전찬(典饌)이 왕세손에게 찬(饌)을 올리고 전찬이 왕세손빈에게 찬을 올리며, 전찬이 왕세손에게 꽃을 올리고 전찬이 왕세손빈에게 꽃을 올린다. 전빈(典賓)이 명부(命婦)를 인도하여 함께 들어와서 서쪽 계단 배위(拜位)에 나아가게 하고, ‘국궁·사배·흥·평신’을 창하면, 명부가 국궁하고 악을 시작하며,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전빈이 명부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명부에게 찬을 공궤(供饋)하고 꽃을 흘는다. 전빈이 명부를 인도하여 서문을 거쳐 수정(壽亭)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상식이 첫째 잔을 명부에게 주면 명부가 받아서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상궁이 앞에서 잔을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왕비가 잔을 받으면 악을 시작하고 첫째 정재(呈才)를 올린다. 명부가 잔을 받아서 다시 수정에 놓고 곧 자리에 나아가면 상식이 초미(初味)를 올린다. 전찬이 왕세손과 왕세손빈에게 탕(湯)을 올리고 집사(執事)가 명부에게 탕을 공궤하며,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치사잔(致詞盞) 외에 반수(班首)의 치사는 없다. 무릇 잔과 찬을 올릴 때에는 왕세손 이하가 모두 자리 뒤에 부복(俯伏)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가며, 그 뒤에는 모두 이를 모방한다.

둘째 잔에서 다섯째 잔까지 잔을 올리고 찬을 올릴 때의 모든 절차는 첫째 잔과 같고 정재(呈才)는 미수(味數)에 따라 올린다. 다섯 잔을 마치면 곧 처용무(處容舞)를 올리고 악이 그친다. 상식이 나아가 찬을 거두고 전찬(典饌)은

西階拜位， 唱鞠躬·四拜·興·平身， 命婦鞠躬樂作， 四拜·興·平身樂止。 典賓引命婦就座， 供命婦饌散花。 典賓引命婦， 由西門入詣壽亭北向立。 尚食以第一盞授命婦， 命婦受盞， 詣座前跪， 尚宮前奉盞置于座前。 王妃受盞樂作， 進第一呈才。 命婦受盞， 復置于壽亭， 仍就位， 尚食進初味。 典饌進王世孫與王世孫嬪湯， 執事供命婦湯， 進訖樂止。 致詞盞外， 無班首致詞。 凡進盞饌時， 王世孫以下， 皆席後俯伏， 進訖就座， 後皆倣此。 自第二盞至第五盞， 進盞與進饌時， 凡節與第一盞同， 呈才隨味數而進。 五盞畢， 仍進處容舞樂訖。 尚食進撤饌， 典饌撤王世孫與王世孫嬪饌， 執事撤命婦饌。 唱可起， 王世孫王世孫嬪， 俱就拜位， 命婦亦就拜位。 唱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孫與王世孫嬪及命婦， 皆鞠躬， 樂作， 四拜·興·平身， 尚宮進當座前跪， 啓禮畢。 王妃降座樂作， 還內樂止。 典賓引王世孫王世孫嬪及命婦， 仍出。

	<p>왕세손과 왕세손빈의 찬을 거두며, 집사는 명부의 찬을 거둔다. ‘가기(可起)’라고 창하면, 왕세손·왕세손빈이 함께 배위(拜位)에 나아가고 명부도 배위에 나아간다. ‘국궁·사배·홍·평신’을 창하면, 왕세손과 왕세손빈 및 명부가 모두 국궁하고 악을 시작하며, 사배·홍·평신하면 상궁이 나아가 자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된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악을 시작하고 대내(大內)로 돌아가면 악을 그친다. 전빈이 왕세손과 왕세손빈 및 명부를 인도하여 나간다.”</p> <p>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7월 19 일(정해) 1번째기사 술잔을 받을 때에 생 강차로써 올리라고 하 다</p>	<p>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술잔[爵]을 받을 때에 인삼차[蔘茶]를 올릴 것을 청하니, 생강차로써 인삼차를 대신하라고 명하였다.</p>	<p>○丁亥/內局入診。領議政洪鳳漢，請於受爵時進蔘茶，命以薑茶代蔘茶。</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8월 4일 (신축) 2번째기사 설리 중관이 사첩으로 공인에게 썩과 생선을 구한 일로 엄하게 신 칙하라고 명하다</p>	<p>설리 중관(薛里中官)이 사첩(私帖)으로 공인(貢人)에게 썩과 생선을 구한 일로써 이 뒤에 엄하게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p>	<p>以薛里中官，私帖貢人，求雉鮮事，命此後嚴飭。</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p>	<p>사옹원(司饗院)에서 아뢰기를,</p>	<p>己酉/司饗院啓：“今此進宴時禮曹節目中，以大殿進止，司饗院提調，王世孫</p>

<p>(乾隆) 31년) 8월 12일(기유) 1번째기사  사용원에서 제조 4원, 부제조 2원을 더 차출하기를 청하자 윤허하다</p>	<p>“지금 이 진연(進宴) 때 예조 절목(禮曹節目) 가운데 대전 진지(大殿進止)는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로, 왕세손 진지는 부제조(副提調)로 마련하였는데, 본원 제조는 검거 제조(檢學提調)와 도승지(都承旨)를 제외하고는 다만 3원(員)만 있습니다. 병술년(1655)의 예(例)에 의하여 제조 4원, 부제조 2원을 더 차출하게 하소서.”</p> <p>하니, 이를 윤허하였다</p>	<p>進止，副提調磨鍊矣，本院提調，除檢舉提調及都承旨外，只有三員。依丙戌例，提調四員，副提調二員請加出。”允之。</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8월 16일(계축) 1번째기사  진연청 당상에게 입시를 명하고 외연에 송절다로써 술을 대신하게 하다</p>	<p>내국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에게 입시(入侍)를 명하고, 이번 외연(外宴)에는 송절다(松節茶)로써 술을 대신하여 나의 나물 뿌리를 씹는 뜻을 보이라고 명하고,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고금(古今)에 어찌 송절다의 잔치가 있겠는가?” 하였다.</p>	<p>癸丑/內局入侍。命進宴廳堂上入侍，命今番外宴，以松節茶代酒，以示予咬得菜根之意，上笑曰：“古今豈有松節茶之宴乎?”</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8월 18일(을묘) 1번째기사  대학 재임은 구례로써 하도록 하교하다</p>	<p>내국에서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저번 하교는 한때 칙려(飭勵)한 것에 불과한데, 한번 느슨하고 한번 조이는 것은 문무(文武)의 도(道)이다. 백년이나 된 옛 법을 이제 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찌 차마 악착(齷齪)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비와 이슬은 땅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리는데, 어찌 서울과 시골을 가리겠는가? 무릇 관록(館錄)·한권(翰圈)·통청(通淸)에도 오히려 문재(文才)를 취하는데, 하물며 대학(太學)16563) 이겠는가? 이 뒤로는 대학 재임(齎任)은 모두 구례(舊例)로써 하여 비록 향유(鄉儒)라도 문지(門地)와 문재(文才)가 가합한 자는 일체로 천망(薦望)하라. 아! 지금 하교는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로써 현관(賢關)16564)에 엄하게 신칙하라.”</p>	<p>乙卯/內局入侍。教曰：“頃者下教，不過一時飭勵者，一弛一張，文武之道也。百年古規，今予望八，豈忍齷齪？雖然雨露不擇地而下，何擇京鄉？凡館錄·翰圈·通淸，猶取文才，況太學乎？此後太學齎任，一以舊例爲之，而雖鄉儒，門地文才其可合者，一體薦望。噫！今者下教，不欲其偏。以此嚴飭賢關。”領議政洪鳳漢曰：“陵園親祭時，及殿宮祭享時，爲餅麪泡湯措備，輒令女人待令，故京兆各部，憑此</p>

	<p>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능원(陵園)에 친히 제사하실 때와 전궁(殿宮)의 제향(祭享)할 때에 병(餅)·면(麵)·두부·탕[泡湯]을 준비하는데 번번이 여인(女人)들로 하여금 대령(待令)하게 하므로, 경조(京兆)16565) 각부(各部)에서 이를 빙자하여 함부로 민폐를 끼치니, 진실로 소요(騷擾)한 폐단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존경하는 땅에 내력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하여금 여러 숙수(熟手) 가운데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은 또한 심히 미안합니다. 태상(太常)16566)의 숙수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유독 병·면·탕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태상에서 별도로 변통하여 숙수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사체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민폐(民弊)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몹시 해괴하다. 한갓 설만(褻慢)할 뿐만 아니라, 민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뒤로는 엄금하여 범하는 자는 태상의 관원과 부관(部官)을 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p>	<p>橫侵，固多騷擾之弊。況至尊敬之地，使來歷不明不精潔之女人，相雜於諸熟手之中，亦甚未安。太常熟手，無物不造，何獨於餅麪湯不造乎？請自太常，別爲變通，使熟手舉行，一以尊事體，一以除民弊。”上曰：“聞甚駭然。非徒褻慢，民弊勝言？此後嚴禁，其犯者，太常官員部官重繩。”</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8월 21일(무오) 1번째기사  청파·노원 두 역에 호조의 콩과 선혜청의 쌀을 제급하게 하다</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병조 판서 박상덕(朴尙德)이 말하기를,  “청파(靑坡)·노원(蘆原) 두 역(驛)은 근래에 몹시 조잔(凋殘)한데, 이번 거동 때에 허다한 사람과 말이 여러 날 와서 기다렸으니, 진실로 몹시 가공하므로, 진휼(軫恤)할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전에 능행(陵幸)에서 경숙(經宿)하면 매양 쌀과 콩을 특별히 주는 예(例)가 있었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호조(戶曹)의 콩과 선혜청(宣惠廳)의 쌀 각각 50석을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p>	<p>戊午/引見大臣備堂。兵曹判書朴相德曰：“靑坡·蘆原兩驛，近甚凋殘，今番行幸時，許多人馬，屢日來待，誠甚可矜，不可無軫恤之道。在前經宿陵幸，每有米太特給之例，今亦依此例，請戶曹太惠廳米各五十石題給。”允之。</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p>	<p>임금이 승정전에 나아가 진연례(進宴禮)를 행하였다. 늙은 대신에게는 부축하여 올라오도록 도와 주게 하였다. 찬(饌)을 올린 뒤에 악사(樂師) 두 사람이</p>	<p>甲子/上御崇政殿，行進宴禮。命老大臣給扶以陞。進饌後樂師二人，唱御</p>

<p>(乾隆) 31년) 8월 27일(갑자) 1번째기사        승정전에 나아가 진연례를 행하다</p>	<p>어제 악장(御製樂章)을 창(唱)하고 왕세손이 술잔을 올렸으며, 치사관(致詞官)이 대신 치사하기를 마치자 시임(時任)·원임(原任)의 상신(相臣), 국구(國舅), 도위(都尉)가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왕세손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솔하고 산호(山呼)하며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자, 하교하기를,</p> <p>“《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의 고사(故事)에 따라 간략하게 소지(小識)를 지어서 내리니, 대제학(大提學)으로 하여금 서(序)를 짓게 하였으며, 여러 종친과 여러 신하를 열서(列書)하고, 운관(芸館)으로 하여금 활자로 인쇄하여 대내(大內)에 들인 뒤에 반사(頒賜)하게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어필(御筆)로 어제(御製) 네 글귀[四句]를 써서 봉조하(奉朝賀) 이철보(李喆輔)에게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p>	<p>製樂章，王世孫進酌，致詞官代致詞訖，時原任相臣國舅都尉，以次進酌。王世孫率參宴諸臣山呼，行四拜禮。禮畢，教曰：“遵《光國志慶錄》故事，略敘小識以下，令大提學撰序，列書諸宗諸臣，令芸館活印，內入後頒賜。”上以御筆書下御製四句，命賜奉朝賀李喆輔。</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8월 27일(갑자) 2번째기사        진연례의 준비와 진연하는 의식</p>	<p>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승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보안(寶案)을 좌석 앞 동쪽 가까이에, 향안(香案) 둘은 궁전(宮殿) 바깥 좌우에 놓았으며, 또 편차(便次)를 궁전 밖 동쪽 계단 위에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마련하였다. 장악원(掌樂院)에서는 헌현(軒懸)16570) 을 전정(殿庭)에 벌여 놓고, 등가악(登歌樂)을 궁전 계단 위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하며,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를 서쪽 계단 위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마련하였다. 전설사(典設司)에서는 왕세손의 막차[次]를 승정문 바깥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소차(小次)를 궁전 동쪽 계단 밑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였다. 전의(典儀)는 왕세손의 위(位)를 어좌(御座)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종친(宗親)·의빈(儀賓) 2품 이상의 위를 왕세손 자리의 뒤에 조금 남쪽으로 마련하며, 문무(文武) 2품 이상의 위를 어좌 서남(西南)쪽에 마련하여 【왕세손 위(位)의 조금 남쪽에 있다.】 모두 겹줄로 마주 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승지의 위는 서남 모퉁이에 북향으로 하고 동쪽을</p>	<p>前一日，掖庭署設御座於崇政殿北壁南向，設寶案於座前近東，香案二於殿外左右，又設便次於殿外東階上近北南向。掌樂院展軒懸於殿庭，設登歌之樂於殿階上，俱北向，設協律郎位於西階上近西東向。典設司設王世孫次於崇政門外道東近北西向，設小次殿東階下近東西向。典儀設王世孫位於御座東南南向，宗親儀賓二品以上位，於王世孫之後少南，文武二品以上位，於御座西南，【當王世孫位少南。】俱重行相向北上。承旨位，於西南隅北向東上，史官在其後。文官堂上三品位，</p>

윗자리로 하며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문관 당상(文官堂上) 3품의 자리는 궁전 계단 위의 서쪽에 있고 시신(侍臣) 당상관 3품 이하의 자리는 계단 위에 동서(東西)쪽에 있다. 【동쪽은 종친 뒤에 있고, 서쪽은 당상관 뒤에 있다.】 전(殿)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는 남쪽 계단 위의 동서쪽에 모두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마주 향하게 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또 왕세손의 절하는 자리를 전정(殿庭) 길 동쪽에 북향으로 마련하고, 문관(文官) 1품 이하의 절하는 자리는 왕세손의 뒤에 동쪽 가까이 하며, 종친 및 무관(武官) 1품 이하의 절하는 자리는 길 서쪽에 모두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북쪽을 향하게 하여 마주 대하는 쪽을 윗자리로 한다. 계단 위의 전의(典儀)의 자리는 동쪽 계단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와 계단 밑의 전의와 대치사관(代致詞官)의 자리는 동쪽 계단 밑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며, 찬의(贊儀)·인의(引儀)는 남쪽에 조금 물러나서 있다. 또 찬의·인의의 자리를 서쪽 계단 밑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하고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인의(引儀)는 문외위(文外位)를 보통과 같이 마련한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수준정(壽樽亭)을 궁전 안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고 작점[拮]16571)을 설치하여 작(爵)을 얹으며, 부제조(副提調)는 왕세손의 다탁을 궁전 밖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사옹원 관원은 반수(班首)의 다탁(茶卓)을 전외(殿外)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고, 또 전(殿)에 오르는 사람의 다탁을 전외에 동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며, 전계(殿階) 위와 전정(殿庭)에 있는 사람의 다탁은 매품(每品) 앞에 설치한다. 병조(兵曹)는 여러 위(衛)를 단속하고 노부(鹵簿)와 의장(儀仗)을 전계와 전정에 동서로 진열(陳列)하고 군사는 모두 법식과 같이 서열(序列)한다. 사복시 정(司僕寺正)은 여연(輿輦)과 장마(仗馬)16572)를 전정 중도(中道)의 좌우에 나오게 한다. 동반(東班)·서반(西班)

於殿階上之西，侍臣堂上三品以下位，於階上東西。【東在宗親之後，西在堂上官之後。】不陞殿者位，於南階上東西，俱每等異位重行相向北上。又設王世孫拜位，於殿庭道東北向，文官一品以下拜位，於王世孫之後近東，宗親及武官一品以下拜位，於道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西向，左右通禮及階下典儀代致詞官位，於東階下近東西向，贊儀引儀在南差退。又贊儀引儀位，於西階下近西東向，俱北上。引儀設門外位如常。司饗院提調設壽樽亭於殿內近南北向，設拮加爵，副提調設王世孫茶卓，於殿外近東。司饗院官設班首茶卓，於殿外近西，又設陞殿者茶卓，於殿外東西近北，殿階上及殿庭者茶卓，於每品之前。兵曹勒諸衛，陳鹵簿儀仗，於殿階及殿庭東西，列軍士并如式。司僕寺正進輿輦及仗馬，於殿庭中道左右。東西班參宴諸臣，以常服俱就門外位如常。王世孫具翼善冠[裘]龍袍，出就崇政門外入次。鼓初嚴承旨侍衛，先詣資政門外。鼓二嚴，通禮啓請中嚴，東西班參宴諸臣

의 연회에 참석하는 여러 신하는 평상복[常服]으로 함께 문 바깥 자리에 나아가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왕세손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승정문(崇政門) 밖에 나아가 차소(次所)에 들어간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승지(承旨)와 시위(侍衛)가 먼저 자정문(資政門) 밖에 나아간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통례(通禮)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할 3품 이하 여러 신하들이 먼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승지·사관(史官)이 먼저 사배(四拜)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좌통례(左通禮)가 외관(外辦)을 아뢴다. 전하(殿下)가 익선관·곤룡포를 갖추고 좌석에 오르면 산선(緞扇)·시위(侍衛)는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의(引儀)가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할 2품 이상 여러 신하들을 인도해 들어와서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의(贊儀)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을 창(唱)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국궁하고 악(樂)을 시작하며,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제조(提調)가 휘건(揮巾)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제조가 찬안상(饌案床)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예방승지(禮房承旨)가 꽃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악사(樂師) 두 사람이 전(殿) 앞에 나아가서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창(唱)하면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치사작(致詞爵)에 술을 부어서 몸을

三品以下先入拜位，承史先四拜。鼓三嚴，左通禮啓外辦。殿下具翼善冠[袞]龍袍陞座，緞扇·侍衛如常儀。相禮引王世孫入詣拜位，引儀引東西班參宴諸臣二品以上入就拜位。贊儀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孫以下參宴諸臣鞠躬樂作，四拜·興·平身樂止。贊儀唱跪，王世孫以下參宴諸臣跪。提調進揮巾樂作，進訖樂止。提調進饌案床樂作，進訖樂止。禮房承旨進花樂作，進訖樂止。贊儀唱俯伏·興·平身，王世孫以下參宴諸臣俯伏·興·平身。樂師二人詣殿前，唱新製樂章，相禮引王世孫詣壽樽亭北向立。提調酌致詞爵，鞠躬授王世孫，王世孫受爵，詣座前跪，贊儀唱跪。參宴諸臣跪。王世孫以爵授提調，提調鞠躬受爵跪進，內侍傳捧跪進。殿下舉爵樂作，王世孫俯伏，飲訖樂止。王世孫復受爵，詣壽樽亭，授提調。贊儀唱俯伏·興·平身，參宴諸臣俯伏·興·平身。相禮引王世孫，仍詣拜位，代致詞官陞自東階，詣座前。贊儀唱跪，王世孫跪，代致詞官致詞訖。贊儀唱俯伏興平身，王世孫俯伏興平



굽히고 왕세손에게 주면 왕세손이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찬의(贊儀)가 ‘궤(跪)’를 창하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왕세손이 술잔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몸을 굽혀 술잔을 받아 꿇어앉아 올리고, 내시가 전해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왕세손이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왕세손이 다시 술잔을 받아서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 제조에게 준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곧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서 좌석 앞에 나아간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꿇어앉고 대치사관은 치사(致詞)한다. 치사를 마치고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부복·흥·평신한다. 승지가 좌석 앞에 나아가 선교(宣敎)하기를 청하고 자리 끝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교시가 있다고 일컫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꿇어앉는다. 유교(諭敎)하기를, ‘삼가 고례(古例)를 따라서 억지로 그 술잔을 든다.’고 한다. 제조(提調)가 만두(饅頭)를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부복·흥·평신한다.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차소(次所)에 나아간다. 인의(引儀)가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치사작(致詞爵)에 술을 부어 반수에게 주면 반수가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술잔을 제조에게 주고, 제조는 서서 술잔을 받아서 꿇어앉아 올리면 내시(內侍)가 전하여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반수는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반수가 다시 술잔을 받아 수준정에 나아가 제조에게 준다. 인의(引儀)가 반수를 인도하여 자

身。承旨進當座前，請宣敎，詣席端西向立，稱有敎。贊儀唱跪，王世孫跪。諭敎曰，‘敬遵古例，強舉其觴’。提調進饅頭樂作，進訖樂止。贊儀唱俯伏興平身，王世孫俯伏興平身。相禮引王世孫，出就次。引儀引班首詣壽樽亭北向立。提調酌致詞爵，授班首，班首受爵，詣座前跪，以爵授提調，提調立受爵跪進，內侍傳捧跪進。殿下舉爵樂作，班首俯伏，飲訖樂止。班首復受爵，詣壽樽亭，授於提調。引議引班首復位，代致詞官進當座前，贊儀唱跪，班首以下跪，代致詞官致詞訖。贊儀唱俯伏興平身，班首以下俯伏興平身。承旨進當座前，請宣敎，仍詣階端西向立，稱有敎。贊儀唱跪，班首以下跪。諭敎曰，‘敬遵故例，強受卿等之觴’。提調進茶麪樂作，進訖樂止。贊儀唱俯伏興平身，班首以下俯伏興平身。相禮引王世孫入就拜位，贊儀唱跪，王世孫以下參宴諸臣跪。贊儀唱三叩頭，王世孫以下參宴諸臣三叩頭。贊儀唱山呼，王世孫以下參宴諸臣，拱手加額曰千歲，唱山呼曰千歲，唱再山呼曰千歲。贊儀唱俯伏

리에 돌아오게 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좌석 앞에 나아가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꿇어앉고 대치사관이 치사한다. 치사가 끝나자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승지가 좌석 앞에 나아가 선교(宣敎)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계단(階端)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선교가 있다고 일컫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꿇어앉는다. 유교(諭敎)하기를, ‘삼가 고례(故例)를 준수하여 경 등의 술잔을 억지로 받는다.’라고 한다. 제조가 다면(茶麵)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찬의가, ‘삼고두(三叩頭)’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찬의가, ‘산호(山呼)’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손을 모아잡아 이마에 대고는 천세(千歲)라 하고, ‘산호’를 창하면서 ‘천세’라고 하며, 두번째 ‘산호’를 창하면 ‘천천세(千千歲)’라고 한다. 찬의가, ‘부복·흥·사배·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하며 악을 시작하고,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취위(就位)’라고 창하면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전내(殿內)에 들어가게 하고, 인의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전(殿)에 오르게 한다. 전악(典樂)이 등가(登歌)를 거느리고 전에 오른다.【등가가 전에 오르기 전에는 악작(樂作)과 악지(樂止)가 없고 헌가(軒架)만 한다.】부제조(副提調)가 왕세자에게 휘건(揮巾)을 바치고 부제조가 왕세손에게 음식[膳]을 올리며, 보덕(輔德)이 꽃을 올린다. 집사자(執事者)가 동반·서반의 연

興四拜興平身，王世孫以下參宴諸臣俯伏興樂作，四拜興平身樂止。贊儀唱就位，相禮引王世孫入就殿內，引儀引東西班參宴諸臣陞殿。典樂率登歌陞殿。【登歌陞殿之前凡樂作樂止，軒架爲之。】副提調供王世孫揮巾，副提調供王世孫膳，輔德供花。執事者設東西班參宴諸臣饌散花。引儀引進爵宰臣詣壽樽亭北向立。提調以第一爵授宰臣，宰臣受爵，詣座前跪。宰臣以爵授提調，提調受爵跪進，內侍傳捧跪進。殿下舉爵樂作，宰臣俯伏，飲訖宰臣復受爵，詣壽樽亭，授於提調就位。提調進初味，副提調供王世孫盞，副提調供王世孫湯。執事者行東西班參宴諸臣盞，執事者設參宴諸臣湯樂止。二爵以下皆倣此。【進爵進饌時，王世孫以下參宴諸臣，席前少退俯伏，進訖就座。相禮引王世孫進爵，宰臣引〔儀〕〔皆〕止於殿門外。】五爵畢，奏鄉唐樂，處容舞入作舞，畢樂止。提調進撤膳，副提調掇王世孫膳，執事者撤參宴諸臣膳。贊儀唱可起，相禮引王世孫就拜位，引儀引東西班參宴諸臣就拜位。贊儀唱鞠躬四拜興平

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의 찬(饌)을 마련하고 꽃을 홀는다. 인의(引儀)가 진작(進爵)할 재신(宰臣)을 인도하여 수준정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첫째 술잔을 재신(宰臣)에게 주면 재신이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재신이 술잔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술잔을 받아서 꿇어앉아 올리고 내시가 전하여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재신이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재신이 다시 술잔을 받아서 수준정에 나아가 제조에게 주고 자리에 나아간다. 제조가 초미(初味)를 올리고, 부제조는 왕세손에게 잔(盞)을 올리며, 부제조가 왕세손에게 탕(湯)을 올린다. 집사자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에게 술잔을 돌리고, 집사자가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에게 탕을 진설(陳設)하면 악을 그친다.

두 번째 작(爵) 이하는 모두 이를 모방한다. 【술잔을 올리고 찬을 올릴 때에는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는 자리 앞에서 조금 물러나서 부복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술잔을 올리고 재신(宰臣)과 인의(引儀)는 모두 전문(殿門) 밖에서 그친다.】 다섯 번째 잔을 마치면 향악(鄉樂)·당악(唐樂)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가 들어와서 춤을 추며 춤이 끝나면 악을 그친다. 제조가 나아가 선(膳)을 거두고 부제조는 왕세손의 선을 거두며 집사자는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의 선을 거둔다. 찬의가, ‘가기(可起)’라고 창하면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의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국궁하고 악을 시작하며,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좌통례(左通禮)가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면 전하는 대내(大內)로 돌아온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대내로 돌아오게 하고, 인의는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나가게 한다. 교시를

身，王世孫以下參宴諸臣鞠躬樂作，四拜興平身樂止。左通禮進當座前跪，啓禮畢，殿下還內。相禮引王世孫還內，引儀引參宴諸臣出。承教放仗依例。【中宮殿進宴儀見上。】

	<p>받들어 의장(儀仗)을 돌려보내는 것은 전례에 의한다. 【중궁전(中宮殿)에 진연(進宴)하는 의식은 위에 나와 있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9월 3일 (경오) 3번째기사 홍화문에 나아가 사민을 불러들이고 쌀을 내려 주다</p>	<p>임금이 홍화문(興化門)에 나아가니,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사민(四民)을 불러들이고 차등을 두어 쌀을 내려 주었다. 잔치를 감독하는 승지가, ‘잔치에 참석한 여러 늙은이가 각자 배부르게 먹고 바야흐로 문밖에 일제히 이르러 절하고 축수하면서 뛰고 춤춘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p> <p>“사민(四民)을 구휼하는 정사는 어찌 한갓 주(周)나라를 본받는 것이겠는가? 바로 우리 조가(朝家)의 법이다. 하물며 옛 양로연(養老宴)에 이미 유시(諭示) 하였었고, 《오례의(五禮儀)》에도 또한 이르기를, ‘못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고 하였다. 갑자년(16578)에 궤장(几杖)을 받고 연회를 마치자 곧 그때 제조(提調)와 예조 판서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음식과 전정 악고(殿庭樂鼓)를 가지고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와 더불어 같이 기영관(耆英館)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오게 하였다. 그때 자성(慈聖)께서 내전(內殿)에 임하여 보신 것이 황연(恍然)히 오늘과 같으니, 옛일과 부합(符合)함이 또한 어찌 우연하겠는가?”</p> <p>하고, 여러 늙은이들에게 관현악(管絃樂)을 내려서 그 집에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의금부와 형조의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3일을 한정하여 승정원과 각사(各司)에서 패(牌)를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p>	<p>上御興化門，王世孫侍坐。 招入四民，賜米有差。 監宴承旨， 以參宴群老，各自飽飫， 方齊到門外， 拜祝蹈舞仰奏， 教曰：“恤四民之政， 豈徒效周？ 卽我朝家法也。 況昔之養老宴曾已諭，《五禮儀》亦云 ‘群老杖入’。 甲子受几杖， 宴畢仍令其時提調禮判， 以予所受之饌， 殿庭樂鼓與耆社諸臣， 同往耆英館設酌而來。 其時慈聖自內臨見， 恍若今日同符， 故事亦豈偶然？” 命賜群老管絃， 以歸其家。 命放金吾秋曹輕囚， 限三日政院各司勿用牌。</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9월 6일 (계유) 1번째기사 영부사 윤동도 등이 청대하다</p>	<p>영부사(領府事) 윤동도(尹東度), 판부사(判府事) 김상복(金相福), 우의정 김치인(金致仁), 판부사 서지수(徐志修), 예조 판서 이사관(李思觀), 참판 윤동섭(尹東暹)이 청대(請對)하니, 하교하기를,</p> <p>“여러 신하의 청대함이 신하의 분의(分義)는 그러하나, 나의 괴로운 마음은 금년에 더욱 깊다. 내 마음에 개연(慨然)스러운 것을 지금 유시하는 것이 가</p>	<p>癸酉/領府事尹東度， 判府事金相福， 右議政金致仁， 判府事徐志修， 禮曹判書李思觀參判尹東暹請對 教曰：“群下之請， 臣分則然， 予之苦心， 今年益深。 予心慨然者， 今諭可乎？ 行禮後今逾幾日？ 吁嗟！ 朝鮮只有時任 今有</p>

	<p>하겠는가? 예(禮)를 행한 뒤에 지금 며칠이 지났는가? 아! 조선은 시임(時任)만 있는데, 이제 이 일이 있는 연후에 &lt;와서&gt; 보기를 요구하는가? 나의 생각에는, 조선은 원임(原任)이 없다고 여긴다. 원임 여러 대신(大臣)을 모두 서명(胥命)하게 하라.”</p> <p>하였다. 약방(藥房)에서 함문(閤門)에 나아가서 여섯 번 계달하니, 사교(辭敎)가 점점 엄하여 군함(軍銜)을 띠고 시골에 있는 사람을 아울러 금추(禁推)하라고 명하고, 서울에 있는 여러 대관(臺官)들을 아울러 체차(遞差)하라 하였다. 인하여 육상궁(毓祥宮)에 거둥하는 명을 내렸다. 이경(二更)에 비로소 내국(內局)에 입시(入侍)하기를 명하였는데, 탕제(湯劑)는 들지 아니하였고,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p>	<p>此舉然後求見耶? 予則曰朝鮮無原任矣。 原任諸大臣, 并胥命。” 藥房詣閣六啓, 辭敎轉嚴, 帶軍銜在鄉人, 并命禁推, 在京諸臺, 并遞差。 仍下毓祥宮動駕之命。 二更始命內局入侍, 而不進湯劑, 原任大臣并命罷職。</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9월 20일(정해) 3번째기사 주강을 행하여 《소학》의 사어장을 강하다</p>	<p>주강(晝講)을 행하여 《소학(小學)》의 사어장(射御章)을 강(講)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80을 바라보는 금년에 몇 달을 오래 폐하였다가 이제 법강(法講)을 여니, 이것도 뜻밖이다.”</p> <p>하니, 지사(知事) 황경원(黃景源)이 말하기를,</p> <p>“사람을 가르치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태교(胎敎)를 말하였고, 또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 장(章)은 가장 체인(體認)할 곳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行晝講, 講《小學》, 學《射御章》。 上曰: “望八今年, 幾朔久廢, 而今開法講, 是亦科表矣。” 知事黃景源曰: “敎人之道, 當如是矣。 既曰胎敎, 又曰不失赤子之心, 此章最宜體認處也。” 上曰: “今年卽予十三歲就傅之年。” 以御筆書下四字二句, 命諸臣廣進, 仍賜饌。</p>

	<p>“금년은 바로 내가 13세에 스승에게 나아간 해이다.”</p> <p>하고, 어필(御筆)로 네 글자 두 글귀[四字二句]를 써서 내려, 여러 신하에게 화답(和答)해 올리라고 명하고 인하여 찬(饌)을 내려 주었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9월 21 일(무자) 1번째기사 3일동안 감선하라고 명하다</p>	<p>-----</p> <p>-----</p> <p>3일 동안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p> <p>“거두어 간직하는 절후에 천둥하고 번개치는 이번이 있으니,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에 응하기를 반드시 실심(實心)으로 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반드시 실지의 은혜를 베풀며, 허비를 막아서 경용(經用)을 유지하고, 애증(愛憎)을 아껴서 요행(僥倖)을 막으며, 원기를 북돋우어 바른 말을 이르게 하고, 사령(辭令)을 삼가서 공정(公正)을 힘쓰며,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시일(時日)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재이(災異)를 돌려서 상서로움을 만드는 한 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p> <p>하였는데, 비답하기를,</p>	<p>戊子/命減膳三日。 政院啓曰：“收藏之節，轟燁之異，不勝愕眙。 應天必以實心，憂民必究實惠，塞尾閫以支經用，愛嘖笑以杜僥倖，培元氣而來讜言，慎辭令而懋公正，無規規於細微，無泄泄於時日，豈非轉災爲祥之一大機會耶?” 批曰：“登時匡救，心庸嘉之。何敢曰衰而不自勉焉?” 修撰李得一等上劄，略曰：“殿下涵養之篤，戒懼之切，猶有未盡歟? 辭氣或至於失平，賞罰或歸於過當，名器漸輕，經用多匱，竄逐相繼，錮棄猶多。” 批曰：“寔予否德，益加自勉焉。”</p>

	<p>“때에 맞추어 바로잡아 구(救)하니, 마음으로 이를 가상하게 여긴다. 어찌 감히 노쇠하다고 하여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p> <p>하였다. 수찬 이득일(李得一)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전하께서는 함양(涵養)의 독실함과 계구(戒懼)의 간절하심이 오히려 미진함이 있습니까? 사기(辭氣)가 혹시 공평함을 잃는 데 이르고, 상벌(賞罰)이 혹시 과중(過中)함에 돌아가며, 명기(名器)가 점점 가벼워지고, 경용(經用)이 궁핍함이 많으며, 찬축(竄逐)이 잇따르고 금고(禁錮)해 버림이 많습니다.”</p> <p>하였는데, 비답하기를,</p> <p>“이는 나의 부덕(不德)함이니, 더욱 스스로 힘쓰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0월 26일(임술) 1번째기사 관부사 서지수 등과 신축년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p>	<p>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관부사(判府事) 서지수(徐志修)를 같이 들어오라 명하여, 임금의 서지수에게 이르기를,</p> <p>“어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기신(忌辰)에 내가 소식(素食)을 행하였다. 비록 승안(承顏)하지는 못하였으나 추모(追慕)하는 마음은 깊다. 오늘날 임금과 신하가 간격(間隔)이 없으니, 내가 하교한 데에 대하여 경 등은 어떻다고 여기는가? 내가 아니면 어찌 신축년(16601)의 일이 있었겠는가? ‘서생(書生)이 조정에 가득하고 백도(白徒)16602)가 벼슬을 바란다.’는 말은 진실로 이상하</p>	<p>壬戌/內局入診。命判府事徐志修同入，上謂志修曰：“昨日仁敬王后忌辰，予行素矣。雖未承顏，追慕則深。今日君臣無間，予有下教者，卿等以爲如何？非予則豈有辛丑乎？書生滿朝，白徒希望之言，誠異矣。其中或有希功者，而亦多有爲國者矣。頃年徐宗一，請雪徐德修時，故奉朝賀閔鎮遠以爲，</p>

다. 그 가운데 공명(功名)을 바라는 자가 혹시 있었으나 또한 나라를 위하는 자도 많이 있었다. 경년(頃年)에 서종일(徐宗一)이 서덕수(徐德修)를 신설(伸雪)하기를 청할 때에, 고(故)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서덕수가 거짓 자복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다. 김용택(金龍澤)은 처지(處地)가 어떠하였던가? 심상길(沈尙吉)은 궤이한 짓을 하였고, 정인중(鄭麟重)은 떠들썩하게 지껄여댔다. 비록 대훈(大訓) 가운데 ‘영세(永世)토록 개정(改正)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서덕수와 백망(白望)을 신설(伸雪)하였으니, 김용택도 신설함이 가하다. 김용택은 네 사람의 경우와 더욱 다르다.”

하였다. 도제조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다섯 사람의 마음도 모두 나라를 위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인하여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교하기를,

“내가 어찌 성모(聖母)를 생각하지 아니하겠는가? 김용택을 대훈(大訓)에 두면 효(孝)가 아니다.”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德修誣服，其言誠善矣。金龍澤則處地何如耶？沈尙吉怪狀，鄭麟重喧嘩矣。雖於大訓中永世不刊，既雪徐德修·白望，則金龍澤雪亦可矣。龍澤尤異於四人矣。” 都提調金致仁曰：“五人心，皆出於爲國也。” 上曰：“卿言是矣。” 因掩涕教曰：“予豈不思聖母乎？置龍澤於大訓則非孝矣。” 致仁曰：“殿下以責備之心，置於大訓，而初非以逆置之也。” 上曰：“金福澤之死，冤而無累矣。昭雪龍澤則有拜三殿 [之] 顏，而右相之拜，猶爲末節矣。” 命都承旨尹得雨讀奏大訓，上曰：“皇兄之心，無異予今日之心矣。” 讀至竝斷以逆，致仁曰：“雖以此句觀之，聖意非以逆律論也。” 上曰：“龍澤爲首，而地處隆矣。” 致仁曰：“地處故也，非其罪矣。” 上曰：“事甚重大，卿等之意何如？” 致仁曰：“既知其非罪，今日處分，豈可中止乎？” 志修曰：“知其非罪則處分誠當矣。” 提調朴相德曰：“名既載於大訓，何以則爲伸雪之道耶？” 上曰：“割去其名可矣。” 又教曰：“麟重輩有希望之心矣。” 致仁曰：“先臣每言，希望則



	<p>“전하께서 책비(責備)의 마음으로써 대훈에 두었으나, 애당초 역(逆)에 든 것은 아닙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김복택(金福澤)의 죽음은 억울하나, 누(累)는 없다. 김용택의 억울함을 밝혀 씻으면 삼전(三殿)을 배알(拜謁)할 면목이 있으니, 우의정의 배명(拜命)은 오히려 말절(末節)이다.”</p> <p>하였다. 도승지 윤득우(尹得雨)에게 대훈을 읽어 아뢰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p> <p>“황형(皇兄)의 마음도 나의 오늘날 마음과 다름이 없다.”</p> <p>하였다. 대훈을 읽다가, ‘아울러 역(逆)으로 처단하라.’는 데에 이르러, 김치인이 말하기를,</p> <p>“이 글귀로써 보더라도 성상의 뜻은 역률(逆律)로 논한 것이 아닙니다.”</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p> <p>“김용택으로 머리를 삼았는데, 문지(門地)가 높았다.”</p> <p>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p>	<p>不足爲罪，曾以此事白於上前，而且言雖以大訓中，竝斷以逆爲教者觀之，自然明其非逆也，臣則以聞於先臣者，對於今日也。” 相德曰：“都是國邊人也。” 志修曰：“左相所奏非逆之言是矣，實非逆也。” 上曰：“公心也，卿言是矣。” 志修曰：“臣非敢曰公也，聞於先臣而然矣。” 上曰：“今日始知先卿之心矣。” 乙亥以前，亦已知之乎？” 志修曰：“只以希望知之矣。” 相德曰：“謂之貪天之功則可也，非逆也。” 致仁曰：“大訓末，別垂四五行聖教，伸雪此輩何如乎？” 上曰：“洗補可也。” 致仁曰：“洗補則以澤輩之澤字，改以此字好矣。” 上曰：“如是則麟重輩，豈不盡脫於大訓中乎？” 志修曰：“此輩之盡脫，有何不可乎？” 致仁曰：“大訓中假托藉重，矯誣悖逆，竝斷以逆等句，皆當洗補矣。” 上曰：“卿等商量洗補可矣。” 志修曰：“非自下刪改者，自上處之好矣。” 上呼寫國是句。 志修曰：“國是二字，初無是非之可論，改以義理當矣。” 致仁曰：“義理字誠好矣。” 教曰：“噫！乙亥以後，義理益明，大訓句語中，亦不無釐</p>
--	--	--

	<p>“문지 때문이요, 그 죄가 아닙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일이 심히 중대한데,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p> <p>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p> <p>“이미 그 죄가 아님을 알았으면 오늘날 처분을 어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p> <p>하였고, 서지수(徐志修)는 말하기를,</p> <p>“그 죄가 아님을 알았으면 처분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였다. 제조(提調) 박상덕(朴相德)이 말하기를,</p> <p>“이름이 이미 대훈에 실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설(伸雪)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正者。且金龍澤，與喜。吉。紀。重輩，坐地異焉。今日時原任大臣，既諭心腹，元大訓中此句，付標以下，依此洗補。”上更命志修·致仁，改補元大訓中，噫！此輩假托藉重，貪功望賞，腸肚相連，一而二，二而一，寔所謂開國承家，小人勿用者也。人心宜正，隄防宜嚴四十二字，訖，教曰：“建儲之請，大臣之責，而李廷燾之先發，何耶？”致仁曰：“當時事機，大臣先發而見除，則宗主危亡，故廷燾先發矣。”上曰：“此樹百世之臣分也。”志修曰：“釐輩句節，猶多模糊，更命編次人稟定好矣。”上曰：“是矣。”致仁曰：“元大訓中，猶澤輩句節，此非改補者，竝澤輩句節，改以此輩誠當矣。”上曰：“改之可也。”</p>
--	---	--

	<p>“정인중(鄭麟重)의 무리는 〈공명(功名)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p> <p>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p> <p>“선신(先臣)이 매양 말하기를, ‘〈공명을〉 바라는 것은 죽히 죄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일찍이 이 일로써 주상 앞에 아뢰었으며, 또 말하기를, ‘비록 대훈 가운데, 「아울러 역(逆)으로 단정하라.」는 하교로써 불지라도 자연히 그 역이 아님은 밝혀진다.’고 하였으므로, 신은 선신에게 들은 바로써 오늘날에 대답합니다.”</p> <p>하였고, 박상덕이 말하기를,</p> <p>“이들은 모두 국변(國邊) 사람입니다.”</p> <p>하였으며,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좌의정이 아뢰 바 ‘역(逆)이 아니라’는 말은 옳으니, 참으로 역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공심(公心)이니, 경의 말이 옳다.”</p> <p>하매,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신은 감히 공심(公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선신(先臣)에게 들어서 그러합니</p>	
--	--	--

	<p>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오늘날에 비로소 선경(先卿)의 마음을 알았다. 을해년(1660) 이전에도 이미 알았는가?”</p> <p>하니, 서지수가 말하기를,</p> <p>“단지 〈공명을〉 희망(希望)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p> <p>하였다. 박상덕이 말하기를,</p> <p>“하늘의 공(功)을 탐한다고 이르는 것은 가하나, 역(逆)은 아닙니다.”</p> <p>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p> <p>“대훈 끝에 너댓 줄 성교(聖敎)를 따로 내려 이 무리를 신설(伸雪)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세보(洗補)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p>	
--	--	--

	<p>“세보’는 택배(澤輩)라는 ‘택(澤)’의 글자를 ‘차(此)’ 자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와 같이 하면 정인중(鄭麟重)의 무리도 대훈 가운데에서 다 벗어나지 아니 하겠는가?”</p> <p>하매,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이 무리가 다 벗어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p> <p>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p> <p>“대훈 가운데 ‘가탁자중(假托藉重)·교무패역(矯誣悖逆)·병단이역(並斷以逆)’ 등의 글귀는 모두 세보(洗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 등이 헤아려서 세보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아래에서 지우고 고칠 일이 아니니, 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	---	--

하니, 임금이 ‘국시(國是)’의 글귀를 불러 주며 쓰게 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

“‘국시’ 두 글자는 애초에 옳고 그름을 논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의리(義理)’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김치인이 말하기를,

“‘의리’의 글자가 진실로 좋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올해년 이후로 의리가 더욱 밝아졌으니, 대훈의 어구(語句) 가운데도 이 정(釐正)할 것이 없지 아니하다. 또 김용택(金龍澤)은 이희지(李喜之)·심상길(沈尙吉)·이천기(李天紀)·정인중(鄭麟重)의 무리와 처지가 다르다. 오늘 시암·원임 대신에게 이미 심복(心腹)으로 깨우쳐 말하였으며, 원래 대훈 가운데의 이 구절(句節)에 부표(付標)하여 내리니, 이에 의하여 세보(洗補)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다시 서지수·김치인에게 명하여 원래 대훈 가운데 ‘아! 이 무리들이 가탁 자중하여 공을 탐하고 상을 바라며 심장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 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니, 이는 이른바 「나라를 열고 집을 승계하는 데에 소인은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인심을 마땅히 바로잡고 제방을 마땅히 엄하게 할 것이다.[噫此輩 假托藉重 貪功望賞 腸肚相連 一而二 二而一 寔

	<p>所謂 開國承家 小人勿用者也 人心宜正 隄防宜嚴]’라는 42글자를 개보(改補)하게 하였다. 이를 마치자, 하교하기를,</p> <p>“동궁(東宮)을 세우기를 청하는 것은 대신의 책임인데, 이정소(李廷燾)가 먼저 발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p> <p>“당시의 사기(事機)가 대신(大臣)이 먼저 발설하였다가 버림을 당하면 종사(宗社)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정소가 먼저 발설한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백세(百世)의 신분(臣分)을 세운 것이다.”</p> <p>하였다.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이정(釐正)한 구절에 오히려 모호(模糊)한 점이 많으니, 다시 편차인(編次人)에게 명하여 품정(稟定)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옳다.”</p> <p>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p>	
--	---	--

	<p>“원래 대훈 가운데 ‘택배(澤輩)’와 같다는 구절은 개보(改補)할 것이 아니고, ‘병택배(並澤輩)’라는 구절은 ‘차배(此輩)’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고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10월 30 일(병인) 4번째기사 한광조가 직무에 행공 하기 어렵다고 여겨 체차를 허락하다</p>	<p>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헌 한광조(韓光肇)가 전계(前啓)를 전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한광조가 정리(情理)에 있어 직무에 행공(行公)하기 어렵다고 여겨 체차(遞差)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신(大臣)이 상중(喪中)에 있는데 고기[肉]를 권한 예(例)가 있는가?”</p> <p>하니, 좌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p> <p>“일찍이 가중(家中)의 일기(日記)를 보니, 신의 조부가 이 은전(恩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p> <p>하였다. 전교를 쓰라 명하고 말하기를,</p> <p>“아! 어느 날에 잊겠는가? 경은 어찌 한갓 경만 위하겠는가? 진실로 나라 일을 위할 것이다. 아! 3년상(三年喪)을 생각하니, ‘창연(惘然)’ 두 글자도 허름한 말이다. 특별히 승선(承宣)을 보내어 나의 권권(眷眷)한 뜻을 유시(諭示)하</p>	<p>引見大臣備堂。大司憲韓光肇傳前啓，不允。以光肇情理難供職許遞。上曰：“大臣在喪，有勸肉之例乎？”左相金致仁曰：“曾見家中日記，則於臣祖有是恩典矣。”命書傳教曰：“噫！何日忘乎？卿豈徒爲卿？實爲國事。噫！思三年惘然二字，亦歇後語也。特遣承宣，諭予眷眷之意，兼於卿之子[弟]而示微意，卿須諒予此意。卿須諒予此意。其豈爲身？爲國自護焉。”命入侍承旨，往諭于洪領府事。</p>



	<p>고, 겸하여 경의 자제(子弟)들에게 그옥한 뜻을 보이니, 경은 모름지기 나의 이 뜻을 알지어다. 경은 모름지기 나의 이 뜻을 알지어다. 어찌 몸을 위해서 이겠는가?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입시(入侍)한 승지에게 명하여 홍 영부사(洪領府事)16610) 에게 가서 유사하게 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1월 25일(신묘) 2번째기사 창덕궁에 나아가 황감을 진전에 친신하다</p>	<p>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황감(黃柑)을 진전(眞殿)에 친신(薦新)하였다. 환궁한 뒤에 제주(濟州)의 황감을 진공(進貢)한 사람을 불러서 연사(年事)를 묻고 돌아가는 양식을 주라고 명하였다.</p>	<p>上詣昌德宮，薦柑于眞殿，還宮後，召濟州貢果人，下詢年事，命給回糧。</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1월 26일(임진) 1번째기사 승정전 월대에 나아가 황감을 반사하고 선비를 시험하다</p>	<p>임금이 승정전 월대(崇政殿月臺)에 나아가서 황감을 반사(頒賜)하고 선비를 시험하였다.</p>	<p>壬辰/上御崇政殿月臺，頒柑試士。</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2월 8일(갑진) 1번째기사 하례를 청하지 않으면 탕제를 들겠다고 하다</p>	<p>임금이 탕제(湯劑)를 들지 아니하므로, 약방에서 다섯 번 아뢰었다. 대신이 입대(入對)를 청하니, 입시(入侍)하라 명하고, 하례를 청하는 일로써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교시를 내리기를,</p> <p>“경 등이 만약 하례를 청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탕제를 들겠다.”</p> <p>하니, 모두 대답하기를,</p>	<p>○甲辰/上不進湯劑，藥房五啓。三大臣請對，命入侍，以請賀事，下不忍聞之教曰：“卿等若不請賀，當服湯劑矣。”皆對曰：“不敢復請矣。”</p> <p><b>【태백산사고본】</b></p>

	<p>“감히 다시 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12월 11 일(정미) 4번째기사 기신에게 보제와 식물 을 내려 주라고 명하 다</p>	<p>기신(耆臣)에게 보제(補劑)와 식물(食物)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p>	<p>○命賜耆臣補劑食物。</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월 4일 (기사) 1번째기사 서지수의 내국 도제거 의 사직을 허락하고 한익모로서 대신하라 고 명하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도감(都監)과 금영(禁營)의 신·구 번(新舊番) 장사(將士)를 호궐(犒饋)하였다. 서지수의 내국(內局) 도제거(都提 舉)의 사직을 허락하고, 한익모로서 대신하라고 명하였으며, 전 영의정 윤동 도, 전 좌의정 김치인, 전 우의정 김양택(金陽澤)을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p>	<p>己巳/上御崇政殿月臺， 犒饋都監禁營 新舊番將士。 命徐志修內局都提舉許 副， 以韓翼謩代之， 命前領議政尹東度 · 前左議政金致仁 · 前右議政金陽澤 敍用。</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사직 남유용이 상소하 여 휴퇴하기를 빌다</p>	<p>사직(司直) 남유용(南有容)이 상소하여 휴퇴(休退)하기를 비니, 비답하기를, “지난해에 충자(沖子)를 부탁한 것은 박성원(朴聖源)과 마찬가지로였으니, 차마 한 사람은 허락하고 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한 번의 청에 즉시 윤허한다. 비록 그러하나 경은 본디 집안이 가난하고 월름(月廩)이 적으니, 경을 위해 민망스럽게 여긴다.”</p>	<p>司直南有容上疏乞休， 批曰：“頃年託 沖子， 與朴聖源一也， 不忍一許一否， 一請卽允。 雖然卿本家貧， 薄略月廩， 爲卿悶焉。” 仍命該曹， 元歲饌外加 給。</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월 7일 (임신) 2번째기사 예조에 날짜를 가려 친경·친잠을 거행하라고 명하다</p>	<p>하고, 인하여 해조로 하여금 원래의 세찬(歲饌) 이외에 더 주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 날짜를 가려 친경(親耕)·친잠(親蠶)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74세에 충자(沖子)와 함께 친경을 하고, 내전(內殿)에 친잠을 명하였으니, 이런 일이 어찌 나라의 사첩(史牒)에 있었겠는가? 친잠은 삼조(三朝)에서 이미 행한 고례(古例)가 있었고, 황조(皇朝)에서도 이미 이런 예가 있었다. 《오례의(五禮儀)》에 없는 것을 이번에 의기(義起)하여 하교하니, 이에 의해 거행하라. 내집사(內執事)의 삼헌(三獻)은 내전(內殿)·혜빈(惠嬪)·빈궁(嬪宮)이 하고, 예의사(禮儀使)·집례(執禮)·집준(執尊)·대축(大祝)·축사(祝史)·재량(齋郎)은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하며, 친잠 때는 기악(伎樂)을 사용하지 말라.”</p> <p>하고, 춘추관 당상·낭청이 강도(江都)에 가서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p>	<p>命儀曹擇日行親耕親蠶。教曰：“七十四歲，與沖子親耕，命內殿親蠶，此豈國牒所有？於親蠶三朝已有古例，皇朝亦有此禮。《五禮儀》所無者，今當義起下教，以此舉行。內執事三獻，內殿惠嬪嬪宮爲之，禮儀使執禮執尊大祝祝史齋郎，以內命婦外命婦爲之，親蠶時勿用伎樂。”命春秋館堂郎，往沁都，考實錄以奏。</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월 13일(무인) 2번째기사 수찬 정후겸이 상소하여 태묘에 술 쓰기를 청하자 서용하지 말게 하다</p>	<p>수찬 정후겸(鄭厚謙)이 상소하여 태묘(太廟)에 술 쓰기를 청하고, 또 아직까지 죄에 얽매어 있는 산림(山林)과 말 때문에 죄를 입은 대신(臺臣)에게 모두 은유(恩宥)를 내릴 것을 청하였으며, 말미(末尾)에 형조 판서 심수(沈鏞)가 불법(不法)을 행하여 사복(私腹)을 채운 것을 논하고, 두 전관(銓官)과 탁지(度支)의 의망(擬望)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p> <p>“연소배가 숨김이 없으니 뜻은 가상하나, 이미 면칙(面飭)을 받고도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끝의 일은 이러한 자들이 참섭(參涉)할 것이 아닌데, 이런 상소를 한 후에만 명관(名官)이라 할 수 있는가? 이 글을 돌려주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p>	<p>修撰鄭厚謙上疏，請太廟用酒，又請尙在罪累之山林，以言獲罪之臺臣，并加恩宥，尾論刑曹判書沈鏞，濟私肥己，請改正兩銓度支望，教曰：“年少無隱，志則可尙，既受面飭，焉敢若此？末端事，非參涉於此等者，爲此章然後，可謂名官乎？此章給之，永不敍用。”厚謙，日城尉致達之子也，校理徐有良等筭救，上曰：“此類勸小兒爲此，亟施刊版之典。”</p>

	<p>하였다. 정후겸은 일성위(日城尉) 정치달(鄭致達)의 아들인데, 교리 서유량(徐有良) 등이 차자를 올려 구원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이 무리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한 것이니, 빨리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율을 시행하라.”</p> <p>하였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월 13일(무인) 3번째기사 문후하지 말라 명하고 탕제(湯劑)를 물리치다</p>	<p>문후(問候)하지 말라 명하고, 탕제(湯劑)를 물리쳤다. 약방(藥房)이 구대(求對)하고 영의정과 우의정이 청대하니, 답이 올 무렵에야 비로소 입시를 명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일사(逸士)가 견책을 받은 것은 본디 그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마침내는 나라의 복은 아니다.”</p> <p>하니, 영의정 서지수(徐志修)가 말하기를,</p> <p>“그들이 어질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배양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p> <p>하였다.</p>	<p>命勿問候，却湯劑。藥房求對，領右相請對，鷄鳴始命入侍。上曰：“逸士權譴，固渠自取，而終非國家福矣。”領議政徐志修曰：“非謂渠賢，培養士林之道，恐不宜若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월 15일(경진) 3번째기사 태묘에 술을 쓰는 일을 여러 신하에게 물</p>	<p>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임준(任琿)에게 예경(禮經) 가운데서 오제(五齊)16633)에 대한 문의(文義)를 상고하여 아뢰라 명하고, 태묘에 술을 쓰는 일을 여러 신하에게 두루 묻고 나서 하교하기를,</p> <p>“을해년(16634)의 금주령(禁酒令)은 이에 조선(朝鮮)을 위한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덕이 없어 아래에 행하지 못하고 막중한 태실(太室)에 예</p>	<p>內局入診。命右副承旨任琿，考奏《禮經》中五齊文義，以太廟用酒事，遍詢諸臣訖，教曰：“乙亥禁酒之令，寔爲朝鮮苦心，而涼德不能下行，至於莫重太室，用醴酒，予意實爲宗國，心切悚然。況昨年春夏後，服松節茶，</p>

고 술을 쓰게 하다

주(醴酒)16635) 를 쓰니, 내 뜻은 실로 종국(宗國)을 위한 것이었으나 마음이 매우 죄송스러웠다. 더군다나 작년 봄·여름 이후에는 송절다(松節茶)를 복용하고 지금까지 걸어다닐 수가 있으니, 참으로 선조의 영혼(靈魂)께서 내려 주신 바이다. 이런데도 태실에 예주(醴酒)를 써서 고례(古禮)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효(不孝)이다. 오늘 특별히 대신(大臣)을 불러서 밤새도록 문난(問難)하여 늦은 후에야 크게 깨달았다. 오제(五齊)의 예(醴)는 예주(醴酒)의 ‘예(醴)’자와 글자는 같으나 뜻은 같지 않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감히 날짜를 넘기겠는가? 먼저 태상시(太常寺)에 명하여 미리 준비해 내달 초 길일(吉日)에는 종묘 사직에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을 고유(告由)하는 일로 예조에 분부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제주(祭酒)는 너무 많이 봉하지 말고 남은 것은 전사관(典祀官)이 깨끗한 곳에 붓고, 음복(飲福)하고 남은 술은 종묘의 유사(有司)가 깨끗한 곳에 부으라.”

하였다. 수찬 조준(趙駿)이 말하기를,

“이미 정후겸(鄭厚謙)의 말을 채용하여 묘주(廟酒)를 복구하였으니, 두번째 일도 역시 윤희를 내려 따르소서.”

하고, 여러 신하가 번갈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명흠(宋明欽) 등의 율명(律名)이 어떠한가?”

于今行步，誠陟降攸賜。若此而太室用醴，不復古禮，此不孝也。今日特召大臣，竟夕問難，晚後大覺。五齊之醴，醴酒之醴字同，意不同。思之及此，何敢逾日乎？先命太常，預備來月初吉日，告廟社復古事，分付禮曹。”又命：“祭酒勿爲濫封，所餘者，典祀官灌於淨潔處，飲禮餘酒，廟司灌於淨潔處。”修撰趙駿曰：“既採鄭厚謙言，以復廟酒，第二件事，亦宜賜允從矣。”諸臣迭陳，上曰：“宋明欽等律名何如？”右議政金尙喆曰：“永爲庶人矣。”教曰：“儒林庶民，三百年所無，扶植士林，卽我朝傳授之法，特寢爲庶人之命。”仍命分揀鄭厚謙等處分。

	<p>하였다.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p> <p>“영원히 서인(庶人)으로 삼았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유림을 서인으로 만든 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바이고, 사림(士林)을 부식(扶植)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 전해 오는 법이니, 특별히 서인을 삼으라는 명을 정지하라.”</p> <p>하고, 인하여 정후겸 등의 처분을 분간(分揀)하라 명하였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월 24 일(기축) 1번째기사 곤전으로 하여금 친잠 하게 하다</p>	<p>내국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나의 친경(親耕)이 몇 번째인가?”</p> <p>하니, 부제조 윤득우(尹得雨)가 말하기를,</p> <p>“세번째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문백(文伯)의 어머니는 왕후(王后)도 친히 현담(玄統)을 짚다(16648)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근래에 잠상(蠶桑)의 도를 듣지 못해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 하여 곤전으로 하여금 친잠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뜻이 대개 깊은 것이다.</p>	<p>○己丑/內局入診。 上曰：“予之親耕，幾次乎？” 副提調尹得雨曰：“三次矣。” 上曰：“文伯之母，豈不言王后親織玄統乎？近者蠶桑之道未聞，心常慨然，欲使坤殿親蠶，意蓋深也。而儀文不可不備，只行采桑，亦近觀瞻。西陵氏先蠶之主，而近萬年行此，使坤殿若不親祀，豈敬姜之意乎？命以十一日舉行。 其日予先詣景福宮禮畢，坐勤政殿受世孫百官賀，勤政內庭，坤殿受百官賀。 後予坐康寧殿，與坤殿受惠嬪與世孫嬪內外命婦朝見回駕。 十一日先傳西陵氏香於崇賢門內殿・惠</p>

	<p>의문(儀文)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채상(采桑)만 행하는 것은 구경거리에 가깝다고 하겠다. 서릉씨(西陵氏)는 선잠의 주인으로 만년 가까이 이를 행하였는데, 곤전으로 하여금 만약 친사(親祀)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경강(敬姜)의 뜻이겠는가? 11일에 거행할 것을 명한다. 그날 내가 미리 경복궁에 가서 예를 마치고, 근정전에 앉아서 세손(世孫)과 백관의 하례를 받을 것이며, 근정전 내정(內庭)에서는 곤전이 백관의 하례를 받는다. 그런 후 내가 강녕전(康寧殿)에 앉아 곤전과 함께 혜빈과 세손빈, 내·외 명부의 조현(朝見)을 받고 회가(回駕)한다. 11일에 먼저 서릉씨의 향(香)을 승현문(崇賢門)에서 전할 것이니, 내전·혜빈·세손빈·내·외 명부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며, 축문(祝文)의 두사(頭辭)에는 ‘조선국 왕비 김씨(朝鮮國王妃金氏)’라고 일컬어야 한다. 잠모(蠶母)에게는 각기 면포(綿布) 1필 씩을 하사하고, 친잠례를 마친 후 친경례에 의하여 잠모로 하여금 먼저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면포를 나누어 준 후에도 머리를 조아리게 한다. 내집사(內執事) 이하는 그때를 당하여 시상(施賞)할 것이니, 이에 의해 거행하라.”</p> <p>하였다.</p>	<p>嬪·世孫嬪·內外命婦，當爲隨行，祝文頭辭，稱以朝鮮國王妃某氏。蠶母各賜綿布一疋，親蠶禮畢後，依親耕禮，令蠶母先行叩頭，領綿布後，令叩頭。內執事以下，當其時施賞，依此舉行。”</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월 24일(기축) 2번째기사 이식이 복제 마치고를 기다려 조용하라는 명을 정지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서지수(徐志修)가 말하기를, “이식(李弼)은 그 아버지의 병을 듣고 정사(呈辭)할 길이 막혀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간호(看護)할 도리가 없자, 이에 밀부(密符)를 빼앗는 행차에 차임되어 역로(歷路)에 살필 계획을 하다가 중로에서 분상(奔喪)으로 밀부를 맡겨 두는 근심이 있게 하였으니, 벌을 주어야 하고 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복제(服制) 마치고를 기다려 조용하라는 명을 정지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 우의정 김상철이 말하기를,</p>	<p>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徐志修曰：“李弼聞其父病，呈辭路阻，不能棄官歸護，乃差奪符之行，以爲歷省之計，致有中路奔赴，密符委置之患，可罰而不可賞。請寢待闋服調用之命。”允之。右議政金尙喆曰：“喉院體重，六承旨一時被罪，下位留院，與新除承旨，面看例也。今番空院，有關後弊，請示警命一體罷職。”禮曹判書申晦</p>

	<p>“후원(喉院)은 체면이 중하여 여섯 승지가 일시에 죄를 입어도 하위(下位)에 있는 자가 정원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 제수된 승지와 만나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에 정원을 비운 것은 후폐와 관계가 있으니, 청컨대 경계를 보이고 일체로 파직을 명하소서.”</p> <p>하였다. 예조 판서 신회(申晦)가 진하(陳賀)할 때에 외방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규례에 따라서 봉진(封進)하기를 청하니, 단지 전문(箋文)만 올리고 방물과 물선은 아울러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또 왕세손궁(王世孫宮)의 하례(賀禮)는 환궁하기를 기다려 거행하기를 청하니,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또 친잠 때의 고유(告由)는 친경의 예에 의해서 종묘에 고유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친잠 때 외명부는 열 한 가지[條]를 따라고 명하셨는데, 친경 때에 이미 다섯 번 밀고, 일곱 번 밀고, 아홉 번 미는 것으로 마련하였으니, 채상(採桑) 때에도 역시 다섯 가지, 일곱 가지로 마련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 사궁(四宮)에 분부하여 잠모를 택정(擇定)하되 의녀(醫女)로써 충당해 차출하고 의장(儀仗)을 봉직(捧持)토록 할 것을 명하였다.</p>	<p>請陳賀時外方物膳，依例封進，命只進箋，方物膳，并置之。又請王世孫宮賀禮，待還宮舉行，命置之。又請親蠶時告由，依親耕例，告由於宗廟，允之。又曰：“親蠶時外命婦，有十一條之命，而親耕時，既以五推七推九推磨鍊，採桑時亦以五條七條，請磨鍊。”允之。命分付四宮，擇定蠶母以醫女充差，儀仗捧持。</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2월 26일(경신) 4번째기사 친경한 후의 노주의의 절차</p>	<p>친경한 후의 노주의(勞酒儀)는 다음과 같다. 그날 친경을 끝내면 액정서(掖庭署)에서 이어서 어좌(御座)를 관경대(觀耕臺) 위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손의 시좌(侍座)는 동쪽 가까운 곳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전설사에서는 기민(耆民)과 서인의 자리를 대 아래 동쪽·서쪽에 두 줄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또 배위(拜位)를 대 아래 조금 남쪽에 설치한다. 내자사에서 기민과 서인의 주탁(酒卓)을 계단 아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기민과 서인은 각기 입고</p>	<p>親耕後勞酒儀。其日親耕訖，掖庭署仍設御座於觀耕臺上南向，王世孫侍坐於近東西向。典設司設耆民庶人位於臺下東西重行相向，又設拜位於臺下稍南。內資寺設耆民庶人酒卓於階下東西，耆民庶人，各服其服，分東西整齊</p>



있는 차림으로써 동서로 나누어 정돈하여 기다린다.

좌통례가 대차 앞에 나아가 외판(外辦)을 계청하면, 전하께서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갖추고 나오고,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輿)에 오르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여에 오르고 산선(繖扇)·시위(侍衛)는 평상시의 의식 때처럼 하고, 헌가악을 연주한다. 좌·우통례가 인도하여 관경대 남쪽 계단 아래에 이르러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여에서 내리고 헌가악이 그치고 등가악을 연주한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집규(執圭)를 계청하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올리고 전하가 집규한다. 좌·우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쪽 계단을 거쳐 대(臺) 위로 나아가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앉고 산선·시위는 평상시의 의식대로 하고, 음악이 그친다.

왕세손이 시좌위로 나아가면 기민과 서인이 차례로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동서쪽 자리의 집사(執事)하는 자는 각기 기민과 서인의 앞에 반찬 그릇을 놓고 내자시 관원이 술을 따라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술잔을 돌리고 기민과 서인은 모두 자리에서 떠나 부복(俯伏)하여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 마시고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두 잔, 세 잔에 이르기까지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조금 후에 집사자가 반찬 그릇을 물리면 기민과 서인이 다시 배위에 나아가 사배를 마친다. 좌통례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 부복해 꿇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뢴다.

전하께서 자리에서 내려오면 등가악을 연주하고 좌·우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쪽 계단을 거쳐 내려와 대 아래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석규(釋圭)를 계청하면 전하께서 규를 놓고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는

以待。左通禮詣大次前，啓請外辦，殿下仍具遠遊冠絳紗袍以出，左通禮跪啓請乘輿，殿下乘輿，繖扇侍衛如常儀，軒架樂作。左右通禮導至觀耕臺南階下，左通禮跪啓請降輿，殿下降輿，軒架樂止，登歌樂作。左通禮跪啓請執圭，近侍跪進圭，殿下執圭。左右通禮導殿下，陞自南階，詣臺上，陞座南向，繖扇侍衛如常儀，樂止。王世孫就侍座位，耆民庶人以次入就拜位四拜訖，各就坐。東西位執事者，各排饌器於耆民庶人之前，內資寺官，酌酒以授執事者，執事者行爵，耆民庶人皆離位，俯伏跪受爵訖，還復位，行二爵至三爵如上儀。小頃執事者撤饌器，耆民庶人還就拜位四拜訖，左通禮陞自東階，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殿下降座，登歌樂作，左右通禮導殿下，降自南階，至臺下樂止。左通禮跪啓請釋圭，殿下釋圭，近侍跪受圭。左通禮跪啓請乘輿，殿下乘輿，繖扇侍衛如常儀，軒架樂作。左右通禮前導，還入大次樂止。王世孫入次，耆民庶人以次出，還宮時至，還宮如儀。

	<p>다. 좌통례가 꿰어앉아 여에 오르기를 계청하면 전하께서 여에 오르고 산선·시위는 평상시의 의식대로 하고 헌가악을 연주한다. 좌·우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도로 대차로 들어가면 음악이 그친다. 왕세손이 편차로 들어가면 기민과 서인이 차례로 나오며, 환궁할 때가 이르면 의례(儀禮)대로 환궁한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2월 26일(경신) 5번째기사 친경 후 노주 때 왕세손의 시좌의의 절차</p>	<p>친경 후 노주(勞酒) 때 왕세손의 시좌의(侍座儀)는 다음과 같다. 그날에 친경을 마치면 액정서에서 어좌를 관경대 위에 설치하고, 왕세손의 시좌위를 어좌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기민과 서인은 각기 입은 옷차림으로써 동서로 나누어 정돈해서 기다린다. 전하께서 곧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나오면 음악을 연주하고, 상례가 꿰어앉아 대차에서 나오기를 찬청한다. 왕세손이 곧 원유관·강사포를 갖추고 나오면 통례가 앞에서 전하를 인도하여 대(臺) 위에 이르러 자리로 오르면 음악이 그치고,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시좌위로 올라가면 기민과 서인은 배위(拜位)에 나가서 사배를 마치고 각자 제자리로 나간다. 각기 기민과 서인의 앞에 반찬 그릇을 놓고 집사자가 술잔을 돌리면 기민과 서인은 자리를 떠나 꿰어앉아서 술잔을 받아 마시고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두 잔, 세 잔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의 의식처럼 한다. 집사자가 반찬 그릇을 거두면 기민과 서인은 사배를 하고 나서 좌통례가 어좌 앞에 나아가 꿰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뢴다. 전하께서 자리에서 내려와 도로 대차로 들어가면 음악이 그친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편차로 돌아가면 의례대로 환궁한다.</p>	<p>親耕後勞酒時，王世孫侍座儀。其日親耕訖，掖庭署仍設御座於觀耕臺上，設王世孫侍座於御座之東西向。耆民庶人，各服其服，分東西整齊以待。殿下仍具遠遊冠絳紗袍以出樂作，相禮跪贊請出次。王世孫仍具遠遊冠絳紗袍以出，通禮前引殿下，至臺上陞座樂止，相禮引王世孫陞就侍座位，耆民庶人就拜位，四拜訖，各就坐。各排饌器於耆民庶人之前，執事者行爵，耆民庶人離位跪受爵訖復位，行二爵至三爵，并如上儀。執事者撤饌器，耆民庶人四拜訖，左通禮進當座前跪，啓禮畢。殿下降座，還入大次樂止。相禮引王世孫入次，還宮如儀</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3월 7일(신미) 4번째기사 전 찬선 윤봉구가 권상하의 온천에서 있었던 일을 변명하는 상</p>	<p>전 찬선(贊善) 윤봉구(尹鳳九)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의 선사(先師)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온천(溫泉)에서 있었던 일은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사는 깊고 견고한 자질과 근밀(謹密)한 공부로서 사도(斯道)의 맹주(盟主)가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었으니, 우리 숙종 대왕(肅宗大王)께서 예우(禮遇)와 총애하심이 시종 쇠퇴하지 않았 습니다. 이제 어제(御題) 유곤록(裕昆錄)에 이르기를, ‘안자(顔子)가 누항(陋</p>	<p>前贊善尹鳳九上疏，略曰：“臣之先師文純公權尙夏溫泉時事有不得不辨者。先師淵凝之資謹密之工，主盟斯道，爲世矜式，我肅宗大王禮遇寵眷，終始不衰。今於御製《裕昆錄》有曰，‘顔子陋巷，豈到饋遺？’，又曰，‘請招勸行，予見溫泉’，先師以當世大老，適在</p>

소를 하다

巷)에 있었으나 어찌 음식을 보내왔던가?’라 하고, 또 말하기를, ‘초래(招來)하기를 청하고 출행(出行)을 권하여 내가 온천에서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사께서 당시의 대로(大老)로서 마침 여행 중이므로 가까운 고을에 있던 친지들이 객지(客地)의 수용(需用)을 돕기 위하여 보내 온 것은 찬물(饌物)과 술병 등속에 불과하였으니, 보내 온 것을 사양하였으나 어떻게 물리치기야 하겠습니까? 맹자(孟子)도 설(薛)과 송(宋)에서 모두 받은 일(16674)이 있었으니, 안자나 맹자도 그 도(道)는 하나입니다. 맹자가 받은 바는 안자 역시 반드시 받았을 것이니, 선사의 받은 바가 어찌 안자의 도에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행전(行殿)에서 입대(入對)하였다가 상소하여 먼저 돌아간 데는 다 곡절이 있습니다. 선사는 가까운 온천에 나가서 문후(問候)할 계획으로 행조(行朝)에 나아갔는데, 은례(恩禮)가 응송하여 손을 잡고 돈면(敦勉)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권하거나 저지함을 인해서 나오게 하고 물러가게 하였겠습니까? 설령 어떤 사람이 불러오게 하고 가기를 권하였다면 그 사람이 성의가 없는 것이니, 선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천안(天安)·직산(稷山) 사이에서 장차 배호(陪扈)하고 돌아갈 계획을 하였는데, 불행히도 아들의 병이 위독하여 처음 마음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인자(仁慈)의 해량(解諒)하심을 보게 되었고 대도(大度)로써 매복(枚卜)(16675)의 명까지 계셨음은 삼가 생각하건대 연충(淵衷)에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드려 비옵건대 신의 선사의 진퇴(進退)와 사수(辭受)에는 처음부터 흠잡아 말할 만한 것과 특별히 추구(追咎)(16676)함을 보일 뜻이 없었음을 생각하시어 마침내 처음을 이어가지 못하였다는 탄식에 이르지 않게 한다면, 전하의 계술(繼述)하는 도리가 크게 빛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자 하교하기를,

行旅，親知之在近邑者，送助客廚，不過饌物壺酒之屬，餽之有辭，何容却之？孟子於薛於宋，皆有所受，顏子·孟子，其道一也。孟子所受，顏子亦必受之，臣師所受，亦豈有愧於顏子之道哉？行殿入對，陳疏先歸，儘有委折。先師以近就溫泉承候之計，進詣行朝，恩禮隆洽，至於握手敦勉，是豈因人勸沮，有所前却？設令有人請招出勸行者，其人不誠，關先師何哉？且擬將陪扈天。稷之間，爲告歸之計，不幸子病濱危，未遂初心。終見諒於仁恕，大度至有枚卜之命，伏想淵衷，尙今記有。伏乞念臣師進退辭受，初無疵欠之可言，特示追咎之意，終不至權輿不承之歎，則在殿下繼述之道，大有光焉。”疏入，教曰：“頃年駭章，溫泉時已見，故今者無職名陳章，亦涉訝之。此非他也。因御製句語，若是張皇。一事則尹鳳九亦不掩諱，一事則其文所言，非指其師，卽慨然其時儒臣而言，則今何替辨若此？噫！予雖衰矣，於斯文，自嗣服初，嚴飭深矣。所謂嚴隄防《裕昆錄》，頃者因申暎之駭舉以製者，況白首暮年，今幾年之

“지난해 놀라운 글을 온천 행행 때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번의 직명(職名)이 없는 상소 역시 의아스러운 데 관계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御製)의 구어(句語)를 인해서 이처럼 장황하게 한 것이다. 한 가지 일은 윤봉구 역시 가리워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었고, 한 가지 일은 그 글에서 말한 바가 그의 스승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유신(儒臣)을 개탄하여 말한 것인데, 이제 어찌 번갈아가며 이처럼 변명하는가? 아! 내가 비록 노쇠하였지만 사문(斯文)16677) 에 대하여는 즉위한 처음부터 엄칙(嚴飭)함이 깊었다. 이른바 제방(隄防)을 엄히 한 유곤록(裕昆錄)이란 지난번 신경(申暲)의 놀라운 거조를 인하여 지은 것인데, 더군다나 백수(白首)의 늙은 나이에 이제 몇년이 지난 후 이런 일을 어찌 감히 오늘날 다시 제기하는가? 한심한 일 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어찌 온천에서 올린 상소에 비하겠는가? 마땅히 엄히 처리해야 할 일이나, 일찍이 노쇠하여 혼미하다고 들었고 이 글이 결코 스스로 변명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았으니, 그것을 비록 참작하더라도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도리를 엄히 함에 있어서 예(例)에 따라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글을 내려 보내라.”

하니, 승지 이휘지(李徽之)가 아뢰기를,

“윤봉구는 나이가 80세에 가깝고 고(故) 상신(相臣)은 선조(先朝)에서 예우(禮遇)한 신하이니, 만약 우악한 비답을 내리시면 성덕(聖德)에 빛이 날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도리를 엄히 해야 한다는 하교는 참으로 과중(過中)합니다.”

하때, 임금이 말하기를,

後，此等事豈敢更提今日乎？事之寒心莫此爲甚。奚比於溫泉陳章乎？事當嚴處，而曾聞衰昏，已知此章，決非自辦者，其雖參酌，其在嚴君君臣臣之道，不可循例賜答。其章下送。”承旨李徽之奏曰：“尹鳳九年迫八十，故相先朝禮遇之臣，若賜優待，則有光聖德。嚴君君臣臣之教，誠過中矣。”上曰：“與其君相較爲師辨誣者，豈不非乎？”命罷徽之職。

**【태백산사고본】**

	<p>“임금과 서로 맞서서 스승을 위해 변무(辯誣)한 것이 어찌 그르지 않은가?”</p> <p>하고는, 이휘지를 파직하라고 명하였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송정전 월대에 부복하 여 윤봉구의 일을 아 뢰다</p>	<p>임금이 소녕원(昭寧園)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을 친히 전하였고, 인하여 송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부복(俯伏)하여 윤봉구의 일을 상세히 입으로 아뢰었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치인(金致仁)이 탕제(湯劑) 들기를 청하니, 받아서 땅에 엎질러버렸다.</p>	<p>壬申/上親傳昭寧園忌辰祭香，仍俯伏於崇政殿月臺，以尹鳳九事，縷縷口奏。藥房都提調金致仁，請進湯劑，受而覆於地。</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10 일(갑술) 4번째기사 왕비가 친잠 때에 경 복궁으로 가는 의식 절차</p>	<p>왕비가 친잠 때에 경복궁으로 가는 의식(儀式)은 다음과 같다. 기일 전에 해사에서 단(壇) 안팎을 소제하고 차(次)의 설치하는 의식 때와 같다. 찬만(饌幔)을 동유문(東墻門) 밖에 설치한다. 하루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신좌(神座)를 단상 북쪽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완석(莞席)을 펴놓는다. 왕비의 판위(版位)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왕세손빈 및 응당 참여해야 할 명부(命婦)의 배위(拜位)를 남유문(南墻門) 안 남쪽 가까운 곳에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설치하는데, 북향으로 한다. 제집사(諸執事)의 자리를 단 아래에 의식대로 설치하고, 집행(執禮) 【여관(女官)이다. ○찬인(贊引)·집준(執尊)·대축(大祝)·찬자(贊者)도 모두 같다.】의 자리는 동쪽 계단 아래에 설치한다. 또 제집사의 외위(外位)를 서문 밖에 설치하는데,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북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혜빈·왕세손빈 및 응당 참여하여야 할 명부의 외위(外位)를 단의 남문 밖에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북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그날 행사를 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전축판(奠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들여놓고, 향로(香爐)·향함(香盒)과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그 다음 제기(祭器)를 설치한다. 전사관이 들어와서 찬(饌)을 담기를 다마치고, 전사관이 올라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에 설치한다.</p>	<p>王妃親蠶時，詣景福宮儀。前朝該司掃除壇之內外，設次如儀。設饌幔於東墻門外。前一日典祀官設神座於壇上北方南向，席以莞。設王妃板位於壇下東南西向，設惠嬪王世孫嬪及應參命婦拜位於南墻門內，近南異位重行北向。設諸執事位於壇下如儀，執禮【女官。○贊引·執尊·大祝·贊者并同。】位於東階下。又設諸執事外位於西門外，異位重行北向。設惠嬪王世孫嬪及應參命婦外位於壇南門外異位重行北向。其日未行事前，典祀官入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盒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典祀官入實饌具畢，典祀官升設神位版於座。贊引引惠嬪王世孫嬪及應參命婦，各服其</p>

찬인(贊引)이 혜빈·왕세손빈 및 응당 참여해야 할 명부를 인도하면 각기 입고 있는 차림으로 외위(外位)로 나간다. 제집사가 외위로 나가면 상의(尙儀)가 대차(大次)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한다. 제집사가 배위(拜位)로 들어가 집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제집사가 모두 사배를 마친다. 찬인(贊引)이 제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관세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간다. 찬인이 혜빈·왕세손빈 및 참여한 명부를 인도하여 배위로 들어가면, 집사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술잔을 씻어 닦기를 마쳐 광주리에 담아 존소(尊所)로 받들고 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상의(尙儀)는 행사(行事)를 계청하라.’ 하고, 상의가 대차 앞으로 가서 꿇어앉아 작헌례를 행하기를 계청하면, 왕비가 예복을 갖추어 수식(首飾)을 가하고 관세(盥洗)하고 나온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장차 동문 밖에 이르면 상의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집규(執圭)를 계청한다. 상궁(尙宮)이 꿇어앉아 규를 올리면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관위로 들어가 서향하여 선다.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고 상의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을 계청하면 왕비가 국궁·사배·흥·평신을 하고, 혜빈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집례가 ‘상의는 왕비를 인도하여 작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존소(尊所)에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떡(羃)을 들면 상궁 한 사람이 술을 따르고, 한 사람이 잔에다 술을 받는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해 신위(神位) 앞으로 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꿇어앉으라.’고 말하고, 상의가 꿇어앉아 진규(搢圭)를 계청하면 왕비가 꿇어앉아 진규하고, 혜빈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꿇어앉는다. 상궁 한 사람

服, 就外位。 諸執事就外位, 尙儀詣大次前跪, 啓請中嚴。 諸執事入就拜位, 執禮曰四拜, 諸執事皆四拜訖。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 盥洗訖各就位。 贊引引惠嬪王世孫嬪及應參命婦, 入就拜位, 執事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筐, 捧詣尊所, 置於坫上。 執禮曰尙儀啓請行事, 尙儀詣大次前跪, 啓請行酌獻禮, 王妃具禮服加首飾, 盥洗以出。 尙儀導王妃, 將至東門外, 尙儀俯伏跪, 啓請執圭。 尙宮跪進圭, 尙儀導王妃, 入就版位西向。 執禮曰四拜, 尙儀啓請鞠躬四拜興平身, 王妃鞠躬四拜興平身, 惠嬪以下在位者皆四拜。 執禮曰尙儀導王妃, 行酌獻禮, 尙儀導王妃, 陞自東陞,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羃, 尙宮一人酌酒, 一人以爵受酒。 尙儀導王妃, 詣神位前北向立。 執禮曰跪, 尙儀啓請跪搢圭, 王妃跪搢圭, 惠嬪以下在位者皆跪。 尙宮一人捧香盒, 一人捧香爐跪進, 尙儀啓請三上香。 王妃三上香, 尙宮奠爐于神位前。 尙宮捧爵跪進, 尙儀啓請執爵獻爵。 王妃執爵獻爵, 以爵授尙宮, 奠于神位前。 尙儀啓請

이 향합(香盒)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상의가 세 번 향을 올리라고 계청한다. 왕비가 세 번 향을 올리면 상궁이 향로를 신위 앞에 놓는다. 상궁이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상의가 잔을 잡아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한다. 왕비가 잔을 잡아 헌작하여 잔을 상궁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린다. 상의가 집규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면, 왕비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기를 마치면, 상의가 '부복·홍·평신'을 계청한다. 왕비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하면, 혜빈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한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면, 집례가 '사배'라고 말한다. 상의가 '국궁·사배·홍·평신'을 계청하면, 왕비가 국궁·사배·홍·평신하고 혜빈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조금 후 집례가 '사배'라고 하면, 상의가 '국궁·사배·홍·평신'을 계청한다. 왕비가 국궁·사배·홍·평신을 하면, 혜빈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상의가 꿇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뢰면,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돌아가 동문 밖에 이르러 상의가 석규(釋圭)를 계청한다. 왕비가 규를 놓으면 상궁이 규를 받는다. 상의가 왕비를 인도하여 대차로 돌아오면, 집례가 '망료(望燎)'라고 말한다. 찬인이 혜빈을 인도하여 망료로 가면 대축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요소(燎所)로 가서 요시(燎柴) 위에 둔다. 집례가 '불태우라.'고 하면 빨감을 반쯤 태운다. 찬인이 혜빈 이하를 인도하여 나오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사배하고 나온다. 전축관(典祝官)이 예찬(禮饌)을 치우고 판위를 넣어두고 내려와 이어 물러 나온다.

執圭俯伏，興少退北向跪，王妃執圭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右東向跪，讀祝文訖，尚儀啓讀俯伏興平身。王妃俯伏興平身，惠嬪以下在位者，皆俯伏興平身。尚儀導王妃，降復位，執禮曰四拜。尚儀啓請鞠躬四拜興平身，王妃鞠躬四拜興平身，惠嬪以下在位者皆四拜。少頃執禮曰四拜，尚儀啓請鞠躬四拜興平身。王妃鞠躬四拜興平身，惠嬪以下在位者皆四拜。尚儀跪啓禮畢，尚儀導王妃還至東門外，尚儀啓請釋圭。王妃釋圭，尚宮受圭。尚儀導王妃還大次，執禮曰望燎。贊引引惠嬪詣望燎，大祝取祝版至燎所，置於燎柴。執禮曰可燎，燎半柴。贊引引惠嬪以下出，贊引引諸執事就拜位，四拜而出。典祝官撤禮饌，藏位版以降乃退出。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3월 15일(기묘) 4번째기사 정언 유지양이 제주를 다시 쓴 과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p>	<p>정언 유지양(柳知養)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주(祭酒)를 다시 쓰고 산림(山林)을 사유(赦宥)하는 일로써 전후하여 대신과 유신(儒臣)이 말한 자가 많았으나 끝내 채용되지 않았다가, 지난번 척리(戚里)의 소신(小臣)이 한번 글을 진달하자 차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후겸(鄭厚謙)은 나이가 약관(弱冠)이 못되어 학문이 통방(通方)하지 못하는데도 외람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강서원(講書院)에 등용되었습니다. 성왕(聖王)은 사(私)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성(孔聖)의 교훈이요, 동자(童子)가 벼슬을 갖춘다는 것은 경장(敬姜)의 경계한 바입니다.”  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자 비답을 내리지 않고 먼저 유지양을 체직하였다. 하교하기를,  “제향(祭享)에 술을 쓰지 않은 지 이제 이미 10년이 되었다. 내가 송다(松茶)를 마시는데, 소민(小民)이 술을 쓰는 것이 어찌 효(孝)라 하겠는가? 세 신하의 일은 3백 년 동안 없던 일이다. 비록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나, 마음에 매우 개탄스러웠다. 이로 인해서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한 것이니, 이는 사의(私意)가 아니었다. 상소 가운데 ‘척신(戚臣)’이란 두 글자는 면목(面目)이 이미 놀랍고, 그 전편(全篇)을 논하자면, 임금을 협사(挾私)한 죄과로 돌렸으니, 지극히 무엄하다. 이런 하찮은 자를 어찌 죽히 깊이 다스리랴?”  하였다.</p>	<p>正言柳知養上疏，略曰：“復祭酒宥山林，前後大臣儒臣言之者多，而終未見採，迺者戚里小臣，一陳章而次第見施。”又曰：“厚謙年未弱冠，學未通方，猥登科第，直通雷肆。聖王無私，孔聖所訓童子備官，敬姜攸戒。”疏入不賜批，先遞知養職。教曰：“祭享不用酒，今已十年。予飲松茶，小民用酒，此豈孝哉？三臣事，三百載所無之事。其雖爲國，心竊慨然。因此詢問大臣而下教，則此非私意也。疏中戚臣二字，面目已駭，論其全篇，歸其君於挾私之科，極涉無嚴。此等宵小，何足深治？”</p>
--	--	---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16 일(경진) 1번째기사 유지양의 일을 구주하 니 연달아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리다</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도제조 김양택이 문후하니, 임금이 답하지 않고 탕제(湯劑)를 물리쳤다. 유지양의 일을 구주(口奏)하니, 연달아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렸다. 부제조 유한소(兪漢蕭)가 환수하기를 청하니 과직을 명하고, 홍명한(洪名漢)으로 대신하였다.</p>	<p>庚辰/內局入侍。 都提調金陽澤問候， 上不答却湯劑。 以柳知養事口奏，連 下不敢聞之教。 副提調兪漢蕭，請收 還，命罷職，以洪名漢代之。</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17 일(신사) 2번째기사 왕세손이 상소하여 탕 제 올리기를 청하니 삼령다 복용만 허락하 다</p>	<p>왕세손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은 어제 유지양(柳知養)이 천만 놀라운 거조의 소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성심이 이로 인해 번뇌하시어 탕제를 드시지 않으시니, 신의 마음이 타는 듯한 박절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근정전 구기(舊基)에 입시한 대신은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청한 자가 없었으니, 신은 더욱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건공탕(建功湯)을 하루라도 드시지 않는다면, 어찌 크게 가슴 졸여 애태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번독(煩瀆)함을 불구하고 미친한 정성을 앙달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신이 밤낮으로 의지하여 우러르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탕제 올리기를 허락하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간절한 글을 보고 너의 정성에 감격하였다. 아! 지금의 일이 어찌 유지양 때문만이라고 하겠는가? 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도술(導率)하지 못한 소치이다. 비록 그러하나 재작일 이후 무슨 마음으로 탕제를 복용하겠느냐? 내가 입자(笠子)를 쓰고 아홉이 있다 하여 3일이 못되어 어찌 감히 억지로 복용하겠는가만, 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진맥하는 자리에서 삼령다(蔘苓茶)를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아! 청구(靑丘) 한쪽 구석에서 할아버지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의지하고</p>	<p>王世孫上疏曰：“伏以臣昨聞有柳知養 萬萬駭舉之疏矣。 聖心因此煩惱，不 進湯劑，臣心焦迫，曷有其極？今日勤 政舊基大臣入侍， 無一人垂涕而陳請， 臣尤不勝慨然。 此時建功之一日停進， 豈不大可煎悶也哉？ 茲敢不避煩瀆，仰 陳微懇。 伏乞聖明， 俯察臣夙宵依仰 之忱， 亟降兪音， 許進湯劑， 千萬幸 甚。” 批曰：“省爾之懇， 感爾之誠。 噫！ 今者之事， 豈云知養？ 爾祖之四十 年不能導率之致。 雖然再昨以後， 何 心服湯？ 予有着笠以奏， 三日之內， 何 敢強服， 而爾誠若此， 豈不感動？ 當許 診筵服蔘苓茶。 噫！ 一隅靑丘， 祖依 於孫， 孫依於祖， 今爾章， 主鬯庶幾， 不覺涕泗之被面也。”</p>

	<p>있는데, 이제 네 글을 본즉 주창(主淸)16682) 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얼굴을 적신다.” 하였다.</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17 일(신사) 3번째기사 왕세손이 다시 상소하 여 건공탕 올리기를 청하니 윤허하다</p>	<p>왕세손이 다시 상소하기를, “삼가 외람되이 미미한 정성을 진달하여 윤허를 바랐었는데, 비지(批旨)를 받 들고 보니, 비록 삼령다를 달여서 들이는 것은 허락하셨으나 아직도 건공탕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제를 하루에 두 번 드신 나머지에 이 제 정지한 지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 신의 타는 듯한 절박한 마음이 다시 어 떻겠습니까? 오늘 안에 비록 세 번, 네 번의 상소에 이르더라도 소청을 들어 주기 전에는 신이 어찌 감히 심정을 억제하여 중지하겠습니까? 번거롭게 함 이 비록 매우 미안하오나 충정(衷情)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에 감히 다시 전청(前請)을 거듭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쾌히 유음을 내리 시고 즉시 소청을 허락하시어 신의 답답해 하는 정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천 만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네 글을 보았는데, 80을 바라보는 네 할아버지를 민박하게 함이 한결같이 어 찌 이에 이르는가? 비록 그러하나 이제 어린 나이에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 아 당장 샷갓[笠]을 쓰고 다시 아뢰고자 하니, 네 청을 윤허하겠다. 세 번, 네 번 상소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글은 언제 배웠느냐? 바야흐로 자라나는 기운을 조금 억제하는 것이 네 할아버지의 바람이다.” 하였다.</p>	<p>王世孫再疏曰：“伏以猥陳微忱，冀蒙 允許，及承批旨，雖許蓼苓之煎入，尚 靳建功之進御。 湯劑一日再進之餘， 今此停止，已至經宿。 臣心焦迫，當 復如何？ 今日之內，雖至三疏四疏，不 得請之前，臣何敢抑情而中止也哉？ 瀆 擾雖甚未安，衷情不能自己，茲敢復申 前請，伏乞聖上，快賜俞音，即許所請， 以慰臣抑鬱之忱，千萬祈懇之至。” 批 曰：“省爾之章，迫爾望八之祖，一何 至此？ 雖然今當沖年，由於至誠，其當 着笠更奏，當允爾。 請三章四章，此 文何時學乎？ 少抑方長之氣，即爾祖之 望也。”</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3월 17 일(신사) 4번째기사 내국에서 입시하여 탕</p>	<p>내국에서 입시하여 탕제를 올렸다. 밖에 있는 대신(臺臣)을 모두 체직시키고, 밖에 있는 옥당(玉堂)도 역시 체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서명신(徐命臣)을 대사 헌(大司憲)으로, 이득배(李得培)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임희교(任希教)를 사간 (司諫)으로, 남현로(南玄老)를 헌납(獻納)으로, 정경인(鄭景仁)·이익선(李益炫) 을 정언(正言)으로, 정상인(鄭象仁)·정창순(鄭昌順)을 교리(校理)로, 서호수(徐</p>	<p>內局入侍，進湯劑。 命在外臺臣并許 遞， 在外玉堂亦許遞。 徐命臣大司 憲、李得培大司諫、任希教司諫、南 玄老獻納、鄭景仁·李益炫正言、鄭 象仁·鄭昌順校理、徐浩修副校理，徐</p>

<p>제를 올린다. 서명신·이득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p>	<p>浩修)를 부교리(副校理)로, 서유녕(徐有寧)·이재간(李在簡)을 수찬(修撰)으로, 김상집(金尙集)·홍경안(洪景顔)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제수하였다.</p>	<p>有寧。李在簡修撰、金尙集·洪景顔副修撰除授。</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3월 19일(계미) 4번째기사 전설사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날이 저문 후에 췌내로 돌아오다</p>	<p>임금이 보여(步輿)로 전설사(典設司) 앞에 나아가 잠시 부복하니,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여 췌내로 들기를 힘써 청하였다. 시임·원임 대신과 삼사에서 청대 입시하여 ‘오랫동안 습한 땅에 계시면 성체를 상할까 염려된다’ 하여 번갈아 진달하니, 임금이 울면서 하교하기를, “황조(皇朝)의 망극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갑자기 이날을 당했으니, 저 물기를 기다려 돌아가야겠다.” 하고는, 유신(儒臣)에게 《명사(明史)》 의종기(毅宗紀)를 읽으라 명하였다. 신시(申時)에 전설사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문 후에 췌내로 돌아왔다. 어공미(御供米)를 내일은 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우승지 이미(李瀾)가 어공미를 감해서는 안 된다고 양품하니, 하교를 기다렸다가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바야흐로 날씨가 가문 것을 민망히 여겨서였다. <b>【태백산사고본】</b></p>	<p>上以步輿，臨典設司前，俯伏移時，王世孫侍坐，力請還內。時原任大臣三司，請對入侍，以久處濕地，恐損聖體迭陳，上涕泣教曰：“皇朝罔極之恩，無以報之，奄當此日，待暮當還。”命儒臣讀皇《明史》毅宗紀。申時後，入於典設司，暮後始還內。命御供米，來日勿入。右承旨李瀾以御供米不可減仰稟，命待下教入之，時方閔旱也。</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3월 20일(갑신) 2번째기사 감선하였는데도 묵묵히 있었던 예방 승지 등에게 서용하지 않는 율을 시행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이미 감선(減膳)하였으니, 승지가 반드시 구대(求對)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용하니, 신하의 분의(分義)가 있다고 하겠는가? 감선 제조(監膳提調)가 받아들이기를 청하여 그는 직무를 거행하였으니 숙마(熟馬) 1필을 내려 주고, 밤새도록 묵묵히 있었던 예방 승지(禮房承旨)와 하교를 들은 도승지(都承旨)는 서용하지 않는 율을 시행하라.”</p>	<p>教曰：“既減膳，意謂承宣必有求對之舉，至今寥寥，其可曰有臣分乎？監膳提調請捧入，其涉舉職，熟馬一匹賜給，經夜默默禮房承旨，聽下教都承旨，施以不敘之典。”</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4월 10일(계묘) 1번째기사 건공탕을 들지 않는데도 함문을 지키지 않은 승지들의 현임을 해임하게 하다</p>	<p>하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하교하기를,  “80을 바라보는 나이의 임금이 백성들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 있다. 건공탕(建功湯)을 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함문을 지킬 것이라 여겼었는데, 함문 밖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 승지의 현임(現任)을 해임하고, 여러 사관(史官)은 하나같이 금추(禁推)하라.”  하고, 빈대(賓對)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도제조 김치인이 구주(口奏)의 일로써 견책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탕제를 올리기 위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들어왔는데, 조금 전 내린 전교를 보건대 만만 황공하여 바야흐로 서명(符命)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비국 당상이 일체로 서명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미 서명하였으니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고, 인하여 빈대를 행하였다. 지평 임관주(任觀周)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유지양(柳知養)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p>	<p>癸卯/上臨建明門，教曰：“望八其君，爲民徹宵。不進建功之時，意謂必也守閣，閣外無一人，諸承旨解見任，諸史官一竝禁推。”命行賓對。都提調金致仁以口奏事請謹，又曰：“臣爲進湯劑，冒沒入來，而卽伏見俄下傳教，萬萬惶懍，方欲胥命矣。”上曰：“諸備堂一體胥命可也。”既胥命，命勿待命，仍行賓對。持平任觀周申前啓，不允。柳知養事停啓</p>
<p>영조 108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4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100세, 99세 노인들에</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해서(海西) 노인(老人)의 초계장(抄啓狀)을 읽으라 명하고, 하교하기를,  “1백 세인 두 사람에게 가자(加資)하는 외에 옷감과 음식물을 더 주고, 99세인 다섯 사람은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 1백 세가 되는데 이제 이미 반년이 지</p>	<p>己酉/內局入侍。命讀海西老人抄啓狀，教曰：“百歲人二人加資外，衣資食物加給，九十九歲五人，若過秋冬，將至百歲，今已半年，何待一歲，一體特爲加資。”內局都提調金致仁以鐵</p>

<p>게 가자하게 하다</p>	<p>났으니, 어찌 1년이 차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체로 특별히 가자하라.”</p> <p>하였다. 내국 도제조 김치인이 철원부(鐵原府) 2백여 호의 실화(失火)한 일에 대하여 회부곡(會付穀)을 정식(定式)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 결전(結錢)을 탕감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 조운규(趙雲逵)의 체직을 허락하고, 이창수(李昌壽)로 대신하였다.</p>	<p>原府二百餘戶失火事，請會付穀，依定式分給，結錢蕩減，允之。禮曹判書趙雲逵許遞，以李昌壽代之。</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7월 2일 (갑자) 2번째기사 벌레와 뱀이 들어온 장녕전의 수리를 명하다</p>	<p>장녕전(長寧殿) 안에 벌레와 뱀이 들어온 이변이 있었다고 강화 유수 정상순(鄭尙淳)이 치계(馳啓)하니, 임금이 매우 놀라 예조 판서 신회(申晦)에게 봉심(奉審)하고 이어 수리할 것을 명하였다. 열흘 동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이튿날부터 약원(藥院)의 숙직을 철수하라고 명하였다.</p>	<p>長寧殿內有蟲蛇之異，江華留守鄭尙淳馳啓，上震驚，命宗伯申晦奉審，仍爲修理。命十日減膳，自明日撤藥院直宿。</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7월 13일(을해) 5번째기사 예조가 수라의 가짓수를 회복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열흘 동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기도 하였는데, 오늘이 그 기한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전처럼 올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禮曹啓：“減膳十日之限，止於今日。請自明日復舊封進。”允之。</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7월 14일(병자) 2번째기사 세손이 잔치를 열것을</p>	<p>왕세손이 상소하기를, “우리 성상의 보령이 80세에 다다랐고 나라를 다스린 지도 4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융성한 덕화와 깊은 사랑이 못 생명들에게 두루 젖어들었고, 큰 복과 아름다운 상서는 실로 과거 역사에 드물게 있었습니다. 온 동방의 백성치고 그 누가 고무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그 기</p>	<p>王世孫上疏曰：“伏以我聖上寶齡躋于八耄，光御至于四紀。隆化深仁，遍洽群生，景祿休祥，實罕往牒。環東土含生之類，孰不歡欣鼓舞？而況臣侍膝承顏，其喜尤倍。仍念今年是何年</p>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뽕이 곱절이나 됩니다. 이어 생각건대 금년은 어떤 해입니까? 기묘년(16739)에서 금년까지는 실로 선왕조의 임오년(16740)부터 경인년(16741)까지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대소 신료들만 서로 고하며 기뻐하고 경축할 뿐 아니라, 성상께서도 옛날의 일을 끌어다 지금과 비교해 보신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선왕조의 성대한 의식을 전하께서 따라 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이며, 경인년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올해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탑전에서 간절히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었는데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니,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선왕조에서 경인년에 행한 일을 성상께서 정해년에 행하지 않으신다면, 성상의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선왕조의 신하들이 경인년에 허락을 받았었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전하에게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신하의 분의로 헤아려 볼 때에 또한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경인년에 술 자리를 베풀어 즐거워하셨던 것은 신이 오늘날 잔치를 열자고 청하는 심정입니다. 자신을 미루어 생각하는 위대한 성인의 어진 마음에 있어서 또한 어찌 아랫사람을 이해하는 도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충정에 복받쳐 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허락을 내려 주시어 구구한 신의 바라는 바에 부응해 주소서.”

하였다. 이날 빈계(賓啓)를 올려 잔치를 열 것을 청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향을 맞이하고 나서 땅에 엎드려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로 아뢴 다음, 전설사(典設司)에 나아갔는데, 왕세손이 모시고 앉아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왕세손이 상소를 읽어가다가 경인년이란 구절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마음이 장하다.”

하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입을 모아 일체히 대답하기를,

也? 自己卯至今年, 實有符於先朝壬午之於庚寅也。不但大小百僚之相告歡祝, 倘聖上引古比今, 亦必有興懷之不能已者矣。然則先朝之盛禮, 殿下不可不追述, 庚寅之故事, 今年不可不援行。而大臣之陳懇於前席者, 非止一再, 不即賜俞, 臣不敢知聖上之靳許者, 抑有說乎? 先朝行於庚寅, 而聖上不行於丁亥, 則聖心其安乎? 先朝諸臣, 得請於庚寅, 而今日諸臣, 不得請於殿下, 則揆以臣分, 亦豈可安乎? 且伏念我殿下庚寅稱觴之歡, 即小臣今日請謙之忱也。在大聖推己之仁, 亦豈無體下之道乎? 衷情所迫, 謹此仰籲。伏願聖明亟降俞音, 以副區區之望焉。”是日賓啓將請宴。上香祇迎訖, 伏地以不許之意口奏, 仍御典設司, 王世孫侍坐呈疏。王世孫讀疏, 至庚寅句, 上曰: “其心長矣。”時原任大臣齊聲對曰: “字字血忱, 句句至誠矣。”以手書答曰: “省爾章顧爾誠, 本事之外, 嘉爾章。既奏陟降, 予心若石, 爾百章何益之有? 雖然情不可孤。令內局煎茶, 今日朝膳時, 煎茶代酌進。予自內以蜜茶進于內殿, 以示予祖依孫

	<p>“글자마다 혈침(血忱)16742) 이고, 구절마다 지성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서(手書)로 답하기를,          “너의 글을 살피고 너의 정성을 돌아보니, 본 일과는 상관없이 너의 글을 가          상히 여긴다. 이미 선영에게 아뢰었고 내 마음은 돌과 같으니, 네가 백 번 글          을 올려 보았자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그렇기는 하나 그 정리를 저버릴 수          없다. 내국으로 하여금 차를 끊이게 하여 오늘 아침 식사 때에 반주(飯酒)를          대신하여 차를 내오도록 하라. 내가 안에서 꼴차를 내전(內殿)에 올리어, 할          아버지는 손자에게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버에게 의지하는 나의 뜻을 보이겠다.”          하였다.</p>	<p>孫依祖之意。”</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7월 15          일(정축) 1번째기사          담후로 인해 2품 이상          의 봉조하·육조 당상          등이 문안하다</p>	<p>임금의 건강이 담후(痰候) 때문에 좋지 않았으므로, 조정 2품 이상의 봉조하·          육조의 당상·대사간이 문안하였다.</p>	<p>○丁丑/聖候以痰候未寧， 朝廷二品以          上奉朝賀六曹堂上大司諫問安。</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7월 19          일(신사) 2번째기사          시임 대신 등이 환후          가 낳은 일로 축하할          것을 청하나 불운하다</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임금의 환후가 이틀 만에 나          았다고 하여 축하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內局入侍。 時原任大臣， 以聖候翌瘳          請賀， 不許。</p>
<p>영조 109권, 43년</p>	<p>이조 판서 정실(鄭察)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吏曹判書鄭察上疏， 略曰：“伏觀聖候，</p>

<p>(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윤7월 17일(무신) 2번째기사 이조 판서 정실이 명을 내릴 때 대중의 의견을 따를 것을 상소하다</p>	<p>“삼가 성상의 환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전에 비해 차도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기거 동작에 있어 아직 평상시와 같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 갑자기 비속에 어가의 행차가 있을 줄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이는 성상께서 옛날을 추모하여 선비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뜻에서 나온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는 시급한 일이 아니므로 날씨가 개면 거행해도 되고 궁궐의 뜰에 모아 놓고 기예를 시험 보여도 될 터인데, 어찌하여 비바람 속에서 성체(聖體)를 피로하게 하여 요양의 도리를 소홀히 하신단 말입니까? 옛날 무왕(武王)은 춘추 80세에 소공(召公)은 90여 세에 공업(功業)을 이루었고 치화(治化)가 확정되었으니, 어찌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공은 ‘한 삼태기의 흠이 부족해서 끝내 큰 공덕에 누가 된다.’라는 등의 말로 끊임없이 경계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찌 임금의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고 하여 경계의 말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명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따라 일체 허심 탄회하게 받아들여서서 포용하는 도량을 보이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 “금번의 일은 이미 하교하였다.”</p> <p>하였다.</p>	<p>雖比前差減，而諸節猶未復常。豈料今者，遽有此冒雨動駕之舉乎？伏想聖心出於追慕昔年，慰悅多士之意。而此非時急之事也，待開霽舉行可也，聚殿庭試藝亦可也，奈何觸風雨勞聖體，以忽攝養之道哉？昔者武王春秋八十，召公年九十餘，功成治定，寧有可憂之事？而召公以功虧一簣，終累大德等語，縷縷陳戒。古之人何嘗以其君之年已高德已邵，而不進箴規之言乎？伏願殿下，每當發號施令，必循僉議，一切虛受，以示包容之量。” 批曰：“今番事已下教矣。”</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윤7월 22일(계축) 3번째기사 태묘에 쓸 향을 맞이하고 영녕전을 봉심하다</p>	<p>임금이 승정전의 뜰에서 태묘에 쓸 향을 경건히 맞이하였다. 이어 태묘에 나아가 참배하고 나서, 영의정 김치인에게 명하여 전내(殿內)에 봉심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영녕전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또 김치인에게 명하여 봉심하게 하였는데, 김치인이 부연 위의 판자 중에 썩은 것이 있다고 아뢰자 예조 판서 심수에게 명하여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피고 예방 승지에게 명하여 제물을 봉심하도록 하고 나서 환궁하였다.</p>	<p>上祇迎太廟香於崇政殿庭，仍詣太廟展拜訖，命領議政金致仁，奉審殿內。仍詣永寧殿行禮，又命致仁奉審，致仁以浮椽上板子有腐傷仰奏，命禮曹判書沈鏞，省牲省器，禮房承旨奉審祭物，仍爲還宮。</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p>	<p>임금이 승정전의 뜰에서 저경궁(儲慶宮)의 고유제(告由祭)에 쓸 향을 지영하였다.</p>	<p>丙辰/上祇迎儲慶宮告由祭香於崇政殿庭。命書李宗榮·金鈍投畀，倍道傳</p>



<p>(乾隆) 32년 윤7월 25일(병진) 1번째기사 저경궁의 고유제에 쓸 향을 지영하고 유한소를 월곳 첨사로 삼는 것등을 명하다</p>	<p>이종영(李宗榮)·김둔(金鈍)을 귀양보내되, 이틀 길을 하루에 걸어 압송하라는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다. 이는 제관(祭官)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전설사(典設司)로 나아가 건공탕(建功湯)을 들이라고 명하니, 제조 조명정이 가지고 들어왔다. 임금이 제조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문하니, 부제조 민백흥이 말하기를, “도제조가 낭관에게 처분을 내릴 때 하교하신 말씀 때문에 황송하여 감히 입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남태회(南泰會)가 ‘부총관(副總管) 조계태(趙啓泰)가 신병이 위독해져 숙직을 교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차출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입직하지 않은 총관 유한소(兪漢蕭)를 월곳 첨사(月串僉使)로 제수하라고 명하였다.</p>	<p>教。以不擇享官故也。仍詣典設司，命入建功湯，提調趙明鼎持入。上下詢提調持入何故也，副提調閔百興曰：“都提調以吏郎處分時下教，惶悚不敢入侍矣。”兵曹判書南泰會以副總管趙啓泰身病猝重，不得替直，請改差，允之。命不入直總管兪漢蕭，月串僉使除授。</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8월 9일 (경오) 5번째기사 좌의정 한익모가 수라의 가짓수를 줄인 일로 차자를 올리다</p>	<p>좌의정 한익모가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전교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은 외람되게도 미천한 신의 거취(去就)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하가 무상(無狀)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게 하였으니, 그 죄는 비록 고요(皐陶)16763) 로 하여금 법을 적용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사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는데, ‘경이 대신의 체통을 얻었다.’는 비답을 내리고 나서 평상시처럼 수라를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하유한 뒤에도 돌아오지 않은 대각의 신하들에게 모두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경준(申景濬)은 호남의 물가로 귀양보냈다.</p>	<p>左議政韓翼謩上筭，略曰：“減膳傳教中一句語，猥屬賤臣之去就。噫！爲臣子無狀，致使君父減省御膳，則顧其罪，雖使皐陶奏當必置誅殛之典矣。乞賜處分焉。”以卿爲得體爲批，仍命復膳。命下諭後，不上來諸臺，竝施不敘之典，其中申景濬湖沿投畀。</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8월 13일(갑술) 3번째기사 비바람으로 인해 수라</p>	<p>봉심하고 돌아온 승지 조덕성(趙德成)이 입시하였는데, 그가 향현(香峴)의 길로 왔다고 하여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라 명하고, 비바람이 거듭 몰아친다고 하여 이날부터 10일 동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아직 수라를 평상시처럼 회복하지 않았으니, 이번 거동 때에는 깃털을 뽑거</p>	<p>奉審承旨趙德成入侍，以作路香峴，命施以不敘之典，以風雨疊至，命自今減膳十日。又教曰：“既在復膳之前，今番動駕時，插羽吹螺，一切寢焉。”</p>

<p>의 가짓수를 줄일 것 등을 명하다</p>	<p>나 취라(吹螺)하는 것을 일체 하지 말라.” 하였다.</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8월 23일(갑신) 1번째기사 예조에서 수라의 가짓수를 회복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10일을 한정으로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는 일이 오늘로 끝나니, 내일부터 평상시처럼 올리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p>	<p>甲申/禮曹啓: “減膳十日之限, 止於今日, 自明日依例封進。” 允之。</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8월 23일(갑신) 4번째기사 대사간 정만순이 백성에게 이익되는 일을 묵에 시행할 것을 상소하다</p>	<p>대사간 정만순(鄭晩淳)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이 수장(收藏)하는 달을 당하여 찬비가 자주 내리니, 양기(陽氣)가 수렴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천둥과 번개가 한여름이나 다름없이 번쩍이며 심하게 쳤는데, 하늘에서 경계를 보임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지난번에 하교한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은 간곡하고 측은하여, 위대한 성인(聖人)이 두려워하며 수성(修省)하는 실상이 여러모로 힘을 다 썼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정신을 가다듬어 두려워하고 노력하여 어떻게 하면 민생고를 구해낼까 강구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하늘의 견책에 응하기를 걸치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빈대(賓對)의 날짜를 앞당겨 정한 것에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재앙을 중지시키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에 관한 것을 허심 탄회하게 널리 물어보시어, 안으로는 의정부와 밖으로는 여러 도에서 백성에게 이익이 되어 폐해를 없애고 보완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조목을 나열해 시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서 강구된다면, 이 역시 재앙을 중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비록 수장한 달은 아니지만 직접 대놓고 경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p>	<p>大司諫鄭晩淳上疏, 略曰: “噫! 當此收藏之月, 冷雨頻仍, 可見陽氣之不斂。而今此轟轟燁燁, 無異盛夏, 上天之示警, 夫豈偶然哉? 向下減膳之教, 十行絲綸, 丁寧惻怛, 大聖人恐懼修省之實, 可謂靡不用極。而朝廷之上, 未見精白惕勵, 講求民隱, 其可謂應天不以文乎? 今茲賓對之進定, 竊仰聖意之有在。凡係弭災恤民之方, 虛心博詢, 內而廊廟, 外而諸道, 有可以利益生民, 除害補弊者, 條列施行, 實惠得以下究, 則亦可爲消弭之一端矣。伏願聖明留神焉。” 批曰: “雖非收藏之月, 何異於耳提面命? 凜惕二字, 可謂歇後語, 減膳之命, 意蓋此也。其章適到, 深庸嘉之。可不猛省焉。”</p>

	<p>‘놀랍다.[凜揚]’는 두 글자는 제대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겠다고 명을 내린 의미는 대개 이것이었다. 이때 마침 상소가 이르렀으므로 매우 가상히 여긴다.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8월 25일(병술) 1번째기사 선의 왕후 형제들의 아들을 서용하도록 명하다</p>	<p>내국에서 입시하여 탕제(湯劑)를 올렸다. 임금의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오늘 같은 날을 볼 것이라 헤아렸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탕제를 땅에 집어 던지고 말하기를, “오늘 어찌 차마 이것을 마시겠는가? 내가 근원을 소급해 하교하겠다. 그 당시 실로 이상한 일이 많아 지척에 계신 자전을 뵈지 못하고, 8월 초여드레에야 비로소 들어가 뵈었다. 황형(皇兄)의 심사(心事)를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 황형은 참으로 훌륭한 덕이 있었다. 우리 황형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날을 볼 수 있겠는가? 그때 모두들 내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여겼으나, 황형은 내가 자주 서연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다.’는 하교까지 하셨다. 지필(紙筆)을 찾을 때에 환관들이 끝내 지필을 올리지 않았으니, 그들의 소행은 모양이 아니었다.” 하였다. 이어서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형제들이 아들을 몇 명이나 두었는지 물어보고 나서, 채용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p>	<p>丙戌/內局入侍, 進湯劑。 上曰: “予豈料見今日乎?” 仍投湯劑於地曰: “今日豈忍飲此乎? 予當溯源而下教矣。其時實多怪異之事, 咫尺之地, 不得拜慈顏, 至八月初八日, 始得入拜矣。皇兄心事, 予皆知之, 皇兄眞盛德矣。非我皇兄, 豈見今日乎? 其時皆以予爲不御書筵, 而皇兄則知予頻御書筵, 故至有予欲見同氣開講之狀而來矣之教矣。 當其下索紙筆之時, 宦侍輩終不奉納紙筆者, 其所爲無狀矣。” 仍下詢宣懿王后同氣之子有幾人, 特命調用。</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8월 30일(신묘) 1번째기사 태묘의 삭제에 쓸 향을 지영하다·이휘지를 이조 참의로 삼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서 태묘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경건히 맞이하였다. 탕제(湯劑)를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내국에서 약간 지체하자 임금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향을 맞이한 뒤인데, 탕제를 어찌 지체할 수 있는가? 이후로는 올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니, 도제조 김양택(金陽澤)이 말하기를, “이는 곧 신 등의 죄입니다. 신 등은 죄벌을 받기를 원하고, 탕제는 감히 드시기를 청합니다.”</p>	<p>辛卯/上祇迎太廟朔祭香於延和門。命進[湯]劑, 內局小遲滯, 上厲聲曰: “祇迎之後, 湯劑豈可遲滯? 此後則闕之可也。” 都提調金陽澤曰: “此乃臣等之罪也。 臣等則乞被罪罰, 而湯劑則敢請進御矣。” 上曰: “予不進苟且之物矣。” 於是陽澤退出胥命。提調申晦固請進御, 上遂進湯劑曰:</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구차한 물건은 먹지 않겠다” 하였다. 이에 김양택이 물리나와 처분을 기다렸다. 제조 신회가 탕제를 들 것을 굳이 청하니, 임금이 그제야 탕제를 들고 말하기를, “어찌 경만 위해서겠는가? 경의 형을 생각해서이다.” 하였다. 도제조에게 명하여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휘지(李徽之)를 특별히 이조 참의로 제수하였다.</p>	<p>“豈但爲卿乎? 思卿兄矣。” 命都提調勿待命入來。 特除李徽之爲吏曹參議。</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1월 26일(병진) 2번째기사 부제학 홍명한이 탄제에 관한 일을 아뢰니 들이게 하다</p>	<p>약방에서 구두로 일곱 번 아뢰었으나, 탕약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임·원임 대신들이 청대(請對)하고 입시하여 약을 들 것을 극력 청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자, 시임·원임 대신들이 계단 아래에서 처분을 기다렸다. 부제학 홍명한(洪名漢)이 말하기를, “직책이 임금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지 못하여 대신들이 처분을 기다리기까지 하였습시다. 전하께서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비로소 불러 보고 탕제를 들었다.</p>	<p>藥房口傳七啓, 不許進湯劑。 時原任大臣請對入侍, 力請進御, 終不許, 時原任胥命於階下。 副提調洪名漢曰: “職在保護, 不能感回, 至於諸大臣待命。 殿下待大臣之道, 豈當如此乎?” 上始召接, 進湯劑。</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9월 2일(계사) 1번째기사 내국에 입시를 명하고 탕제를 들다</p>	<p>비로소 내국에 입시하라 명하고, 탕제를 들었다.</p>	<p>癸巳/始命內局入侍, 進湯劑。</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0월 2일(임술) 2번째기사 상참을 행하고 공인과</p>	<p>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상참을 거행하였다. 또 《소학(小學)》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시독관 김상집(金尙集), 검토관 남현로(南玄老)가 입시하였다. 임금이 《소학》의 편제(篇題)를 강하였는데,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이 계속해서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옛날의 일에 감회가 일어나 이렇게 한 것이니 이 마음이 곱질</p>	<p>上御資政殿行常參。 又命持入《小學》。 侍讀官金尙集、檢討官南玄老入侍。 上講《小學》篇題, 上下番繼讀訖, 上曰: “今日事, 興感昔年而爲此, 此心一倍矣。” 領議政金致仁以貢</p>

<p>시인의 담당 당상을 불러 폐막을 묻다</p>	<p>이나 더 쓸쓸하다.”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이 공인(貢人)과 시인(市人)의 폐단이 없지 않다고 아뢰니, 신칙할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다. 공인과 시인의 담당 당상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폐막(弊瘼)에 대해 물으니 아뢰었다.          좌의정 한익모가 ‘대사정 조엄(趙曠)이 여러 차례의 과시(課試)에서 선비의 습관을 바로잡을 희망이 없지 않았는데, 그의 사직 단자를 이미 올렸다고 들린다.’면서 사직 단자를 받아들인 승지를 추고하고 사직 단자를 물시할 것을 청하니, 윤희하고 사직 단자를 받아들였던 승지를 특별히 체차하였다. 형조 판서 한광회(韓光會)가 말하기를,          “인물(人物)을 초인(招引)하는 것을 법으로 매우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북로(北路)로 피여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엄한 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근래 북쪽 사람들이 서울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후도신과 찰방을 엄중히 추고하고, 거행할 조목을 내어서 엄히 신칙하소서.”          하니, 5년 안에 도신을 지냈던 자는 추고하고, 고산 찰방을 잡아다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총융사 김시묵(金時默)이 ‘북한 산성 안의 나무를 남한 산성의 예에 의거해 비국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에 취해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윤희하였다. 김시묵이 또 ‘공인과 시인을 불러서 물어 보았더니, 청성위(靑城尉) 심능건(沈能建)은 은전(銀塵)에 폐단을 끼치었고, 사궁(四宮)에서는 약간씩 쌀 가게[米塵]에서 멋대로 거두어들였다.’고 우러러 아뢰니, 심능건은 파직하고, 차지 중관(次知中官)은 급료를 감하고, 임장(任掌)은 곤장을 치라고 명하였다. 강훈(姜恠)·신인명(愼認明)을 승륙(陞六)하라고 명하였다.</p>	<p>市人不無弊端仰奏， 命書申飭傳教。命貢市堂上入侍， 問弊瘼以奏。 左議政韓翼謩， 以大司成趙曠數次課試， 不無正士習之望， 聞辭單已徹， 請捧單承旨推考， 辭單勿施， 允之， 特遞捧單承旨。 刑曹判書韓光會曰：“人物招引， 法禁甚嚴， 而至於誘入北路， 尤係重律。 近來北人之招引京城人物者甚多。 請前後道臣察訪重推， 出舉條嚴飭。” 命限五年道臣推考， 高山察訪拿處。 摠戎使金時默， 請北漢城內樹木， 依南漢例， 報備局受題然後取用， 允之。 時默又以招問貢市人， 則靑城尉沈能建， 貽弊銀塵， 四宮略略橫斂於米塵仰奏， 命能建罷職， 次知中官越俸， 任掌決杖。 命姜恠·愼認明陞六。</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1월 14</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선혜청(宣惠廳)의 당상 정홍순(鄭弘淳)이 끝내 공무를 행하지 않는다면서 신칙하여 공</p>	<p>甲辰/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 以惠堂鄭弘淳終不行公， 請申飭行公， 允之。 命承旨取覽囚徒案， 放釋</p>

<p>일(갑진) 1번째기사 죄질이 가벼운 죄수의 석방과 숙위군사에게 가마니를 지급할 것을 명하다</p>	<p>무를 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윤희하였다. 승지에게 수도안(囚徒案)16789) 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열람하고는 죄질이 가벼운 죄수는 석방하고, 숙위 군사(宿衛軍士)에게는 빈 가마니를 더 지급하며,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에게는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죽을 끓여서 먹이라고 하였는데, 날씨가 추웠기 때문이다. 또 하교하기를, “나는 늘 ‘강중의 물은 차갑다.[江中水氣寒]’라는 시를 암송하고 있는데, 서북(西北)의 파수군(把守軍)은 어떻게 견디어내는지 모르겠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서북의 수신(帥臣)에게 하유하여 위문하게 하라.” 하였다.</p>	<p>輕囚，宿衛軍士加給空石，流丐令該廳煮粥以饋，以日寒也。又教曰：“予常誦江中水氣寒之詩，西北把守軍，其何堪忍。令政院，下諭西北帥臣，其令慰問。”</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1월 27일(정사) 3번째기사 좌상이 차자를 올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묻다</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도제조 한익모가 문안을 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領相)과 우상(右相)은 차자(筭子)를 올렸는데, 경만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한익모가 말하기를, “신의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좌상이 차자를 올리지 않았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하였다. 영상의 차자에 답하기를, “그의 임금이 비록 억지로 탕약을 마셨지만, 이와 같이 차자를 계속 올린단 말인가? 이미 좌상에게 하유하여 개연(慨然)한 마음을 표시하였다.” 하고, 우상의 차자에 답하기를, “이미 영의정의 비답에 하유하였다.” 하였다.</p>	<p>內局入侍。都提調韓翼謩問候，上曰：“領右相陳筭，而卿獨漏何也?” 翼謩曰：“臣情地則何異，而忝居保護，未違他顧矣。” 上曰：“左相不陳筭，豈不偉哉?” [答] 領相筭曰：“其君雖強而飲湯，若是尋筭? 既諭左揆，以示慨然之意。” 答右相筭曰：“已諭元輔之批。”</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1월 29</p>	<p>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글을 올리고 나서 곧장 환궁하였다.</p>	<p>上詣昌德宮，薦柑于眞殿仍卽還宮。</p>

일(기미) 3번째기사 창덕궁에 나가 진전에 굴을 올리고 환궁하다		
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1월 30 일(경신) 1번째기사 태묘의 삭제에 쓸 향 을 지영하다	임금이 승정전(崇政殿)의 뜰에서 태묘(太廟)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지영(祇迎)하였다. 이어서 전(殿)으로 나아가 굴을 나누어 주고 선비들을 시험보였다.	庚申/上祇迎大廟朔祭香於崇政殿庭，仍御殿頒柑試士。
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2월 7 일(정묘) 1번째기사 제주 목사 남익상의 장계에 따라 삭선과 공마의 정지를 명하다	제주 목사 남익상(南益祥)의 장계로 인하여, 제주에서 진상하는 삭선(朔膳)16797) 을 보리가 익는 철 이전까지는 반으로 줄이고, 공마(貢馬) 역시 정지시키라고 명하였다.	丁卯/因濟州牧使南益祥狀啓，命本州朔膳，麥秋前減半，貢馬亦停之。
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2월 10 일(경오) 2번째기사 덕유당에서 제주의 공 인을 불러 유의 등을 주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제주(濟州)의 공인(貢人)을 불러 보고 각각 유의(襦衣)16798) 한 벌씩 주고,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 이외에 쌀 두 말을 더 주라고 명하였다. 표신(標信)을 내려 보내 금군장(禁軍將)에게 금군(禁軍)을 데리고 들어와서 죽을 끓여 먹이라고 명하였다.	上御德游堂，召見耽羅貢人，各賜襦衣一領，回糧外命加給二斗米。下標信，命禁軍將，率禁軍入，設粥以饋。
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2월 12	이에 앞서 춘추관의 당상과 낭관에게 건국 초기의 정해년(16799) 실록(實錄)을 찾아 오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명(復命)하였다. 기사관(記事官) 유강(柳炯)이 《실록》을 읽어 아뢰었는데, 덕수궁(德壽宮)의 대목에 이르자,	壬申/先是命春秋館堂郎，考出國初丁亥年實錄，至是復命。記事官柳炯讀奏，至德壽宮，上曰：“德壽宮在於何

<p>일(임신) 1번째기사 건국 초기 정해년의 기록을 읽게 하고 덕수궁에 대한 기록을 묻다</p>	<p>임금이 말하기를, “덕수궁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유강이 말하기를, “상고해 볼 만한 문헌이 없습니다.” 하였다. 읽어가다가 ‘동짓날에 하례드리는 것을 중지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손으로 문지방을 치며 말하기를, “사전에 보지 않았는데도 같구나.” 하였다. 읽어가다가 ‘술을 권하여 취기가 돌자 피리를 불고 싶다.’는 등의 말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게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인가? 마치 그때의 광경을 보는 것과 같다.” 하니, 유강이 말하기를, “9월 20일입니다.” 하였다. 읽어가다가 ‘12월 16일 잔치를 열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12월 16일이 입춘인데, 정말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였다.</p>	<p>處?” 炯曰: “無可考文跡矣。” 讀至冬至日停賀, 上以手叩闕曰: “不謀而同矣。” 讀至勸酒至醉, 欲吹笛等語, 上曰: “此在何時? 如見其時景像矣。” 炯曰: “九月二十日矣。” 讀至十二月十六日設宴, 上曰: “今年十二月十六日立春, 誠非偶然矣。”</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2월 12일(임신) 2번째기사 장악원의 적공을 불러 여민락·보허사를 부르게 하다</p>	<p>대신과 비국의 유사·당상·예조의 당상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기사관 유강에게 다시 읽으라고 명하여 ‘피리를 불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장악원(掌樂院)의 적공(笛工) 1명을 불러들여 여민락(與民樂)·보허사(步虛詞)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왕위에 오른지 40년이 되었다만, 어떤 일로 뜻을 계승했으며 어떤 일로 일을 기술했는가? 더구나 금년을 맞이하니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실록을 상고해 보라고 명한 것은 대개 깊은 뜻이 있다. 내년은 건국 초기의 무자년 16800) 이다. 지금 정해년 설달 16일의 기사를 보니, 편전(便殿)에서 조그마</p>	<p>命大臣備局有司堂上禮堂入侍。 命記事官柳炯更讀, 至吹笛, 命招入掌樂院笛工一名, 吹與民樂、步虛詞。 教曰: “嗚呼! 臨御四十載, 何事繼志, 何事述事? 況值今年, 此心深切。 命考實錄, 意蓋深矣。 明年即國初戊子也。 今覽丁亥臘月十六日, 設小酌于便殿, 聞此而追慕倍切。 昔年十六日, 即此月十六日也。 年雖異前, 古今丁亥一</p>



	<p>한 술자리를 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추모하는 마음이 곱절이나 간절하다. 옛날 16일은 바로 이달 16일이다. 연도는 비록 전과 다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해년은 한가지이다. 병술년(1680) 에도 이미 계술(繼述)하였는데, 더구나 정해년이겠는가? 그해에 이미 조그마한 술자리를 열었으니, 나도 이날 마땅히 세손 및 대신·국구(國舅)와 함께 덕유당에서 소찬(小饌)을 베풀어야겠다. 그러나 악기를 불고 두드리는 등의 일은 그만둘 것이다.”</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지금 실록을 살펴보니, 그 가운데 ‘큰 말[斗]로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이나〉 한가지다. 아! 큰 말로 받아들이고서 작은 말로 나누어 준다면 어찌 상평창(常平倉)의 도리라고 하겠는가? 이 뒤로 이를 범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장오(贓汚)의 법을 시행하겠으니,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也。丙戌其既繼述，況丁亥乎？其年既設小酌，予於此日，當與世孫及大臣國舅，設小饌於德游堂。鼓吹等節置之。又教曰：“今考實錄，其中大斗重[斂]之禁，一也。噫！捧大斗頒小斗，豈常平之道乎？此後犯此者，當施贓律，嚴飭諸道。”</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2월 13일(계유) 4번째기사  문신들의 정시를 근정전에서 시행할 것 등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친경(親耕)한 뒤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술을 하사할 뿐 다른 의주(儀註)가 없었고, 기사(耆社)에 조그마한 술자리를 열었을 때도 의주가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건국 초기에 피리를 불게 하고 싶다고 하교한 것을 본받아, 《모시(毛詩)》에 따라 다만 거문고를 타고 생황(笙篁)을 불도록 하겠는데, 또한 국풍(國風)의 당시(唐詩)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의주를 참고할 것 없이 문관(文官)과 남행(南行) 가운데에 외손자가 된 자들을 연석(連席)에 참석하도록 하여 거문고 타는 자와 생황 부는 자는 뜰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그날 문신들의 정시(庭試)를 근정전(勤政殿)에서 시행할 것이다. 중시(重試)의 사례에 의거해 마땅히 급제(及第)를 내리겠으니, 무신의 대거(對擧)(1680)</p>	<p>教曰：“親耕後，宣饌時賜酒而已，無儀註，耆社小酌時，亦無儀註，今亦一也。體國初欲令吹笛之教，遵《毛詩》只鼓瑟吹笙，亦何異於《國風》《唐詩》乎？儀註置之，文官南行中，爲外裔者，許其陪筵，琴者瑟者笙者入庭，餘皆置之。”又教曰：“其日當行文臣庭試於勤政殿。依重試例，當賜第，武臣對擧，亦同日爲之。”</p>

	<p>역시 같은 날 실시하겠다.” 하였다.</p>	
<p>영조 109권, 43년 (1767 정해 / 청 건륭 (乾隆) 32년) 12월 16 일(병자)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가 술상을 받으니 세손이 예를 행하다</p>	<p>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작은 술상을 받았다. 왕세손이 예를 행하고 나자 옆에 앉으라고 명하였다. 시임·원임 대신과 종친·국구(國舅)·도위(都尉), 6조의 판서, 의정부의 서벽(西壁)16804) 이 모두 축수하자, 악공(樂工)에게 피리를 불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돌아보고,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여러 신하와 함께 음복(飲福)하고서 선조의 뜻을 계술하고, 피리를 불게 하여 임금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上詣景福宮與諸臣飲福述先志令吹笛上聞隨涕下]’라는 21자(字)를 쓰라고 명하였다.</p>	<p>丙子/上御勤政殿，受小酌。命王世孫行禮後侍坐。時原任大臣宗親國舅都尉六卿政府西壁竝上壽，命樂工吹笛。上顧史官命書，‘上詣景福宮，與諸臣飲福，述先志，令吹笛，上聞隨涕下’二十一字。</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1월 12 일(신축) 2번째기사 낙죽을 올리지 말 것과 대소의 제사를 신중히 할 것을 명하다</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봄같이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낙죽(酪粥)을 올리지 말라. 그 소는 본 고을로 내려 보내어 봄같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막 젖을 짰던 소를 도살장에 보낸다면 어찌 옛날 선왕께서 청둥오리를 드시지 않았다는 가르침을 몸받은 것이겠는가? 당일에 봄같이에 사용할 소를 내려 보내도록 내국(內局)에 보고할 것을 경기 감영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아! 어찌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약해졌을 뿐이겠는가? 올해가 무슨 해인가?16826) 지난 겨울에 봄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마음이 몇 층이나 내려앉은지 모를 정도였다. 목전(目前)의 일로 보건대 삼양(三陽)이 돌아와서 만물이 모두 소생하고 있는데도 나는 봄이 온 줄을 모르겠다. 지난번 예(禮)를 거행한 것은 나에게서 정말로 요행이었다. 약사증상(籥祀蒸裳)16827)의 예를 거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새해에 전알(展謁)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것이 효도란 말인가? 아! 대소 신료들은 이 마음을 살피어 모든 제사에 정성껏 하고 신중히 하여 대소의 제사에 되도록 하라.” 하였다.</p>	<p>內局入侍。教曰：“春耕不遠，酪粥停止。其牛下送本縣用耕，而纔取乳之牛，入于屠肆，豈仰體昔年青頭鴨之教乎？當日下送用耕牛，報內局事，分付畿營。”又教曰：“噫！豈特年深氣衰？今年何年？自前冬報春，此心莫知幾層下矣。以目下事觀之，三陽回泰，萬品皆蘇，予莫知春。頃者行禮，於予誠僥倖。禴祀蒸嘗雖不可言，〔歲〕首展謁，莫能起意，此孝乎？吁嗟！大小臣工，諒此心，凡於祀典，必誠必戒，大小祭享，莫敢退步，副予此懷。</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3월 1일 (기축) 1번째기사 약방에 건공탕을 들 수 없음을 알리다</p>	<p>약방(藥房)에 답하기를, “내 나이 몇이고 올해는 무슨 해인가? 임금은 어떤 임금이고 신하는 어떤 신하인가? 아! 그의 임금은 날마다 늙어가고 있는데, 당인(黨人)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 감회가 여기까지 미치는데 어찌 차마 건공탕(建功湯)을 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취적(吹笛)의 가르침을 우러러 생각하여 장차 직접 참배할 것인데, 또 충자(沖子)를 데리고 가서 참배하겠다. 내가 무엇을 한(恨)하겠는가?” 하였다.</p>	<p>朔己丑/答藥房曰：“予何年今年何年？君何君臣何臣？嗚呼！其君日衰，黨人日強。興惟及此，何忍建功？然仰惟吹笛之教，其將躬拜，而且率沖子而拜焉。予何憾焉。</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4월 9일 (병인) 2번째기사 집의 김회원이 심이지 가 곡물과 가옥에 대 해 탐욕한 일로 상소 를 올린다</p>	<p>집의 김회원(金會元)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심이지(沈履之)의 일에 대해 이미 구초(口招)하여 아뢰라는 명이 있었고, 또 문서와 장부를 상고해 내어 가옥을 적간(摘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악을 미워하는 성세(聖世)의 정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말세의 탐욕부리는 풍조가 이로부터 경계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초한 말과 적간한 뒤에 처분한 전교를 보니, 오로지 속이고 숨기기만 일삼아 사실과는 상반되었습니다. 아! 나라에 기강이 없다면 그만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한낱 심이지를 위해 임금의 명을 행하지 못하고 나라의 법을 펼 수 없단 말입니까? 신이 처음 올린 상소에 단지 그 대략만 논하고 만 것은 대체로 굳이 말하여 충후(忠厚)한 뜻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만약 신이 일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비록 일월과 같이 밝으신 정상께서도 어떻게 그 정상(情狀)을 모두 통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임금을 속이는 습관이 이로 인해 점차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니, 어찌 놀랍고 분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청해 일을 처리하는 것도 실로 근세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그러나 혹 더러 곡물이 오래되어 썩을까 염려하여 바꾸는 일도 있으며, 또는 국가의 일을 돕기 위해 발매(發賣)한 일도 있는데, 청하는 것도 명분이 있고 값을 깎는 것도 상례가 있어서 백성의 소원에 따르고</p>	<p>執義金會元上疏，略曰：“沈履之事，既有口招以奏之命，又有考出文簿，摘奸家舍之舉。臣竊自謂聖世癉惡之政，庶可復見，末俗貪濫之風，從此可警。伏見其口招措語，乃摘奸後處分傳教，則專事欺隱，事實相反。嗚呼！國無紀綱則已，不然則豈可爲一履之，而君命不得行，國法不得伸耶？臣之初疏，只論其大略而已者，蓋出於不欲索言，以傷忠厚之意。而今則臣若不悉陳事狀，則雖以日月之明，何以盡燭其情狀？而亦恐欺君之習，緣此漸起，豈非大可駭憤者乎？請覈料理，實爲近世之痼弊。然或有慮其陳腐而改色者，或有爲輔國役而發賣者，請得有常，折價有常，從民之願，有補於國，則猶可有說，而豈有如履之之耗國剝民，專事私</p>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어찌 심이지처럼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의 고혈을 수탈하여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일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은 청컨대 모두 논하겠습니다.

심이지의 공초에 ‘그때 진맥(眞麥)은 하나의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서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해 동안 쌓아 두어 날마다 썩고 좀이 먹어갔으므로 억지로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니, 민폐가 갈수록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 그의 이 말은 비록 스스로 벗어나기에 급급하여 다른 것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임금을 속이는 죄가 탐욕을 부린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더욱 통분한 점은 호남 일로(湖南一路)의 곡물 수량이 비국과 본영의 문부(文簿)에 자세히 기록되어 여기저기에서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임오년(1690) 참혹한 흉년을 겪은 뒤로 도내의 각종 곡물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느라 모두 바닥이 나자 부족할까 걱정하여 북쪽의 곡물을 옮겨 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그때의 도신 고 판서 원경순(元景淳)의 장계(狀啓)만 보더라도,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들어간 것을 합산하면 거의 1백 20만여 석에 이르는데, 지금 비록 새로 받아들인 곡물과 창고에 유치해 둔 곡물을 다하여도 6, 70만 포(包)에 불과하므로 백급(白給)할 것과 부환(付還)할 것에 부족한 것이 오히려 60여만 포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도에서 곡물을 옮기는 일이 현재 가장 급선무입니다.’고 하면서 북관(北關)의 곡물을 떼어서 옮기자고 청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만일 진맥(眞麥) 1만 석을 여러 해 동안 쌓아 두어 날마다 썩고 좀먹는 것이 심이지의 말과 같다면, 중신이 그 당시 마음으로 왜 진홀하는 데에 보태 쓰지 않고 이처럼 곡물을 옮기자고 청하였겠습니까? 신은 중신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중신의 이 장계(狀啓)는 임오년 겨울에 올랐고 심이지가 관찰사로 나간 것은 계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당년(當年)에 새로 받아들인 곡물이 어찌하여 썩고 좀먹을 염려가 있으며, 막 큰 흥

利者乎? 臣請悉論之。履之供辭有曰, ‘其時眞麥, 作一無用之物, 民間不願受還, 累年積置, 日漸腐蝨, 強爲分糶, 民弊轉甚云’。噫! 渠之此言, 雖出於急於自脫, 不暇念他, 而獨不念欺君之罪, 重於貪污耶? 尤可痛者, 湖南一路穀數, 詳載於備局及本營文簿, 斑斑可攷。而自經壬午慘凶之後, 道內各穀, 蕩盡於賑饑民, 猶患不足, 至於轉移北穀之境。雖以其時道臣故判書元景淳狀啓觀之, 有曰‘合料賑所入, 幾至一百二十萬餘石, 今雖盡新捧之穀, 罄質庫之數, 不過爲六七十萬包, 其不足於白給與付還, 猶爲六十餘萬包。他道移粟之政, 最爲目下先務’, 至請移劃北關之穀。如使一萬石眞麥, 累年積置, 日漸腐蝨, 一如履之之言, 則以重臣當日之心, 何不補用於賑資, 而有此移粟之請乎? 臣知重臣之決不爲此也。重臣此啓, 在於壬午冬, 履之按藩, 在於癸未。則當年新捧之穀, 何爲而慮其腐蝨, 纔經大凶之民, 何爲而不願受糶耶? 此則不待明者而可辨。其供辭又曰, ‘自惠廳亦知此弊, 自軍門以米相換, 故往復於惠廳, 依定

년을 겪은 백성들이 어찌하여 조곡 받는 것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이는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도 변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공초에 말하기를 ‘선혜청에서도 이 폐단을 알고 군문(軍門)에서부터 쌀로 바꾸었기 때문에 선혜청에 왕복하면서 정해진 규식에 따라 절미(折米)를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말이 교묘하고도 꺼리낌이 없습니까? 이번 쌀로 바꾸려는 계획은 심이지에게서 제기되어 선혜청이 속임을 당한것입니까? 선혜청에서 알리어 심이지가 거행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채 우물우물 넘긴단 말입니까? 그가 이른바 ‘정해진 규식에 따라 하였다.’고 한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쌀로 바꾸는 건은 비록 선혜청의 공문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의 다소를 조절하는 것은 또한 조정에서 정한 규식을 따른 것입니까? 하물며 진맥 만 석으로 쌀 4천 석과 바꾸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피곡(皮穀) 6두를 쌀로 바꾸는 법입니다. 진맥 1석당 으레 진말(眞末) 7두 5승이나 지화(只火)16910) 15두를 내놓는데, 진말은 풍년이나 흉년을 따지지 않고 쌀로 대응하지만, 지화는 별로 다른 곳에 쓸 일이 없어서 누룩을 만드는데에 씁니다. 그런데 그가 이익을 계책으로 삼아 감히 마음대로 도내의 술 금지령을 늦추어서 보리의 가격이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앞서 올린 상소에 이른바 ‘술 금지령이 조금 해이된 틈을 타다.’고 한 것은 조정에서 금지령을 늦추었다는 게 아니라, 곧 그가 마음대로 늦춘 것이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병들게 한 태도야말로 어찌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맥 1석의 가격을 억지로 5, 6냥으로 정하여 쌀로 바꿀 경우 1석당 2냥을 민간에 내주는데, 거두어들이고 풀 때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1석당 남은 돈이 거의 3, 4냥이나 되는데, 만 석의 잉여금을 통계내면 3, 4만 냥 정도가 됩니다. 이는 도내의 수령 및 아전과 백성들이 공공연히 말하면서 지금까지 침을 뱉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이 3, 4만 냥이나 되는 잉여금을 그가 공적인 용도에 보냈겠습니까? 사사로이 호주머니에 넣었

式折米相換’云。 嘻噫! 何其言之巧而無忌憚也? 今此換米之計, 自履之發, 而惠廳被瞞乎? 自惠廳行會, 而履之舉行乎? 何不明言, 而直爲含糊鶻突也? 其所謂依定式云者, 尤不成說。 換米一節, 雖有惠廳之關文, 折價多少, 亦依朝家之定式乎? 況以萬石眞麥, 作米四千石者? 此皮穀六斗作米之法也。 眞麥一石, 例出眞末七斗五升, 只火十五斗, 眞末則勿論豐凶以米相代, 只火則無他用, 而用於麩子。 渠爲料利之計, 乃敢擅弛道內酒禁, 以圖麥價之騰踊。 臣之前疏所謂乘其酒禁之少弛者, 非謂朝家之弛禁, 乃渠之擅弛也。 其蔑法病民之狀, 豈不萬萬痛惡乎? 眞麥一石之價, 勒定以五六兩, 改色作米, 則每石以二兩錢出給民間, 斂散之際, 民不堪苦。 而一石餘剩, 幾爲 [三] 四兩, 通計萬石, 餘剩則可爲三四萬兩。 此則道內守令及吏民, 公傳道之, 至今嗤罵。 惟此三四萬兩餘剩, 渠果屬之公用耶? 歸之私 [橐] 臺耶? 口招之際, 何不明白說道也? 吁! 亦可異也。 臣之尤痛所惋者, 卽家舍摘奸也。 吞併數家, 連亘一壑, 萬口喧傳,

겠습니까? 구조(口招)할 때에 어찌하여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 이상도 합니다.

신이 더욱 분개한 점은 가옥을 적간(摘奸)한 일입니다. 몇 집의 터를 차지하여 한 골짜기에 연달아 뻗어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석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 역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간하였을 때에는 50여 칸에 불과하고 새로 지은 것은 수십여 칸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아! 가옥을 짓는 법은 반드시 새 재목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라야만 새로 지었다고 할 수 있고, 묵은 재목을 사용하여 새로 지은 것은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적간한 가운데 어느 칸은 보수했다고 한 것은 그지없이 교활합니다. 더구나 이른바 새로 지었다고 한 것은 처음에는 11칸이라고 하였는데, 대궐에 들어간 뒤에 승정원이 퇴각한 바람에 다시 변경시켜 25칸이라고 하였습니다. 칸수의 다과(多寡)를 금중(禁中)에서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하였고 보면, 이른바 어떻게 적간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의 숙부가 경조(京兆) 관관으로 있자마자 낭관과 하리에게 이미 두려운 세력을 쌓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낭관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고 하리에게 공갈을 쳐 위협하는 등 못할 것이 없었으므로 크나큰 가옥으로 하여금 이처럼 흐지부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력이 뻗쳐 감히 임금의 명과 맞서고 있으나 전하를 위해 말씀드린 자가 한 명도 없으니, 신은 실로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한 번 조사하여 사실과 틀린 바가 있을 경우에는 신이 망언(妄言)의 벌을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이지가 어떻게 국법을 요행히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조(京兆)의 낭관이 총명(聰明)을 속이고 가린 죄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우선 도태시키고 잡아다 문초하여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임금이 미워하는 바는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태무(太武)가 적흑자(翟黑

臣又目擊。而及至摘奸，都數不過爲五十餘間，新造又不過爲數十餘間云。嘻噫！夫造家之規，必用新材而造之者，方可謂新造，而用舊材而新建者，獨不可謂之新造耶？今其摘奸中某間修補云者，極其巧猾。而況其所謂新造者，初爲十一間，及夫入闕之後，乃因喉院之退却，更變而爲二十五間。間數多寡，任自贏縮於禁中，則其所謂摘奸者可知矣。蓋其叔纔判京兆，郎吏已有積畏約之勢。而涕泣乞憐於郎官，咆哮威脅於下吏，無所不至，能使渠渠之大屋，漫漶至此。威勢所及，敢與君命相抗，而無一人爲殿下陳之，臣實痛之。今若一番行查，如有差爽，則臣當伏妄言之罪，不然則履之豈可倖遁國法耶？至於京兆郎欺蔽聰明之罪，亦不可不懲。臣謂爲先汰去，拿問嚴處，斷不可已也。”批曰：“人君所惡者，卽欺君也。太武惡黑子而置法，嘉高允而獎直。予雖衰矣，此心不衰，果如爾章，奚特不置諸黷味？雖然湖南事自有定式，幹事者非其人，若或因此而致怨則已，爾則以金石之折定，曰沈履之之欺君，無乃過乎？家舍事，果若

	<p>子)를 미워하여 법으로 처리하고(16911) 고윤(高允)을 가상히 여겨 강직함을 권장하였다. 내 비록 늙었지만 이 마음은 늙지 않았으니, 과연 그대의 상소와 같다면 어찌 애매하게 놔두지 않을 뿐이겠는가? 그렇기는 하나 호남의 일은 본디 정해진 규식이 있는데, 일을 처리한 자가 책임자가 아니어서 혹시 이로 인해 원망을 초래했다고 하면 그만이겠거니와, 그대는 금석처럼 확고히 잘라 심이지(沈履之)가 임금을 속였다고 말하니,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가옥의 일이 과연 그대의 상소 내용대로라면 심이지만 임금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해당 낭관이 더욱 무상(無狀)하다. 어찌 도태만 시키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어찌 먼저 도태시킨 뒤에 문초해서야 되겠는가. 해부(該府)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엄히 문초하여 구초(口招)로 아뢰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爾章，非特履之之欺君也，該郎尤無狀。奚特汰也？不然何可先汰而後問？令該府當日內嚴問，口招以奏。”</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4월 20일(정축) 3번째기사 본관록의 거행과, 강계삼의 폐단에 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본관록(本館錄)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관서(關西)의 도신(道臣)이 삼(蔘)의 폐단에 대해 올린 장계(狀啓)를 읽으라고 명하였다. 영상과 좌상에게 익히 보고 상확(商確)하고 나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어 의관(醫官)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강계(江界)의 삼은 몇 근이나 되는가?”</p> <p>하니, 의관이 대답하기를,</p> <p>“9근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국의 수요에 부족할 염려가 없는가?”</p> <p>하니, 의관이 대답하기를,</p> <p>“내국에서 약으로 쓰는 삼은 강원도 삼을 쓰고 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강계의 삼은 건국 초기부터 납부하는 수량이 9근이었는가? 중간에 혹 가감</p>	<p>上引見大臣備堂，命行本館錄。命讀關西道臣蔘弊狀啓。命領左相熟覽商確，更爲持入。仍命醫官入侍。上曰：“江界蔘幾斤耶？”對曰：“九斤矣。”上曰：“內局需用，無不足之患否？”對曰：“內局藥蔘則用江原道蔘矣。”上曰：“江界蔘，自國初所納之數僞九斤乎？中間或有加減之數乎？”對曰：“江蔘上納之數，初僞十六斤，中間爲六斤，今則爲九斤矣。”上曰：“御用則羅蔘乎？”對曰：“羅蔘爲四斤，而御用不足，故間用江原道蔘矣。”上曰：“箕伯陳章中，江民之泣請等語，思之矜惻。內局之捧，予先蠲減矣。</p>

	<p>(加減)한 숫자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강계에서 상납하는 삼의 수량은 처음에는 16근이었는데, 중간에 6근으로 줄였고 지금은 9근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용(御用)에는 나삼(羅蓼)을 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삼은 4근이어서 어용(御用)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강원도 삼을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백(箕伯)16915) 이 올린 상소 중에 강계 백성들이 울며 청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하면 불쌍하다. 내국에서 받아들인 것을 내가 먼저 견감(蠲減) 하겠다. 6근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어찌 줄여 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이미 하교를 받고 나니 과연 자세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적당히 수량을 감하더라도 또한 삼 값을 더 올려주어야 합니다. 어공(御供)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 있으니, 견제(蠲除)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베 한 필을 감하는 것도 백성을 위하는 측은(惻怛)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내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먼저 감수(減數)한 연후에 경들도 마땅히 받들어 행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송(宋)나라는 화석강(花石綱)16916) 때문에, 명(明)나라는 과은(課銀)16917)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는데, 어찌 거울로 삼아 경계할 것이 아니겠는가? 16근을 상납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었겠는가? 지금은 9근인데도 오히려 폐막(弊瘼)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六斤尙且需用，豈無除減之道？”領議政金致仁曰：“既承下教，故果爲消詳。所以量宜減數，亦當加其蓼價。至於御供，則所重在焉，不宜蠲除矣。”上曰：“一疋之減，亦出於爲民惻怛之心，內局之供，予先減數然後，卿等亦當有奉行之道矣。宋以花石綱，明以課銀，民既離心，豈非鑑戒處乎？十六斤上納之時，民何堪之？而今爲九斤，尙多弊瘼者何也？”致仁曰：“自古及今，採之無限，不得休息故也。”教曰：“大抵蓼產不古，蓼價日高，東西民難支之狀，其若目覩，故關東蓼邑作詳定，又作京貢。今日覽關西伯之章，江界民之無論男女，擁馬垂涕之狀，若親覩。聞此而其若泯默，莫云負元元，寔負于昔。其欲講定，宜先御供，加定三斤，特爲革除。內局猶然，況其他乎？陳章中數件條列，頗有意見，領左相吏兵戶判金時默·趙曦·閔百興，會于備局，消詳回啓，同爲登對以奏。”</p>
--	--	--



	<p>하자, 김치인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정없이 캐내어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체로 삼(蔘)의 생산이 옛날과 같지 않고, 삼가(蔘價)가 날마다 오르고 있어서 동서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눈으로 본 것 같기 때문에 관동의 삼읍(蔘邑)에 대해 상정법(詳定法)16918) 을 만들게 하였고 또 경공(京貢)하게 하였다.  오늘 관서 방백이 올린 글을 보니, 강계의 백성들이 남녀 할것없이 말을 에워싸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직접 본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묵묵히 있으면 백성들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는 옛날을 저버린 것이 된다. 그것을 강정(講定)하고자 하면 먼저 어공(御供)부터 해야 하니 더 정한 3근을 특별히 감하도록 하라. 내국도 그렇게 하는데 더구나 기타(其他)이겠는가? 상소 중에 조목 조목 나열한 몇 건(件)은 자못 의견이 있으니, 영상과 좌상, 이조·병조·호조의 관서 김시묵(金時默)·조엄(趙巖)·민백흥(閔百興)은 비국에 모여 소상하게 회계(回啓)하여 같이 등대(登對)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4월 20일(정축) 6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강계 인삼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동의 인삼은 상정(詳定)하고 경공(京貢)한 뒤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니, 좌승지 김귀주(金龜柱)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몹시 귀하지만 상정한 값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공에 납부한 인삼의 수량이 전에 비해 3할이 감해졌으니,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김치인이 말하기를,  “호조·의정부·종친부·중추부 등 여러 부(府)에서 받아들인 것을 알맞게 감한 것과 내국에서 감한 것 3근까지 합하면 8근이고, 또 천 석의 쌀로 값을 첨가</p>	<p>命大臣備局堂上入侍。上曰：“關東蔘詳定，京貢後有效否？”左承旨金龜柱對曰：“東土產蔘甚貴，而詳定之價，已非不足。且有京貢納蔘之數，比前減其三分，其效不少矣。”領議政金致仁曰：“戶曹·政府·宗親·中樞諸府所捧，酌宜除減，竝內局所減三斤，則合爲八斤，而且有千石米添價。且聞本道監兵營，亦欲除減云，統而計之，</p>

	<p>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본도의 감영과 병영에서도 제감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모두 계산하면 수만 금은 될 것 같으니, 강계의 백성들이 필시 소망에 지나쳤다고 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비국의 회계(回啓)를 읽으라고 명한 다음 조금 마음에 든다고 말하였다.</p>	<p>則似爲數萬金，江民必過望矣。”命讀備局回啓，上曰：“差可意也。”</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5월 22 일(기유) 1번째기사 덕유당에 나가 삼동의 노인에게 쌀을 하사하라고 한인 자손 등에게 한 말을 가급하다</p>	<p>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삼동(三洞)의 노인에게 쌀을 하사하였다. 한인(漢人)의 자손과 나이 80이 된 자에게는 한 말[斗]을 가급(加給)하라고 명하였다. 하번(下番)의 한림에게 명하여 건국 초기에 누각을 건립하였던 터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고, 하교하기를, “덕수궁(德壽宮)은 지금의 시민당(時敏堂)이고 연희방(燕喜坊)은 지금의 흥덕동(興德洞)이다.”</p> <p>하였다.</p>	<p>己酉/上御德游堂，賜三洞老人米。漢人子孫及年八十人，命加給一斗，命下番翰林，考奏國初建樓之基，教曰：“德壽宮，卽今之時敏堂，燕喜坊，卽今之興德洞也。</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6월 2일 (무오) 1번째기사 약방에서 4차례 아뢰 후 영을 환침하다</p>	<p>약방에 내린 비답 가운데 8일 뒤에 입시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약방에서 구두로 네 차례나 아뢰자 비로소 환침(還寢)하였다.</p>	<p>戊午/藥房批旨中，有八日後入侍之教，藥房口傳四啓，始還寢之</p>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6월 11 일(정묘) 2번째기사 승정전에서 입직 금군에게 음식을 내리고 정홍순의 파직을 명하</p>	<p>임금이 승정전 월대에 나아가 입직한 금군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내국 제조 정홍순(鄭弘淳)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도제조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	<p>上御崇政殿月臺，入直禁軍宣饋。內局提調鄭弘淳命罷職，以與都提調有嫌，不仕進也。</p>

다		
<p>영조 110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6월 16 일(임신) 2번째기사 약방에서 탕제를 드실 것을 제차 아뢰나 불 윤하다</p>	<p>영상과 좌상이 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연달아 엄한 하교를 내렸다. 약방에서 제차 아뢰어 탕약을 드실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승지와 옥당이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와 원임 대신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의 불려 보았다.</p>	<p>以領左相不膺命，連下嚴教。藥房再啓，請進湯劑，不許。承旨玉堂請對，不許。兩司原任大臣請對，上召見。</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비가 올 때까지 감선 을 명하다</p>	<p>비가 내릴 때까지 감선(減膳)하도록 명하였다.</p>	<p>戊子/命得雨間減膳。</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3일 (무자) 2번째기사 기우제에 쓸 향을 지 영하고 비를 맞으며 자정문에 나가다</p>	<p>임금이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을 승정전 뜰에서 지영(祇迎)하였다. 산(傘)을 버리고 걸어서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승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만약 비가 내리기를 기한하면 이는 고필(固必)에 가까우니, 마땅히 오각(午刻)까지만 기한하겠다.” 하니,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대내(大內)로 돌아가기를 힘써 청하였다. 이때 비가 약간 내려서 용포(龍袍)가 모두 젖었는데, 도승지 유수(柳脩)가 말하기를, “성체(聖體)가 이처럼 젖었으니, 신은 이 비가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괴이하다.” 하고, 곧 걸어서 자정문(資政門)에 나아가니 마침내 비가 한 식경 크게 내렸</p>	<p>上祇迎祈雨祭香于崇政殿庭。去傘步詣興化門，還御崇政殿月臺，俯伏教曰：“予若限得雨，此近固必 當限午刻矣。” 領議政金致仁、左議政韓翼謨力請還內。時雨下霏微，龍袍盡濕，都承旨柳脩曰：“聖體如此沾濕，臣願此雨不下。” 上曰：“承旨言怪矣。” 仍步入資政門，雨遂大霏一餉。致仁及禮曹判書申晦，以未及行祭而，得雨請復常膳，上許之。</p>

	다. 김치인과 예조 판서 신회(申晦)가 기우제를 미처 행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다고 하여 상선(常膳)의 회복을 청하자, 임금의 허락하였다.	
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3일 (무자) 4번째기사 호남과 탐라의 곡식을 운송하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이제 호남 도신(湖南道臣)의 장문(狀聞)을 보건대, 2천 석의 쌀을 다섯 척의 배에 실어서 운반해 들여보냈다고 하니, 그것이 도착해 정박(碇泊)했다는 것을 들은 뒤에야 옥식(玉食)을 대하여 손가락을 내릴 수 있다.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장문하도록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탐라(耽羅)에 곡식을 운송하라는 성명(成命)이 이미 있었으므로 도신이 장문한 것이었다.	敎曰：“今覽湖南道臣狀聞，二千石米，五隻船載運入送云，其聞到泊然後，對玉食而可下筯。令備局，分付道臣狀聞。”以耽羅運穀，已有成命，而道臣狀聞也。
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3일 (무자) 5번째기사 영의정 김치인이 회령 부의 개시에 관한 일 로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함경감사(咸鏡監司) 심수(沈鏞)의 장계(狀啓)에 ‘회령부(會寧府)의 금년 개시(開市) 때에 우마료(牛馬料)가 거의 천여 석에 가까운데, 본부(本府)의 귀보리[耳麥]가 이미 다하여 추이(推移)할 수 없습니다.’ 한 것으로 인하여 상진청(常賑廳) 소관의 귀보리를 무산(茂山)·종성(鍾城)에 각각 4백 석씩 나눠주어 수용(需用)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致仁，因咸鏡監司沈鏞狀啓，會寧府今年開市時，牛馬料殆近千餘石，而本府耳麥已盡，無以推移，請劃給常賑廳所管耳麥，茂山·鍾城各四百石，俾爲需用，允之。
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10 일(을미) 1번째기사 석우에 나가 농사를 살피고 경기 농민에게 농사의 형편을 묻다	임금이 친히 석우(石隅)에 나아가 농사를 보았다. 기백(畿伯)17014)에게 명하여 농민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게 하여 각각 농사 형편을 물으니, 모두 풍년이라고 대답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 남관 왕묘(南關王廟)에 들렀다. 임금이 더위 때문에 편치 못한 증세가 있어 종을 칠 때에 이르러 약방에 입진(入診)하도록 명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지나친 거동은 하지 않겠다.” 하니, 도제조 서지수가 말하기를, “늬우치는 것은 길(吉)한 기미(機微)입니다. 사관(史官)이 써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향귤다(香橘茶), 여곽탕(茹藟湯)을 연달아 올리니, 새벽이	乙未/上，幸石隅觀稼。命畿伯率農民入侍，各詢農形，皆以豐年仰對。還宮時，歷臨南關王廟。上以暑氣，有未寧候，逮鐘時命藥房入診，上曰：“自今以後，予不爲過中之舉矣。”都提調徐志修曰：“悔者，吉之幾也。史官當書而記之。”既而連進香橘茶茹藟湯，向晨始復常。天明退出。

	되자 비로소 평상을 회복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물러나갔다.	
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6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선조의 기일이라하여 입진과 약진을 허락하 지 않다	임금이 선조(先朝)의 기일(忌日)이라 하여 입진(入診)과 진약(進藥)을 허락하 지 않았는데, 약방에서 다섯 번 아뢰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戊午/上以先朝忌日, 不許入診進藥, 藥房五啓, 終不許。
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28 일(계축) 4번째기사 내국에서 입시하자 음 식에 관한 일을 이야 기 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이(松茸)·생복(生鰻)·아치(兒雉)·고초장(苦椒醬)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 을 잘 먹으니, 이로써 보면 입맛이 영구히 늙은 것은 아니다.” 하니, 도제조 김양택(金陽澤)이 말하기를, “그러시면 생복(生鰻)을 복정(卜定)17057)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 두라. ‘〈공자는 꿩고기를〉 세 번 냄새만 맡고 일어났다.’고 하였으니, 때로는 혹 향당편(鄉黨篇)17058) 에 성인(聖人)의 기상(氣像)을 묘사하였음을 상상하였다. 적복(摘鰻)하기는 공이 많이 들므로 영상(領相)이 어사(御史)로 있을 때에 한 마리 큰 복어(鰻魚)로써 나에게 민폐(民弊)가 된다는 뜻을 보였 다. 방금 충재(蟲災)가 민간에 몹시 지독한데, 정당한 공물(貢物) 외에 때가 아닌 물건을 어찌 반드시 구하여 구복(口腹)을 위하겠는가? 마땅히 바칠 것 외에는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內局入侍。 上曰：“松茸·生鰻·兒雉 ·苦椒醬， 有此四味則善飯， 以此觀 之， 則口味非永老矣。” 都提調金陽澤 曰：“然則生鰻， 當卜定矣。” 上曰： “置之。 三鳴而作， 時或想像《鄉黨 篇》， 畫聖人氣象矣。 摘鰻多功， 領 相爲御史時， 以一大鰻， 示予爲民弊之 意也。 方今蟲災民間孔劇， 惟正之外， 非時之物， 何必索之， 以爲口腹乎？ 當 納之外， 予不受之矣。
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7월 29 일(갑인) 1번째기사	하교하기를, “《자성편(自省編)》에 이미 이르기를, ‘한 마리의 물고기와 한 움큼의 나물 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 찌 어공(御供)을 위하여 백성에게서 피곤함을 받게 하겠는가? 기영(畿	甲寅/教曰：“《自省編》既云， 一尾之 魚， 一握之菜， 皆民也， 望八豈爲御供， 令民受困？ 畿營代捧， 卽爲停止。”

<p>경기 감영의 대봉을 정지 하게 하다</p>	<p>營)17059) 의 대봉(代捧)17060) 을 즉시 정지하라.”</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9일(갑인) 4번째기사 지평 권극이 주금령·설강령의 시행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p>	<p>지평 권극(權極)이 상소하여, ‘설강령(設講令)이 있기 이전에 강(講)으로써 뽑아 버림을 당한 자와 주금령(酒禁令)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은 자를 참작해 용서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조중첨(趙重瞻)의 일을 나는 지금까지 애석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청함은 조(趙)·송(宋)을 모두 청하는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신(臺臣)이 청할 바가 아니다. 전번의 술을 금하는 일에 네 말은 모순(矛盾)이 없겠는가? 주금(酒禁)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때에는 일률(一律)을 청함에 이르렀고, 주금이 이미 풀린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현위(弦韋)17129) 를 겸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윤구연(尹九淵)이 극률(極律)을 입었고, 조중첨·송재중(宋載中)이 강(講)에 떨어져서 뽑아 버렸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p>	<p>持平權極上疏，請設講令前，以講見拔者，酒禁令前，以酒被律者，參酌原恕，批曰：“趙重瞻事，予尙今嗟惜，而今者之請，趙。宋皆請乎？其在嚴科場之道，非臺臣所請也。頃者酒禁事，爾言無乃矛盾乎？酒禁未弛之時，至請一律，酒禁既解之後，乃有此請，無乃兼弦韋而然耶？曾因極疏，尹九淵被極律，趙重瞻·宋載中落講拔去，故上教及之。</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6일(경신) 2번째기사 문무 기로과에게 면한그릇·명주 한 필을 내려 주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문무 기로과(文武耆老科)의 사람을 불러 보고 각각 면(麵) 한 그릇을 내려 주었으며, 이정철(李廷喆)·고몽성(高夢聖) 및 무과(武科)의 81세인 사람에게는 명주 한 필을 더 주게 하였다.</p>	<p>上御德游堂，召見文武耆老科人，各賜麪一器，加賜李廷喆·高夢聖及武科八十一歲人帛一疋。</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8일(임술) 2번째기사 호남에 삼명일의 방</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니, 호남 도신(湖南道臣)의 분등 장문(分等狀聞)을 읽어 아뢰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만약 풍패(豐沛)를 물으면 함흥(咸興)과 전주(全州)가 한가지이다. 호남의 삼명일(三名日)17135) 의 방물(方物)·물선(物膳)·삭선(朔膳)을 모두 반(半)으로</p>	<p>內局入侍，命讀奏湖南道臣分等狀聞。教曰：“若問豐沛，咸興·全州一也。湖南三名日方物物膳朔膳，並減半事分付。”</p>

<p>물·물선·삭선의 반감을 명하다</p>	<p>감하는 일을 분부하라.”</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10일(갑자) 2번째기사 이창수를 해임하고 홍낙성에게 대임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아버가 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무슨 얼굴로 감전(監煎)17136) 하겠는가? 이창수(李昌壽)의 내국(內局)의 임명을 특별히 체차(遞差)하고 홍낙성(洪樂性)으로 이에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가, 곧 이사관(李思觀)으로 이를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형조 판서를 종(從)2품으로써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서명응(徐命膺)·조영진(趙榮進)은 전조(銓曹)로 하여금 다시는 검의(檢擬)하지 말도록 하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조용히 그 아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창수는 이미 하교하였는데, 그 아들이 어찌 직을 가지겠는가? 그 관직을 체임하여 탁무(卓茂)17137)의 뜻을 써서 이세연(李世演)을 제수하라.”  하였다. 이창수의 아들 이병정(李秉鼎)이 관직(館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교가 있었다. 또 하교하기를,  “찬선 김원행(金元行)에 대하여 지난번에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이번 상소에서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을 일컬으니, 그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여러 신하를 영호(營護)하는 것은 마음이 또한 구차한 것이니, 어찌 어린 세손(世孫)을 돕기를 바라겠는가? 그 직을 해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판서의 가망(加望)17138)이 얼마나 중한 것인데, 서리(書吏)로 하여금 써서 묻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편한 것을 취하면 어찌 누워서 묻지 않겠는가? 판서 조명정(趙明鼎)을 파직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병을 청탁하여 사면하기를 청하면서 형조 판서의 가망(加望)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	<p>敎曰：“父不教子，何顏監煎？李昌壽特遞內局，以洪樂性代之。”旋命以李思觀代之。刑曹判書以從二品，問于大臣擬入。又敎曰：“徐命膺·趙榮進，令銓曹勿復檢擬，使二人從容教子。李昌壽既已下敎，則其子何以帶職？遞其職，以用卓茂之意，李世演除授。”昌壽子秉鼎不入館直，故有是敎。又敎曰：“贊善金元行，頃者嘉其心，今番之章，稱李恒福·李德馨，其心自綻。營護諸臣，心亦苟且，何望贊沖子？特許解其職。”又敎曰：“判書加望，何等重也，而令書吏書問云，若是偃便，何不臥問？判書趙明鼎罷職。”以領議政金致仁引疾乞免，刑判加望不舉行。</p>
<p>영조 111권, 44년</p>	<p>열흘 동안 감선(減膳)할 것을 명하였다.</p>	<p>命減膳十日。</p>

<p>(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10월 13일(정묘) 3번째기사 열흘 동안 감선할 것을 명하다</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11월 3일(정해) 5번째기사 장악에 관한 일 등을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덕이 없고 무상(無狀)하며 나이가 또 늙고 쇠한데, 어찌 운관(雲觀)17187)의 보고를 기다려서만 마음이 항상 두렵겠는가? 복선(復膳)하는 날에 이 재이(災異)의 보고가 있었으니 무엇으로써 마음을 하늘에 사죄하겠는가? 내일부터 5일 동안 감선(減膳)하라. 복악(復樂)하는 것은 봄에 있었지만 이 이번이 있으니, 이것도 불효(不孝)함이다. 흉년에 장악(藏樂)하는 것은 역시 선왕(先王)의 예(禮)인데, 맥추(麥秋)17188) 까지 한하여 그대로 음악을 철폐할 것을 의조(儀曹)에 분부하라.” 하였다.</p>	<p>敎曰：“否德無狀，年且衰老，何待雲觀之報？心常懷惕。復膳之日。有此報異，何以謝心於高？高自明日，減膳五日復樂在春，而有此異，此亦不孝，歉歲藏樂亦是先王之禮，限麥秋仍爲撤樂事，分付儀曹。</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11월 3일(정해) 6번째기사 승정원이 천둥과 번개의 재이로 아리다</p>	<p>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천둥과 번개의 재이(災異)가 순음(純陰)이 폐장(閉藏)하는 달에 거듭 발하였고, 지금 이 음려(陰沴)17189)의 기운이 또 치양(禪陽)이 장차 맹아할 때에 또 나타나니, 어떤 모양의 화기(禍機)가 어두운 가운데 잠복해 있어서 어진 하늘의 경고가 이와 같이 정성스럽고 간절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유(儒)를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함은 바로 우리 조선의 가법(家法)인데, 암혈(巖穴) 밑에 숨어 있는 선비에게 초빙하는 일을 보이지 못하였으니, 사기(士氣)가 떨치지 못하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까? 공(公)을 넓히고 사(私)를 버리는 것은 바로 제왕(帝王)의 거룩한 일인데, 사람을 쓰는 것과 버리는 사이에 치우치게 엮매이는 근심이 없지 아니하니, 공도(公道)가 순수하지 못한 병통이 있는 것입니까? 재해와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아니함이 아니지만, 실제의 은혜가 오히려 밑에 이르지 못하여 민생(民生)의 곤궁은 그대로</p>	<p>政院啓曰：“向來轟燁之災，荐發於純陰閉藏之月，今此陰沴之氣，又干於禪陽將萌之時，未知何樣禍機，伏在冥冥，而仁天之警告若是諄切也。噫！崇儒重道，卽我朝之家法，而巖穴之下，未見旌招之舉，則士氣有不振之歎歟？恢公祛私，卽帝王之盛節，而用舍之間，不無偏係之憂，則公道有不純之患歟？災荒拯濟之方，非不至矣。而實惠尙未下究，民生之困悴固也。刑獄欽恤之意，非不切矣，而一罪每傳寬典，紀綱之解紐宜矣。絲綸或欠於簡</p>



	<p>이며, 형옥(刑獄)을 흠휩(欽恤)하는 뜻이 간절하지 아니함이 아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도 매양 너그러운 법에 붙이어서 기강(紀綱)의 해이해짐이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교명(敎命)이 혹시 간중(簡重)함이 부족하고 정령(政令)이 간혹 빈복(頻復)함에 손상되며, 못 신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공손함을 삼고 유사(有司)는 죄를 면하는 것으로 다행함을 삼으며, 하전(廈氈)17190)에서 일을 토론하심이 비록 부지런하시나 조정 위에 바른말을 들을 수 없으니, 무릇 이 몇 가지는 어느 것이나 재이를 부르는 단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감선(減膳)을 회복하던 날에 운관(雲觀)에서 재이를 보고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바로 나의 부덕(否德)함이다. 귀를 끌어당기며 직접 명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늑척(凜惕)’ 두 글자는 또한 혈후(歇後)한 말이다. 경계하고 두려워함이 바야흐로 깊은데, 직책이 왕명을 받드는 데 있으면서 그 힘쓰게 함이 이와 같으니, 깊이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p>	<p>重，政令間傷於頻復，群下以趨走爲恭，有司以免罪爲幸，廈氈之上吁咈雖勤，而朝廷之上，讜諤無聞，凡此數者，何莫非召災之端也？”批曰：“復膳之日，雲觀報異，是何由乎？卽否德也。何異乎耳提而面命？凜惕二字，亦歇後語也。戒懼方深，職在惟允，其勉若此，深庸嘉之。”</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1월 3일(정해) 7번째기사 옥당에서 재이를 사라지게 하는 일로 차자를 올리다</p>	<p>옥당(玉堂)에서 차자(笏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금의 존귀함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함이 있겠습니까만, 반드시 어려워하고 삼가하는 바가 있음은 바로 하늘의 명령을 두려워 함인데, 근래에 오면서는 전하께서 하시고 싶은 바를 행하지 못하신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도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위엄으로 무엇을 꺾지 못하겠습니까만, 반드시 용납하여 참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함인데, 근래에 오면서는 전하께서 듣기 싫어하시는 바에 있어 죄를 면하는 것을 또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도리를 얻었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형벌과 상(賞)은 크게 공정함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대개 치우치고 사사로움에 매인 한탄이 많으니 전하께서는 세상을 제어하시는 방</p>	<p>玉堂上笏，略曰：  人君之尊，何欲不遂，而必有難慎，卽畏天命也，而挽近以來，絕未見殿下之所欲爲而不得行者，則是未可謂得畏天之道也。人君之威，何物不摧，而必有容忍者，卽畏人言也，而挽近以來，亦未見殿下之所厭聞而免罪戾者，則是未可謂得畏人之道也。刑賞所以視大公，而率多偏着私係之歎，則殿下馭世之具，已失其和平矣，辭教所以昭大信，而未免急遽顛倒之患，則殿下如綸</p>

	<p>법에 이미 그 화평함을 잃었으며, 사교(辭敎)는 큰 믿음을 밝게 하는 바인데, 갑작스럽고 앞뒤가 뒤바뀌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시니, 전하께서는 &lt;임금의 미세한 말이라도&gt; 그것이 관인(官印)의 끈과 같이 소중한 사체에 또한 화평함을 잃으셨습니다.</p> <p>심지어 법전(法殿)17191) 에 임하시려 할 때는 위의(威儀)를 정돈함이 마땅한데, 명령을 임시해 급하게 내리어서 백예(百隸)가 매양 그 미치지 못함을 근심하고 난여(鑾輿)가 출발할 적에 절주(節奏)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데, 기한 전에 명하지 아니하여 유사(有司)가 길을 깨끗하게 할 겨를이 없으니, 이것도 거조(舉措)가 마땅하지 못하시고 체모(體貌)가 엄하지 못하신 일단(一端)입니다. 비록 당장의 일로써 말할지라도 바야흐로 재이(災異)가 일어날 때에 성상의 마음이 분발하사 교서를 선포하여 장차 아침저녁으로 진려(振勵)하시는 방도가 있는 것 같으시나, 그 뒤에 정령(政令)이 곧 다시 전과 같으시며 초선(抄選)된 유생(儒生) 전부를 소견하신 것은 일이 상례(常例)와 다른데, 마침내 번설(煩屑)한 명목으로 돌아갔고 궐(闕)에 있는 수령(守令)이 미처 입시(入侍)하지 못한 것은 실정이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닌데, 역시 준기(準期)의 벌(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으시면서도 어찌 천심(天心)을 기뻐하게끔 돌이키고 재려(災沴)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까?”</p> <p>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복선(復膳)하는 날에 복악(復樂)할 때가 가까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이(災異)의 보고가 있으니, 진실로 부덕(否德)을 옥성(玉成)하라는 것이다. 승정원의 비답에 유시(諭示)한 것을 이제 또 특별히 유시한다. 그 힘쓰게 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노쇠하였다고 하면서 맹성(猛省)하지 아니하겠는가?”</p> <p>하였다.</p>	<p>之體，亦失其和平矣。至於法殿將臨，威儀宜整，而令出臨急，百隸每患其不及，鑾輿載戒，節奏宜備，而命不先期，有司未暇於清道，此亦舉措失宜，體貌不嚴之一端也。雖以目下事言之，方其災異之作也，聖心奮發，綸綍渙宣，若將有朝夕振勵之道，而伊後政令，旋復如前，被抄儒生之全數召見，事異常例，而終歸煩屑之科，在闕守令之未及入侍，情非故犯，而亦被準期之罰。如此而尚何望天心之回豫，災沴之自消乎？</p> <p>批曰：“復膳之日，復樂在近，而有此報異，誠玉成于否德也。諭於候院之批，亦諭特諭。其勉若此，何敢曰衰而不猛省焉？”</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p>	<p>임금이 태묘(太廟)와 각릉(各陵)·전(殿)의 동지(冬至) 제사에 쓸 향(香)을 승정전 뜰에서 지영(祇迎)하였다. 각도의 전문 차원(箋文差員)을 소견하였다. 추조</p>	<p>上祇迎太廟各陵殿冬至香於崇政殿庭。召見各道箋文差員。命秋曹輕</p>

<p>(乾隆) 33년) 11월 12일(병신) 2번째기사 태묘와 각능·전의 동지 제사에 쓸 향을 지영하다</p>	<p>(秋曹)에 명하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고, 하교하기를,  “아! 75세에 또 양(陽)이 회복하는 날[冬至]을 만났으니, 참으로 대단히 뜻밖이다. 선왕(先王)은 음(陰)을 누르고 양(陽)을 부지한 뜻이 지극하고 극진하였다. 아! 덕이 얕은 나는 날마다 더욱 쇠하고 아! 세도(世道)는 날마다 더욱 멀어지는데, 다만 40년 전의 고(故) 풍원군(豐原君)17205) 이 올린 춘첩자 시(春帖子詩)의 ‘동짓날에 교서를 내리니 왕의 마음을 점칠 수 있다.[至日能垂綽 王心已可占]’는 구절을 외우니, 마음이 저절로 가만히 슬퍼진다. 아! 초양(初陽)이 이미 밑에서 나왔는데, 아! 백성들도 생의(生意)가 있겠는가? 하물며 8도에서 흥년을 고하였는데, 오늘 향(香)을 지영(祇迎)하고 배전 차원(陪箋差員)을 소견하였다. 아! 늙은 나이에 어찌 보이기 위해서이겠는가? 첫째도 백성이고, 둘째도 백성이다. 세전(歲前)에 설진(設賑)하는 것은 비록 금령(禁令)이 있으나 뜻을 다하여 구제해 살려서 팔십을 바라보는 그 임금의 뜻을 저버림이 없도록 승정원에서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약방에서 탕제(湯劑)를 올리니, 임금이 그 반(半)을 땅에 쏟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8도 백성을 위하여 이를 뿌려서 한결같이 젖게 하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다. 도신(道臣)과 수령이 된 자는 이 백성을 살린 뒤에야 나의 신하가 될 것이다.”  하였다.</p>	<p>囚放釋，教曰：“噫！七十五歲，又逢陽復之日，實是萬萬料表。先王抑陰扶陽之義，至矣盡矣。吁嗟！涼德日益衰，吁嗟！世道日益下，只誦四十年前故豐原君春帖子詩，‘至日能垂綽，王心已可占’之句，心自竊嗟。噫！初陽已生於下，而吁嗟！小民亦有生意乎？況八道告歉，今日香祇迎，召見陪箋差員。吁嗟！暮年豈爲觀瞻？一則元元，二則元元。設賑歲前，雖有禁令，着意濟活，無負望八其君之意，自政院下諭。”藥院進湯劑，上覆其半於地曰：“予爲八道元元，灑之欲其同沾，不可得也。爲道臣守令者，活此民然後，爲吾臣矣。”</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 (乾隆) 33년) 12월 7일(신유) 3번째기사 금년 봄에는 진연할 수 없음을 의논하다</p>	<p>약방에서 세 번 계달하니, 비로소 입시(入侍)를 명하였다. 시임·원임 대신과 예조 당상[禮堂]이 함께 들어 왔다. 도제조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구궐(舊闕)의 복주(福酒)와 기사(耆社)의 송다(松茶)도 잔치라고 이르고, 음악이 없는 하례도 예식을 이루었다고 이르면 하정(下情)이 어찌 억울하지 아니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藥房三啓，始命入侍。時原任大臣禮堂同入。都提調洪鳳漢曰：“舊闕福酒，耆主松茶，亦以謂宴，無樂之賀，亦謂成禮，下情豈不抑鬱乎？”上曰：“今春則尤非可論矣。大臣葬前，何以設宴？使予招杜舉之譏乎？”</p>

	<p>“금년 봄에는 더욱 논할 수 없다. 대신(大臣)의 장례(葬禮) 전인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겠는가? 나로 하여금 두거(杜舉)17264)의 비난을 받게 하는가?” 하였다.</p>	
<p>영조 111권, 44년 (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2월 22일(병자) 2번째기사 승지에게 탐라의 봉진에 관해서 하교하다</p>	<p>승지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여 하교하기를,  “아! 탐라(耽羅)의 봉진(封進)은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이로써 본주(本州)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쓴다. 만약 혹시 지체(遲滯)하면 반드시 또한 탐문(探問)하는 것은 과일을 바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목숨을 위해서이다. 이제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문(狀聞)을 보니, 이 배의 사람과 물건이 침몰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한 사람이라고 이르지 말라, 역시 나의 늙은 나이의 백성이다. 그 아내와 아들에게 본주(本州)로 하여금 별도로 진휼(賑恤)을 가하여 내 뜻을 보이게 하라. 이 보고를 들으니 비록 세치[三寸]의 누른 굴(橋)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먹겠는가? 하물며 그 밖에 진상(進上)한 것을 또 어찌 족히 논하겠는가? 절대로 다시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고, 단지 당유자(唐柚子)17304)는 천신(薦新)17305)으로 봉진하는 일을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p>	<p>命承旨入侍，教曰：“噫！耽羅之封進越海，故以此爲本州民用心。若或遲滯，必也探問，非爲果貢，乃爲民命。今覽濟州牧使狀聞，此船人物之滄溺，今乃初聞。莫云一人，亦予暮年赤子也。其妻孥，令本州另加賑恤，以示予意。聞此報，其雖三寸黃之金橋，其何忍食？況其他進上，又何足論？切勿更封，只唐柚子，以薦新數封進事，令備局分付。”</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3일(정해) 1번째기사 왕세손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하다. 양주 등의 진휼을 명하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손(王世孫)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陳賀)하였다. 임금이 시(詩) 8구를 친히 썼으니,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추모(追慕)하는 뜻이었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등이 보령(寶齡)이 삼대(三代) 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하여 번갈아 경축하는 뜻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매, 홍봉한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경계하셨으나, 응당 행해야 할 예(禮)를 어떻게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조(正朝)의 하례를 받았는데, 경들은 거듭 경하(慶賀)를 올리려 하는</p>	<p>丁亥/上御崇政殿，王世孫率百官陳賀。上親書詩八句，皆逢新追慕之意也。領議政洪鳳漢等，以寶齡三代後初有，迭奏慶祝之意，上曰：“太康矣。”鳳漢曰：“殿下雖以太康爲戒，而應行之禮，豈云太康乎？”上曰：“予受正朝賀，卿等欲更進慶賀乎？予以杜舉之意，三月以前，必不受矣。”時大臣尹東度喪在殯也。命進箋太學生安櫟待窠除職，百[官]陳賀時，太學亦</p>

	<p>것인가? 나는 두거(杜舉)17328) 의 뜻으로 3월 이전에는 기필코 받지 않겠다.”</p> <p>하였는데, 이때 대신 윤동도(尹東度)가 죽어 빈소(殯所)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箋文)을 올린 태학생 안역(安穰)에게 과궐(窠闕)을 기다려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는데, 태학(太學)에서도 또한 전문을 올려 칭하(稱賀)하는 것은 요즘 생긴 규례이었다. 또 선조(先朝)를 모셨던 중관(中官)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아울러 가자하도록 명하였고, 종신(宗臣) 종1품에게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임금 하례 받기를 마치고 월대(月臺)에 이어(移御)하여 원일(元日)에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했던 군사들을 뜰에서 호궐(犒饋)17329) 하였다. 임금도 또한 진찬(進饌)하고 뜻 신하들에게 헌수(獻壽)하도록 명하였는데, 홍봉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홍봉한이 아뢰기를,</p> <p>“여러 대신들이 모두 있으니, 청컨대 수랏상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얻어서 함께 맛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음식물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홍봉한이 헌수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니, 홍봉한이 술을 따라 축수(祝壽)하기를,</p> <p>“남산(南山)이 영구하듯이 장수하시고, 북두(北斗)가 하늘에서 빛나듯이 영구히 존귀(尊貴)함을 누리소서.”</p> <p>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헌축(獻祝)하였다. 제주(濟州)의 공과인(貢果人)을 불러들이도록 명하여, 혜청(惠廳)으로 하여금 쌀을 내려 주게 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는 면포(綿布) 1필을 내려 주게 하였으며, 선전관에게 명하여 길거리에서 떠돌며 결식(乞食)하는 사람들을 가서 살펴보게 하고, 혜청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게 하였다. 또 양주(楊州)에 달려가서 진휼(賑恤)을 베풀고 창고를 열어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등의 일을 살펴보게 하였다.</p>	<p>陳箋稱賀，近例也。又命逮事先朝中官子若孫，并加資，又命宗臣從一品者加資。上受賀畢，移御月臺，犒饋元日隨駕軍兵于庭。上亦進饌，命群臣獻壽，從鳳漢請也。鳳漢奏曰：“諸大臣皆在，請得君餘而共嘗之。”上命賜饌。鳳漢請獻壽，上許之，鳳漢斟酒祝曰：“南山之壽，北斗之爵。”諸臣以次獻祝。命招入濟州貢果人，令惠廳賜米，滄溺人賜綿布一疋，命宣傳官，往見街路流丐，令惠廳給糧。又命馳往楊州，察設賑發倉等事。</p>
영조 112권, 45년	1백 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아울러 한 자급(資級)을 더하도록 명하였다. 임금	丙申/命百歲以上人，并加一資。上見

<p>(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12일(병신) 1번째기사 1백세 이상된 자들에게 한 자급을 더하고 노인에게 세찬을 보내다</p>	<p>이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보냈다는 기백(畿伯)17335)의 계본(啓本)을 보았는데, 1백 4세 된 사람이 1인이고, 1백 2세 된 사람이 1인이며, 1백 세 된 사람은 3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임금이 잇달아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내렸는데, 이에 제도(諸道)에서 힘써 나이 많은 사람을 들어 계문(啓聞)하니, 간사한 백성 가운데 나이를 늘려서 군보(軍保)를 피하려고 꾀한 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다.</p>	<p>畿伯老人歲饌啓本，有百四歲者一人，百二歲者一人，百歲者三人，有是命。時，上連下優老之典，於是〔諸〕道務舉高年以聞，姦民之增年謀避軍保者，率多預焉。</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22일(병오) 1번째기사 왕세손이 대신·국구·도위·종신을 거느리고 진작하다</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이 함께 들어왔다. 지사(知事) 이익정(李益炡) 등이 진연(進宴)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소찬(小饌)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왕세손(王世孫)이 대신(大臣)·국구(國舅)·도위(都尉)·종신(宗臣)을 거느리고 진작(進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년(數年) 동안에 이 예(禮)를 두 번 행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p>	<p>丙午/引見大臣備堂，耆社諸臣同入。知事李益炡等，以進宴爲請，上許之。命設小饌。王世孫率大臣國舅都尉宗臣進爵，上曰：“數年內再行此禮，誠太康也。”</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26일(경술) 1번째기사 대신 등에게 제도와 양도에서는 전에 올라 현상하는 것같이 하도록 명하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대신·봉조하(奉朝賀)·제도(諸道) 구관 당상(句管堂上)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그 임금은 잔치를 받고 그 백성들에겐 진휼을 베풀고 있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매 음식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제도(諸道)와 양도(兩都)에서는 나의 이러한 뜻을 본받아 전(殿)에 올라 헌상(獻觴)하는 것같이 하도록 하라.” 하고, 정원(正員)으로 하여금 하유(下諭)하게 하였다.</p>	<p>○庚戌/藥房入診。上召見大臣奉朝賀諸道句管堂上，教曰：“其君受宴，其民設賑，思之及此，食豈下咽？諸道兩都，體予此意，若登殿而獻觴焉。”令政院下諭。</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2월 25일(무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받았다.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여러 파산(罷散)한 인원들에게 모두 군함(軍銜)을 주어 나아가와 참여하게 하였는데, 각각 차례로 서립(序立)하였다. 진찬(進饌)하때 음악이 연주되고 왕세손이 진작(進爵)하였으며, 치사관(致詞官)이 대신 치사하였다. 왕세손이</p>	<p>戊寅/上御崇政殿受宴。宗親文武百官及諸罷散人員，并付軍銜進參，各以次序立。進饌，樂作，王世孫進爵，致詞官代致詞。王世孫就位四拜訖，</p>

<p>승정전에 나가 잔치를 받다</p>	<p>자리에 나아가 네 번 절하기를 마치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진작하고 치사한 다음位次에 나아가 네 번 절하였다. 왕세손이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며 산호 천세(山呼千歲)를 부르고 네 번 절한 다음 마침내 전내(殿內)로 들어갔다.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진작하였는데, 제9작(第九爵)을 마침내 이르러 임금의 갑자기 수심(愁心)을 띠고 말하기를,  “흉년에 잔치를 받으니,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기민(饑民)을 생각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억제하겠는가? 이제 잔치를 마친 다음 ‘풍년이 들기를 축원한다.[祝有年]’는 세 글자를 가지고 팔도의 백성들을 위해 송축(頌祝)하고자 한다.”  하니, 백관이 모두 일어나서 하례하였다. 이날 내연(內宴)을 겸하여 행했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빈청(賓廳)에 물러가서 음식 내려 주기를 기다리도록 명하였다. 마침내 잔치를 거두도록 명하고, 내전(內殿)으로 돌아왔다.</p>	<p>領議政洪鳳漢進爵致詞， 就次四拜。王世孫率參宴諸臣， 三叩頭山呼四拜， 遂就殿內。 諸臣以次進爵， 至第九爵畢， 上忽愀然曰：“荒歲受宴， 無已太康？ 予思饑民， 此心何抑？ 今將宴畢， 以祝有年三字， 爲八道民頌焉。” 百官皆起而賀。 是日兼行內宴。 上命諸大臣退留賓廳， 以待賜饌。 遂命撤宴， 還內。</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2월 26일(기묘) 1번째기사  각능의 개수에 대한 고유제에 쓸 향을 지영하다</p>	<p>임금이 각능의 수개(修改)에 대한 고유제(告由祭)에 쓸 향을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지영(祇迎)하고 이어서 사옹원에 나아가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아울러 입시하였다. 임금이 송절차[松節茶]를 가져오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경들이 각각 한 잔씩 나에게 권하도록 하라.”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 등이 남은 것을 맛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차가 홍봉한에 이르러 술잔을 들어 상수(上壽)하고, 여러 대신들과 국구 및 여러 부마들이 또 진작(進爵)하여 상수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돌아가며 취하도록 마시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비록 취해서 쓰러지더라도 허물로 삼지 않겠다.”  하였다.</p>	<p>己卯/上祇迎各陵修改告由祭香于延和門外， 仍御司饗院， 時原任大臣并入侍。 上命取松節茶來曰：“卿等各勸予一盃也。” 洪鳳漢曰：“臣等得沾餘瀝， 幸矣。” 茶至鳳漢， 舉酌上壽， 諸大臣及國舅諸駙馬， 又進爵上壽。 上命諸臣輪飲盡醉曰：“雖醉倒， 不以爲咎矣。”</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p>	<p>임금이 용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시종신(侍從臣)과 무신(武臣)들에게 시사(試射)하고, 임금이 친히 3시(矢)를 쏘아 명중시켰다. 이어서 술을 내려 여러 신</p>	<p>上御隆武堂， 從臣及諸武臣試射， 上親射中三矢。 仍賜酒， 令諸臣飲， 又以</p>

<p>(乾隆) 34년) 2월 26일(기묘) 2번째기사          용무당에 나가 시종신과 무인에게 시사하다</p>	<p>하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또 내찬(內饌)과 진어(進御)의 남은 것을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德)으로 배불렀으니, 오늘의 일은 귀하게 여길 만하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즐겁고 또 귀중(貴重)합니다.”          하매, 마침내 상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p>	<p>內饌及進御所餘賜之曰：“既醉以酒，既飽以德，今日之事，可謂貴乎？”僉曰：“樂且貴矣。”遂命頒賞。</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2월 27일(경진) 1번째기사          주강을 행하고 《소학》을 강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소학(小學)》을 강하였다. 시강관 김재순(金載順)이 말하기를,          “성품을 말하면서 심정을 언급하고 성정(性情)을 말하면서 성품의 다함을 언급하는데, 성인(聖人)은 그 성품을 다하지만 중인(衆人)은 그 성품을 다하지 못하고 막히므로, 학교(學校)를 세우고 스승을 맞아들여 가르치는 것이며, 《소학(小學)》·《대학(大學)》의 순서가 있으니, 명덕(明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인이 이를 측은히 여기는 뜻을 전하께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노쇠하여 진취(進就)할 희망이 없다.”          하였다. 검토향 김기대(金基大)가 말하기를,          “쇄소(灑掃)하고 응대(應對)하는 것은 일이 비록 미세하다 하나, 미루어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에 이르는 것이 성인의 학문하는 공부가 되니, 낮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작은 데로부터 큰 데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좋게 여겼다. 참찬관(參贊官) 김귀주(金龜柱)가 ‘영가 무도(詠歌舞蹈)와 사려(思慮)가 혹시라도 한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끌어대어 진면(陳勉)하기를,</p>	<p>庚辰/上行晝講，講《小學》。侍講官金載順曰：“言性而及情，言性情而及盡性，聖人則盡其性，衆人則牾其性，故有建學立師之教，有《小學》、《大學》之序，明明德新民是也。惟聖斯惻之義，深有望於殿下矣。”上曰：“予已衰，無進就之望矣。”檢討官金基大曰：“灑掃應對，事雖微細，推以至於修齊治平，聖人爲學之工，可見由淺入深，由小至大矣。”上善之。參贊官金龜柱，引詠歌舞蹈，思罔或逾，陳勉曰：“心和則發皆中節，不和則發不中節。近日拿入記過之舉，雖因一時激惱，而有非思罔或逾之義也。再昨宴禮，今日講筵，宴安之中，不忘典學，不勝欽仰。敢以聖心和平之說獻焉。”上曰：“真得惟允之體也。”判府事金致仁曰：“孝廟之教曰，‘七情之</p>



“마음이 화평하면 일어나는 것이 모두 절도(節度)에 알맞고, 화평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한 것입니다. 근일에 잡아들여 과실을 기록하는 일이 비록 한때의 격뇌(激惱)로 인하였다 하나, 사려가 혹시라도 한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께 연례(宴禮)와 오늘의 강연(講筵)에 있어서 편안히 지내는 가운데에서도 전학(典學)을 잊지 않으시니, 흠양(欽仰)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심(聖心)이 화평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진실로 온당(穩當)한 체모(體模)를 얻었다.” 하였다. 판부사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효묘(孝廟)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칠정(七情) 가운데 오직 노(怒)를 제어하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왕언(王言)이 위대하십니다. 신은 승선(承宣)의 말이 체통(體統)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귀주(金龜柱)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진실로 지나치십니다. 정자(程子)는 대현(大賢)인데 오히려 사냥을 구경한 일이 있었고, 안자(顔子)는 아성(亞聖)인데도 석 달 뒤에는 인(仁)을 어겼으니, 사람으로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되지 어찌 이와 같이 겸양(謙讓)하여 미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가납(嘉納)하였다. 물러가기에 미쳐서 그 말이 절실하고 지극하다 하여 특별히 호피(虎皮)를 내려 주었는데, 그를 총애한 때문이었다. 명하여 이번 진연(進宴) 때 진작(進爵)한 재신(宰臣)인 영의정·영중추·영돈녕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씩을 내려 주게 하고, 금성위(錦城尉)17352)에게 구마(廐馬) 1필, 주원 도제거(廚院都提舉)에게 구마 1필을 아울러 면대하여 주었다. 그 나머지에게도 말을 내려 주었는데, 진연청 당상·낭청, 감조관(監造

中，惟怒難制’，大哉王言也！臣以承宣之言，爲得矣。” 上曰：“予非聖人，安能如是？” 龜柱曰：“聖教誠過矣。程子大賢也，猶有觀獵之事，顔子亞聖也，違仁於三月之後，人孰無過？改之爲貴，何心如是退托也？” 上嘉納之。及退，以其言之切至，特賜臯比以寵之。命今番進宴時進爵宰臣領議政領中樞領敦寧，各鞍具馬一匹，錦城尉廐馬一匹，廚院都提舉廐馬一匹竝面給。其餘賜馬，進宴廳堂上郎廳監造官，進花承旨次知，廚院提調提舉，中官以下郎廳贊儀以下，皆依丙戌年例舉行。又命耆社諸臣入侍，賜饌，問耆社宴期，令依甲子前例賜樂。

	<p>官), 꽃을 바친 승지와 차지(次知), 주원 제조·제거, 중관 이하와 낭청·찬의 이하에게는 모두 병술년(1735)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또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에게 입시하도록 명하고 찬품(饌品)을 내려 주었으며, 기사연(耆社宴)의 기일에 대해 물어 본 다음 갑자년(1734)의 전례에 의거하여 음악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2월 27일(경진) 2번째기사          승정전에서 기민을 소견하고 음식 등을 주도록 명하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기민(耆民)을 소견하였는데, 그 수(數)가 1천 2백 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많다.” 하고, 음식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용호영(龍虎營)에 명하여 세악(細樂)을 주어 데리고 가도록 하였으니, 모두 기뻐하여 돌아갔다.</p>	<p>上御崇政殿召見耆民，其數千二百人。上曰：“多矣。”命賜饌。命龍虎營給細樂，使率往，盡歡而歸。</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3월 14일(정유) 2번째기사          능역을 심봉한 승지에게 스스로 와서 역사를 도운 백성이 있는지를 묻다</p>	<p>임금이 능역(陵役)을 봉심(奉審)한 승지를 소견하고 경외(京外)의 백성 가운데 스스로 와서 역사를 도운 자가 있었는지 물어 보니, 승지가 깊은 인애(仁愛)와 두터운 은택(恩澤)이 백성들에게 두루 미친 까닭에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역사를 도왔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때 보토(補土)하는 역사가 매우 컸는데 임금이 역사를 속히 마치고 싶어 하니, 일을 맡은 자가 술과 음식을 사용하여 경외(京外)의 한잡인(閑雜人)들을 모집하고는 스스로 왔다고 일컬고, 또 그 명수(名數)를 많이 속여서 아뢰었는데, 임금이 번번이 믿고 그렇게 여긴 것이었다.</p>	<p>上召見陵役奉審承旨，問京外民自來助役者，承旨對以深仁厚澤浹于民，故民自來也。上曰：“百姓庶無負我者矣。”時，補土之役甚巨，而上欲其速畢，任事者用酒食募京外閑雜人，稱爲自來，又多張其名數以聞，上輒信以爲然也。</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5월 5일(병술) 2번째기사          관경대에서 보리 베는</p>	<p>임금이 관경대(觀耕臺)에 나아가 보리 베는 것을 살펴보고, 친히 맥상(麥箱)을 받아 돌아와서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진(眞殿)에 바치고, 밤이 되어 환궁(還宮)하였다.</p>	<p>上幸觀耕臺，觀刈麥，親受麥箱，歸詣昌德宮薦于眞殿，侵夜還宮。</p>

<p>것을 살피고, 맥상을 창덕궁 진전에 바치다</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6월 9일 (기미) 1번째기사 백발이 검어지고, 이가 다시 난다 하니 신하들이 종사의 경사라고 하다</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간 정운유(鄭運維), 집의 이육(李瑄)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택하지 않았다. 임금의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백발(白髮)이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니, 기이한 일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종사(宗社)의 경사입니다.” 하였다. 약방에 명하여 다시 입진하게 하고, 상경한 수령을 소견하여 농사 형편을 물어 보았다.</p>	<p>己未/引見大臣備堂。大司諫鄭運維、執義李瑄申前啓，竝不允。上謂諸臣曰：“白髮復黑，落齒復生異矣。”對曰：“宗社之慶也。”命藥房再入診，召見上京守令，問農形。</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6월 11일(신유) 1번째기사 기사의 고적을 행하다. 서사로서 회혼례를 지낸 사람들을 소견하다</p>	<p>임금이 기사(耆社)의 고적(考績)을 행하였다. 임금이 기사신(耆社臣) 이익정(李益炆) 등 이하 모두 9인을 불러 근력(筋力)이 쇠약한지 왕성한지에 대해 물으니, 각각 진대(進對)하였다. 임금이 친히 등제(等第)를 부르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이를 쓰게 하였는데, 내수(內豎)가 진찬(進饌)하였다. 임금이 네 글자의 글로 각각 1구씩 지어 나누어 주고 즉시 화답하여 올리게 하자, 차례로 일어나서 절하고 다투어 붓과 벼루를 취하여 써 올렸다. 정형복(鄭亨復)이 가장 늙어 말이 간삽(艱澁)하였으나, 오히려 능히 면계(勉戒)하는 뜻을 훌훌(吃吃)하면서도 마지않았을 때, 임금이 말하기를, “노인의 말이 매우 좋으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서(士庶)로서 회혼례(回婚禮)를 지낸 사람들을 소견하고 각각 주백(紬帛) 【명주와 비단.】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辛酉/行耆社考績。上召耆社臣李益炆等以下凡九人，遍問筋力衰旺，各進對。上親呼等第，命有司堂上書之，內豎進饌。上又爲四字文各一句分賜，命卽席廣進，以次起拜，爭取筆硯而書。鄭亨復老最甚，語言艱澁，猶能以勉戒之意，吃吃不已，上曰：“老人之言甚善，可不銘念。”召見士庶人過回婚禮者，各賜紬帛及肉。</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6월 12일(임술) 1번째기사 송절차를 올리지 말</p>	<p>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제부터 다시는 송절차[松節茶]를 올리지 말라고 명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범질(范質)의 시(詩)에 술을 경계한 말이 절실하다. 기운이 날로 더욱 쇠약해 지는데 양주(釀酒)를 금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상저(象箸)를 만들었다가 나</p>	<p>壬戌/引見大臣備堂。命自今勿復進松節茶，仍下教曰：“范質詩戒酒之言切實。氣日益衰而不禁釀酒，象箸而玉盃，涓涓而江海。自今日特寢封進，勿復釀焉。”執義李瑄·獻納趙重明申</p>

<p>것과 양주를 금할 것을 하교하다</p>	<p>중에는 옥배(玉杯)를 만들게 되어 졸졸 흐르는 물이 마침내 강과 바다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특별히 봉진(封進)을 정침(停寢)할 것이니, 다시는 양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집의 이육(李堉), 헌납(獻納) 조중명(趙重明)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택하지 않았다.</p>	<p>前啓, 竝不允。</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6월 20 일(경오) 1번째기사          덕유당에서 적전의 서속을 받다. 빈객 조명정은 권강에 만 힘쓰게 하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친히 적전(籍田)의 서속(黍粟)을 받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빈객(賓客) 조명정(趙明鼎)이 서연(書筵) 때 문의(文義)를 잘 부주(敷奏)하였으니, 그의 여러 직임을 우선 체차(遞差)하고, 오로지 권강(勸講)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아경(亞卿)이 이 직임을 행하였는데, 근래에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비록 아경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문임(文任)을 거친 자는 일체로 비의(備擬)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간 정운유(鄭運維)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조금 전에 형조의 살옥 죄인(殺獄罪人) 손정복(孫正福)을 감사(減死)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삼척(三尺)의 법(法)이 지극히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저 살해당한 사람은 유독 무슨 죄란 말입니까? 청컨대 감사하라는 명을 도로 정침하소서.”          하였다. 집의 이육(李堉)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택하지 않았다.</p>	<p>庚午/上御德游堂, 親受籍田黍粟, 還內。引見大臣備堂。領議政洪鳳漢言: “賓客趙明鼎, 書筵文義善於敷奏, 宜姑遞其諸任, 使之專意於勸講。”上從之。仍教曰: “昔則亞卿, 皆爲此任, 近者一無聞焉。雖亞卿, 曾經文任者, 使之一體備擬。”大司諫鄭運維申前啓, 不允。又啓.. “俄者刑曹殺獄罪人孫正福減死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殺人者決不可容貸。彼被殺者, 獨何辜? 請還寢減死之命。”執義李堉申前啓, 竝不允。</p>
<p>영조 112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6월 25</p>	<p>충청 수사 서명응(徐命膺)을 승진시켜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정사 한광회(韓光會)가 탄핵(彈劾)을 받아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영상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乙亥/命陞忠清水使徐命膺爲冬至正使。時正使韓光會被彈不肯行, 領相洪鳳漢言: “當品中無可往者。”上特</p>

<p>일(을해) 1번째기사 충청 수사 서명응을 동지 정사로 삼고, 영 보정 등을 그려 바치 게 하다</p>	<p>“당품(當品) 가운데 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서명응을 특별히 정사로 삼도록 명하였다. 대개 서명응이 평소 문형(文衡)과 전조(銓曹)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탄핵을 입었으므로, 상소하여 휴치(休致)하기를 원하여 오랫동안 출사(出仕)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비록 외임(外任)에 보직(補職)하였으나, 그를 임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옛사람이 유민(流民)을 그려서 바친 자가 있었다. 일찍이 탐라 어사(耽羅御史) 심성희(沈聖希)가 전복[鰻] 캐는 모양을 그려서 바친 것을 보고 그 캐기 어려운 것을 알았다. 지난번에 들건대 내국에서 바친 것도 또한 이 정자 앞에서 켜다고 하니, 전 충청 수사로 하여금 영보정(永保亭)을 그리고, 겸하여 전복을 캐는 모양을 그려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p>	<p>除命膺爲正使。蓋命膺常以文衡銓曹，被彈於人，上疏乞休致，久不仕。上怒雖黜之於外，然意欲用之，有是命。仍教曰：“古人有圖進流民者。曾見耽羅御史沈聖希圖進採鰻狀，知其難採。頃聞內局所進，亦採於此亭前云，令忠清前水使，圖永保亭，兼畫採鰻以進。”</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7월 10 일(경인) 1번째기사 신희가 제향에 쓰이는 비자·표고를 선혜청에 서 진배하는 일에 대 해 아뢰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봉상 제조(奉常提調) 신희(申晦)가 말하기를, “제향(祭享)에 쓰이는 비자(櫃子)·표고(藁古)는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던 것인데, 정봉(停封)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마땅히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공가(貢價)를 주어 진배(進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헌(貢獻)은 비록 정지하였으나, 제물(祭物)을 어떻게 이와 같이 하겠는가?” 하고, 정봉하지 말라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김양택(金陽澤)이 형조 판서 홍중효(洪重孝)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는데, 홍중효가 외방에 있으면서 후반(候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p>	<p>庚寅/藥房入診。上引見大臣備堂。奉常提調申晦言：“祭享所用櫃子·藁古，乃濟州封進者，而有停封之教，宜令惠廳，給貢價進排。”上曰：“貢獻雖停，而祭物豈若此？”命勿停封，永爲定式。左議政金陽澤，請刑曹判書洪重孝罷職，允之。重孝在外，不參候班故也。</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7월 11</p>	<p>약방에서 두 번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모년(暮年)에 세 번이나 병이 나왔으니 이미 뜻밖의 일이며, 어제 갑오 일기(甲午日記)를 듣고 일어나는 감회가 매우 절실하였다. 이미 은연중에 도와주</p>	<p>藥房再入診。教曰：“暮年三愈，已是料表，昨聞《甲午日記》，興懷采切。既受陰隲，何待草記？告廟頒教，依例</p>

일(신묘) 3번째기사 갑오 일기를 고묘하고 반교할 것을 명하다	심을 받았으니, 어찌 초기(草記)를 기다릴 것인가? 고묘(告廟)하고 반교(頒敎)하는 것을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舉行。”
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8월 13 일(임술) 3번째기사 좌상 김양택 등이 상 소한 유생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쳤음을 아 뢰니 꾸짖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상소한 유생의 일 때문이었다. 하교하기를, “오늘 감선(減膳)하고자 하였는데, 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좌상 김양택(金陽澤)과 우상 김상철(金相喆)이 상소한 유생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침을 말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上引見大臣備堂，以疏儒事。 下敎曰：“今日欲減膳而未果矣。” 左相金陽澤，右相金尙喆，欲言疏儒處分之過，見上厲聲，惶惕不敢發口。
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8월 20 일(기사) 2번째기사 연화문에 나가 대신들 의 입시를 명하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입시하도록 명하니, 여러 대신들이 바야흐로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울러 모두 들어가서 보고 약을 올리기를 청하자, 마침내 일어나서 내전으로 돌아갔다.	上御延和門，命大臣入侍，諸大臣方胥命，并皆入見，請進藥，遂起而還內。
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9월 5일 (갑신) 2번째기사 천둥과 우박을 재변이 라 하고 감선을 명하 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둥하고 우박이 내리는 재변(災變)은 바로 나의 허물이다.” 하였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전하의 허물이겠습니까? 신 등이 우러러 답하지 못한 소치(所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3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고, 대신(臺臣)이 소명(召命)을 어겼다 하여 아울러 삭직(削職)하게 하였다.	藥房入診。 上引見大臣備堂。 上曰：“雷電之災，是予之咎。” 領議政洪鳳漢曰：“此豈殿下之咎？ 乃臣等不能仰答之致。” 上命減膳三日，以臺臣違召，並削職。
영조 113권, 45년	임금이 덕유당(德游堂) 뜰에서 적전(籍田)의 기장과 콩을 친히 받았다. 임금이	上親受籍田稷豆於德游堂庭。 上具翼

<p>(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9월 13일(임진) 3번째기사 덕유당에서 적전의 기장과 통을 직접 받다</p>	<p>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계단을 내려가 서자, 봉상시 제조 신회(申晦)가 상자(箱子)를 받들어 꿇어앉아 도승지에게 주었다. 도승지가 꿇어앉아 받아서 바치니, 임금이 꿇어앉아 받아서 중관(中官)에게 주어 받들고 들어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전에 심은 것은 모두 몇 종류인가?” 하니, 신 회가 말하기를, “대맥(大麥)·소맥(小麥)·서(黍)·직(稷)·조·벼 등입니다.” 하였다.</p>	<p>善冠袞龍袍，下階立，奉常提調申晦，奉箱子跪，傳于都承旨。都承旨跪受獻御，上跪而受之，授中官奉入。上曰：“籍田所種，凡幾種耶？”晦曰：“大小麥黍稷粟稻矣。”</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9월 21일(경자) 2번째기사 천둥의 이변 때문에 3일간의 감선을 명하다</p>	<p>임금이 천둥의 이변(異變) 때문에 3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국세(局勢)를 돌아보고 기강(紀綱)을 살펴보건대, 한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인애(仁愛)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달 안에 세 번이나 경계를 보이니, 스스로 힘쓰는 도리에 있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는가? 대소 신공(臣工)들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어제의 마음을 씻어내고, 나 쇠약한 임금을 보도(輔導)하고 나의 방국(邦國)을 보좌(輔佐)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以雷異，命減膳三日，因教曰：“顧國勢察紀綱，無一可恃，以仁愛之心，何不驚予？一朔之內三示警，自強之道，何可含默？吁嗟大小臣工，諒予心滌昨日之心，輔我衰君，輔我邦國。”</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 (乾隆) 34년) 9월 25일(갑진) 4번째기사 유신을 불러 《경세문답》을 강하고, 근래에 해괴한 일에 대해 하교하다</p>	<p>유신을 불러 《경세문답(警世問答)》을 강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근래에 모든 일에 해괴한 것이 많다. 옛날에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정시(庭試)를 설행할 때 내시 교관(內侍敎官)이 만약 장원봉(壯元峰)에 들어오면, 내시 학도(內侍學徒)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베풀어 대접하였으니, 이것이 옛날 풍습이었다. 근래에는 범람(汎濫)한 내학도(內學徒)가 유의(儒衣)와 유건(儒巾)을 착용하고 통양문(通陽門) 안에서 맞아들이는데, 지나간 해에는 기정일(寄井一)의 일이 있었으므로, 그후 중관(中官)에게 엄중히 신칙(申飭)하였었다. 제복(祭服)은 옛날에는 패옥(佩玉)이 없었는데, 한번 패옥을 신칙하고부터 중관들도 또한 차고 있으니, 나는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중관들이 반드시 조복</p>	<p>召儒臣，講《警世問答》，仍教曰：“近者凡事多怪駭者。昔則春塘臺庭試時，內侍敎官若入壯元峰，則內侍學徒，於此處設饌以待，此古風也。近者汎濫內學徒，着儒衣巾，通陽門內迎入，頃年有奇井一之事，故其後嚴飭中官。祭服古則無佩玉，一自玉佩申飭，中官亦佩，予以爲此道一開，中官必欲着朝服故禁之。曾聞魚鮮，若有用者，</p>

	<p>(朝服)을 입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에 이를 금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어선(魚鮮)은 만약 쓰는 자가 있으면 값을 주고 가져다 썼는데, 근래에는 곧바로 패자(牌子)를 써서 가져다 쓴다고 한다. 아! 공인(貢人)을 설치한 것은 중관을 위한 것이 아니니, 한심(寒心)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비록 어공(御供)이 하루에 다섯 차례 11두의 생선이라 하나, 나는 평소 말하기를, ‘어떻게 잇델 수 있겠는가?’ 하였었다. 그런데 어공(御供)이 아닌데도 20여 명의 중관들이 값도 없이 가져다 쓰고,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탈을 잡아 조종하니, 공인(貢人)들은 어떻게 지탱할 수 있으며,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찌 다만 어선(魚鮮)뿐이겠는가? 무릇 공사(公事)에 있어서 지필묵(紙筆墨)을 내리는 것은 각사(各司)에서 정식(定式)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내가 경자년(1742)에 석 달 동안 예문관에서 있었고 한 달 동안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도 또한 필(筆) 2자루, 묵(墨) 1개에 지나지 않았었다. 궐내(闕內) 각처에 진배(進排)하는 것은 으레 원수(元數)를 봉진(封進)하는데, 기타 외람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섯 배가 되고 있다 한다. 일찍이 듣건대 필공(筆工) 가운데 자살(自殺)하는 자가 있고, 또한 손가락을 자르는 자도 있다고 하니, 생각하면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다. 이후에는 제처(諸處)에 엄중히 신칙하고, 외람되게 받아들이는 자는 해조(該曹)에서 듣는 대로 초기(草記)하여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라. 또 꼬리를 자른 생선을 어떻게 다시 어공(御供)에 쓰겠는가? 이것은 또한 중관이 사사롭게 쓰려는 계제이니, 도설리 중관(都薛里中官)에게 엄중히 신칙해서 다시 물리치지 못하게 하라.”</p> <p>하였다.</p>	<p>給價取用，近則直爲牌子取用。噫！設貢非爲中官，可勝寒心？雖御供一日五度十一頭生鮮，予常曰，何能繼之云？非御供而二十餘中官，無價取用，若不若意，執頭操縱，貢人其何支當，吾民何以措手足？豈特魚鮮？凡公事下紙筆墨，各司不過定式，而予庚子三朔，藝文館，居廬一朔，亦不過筆二墨一。而闕內各處進排者，例封元數，而其他濫捧者，卽五倍。曾聞筆工有自裁者，亦有斷指者，思猶矜惻。此後嚴飭諸處，濫捧者該曹隨聞草記嚴處。且截尾魚鮮，何復用於御供？此亦中官欲私用之階梯，嚴飭都薛里中官，不敢復退。”</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0월 14일(임술) 2번째기사</p>	<p>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듣건대 울릉도(鬱陵島)에서 나는 인삼(人蔘)을 상고(商賈)들이 몰래 들어가서 채취한다고 하니, 왜인(倭人)들이 만약 이를 안다면, 아마도 쟁상(爭桑)의 근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p>	<p>領議政洪鳳漢奏曰：“聞鬱陵島產人蔘，商賈潛入採之，倭人若知之，恐有爭桑之患矣。”仍請曰：“我國文獻不足，今於鬱陵島事，無所考證。自今博採</p>



<p>홍봉한이 울릉도의 일을 널리 고증하여 책자를 만들 것 등을 아뢰니 윤허하다</p>	<p>하고, 이어서 청하기를,  “우리 나라의 문헌(文獻)이 부족하여 지금 울릉도의 일에 있어 고증(考證)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후의 문적(文蹟)을 널리 채택하여 한 책자(冊子)를 만들어서 사대(事大)·교린(交隣)의 문자(文字)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윤허하였다. 홍봉한이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배가 뒤집혔을 때 군관 구협(具峽)이 어사(御史)를 안고 한 길[丈]쯤 되는 급수선(汲水船)에 뛰어내려 6, 7인이 이를 힘입어 살았는데 모두 구협(具峽)의 공(功)이니, 거두어 서용(敍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지나간 해에는 민제장(閔濟章)이 통신사(通信使)의 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까닭에 승자(陞資)하였었다. 또 구협(具峽)이 일찍이 참군(參軍)으로서 출륙(出六)되지 않았다고 하니,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오위장(五衛將)을 삼아 한 사람을 권장하여 백 사람을 면려(勉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p>	<p>前後文蹟，作一冊子，以爲事大交隣文字好矣。”上允之。鳳漢又奏：“濟州覆船時，軍官具峽，抱御史而跳下丈許，汲水船所率六七人賴而得生，皆峽之功也。收用似好矣。”上曰：“昔年閔濟章以通信使軍官，能活多人而陞資。且峽曾以參軍，未出六云，特爲加資爲五衛將，獎一勳百焉。”</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1월 13일(신묘) 2번째기사  제주의 공인을 소견하고 선혜청에 명하여 양식을 주어 보내게 하다</p>	<p>임금이 제주(濟州)의 공인(貢人)을 소견하고, 선혜청(宣惠廳)에 명하여 양식을 주어서 보내게 한 다음 말하기를,  “이들은 옛날 선조(先朝)께서 애홀(愛恤)하던 백성들이다. 자성(慈聖)께서 신축년(1744)에 명정전(明政殿)에서 쌀과 음식을 내려 주시던 일을 내가 친히 보았고, 정축년(1747)의 능역(陵役) 때 도민(島民)들의 지극한 정성은 나도 또한 눈으로 보았던 일이었다. 지금 온 공인들에게 어떻게 단지 전례만 끌어 대겠는가?”  하고, 전례 외에 쌀을 더 내려 주게 하였다.</p>	<p>上召見濟州貢人，命惠廳給糧以遣之，曰：“此昔年愛恤之民也。慈聖辛丑年明政殿賜米膳，予所親觀，丁丑陵役時，島民至誠予亦目觀。今此來貢，豈只援例。”例外加賜米。</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1월 22일(경자) 3번째기사</p>	<p>호삼(胡蔘)의 매매(賣買)를 금하였다. 이때에 인삼값이 올라서 북경(北京)에서 호삼(胡蔘)을 사 오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실상은 진삼(眞蔘)이 아니었다. 약방도제조 한익모(韓翼謨)가 이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만, 만약 부모의 병에 잘못 쓴다</p>	<p>禁胡蔘之買賣者。時，人蔘價躉，多有貿來北京胡蔘者，而其實非眞蔘也。藥房都提調韓翼謨爲之言，上曰：“人之自服猶可，若誤用於父母之病，孝子</p>

<p>호삼의 매매를 금하고 신칙하여 사신에게 사오지 못하게 하다</p>	<p>면, 효자의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중외(中外)에 엄중히 금하도록 유지하고, 또 사신에게 신칙해서 사오지 못하게 하였다.</p>	<p>之心當如何？遂諭中外嚴禁，又飭使臣，毋得貿來。</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1월 25일(계묘) 1번째기사 개양문을 유문으로 하고 거지들을 모아 선혜청에서 죽을 먹일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군병들을 불러 들여 죽(粥)을 내려 주고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 월대에서 소견한 뜻을 본받은 것이다.” 하였다. 이날 밤에 하교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이와 같이 추우니, 개양문(開陽門)을 유문(留門)17455) 하고, 선전관은 종가(鍾街)에 나아가 유랑하는 거지들을 모아 선혜청(宣惠廳)에 보내어 죽을 베풀어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p>	<p>癸卯/上御崇政殿東月臺，召入直軍兵，賜粥曰：“此體昔年月臺召見之意也。”是夜教曰：“今日日寒如此，開陽門留門，宣傳官出往鍾街，聚流丐，付惠廳設粥饋之。”</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1월 26일(갑진) 1번째기사 각사의 구임 낭청과 양주 목사를 인견하고 직장(職掌)과 적정에 대해서 묻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주강을 행하였다. 각사(各司)의 구임 낭청과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인견하고 직장(職掌)과 적정(稷政)에 대해 물어 보았다. 숙위군(宿衛軍)에게 죽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고, 금위장(禁衛將)에게 선교(宣敎)하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추운데, 잘 입직(入直)하는가?” 하고, 임금이 죽을 진어(進御)하고, 또 군사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게 한 것이었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것은 임금이 내려 주신 것이니,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나아가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p>	<p>甲辰/藥房入診。行晝講。引見各司久任郎廳及楊州牧使，問職掌及稷政。命頒粥宿衛軍，宣教于禁衛將官曰：“日寒如此，好爲入直耶？”上進御粥，又頒粥。領議政洪鳳漢曰：“此君賜也，諸臣以次就食宜矣。”</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1월 30일(무신) 1번째기사 태묘의 삭제에 쓸 향</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태묘(太廟)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지영(祇迎)하였다. 다시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조강을 행하고, 하직하는 수령(守令)을 소견하였다. 또 승보시(陞補試)에 뽑힌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지은 글을 외어 아뢰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유생은 곧 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의 손자이었다. 하교하기를,</p>	<p>戊申/上祇迎太廟朔祭香于延和門外。還御崇政殿，行朝講，召見下直守令。又召陞補被抄人，令誦奏其所製文，其中一儒生，卽故副提學李秉泰之孫也。教曰：“其祖於戊申年爲承旨，其孫今</p>

<p>을 지영하다</p>	<p>“그 할아버지가 무신년(1746)에 승지가 되었었는데, 그 손자가 이제 무신일(戊申日)에 전중(殿中)에 입시하였다. 아! 그 할아버지의 청백(清白)함을 내가 항상 감탄하여 상주하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청빈하였거늘 더욱이 그 손자이겠는가? 그 조모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하는데, 해가 장차 저물어 가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세찬(歲饌)을 내려 주게 하여 그 조모를 봉양하게 하라.” 하였다. 정언 이계(李淮)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戊申日，入侍殿中。噫！其祖之清白，予常歎賞，其祖猶貧，況其孫乎？其祖母尙存云，歲律將暮，令該曹特賜歲饌，其令養其祖母。” 正言李淮申前啓，不允。</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2월 7일(을묘) 2번째기사 탕약의 정지를 명하였으나 홍봉한 등의 청으로 마지못해 올리게 하다</p>	<p>임금이 탕약(湯藥)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청대(請對)하여 탕약을 진어(進御)하기를 권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차라리 어선(御膳)은 빠뜨릴 수 있지만, 탕제(湯劑)를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잇달아 아뢰며 힘껏 청하니, 비로소 마지못해 올리도록 하였다.</p>	<p>上命停藥。諸大臣請對勸進藥，不許。洪鳳漢曰：“寧可闕御膳，不可停湯劑。”迭奏力請，始勉進之。</p>
<p>영조 45년 12월 11일</p>	<p>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고 제도의 구포를 견감해 주었다. 유사에 명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주도록 하였다.</p>	<p>원문 없음.</p>
<p>영조 113권, 45년 (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2월 19일(정묘) 1번째기사 대신들의 만류로 탕제를 진어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기 싫어하여 사교(辭敎)가 몹시 엄하니 못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의혹해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모두 진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는가?” 하였는데, 모두 일제히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도(常道)를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볼 수 있다.”</p>	<p>丁卯/上引見大臣備堂。上厭進湯劑，辭敎截嚴，群臣惶惑。上曰：“卿等皆以爲不可不進乎？”皆齊聲曰：“然矣。”上曰：“可見秉彝心。”遂進之。大司諫鄭運維申前啓，不允。持平柳薰申前啓，不允。</p>

	하고, 마침내 올리게 하였다. 대사간 정운유(鄭運維)가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지평 유훈(柳薰)이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영조 45년 12월 25일	임금이 (중략) 용두-봉미의 진찬과 아황·죽엽의 미주를 갖추는 옛규례는(후략)	
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월 2일 (경진) 3번째기사 서울의 사민과 걸인을 불러 쌀을 내리다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가 서울의 사민(四民)17477) 및 걸인을 불러 모으고, 각각 차이를 두어 쌀을 내렸다. 호조 판서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걸인이 이와 같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 요즈음 간사한 것이 점점 늘어 부당하게 받는 자가 있을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나의 적자(赤子)17478) 이니, 비록 부당하게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울 게 있겠는가?” 하니, 정홍순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上御興化門，招集京中四民及流丐，各賜米有差。戶曹判書鄭弘淳曰：“流丐不至如此之多，而近日奸僞漸滋，恐有冒受者矣。”上曰：“均吾赤子，縱有冒受，何傷之有？”弘淳有慙色。
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월 25일(계묘) 1번째기사 내의원과 기로소에서 봉진하는 타락죽을 정지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주장에 나아갔다. 절후(節候)는 조금 이르나 봄갈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의원(內醫院) 및 기로소(耆老所)에서 봉진(封進)하는 타락죽(駝酪粥)을 정지하라 명하고, 그 어미소도 송아지와 함께 곧 놓아주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에 의지하는데, 농사에 가장 긴요한 것은 소이다.” 하고, 이어 장면(蔣冕)17524)의 노우시(老牛詩)를 외우고, 말하기를, “소는 사람을 위하여 일생 동안 근로(勤勞)하였음에도 사람은 그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도살(屠殺)하니, 이것이 과연 인술(仁術)인가? 일찍이 듣건대 어떤 고 상신(相臣)이 소의 도살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러 신하에게 선은(宣醢)17525) 함에 있어 쇠고기는 차리지 않았다. 내가 내반원(內班院)17526)에서 해마다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癸卯/上御畫講。以節候差早，春耕不遠，命停內局及耆社封進酪粥，其犝牛亦令并犢即放。又教曰：“國依於民，民依於農，而農之最緊者牛也。”仍誦蔣冕老牛詩曰：“爲人終身勤勞，而人則莫知其勞而屠宰，是果仁術歟？曾聞一故相，以禁宰牛，不食其肉。而昔則諸臣宣醢，不設牛肉，予之禁內班院歲屠，及每春入直軍犢饋，例屠四牛，而近皆除之，亦此意也。”遂有是命。

	<p>봄마다 입직(入直)하는 군사에게 호궐(犒饋)함에 있어 으레 4필의 소를 잡았는데, 요즘 모두 폐지시킨 것도 이러한 뜻이다.”</p> <p>하고,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p>	
<p>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 (乾隆) 35년) 1월 26 일(갑진) 2번째기사 형조에 술을 많이 빚는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주등 켜는 것을 금하게 하다</p>	<p>임금이 주장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鼎)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p> <p>“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p> <p>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p> <p>“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隸)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p> <p>“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1752) 이전보다 심합니다.”</p> <p>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는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 17530) 켜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p>	<p>上御晝講。 承旨趙鼎有酒氣， 上曰：“莫重講筵， 參贊官有酒臭， 施以不敍之典。” 上問左議政韓翼謨曰：“外間酒流生禍， 頗不貲乎？” 翼謨對曰：“聖問及此， 生民之幸也。 國家只祀典用酒， 而民間則尋常宴飲， 皆沈湎， 巨釀相續， 酗酒狼藉矣。” 上曰：“承旨嗜酒， 故院隸亦醉， 至於凌辱掖屬， 國綱攸關， 不可不嚴處。” 於是杖流其尤無良不悛者。 上又臨門， 召見各坊父老， 或曰：“酒弊甚於丙子以前。” 令刑曹， 杖其大釀者， 又禁酒燈， 然竟莫能禁也。</p>
<p>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p>	<p>장령 최민(崔暹)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근래 여러 신하들이 시무(時務)를 말하고 군덕(君德)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p>	<p>掌令崔暹上疏， 略曰：“近來諸臣之說時務論君德者， 必須先</p>

(乾隆) 35년) 2월 7일  
(갑인) 3번째기사  
장령 최민이 소의 도살과 소나무의 남벌을 금할 것에 관한 상소를 올리다

먼저 몇 마디의 좋은 말을 하다가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을 만들어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조금도 모가 나지 않게 되어야만 비로소 감히 올리게 되며, 조금이라도 말이 정상적인 투식(套式)에서 벗어나거나 뜻이 순평(順平)하지 않으면 문득 성색(聲色)을 드러내어 지나치게 견책(譴責)을 가하십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나 마침내는 뜻밖의 하교를 만나게 되니, 여러 신하들이 장차 자신과 가정에 무슨 이익이 된다고 임금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 하겠습니까? 탕제(湯劑)를 돌보아 드릴 때면 물리치라 명하시고, 옛일을 본받아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아뢰면 문득 책벌(責罰)을 내리시며, 사기(辭氣)의 가운데 중도(中道)에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시고, 거조(擧措)의 즘음에는 간혹 타당성을 잃으시니, 신은 가만히 천지(天地)와 같은 크신 덕(德)에 섭섭함이 없지 않습니다. 무릇 소[牛]의 도살(屠殺)과 소나무의 남벌(濫伐)은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바로서 수령(守令)들이 소를 도살하는 경우 죄가 파직에까지 이르고, 산 소나무 한 그루를 베면 죄가 전가 사변(全家徙邊)17539)의 율로 되어 있으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엄중함을 진실로 알 수 있을 것인데, 나라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소의 도살은 더욱 심하고 소나무의 벌채(伐採)는 갈수록 늘어나니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식자(識者)들이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아! 산림 천택(山林川澤)에 대한 정책은 삼대(三代) 때에 소중히 여긴 바이니, 벌채를 때에 맞추어 하게 되면 생존한 자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葬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근년의 충재(蟲災)를 입은 뒤부터 더욱 신칙함이 마땅합니다. 경우(耕牛)에 있어서는 곧 농사짓는 근본인데, 그 힘을 부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군자(君子)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는 ‘흉년은 소를 도살한 소치(所致)이다.’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가엾게 여긴 간절한 말입니다. 요즈음 금패(禁牌)를 거두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렸는데, 이는 대체로 백성들과 같이 즐기려는 성대한 뜻이며, 사포(賜

下幾句好語，宛轉說去，左看右看，一無圭角，然後始敢投進，一或有語非常腐，意不陳冗，輒示聲色，過加譴斥。初出愛君之忱，終遭情外之教，諸臣將何所利於身家，而必陳逆耳之言哉？保護湯劑時，命退却，效古繳覆，輒施譴罰，辭氣之間，未免過中，舉措之際，或致失當，臣竊不能無憾於天地之大也。夫牛松，國之大禁，守令宰殺，罪至罷官，生松一株，律有徙邊，大典之重，固可知矣，國綱漸弛，民不畏法，屠殺益甚，斧斤轉酷，瞻聆俱駭，有識寒心。噫！虞衡之政，三代所重，斧斤以時，可以養生送死。況自頃年蟲災以後，尤宜申飭。至於耕牛，即稼穡之本，勞其力而屠其肉，君子之所不忍。故程子至以年凶爲殺牛之致，此誠惻怛切至之言也。比來收牌之命屢下，此蓋同樂之盛意，出於賜酺之遺意。下民頑蠢，狃於無禁，私自椎屠，殆同日攘，不但有害於耕作，抑亦大關於紀綱，申加痛禁焉。”  
批曰：“今者附陳，可見愛君。纔申飭內局，駱粥亦命停焉，意蓋此也。今則禁屠若前，豈有此弊？其於禁松，不

	<p>飮)17540) 의 전해 내려온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랫 백성들은 미련하고 무식하여 금하지 않는 데에 버릇이 되어 사사로이 도살하기를 거의 매일 처럼 하게 되니, 이는 다만 경작(耕作)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장에도 크게 관계가 되니, 거듭 통금(痛禁)을 가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p> <p>“지금 아뢴 내용에서 임금을 사랑함을 알 수 있다. 방금 내국(內局)17541)에 신칙하여 낙죽(駱粥)도 정지하라 명하였음은 뜻이 대체로 이에 있다. 지금은 도살의 금지를 전과 같이 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폐단이 있겠는가? 그 금송(禁松)에 있어서는 모리배(牟利輩)들을 엄금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흑시라도 이런 폐단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若嚴禁牟利之輩，其令備局，或有此弊，嚴加痛懲可也。”</p>
<p>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3월 27일(갑진) 6번째기사 거제의 고현면에서 여인들이 해독을 마시고 죽으니 홀전을 베풀게 하다</p>	<p>거제(巨濟)의 고현면(古縣面) 여인 37명이 해독(海毒)을 마시고 죽게 되었는데, 본도에 명하여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 이때에 해독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물고기·게·전복·조개를 먹은 백성은 번번이 절반쯤 죽어서, 통제사(統制使) 이국현(李國賢)이 반쯤 말린 전복을 봉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장계하였기 때문이었다.</p>	<p>巨濟古縣面女人三十七名，飲海毒致死，命本道恤典舉行。時海毒遍發，民之食魚蟹鮑蛤者輒中死，統制使李國賢，以半乾全鮑，不得封進之意，狀聞故也。</p>
<p>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5월 11일(정해) 1번째기사 동래 부사 이보관에게 대마도에 관심을 쓸</p>	<p>임금이 무신강(武臣講)에 친림(親臨)하였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보관(李普觀)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p> <p>“옛날 제갈양(諸葛亮)은 북쪽으로 위(魏)나라를 막고, 동쪽으로 오(吳)나라를 막았다. 방금 대마도(對馬島)가 조잔(凋殘)하다고 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는 가장 관심을 써야 할 곳이다.”</p> <p>하고, 신칙하여 보냈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문헌비고(文獻備考)》의</p>	<p>丁亥/上親臨武臣講。召見東萊府使李普觀，教曰：“昔諸葛亮，北拒魏，東拒吳。方今對馬島凋殘，於萊府最爲關念處也。”勉飭以遣。領議政金致仁奏，《文獻備考》進上件，當以壯紙印進，其餘以白紙印頒，而若印百餘</p>

<p>것을 신칙하여 보내다</p>	<p>진상(進上)할 건(件)은 마땅히 장지(壯紙)에 찍어서 올리고, 그 나머지는 백지(白紙)에 찍어서 반포해야 하는데, 만약 1백여 건을 찍으려면 그 경비가 곡식 수천 석이 된다고 아뢰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옛날 한문제(漢文帝)는 10여 가(家)의 산업(產業)이 된다 하여 오히려 백금(百金)을 아꼈다. 더구나 곡식 수천 석은 능히 몇천 사람을 살릴 수 있잖은가? 금번의 진상(進上)과 진헌(進獻)은 모두 백지에 찍어 올리라.”  하였다.</p>	<p>件，則其費當爲數千石矣，上曰：“昔之漢文，爲十室產，猶惜百金。況數千石，能活幾千人乎？今番進上進獻，皆以白紙印進。”</p>
<p>영조 114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윤5월 10일(을묘) 3번째기사  송정전 동쪽의 월대에서 천문 기상을 관측하다</p>	<p>임금이 송정전의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천문 기상(天文氣象)을 관측하니, 여러 대신(大臣)들이 탕제(湯劑)를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윤택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 한몸으로써 만백성을 대신하는 뜻으로 이미 하늘에 고하였다.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내 마음을 속임은 역시 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청하니, 그제야 윤택하였다. 관상감 관원 이덕성(李德成)의 입시를 명하고, 임금이 묻기를,  “객성(客星)이 옮긴 전도(躔度)17639)가 문광도(文光道)가 말한 것과 같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쪽 하늘가에 있으니, 수일 안에 소멸될 듯합니다.”  하였다.</p>	<p>上御崇政殿東月臺，測候諸大臣，請進湯劑。上不許曰：“以一代萬之意，已告蒼蒼。吾誰欺乎？欺吾心，亦欺彼蒼。”諸臣固請，乃許。命觀象監官員李德成入侍，上問：“客星所移躔度，若文光道之言乎？”對曰：“無矣。今居北方天際，數日內似消滅矣。”</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6월 29일(계묘) 2번째기사  풍후가 정상을 벗어났다 하여 감선을 명했다가 그만두다</p>	<p>풍후(風候)가 정상을 벗어났다하여 감선(減膳)을 명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이 그만둘 것을 굳이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p>	<p>以風候乖宜，命減膳，諸大臣固請還寢，從之。</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7월 9일 (계축) 2번째기사 북병사 이방수 등이 북도의 봉수를 살핀 일에 대하여 아뢰다</p>	<p>임금이 주장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무신(武臣) 장지항(張志恒)에게 명하여 북도에 가서 남병사·북병사와 함께 봉수(烽燧)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북병사 이방수(李邦綏)와 남병사 이한창(李漢昌)이 봉수를 살펴보고 나서, 급히 계문(啓聞)하기를, “북관(北關)에는 삼삼과보(森森坡堡)의 동봉(東峰)·모덕(牟德) 두 간봉(間烽)을 혁파하고 송봉(松峰)에다 하나의 새 봉수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목표에 전달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남관(南關)에는 안변(安邊)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 두 봉수의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므로, 노구봉(老媼峰)에다 하나의 봉수를 따로 설치하여야 되겠고, 철령과 회양(淮陽)의 마주 있는 봉수 사이에도 하나의 봉수를 더 설치하여야 되겠으며, 이성(利城)의 성문봉(城門烽)은 지형으로 보아 단천(端川)으로 이속(移屬)하고 무사(武士)와 무기(武器)는 입응치(立應峙)의 새 봉수로 옮겨 설치하고, 단천의 사기일언(沙器日彦) 봉화대를 혁파하고 역시 무사와 무기는 성문봉으로 옮겨서 두 고을의 증설에 따른 폐단을 덜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흥(永興)의 성황(城隍) 봉화대는 터전이 폭 빠져 있으니 또한 혁파하고 덕치(德峙)로 하여금 봉수로 하여금 바로 웅망산(熊望山) 봉화에다 목표를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또 봉화를 올리는 시한(時限)이 매번 저물녘이 되어서 천리길의 거리에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형편상 시한 안에 서울의 봉화대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맨 처음에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조금 앞당겨서 연기를 올려 목표에 전달을 하되, 날이 저문 뒤에는 불을 올려서 서로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무신 장지항(張志恒)을 보내어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연기를 올리도록 하는 것과 무신을 보내어 형편을 살피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의논이 모두 일치하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御書講, 引見大臣備堂, 命武臣張志恒, 往北道, 與南北兵使, 看審烽燧以來, 時北兵使李邦綏, 南兵使李漢昌, 摘奸烽燧後馳啓: “北關則請罷森森坡堡東峰牟德兩間烽, 而移設一新烽於松峰, 俾便傳準。南關則以安邊沙古介鐵嶺兩烽之間, 相距遼遠, 宜別設一烽於老媼峰, 鐵嶺之於準陽對烽之間, 亦宜加設一烽, 利城之城門烽, 因地形屬之〈端〉川, 移設其武士器械於立應峙新烽, 罷端川沙器日彦烽臺, 而亦移其武士器械於城門烽, 俾除兩邑加設之弊。永興城隍烽臺, 其址凹陷, 亦爲革罷, 而使德峙烽, 直準於熊望山烽火。” 又以舉火時限, 每值日暮, 千餘里轉應之際, 勢未及於京烽時限, 自火底差早, 舉烟傳準, 而日暮後舉火相應爲請。領議政金致仁奏之: “請遣武臣張志恒, 審視形便。” 上問舉烟與遣武臣便否於諸臣。議皆不一, 上曰: “烟氣有事時所用, 而平時以烟, 則有事時又將以何相應乎? 此則不必論也。” 後致仁所請, 遂有是命。致仁曰: “今秋幸行時, 凡事命依丙戌年舉行, 而其時水刺間之不待於晝停所。事體如何</p>
--	--	---

	<p>“연기는 사변이 발생할 때에 쓰는 것인데, 평상시에 연기로써 한다면 사변이 발생할 때는 또 무엇으로 서로 응하겠는가? 이 일은 논할 필요도 없다.”</p> <p>하였는데, 김치인의 소청을 따라서 마침내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김치인이 말하기를,</p> <p>“올 가을에 거동하실 때에는 모든 일을 병술년(1767)의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만, 그 때에는 수라간이 주정소(晝停所)에 대기하지를 앉았습니다. 사체(事體)가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난해 온천 거동 때에는 모든 도(道)의 다담(茶啖)을 다 그만두고 소채(蔬菜)까지도 모두 폐지하였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년에 어찌 민폐를 끼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p> <p>“경자년(1764) 6월 거려(居廬)(1765) 때에 공조(工曹)에서 붓 두 자루와 먹 한 장을 올렸기에, 내가 지금까지 싸 두고서 이것으로 거려 때의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 중관(中官)이 이러한 일로써 으레 향리(鄉里)에다 구하니 너무도 해괴한 일이다.”</p> <p>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p> <p>“성상의 생각은 하찮은 것에까지 미치지 않은 데가 없으시나 그에 따른 폐단이 참으로 그러합니다.”</p> <p>하였다.</p>	<p>矣?” 上曰：“昔年溫幸，諸道茶啖皆停，至於蔬菜，亦皆廢之。望八暮年，豈遺民弊也?” 仍教曰：“庚子六月居廬，工曹進二筆一墨，予至今裹置，以無忘居廬時事。中官以此膺求於鄉里，尤涉駭然矣。” 致仁曰：“聖〔慮〕無微不至，而其弊則誠然矣?”</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8월 1일 (갑술) 1번째기사 어의동·연경방·경운궁</p>	<p>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어의동(於義洞)·여경방(餘慶坊)·경운궁방(慶運宮坊)·사재감계(司宰監契)·연추문계(延秋門契)의 서민(庶民)으로 나이 60세 이상인 자를 소견하고 찬거리와 쌀을 내려 주고, 74세인 사람에게는 벼슬을 한 급수씩 주며,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장동(壯洞) 연추문(延秋門) 옛동네의 사람을 만나보았</p>	<p>朔甲戌/上御德游堂， 召見於義洞·餘慶坊·慶運宮坊·司宰監契·延秋門契庶民年六十以上者，賜饌賜米，七十四歲人賜爵一級。 上曰：“予於昨夢見壯洞延秋門舊洞人， 若光武之南陽故</p>

<p>방 등의 74세 이상의 서민에게 벼슬을 한자 급씩 주다</p>	<p>는데, 이 일이 마치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남양(南陽)17674) 을 찾아 간 고사(故事)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찬거리를 내려 주어 나의 회포를 푸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잘 알아두라.” 하였다.</p>	<p>事，故賜汝輩饌，以伸予懷，汝等其知之。”</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9월 3일 (병오) 1번째기사 탕제를 올리는 일로 내국의 장무관을 치죄하다</p>	<p>대가(大駕)가 소령원에서 출발하여 정오에 고양군(高陽郡)에서 쉬는데, 이때 번개가 치며 우박이 갑자기 내려서 조금 개이는 사이를 타서 동가(動駕)하여 신원(新院)에까지 왔다. 임금이 악차(幄次)로 들어가려고 하는 참에 내국(內局)의 세 제조가 탕제(湯劑)를 올릴 것을 청하자, 내국의 장무관(掌務官)을 잡아들여서 곤장으로 다스리라고 명하였는데, 승지 윤동승(尹東昇)·이재간(李在簡)이 탕제를 올린다고 하여 장무관에게로 노여움을 옮긴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아뢰므로 해서 임금이 엄중한 명령을 내려서 모두에게 서용하지 말라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p>	<p>丙午/大駕自昭寧園離發，午次高陽郡時，電雹驟至，乘少霽動駕，至新院，上將入幄次，內局三提調，請進湯劑，命拿入內局掌務官棍治，承旨尹東昇·李在簡以進湯而移怒掌務官，前所未有爲奏，上，下嚴教，並施不赦之典。</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9월 4일 (정미) 3번째기사 천둥과 이변으로 사흘 동안 감선하다</p>	<p>사흘 동안 감선(減膳)하였으니, 천둥의 이변 때문이었다.</p>	<p>減膳三日，以雷異也。</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9월 5일 (무신) 3번째기사 감선을 사흘 더하고 탄일의 선물을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다</p>	<p>감선(減膳)을 사흘 더하고, 탄일(誕日)의 선물 역시 봉진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천둥의 이변 때문이었다. 대신이 명령을 중지할 것을 애써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성인(聖人)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지나친 것도 모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 역시 잘못이다. 대신은 이미 아뢰었는데도 유신(儒臣)과 대신(臺臣)은 어찌하여 듣지 못한 양 침묵만 지키는가? 오늘의 삼사(三司)를 모두 함께 파직하라.”</p>	<p>命減膳加三日，誕日物膳亦停封，以雷異也。大臣苦請還寢，從之。教曰：“聖人豈欺我哉？過猶不及，應受不受亦過也。大臣既奏，而儒臣臺臣，何龔默？今日三司，一併罷職。”</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 (乾隆) 35년) 9월 27 일(경오) 5번째기사 북도의 흉년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다</p>	<p>하였다.  영의정·좌의정과 북도의 구관 당상을 입시하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김치인 (金致仁)이 아뢰기를,  “북도의 흉년이 가장 심한 고을의 환곡을 잘 여문 곡식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고, 경외(京外)의 도류형(徒流刑)을 내년 가을까지 우선 정배하지 말고, 명천(明川) 이남 지방의 진봉(進捧)하는 아전을 정퇴(停退)시키는 일은 청컨대 도신(道臣)의 장청(狀請)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세초 봉진을 이미 중지하였는데, 더욱이 삭선(朔膳)이겠는가? 더구나 봉진하는 물건 중에는 긴요하지도 않으면서 민폐는 클 수가 있다. 그리고 금년의 흉년은 함경도가 가장 심하니, 주원(廚院)17684 으로 하여금 이 도의 삭선 물품 중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단자로 써 올리게 한 다음, 점을 찍어 내려보내는 대로 거기에 따라 중지하거나 감면하여 주어서 고향을 걱정하는 나의 뜻을 내보이도록 하라.”  하였다.</p>	<p>命領左相北道句管堂上入侍，領議政金致仁：“以〔北〕道尤甚邑還穀，以精實穀代捧，京外徒流，限明秋姑勿定配，明川以南進捧吏停退事，請依道臣狀請施行。”上從之。仍教曰：“歲初封進，既已停免，況朔膳乎？況封進物種，亦有不緊者，而民弊則巨。且今年咸關尤甚，令廚院，此道朔膳物種，書入不緊者，依點下停減，以示予爲豐沛之意。”</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 (乾隆) 35년) 10월 3 일(을해) 2번째기사 입대를 불운하니 신하들이 함문밖에 밤새워 기다리다</p>	<p>임금이 창의궁에 머물러 있는데, 시임·원임 2품 이상의 대신과 승정원에서 누차 입대(入對)를 요구하고, 내국(內局)에서도 세 차례 계청을 하였으나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날이 이미 정오를 지나자 승정원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도 문이 굳게 닫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해가 저물어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편전(便殿)의 문이 또 닫혀 있었다. 이때 마침 동궁이 따라 들어가서 곁에서 모시고 있던 중 의관(醫官)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외정(外廷)에서 비로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초경(初更)이 되어서 비로소 문을 열고 내정(內庭)으로 들어가니 임금이 함일재(咸一齋)에 있었다. 여러 대신들과 내국·승정원에서 계하(階下)에 늘어서서 번갈아가며 소리를 질러 진맥을 받고 탕제를 들 것을 청하였으나, 끝까지 하교가 없어서 여러 신하들이</p>	<p>○上在彰義宮，時原任大臣二品以上，政院屢次求對，內局三啓，批旨不下。日已過午，政院欲排闥而入，門堅不可動。至日夕始入，則內閣又閉。時東宮隨詣侍側，召入醫官，故外廷始得聞知。初更始排闥入內庭，上在咸一齋。諸大臣內局喉院，立階下，迭聲請診候進湯，意無下教，諸臣退伏閣外度夜。</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0월 10일(임오) 3번째기사 부제학 김응순 등이 형벌을 삼가하고 언로를 열것 등에 대한 차자를 올린다</p>	<p>물러나 함문(閤門) 밖에 엎드려 밤을 새웠다. 부제학 김응순(金應淳)과 교리 조준(趙琰) 등이 연명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 여러 신하들의 진계(陳戒)가 많기도 한데, 총괄하여 말한다면 덕을 닦고, 형벌을 삼가고, 언로를 열고,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미 다 진달하였는데, 신들이 장차 무슨 말을 진달하겠습니까? 근일의 일로 말한다면 한번의 번뇌로 인하여 갈수록 격노(激怒)를 이루어 탕제를 물리치고 나서 연화문으로 임어하시고, 연화문에 임어하고 나서는 또 밤중에 배위(陪衛)도 없이 거동을 하시어 여러 날을 구저(舊邸)에 나아가시므로 위아래가 서로 격조되어 모양이 창황하여서 듣는 이가 놀라서 당혹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심사가 이토록 불편하신데, 하늘의 마음이 어찌 화평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순일지성(純一之誠)에 더한층 힘쓰시어 존양지도(存養之道)를 다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감선(減膳)을 닦새째나 하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은 첫날과 마찬가지로이다. 아! 학사는 이제 무엇하러 잠을 깨우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정섭(靜攝)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대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 무슨 거조로 지금 그만 잠을 깨우는가? 차자를 올린 여러 신하들을 체차하라.” 하였는데, 조준은 수창자(首倡者)이므로 시종안(侍從案)에서 이름을 삭제시켰다.</p>	<p>副提學金應淳、校理趙琰等聯筭，略曰： “近來諸臣之進戒者多矣，摠而言之，曰修德也，慎刑也，開言路也，節財用也。今皆已陳，臣等將何以爲言乎？以近日事言之，因一煩惱，轉輒成激，自却藥而爲臨門，自臨門爲動駕，〔昏〕夜中衢，陪衛不備，累日舊邸，上下相阻，景色蒼黃，聽聞驚惑。聖心之不平如此，又何望天心之和豫乎？伏願益懋純一之誠，以盡存養之道。” 批曰：“減膳雖五日，懷惕之心，若其日。吁嗟學士，今何睡〔醒〕？”又教曰：“爲靜攝，雖仍默可也，是何舉措，今乃睡醒？堂筭諸臣并遞差。”趙琰以首倡，刊名侍從案。</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0월 12일(갑신) 1번째기사 정릉의 비역을 마치고</p>	<p>정릉(貞陵)의 비역(碑役)을 마치고 나서 도감(都監)에서 인본 족자(印本簇子)를 모셔 올리니, 임금이 왕세손과 더불어 연화문 밖에 나가 지영(祇迎)한 다음 친히 봉심(奉審)하였다. 이어 도감 당상 안윤행(安允行)·홍명한(洪名漢)·김시묵(金時默)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낭청과 장인(匠人)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품을 내려 주었다. 인본 족자를 모셔 올릴 적에는 행사가 중대하기 때</p>	<p>甲申/貞陵碑役訖，都監陪進印本簇子，上與王世孫，祇迎於延和門外，親自奉審。都監堂上安允行·洪名漢·金時默竝加資，郎廳匠役等，賞賜有差。以陪進時，闕門內奏樂，雖因有所重，</p>

<p>인본 족자를 올리니 친히 지영하다</p>	<p>문에 췌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는 하였으나, 재변을 만나서 음악을 올린 것이 한결 더 두렵다는 이유로 닷새 더 감선(減膳)을 명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쟁집(爭執)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p>	<p>遇災動樂，懷惕有倍，命減膳加五日，諸臣爭之，不聽。</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1월 4일(병오) 1번째기사 제주 목사의 진휼을 청하는 장계를 윤희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진휼을 청하는 장계(狀啓)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아! 이들은 바로 예전에 무휼(撫恤)하여 준 백성이다. 경자년(1769) 이후 제주도 백성들에게 고맙게 여김이 어찌 나뉘어졌는가? 그때 자성(慈聖)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데리고 온 사람을 특별히 전정(殿庭)으로 불러들여 쌀과 반찬거리를 내려 주는 것을 내가 거상(居喪) 중에 이미 보았고, 정축년(1769) 인산(因山) 때에 광중(壙中)을 물리고 흙을 쌓은 일 역시 내가 직접 보았으므로, 지난해의 제주도 백성에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한결 더 깊다. 본 제주도가 흉년을 거듭 만난 것은 바로 내가 덕이 없는 탓이니, 나리포(羅里浦)에 비축하여 둔 쌀 5천 석을 갈라 주고 내년 치의 공마(貢馬)도 특별히 봉진(封進)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고, 조금 후에 또 명하기를,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도 내년까지 봉진(封進)을 정지하고 삭선(朔膳) 역시 내년까지 절반으로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백성들과 경사를 함께 누린다는 뜻에서 피편(皮鞭)과 태장(笞杖)을 금지하되, 다만 중죄에 관계되어 추핵(推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및 외방의 동추(同推)에 있어서는 이 예에 구애하지 말고 종전대로 처리하라고 명하였으니, 형조 판서 심수(沈鏞)의 품정(稟定) 때문이다.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p>	<p>丙午/上引見大臣備堂。因濟州請賑狀啓，教曰：“嗚呼！此乃昔年撫恤之民也。庚子以後，感島民，豈特予？其時慈聖聞此，特召領來人於殿庭，賜米賜饌，予在居廬曾已仰觀，丁丑因山時，退壙土築，亦予所覩，體昔年感島民之心，一倍于前。本島荐歉，卽予否德，羅里舖所儲米五千石劃給，明年貢馬，特令停封。”尋又命：“三名日方物，限明年停封，朔膳亦限明年減半。”上以與民同慶之意，命禁皮鞭〔笞〕杖，惟關係重獄，不得不推覈者，及外方同推，勿拘此例，依前爲之，以刑曹判書沈鏞稟定也。憲府申前啓，不允。</p>
<p>영조 115권, 46년 (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년) 12월 5</p>	<p>임금이 승정전에 나아가 굴을 내려 주고 시사(試土)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연상(李衍祥)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급분(給分)을 하였다.</p>	<p>上御崇政殿頒柑試土，居首李衍祥直赴殿試，其餘給分。</p>

<p>일(정축) 2번째기사      승정전에 나가 글을      내려 주고 시사하다</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월 3일      (을사) 1번째기사      정월 초하루날 대가를      수행한 금군에게 호궤      하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정월 초하룻날 대가(大駕)를 수행한 금군(禁軍)에게 호궤(犒饋)하였다.</p>	<p>乙巳/上御崇政殿，犒饋元朝隨駕禁軍。</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월 12      일(갑인) 7번째기사      경기의 세찬 계본을      읽을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경기(京畿)의 세찬 계본(歲饌啓本)을 읽도록 명하고, 전 동지중추부사 이정(李靜)에 이르자 하교하기를,      “지금까지 생존하여 있었다니, 내 마음이 아프다.”      하고,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였으며 그 가운데 1백 세를 넘긴 사람 및 8, 90세가 된 사람이 많은 은자(恩資)를 받았는데, 당시 임금의 뜻은 오로지 노인을 우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속여 자급(資級)을 얻은 자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었으며, 한번 사찬(賜饌)을 받으면 각 고을의 곡물(穀物)이 소비하는 비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었다.</p>	<p>上命讀京畿歲饌啓本，至前同知李靜，教以尚今存焉，予心愴然，特爲加資，其中有過百歲人及八九十者，多被恩資，時上意專在優老，故冒年得資者，指不勝屈，一經賜饌，各邑穀物，多歸糜費，聞者惜之。</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2월 12      일(계미) 1번째기사      탕제의 일로 대신과      약방에서 청대하나 윤      허하지 않다</p>	<p>임금이 궁궐로 돌아왔다. 탕제(湯劑)를 올리지 못하게 하므로 대신(大臣)과 약방(藥房)에서 날마다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임금의 마음이 매우 번뇌하여 때면 없는 가운데서 일이 생기게 하므로, 온 조정이 항상 어쩔 줄을 몰랐으며 2품(品) 이상의 관원들은 함문(閤門) 밖에서 분주하였지만 단예(端倪)17765)를 알지 못하였고, 준엄한 하교가 거듭 내렸으나 역시 우러러 성의(聖意)를 헤아릴 수 없었으므로, 더러는 관(冠)을 벗기도 하고</p>	<p>癸未/上還宮。不進湯劑，大臣藥房，連日請對，不許。時上心激惱，每於無中生有，舉朝常遑遑，二品以上，奔走閣外，莫知端倪，嚴教荐下，亦無以仰揣聖意，或免冠或叩頭，惟以謝罪爲求解計，人多歎之。</p>

	더러는 머리를 조아리며 오직 사죄(謝罪)하는 것으로 해명을 바라는 계교를 삼으니, 그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많았다.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3월 16 일(정사) 1번째기사 재상들이 탕제를 올릴 것을 청하니 불윤하다	임금이 궁궐로 돌아왔다. 궁궐로 들어올 적에 약방(藥房)에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국(備局)의 여러 당상(堂上)과 2품(品)의 여러 재상(宰相)들이 일제히 나아가 탕제(湯劑)를 올리게 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丁巳/上還宮。入闕時，藥房無人，備局諸堂與二品諸宰〔齊〕進，請進湯劑，不許。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4월 8일 (무인) 1번째기사 약방에서 구대하자 세 제조의 해임을 명하다	약방(藥房)에서 구대(求對)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침에 이미 하교하였는데 지금 또 나를 피곤하게 한다.” 하고, 특별히 세 제조(提調)를 해임하도록 명하였다.	戊寅/藥房求對，上曰：“朝既下教，今又困我。”命特解三提調。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4월 10 일(경진) 6번째기사 채제공이 영희전을 봄 가을로 봉심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호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이 청하기를, “영희전(永禧殿)을 봄가을로 봉심(奉審)한 후 전사청(典祀廳) 및 여러 곳을 수리 보수하고 잡물(雜物)과 기명(器皿) 등을 진배(進排)할 때에 지부(地部)17816)의 낭관(郎官)이 친히 본전(本殿)에 나아가 전랑(殿郎)과 함께 대조하고 점검하는 일을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戶曹判書蔡濟恭，請永禧殿春秋奉審後，典祀廳及諸處修補雜物器皿等進排時，地部郎親詣本殿，與殿郎照檢事，永爲定式。上許之。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4월 19 일(기축) 1번째기사 인삼 등의 값이 올라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과 조강(朝講)을 행하고 하교하기를, “아! 탁지(度支)17838) 에다 1년에 세(貫)로 바치는 은(銀)은 수천 냥(數千兩)에 불과한데 한 사람의 사행(使行)이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10만 냥에 가까우니, 옛날에도 이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 더구나 팔포(八包)17839)는 <대	己丑/上御資政殿，行常參朝講，教曰：“噫！度支一年所貫捧銀，不過千數，而一使行所齎去，殆近十萬，於古決無是矣。況八包本蔘也，蔘不能支，於北於南，白絲丁銀，作爲流泉，噫！國



<p>입는 폐단 등에 대해 하교하다</p>	<p>상(對象) 물건이&gt; 본래 인삼(人蔘)이었는데, 그 인삼을 지탱할 수가 없어 남쪽과 북쪽에서 백사(百絲)와 정은(丁銀)으로 유천(流泉)을 만들게 되었으니, 아! 나라 가운데 몇 십만의 광은(礦銀)을 요수(遼水)로 흘러 보내게 하고 쓸데 없는 당화(唐貨)17840) 를 짐바리에 가득 싣고 돌아오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위하는 원대한 도리이겠는가? 내가 바로 사치를 금지하는 장본인으로 내가 일찍이 비단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몇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값이 높게 뛰어올라 전인(塵人)이 폐해를 입고 있는데, 그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는 근년(近年)에 가정(加定)한 역원(譯員)을 줄이는 것이며 하나는 저들이 만약 값을 높게 정하면 포장한 것을 풀지 말고 본래 포장한 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역원을 줄이게 되면 팔포대상(大商)은 저절로 따라서 줄일 수 있으며, 교역(交易)을 하지 아니하고 온다면 피인(彼人)의 조종(操縱)은 저절로 그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한 번 호령(號令)하는 일에 불과한데 어찌 번거롭게 순문(詢問)하겠는가? 금년의 절사(節使) 및 재자관(費咨官)17841) 부터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고 지난날에 없었던 명색(名色)은 한결같이 모두 조사하여 줄이게 하라.</p> <p>또 들건대 요즈음 하교로 인해서 명주 값이 벌써 올랐다고 하니, 이것으로 관찰하여 보면 이 영(令)은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인(塵人)에게 달려 있는 것이므로 역시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주 값이 만약 앞서와 비교하여 높게 오른 일이 있으면, 평시서 제조(平市署提調)는 당장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17842) 을 시행하고 낭청(郎廳)은 섬으로 귀양보내게 하라. 지금 이 하교는 국가를 위한 깊은 계책인데 사신(使臣)이 상역(象譯)17843) 의 개인적인 안면에 구애되어 억지로 교역을 허락한다면 당연히 중감(重勘)17844) 이 있을 터이니, 이것을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中幾十萬礦銀，解於遼水，無用唐貨，滿馱以歸，此豈爲國長遠之道乎？予是禁奢主人，予未嘗着錦衣，而數年以來，其價高騰，塵人受弊，欲祛其弊，其宜端本，一則減近年加定譯員，一則彼若高價，勿開包封，以本包持來。減譯員，則八包自可隨減，不交易而來，則彼人操縱，自可止息，此不過一號令之事，何煩詢問？自今年節使及齎咨官始。前日所無名色，一并查減。且聞因近日下教，紬價已騰云，以此觀之，此令不在於君，只在於塵人，亦宜端本。紬價若有比前高騰之事，平市提調，當施制書有違之律，郎廳烏配。今者此教，爲國深計，使臣拘於象譯之顏私，強許交易，當有重勘，以此嚴飭。”</p>
<p>영조 116권, 47년</p>	<p>노인을 소견(召見)하여 음식 대접을 하게 하였는데, 무진년(17847) 에 출생한</p>	<p>召見 老人饋饌，以戊辰生人見漏，命</p>

<p>(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4월 19일(기축) 7번째기사 경묘의 탄강일에 출생한 노인을 소견하고 음식을 대접하다</p>	<p>사람으로 누락된 이는 연화문(延和門)에서 일체(一體)로 음식 대접을 하게 하였으니, 경묘(景廟)의 탄강(誕降)이 무진년이었기 때문이었다.</p>	<p>於延和門，一體饋饌，以景廟誕降，在戊辰也。</p>
<p>영조 116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4월 23일(계사) 3번째기사 이기경의 일로 탕제를 거절하니 세손이 상소를 올리다</p>	<p>임금이 이기경(李基敬)의 일로 대단히 번뇌하여 탕제(湯劑)를 굳이 거절하고 군신(群臣)들을 접견하지 않으므로 온 조정이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였다. 왕세손(王世孫)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어제(御製) 《유곤록(裕昆錄)》 한 편(篇)은 바로 우리 성상(聖上)께서 40년 동안 고심(苦心)하신 것으로 세상의 도의를 위하고 붕당(朋黨)을 깨뜨리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무릇 신서(臣庶)로서 누구든 감히 그 사이에서 다른 의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기경은 우리 성상의 총애하고 우대하는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상소를 하여 감히 우리 전하(殿下)께서 기본 법칙을 세워 다스리는 정치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려고 하였으니, 엄중히 처분(處分)을 가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성상의 마음이 번뇌하여 탕제(湯劑)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지가 이미 여러 날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오늘날 탕제를 한 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성공(聖躬)을 손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평상시에 열흘 동안 올리지 않는 것의 갑절이 됩니다. 매번 천안(天顏)을 우러르면 지난날 보다 〈기력이〉 감소됨이 있으시니 탕제를 더욱 어떻게 잠시라도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자가 초조하게 허둥대며 민망하고 절박함이 이 지경까지 이르러 더욱 절실하며 이런 일 또한 소자가 직분(職分)을 다하지 못한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충정(衷情)이 절박하기에 번득하고 동요하게 하는 것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우러러 건박하고 간절함을 진달하오니, 삼</p>	<p>上激惱基敬，固拒湯劑，不見群臣，舉朝惶惶。王世孫上疏曰：“伏以御製《裕昆錄》一篇，即我聖上四十年苦心，爲世道破朋黨之至意也。凡在臣庶，孰敢有異議於其間？而迺者李基敬，不思我聖上眷遇之恩，肆然投章，敢欲壞亂我殿下建極之治，嚴加處分，固無不可。而今乃因此而聖心煩惱，湯劑不進，已至多日。竊伏念今日湯劑之一時不進，其有損於聖躬，實倍於常時之十日不進。每瞻天顏，不無少減於前日，湯劑尤豈暫時停輟耶？小子之焦遑悶迫，到此益切，而亦莫非小子不能盡職之罪也。衷情所迫，不避瀆撓，仰陳迫懇，伏乞聖慈，俯垂諒察，亟許進御湯劑，以副小子顛望之情。”</p> <p>批曰：“省爾之懇，首件起頭，非特爾祖嘗不言者，義理正大。嗚呼！《裕</p>

	<p>가 바라건대 성자(聖慈)로서 굽어 헤아리고 보살피 주셔서 빨리 탕제를 진어(進御)하도록 허락하시어 소자의 크게 우러러 바라는 마음에 부응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간절한 마음을 살폈는데 맨 앞에 부분은 네 할아버지만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니 의리(義理)가正大(正大)한 것이다. 아! 《유곤록(裕昆錄)》의 뜻을 부탁할 사람이 있게 되었으니,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공(功)을 세우려는 것이고 소인배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번의 청원은 진연(進宴)과는 다름이 있으니 어찌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너의 간절한 정성을 저버리겠는가? 도승지[知申事]가 보는 곳에서 〈탕제를〉 먼저 마실 터이니 전유(傳諭)하도록 하라. 아!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는 것은 구체(口體)를 봉양(奉養)하는 것17854) 과 같으니 증자(曾子)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효성(孝誠)을 체득하여 네 할아버지의 뜻을 깊이 본받아 해동(海東)의 종국(宗國)으로 하여금 영원히 반석(磐石)처럼 튼튼하게 하여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p>	<p>昆錄》之意，付托有人，吾國其庶幾。其爲建功，非爲宵小。今者之請，與宴有異，何復邁邁，孤爾誠懇？知申見處先飲，令傳諭。噫！建功其猶養口體，體曾子養志之孝，深體爾祖之意，使海東宗國，永固磐石之安。”</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5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연화무에 나가 기우제에 쓸 향을 지영하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을 지영(祇迎)하고, 제관(祭官)과 하례(下隸)에게 엄중히 신칙하여 감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p>	<p>朔辛丑/上詣延和門，祇迎祈雨祭香，嚴飭祭官與下隸，毋敢飲酒吸草。</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5월 2일 (임인) 2번째기사 가뭄으로 감선했 것을</p>	<p>임금이 육사(六事)17868) 로 자신을 책망하고 3일 동안 감선(減膳)17869) 하도록 명하였으며, 인하여 하교하기를,  “비록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3일 동안은 〈감선을〉 그대로 준행하도록 하고 만약 아득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찌 3일만 〈감선하겠는가?〉 비가 내린 뒤에 복선(復膳)하도록 하라.”</p>	<p>上以六事責躬，命減膳三日，仍教曰：“雖得雨，宜準三日，其若漠然，奚特三日，得雨後復膳。”</p>

명하다	<p>하였다. 하교하기를, “일기(日記)를 보니 옛날에는 영장(營將)도 모두 소(疏)가 있었다.” 하고, 인하여 여러 무신(武臣)들을 소견(召見)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진달하게 하였다.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 윤수인(尹守仁)이 강계(江界)의 인삼(人蔘) 폐단에 대하여 우러러 주달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뒤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강주(江州)에서 1년 동안 캐는 인삼(人蔘)의 전부를 취하여다 쓴다면 상납(上納)하는 원수(元數)에 아주 충분합니다만, 도내(道內) 각 고을에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삼의 값이 뛰어들었으니, 사상(私商)의 왕래(往來)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단절시킨다면, 정공(正供)은 판비(辦備)할 수 있고 민력(民力)을 펴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윤수인(尹守仁)의 말과 같습니다. 청컨대 엄중히 금지하도록 신칙하여 범(犯)하는 자는 발각되는 대로 죄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강변(江邊)의 파수군(把守軍)에 대하여 매년 무삼(貿蔘)17888) 5분(分), 미삼(尾蔘) 2분(分)이라는 명목으로, 규정을 정하여 호역삼(戶役蔘)의 예(例)로 인삼을 무역하게 하는데, 그것도 상납하는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니 입파삼(立把蔘)은 바로 중첩된 부역(賦役)입니다. 그래서 그 고달픔을 감당하지 못하여 보충하는 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정군(正軍)에게 부과(赴把)하게 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한 고을의 주민과 군(軍)을 통계(統計)내어 4년마다 한 차례씩 윤번(輪番)으로 돌아가게 하여 입파(立把)하도록 한다면 군사들이 도망하는 폐단은 없어질 것이며 국가에는 용정(戎政)17889)의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수인(尹守仁)이 일찍이 평안남도의 만호(萬</p>	<p>壬子/教曰：“見日記，古則營將，皆有疏矣。” 仍召見諸武臣，使之各陳所懷。 訓〔鍊〕判官尹守仁，以江界蔘弊仰奏，上令備局稟處。 後領議政金致仁曰：“江州一年採蔘，盡數取用，則頗足上納元數， 而道內各邑私貿夥然，故蔘價踊貴，私商往來，嚴加禁斷，則正供可備，民力可紓者，誠如守仁言。 請申飭嚴禁，犯者隨現論罪。” 從之。 又曰：“江邊把守軍，每名以貿蔘五分，尾蔘二分定式，而戶役蔘例貿蔘，亦爲責納，則立把蔘，是疊役也。 不勝其苦，隨充隨逃。 若罷正軍赴把之規，統計一邑之民，與軍四年一次輪回立把，則兵無逃躲之弊，國有戎政之實云。 守仁曾任平南萬戶，熟諳蔘弊，故其言如此，此不可遙度而硬定。 請令道臣，詳問便否於該府使，論理狀聞。” 上命廟堂稟處。</p>
-----	--	--

	戶)를 맡았었기로 인삼(人蔘)에 대한 폐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만, 이것은 멀리서 헤아려 강경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당 부사(府使)에게 편리한가 않은가를 상세히 묻도록 하고 조리 있게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5월 28일(무진) 2번째기사 덕유당에 나가 소맥을 받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소맥(小麥)을 친히 받았다.	上御德游堂親受小麥。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6월 1일(경오) 1번째기사 원임·시임 대신이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감선(減膳)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국가의 체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선(常膳)을 회복하도록 극력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使臣)의 행차가 압록강을 건넌 뒤에 상선(常膳)을 회복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였다.	朔庚午/上減膳既久，時原任大臣，以國體不當如是，力請復常，上曰：“使行越江後，當復膳矣。”
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6월 1일(경오) 3번째기사 주인의 책에 관한 일로 정득환 등을 국문하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친히 정득환(鄭得煥) 등을 신문하였는데, 정득환이 공초(供招)하기를, “몇해 전에 우연히 책 장수가 팔러 왔기에 비록 사 두었지만 눈으로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고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잡혀 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자, 공초하기를,	上御建明門，親問鄭得煥等，得煥供：“年前偶因冊僮之來賣，雖得買置，而目不解書，故初不能考閱矣。”上曰：“汝知被拿之事乎？”供：“以因五寸叔鄭霖之言，知之矣。”又問於鄭霖，霖供：“得煥家有客名尹懋者，常云《青菴集》，而青菴卽璘之別號云矣。”上曰：“噫！霖卽宅夏之子，光國元勳之

	<p>“오촌숙(五寸叔) 정임(鄭霖)의 말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p> <p>하니, 또 정임에게 신문하였는데, 정임이 공초하기를,</p> <p>“정득환의 집안에 윤혁(尹赫)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님이 있었으며 늘 말하기를 《청암집(靑菴集)》이라고 했었는데 청암(靑菴)은 바로 주인(朱璘)의 별호(別號)라고 말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아! 정임은 바로 정택하(鄭宅夏)의 자식이고 광국 원훈(光國元勳)의 후손인데, 오늘날 조선(朝鮮)에서 그 임금이 감선(減膳)하면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주(陳奏)하는 때에 난적(亂賊) 주인(朱璘)의 책을 《청암집략(靑菴輯略)》이라고 말하였으니,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윤혁(尹赫)은 먼 지방의 기슬(蟻蝨) 같은 존재로 정득환(鄭得煥)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정임과 더불어 주린의 별호를 지붕 밑에서 일컬으며 거리낌없이 수작(酬酢)하였으니 어떻게 지난날의 배경도(裴景度)와 이희천(李羲天) 두 녀석에게 비교하겠는가? 그들이 모두 지만(遲晚)하였으니 정득환·정임·윤혁은 모두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강변(江邊)에서 효시(梟示)하고 즉시 머리를 장대에 달도록 하여 온 나라의 분노를 풀게 하라. 그리고 그의 처자(妻子)는 먼 섬에다 노비(奴婢)로 삼게 하라.”</p> <p>하였다.</p>	<p>後，則今日朝鮮，其君減膳，遣使陳奏之時，稱亂賊朱璘之書曰《靑菴輯略》，萬萬叵側。尹赫以遐方蟻蝨之蹤，托身鄭得煥家，與霖稱璘之號於屋下，爛漫酬酢，豈比頃日裴·李兩豎子？渠皆遲晚，得煥·霖·赫，并令訓將梟示江邊，卽爲懸首，以洩舉國之憤。其妻子，并絕島爲奴婢。”</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6월 14일(계미) 4번째기사 영의정 김치인 등이 복선에 관한 일로 아뢰다</p>	<p>임금이 우문각(右文閣)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복선(復膳)하는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p> <p>“성상의 하교에 사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lt;복선&gt; 기약하셨는데, 만약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장차 어느 달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p> <p>하고, 좌의정 한익모(韓翼謨)는 말하기를,</p> <p>“사신 행차가 오늘이나 내일이면 압록강을 건넌다고 하며, 또 듣건대 우의정</p>	<p>上御右文閣，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致仁，以復膳事奏曰：“聖教以使事竣還爲期，若待竣還，則將不知在於何月矣。”左議政韓翼謨曰：“使行今明將渡江，且聞右相倍日趨程，其意有望於渡江爲復膳之期。”上曰：“兩南方行祈雨，兩西潦水過中，此時何可遽復</p>

	<p>이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 간다고 하니, 그의 의도는 압록강을 건넌으로 복선하는 기약에 맞추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남(兩南)에는 바야흐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양서(兩西)17948) 에서는 장마가 중도(申道)를 지나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어떻게 갑자기 복선(復膳)할 수 있겠는가?”</p> <p>하자, 한익모가 말하기를,  “소소(小小)한 홍수나 가뭄은 염려할 것이 못되는데 어찌 감선(減膳)까지 하십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으로 외국에 가는 신하의 정성이 이와 같고 경(卿)들이 또 간절히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억지로 허락해야 하겠다.”</p> <p>하자, 김치인이 말하기를,  “복악(復樂)과 복선(復膳)은 바로 안팎의 일이니, 철악(撤樂)하는 것은 감선하는 것보다 더욱 중대합니다.”</p> <p>하니, 마침내 일체(一體)로 복상(復常)하게 하였다. 대사헌 유언술(兪彦述)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복선(復膳)하도록 청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체(國體)로써 성심껏 간곡히 진달해야만 하는데도, 한익모는 소소(小小)한 홍수나 가뭄은 &lt;염려할 것이 못된다는&gt; 등의 말을 아뢰었으니 옛날의 이 문정공(李文靖公)17949) 에게 부끄럽다. 연석(筵席)에서 아첨하는 풍습이 대관(大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다른 관원이야 무엇을 논하겠는가? 애석하다.”</p>	<p>也?” 翼謩曰：“小小水旱，不足慮也，何至減膳?” 上曰：“出疆之臣，其誠如此，卿等又苦懇不已，當勉許之矣。” 致仁曰：“復樂復膳，卽表裏事，撤樂尤重於減膳。” 遂命一體復常。 大司憲兪彦述申前啓，不允，大司諫尹坊申前啓，不允。</p> <p>【史臣曰：復膳之請，惟當以國體，誠心陳懇，而翼謩之奏，以小小水旱等語，有愧於古之李文靖矣。 筵席諂諛之風，自大官始，他尙何論? 惜哉。】</p>
<p>영조 116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p>	<p>이날 먼동이 틀 무렵부터 비가 내렸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제도(諸道)의 구관당상(勾管堂上)을 불러다 지방의 백성으로 서울에 와 있는 자를 데리고 들어</p>	<p>是日自昧爽兩下。 上悅，召諸道勾管堂上，率入鄉民來京者，問以雨澤多</p>

<p>(乾隆) 36년) 6월 15일(갑신) 3번째기사 비가 내려 기뻐하다</p>	<p>오도록 하여 우택(雨澤)의 많고 적음을 하문하자, 지방의 백성이 같은 소리로 두루 흡족하다고 말하니, 임금의 하교하기를, “철을 맞추어 오는 비가 처음으로 내리니 민사(民事)가 다행스럽다.” 하자,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어제 복膳(復膳)하셨는데 천심(天心)이 즐거워하여 단비가 많이 내렸으니, 상하(上下)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복膳하는 것은 상례(常例)인데 어찌 천심을 감응(感應)하게 함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정홍순이 억지로 끌어다 맞추며 아첨하였으니 내용이 사리에 가깝지 않다. 몇 해 전에 대신(臺臣)이 아부하는 자라고 배척하였었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p>	<p>少，鄉民齊聲言周洽，教曰：“時雨始降，民事多幸。” 鄭弘淳曰：“昨日復膳，天心悅豫，甘霖沛然，上下同欣矣。” 【史臣曰：復膳常例也，有何天心之感應？而弘淳傳會諂諛，辭不近理。年前臺臣之斥以阿附者，果不爽矣。】</p>
<p>영조 116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6월 29일(무술) 1번째기사 선의 왕후 기신일에 육선을 올린 일로 하교하다</p>	<p>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내국(內局)의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오늘은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기신(忌辰)이다. 아침의 어선(御膳)에 육찬(肉饌)이 있었는데, 나의 눈이 침침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집어 먹었다가 깨닫고서 토했었다. 창문을 열고 서늘하게 한 일을 내가 어찌 감히 잊겠는가?” 하였다.</p>	<p>戊戌/藥房入診。 上諭內局諸臣曰：“今日宣懿王后忌辰也。 朝者御膳有肉饌，而予眼昏，故不辨而下箸，覺而哇之矣。 開窓納涼，予何敢忘乎?”</p>
<p>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7월 4일(임인) 1번째기사 주원의 직숙을 그만두게 하다</p>	<p>주원(廚院)17960) 의 직숙(直宿)을 그만두도록 명하였다.</p>	<p>壬寅/ 命撤廚院直宿。</p>
<p>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p>	<p>태묘(太廟)와 사직단(社稷壇)에서 네번째 기우제(祈雨祭)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자신을 꾸짖는 전교를 내리고, 감膳(減膳)18010) 하도록 명하였</p>	<p>命行四次祈雨祭于太廟社壇。 仍下責躬之教，命減膳</p>



<p>(乾隆) 36년) 7월 27일(을축) 3번째기사 태묘와 사직단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행하게 하고 감선을 명하다</p>	<p>다.</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7월 28일(병인) 2번째기사 올해 두 명일에 물선의 봉진을 그만둘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전설사(典設司) 뜰 가운데에 앉아 올해에는 두 명일(名日)의 물선(物膳)의 봉진(封進)을 아울러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대신(大臣), 해당 당상, 양사(兩司)를 불러는데, 우문각(右文閣)에 입시하니,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어사 이양수(李養遂)·김기대(金基大) 등을 보내어 양주(楊州)·고양(高陽) 등지에 나누어 가서 억울한 옥사를 살펴보게 하였다.</p>	<p>上露坐於典設司庭中，命今年兩名日物膳并停封。 召大臣該堂兩司，入侍于右文閣，行疏決。 遣御史李養遂·金基大等，分往楊州·高陽等地，審察冤獄。</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8월 3일 (신미) 2번째기사 일한제에 나가다·탕제의 진어를 허락하다</p>	<p>임금이 다시 일한제(日閒齋)에 나아갔는데, 시임 대신·원임 대신, 여러 승지들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유와 같은 자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인데, 심의지가 또 나왔으니, 필적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엄교(嚴敎)를 내리고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지 않으므로, 대신(大臣) 이하가 뜰에 내려가서 부복(俯伏)하니, 임금이 전(殿)에 오르도록 명하고 탕제를 진어하도록 허락하였다.</p>	<p>上還御日閒齋，時原任大臣諸承旨同爲入侍。 上曰：“如韓鑰，世間無二，沈儀之又出，可謂雙矣。” 因下嚴敎，不進湯劑， 大臣以下下庭俯伏， 上命上殿，許進湯劑。</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8월 5일 (계유) 3번째기사 가뭇이 든 영남에 물선의 봉진을 정지하다</p>	<p>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 하교하기를, “영남(嶺南)은 팔도 가운데 웅번(雄藩)인데, 올해에는 치우치게 가뭇이 심하여 70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이 이에 미치면 아픔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두 도는 이미 물선(物膳)의 봉진(封進)을 정지하게 하였으니, 영남도 가을 곡식이 여물기 전에는 삭선(朔膳)의 봉진을 정지하여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p>	<p>上御資政殿，敎曰：“嶺南八路中雄藩，而今年亢旱偏甚，七十餘州元元，何以拯活，興惟及此，若恫在己。 二道物膳，既已停封，嶺南秋成前朔膳，特爲停封，以示予意。”</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8월 11 일(기묘) 1번째기사 복선과 복악을 명하다</p>	<p>복선(復膳)과 복악(復樂)을 명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가뭄 때문에 음악을 정지하고 감선(減膳)하게 하였었는데, 대신(大臣)들이 힘껏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회복하도록 명한 것이었다.</p>	<p>己卯/命復膳復樂。初，上以旱氣，停樂減膳，大臣力請，不許，至是始命復之。</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9월 10 일(정미) 6번째기사 덕유당에서 왕세손과 함께 갑술년에 난 노 인들을 소견하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갔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갑술년(18077)에 태어난 노인들을 소견하고 음식을 베풀어 주었다.</p>	<p>上御德游堂，王世孫侍坐。召見甲戌生老人，宣饋。</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9월 23 일(경신) 1번째기사 10일 동안 감선하기로 하다·영의정 김치인이 인책하여 체차를 청하 다</p>	<p>임금이 10일 동안 감선(減膳)하겠다고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인책(引責)하여 체차(遞差)시켜 주기를 원하였으나,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정원(政院)과 옥당(玉堂)에서 아울러 차자(筓子)를 올려 면려(勉勵)하라고 아뢰었다. 그런데 임금이 재변(災變)을 만났을 때 정원(政院)과 옥당에서 곧 진계(陳戒)하지 않고 뒤늦게 응하여 글을 올렸다 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스스로 칙려(飭勵)하겠다.” 하고, 마침내 15일 동안 감선(減膳)하고 철악(撤樂)하도록 명하였다. 승지와 유신은 아울러 현임(見任)을 해직(解職)하고, 특별히 이성규(李聖圭)·이재간(李在簡)·이석재(李碩載)·임희교(任希教)·변득양(邊得讓)·정상인(鄭象仁)에게 승지를 제수하였다.</p>	<p>庚申/上減膳十日。領議政金致仁，引咎乞遞，上優批不許。政院玉堂，竝陳筓啓以勉。上以遇災之時，政院玉堂，不卽陳戒，晚後應文，教曰：“予當自飭。”遂命十五日減膳撤樂。承旨儒臣，竝解見任，特除李聖圭·李在簡·李碩載·任希教·邊得讓·鄭象仁爲承旨。</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9월 26 일(계해) 1번째기사</p>	<p>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명하여 단지 봉전(封箋)만 하고, 방물(方物)·물선(物膳)은 한결같이 모두 잠시 보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문(箋文) 가운데 만약 하나의 ‘무(誣)’자를 일컬으면, 이것은 박필순(朴弼淳)의 대개(大概)이니, 이로써 엄중히 신칙하게 하였다.</p>	<p>癸亥/命八道兩都，只封箋，方物物膳，一皆安徐。箋文中，若稱一誣字，則此朴弼淳大概也，以此嚴飭。</p>

<p>팔도와 양도에 봉진을 제외한 방물, 물선을 일체 보류하게 하다</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10월 8일(을해) 3번째기사 정홍순이 조경묘의 제향에 대해 아뢰다</p>	<p>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갔다. 예조 판서 정홍순(鄭弘淳)이 아뢰기를, “경기전(慶基殿)의 제물(祭物)은 한결같이 영희전(永禧殿)과 같이 하여 희생(犧牲)을 쓴 일이 없었는데, 조경묘(肇慶廟)의 제물도 또한 마땅히 이것을 준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집안 형편에 알맞은 가례(家禮)이니, 일체 경기전의 예를 준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홍순이 말하기를, “경기전의 제향(祭享) 때 향과 축문을 전관(殿官)이 전기(前期)에 한 달마다 배진(陪進)하였으므로, 이제 이 조경묘의 향과 축문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해야 할 것인데, 제사의 기명(器皿)을 서울에서 준비하여 내려 보내는 일을 청컨대 미리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上御建明門。 禮曹判書鄭弘淳奏曰: “慶基殿祭物, 一如永禧殿, 而無用牢之事, 肇慶廟祭物, 亦當遵此乎?” 上曰: “古稱家家禮矣, 一遵慶基殿例舉行。” 弘淳曰: “慶基殿祭享, 香祝殿官, 每前期一朔陪進矣, 今此肇慶廟香祝, 亦依此例爲之, 而祭器皿, 自京措備下送事, 請預爲分付。” 允之。</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10월 8일(을해) 4번째기사 박상악의 아뢰는 바로 인해 10일간 감선할 것 등을 명하다</p>	<p>임금이 박상악(朴相岳)이 아뢰는 바로 인하여 10일 동안 감선(減膳)하고, 하례(賀禮)할 때의 헌가(軒架)는 벌여 놓고 연주하지 않도록 명하였다.</p>	<p>上因朴相岳所奏, 命減膳十日, 賀禮時軒架, 陳而不作。</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10월 17</p>	<p>5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고, 덕유당(德游堂)에서 재숙(齋宿)하였는데, 천둥의 이변(異變)이 있었기 때문이다.</p>	<p>命減膳五日, 齋宿德游堂, 以有雷異也。</p>

<p>일(갑신) 3번째기사 5일 동안 감선을 명하 고 덕유당에서 재속하 다</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0월 24 일(신묘) 4번째기사 내국에 주침과 주세를 반감하게 하다</p>	<p>임금이 내국(內局)에서 약으로 쓰는 주침(酒浸)18119) 과 주세(酒洗)18120)가 한 달에 통틀어 30병[壺]이 된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내주방(內酒房)을 혁파한 뜻이 아니라 하여 반으로 줄이게 하였다.</p>	<p>上聞內局藥用酒浸酒洗之酒，一朔通爲三十壺，以爲此非罷內酒房之意，仍令減半。</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1월 12 일(무신) 2번째기사 신련이 지나가는 고을 의 올해 결전을 탕감 해 줄 것등을 하교하 다</p>	<p>임금이 조강(朝講)을 행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아! 이번에 조경묘(肇慶廟)의 일은 1천여 년 만에 있는 해동(海東)의 성대한 일인데, 풍패(豐沛)18141) 의 고도(古都)에서 역사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아! 오르내리시는 영령(英靈)께서 어찌 민망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겠는가? 인자(人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아야 하는 것이니, 더욱이 국초(國初)에 선조(先祖)의 마음이겠는가? 수천의 재목과 수로(水路)와 육로(陸路)로 운반하는 쌀 등 그 폐해(弊害)가 적지 않을 것이니, 백성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전주(全州) 등 11고을은 결전(結錢)과 선무포(選武布)를 특별히 감해 주고, 호남(湖南)은 옛 환곡(還穀)으로 올해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또한 탕감(蕩減)해 주도록 하라. 지금의 이 하교는 진실로 1천여 년 만에 시조(始祖)의 성덕(聖德)을 유양(揄揚)하는 것이다. 《시전(詩傳)》에 주(周)나라는 비록 오래 된 나라이지만 그 받은 천명(天命)은 새롭다고 이르지 않았는가? 오늘날의 방명(邦命)은 모두 성조(聖祖)께서 덕(德)과 인(仁)을 쌓아서 그러한 것이다. 아! 도신(道臣)은 53주(州)의 백성들에게 선포(宣布)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경묘를 우러러보며 성덕(聖德)을 우러러 생각하게 하라. 기전(畿甸)·</p>	<p>上行朝講。召見大臣備堂，教曰：“嗚呼！今番肇慶廟事，千有餘年海東盛事，豐沛故都，役民多矣。嗚呼！陟降豈不爲悶，人子以親心爲己心，況國初先祖心乎？幾千材木，水陸運米，其弊不些，爲民用慮。全州等十一邑結錢選武布特減，湖南舊還今年當捧者，亦爲蕩減。今者此教，誠揄揚千有餘年始祖盛德。〔傳〕不云乎？周雖舊邦，其命維新。今日邦命，皆聖祖積德累仁而然。咨道臣，宣布五十三州之民，其令瞻望肇慶廟，仰惟聖德焉。畿甸湖西輦過諸邑今年結錢，一體蕩減，新還穀計減。全州在於十一邑之中，而慶州獨未蒙施惠，結錢蕩減，新還計減，一體舉行。於文於武，雖示</p>

호서(湖西) 등 신륵(神輦)이 지나가는 여러 고을은 올해의 결전(結錢)을 일체 탕감(蕩減)해 주고, 새 환곡을 헤아려 감해 주도록 하라. 전주는 11고을의 가운데에 있는데, 경주(慶州)만 오직 베푸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결전을 탕감해 주고, 새 환곡을 헤아려 감해 줌을 일체 거행하도록 하라. 문(文)과 무(武)에 대하여 똑같이 경사스러워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지만, 근본은 나라의 안녕(安寧)을 건고하게 하는 것이다. 경중(京中)의 시민(市民)과 공인(貢人)에게 옛부터 남아 있는 것은 요역(徭役)이라고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는가? 근례(近例)에 의거하여 탕감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경외(京外)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경사를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조경묘의 수복(守僕)과 금화군(禁火軍)은 마땅히 경기전(慶基殿)의 예에 의거하여 차정(差定)해야 하는데, 이 전(殿)의 수복과 금화군은 명수(名數)가 이미 많고 묘와 전이 서로 연결(連接)하였으며, 또 제향(祭享)이 똑같지 않으니, 본전(本殿)의 수복 등으로 하여금 겸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경기전 참봉은 이미 감영(監營)에서 전최(殿最)18142) 하였으니, 묘의 참봉도 마땅히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예조 참관 정존겸(鄭存謙)이 말하기를,  
“일전에 있었던 감궐(柑橋)은 한결같이 태실(太室)의 예에 의거하여 원진상(元進上) 가운데에서 내려 보내어 천신(薦新)18143) 하도록 하교하셨는데, 무릇 종묘(宗廟)에 천신할 때에는 봉상시의 관원이 으레 배진(陪進)하였으니, 지금 조경묘(肇慶廟)에 천신할 감궐 또한 봉상시로 하여금 따라가게 해야 하겠습니까?”

同慶，本固邦寧，古人既云。京中市民貢人，舊遺在與徭役？依近例蕩減。其令京外元元，咸知此慶焉。”領議政金致仁曰：“肇慶廟守僕禁火軍，當依慶基殿例差定，而當殿守僕禁火軍，名數既多，廟殿相連，祭享又不同，宜令本殿守僕等，兼爲舉行。”從之。致仁曰：“慶基殿參奉，既自監營殿最，則廟參奉，宜無異同矣。”上曰：“然矣。”禮曹參判鄭存謙曰：“日昨有柑橋，一依太室例，元進上中，下送薦新之教矣，凡宗廟薦新，奉[常]寺官員，例爲陪進，今此肇慶廟薦新柑橋，亦令奉常寺陪往乎？”上曰：“令忠義陪進可也。”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의(忠義)로 하여금 배진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1월 12 일(무신) 5번째기사 조경묘의 제전과 제물 에 관한 일로 하교하 다</p>	<p>하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의 제전(祭典)은 한결같이 이번에 정식(定式)한 것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제물(祭物) 또한 경기전(慶基殿)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한 다음 기록 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教曰: “肇慶廟祭典, 一遵今番定式舉 行, 祭物亦依慶基殿例舉行, 著爲定 式。”</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1월 16 일(임자) 3번째기사 천둥과 이변의 일로 6 일동안의 감선을 명하 다</p>	<p>임금이 양기(陽氣)가 회복되었는데도 전과 같이 천둥의 이변이 있는 것은 진 실로 부덕(否德)함으로 말미암았다 하여 6일 동안 감선(減膳)하게 하였다.</p>	<p>上以陽復前雷異, 實由否德, 減膳六 日。</p>
<p>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1월 17 일(계축) 1번째기사 전주의 역민과 종루의 걸인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게 할 것 등을 명 하다</p>	<p>하교하기를, “일양(一陽)이 이미 회복된 아래에서도 소민(小民)들은 어찌하여 향리(鄉里)에 서 곤궁한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하전(廈氈)18145) 또한 추워진다. 북 도(北道)에 지의(紙衣)18146) 를 하송(下送)하는 일의 여부(與否)를 비국(備 局)에 묻도록 하고,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파수군(把守軍)에게 면포(綿布)를 잘 헤아려 지급한 후에 계문(啓聞)하게 하라. 날씨가 이와 같이 추워졌으니, 전주(全州)의 역민(役民)에게 본도로 하여금 수시로 죽을 끓여 먹이게 하고, 종루(鐘樓) 근방의 걸인(乞人)들을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찾아보고 죽을 끓여서 먹인 후 계문(啓聞)하게 하라.”</p>	<p>癸丑/教曰: “一陽已復於下, 小民何困 於鄉? 興惟及此, 廈氈亦冷。 北道紙 衣下送與否, 問于備局, 令帥臣, 綿布 量宜上下於把守軍後狀聞。 日寒若此, 全州役民, 令本道, 隨時饋粥, 鐘樓傍 乞丐, 令惠廳尋問, 饋粥後以聞。”</p>

	하였다.	
영조 117권, 47년 (1771 신묘 / 청 건륭 (乾隆) 36년) 11월 30 일(병인) 2번째기사 제주의 감귤을 바친 공인을 소견하고 쌀을 주다	제주(濟州)의 감귤을 바친 공인(貢人) 등을 소견하고, 선혜청으로 하여금 쌀을 주어 내려 보내게 하였다.	召見濟州貢柑人等， 令惠廳， 給米下 送。
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월 16 일(임자) 7번째기사 학성군에게 《소학지 남》을 외게 하고 면 주와 고기를 내리다	학성군(鶴城君)에게 명하여 《소학지남(小學指南)》을 외게 하고 하교하기를, “여러 종친들 가운데 나와 동갑(同甲)인 사람은 단지 학성군만 있으므로, 특 별히 부른 것이다. 지나간 해에 종강(宗講)에서 이 사람을 보았다.” 하고 그 당시 강(講)했던 장(章)을 외도록 명하였는데. 《소학지남》을 능히 외었으므로, 특별히 그 정강(精強)함을 가상하게 여겨 고비(皐比)18219) 를 내렸으며 또 면주(綿紬) 10필과 고기 10근을 내려 주었다.	○命鶴城君， 誦《小學指南》， 教曰： “諸宗與我同庚者， 只有鶴城君故特 召。 而昔年宗講， 見此人矣。” 命誦 其時講章， 而能誦《小學指南》， 特嘉 其精強而賜皐比， 又賜紬十匹肉十斤。
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월 25 일(신유) 3번째기사 영의정 김치인이 강계 인삼의 폐단 등에 대 해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무삼(貿蔘)을 만약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면, 민폐가 반드시 장차 몇 갑절 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동래부(東萊府)에서는 단삼(單蔘)이 중산(中山) 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으레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년(18225) 에 도신 정실(鄭寀)의 장청(狀請)으 로 인하여 내국(內局) 이하 여러 상사(上司)·감영(監營)·병영(兵營)·본부(本府) 에서 감하여 받아들인 수가 거의 20근에 가까웠었습니다. 어제 공삼(貢蔘)을 5분의 1을 먼저 감하라는 하교는 진실로 슬프게 여기시는 성의(聖意)에서 나 왔으나 내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에 이미 견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속히 도로 정침(停寢)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조에서 받	上命大臣備堂入侍。 領議政金致仁曰： “貿蔘今若移定於他邑， 則民弊必將倍 蓰。 且聞萊府單蔘， 則中山所產， 例 不得用云， 以此以彼， 俱非可論。 戊 子年因道臣鄭寀狀請， 內局以下諸上司 監兵營本府減捧之數， 殆近二十斤。 昨日貢蔘， 五分一先減之教， 實出於若 恫之聖意， 而內局所納， 不但前已見 減， 事體至重， 宜亟還寢。 戶曹所納， 就其元納中減其一斤， 其餘監兵營本府 所捧， 則特許折半除納爲好矣。” 上

아들이는 것은 원래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에서 1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 감영·병영·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히 그 절반을 제외하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전체를 감하도록 청했으면 어렵겠지만, 절반을 감하는 것은 부족하니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국만 어떻게 유독 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근 가운데 특별히 1근을 감하여 내가 모년(暮年)에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언충(鄭彦忠)이 상소하여 삼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인데,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폐사군(廢四郡) 7백 리는 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 양도의 경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소속되었었으나, 후에 본부(本府)에 소속되었습니다. 세공삼(歲貢蔘) 16근은 크게 민폐(民弊)가 되었는데, 천계(天啓)18226) 3년(18227) 에 고을 백성들이 진소(陳訴)함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혁파(革罷)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35근의 세(稅)가 있게 되었고, 또 얼마 안되어 60근의 예무(例貿)의 삼이 있게 되었으며, 또 얼마 안되어 가끔 별무(別貿)하는 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들어가 채취하니 삼의 종자는 몹시 희귀해졌고, 해마다 가정(加定)되니 삼역(蔘役)이 날로 무거워졌으며, 몹시 희귀해진 삼의 종자와 날로 무거워진 삼역때문에 강주(江州)의 백성들이 크게 곤궁해졌습니다. 해마다 단파(丹把)와 황파(黃把) 양절(兩節)로 나누어 채취하는데, 단파는 6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7월에 산에서 내려오고, 황파는 7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9월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내(境內)를 쓸 듯이 다니니 농업(農業)은 버려두게 되고, 목숨을 버린 채 호랑이 굴을 탐지해 가며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산을 내려오기에 이르러서는 한갓 빈손으로

曰：“彼請全減則雖難，而折半則不足，特減三分之二。內局豈獨不減？六斤中特減一斤，以示予暮年爲民之意。”是時江界府使鄭彥忠上疏論蔘弊，故有是命，而其疏略曰：

廢四郡七百里，爲產蔘之地，而介於關西關北兩道之境。古屬三、甲，後屬本府。歲貢蔘十六斤，大爲民弊，天啓三年，因邑民陳訴，自備局覆啓革罷矣。未幾而有三十五斤之稅，又未幾而有六十斤例貿之蔘，又未幾而有種種別貿之蔘。逐年入採，而蔘種絕稀，比年加定，而蔘役日重，以絕稀之蔘種，供日重之蔘役，江州之民，於是大困矣。歲分丹黃兩節，丹把則六月入山，七月下山，黃把則七月入山，九月下山。掃境內棄農業，捨性命探虎穴，幾危者數，而及其下山也，徒手空還，十居八九。空還者，或賣田賣廬，或鬻身鬻子。於是乎哭聲載路，而隣里相弔矣，於是乎携負盈路，而逃散相繼矣。以至蔘戶日縮，十年前二萬餘戶，今爲九千餘戶。而所納稅蔘爲二十六斤八兩，東萊府所送例貿體蔘爲三十五斤，尾蔘爲二十五斤，本府納藥蔘爲五



	<p>내려오는 것이 심중 팔구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돌아온 자는 혹 전답을 팔고 집을 팔거나 혹은 자신을 팔고 아들을 팔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곡성(哭聲)이 길에 가득하여 이웃에서 서로 위문하고, 손으로 끌고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여 도산(逃散)이 서로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호(蔘戶)는 날로 줄어들어 10년 전에는 2만여 호였는데, 지금은 9천여 호입니다. 바치는 세삼(稅蔘)이 26근 8냥이 되고 동래부(東萊府)에 보내는 예무(例貿)의 체삼(體蔘)은 35근이 되며, 미삼(尾蔘)은 25근이 되고, 본부에 바치는 약삼(藥蔘)은 5근이 되니, 통계하면 91근 반이 됩니다. 체삼(體蔘) 1근의 시가(時價)는 1천 6백 냥이 되고, 미삼(尾蔘) 1근의 시가는 4백 80냥이 되므로, 합하면 11만 8천 4백 냥이 되는데, 본전 2만 5천 8백 96냥을 회감(會減)한 것을 제외하면 9만 2천 5백 4냥이 됩니다. 아! 9천의 가호(家戶)에서 9만 2천 5백 4냥의 역사(役事)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p> <p>하였다.</p>	<p>斤，通計爲九十一斤半。體蔘一斤時價爲一千六百兩，尾蔘一斤時價爲四百八十兩，合爲十一萬八千四百兩，而除會減本錢二萬五千八百九十六兩，則爲九萬二千五百四兩。噫！以九千之戶，應九萬二千五百四兩之役，此通國所無也。</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2월 3일 (무진) 4번째기사 김치인이 병을 끌어다 대어 참여하지 않아 미안한 하교가 있었다</p>	<p>임금이,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병을 끌어대어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미안(未安)한 하교가 있었다. 그리고 침전(寢殿)으로 돌아온 후 구언(求言)하였는데도 말에 실효(實效)가 없다 하여 탕제(湯劑)를 물리치고 진어(進御)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 공사(公事)를 승정원에 머물게 하였는데, 입시한 대신들이 굳이 간쟁하여 정침함을 얻었다.</p>	<p>○上以領議政金致仁引疾不參，有未安之教。還內後，以求言，言無實效，却湯劑不御，諸公事并留院，入侍大臣等，固爭得寢。</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2월 25일(경인) 1번째기사 덕유당에 나가 의정부</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정부(政府)의 진찬(進饌)을 받았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고, 시임 대신·원임 대신 및 시임 동벽(東壁)·서벽(西壁)을 지낸 여러 신하들에게 아울러 참배(參陪)하도록 허락하였다. 사인(舍人)이 찬(饌)을 받아 올리자, 임금이 먼저 바친 찬기(饌器)를 치우고 두 가자(架子)에 담아 천신(薦新)하는 예(例)를 써서 선원전(璿源殿)과 육상궁(毓祥宮)에 보내</p>	<p>○庚寅/上御德游堂，受政府進饌，王世孫侍坐，時原任大臣及時任東西壁曾經諸臣，并許參陪。舍人領饌以進，上先輟所進饌器，盛以二架子，用薦新例，送獻于璿源殿及毓祥宮，親下階以</p>

<p>의 진찬을 받다</p>	<p>어 바치게 하고 친히 계단을 내려가 전송하였다. 다시 전탑(殿榻)에 나아가 척호장(陟岵章)을 외었다. 왕세손이 진작(進爵)하자 여러 신하들이 산호(山呼)18265 하고, 대신(大臣) 2품 이상 및 승지가 차례로 진작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법악(法樂)을 베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다만 해적(嵇笛)만 연주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잇달아 총부(摠府)·기사(耆社)·종친(宗親)·의빈(儀賓)과 각사로 하여금 진찬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윤택하였다. 총부에 나아가 부총관 김한기(金漢耆)·정후겸(鄭厚謙)을 소견하고, 이어서 침전으로 돌아갔다.</p>	<p>送。還御殿榻，誦《陟岵章》。王世孫進爵，諸臣山呼，大臣二品及承旨，以次進爵。領議政金致仁請設法樂，上不許，只令奏嵇笛。諸臣等繼請摠府、耆社、宗親、儀賓，各司進饌，上允之。詣摠府，召見副摠管金漢耆、鄭厚謙，仍還內。</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2월 26 일(신묘) 1번째기사      승정전 월대에 나가 중추부의 진찬을 받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의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중추부의 진찬(進饌)을 받았다. 왕세손이 진작(進爵)하자 호승(呼嵩)하고, 시임 대신·원임 대신이 차례로 진작하였다. 임금이 시 1구를 지어서 내리며 여러 신하들에게 갱진(廣進)하도록 명하였다.</p>	<p>○辛卯/上御崇政殿東月臺，受中樞府進饌。王世孫進爵呼嵩，時原任大臣以次進爵。上製下一句詩，命諸臣廣進。</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2월 27 일(임진) 1번째기사      도총부에 나가 진찬을 받다</p>	<p>임금이 도총부에 나아가 진찬(進饌)을 받으니, 여러 총관(摠管)이 입시하였다. 김한기(金漢耆)·윤동철(尹東哲)·정후겸(鄭厚謙)에게 먼저 진작하게 하고, 하고하기를,      “작악(作樂)·무동(舞童)을 예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세손이 진작하고 계단을 내려오자 호승(呼嵩)하고,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진작하였다. 임금이 잠저(潛邸) 때 총부에 제배(除拜)된 일이 이해의 이날이었음을 생각하였으므로 본부에 나아가 진찬을 받았다. 마치고 나서 임금이 여(輿)를 타자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하였다. 다시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시임 대신·원임 대신에게는 각각 숙마(熟馬)를 면대하여 주고, 중재(重宰)에게는 각각 숙마를, 사인(舍人)에게는 아마(兒馬)를 내려 주었으며, 정부·추부(樞府)의 원역(員役)과 숙수(熟手)에게 시상하였다. 그리고 세손궁의 장번(長番)에게 숙마를 내려 주고, 설리(薛里)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려 주었</p>	<p>壬辰/上詣都摠府受進饌，諸摠管入侍。命金漢耆、尹東哲·鄭厚謙先進爵，下教曰：“作樂舞童，依例爲之。”王世孫進爵，降階呼嵩，諸臣以次進爵。上念潛邸時摠府除拜，在於是年是日，故詣本府受饌。既輟上乘輿，鼓吹先導。還詣德游堂，時原任大臣各熟馬面給，重宰各熟馬，舍人兒馬賜給，政府樞府員役熟手施賞。世孫宮長番熟馬賜給，薛里以下，賞賜有差。</p>

	다.	
48년 2월 27일 3번째 기사	임금이 이차하여 밤에 도총부에서 잤다...80세 된 아버지를 보양하는 자에게 찬수를 내려주도록 명하니 지나간 해의 구신과 구민을 생각하여 효도를 일으키는 은택을 미룬 것이다.	
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2월 28일(계사) 1번째기사 기로소에 거동하여 진찬을 받고 영수강에서 예를 받다	임금이 기로소(耆老所)에 거동하여 진찬(進饌)을 받고 영수각(靈壽閣)에서 예를 베풀었는데, 기사 당상이 입시하자 피리를 불도록 명하였다. 왕세손이 진작(進爵)하고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진작하였다. 기사 대신(耆社大臣)에게는 구마(廐馬)를 면대하여 주며, 여러 당상들에게는 숙마(熟馬)를 면대하여 주고, 입직 낭청과 약방에는 각각 아마(兒馬)를 내려 주고, 원역(員役)·숙수(熟手)에게도 각각 상을 내려 주었다. 이어 종친부에 나아갔는데, 여러 종신(宗臣)들이 입시하여 드디어 기사의 예(禮)와 같이 진찬하였고, 돈녕부 당상이 입시하여 종친부의 예와 같이 진찬하였으며, 충훈부 당상이 입시하여 돈녕부의 예와 같이 진찬하였다. 삼부(三府)의 당상들에게 각각 숙마를 면대하여 주었는데, 혹 반숙마(半熟馬)를 내려 주기도 하였고, 낭청·녹사·원역 등에게도 또한 차등 있게 상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칠언 사구(七言四句)를 지어서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갱진(賡進)하도록 명하였다.	癸巳/上幸耆老所受進饌，展禮靈壽閣，耆社堂上入侍，命吹笛。王世孫進爵，諸臣以次進爵。耆社大臣廐馬面給，諸堂各熟馬面給，入直郎廳及藥房各兒馬賜給，員役熟手各有賞。仍詣宗親府，諸宗臣入侍，遂進饌如耆社禮，敦寧府堂上入侍，進饌如宗府禮，忠勳府堂上入侍，進饌亦如敦寧府禮，三府堂上各熟馬面給，或半熟馬賜給，郎廳錄事員役等，亦賞賜有差。上製下七言四句，命諸臣賡進。
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3월 1일 (병신) 4번째기사 한성부의 사찬 단자를 보고 85, 6세 된 자의 가자를 명하다	임금이 한성부의 사찬 단자(賜饌單子)를 보고 그 가운데 85, 6세 된 사람들 모두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上覽漢城府賜饌單子，就其中年八十五六歲人，皆命加資。
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3월 11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잇달아 탕제(湯劑)를 물리친 지 4일이 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굳게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왕세손이 지극한 정성으로 도달(導達)하고 몸소 탕제를 받들어	丙午/上御集慶堂，藥房入診。上連却湯劑，至于四日，諸臣固請不許。王世孫至誠導達，躬奉湯劑以進，上感

<p>일(병오) 1번째기사 세손이 탕제를 받들어 들어가니 진어하게 하다</p>	<p>나아가니, 임금이 감격해서 기뻐하며 비로소 진어(進御)하였다.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사책(史策)에 쓰도록 명하였다.</p>	<p>悅，始爲進御。 命史官，書諸策。</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4월 10일(을해) 1번째기사 북한산성의 행궁에 나가 시단봉에 오르다</p>	<p>임금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시단봉(柴丹峰)에 올랐다가, 날이 저물어 환궁(還宮)하였다. 북한산성은 도성의 북쪽에 있는데, 산이 높고 험준하고 가파라서 성궁(城宮)을 쌓아 진양(晉陽)18276)의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였었다. 옛날 임진년(18277) 4월에 우리 숙묘(肅廟)께서 어가(御駕)를 타고 임어하여 친히 살펴보신 적이 있었는데, 이날 동가(動駕)한 것은 추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해(南海)·거제(巨濟)·웅천(熊川)에 사는 백성들이 해물과 생선을 채취하여 먹고 혹 중독되어 죽기에 이른 것을 도신이 장문(狀聞)하니, 어주(御廚)에 지공(支供)하지 말고, 백성들이 채취해서 먹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p>	<p>乙亥/上詣北漢行宮，登臨柴丹峰，日暮還宮。 北漢在都城北，山高險巖，築城宮以備晉陽之虞。 在昔壬辰四月，我肅廟駕臨親審，是日動駕，蓋出於追慕也。 南海、巨濟、熊川居民，採食海鮮，或中毒至死，道臣狀聞，勿供御廚，禁民採食。</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4월 12일(정축) 4번째기사 삼강 어사 조영진이 복명하고 양조에 관한 일로 아뢰다</p>	<p>삼강 어사(三江御史) 조영진(趙英鎭)이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삼강에서 술을 파는 것이 낭자(浪藉)하여 10여 향아리를 양조해 둔 자가 있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부관(部官)에게 명하여 달려가서 삼강 사람들과 서부(西部)의 사람으로 선조를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아버이를 위해 헌수(獻壽)하는 자에게 두루 주게 하였다.</p>	<p>三江御史趙英鎭復命奏：“三江買酒浪藉，至有十餘甕釀置者。” 上命部官馳詣，遍給三江人及西部爲先祭酒爲親獻壽者。</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4월 21일(병술) 1번째기사 단오의 물선의 봉정하지 말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고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입시하였는데, 단오의 물선(物膳)을 모두 정봉(停封)하도록 명하였다.</p>	<p>丙戌/上御集慶堂，藥房入診，時原任大臣入侍，命端午物膳，皆令停封。</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4월 25일(경인) 1번째기사 평양 감사의 장문에 따라 모곡을 탕감할 것 등을 명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약원 제거(藥院提舉)와 영상·우상을 소견하였다. 당시에 임금이 잇달아 2일 동안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지 않았으므로, 약원 및 대신(大臣)들이 함문(閤門)을 지키며 구대(求對)하니, 임금이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인하여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김상복(金相福)이 평안 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귀성(龜城)의 여러 가지 환곡(還穀)을 번작(反作)18280) 하여 허록(虛錄)한 것과 무자년18281) ·기축년18282) ·경인년18283) 의 3년 동안의 모곡(耗穀)을 탕감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충자(沖子)가 음식을 물리치고 있어, 부득이 탕제를 진어하는 것이다.” 하였다.</p>	<p>庚寅/上御集慶堂， 召見藥院提舉及領右相。 時上連二日不進湯劑， 藥院及大臣， 守閣求對， 上許入， 仍行賓對。 領議政金相福因平安監司狀聞， 請蕩減龜城各樣還穀反作虛錄， 戊子己丑庚寅三年耗， 上從之。 上曰：“沖子却食， 故不得已進湯劑矣。”</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4월 29일(갑오) 1번째기사 향지영례를 행하고 김상철과 감선에 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지영례(香祇迎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주원(廚院)에 나아가 사수(死囚) 6인을 작처(酌處)한 후 쟁집(爭執)하지 않았다 하여 여러 대신(臺臣)들을 체차하도록 명하였다. 주원 도제조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지난번 감선(減膳)하라는 명은 진실로 보리가 여물 때까지로 한정하였었는데, 이제 또 가을 농사가 염려스럽다고 하시니,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5월 5일까지 〈감선해서〉 그렇다.” 하자, 김상철이 말하기를, “5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주량(舟梁)18284) 의 큰 경사를 치렀고, 15년 동안 태평락(太平樂)을 누리셨으니, 신 등은 진실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고, 지금은 복선(復膳)하는 것이 급하며, 주원에서조차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甲午/上詣延和門外， 行香祇迎禮， 仍御廚院， 以死囚六人酌處後， 不爲爭執， 命遞詣臺諸臺。 廚院都提調金尙喆曰：“頃者減膳之命， 實爲麥登， 而今又以秋農爲慮， 則豈不過乎?” 上曰：“爲五月五日而然也。” 尙喆曰：“五十載大慶舟梁， 十五年享太平樂， 臣等實當其責， 當今復膳爲急， 廚院亦不可不次第舉行。” 上曰：“次第則然。 而若受三十二字， 則於予好矣， 爲中宮誠欲爲之， 蒼穹豈不愧乎?”</p>

	<p>“차례는 그렇다. 만약 32자를 받으면 나에게도 좋고 중궁(中宮)을 위해 진실로 하고 싶으나, 하늘에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5월 14일(무신) 3번째기사 집의 권영이 탕제를 물리친 일 등에 대해 상소하다</p>	<p>집의 권영(權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동가(動駕)하여 경숙(經宿)하시며 탕제(湯劑)를 물리친 지 오래 되었으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大臣)은 탕제를 진어(進御)하고 회란(回鑾)하시라는 뜻을 정성을 다해 말해야 할 것인데, 수궐(首揆)18286)는 차자를 올려 대수롭지 않게 스스로 허물을 끌어대고는 마침내 한마디 말도 잘못을 바로잡는 뜻이 없으니, 신은 가만히 개연(慨然)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지 박서량(朴瑞良)은 지처(地處)가 한미한데, 갑자기 특별히 발탁하셨습니다. 비록 큰 은혜는 지망(地望)을 가리지 않는다는 성의(聖意)에서 나왔으나, 마침내 임관(任官)을 어렵게 여긴다는 뜻에 어긋나니, 신은 개정(改正)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p>	<p>執義權穎上疏, 略曰: 動駕經宿, 却湯許久, 體國大臣, 所宜以進湯回鑾之意, 竭誠盡言, 而首揆之筭, 泛然自引, 終無一言匡救之意, 臣竊慨然也。 承旨朴瑞良, 地處寒微, 遽然特擢。 雖出於雨露不擇地之聖意, 終乖於任官其難之道, 臣謂宜改正也。</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5월 21일(을묘) 1번째기사 전적의 모맥을 받은 후 탕제를 진어하다</p>	<p>임금이 연화문에 나아가 친히 적전(籍田)18287)의 모맥(牟麥)을 받은 후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고 침전(寢殿)으로 돌아갔다.</p>	<p>乙卯/上御延和門, 親受籍田牟麥後, 進御湯劑, 還內。</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5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주장을 하여 《대학》을 강하고 빈대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주장하여 《대학(大學)》을 강하였다. 이어서 빈대(賓對)하여 이은(李澣)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의 거조(舉措)는 진실로 두루 살피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 마음은 임금을 사랑한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바야흐로 가뭄을 근심하여 소식(疏釋)하는 때가 되었는데, 더욱이 대관(大官)이겠는가? 특별히 석방하고 여러 재신(宰臣)들 또한 아울러 서용하도록 하라.”</p>	<p>上御集慶堂, 晝講《大學》, 仍爲賓對, 命放李澣。 上曰: “頃者舉措, 誠不周察, 而其心則由於愛君。 方當悶旱疏釋, 況大官乎? 特爲放釋, 諸宰亦竝敍用。” 內局請進湯劑, 上曰: “今不雨則亦却常膳矣。” 提調蔡濟恭曰:</p>

	<p>하였다. 내국에서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상선(常膳)도 물리치겠다.”</p> <p>하였다. 제조(提調)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백성이 중요합니까, 종사(宗社)가 중요합니까? 전하께서 스스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종사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탕제를 진어하고, 말하기를, “제조(提調)의 말에 감동하였지만, 진실로 백성을 위하는 뜻은 아니다.”</p> <p>하였다.</p>	<p>“百姓重乎，宗社重乎？殿下之自輕，所以輕宗社也。” 上進湯劑，曰：“感於提調之言，而實非爲民之意。”</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6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좌의정 신회가 어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나 불응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秘宮)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신회(申晦)가 어선(御膳)을 회복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上御集慶堂，引見大臣備堂。左議政申晦請復膳，上不從。</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6월 6일 (경오) 1번째기사 이은이 와서 입시하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니, 우의정(右議政) 이은(李溫)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집하던 상신이 다시 왔으니, 장차 나를 괴곤하게 할 것이다. 경이 다시 굳게 청하겠지만, 나는 탕제(湯劑)를 물릴 것이다.”</p> <p>하였다.</p>	<p>庚午/上御集慶堂，右議政李溫入侍。上曰：“固執之相復來，其將困予。卿復固請，予却湯劑。”</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6월 9일 (계유) 2번째기사 의인(醫人) 김적기(金迪基)가 송절차(松節茶)를 진어한 일로 상소</p>	<p>의인(醫人) 김적기(金迪基)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송절차(松節茶)를 진어(進御)하셨을 때 내원(內院)에서 송지절(松枝節)을 가져다가 그것을 쓰는 데 채웠다고 합니다. 신은 진실로 그것은 반드시 의거하는 바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이 삼가 《본초강목(本草綱目)》 과부(果部)의 넷째 조항인 증목과원방(蒸木瓜圓方)을 살펴보니 ‘황송절(黃松節)은 곧 복신(茯神)의 중심목(中心木)이다.’라고 하였는데, 내원에서 쓴</p>	<p>醫人金迪基上疏，略曰：向來松節茶進御時，內院取松枝節，以充其用云。臣固知其必有所據，而臣謹按《本草綱目》果部四蒸木瓜圓方曰，“黃松節，卽茯神中心木也”，內院所用，與《本草》所出不同者，甚可疑</p>

<p>하다</p>	<p>것은 《본초강목》에 나온 것과 같지 않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바로잡아 다른 날의 쓰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의 살펴보지 않았다.</p>	<p>也。不可不一番考定，以備他日之用也。 上不省。</p>
<p>영조 118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6월 18 일(임오) 2번째기사 선혜청에 선미 50석으로 공장과 모군의 점심을 주게 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대신(臺臣)을 인견하고 혜청(惠廳)에 명하여 선미(鑿米) 50석을 도감(都監)에 주어 공장(工匠)과 모군(募軍)의 점심을 주는 쌀로 삼게 하였다.</p>	<p>上御集慶堂，引見大臣臺臣。命惠廳 鑿米五十石，給于都監，以爲工匠募軍 點心米。</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7월 5일 (무술) 2번째기사 탕평이 무너진 일로 대사간 한필수 등과 의논하다</p>	<p>하고는, 하교하기를, “탕평을 기휘한다.[蕩平忌諱]라는 네 글자를 들은 후에 마음이 매우 부끄러웠는데, 이럴 때에 유신(儒臣)은 무슨 마음으로 집에 누워 있는가? 오늘 집에 있는 유신은 마땅히 북도의 육진(六鎭)에 정비해야 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만약 이범제의 당류(黨類)와 같은 자가 있다면 모두 물러가라.” 하였다. 대사간 한필수가 말하기를, “그런 마음을 두고도 숨기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극적(極賊)입니다.” 하니, 여러 대신(臺臣)이 모두 일어나 사례하였다. 한필수 등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정존겸의 범죄가 어떠합니까? 천극(楸棘) 가운데 있는 몸으로 밖의 손님과 교통한 것도 이미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범제는 지금 잡아다 추문하는 중인데 더욱 어찌 감히 맞아들어 만나보고 조지(朝紙)를 내어 보이겠습니까? 일이 아주 놀라우니 청컨대 아주 먼 변방에 천극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是夜，上御集慶堂，召見藥房臺臣。 上進湯劑曰：“諒沖子之悶慮，強飲 矣。”教曰：“聞蕩平忌諱四字後，心 竊惡焉，此時儒臣，何心臥於家？今日 在家儒臣，當投北道六鎭。”又教曰： “若有範濟黨類者，其皆退去。”大司 諫韓必壽曰：“有此心而隱諱者，便是 極賊。”諸臺臣皆起謝。必壽等申前 啓，不允。又啓曰：“鄭存謙罪犯何 如？而身在楸棘中，交通外客，已極爲 非，李範濟方在拿問中，則尤焉敢延 見，出示朝紙乎？事極駭然，請極邊楸 棘。”上曰：“鍾城府楸棘。”又啓曰： “以李範濟事觀之，見陰譎締結之狀， 尤爲彰著，請具庠旌義縣楸棘。”上 曰：“依啓。”又啓曰：“李範濟與具庠</p>



	<p>“중성부(鍾城府)에 천극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법제의 일로 보건대 그의 음흉하게 체결(締結)한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청컨대 구상은 정의현(旌義縣)에 천극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법제가 구상과 교통한 형상이 이미 아주 무상하고 왕래하는 길에 들러서 정준겸을 만나 조지를 구해 보았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철령(鐵嶺)에서 조지를 구해 보았다는 말은 임금을 속인 죄가 매우 통분하고 놀라우니,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천극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두 죄수를 같은 섬에 천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흑산도에 천극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서 조지를 얻어 본 것은 바로 남병영(南兵營)에서 온 것인데, 천극 가운데에 전해 보여 이법제로 하여금 얻어 보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남병사(南兵使) 서유대(徐有大)에게 빨리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신오청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조엄(趙曠)을 먼 곳으로 정배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지금의 세도(世道)를 보건대 이는 서로 버틸 것이 아니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p>	<p>交通之狀, 已極無狀, 往來路歷, 見鄭存謙, 求見朝紙, 尤爲可駭。 沉鐵嶺得見朝紙之說, 其欺君罔上之罪, 萬萬痛駭, 請大靜縣梟棘。” 上曰: “兩囚同島梟棘若何? 黑山島梟棘。” 又啓曰: “朝紙本府之所得見者, 乃南兵營所來之物, 傳示荐棘中, 使濟範得見, 事極駭然。 請南兵使徐有大, 亟施削職之典。” 上曰: “依啓。” 申五清等啓曰: “請趙曠遠地定配。” 上曰: “看今世道, 此非相持者, 依啓。” 又啓曰: “沈履之、金尙默之名, 既出於李範濟之招, 則其平日不謹持身, 不善擇交, 極爲可駭。 請亟施竄配之典。” 上曰: “果若持身其謹, 豈登範濟之招乎? 然予則曰: ‘決不然矣’, 亦不可置諸黯黮, 并下禁府, 嚴問口招以奏。” 必壽等又啓曰: “前判府事李昌誼日前所奏, 辭不達意, 以致淵衷之煩惱, 雖採群下之同聲, 而有違於聖上之苦心, 請亟施削職之典。” 上曰: “依啓。” 又啓曰: “前左議政申晦, 前席奏對, 不體惻怛懇至之誠, 自歸雍容豫暇之失, 以致聖念之煩惱, 亦不可置而不論。 請罷職。” 上曰: “此猶輕。 亟</p>
--	--	---

“심이지·김상묵의 이름이 이미 이범제의 초사(招辭)에서 나왔으니, 그가 평일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고 벗을 잘 가려서 사귀지 않음이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빨리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몸가짐을 조심했다면 어찌 이범제의 초사에 올랐겠는가?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또 암담(黯黮)한 가운데 두어서도 안되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서 엄문하여 구초(口招)18304) 를 아뢰라.”

하였다. 한필수 등이 또 아뢰기를,  
“전 판부사 이창의는 일전에 아뢴 바의 말이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성상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였으며 비록 여러 아랫사람의 동성(同聲)을 채납하기는 하였으나 성상의 고심하는 바에 어긋남이 있었으니, 청컨대 빨리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좌의정 신회는 전석(前席)에서 주대(奏對)한 바가 측담(惻怛)하신 지극한 간성(懇誠)을 본받지 않아서 스스로 온화(溫和)하고 한가(閑暇)한 잘못을 저질러서 성상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였으니, 역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병사를 대사간이 이미 논계(論啓)하였는데, 더군다나 본도의 도신(道臣)이겠는가? 함경 감사 송문재(宋文載) 역시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한필수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두 대신을 논했다 할지라도 이는 실로 신민(臣民)의 지극한 마음입니다. 성상의 수(壽)가 팔순(八旬)이시니 이는 대단히 드물게 있는 경사이

施不敘之典。” 上曰：“南兵使薇院長既已論啓，況本道道臣乎？咸鏡監司宋文載亦施削職之典。” 必壽曰：“臣雖論兩大臣，而此實臣民之至情。聖壽八旬，已是稀有之慶，且舟梁十餘年，尙無一字徽號。臣等陞資，例有夫人帖，及今罕有之慶，宜有揄揚之舉矣。” 上曰：“予亦知其然矣。大臣之言，曾與大諫同，豈不爲嘉乎？夫人帖之言善矣。” 仍命必壽特加一資，令今日庸碌之類，自惡焉。

	<p>고, 또 주량(舟梁)18305) 하신 10여 년에 아직껏 휘호(徽號) 한 자 없습니다. 신들이 승자(陞資)하면 의례히 부인첩(夫人帖)이 있는데, 이제 드물게 있는 경사를 맞이하여 마땅히 선양(宣揚)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 역시 그런 줄 알고 있다. 대신의 말도 일찍이 대간과 같았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부인첩의 말이 좋다.”</p> <p>하고는, 인하여 한필수에게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도록 명하여 오늘날의 용렬한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였다.</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7일 (경자) 1번째기사 이사증이 삼수부의 고을이 피폐함과 백성들의 폐단에 대해서 상소하다</p>	<p>장령 이사증(李師曾)이 상소하여 삼수부(三水府)의 고을이 피폐함과 백성들의 폐단을 논하기를,</p> <p>“첫째는 변방 백성이 몰래 국경을 넘어 삼(蔘)을 캐는 폐단입니다. 삼수 중 한 부의 부사와 11명의 변장(邊將)이 각자 엄금하고 닷새마다 한번씩 점고(點考)하는 규정까지 있으나 11개의 변보(邊堡) 가운데서 나난보(羅暖堡)·인차외보(仁遮外堡)·구갈과지보(舊袞坡知堡)·신갈과지보(新袞坡知堡)·소농보(小農堡)·자작보(自作堡)의 여섯 보의 변장은 50년 전부터 점고(點考)의 빠진 토졸(士卒)에게 장속(杖贖)을 징수해 받았는데, 한 명의 속전(贖錢)이 1전(錢)의 삼이 있습니다. 매양 삼을 캐 때를 당하여 병사(兵使)가 막비(幕裨)를 보내 점고하면 그때 역시 속삼(贖蔘)을 징수해 받기를 한결같이 변장의 예로 따르고 부사(府使)가 향임(鄉任)을 보내 점고하면 그때 역시 속삼을 징수해 받기를 또 영장의 예처럼 합니다. 대저 5일에 한번 점고하는 규정은 5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로 한정하고, 본부의 한 경내(境內)가 혹 1백여 리를 넘거나 혹은 수백 리가 넘기도 하니, 반드시 5일마다 점고를 받게 하면 장차 그들이 농사 일을 폐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둘째는 녹용(鹿茸)을 진상할 때에 대전(代錢)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폐단입니다. 삼수 땅에는 11개의 변보로 각기 녹용 1조(條)씩이 있는데, 병영(兵營)에서 약을 살피면서 매양 퇴각하고 받드</p>	<p>庚子/掌令李師曾上疏, 論三水府邑弊民瘼:</p> <p>其一, 邊民潛越採蔘之弊也。 三水一府府使及十一邊將, 各自嚴禁, 至有五日一點之規, 十一邊堡中, 羅暖堡、仁遮外堡、舊袞坡知堡、新袞坡知堡、小農堡、自作堡六堡邊將, 自五十年前, 闕點士卒, 徵捧杖贖, 一名之贖, 乃一錢蔘也。 每當採蔘之時, 兵使送幕裨點考, 則其亦徵捧贖蔘, 一依邊將之例, 府使送鄉任點考, 則其亦徵捧贖蔘, 又如營裨之例。 大抵五日一點之規, 自五月爲始, 至九月爲限, 本府一境, 或過百餘里, 或過數百里, 必使五日逢點, 則將不免廢其農務。 其二, 鹿茸進上時, 代錢濫捧之弊也。 三水地十一邊堡, 各有鹿茸一條, 而兵營審</p>

시 대전을 받아 1조의 대전이 54냥에 이르도록 많습니니다. 각보가 처음부터 전(錢)을 쓰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변장이 계책을 내지 못해 북청(北靑)의 상고(商賈)에게 빚을 내는데, 금년에 낸 빚이 54 냥이니 명년에는 배가 되는 1백 8냥을 갚아야 하고 이것을 해당 보의 토졸에게 나누어 징수해야 하는데, 토졸이 수십 호(戶)나 혹은 10여 호에 불과하며 하는 직업은 베를 짜고 농사 짓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1백 금(金)이 넘게 배상(倍償)하는 빚을 수십 호나 10여 호의 토졸에게 나누어 거두게 되므로 고생하여 짠 베와 농사지은 곡식으로도 몸을 가리고 호구(糊口)할 밑천을 삼지 못해 그 형세가 앞으로 지탱하고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흠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폐단의 근원을 따지면 오로지 병영의 심약(審藥)만을 나무랄 수는 없으며 실체는 내국(內局)의 의관(醫官) 이하 서리(胥吏)가 정채(情債)18306) 를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소치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셋째는 삼수 부사가 대동포(大同布)를 삼료(蔘料)로 바꾸어 마련하는 폐단입니다. 대개 본부(本府)의 전결(田結)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규정은 가까운 경내는 소미(小米)이고 먼 곳은 대동포인데, 세말(歲末)에 본부에서는 스스로 매년 공용(公用)의 수효를 감영(監營)에 문보(文報)합니다. 대저 공용은 공무로 왕래할 때에 복마(卜馬)의 고용채(雇用債)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사가 사마(私馬)를 준비해 두었다가 왕래하는 역(役)을 당함에 그와 교체하고 대동포는 바로 자신이 가져다 씁니다. 그 가져다 쓰는 수를 포필(布匹)로 받지 않고 인삼으로 대신 받는데, 매양 베한 필 대신 1전의 삼을 받으니, 만약 그 값을 논하자면 오승포(五升布) 한 필의 값이 본래는 돈 1냥에 불과하고, 삼 1전에 이르면 적어도 오승포 2필에 밀돌지 않습니다. 베로써 삼을 바꾸면 비단 역지로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익을 배로 남기는 것으로 전후의 부사가 모두 이렇게 하지 않음이 없어 이미 잘못된 예로, 혹 2, 3동(同)의 베를 삼으로 대신하는 자도 있으며, 혹 4, 5동의 베를 삼으로 대신하는 자도 있었습니니다. 그 네번째는 삼수 땅 11개

藥, 每爲退却, 必捧代錢, 而一條代錢, 多至五十四兩。 各堡初非用錢之地, 故邊將計無所出, 出債於北靑商賈, 今年出債五十四兩, 則明年倍償以一百八兩, 分徵於該堡士卒, 而士卒或不過數十戶, 或不過十餘戶, 所業不過織布耕粟。 而以過百金倍償之債, 分徵於數十戶十餘戶之士卒, 辛苦所織之布, 所耕之粟, 亦不爲掩身糊口之資, 其勢將不能支保, 安得無離散也? 究其弊源, 則不可專咎於兵營審藥也, 實由於內局醫官以下胥吏輩, 濫捧情債之致耳。 其三, 三水府使, 以大同布換蔘料辦之弊也。 蓋本府田結捧稅之規, 近境小米, 遠境大同布, 而每年公用數爻, 歲末自本府文報於監營。 大抵公用, 多出於因公往來時, 卜馬雇債, 故府使備立私馬, 替當往來之役, 而大同布則乃自取用。 其所取用之數, 不捧布匹, 代捧人蔘, 而每以一匹之布, 代捧一錢之蔘, 若論其直, 則五升布一匹之價, 本不過錢一兩, 而至於蔘一錢, 則小不下五升布二匹也。 以布易蔘, 非但勒捧, 乃是倍利, 前後府使無不爲此, 已成謬例, 或有二三同布代蔘者, 或有四

변보의 토졸을 본부의 군관(軍官)으로 투입하고 있는 폐단입니다. 대개 11개 보는 거리가 본부에서 혹 1백여 리가 넘기도 하고 혹은 3, 4백 리에 이르기 도 하여 혹시 급한 일이 있게 되면 형편이 각자 방어해야 할 처지인데, 변장(邊將)이 의뢰할 바는 오직 토졸뿐입니다. 각보의 토졸이 해당 보의 고역(苦役)을 모피(謀避)하고자 본부의 군관으로 들어가면 다른 복역(服役)이 없고 단지 초피(貂皮) 한 장만 본부에 바치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었습니다. 대저 본부에서 친히 거느리는 군관은 본래 50명이 정원으로 있어서 혹 뜻밖의 일 이 있으면 부사가 그 50명의 군관을 친히 거느리고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뜻 이니, 마땅히 본부 가까운 경내의 백성 가운데서 정밀하게 뽑아서 정원을 채 워 군사 일을 훈련시켜 급할 때 믿을 만한 군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 금은 먼 외방 각보의 토졸로 모입(冒入)한 자로 본래의 정원 이외 숫자를 많 이 점유해서 단지 초피의 이익만 취하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변장과 부사 는 곧 상하 관계의 관원과 같아서 변장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쟁집(爭執)하지 못하니, 부사가 매양 공사를 빙자하여 사(私)를 영위함을 면치 못하며 조금만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부사가 번번이 변장의 하리(下吏)를 추착(推捉)하기를 조 금도 거리낌없이 합니다. 한번 하리를 추착하는 정채(情債)가 으레 10여 필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해당 보의 토졸에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변장이 비록 쟁 집하고자 하더라도 하리를 추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나친 정채를 써서 끝내 인순(因循)·고식(姑息)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번째는 삼수부의 향 품(鄉品) 무리들이 뇌물을 써서 모입하는 폐단입니다. 대개 본부에는 본래 사 족(士族)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향임(鄉任)이 제일 가는 임역(任役)이어서 한 번 향임이란 이름을 얻으면 종신토록 한가히 지내게 되어 분경(奔競)하는 폐 단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민(土民)으로 군관·장교 및 양정(良丁)·군보(軍保)에 합당한 무리들이 모두 뇌물을 쓰고 향임에 모입 되는데, 뇌물을 쓰는 데는 스스로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바로 소 한 마리를

五同布代蓼者矣。其四，三水地十一邊堡士卒，投入於本府軍官之弊也。蓋十一堡，距本府或過百餘里，或至三四百里，脫有緩急，勢將各自防禦，而邊將之所賴者，惟士卒也。各堡士卒，謀避該堡苦役，投入本府軍官，無他服役，只以貂皮一張，納於本府，已成規例。大抵本府親率軍官五十名，自有定額，脫有不虞，則府使親率其五十軍官，而防禦之意也，當以本府近境之民，精抄充額，教鍊戎務，俾爲緩急之可恃。而今乃以遠外各堡士卒之冒入者，多占額外之數，徒取貂皮之利者，萬萬駭然。邊將與府使，便同上下官，邊將既不能據法爭執，府使每不免憑公營私，少不如意，則府使輒推捉邊將之下吏，略無顧忌。一番推捉下吏情債，例至十餘匹布，此則收斂於該堡士卒，故邊將雖欲爭執，慮其推捉下吏，濫費情債，終不免因循姑息矣。其五，三水府鄉品輩，行賂冒入之弊也。蓋本府本無士族，故所謂鄉任爲其第一任役，一得鄉名，終身閑遊，奔競之弊，去而益甚。土民之可合軍官將校及良丁軍保之類，併皆行賂，冒入於鄉任，

본부에 바치는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그 소 한 마리의 뇌물을 이롭게 여겨서 그 사람의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 차첩(差帖)을 연속하여 매매하고 있는데, 명색이 관부(官府)이면서 뇌물을 받고 차임하는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여섯번째는 변보의 포수(砲手)에게서 징속(徵贖)하는 폐단입니다. 삼수 땅 11개 보에 각기 포수 2명씩을 두어 그로 하여금 사냥을 해서 녹용(鹿茸)과 사향(麝香)을 얻어 진상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조정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매양 봄·가을의 석채(釋菜)18307)를 당하면 스스로 본부에서는 11개 보 포수를 재촉해서 그로 하여금 짐승을 사냥하게 하여 이로써 제수(祭需)에 보태며, 포수가 사냥해 잡지 못하면 번번이 사냥에 빠진 속(贖)을 받는데, 바로 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각보의 포수가 사냥에 빠진 속을 두려워하여 이따금 도주하기도 하는데, 금년에 도망하면 명년에 대정(代定)하고, 명년에 도주하면 또 그 다음 해에 대정하고 있습니다. 대저 성묘(聖廟)에 향사(享祀)하는 의절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여 본래 팔도 각 고을에서 통행(通行)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본부에서 포수를 추착하여 사냥해 잡도록 하는 것이 이미 구차스러움에 관계되며, 설령 사냥해서 잡더라도 본부의 포수로 가까운 경내에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필이면 변보의 포수로 진상(進上)하는 역에 응하는 자를 추착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소 한 마리의 징속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침탈(侵奪)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한 번의 석채(釋菜)를 위해서 11개 보의 22명의 포수에게서 녹징(勒徵)하니, 이는 수령이 소를 훔치는 것이 된다. 논한 바가 모두 절실하니, 아울러 비국으로 하여금 일체 엄금하게 하겠다. 소를 받아들이는 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런 폐단이 있게 되면 해당 부사에게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율을 시행하겠다. 삼수가 이와 같으니, 갑산(甲山)도 알 만하다. 비국으로 하여금 역시 엄칙하게 하겠다. 삼과 초피를 범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이 율을 시행하고 금후

行賂自有定規，乃以一牛納之本府。本府利其一牛之賂，不問其人之可否，差帖連贖便作賣鬻，名以官府，受賂差任，已極駭然。其六，邊堡砲手徵贖之弊也。三水地十一堡，各置砲手二名，使之獵得鹿茸麝香，以爲進上者，乃是朝家令甲。而每當春秋釋菜，自本府推捉十一堡砲手，使之獵獸，以補享祀之需，砲手不能獵捉，則輒徵闕獵之贖，乃以一牛納之。各堡砲手，畏其闕獵之贖，種種逃走，今年逃走，則明年代定，明年逃走，則又明年代定。大抵聖廟享祀之節，事體至重，自有八路各邑辦備通行之規，則本府推捉砲手，責以獵捉，已涉苟簡，設令獵捉，而本府砲手之在於近境者，不爲不多，則何必推捉邊堡砲手之應役於進上者乎？況且一牛徵贖，尤是非理之侵漁。

答曰：“爲一釋菜，勒徵於十一堡二十二人砲手，此爲守令之盜牛也。所論皆涉切實，併令備局，一切嚴禁。至於捧牛事，復若有此弊，當該府使，施以禁錮終身之律。三水若此，甲山可知。令備局亦爲嚴飭。其犯蓼紹者，當施此律，今後則紹蓼進封守令，亦用

	<p>에는 초피와 삼을 진봉(進封)하는 수령에게도 역시 장률(贓律)을 적용하며, 경중(京中)에서 받아들이는 자는 이목지신(耳目之臣)18308)에게 맡겨 드러나는 대로 중히 다스리게 하겠다.” 하였다.</p>	<p>贓律，京中若捧者，付諸耳目，隨現重繩。”</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21일(갑인) 1번째기사 수찬 김관주가 성중·사중의 기강에 대해 상소하다</p>	<p>수찬 김관주(金觀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성중(城中)과 사중(社中) 사이에 호서(狐鼠) 같은 자들이 소굴에 웅거하고 위권(威權)을 농락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임금을 가리고 신하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백성에게 재앙을 주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죄가 노기(盧杞)18315) 나 진회(秦檜)18316) 보다 더할 뿐 아니라, 또 패역(悖逆)하고 능범(凌犯)하여 임금을 더 업신여기는 부도(不道)의 죄는 왕망(王莽)18317)·양양기(梁冀)18318) 보다 배나 더 심합니다. 생각건대 그들의 지난번 부범(負犯)은 전하께서 통찰하신 바이고 진신(摺紳)이 이미 아는 바로서 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픈데, 이제 어찌 다시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7, 8년 이래 또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들이자는 논의를 만들어 드러내 놓고 공공연히 창도(唱導)해 한세상에 풍파를 일으켜 인심이 놀라고 미혹되며 중외가 하담(荷擔)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천하 만세에 장차 전하를 어느 곳에 두겠습니까? 전하께서 인륜(人倫)에 돈독하시어 인자한 덕(德)과 달권(達權)의 풍도는 실로 모든 왕이 미치지 못하는 바여서 온 나라가 탄복하여 우러르고 있는데, 저들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에 감히 흉악한 꾀를 품고서 대의(大義)를 변란(變亂)하여 후일에 번복할 계책을 했겠습니까? 이를 토죄(討罪)함에 있어 마디마디 참(斬)해도 용서하기가 어렵고 한번 살을 발라내도 오히려 가벼우니 이것은 오히려 그 죄를 다하고 그 명분을 바로잡기에 부족합니다. 아! 병술년(18319)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그때에 성후(聖候)가 편안치 못하여 한달 동안이나 낮지 않고 있어서 원기를 돋울 방도로는 삼계(蔘劑)만한 것이 없었는데 약원에 비축된 것은 대부분 호삼(糊蔘)18320)으로</p>	<p>甲寅/修撰金觀柱上疏，略曰： 近日城社之間，狐鼠窟據，竊弄威權，濁亂邦內，不惟其蔽，上鉗下殃，民病國之罪，有浮於杞、檜，抑亦其悖逆凌犯，無君不道之惡，倍甚於莽、冀。顧其向來負犯，實殿下之所洞燭，摺紳之所已知，言之痛心，今何復提？而七八年來，又造爲追崇入廟之論，顯言公唱，波動一世，人心驚惑，中外荷擔。嗚呼！果如其言，則天下萬世，其將置殿下於何地乎？以殿下之篤於人倫，而止慈之德，達權之度，實百王之所不及，一國之所歎仰，而彼獨何心，乃敢包藏凶圖，變亂大義，以爲日後翻覆之計。以此致討，亦可謂寸斬難赦，萬劓猶輕，而此猶不足以盡其罪而正其名也。嗚呼！丙戌之事，尙忍言哉？伊時聖候違豫，浹月沈綿，扶元之道，莫如蔘劑，而藥院所儲，類皆糊鬚貼絲，全無眞氣，一經刀剉，輒如灰飛。平日例進，尙難責效，況當久患，</p>

전혀 진기(眞氣)가 없으니, 한번 칼을 대면 문득 재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평일에 의례히 올리는 것도 오히려 효험을 책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오랜 병환을 당해서 어찌 공효 아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때에 국구(國舅)가 몸소 임하여 보호하는데, 밤낮으로 애를 태우면서 저들에게 힘껏 말하기를, ‘성후(聖候)가 이처럼 위독하여 호삼으로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하니 마땅히 순전히 나삼(羅蓼)을 써야지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그가 답하기를, ‘잇대기가 어려워 결코 써서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구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감(大監)은 만약 처자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 마땅히 삼제를 쓰게 된다면 가력(家力)이 잇대기가 어렵다고하여 구제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팔손을 바라보는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여 구호하는 방도가 오로지 나삼에 있는데, 돌아보아 그것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을 미리 걱정하여 감히 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니, 그가 별안간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대감은 척리(戚里)로서 어찌 약원의 일에 간여하는가?’ 하자, 국구가 울면서 답하기를, ‘나로 하여금 국정에 간여하게 한다면 참으로 죄가 되겠지만 지금 성후가 이와 같은데, 약원의 탕제에 대해 돌아보고 같이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로부터 날마다 쟁지(爭持)하였으나 끝내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이럴 즈음에 성후가 더 위독해지고 원기가 더욱 떨어져서 중외가 황급하여 어쩔 줄을 몰라해 국구가 걱정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 말하기를, ‘성후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감이 끝내 나삼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대감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성색(聲色)이 모두 엄격하고 눈물이 솟아나오니 이에 그가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억지로 허락하였습니다. 국구가 또 사사로이 동삼(童蓼) 한 뿌리를 구하여 약원에 바쳐 달여서 올렸는데, 다행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양기(陽氣)가 회복되어 이튿날 아침에 병이 낫는 경사가 있어서 시원하게 마치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듯 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제(上帝)께

何望奏功? 其時國舅躬臨保護, 日夕燭瘥, 力言于彼曰: “聖候若是沈篤, 糊蓼決無以得力, 宜純用羅蓼, 不可遲緩。” 彼答曰: “難繼不可用也。” 國舅噓唏曰: “大監若有妻子之病, 萬分危重, 當用蓼劑, 則其可以家力難繼而不救乎? 況以堂堂千乘之國, 望八君父, 患候沈淹, 救護之道, 專在羅蓼, 而顧乃預憂其難繼而不敢用耶?” 彼乃勃然作色曰: “大監以戚里, 胡乃干預藥院事耶” 國舅泣而答曰: “使我而干預國政, 則誠罪也”, 目今聖候若此, 藥院湯劑, 顧不可以與論耶? 自此以後, 逐日爭持, 終不肯聽。 如是之際, 聖候浸劇, 元氣益下, 中外遑遑, 罔知攸措, 國舅不勝憂憤, 遂言于彼曰: “聖候至於此境, 而大監終不許用羅蓼, 過此以往, 大監不能辭其責矣。” 聲色俱厲, 涕淚交迸, 於是彼乃俛首良久, 黽勉而許之。 國舅又私求童蓼一根, 納于藥院, 煎而進之, 何幸一夜之間, 陽氣克回, 翌日之朝, 乃瘳有慶, 豁然如披雲霧而觀青天。 是必上帝降監, 陰嫉凶圖, 潛回造化, 以延聖壽於億萬年無窮, 得以發其惡而正其罪, 天理昭



서 내려다보시고 음흉한 꾀를 미워하여 몰래 조화로써 성상의 수를 억만년 무궁하게 늘여서 그 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바르게 한 것이니, 하늘의 이치의 밝고 밝음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성후가 이미 회복한 후에도 다리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어 방에서 문 사이의 걸음을 옮기기가 매우 어려우시게 되자, 국구가 노인의 하부(下部)에는 약의 힘이 퍼지기가 어려워 주기(酒氣)를 빌리지 않으면 다리까지 통하게 할 수 없는데 또 금령(禁令)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상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말해 드시기를 권하게 하였으나 끝내 즐겨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문득 참의(參議) 신(臣) 홍성(洪晟)의 늙은 아버지가 송다(松茶)로 효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서 진백(陳白)하였더니, 전하께서 홍성의 입시를 명하여 자세히 그 사실을 물으시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가 연중(筵中)에서 합문 밖으로 나가 앉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를, ‘주상께서 술을 드시지 않아도 오히려 격노하심이 자주 일어나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날을 보내고 있음이 걱정되는데, 이제 송다를 복용하면 우리들이 장차 어떻게 지탱해 감당하겠는가?’라고 하자, 들은 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여 모두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입시에서 국구가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기며 협박해 아뢰도록 했더니, 그가 부득이 송다 드시기를 권하매, 전하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허락하시고 마침내 드셨습니다. 이때부터 각기(脚氣)가 아주 좋아져 날로 새롭게 되고 걸음걸이가 마침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미안한 하교까지 계시었으나, 조정에서 한 사람도 그의 죄를 성토하지 않았으니, 아! 한심합니다. 아! 한 때의 사람들이 이광좌(李光佐)가 약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합사(合辭)하여 성토하면서 다투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 무릇 몇 년이었습니다. 흉악한 그가 삼제를 가로막고 송다를 조절(操切)한 것은 이 광좌가 약청(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그 지은 죄에 경중과 완급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비단 지혜로운 자인 연후에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

昭, 焉可誣也? 聖候既復之後, 脚患久苦, 房闈之間, 運步甚艱, 國舅以老人下部藥力難敷, 非借酒氣, 無以下行, 而又慮禁令未解, 聖意靳許, 遂言于彼, 使之勸進, 而終無肯意。旋聞參議臣洪晟之老父, 以松茶見效, 仍爲陳白, 殿下命晟入侍, 詳問其事委, 而果未有發落, 彼自筵中, 退坐閣外, 厲聲大言曰: “主上不飲酒, 尚患激惱頻作, 臣隣凜凜度日, 今用松茶, 吾輩將何以支堪乎?” 聞者駭懼, 莫不失色。其後入侍, 國舅扯其腋而脅之使奏, 彼乃不得已勸進松茶, 則殿下言下即諾, 而遂進之。自是脚氣頓勝, 日新一日, 而步履遂至如常。其時殿下, 至有未安之教, 而朝廷無一人討其罪, 吁可寒心。嗚呼! 一隊之人, 以李光佐之不設藥院, 合辭致討, 爭持不已者, 凡幾年矣。以彼凶之阻撻蓼劑, 操切松茶, 比之於光佐之不設藥廳, 則其負犯之輕重緩急, 又何如也? 此不待智者而後可辨也。惟此二事, 於渠負犯之中, 尤其是天地之所不容, 鬼神之所陰誅。而近聞恐喝春宮, 搖動國本之說, 始出於戚里之家, 搢紳之間, 吐舌相顧, 瘋憂

됩니다. 오직 이 두 가지 일은 그가 지은 죄 가운데서 더욱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고 귀신이 몰래 죽이려는 바입니다.

근래에 들건대 춘궁(春宮)을 공갈하여 국본(國本)을 흔든다는 말이 처음 척리의 집안에서 나와 진신(摺神)들 사이에 혀를 빼물고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여 남몰래 탄식합니다. 집안의 말이 전파되자 거리의 의논이 시끄러우니, 아!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러한 괴귀(怪鬼) 무상한 흉역이 있겠습니까? 그가 평일에 우리 저하(邸下)를 거의 그의 집 어린 아손(兒孫)으로 보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리면서 마음대로 반복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척(咫尺)의 전석에서 감히 흉언 꺼내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의 분수로 감히 낼 말이며 사람의 도리로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신하의 부범(負犯)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막연하게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숨을 쉬면서 왕법(王法)에서 도피하게 했다면 이는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참으로 이미 들었는데도 오히려 사갈(蛇蝎)을 보양(保養)하면서 천토(天討)를 지연시키면 조종(祖宗)의 삼척법(三尺法)은 장차 어디에 쓰겠으며 천하 후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을 쓴 것이 거의 이제 30년이 되어 주석(柱石)의 임무를 맡기고 보상(輔相)의 자리를 밟게 해 권우(眷佑)의 융성함이 고금에 비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덕이 있어서라면 신이 보기에 그의 사납고 탐욕스러움이 덕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재능이 있어서라면 신이 보기에 그의 간사함과 말을 잘하고 교묘히 몰래 농간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저(東邸)18321)의 외조(外祖)라고 하면 신이 지난번 처변(處變)을 보건대 그는 대대로 쓰지 못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시종 신임하시고 권병(權柄)을 빌려 주어 그 간사함을 기르고 그의 오만함을 키우면서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함이 이 사람을 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으며, 한 사람이라도 그 간사한 형상에 분노하여 소

竊歎。屋話播傳，巷議喧藉，噫！天下萬古，豈有如許怪鬼罔狀底凶逆耶？彼其平日視我邸下，殆如渠家之小兒孫，謂可以翫弄掌上，隨意翻覆，故咫尺前席，敢發凶言，無所顧忌。是豈臣分之所敢出，人理之所忍爲者哉？夫人臣負犯，至於此極，而殿下漠然不聞，故使渠假息，得道王章，是固有可說也，苟既聞之矣，而猶復保養蛇蝎，久稽天討，則祖宗三尺將焉用，而天下後世，其將謂殿下何如主也？殿下之用此人，殆三十年于茲矣，畀以柱石之任，躋之輔相之位，眷佑之隆，古今無比者。以其有德也，則臣見其狠愎貪驕，以爲德也，以其有才也，則臣見其便佞捷給，閃弄輪巧黠，以爲才也。以爲東邸之外祖也，則臣見其向來處變，而有以知其承家勿用之人也。而殿下終始信任，假以權柄，養其奸而長其傲，以爲在廷之臣，忠國愛君，無踰於此人，一有憤其奸狀，抗章請討，則輒深惡而痛懲之，以制萬口一辭之公議。蓋自朴致隆之忠，而瘦死絕海，尹在謙之直，而廢痼終身，一時之嗜利鄙夫，風靡影從，爭相趨附，譽道功德，

(疏)를 올려 성토하기를 청하면 문득 매우 미워하고 통렬히 징계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공의(公議)를 제압하십니다. 대개 충성스런 박치룡(朴致隆)은 절해(絶海)에서 말라 죽었고, 곧은 윤재겸(尹在謙)은 종신토록 폐고(廢廬)되고부터 한때의 이익을 좋아하는 비루한 사람들은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를 좇듯 서로 다투어 달려가 붙어서 그의 공덕(功德)을 칭찬하여 세력의 불꽃을 더욱 돋워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가(古家)·명족(名族)과 학사(學士)·대부(大夫)들 역시 한결같이 그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 풍성(風聲)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漢軍)이 사면(四面)을 포위했는데 그중 초인(楚人)이 대부분이고 18322), 팔공(八公)의 초목이 모조리 진병(晉兵)으로 변하고 18323) 말았습니다. 지난번 초야의 위포(韋布)가 팔뚝에 먹물을 넣는 충성으로 분발하고 도끼를 가진 호소로 대항하여 구중 궁궐의 운무(雲霧)를 걷지 않았더라면 그 누가 미친 듯이 밀려오는 홍수를 막을 것이며 장차 기울어지는 대하(大廈)를 부축했겠습니까? 다만 한스러운 것은 그 말이 소원(疏遠)한 데서 나오고 견문이 넓지 못하여 단지 절구(竊鉤) 18324) 한 작은 일만 의논하고 사람을 죽인 큰 일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못 신하들이 말을 하지 않음을 통분하게 여겨 엄교(嚴敎)를 갖추어 내리고 뇌정(雷霆)의 위엄을 여러 차례 가했는데도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끝에 가서 부득이하게 된 연후에야 초초하게 발계(發啓)해서 성상의 뜻을 막았을 뿐, 감히 극률(極律)로 토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전하께서 대청(臺請)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처분하셨습니다. 아! 기강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이후부터 전하께서 태아(太阿) 18325) 의 자루가 뒤바뀐 것을 깊이 깨달으셨으나 조정에 가득한 못 신하들이 임금을 배반하고 적(賊)에게 붙은 자들이므로 그가 이에 스스로 대간(臺諫)을 사주(使喉)해 자주 연계(連啓)하게 하여 성상의 의심을 풀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의논하는 자로써 동궁(東宮)에 불리하게 한다고 말하며 마침내

薰灸勢焰。所謂古家名族，學士大夫，亦復一例右袒，助其風聲。於是漢軍四面，楚人居多，而八公草木，盡化爲晉兵矣。向非草野韋布，舊涅臂之忠，抗持斧之籟，以抉九閭之雲霧，則其孰能障洪流之狂奔，扶大廈於將傾耶？獨恨其言出踈遠，見聞未廣，只議其竊鉤之小，未及夫殺越人之大也。當此之時，殿下痛群下之不言，嚴教備至，雷霆累加，而猶皆抵死緘口，未乃萬不得已然後，草草發啓，以塞聖意，而不敢以極律致討。於是殿下不待臺請，而直下處分。噫！紀綱如此，何以爲國？自是以後，殿下深悟太阿之倒柄，而滿朝群臣，背君而附賊者，則彼乃自喉臺地，使之數度連啓，以陰解聖疑。又以人之議已者，謂不利於東宮，遂倡爲保護之說，播動一世，使人不敢開口。嗚呼！爲人臣子，罪關宗社，貸律終身，隔死如紙，而乃敢頤指言官，威脅公議者，求之古今，豈復有其人哉？殿下以倦勤之年，深居九重之中，一榻之外，無非賊邊之人，其勢之危凜，不啻如獨坐深山，放虎自衛，禍亂將至，孰從而聞之，危亡將迫，孰從而知之？大臣惟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창도해 한 세상을 요동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 신자(臣子)된 자의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 되었으나 종신토록 죄를 용서받고 있어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에 감히 언관(言官)을 턱으로 지시하고 공의(公議)를 위협한 것은 고금(古今)을 찾아보아도 어찌 그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권근(倦勤)18326)의 나이에 깊이 구중 궁궐 안에 계시고 탑전(榻前)의 밖은 모두 적변(賊邊)의 사람이 아닌 자가 없으니, 그 형세의 위태로움이 마치 깊은 산속에 혼자 있고 호랑이를 풀어놓아 자신을 호위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화란(禍亂)이 장차 이르게 될들 누구를 좇아서 들겠으며 위망(危亡)이 장차 급박해진들 누구를 좇아서 알겠습니까? 대신은 오직 자리를 보존할 마음만 두고 대간(大諫)은 오직 죄를 면하는 것만 일삼아서 비록 종사(宗社)가 망할 형세에 있고 강신(強臣)이 발호(跋扈)하는 일이 있더라도 즐겨 정성스럽게 의분(義奮)하여 숨김 없이 통렬하게 진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일이 기밀(機密)에 관계되고 말이 기회(忌諱)에 관계되면, 비록 낭자하게 누설되어 여항 사이에 전과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도 문득 손을 휘젓고 혀를 묶고서 몰래 서로 계고(戒告)해 우리 전하로 하여금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망연하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혹 초모(草茅)18327)의 말이 시의(時義)를 모르고 한갓 충분심(忠憤心)에 격노한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몇 자의 말로 망발(妄發)이라고 하여 전편(全篇)의 큰 뜻인 혈충(血忠)을 가리어 마침내 몸과 머리가 따로 있게 되는 형을 받은 후에야 그만두게 됩니다. 실제로 악역(惡逆)을 범한 자는 도리어 쾌히 죄명(罪名)을 벗고 다시 수문(脩門)18328)에 들어가 총애로 인접하심이 빈번해 평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죄상이 조금 드러나서 거의 회오(回悟)할 만하였는데, 용서한다는 전교를 막 내리고 특별히 사유(赦宥)하는 명을 바로 내리시며 따듯한 유음(俞音)이 연달고 위유(慰諭)하기에 부지런하시어, 마침내 머리를 이고 있는 귀신으로 하여금 궁성 안에서 누워 쉬도록 하

以保位爲心，臺諫惟以免罪爲事，雖使宗社有復隍之勢，強臣有跋扈之事，不肯披誠奮義，痛陳無隱。若其事關機密，語涉忌諱，則雖宣泄狼藉，閭巷之間，無不騰傳者，輒揮手結舌，陰相戒告，使我殿下，如墮深井，茫然不知其有何事也。其或草茅之言，不識時義，徒激忠憤者，則殿下又以其數字句語之妄發，而掩其全篇大旨之血忠，竟至於身首異處而後已。顧其實犯於惡逆者，則乃反快脫罪名，復入脩門，寵接頻繁，無異平日。今其罪狀稍著，庶乎可以回悟，而貸律之教纔下，特有之命旋降，溫音絡續，慰諭勤摯，遂使戴頭之鬼，偃息城闈，屢登筵席，頑弟出入於藥院，悖子勿礙於要顯，是其頭勢，必使賊氣復張，宗國淪喪而後已。臣竊不敢知殿下之所以處此者，有何甚不得已之事，而爲此養寇召禍之舉。宗社之所倚賴，臣民之所仰戴者，惟我殿下與東宮耳，彼以玄鷹小醜，陰懷異圖，乃敢謀危我聖躬，搖動我國本，恣行凶悖，罔有紀極。則爲今日臣子者，所當沫血飲泣，沐浴請討之不暇，而舉世若狂漫，不知有此義，是則《春秋》

	<p>고 자주 연석(筵席)에 오르게 하였으며, 완악한 동생은 약원에 출입하고 쾌악한 아들은 현요직(顯要職)에 방애됨이 없으니, 이는 앞으로의 형세가 반드시 적의 기세를 다시 떨쳐서 중국(宗國)이 망한 후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신은 감히 전하께서 이들을 처분함에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처럼 도적을 기르고 화(禍)를 부르는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사가 의뢰하고 신민이 우러르는 것은 오직 우리 전하와 동궁뿐인데, 저 하찮은 소추(小醜)가 몰래 다른 계획을 품고서 이에 감히 우리 성공(聖躬)을 위해하고 우리 국본(國本)을 요동시키면서 흉패한 일을 자행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하된 자는 마땅히 피눈물을 머금고 목욕하고서 도벌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온 세상이 미친 듯하여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춘추(春秋)》란 책을 곧바로 수화(水火)에 던지고는 다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신으로 하여금 흉한 자의 기염을 두려워하고 사생(死生)을 비교해 따져서 끝내 한마디 말로써 이런 의리를 부식(扶植)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이른바 ‘내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아진다.’라는 것이므로, 이에 강약을 헤아리지 않고 화기(禍機)를 저축해 무릅쓰고서 감히 촌관(寸管)을 가지고 부월(鈇鉞)을 대신합니다.”</p> <p>하였다.</p>	<p>之書，直可投之水火，而不復讀矣。若使臣惶恐凶焰，計較死生，終無一言以扶植此義，則是所謂予不順天，厥罪惟均者也，茲以不揆強弱，觸冒禍機，敢將寸管，用付鈇鉞。</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21일(갑인) 2번째기사 공조 참판 김귀주가 홍봉한의 일로 상소를 올리다</p>	<p>공조 참판 김귀주(金龜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뜻밖에도 지난번 신의 재종제(再從弟) 수찬 신 김관주가 향리에서 올라와 일을 말한 차본(筵本)을 보내어 보이므로 신이 깜짝 놀라서 한번 두루 읽어 보았더니, 그 말의 득실은 논하지 않더라도 한 편(篇)에서 지적한 요점이 선신(先臣)의 뜻과 일을 제기하여 말을 한 것이 많았는데, 이는 신이 일찍이 몰래 마음속으로 통분해 하고 있었으나 감히 발설하지 못한 바였습니다. 아! 사람의 아들로써 시의(時義)를 돌아다 보면서 한결같이 꼭 참아 선인(先人)의 나라를 위하던 정성을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p>	<p>工曹參判金龜柱上疏，略曰： 不料昨者，臣之再從弟修撰臣觀柱，自鄉上來，送示言事筵本，臣蹶然驚起，一遍披讀，則無論其言之得失，一篇指要，多提先臣志事以爲說，而乃臣之所嘗隱痛於心而未敢發者也。噫！爲人子而顧瞻時義，一味含忍，使其先人爲國之誠，闇昧不章於世，而乃使他人先</p>

하여금 먼저 하게 하였으니, 이는 비단 전하에게 불충(不忠)할 뿐만 아니라 또 거둬 아버지에게도 불효한 것입니다. 불충·불효함을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지난 병술년(1832) 봄에 성체(聖體)가 불편하시어 정월 초부터 비로소 담결(痰結)의 징후가 있었고 2월 그믐에 이르러서 또 혼현(昏眩)의 증세가 더해 수라를 전폐하고 탕제(湯劑)의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원기가 날로 줄어 점차 사그러들게 되었는데, 이때를 당해서 구호하는 방도가 오로지 삼제(蔘劑)가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으니, 이는 의관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반드시 그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일에 신하로서 군부(君父)에게 마음을 다 쓴 자라면 이것을 버려두고 다시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때에 선신(先臣)이 한 달 넘도록 직숙(直宿)하면서 조석으로 애를 태우며 친히 약원에 나아가 어약(御藥)에 쓰는 삼을 보니, 모두가 수염과 꼬리를 붙인 저질품을 모양을 꾸며서 편(片)을 만든 것으로 한번 칼로 자르면 문득 회(灰)처럼 날라가 버렸습니다. 비록 여항의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 살림이 넉넉한 자라면 반드시 기꺼이 입에 넣으려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것이 조금의 진기(眞氣)도 없어서 어약에 쓸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신이 놀라운 마음으로 의관(醫官) 무리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근래에 경공(京貢)의 삼이 으레 모두 이와 같아 이때의 탕제는 모두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듣건대 연전에 재상 홍봉한(洪鳳漢)이 외방의 삼을 제외시키고 경공으로 바꾸었는데, 공인(貢人) 무리들이 실처럼 가는 미삼(尾蔘)을 거두어 모아 이겨서 풀로 붙여 삼이라고 이름해 내국(內局)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내국에서 혹 퇴짜를 놓으려고 하면 홍봉한이 큰 소리로 꾸짖기를, ‘이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로는 제거(提舉)에서부터 아래로 의관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으로는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입으로 감히 말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신이 도제거(都提舉) 신(臣) 김

之, 是則不但 不忠於殿下, 又重以不孝於其親。 不忠不孝, 何以爲人? 向在丙戌之春, 聖體違豫, 自正月之初, 始有痰結之候, 至二月之晦, 又添昏眩之症, 水刺全却, 湯劑無效。 以故元氣日減, 漸至漸綴, 當此之時, 救護之方, 專責蔘劑之好否, 此不待醫者之言, 而可知其必然也。 當日臣子之所以盡心於君父者, 捨此而更何爲哉? 伊時先臣, 經月直宿, 晨夕燭痒, 親詣藥院, 見御藥所用之蔘, 則類皆糊鬚附尾, 打扮成片, 一經刀剉, 輒如灰飛。 雖閭巷卑賤, 稍有家貲者, 必不肯入口, 則其無一分眞氣, 而不堪爲御藥之用, 可知也。 先臣心甚駭然之, 問于醫官輩, 則皆以爲, 近來京供之蔘, 例皆如此, 常時湯劑, 皆以此用之。 蓋聞年前, 洪相鳳漢奏除外方之蔘, 換作京貢, 貢人背鳩聚尾蔘之如絲者, 捏合塗附, 名之曰蔘, 而以進於內局。 內局或欲點退, 則鳳漢大聲詆喝曰: “是殺我也, 是故上自提舉, 下至醫官, 心知其非, 而口不敢言也。” 於是先臣言于都提舉臣金致仁曰: “聖上平日久服蔘劑, 當此患候彌篤之時, 苟不另擇好品, 而

치인에게 말하기를, ‘성상께서 평일에 오랫동안 삼제를 복용하시었는데, 이처럼 환후가 위독할 때를 당하여서는 진실로 특별히 좋은 품질의 것을 가리지 않고 단지 이처럼 풀로 붙인 것을 올려 쓴다면 원기가 결코 부접(扶接)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순전한 나삼(羅蓼)을 사용하지 않고서 빠른 효험을 보려고 하는가?’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내 뜻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영의정이 즐겨 하지 않아서 방금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데, 대감의 말이 중하니, 모름지기 그에게 힘껏 말하여 기어코 올려 쓰게 해야 옳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신이 드디어 김치인에게 한 말을 홍봉한에게 고하자, 홍봉한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응답하기를, ‘이는 잇대기가 어려운 방도여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신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대감의 처자에게 만일 병이 있어 마땅히 삼제를 써야 하게 된다면 잇대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써 구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집과 땅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잇대어 쓰겠는가? 더군다나 온 나라에서 임금을 봉양하는데, 미리 잇대어 쓰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 지금 성후(聖候)가 위독하여 나삼이 아니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약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한편으로 각도에 복정(卜定)하는 것이 문득 왜 불가하며 또 무엇이 지난(持難)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홍봉한이 발끈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대감은 척리로서 어찌 약원의 일에 간섭을 하는가?’라고 하므로, 선신이 탄식하면서 답하기를, ‘나로 하여금 조정 일에 관여하게 하면 참으로 죄가 되겠지만 지금 성후가 이와 같은데 약원의 탕제에 참여해서 안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날마다 다투어 몇 순(旬)에 이르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책을 낼 수가 없어 혹 제거에게 조용히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의관으로 하여금 합사(合辭)하여 돕게 하도록 했으나, 홍봉한은 끝내 마음을 돌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을 즈음에 성후가 점차 위독해지고 원기가 날로 떨어져 중외가 황급해 어쩔 줄을 모르게 되어 선신이 연석(筵席)에서 물러나와 차비

只以此糊附者進用， 則元氣決無扶接， 何不純用羅蓼， 以收速效耶?” 致仁曰 吾意正亦如此。 但首揆不肯， 方此渴 悶， 大監言重， 須力言于彼， 期於進用 可也。” 先臣遂以其告致仁者， 告于鳳 漢， 鳳漢沈吟良久， 漫應曰：“此難繼 之道， 不可用也。 先臣曰， 是何言也? 大監若有妻子之病， 當用蓼劑， 則其可 以難繼而不救乎? 抑將賣家賣土， 而必 期於繼用乎? 況以一國之大， 奉一人之 尊， 而顧乃預憂其難繼而不用耶? 今 聖候沈篤， 非羅蓼無以為力， 一邊取用 院儲， 一邊卜定各道， 抑何不可， 亦何 持難之有哉?” 鳳漢勃然作色曰：“大監 以戚里， 胡乃干預藥院事耶? 先臣噓唏 而答曰， 使我干預朝廷， 則誠罪也， 目 今聖候若此， 藥院湯劑， 顧不可以與論 耶? 自此以後， 逐日爭持， 殆至數旬， 而不相入。 於是計無所出， 或於提舉 從容勸諭， 或令醫官合辭贊成， 而鳳漢 終不回聽。 如是之際， 聖候漸劇， 元 氣日下， 中外遑遑， 罔知攸措， 先臣嘗 自筵退， 坐於差備門外， 促臣入見， 執 手嗚咽曰， 羅蓼不得用， 而聖候若此， 為之奈何? 吾將不計禍福， 以死爭之

문(差備門) 밖에 앉아서 신을 재촉해 들어와 보게 하고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삼을 쓰지 못해 성후가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화복(禍福)을 따지지 않고 죽을 각오로 다투겠다.’ 하였습니다. 인하여 흥봉한이 직소(直所)를 찾아오자 정색(正色)하고 말하기를, ‘성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나삼을 쓰지 않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대로 하라.’ 하였는데, 사기(辭氣)가 모두 엄격하고 눈물이 주루루 흘렀습니다. 그가 이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대감의 말 역시 옳다.’ 하고는, 드디어 힘써 쓰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선신이 또 사사로이 동삼(童蔘) 한 뿌리를 구하여 내국(內局)에 바쳐 달여 올렸는데, 바로 3월 19일 저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기가 하룻밤 사이에 돌아와 이튿날 아침에 병이 나았다는 경사를 알리었고 담증(痰症)과 현기증(眩氣症)도 시원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날에 부자(父子)가 서로 마주하여 춤을 출 듯이 기뻐하였으며, 선신이 또 개연히 신에게 말하기를 ‘이는 본디 양양(洋洋)하신 열조(烈祖)께서 묵묵히 중사를 돌보아 성궁(聖躬)을 보호한 것이고 또 황황(皇皇)한 상제(上帝)께서 그의 흉악한 마음을 밝히시어 몰래 조화를 부려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이다. 조만간에 그의 죄악이 저절로 연감(淵鑑) 아래에서 도피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 명분이 바르게 되고 분함을 씻게 될 것이다. 천도(天道)는 크게 밝아서 속일 수가 없음을 너는 알아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어제의 일처럼 귀에 역력합니다. 그날 저녁에 흥봉한이 여러 재상과 함께 입시하여 손으로 어맥(御脈)을 만져 보고 변동이 없음을 알고서는 즉석에서 일어나 나갔는데, 조금도 우려하는 기색이 없고 아주 뽐내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시한 주서(注書)도 목격하였던 바로서, 이밖에도 ‘이런 일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못하겠는가?’라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으나, 일이 전해 들은 말에 관계되어 신은 찾아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 전하께서 흥봉한을 저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也。 仍鳳漢之來訪直所， 正色言曰， 聖候至於此境， 而羅蔘終不見用， 過此以往， 大監不得辭其責矣。 任意爲之可也， 辭氣俱厲， 涕淚交迸。 彼乃俛首良久曰， 大監之言， 亦然矣。 遂黽勉許用。 而先臣又私求童蔘一根， 納于內局， 煎而進之， 卽三月十九日之夕也。 何幸元陽克回於一夜， 乃瘳告慶於翌朝， 痰眩諸候， 豁然盡祛。 是日父子相對， 舞蹈歡欣， 先臣又慨然謂臣曰， 是固洋洋烈祖， 默佑宗社， 保隲聖躬， 而抑亦皇皇上帝， 降燭凶肚， 潛回造化耳。 早晚彼之罪惡， 自莫逃於淵鑑之下， 則於是名可正矣， 憤可泄矣。 天道孔昭， 有不可誣， 汝其識之， 其言在耳， 歷歷如昨日事矣。 其日夕， 鳳漢與諸相入侍， 手按御脈， 知無變動， 卽地起出， 少無憂慮之色， 顯有自得之意。 此乃入侍注書之所目繫， 而此外是可忍， 孰不忍之事， 非止一二， 國言藉藉， 至今未已， 而事係傳聞， 臣不欲索言。 嗚呼！ 殿下何負於鳳漢， 而鳳漢之無將無嚴， 一至此哉？ 聖候沈綿之中， 脚氣不調， 運用甚艱， 房闈之間， 不能運步。 先臣以老人大病之餘， 元



홍봉한의 역심[無將]과 무엄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성후가 위독한 가운데 다리 기운이 편치 못해 걸음걸이가 매우 어려워 방달(房闈)18330) 사이에도 걸음을 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선신이 ‘노인이 큰 병을 앓고 난 후여서 원기가 회복되지 못해 아래 부분이 허약한 것이니 주기(酒氣)를 빌지 않으면 아래로 퍼지게 할 수 없다.’고 여겼으나, 그때에 금령(禁令)이 아직도 엄하여 성상의 뜻이 혹 허락하지 않을 듯하기 때문에 드디어 홍봉한에게 말하여 드시도록 권하게 하였는데, 끝내 기꺼이 할 뜻이 없었습니다. 문득 전 참의 신 홍성(洪晟)의 노부가 오랫동안 다리 병으로 고생하다가 송다로 효험을 보았다고 하기에 드디어 맞이하여 물어 본 다음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홍성의 입시를 명하여 상세히 물으셨으나 마침내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홍봉한이 그때 연석에 들어왔다가 한마디도 들기를 권하지 않고 물러가 함문 밖에 앉아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오히려 격노하심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걱정되어 신하들이 두려워하면서 날 짜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송다를 올리면 우리들은 장차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여, 듣는 자들이 모두 실색하였습니다. 그 후에 선신이 홍봉한과 함께 들어가 문후를 마치고는 선신이 일부러 손으로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기며 말하기를, ‘그 말을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를 하였으나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하자, 선신이 마침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왜 송다에 대한 일을 아뢰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에 부득이하여 예사로운 말로 드시기를 권하였는데, 전하께서 즉시 허락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다리 기운이 조금 좋아져 열흘 사이에 걸음이 거의 정상에 이르렀으니, 그때의 광경은 전하께서도 역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홍봉한이 범한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인데, 나삼의 일은 전하께서 막연하게 듣지 못하셨으며 송다의 일은 전하께서 비록 그 대략은 통촉하고 계시지만 자세한 것은 아시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선신이 살아 있을 때에 일찍이 이런 일을 입 밖에

氣未復，下部痺弱，非借酒氣藥力，無以下敷，而其時禁令尙嚴，聖意或者靳許，故遂言于鳳漢，使之勸進，而終無肯意。旋聞前參議臣洪晟之老父，久苦脚患，以松茶見效，遂邀而問之，仍爲陳白，殿下命晟入侍，詳細下詢，而終未有發落。鳳漢時入筵中，無一言勸進，退坐閣外，勵聲大言曰，主上不飲酒，尙患激惱頻作，臣隣凜凜度日，今進松茶，吾輩將何以支堪乎？聞者莫不失色。其後先臣，與鳳漢同入問候訖，先臣故以手扯其掖曰，可奏其言。如是者屢，漫若不聞，先臣遂大聲曰，胡不奏松茶事乎？彼乃不得已漫辭勸進，則殿下卽許之。自是脚氣頓勝，旬日間步履，幾至如常，其時光景，殿下亦或記有之矣。惟此二事，乃鳳漢負犯之最大者，而羅蓼事，則殿下漠然不聞，松茶事則殿下雖略燭其概，而猶未得其詳耳。先臣在世時，未嘗以此事發諸口，惟於燕私之際，對子弟言，輒撫膺流涕，掩抑不自勝。其後鳳漢，遭其繼母喪，先臣往唁之，鳳漢乃出脉其拇指，誇其所用之蓼，如許其大者，凡幾許斤。先臣歸而歎曰，渠之繼母，

내지 앓았고 오직 사사로운 자리에서만 자제에게 말해 주면서 가슴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리며 억제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후에 흥봉한이 그의 계모상(繼母喪)을 당하여 선신이 가서 조문하였었는데, 이에 흥봉한이 나와 그의 엄지손가락을 꺼내 보이면서 그가 썼다는 삼을 자랑하며 ‘이러한 크기의 것을 몇 근이나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신이 돌아와서 탄식하기를, ‘그의 계모는 어떤 노파이기에 능히 천승(千乘)의 임금이 복용하지 못한 것을 복용하였고 그의 집안 세력이 얼마나 부자이기에 국력으로도 잇대지 못하던 것을 잇대었던 말인가?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러한 세계(世界)가 있겠는가? 나는 정신이 이미 쇠약하여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 우리 4백 년의 종사가 반드시 이 사람의 손에서 망하겠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몇 조항은 바로 선신의 뜻과 일이 있는 바인데, 신의 못남으로 인하여 사라져서 알려지지 않았으니, 마음이 항상 아팠습니다. 이제 마침 일이 나옴으로 인하여 전하 앞에서 한번 진달하였으니, 지금 이후에는 비록 땅에 엎어져 죽더라도 거의 유감이 없겠습니다. 아! 선인의 뜻이 이미 밝혀지고 사의(私義)를 조금이나마 폄하니 마땅히 언급할 남은 말이 없어야 하나, 이른바 국본(國本)을 요동한다는 설은 종사의 존망과 저군(儲君)의 안위에 관계되는데, 신이 어찌 한마디 하여 밝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임오년(1833)의 일은 바로 성상께서 종사를 위해서 하신 대처분(大處分)으로,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해와 별처럼 빛나니, 신하로 있는 자 그 누가 흠양(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봉한이 봉승(奉承)한 것은 어찌 일찍이 옛날 대신이 난(難)에 임하여 빼앗기지 않은 절조와 같겠습니까? 곧장 사생(死生)을 두려워하여 때를 틈타 미봉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후에 세월이 조금 흐르자 흥계가 겹겹이 생겨서 화심(禍心)을 간직하고 반복(反覆)·전도(顛倒)하였습니다. 비로소 이에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들이자는 의논을 창출(唱出)해 드러내 놓고 공갈하여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니, 인심은 놀라

是何物老嫗，而乃能服千乘之君所不能服，而渠之家力，是何等巨富，而乃能繼國力之所不能繼耶？天下萬古，寧有如許世界耶？吾則精神已瘁，無復久斯世也，噫！我四百年宗社，必覆於此人之手。蓋此數款，乃先臣志事之所在，而緣臣不肖，泯沒無聞，心常痛焉。今因事會之發，得以一陳於殿下之前，自今以後，雖卽地滅死，庶無餘憾矣。噫！先志旣明，私義粗伸，則宜無餘言，可以及他，而若其所謂搖動國本之說，是係宗社之存亡，儲君之安危，則臣又安得不一言以明之哉？嗚呼！壬午之事，卽聖上爲宗社大處分，而斷自宸衷，赫如日星，凡在臣隣，孰不欽仰？而若鳳漢之所以奉承者，何嘗如古大臣臨難不奪之節哉？直不過怵畏死生，乘時彌縫耳。其後時月稍久，凶計層生，包藏禍心，反覆顛倒。始乃唱出追崇入廟之議，顯言恐喝，波動一世，人心驚惑，中外荷擔，識者之瘋憂竊歎，蓋已久矣。惟我春宮邸下，姿質英特，學識明透，伏想於此，有以知其所處，而鳳漢敢以小人之腹，妄度貳聖之心，自謂吾言可行，吾志可成。年前私覲

미혹되고 중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식자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직 우리 춘궁 저하(春宮邸下)는 자질이 영특하고 학식이 명철하시니, 삼가 생각하건대 이에서 그 처신할 바를 아실 것인데, 흥봉한이 감히 소인의 마음으로 망령되어 이성(貳聖)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나의 말은 행할 수 있으며 내 뜻은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해 전에는 사사로이 동궁을 만나보고 이에 후일 번안(飜案)할 논의를 발설하여 감히 면전에서 협박할 모의를 이루려 했었는데, 춘궁 저하께서 깊이 그 간사함을 살피시고 성색(聲色)을 바꾸지 않으시며 침묵으로 말쑤를 하지 않아 엄히 배척하는 뜻을 드러내어 보이시자, 흥봉한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부도(不道)의 말을 하기를, ‘저하께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국본(國本)을 흔들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차마 이 말을 했으나 신이 어찌 감히 필설로 옮기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이 한마디 말은 궁중(宮中)의 말이니 마땅히 비밀에 붙여 전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척리의 집에서 나와 진신 사이에 전과되어 듣는 자들이 혀를 빼물고 서로 돌아보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신 역시 초방(椒房)18332)의 가까운 친속으로 귀가 있어 듣고는 마음과 뼈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를 위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대개 방애되는 바가 있음을 연유해서입니다만,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신 역시 스스로 속(贖)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전하는 종사의 주인이며 춘궁은 이저(貳儲)의 임금입니다. 전후의 사륜(絲綸)18333)에 매양 ‘한 모퉁이 청구(靑丘)18334)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전교가 있으니,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군들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흥봉한이란 자는 전하의 원보(元輔)로 있고 춘궁의 외척인데도 무슨 마음으로 우리 전하를 원수로 여기어 삼다(蓼荼)의 진용(進用)을 막았으며 우리 춘궁을 협박하여 종국(宗國)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신하 된 자에게 이런 범죄

東宮也，乃發日後翻案之論，敢售面前脅持之謀，春宮邸下，深察其奸，不動聲色，沈默不言，顯示嚴斥之意，鳳漢不勝悲憤，遂出不道之說曰，邸下若不聽吾言，則當如是如是者，卽搖動國本之說也。渠雖忍能言之，臣何敢騰諸筆舌也？顧此一言，係是宮中語，宜若秘諱不傳，而出自戚里之家，播諸搢紳之間，聞者吐舌，相顧色沮。臣亦椒房近屬，有耳得聞，心顛骨青，不能自己。至今不爲殿下一言者，蓋緣有所掣礙，而若論其罪，臣亦無以自贖也。嗚呼！殿下者，宗社之主也，春宮者，貳儲之君也。前後絲綸，每有一隅靑丘，祖依孫孫依祖之教，苟有人心，孰不感泣？而彼鳳漢者，在殿下爲元輔也，春宮爲外戚也，抑獨何心，仇讎我殿下，抑遏蓼荼之進用，危逼我春宮，動搖宗國之根本乎？爲人臣者，有此負犯，則宜不得一日容息於覆載之間，而至今戴頭無恙，偃伏城闈者，天道茫茫，臣莫之究也。惟其十年秉軸，勢成威立，操縱舒慘，惟在其手，與奪生死，一任其意。一時之卿士大夫，風靡影從，奴顏婢膝，稍欲自好者，又皆

가 있으면 마땅히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까지 머리가 붙어 있어 탈없이 궁성 안에 엎드려 있음은 천도가 망망한 것으로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10년 동안 국정을 잡으면서 세력을 이루고 위엄을 세워 늦추거나 참혹하게 조종하는 것이 오직 그의 손에 달려 있고 생사 여탈(生死與奪)도 한결같이 그의 뜻에 맡겨졌습니다. 한때의 경사대부들이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를 좇듯이 노안 비슬(奴顏婢膝)18335) 을 하여 조금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자는 또 모두 발을 포개고 다리를 떨면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상(氣象)은 대개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까닭이 아닙니다. 지금의 회사 세계(灰死世界)에 어찌 조금의 양기(陽氣)가 있겠습니까만, 동일한 것은 인심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의(公議)여서 비록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라 하더라도 오히려 방천(防川)해야 될 걱정이 있으면, 잠깐 사이에 또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을 만들어 내어 인심을 현혹시키고 공의(公議)를 헐박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동궁의 외조(外祖)이니, 참으로 나를 해치는 마음을 두는 자는 이는 동궁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궁 저하께서는 종사의 주창(主鬯)18336) 인 지위에 처하여 억조 창생(億兆蒼生)이 목을 빼고 바라보는 바여서 무릇 인륜이 있는 자는 모두 사랑하여 받들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것이 어찌 흥봉한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진실로 흥봉한의 말과 같다면, 이는 왕망(王莽)을 죽이는 자는 성애(成哀)18337) 에게 불충(不忠)한 것이요, 양기(梁冀)를 죽이는 자는 충질(沖質)18338) 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니, 이런 말로써 못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말이 불순(不順)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이미 부도한 말을 감히 이연(離筵)18339) 에서 말해 옥내의 말이 전과되어 거리의 의논이 들끓어 이 일이 한번 나오면 대벽(大辟)을 도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침내

重足慄股，惟恐獲罪，似此氣象，蓋非一朝一夕之故也。顧今灰死世界，豈有一分陽氣，而但所同者人心，不泯者公議，雖以薰天之勢，猶有防川之憂，則俄頃之間，又造爲保護東宮之說，以眩惑人心，以脅制公議。其言曰，我東宮之外祖也，苟有害我之心者，是不利於東宮也。噫！是何言也？東宮邸下，處宗社主鬯之位，係億兆延頸之望，凡有秉彝，莫不愛戴，則是豈一鳳漢之所得以私之哉？苟如鳳漢之言，則是誅王莽者，不忠於成、哀，而討梁冀者，不利於沖、質也，以是爲言，其可以服衆人之心，而鉗一辭之口乎？夫必知其言不順事不成，而猶爲之者，是無他耳，渠既以不道之說，敢發於離筵，屋話播傳，巷議沸騰，惟恐此事一發，大辟難道，故遂出萬不近理之言，以爲先發制人之計。若使知其事者聞之，則不啻如見其肺肝，而適露其龔隱之態，誠不滿一晒也。近日以來，聖上深軫世道之憂，痛戒偏黨之習，處分之際，略示好惡，則渠乃鰥舞雀躍曰，乘此機會，可以網打矣。彼庸庸碌碌中無所主者，隨其指揮，聽其頤使，鳳漢

만번을 말하여도 이치에 가깝지 않은 말을 하여 먼저 남을 제압할 계책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아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비단 그의 폐간(肺肝)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간특한 태도도 드러나기에 족할 것이니, 참으로 한번 웃기에도 부족합니다. 근일 이래로 성상께서 깊이 세도(世道)의 근심에 마음을 두어 통렬히 편당(偏黨)의 습성을 경계하시어 처분하는 즘에 조금 호오(好惡)의 뜻을 보이시자, 그가 이에 춤을 출 듯 기뻐 날뛰면서 말하기를, ‘이 기회를 틈타면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용렬하고 녹록(碌碌)하여 마음에 췌대가 없는 자들이 그의 지휘에 따르고 턱으로 지시하는 말을 들어서 흥봉한이 평소 일찍이 좋아하지 않은 자들을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해 허구의 말을 지어내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위로는 천청(天聽)을 현란시키고 아래로는 세상을 놀라게 하며 동서(東西)에서 단았다 열었다 하고 좌우에서 섬롱(閃弄)하기를 귀신이나 물여우처럼 하여 그 단예(端倪)18340) 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전하의 교목 세신(喬木世臣)과 고가 명족(故家名族)은 장차 한 사람도 요행히 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위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신의 집안은 본디 흥봉한의 집과 은원(恩怨)이 없고 그 처지를 논하면 대략 서로 같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서로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느 해 이전부터 그가 한 소행과 그 말미암은 바를 보면 오로지 공(公)을 등지고 사(私)를 따라서 오직 권세를 탐하고 좋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선신(先臣)이 마음속으로 비록 불평하였지만, 겉으로는 기미(羈縻)함을 보였으며, 병술년18341) 이후에는 또 일찍이 몹시 싫어하고 대단히 미워하지 않고서 오직 한결같이 용서하여 기미(機微)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어찌 흥봉한 한 사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참으로 일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혐극(嫌隙)이 먼저 생긴다면, 비단 신의 집이 그자리에서 멸망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궁

之所嘗不悅者，目之爲黨人，架虛鑿空，指無爲有，上以眩亂天聽，下以嚇動一世，東西闔捩，左右閃弄，如鬼如蜮，莫測端倪。似此不已，則殿下之喬木世臣故家名族，將無一人倖免者，未知殿下誰與爲國？嗚呼！臣家與鳳漢，本無恩怨，而論其地處，則略相同也，夫豈有一毫相失之意哉？第自某年以前，視其所以，觀其所由，則專是背公循私，惟事貪權樂勢。先臣內雖不平，外示羈縻，及至丙戌以後，又未嘗疾首痛惡，而惟一向假借，不露〔機〕微者，豈獨爲一鳳漢哉？誠以事機未著，嫌隙先生，則非但臣家立就湛滅，抑恐聖躬未保安危，故十年前席，欲吐未吐，徒抱耿耿，齋恨而沒，臣之隱痛，實在於此。然猶忍憤含冤，以有待焉，昨年之秋，處分遽下，絲綸嚴正，特施庶人之律。忽一日鳳漢之弟龍漢，來見臣，語及當日處分，乃敢變亂聖教，顛倒事實，隱然歸聖躬於黷昧罔測之域，處其兄於光明純粹之地。臣始則愕然，終以憤惋，誦傳其時傳教，字字分析，句句明辨，龍漢終不以爲然，臣嚴辭切責而退之，其後聞龍漢

(聖躬)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석(前席)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였고 한갓 경경(耿耿)한 한을 머금은 채 죽었으니, 신의 은통(隱通)이 실로 이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노를 참고 억울함을 품은 채 기다려 왔었는데, 작년 가을에 처분을 갑자기 내리시어 사륜(絲綸)이 엄정하여 특별히 서인(庶人)으로 만드는 율을 시행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루는 홍봉한의 동생 홍용한(洪龍漢)이 신을 보러 왔었는데, 말이 당일의 처분에 이르자, 이에 감히 성교(聖敎)를 변란하고 사실을 전도시켜 은연중 성공을 헤아리기 어려운 암매한 지역으로 돌리며, 그의 형은 광명(光明)하고 순수한 곳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마침내는 분노해서 그때의 전교를 외며 한 자 한 자씩 분석하고 구절 구절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홍용한이 끝내 그렇게 여기지 않으므로, 신이 엄한 말로 크게 책망하여 물리쳤었는데, 그 후에 들으니, 홍용한의 이 말이 세상에 전파되어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왕성해졌습니다. 또 듣건대 홍봉한이 스스로 그때에 행한 바를 망연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는데, 아! 이는 왕언(王言)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내어 그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서 깊이 믿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홍준한(洪駿漢)이 또 와서 말하기를, ‘우리 형에게 비록 이런 일이 없었으나 성교에서 이미 있었다고 하셨으니, 역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해 들은 말이 과연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이에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홍용한이 다시 찾아왔기에 이치를 들어서 책망하기를, ‘그대 집안의 행한 바가 이미 이와 같아서 우리들은 구차하게 영합할 수가 없으니 휴척(休戚)의 의리를 더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의(義)를 들어서 절교를 고하였습니다.

아! 저 홍봉한은 의리를 만환(漫漶)18342) 하고 성공(聖躬)을 무함(誣陷) 날조함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는데, 신이 만약 우물쭈물 명확하지 못하게 되돌아

此說，播行於世，日新月盛。而又聞鳳漢自言其時所爲，茫然未記，噫！是以王言爲做出虛無，以誣其身也。臣初聞其說，未之深信，居數日駿漢又來言曰：“我兄雖無是事，而聖敎既謂之有，則亦復奈何？”然則其意所在，的然可知，而傳聞之說，果不虛矣。臣不勝痛惋，於是因龍漢之再訪，據理責之曰，君家所爲既如此，則吾輩不可苟合，而休戚之誼，不得復保，遂引義告絕。噫！彼鳳漢漫漶義理，誣捏聖躬，至於此極，而臣若依違顧瞻，畏其權勢，徒保平日戚家之誼，則是上負殿下，下負先臣也。皇天神明，質之在上，臣豈忍爲此哉？自是厥後，彼之怨憾，日以益深，毒鋒猛鎬，節節層加，傳來之言，不勝駭悖，聞者莫不爲臣危之，臣杜門斂跡，永絕世念。而獨想夫宗社日就危亡，而殿下漠未省悟，凶賊益肆猖狂，而朝臣無一敢言，慨憤痛迫，銷鑠不得，茲敢略舉梗概，昧死言之。

	<p>보며 그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한갓 평일의 척가(戚家) 사이의 의리만 보존한다면, 이는 위로 전하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선신(先臣)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황천(皇天)·神明(神明)이 위에서 질정(質正)하고 계시는데, 신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후부터 그의 원망하는 유감이 날로 더욱 심해져 봉적(鋒積)의 독맹(毒猛)이 마디마디 겹쳐 가중되므로 전해오는 말이 해괴하고 쾌악함을 이기지 못해서 듣는 자들이 모두 신을 위태롭다고 여기니, 신은 문을 닫고 자취를 거두어 영원히 세상에 대한 생각을 끊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종사(宗社)가 날로 위망(危亡)해지고 있는데도 전하께서는 막막하게 깨닫지 못하고 흉적은 더욱 방자하게 날뛰는데도 조정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감히 말을 하지 않으니, 분개하고 통분함을 삭이지 못하고 이에 감히 대강을 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말합니다.”</p> <p>하였다.</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21일(갑인) 4번째기사 수찬 김관주가 심의지·한유의 무리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p>	<p>수찬 김관주가 상소를 안고 대하(臺下)에 이르러 승지를 불러 바치니, 임금이 김관주에게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승지에게 읽어 아뢰라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나삼(羅蓼)을 쓰지 않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p> <p>하니, 김관주가 말하기를,</p> <p>“국구(國舅)가 조정에서 물러나와 울면서 말했기 때문에 신이 알았습니다. 김치인 역시 그때 도제조였으니 알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상철이 말하기를,</p> <p>“수의(首醫)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방태흥(方泰興)을 불러 물으매, 대답하기를,</p> <p>“근래에 나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에 순전히 나삼을 쓰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탕약에는 혹 순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修撰金觀柱抱疏至臺下，呼承旨呈納，上使觀柱持入，命承旨讀奏。上曰：“羅蓼不用，汝何以知之？”觀柱曰：“國舅退朝泣言，故臣知之矣。金致仁亦以其時都提調，可以知之矣。”金尙喆曰：“問于首醫則可以知也。”上招問方泰興，對曰：“近來羅蓼不足，故時有純用羅蓼之議，而湯藥則或不能純用也。”上曰：“何不并論其時都提調耶？”觀柱對曰：“致仁之意，欲用純蓼，而鳳漢不從也。”上謂觀柱曰：“金致仁，汝以爲是乎？”對曰：“爲清爲名，植黨之人，臣子豈云是哉？”上</p>

	<p>“어찌하여 그때의 도제조와는 함께 논하지 않았는가?”</p> <p>하니, 김관주가 대답하기를,</p> <p>“김치인의 뜻도 순삼(純蔘)을 쓰고자 하였으나 흥봉한이 따르지 않았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김관주에게 이르기를,</p> <p>“김치인을 너는 옳다고 여기는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청렴하다고 이름하면서 당(黨)을 만드는 사람을 신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p> <p>“너는 구상(具庠)을 배우는 것인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명예를 구하는 것은 그가 이미 양달(仰達)하였으니, 이는 실로 이름을 도둑질하여 당에 투신한 것입니다. 어찌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네 말은 그러하다.”</p> <p>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p> <p>“관계된 바가 매우 중한데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역시 새로운 말이 아니요 모두 평상시에 의저(疑阻)하여 그런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온 세상이 암아(媮媮)18343) 하는 때에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능히 앞장서서 말하니 그 마음은 가상하나, 이미 지금에 깨닫는데 관긴(關緊)하지 못하다면 정원(政院)에 바친들 어찌 늦겠는가? 그런데 이처럼 바쁘게 하여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키니, 사체(事體)에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심의지(沈儀之)가 장전(帳前)에서 대답한 것이 한유(韓鑰)와 차이가 없는데 어찌 감히 이 글에서 제기했는가? 또 척신(戚臣)은 삼함(三緘)18344)의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양구</p>	<p>曰: “汝學具庠乎?” 對曰: “鈞名沽譽, 渠既仰達, 此實盜名投黨者也。 何學之有?” 上曰: “汝言則然矣。” 仍下教曰: “關係甚重, 而究其本, 亦非新語, 皆由恒日疑阻而然。 雖然舉世媮媮之時, 不計一身, 其能挺身, 其心雖嘉, 既不關繫於今曉, 則呈於政院亦何晚也? 而忙忙如此, 動其君心, 事體萬萬不然。 儀之帳前所對, 與鑰無間, 則何敢提付此章乎? 亦以爲戚臣戒三緘之意, 楊口縣免爲庶人。” 左議政申晦曰: “此非可罪者。 儀之、鑰輩, 旣服正刑, 則提起非矣。 亦何必罪之?” 上曰: “吾將詣舊邸, 豈入左相麾下乎?” 晦承嚴教出去, 胥命金吾。</p>
--	--	---



	<p>현(楊口縣)에 면직시켜 서인(庶人)을 삼으라.”</p> <p>하니, 좌의정 신회가 말하기를,</p> <p>“이는 죄를 줄 것이 아닙니다. 심의지와 한유의 무리는 이미 승복하여 정형(正刑)하였으니, 제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찌 반드시 죄를 주어야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장차 구저(舊邸)로 나아가려는데, 어찌 좌상의 휘하(麾下)에 들어가겠는가?”</p> <p>하니, 신회가 업교를 받들고 나가 금오(金吾)에서 서명(胥命)18345 하였다.</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25일(무오) 1번째기사</p> <p>탕제를 물리치고 입진을 허락하지 않았다</p>	<p>임금이 탕제를 물리치고 입진(入診)을 허락하지 않아 약원에서 합문 밖에 기다리며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다. 도승지 한필수가 중관(中官)을 대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니, 저물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봉해 들이라는 전교가 내렸다.</p> <p>사신은 말한다. “임금과 아버지는 일체이나 아들이 아버지를 섬김에는 마땅히 은사(恩私)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오직 엄의(廉義)를 지킬 뿐이다. 오늘날 약원의 여러 신하들 중에 누군들 애를 태우는 고민이 없었겠는가만, 유독 한필수만이 이처럼 당황해 하는 태도를 보여 중관이 돌아가서 임금이 알게 하기를 바랐으니, 더러운 일이다.”</p>	<p>戊午/上却湯劑，不許入診，藥院待閣外不敢退。都承旨韓必壽對中官叩頭涕泣，至暮始下封入之教。</p> <p>【史臣曰：君與父一體，而子之事父，當盡恩私，臣之事君，惟守廉義而已。今日藥院諸臣，孰無焦渴之悶，而獨韓必壽作此遑遑之態，以要中官歸達上知，陋矣。】</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8월 19일(신사) 5번째기사</p> <p>감선과 탕척의 일에 대해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p> <p>“이제 크게 깨달았으니, 지금 만약 감선(減膳)한다면 이는 국체(國體)를 손상시키고 중한 일을 훼손하게 되니 특별히 종백(宗伯)의 소청을 따른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의 거조가 광명 정대(光明正大)함을 알게 하라. 대신과 중재(重宰)에 있어서는 이 일이 임신년(18387)과 같아서 특별히 탕척하는 일이 이미 온당한데, 내 어찌 마음에 찌꺼기를 남겨 두겠는가?”</p> <p>하였다.</p>	<p>○教曰：“今乃大覺，今若減膳，此損國體虧重事，特從宗伯所請。使諸臣咸知其君舉措之光明正大。大臣重宰，本事與壬申年同，特爲蕩滌事既妥帖，予何留查滓於方寸?”</p>
<p>영조 119권, 48년</p>	<p>천둥하고 번개가 치니, 임금이 10일 동안 감선(減膳)을 명하였다.</p>	<p>朔壬戌/雷動電光，上命減膳十日。</p>

<p>(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0월 1일(임술) 1번째기사 천등과 번개로 10일동안 감선을 명하다</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0월 2일(계해) 1번째기사 약방에서 구전으로 아뢰었으나 탕제를 허락하지 않다</p>	<p>약방에서 합문(閣門)을 지키며 구전(口傳)으로 다섯 번 아뢰어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癸亥/藥房守閣，口傳五啓，請命持湯劑入侍，不許。</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0월 3일(갑자) 2번째기사 탕제에 관한 일로 해당 승지를 파직하고 신익빈으로 대체하다</p>	<p>하교하기를, “이제 대신(大臣)이 합문을 막고 앉아서 임금의 협박하니, 이것이 무슨 기강이며 무슨 국가의 체모인가? 모두 임금이 노쇠한 데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니, 시임·원임 대신과 약방 제조가 관을 벗고 합문 밖에서 서명(胥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하는가?” 하고는, 비로소 약방 및 시임·원임 대신의 입시를 허락하였다. 대신이 관을 벗고 계단 아래에 엎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을 쓰고 오라.” 하였다. 영의정 김상복 등이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황송하여 감히 연중(筵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탕제 때문에 감히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敎曰：“今者大臣，以守閣坐脅其君，此何紀綱，此何國體？皆由於其君衰耗而然也。”時原任大臣藥房提調，免冠胥命於閣外。上曰：“何如是過耶？”始許藥房及時原任大臣入侍。大臣免冠，伏於階下，上曰：“冠而來。”領議政金相福等進伏曰：“惶悚不敢入於筵中，而以湯劑之故，敢爲入來矣。”上曰：“若服湯劑，則雖輿僮，必曰大臣免冠，故我殿下服湯劑云矣。”相福進湯劑，上取覆之曰：“若服此，輿僮必有言。”命注書取來政院所在三相命召，上親授於三相曰：“此則受之。”相福曰：“湯劑未進，臣何顏受此乎？”</p>

	<p>“만약 탕제를 복용한다면 비록 천한 여대(輿臺)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하기를, ‘대신이 관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 전하께서 탕제를 드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p> <p>하였다. 김상복이 탕제를 올리자, 임금이 받아서 옆질러 버리고 말하기를, “만약 이것을 마시면 여대들이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p> <p>하고는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정원에 있는 삼상(三相)의 명소패(命召牌)를 가져 오게 하여 임금이 친히 삼상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받으라.”</p> <p>하니, 김상복이 말하기를, “탕제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신이 무슨 낮으로 이것을 받겠습니까?”</p> <p>하매, 하교하기를, “대관(大官)과 중재(重宰)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더라도 양사(兩司)가 시끄럽게 하는 것이 직분인가? 이는 아첨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 계사년에는 여러 날 정청(庭請)18410 을 한 후에야 양사에서 비로소 청하였었고, 또한 두 사람에게 불과하였었는데, 지금은 한 자리에 여섯 사람이고, 또한 경서(經書)를 이끌어 의리에 의거해야 할 유신(儒臣)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상소한 것에 말미암아서이다. 여러 대관(臺官)에게 아울러 삭판을 명한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 “하교를 써서 전하는 즘음에 착오가 막심하니 해당 승지를 파직하고 신익빈(申益彬)으로 대체하라.”</p> <p>하였다.</p>	<p>教曰：“大官重宰，容有以也，兩司喧鬧，此職分乎？此諂諛乎？昔癸巳年庭請多日後，兩司始請，亦不過二人，於今一席六人，而亦有引經據義之儒臣，若此者其由在一人陳章。諸臺并命刊版。”教曰：“下教書傳之際，做錯莫甚，當該承旨罷職，以申益彬代之。”</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11월 1 일(임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승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동지 삼사신(冬至三使臣)을 소견하고 손수 어제(御題)를 써서 하사하였다. 또 초모(貂帽)·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하사하고 선운(宣醞)하여 보내면서 심양(瀋陽)의 조선관(朝鮮館)을 그려 오고, 《탁록연의(涿鹿衍義)》와 《남계연담(南溪衍譚)》을 사서 오라고 명하였다.</p>	<p>朔壬辰/上御崇政殿月臺，召見冬至三使臣，手書御製以賜。又賜貂帽、胡椒等物，宣醞以送，命畫來瀋陽朝鮮館，質來《涿鹿衍義》、《南溪衍</p>

<p>동지 삼사신을 소견하고 어제를 써서 하사하다</p>		<p>譚》。</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1월 9 일(경자) 3번째기사 불인의 정사로 록비를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젓가락을 댄 것은 오직 녹미(鹿尾)뿐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찌 입에 맞는 맛으로써 불인(不忍)의 정사를 하겠는가? 이후에는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였다.</p>	<p>上曰：“近日下箸者，惟是鹿尾，而然豈以適口之味，行不忍之政乎？此後則勿爲封進。”</p>
<p>영조 119권, 48년 (1772 임진 / 청 건륭 (乾隆) 37년) 12월 1 일(신유) 1번째기사 영의정 김상복 등이 명년에 칭경할 것을 청하니 불윤하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내국(內局) 및 여러 대신(臺臣)을 소견하였다. 영의정 김상복 등이 우러러 아뢰기를, “명년에 칭경(稱慶)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김상복 등이 인하여 전계(殿階)로 내려가 대죄 하니, 임금이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전유(傳諭)하여 대죄하지 말라 하고 전으로 오르게 하였다. 김상복이 탕제를 들지 않으신 것으로써 전으로 감히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드신 후에 다시 전으로 올라오라 명하니, 김상복 등이 다시 입시하였다. 대사헌 송문재 등이 장주(章奏)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교를 환수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p>	<p>朔辛酉/上御集慶堂，召見內局及諸大臣臺臣。領議政金相福等仰奏，明年稱慶，不可不從，上不從。相福等因下殿階待罪，上命注書傳諭，勿待罪陞殿。相福以上不進湯劑，不敢上殿爲對。上進御後，更命上殿，相福等還爲入侍。大司憲宋文載等請還收章奏勿捧之教，上不允。</p>
<p>영조 120권, 49년 (1773 계사 / 청 건륭 (乾隆) 38년) 윤3월 1 일(경신) 1번째기사 승정전에 나아가 찬수를 받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찬수(饌需)를 받았다. 상례(相禮)가 왕세손(王世孫)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가자 인의(引儀)가 참연(參宴)한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사배례를 행하고 꿇어앉았고, 주원(廚院)18529)의 제조가 찬안(饌案)과 찬상(饌床)을 들이고 예방 승지가 꽃을 올리니 악사(樂師) 2인이 전(殿) 앞으로 나아가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불렀다. 왕세손이 칭송하는 글과 술잔을 올리니 대치 사관(代致詞官)이 꿇어앉아 읽고 승지가 선교(宣敎)하기를 청하매 유교(諭敎)한 뒤에 찬수를 드렸다. 왕세손 이</p>	<p>朔庚申/上御崇政殿，受饌。相禮引王世孫入就位，引儀引參宴諸臣入就位，行四拜禮跪，廚院提調進饌案床，禮房承旨進花，樂師二人詣殿前，唱新製樂章。王世孫進致詞爵，代致詞官跪讀，承旨請宣敎，諭敎後進饌。金相福進致詞爵，代致詞官跪讀，承旨讀宣敎，</p>

	<p>하가 세번 머리를 조아리고 세번 천세를 부른 뒤에 사배하였다. 사배례가 끝나자 왕세손이 전 안으로 들어가고 참여한 여러 신하들도 전에 올라 자리에 나아갔다. 전악(典樂)이 등가(登歌)18530) 를 인솔하고 전에 오르니, 주원의 부제조가 왕세손에게 찬수를 바치고 보덕(輔德)이 꽃을 바쳤으며 참여한 여러 신하들의 찬수도 베풀어지고 꽃을 부리니, 홍봉한(洪鳳漢)·김치인(金致仁)·김양택(金陽澤)·김상철(金相喆)·채제공(蔡濟恭)과 종신(宗臣)인 이연(李璉), 도위(都尉) 황인점(黃仁點) 등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이 연주되고 처용무(處容舞)가 추어졌는데, 춤이 끝나자 주원의 제조가 찬수를 거두고 부제조가 왕세손의 찬수를 거두었으며 여러 신하들의 찬수도 거두어 지니, 찬의(贊儀)가 ‘일어나소서’ 하고 외쳤다. 왕세손 이하가 각자 자리에 나아가 사배를 행하니, 통례(通禮)가 예필(禮畢)을 아뢰었다. 이어 광명전(光明殿)에서 내연(內宴)을 행하였는데, 임금의 뜻이 겸양을 주로 하고 태강(太康)18531) 의 경계를 간직하여 하루에 두 잔치를 아울러 행하여 몇 시간 안에 예를 갖추었을 뿐이었다.</p>	<p>諭教後進饌。王世孫以下，三叩頭三山呼四拜。訖，王世孫就殿內，參宴諸臣，陞殿就座。典樂率登歌陞殿，廚院副提調供王世孫饌，輔德供花，設參宴諸臣饌，散花，洪鳳漢·金致仁·金陽澤·金相喆·蔡濟恭·宗臣璉、都尉黃仁點以次進爵。奏雅俗樂，處容舞，訖，廚院提調掇饌，副提調掇王世孫饌，諸臣亦掇饌，贊儀唱可起。王世孫以下，各就位行四拜，通禮啓禮畢。仍行內宴於光明殿，聖意以撝謙，存戒太康，一日并行兩宴，數時之間，成禮而已。</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윤3월 3일(임술) 1번째기사 금상문에 나아가 양로연을 행하다</p>	<p>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승지와 사관(史官)이 먼저 사배(四拜)하니, 왕세손이 사배를 행하고 자리에 나아가 시좌(侍坐)하였고 참여한(參宴)한 여러 신하들도 사배하고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갔다. 임금이 왕세손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손을 잡고 기로연회가(耆老宴會歌) 6구(句)를 적으라고 명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것은 대풍가(大風歌)18532) 를 본뜬 것이다.” 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즉석에서 차운(次韻)하여 올리게 명하였다. 찬안(饌案)과 찬상(饌床)이 올려지니 왕세손이 배연(陪宴)한 여러 신하들을 인솔하고 세번 천세를 불렀다. 왕세손이 잔을 올리고 홍봉한(洪鳳漢)·한익모(韓翼謨)가 차례로 잔을 올렸다. 임금이 또 이익정(李益炡)에게 잔을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이익정이 &lt;《시경》&gt; 천보장(天保章)을 낭송하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허</p>	<p>壬戌/上御金商門，行養老宴。承史先四拜，王世孫行四拜，就位侍坐，參宴諸臣四拜，以次就坐。上命王世孫進前執手，命書耆老宴會歌六句。仍下教曰：“此效大風歌也。”又使諸臣，卽席賡進。進饌案床，王世孫率陪宴諸臣，山呼者三。王世孫進爵，洪鳳漢、韓翼謨以次進爵。上又命李益炡進爵，益炡請誦《天保章》，上許之。仍賜益炡一盃，命翼謨等耆社諸堂，以年次呼新來，相與對舞，雅俗樂交奏。</p>

	<p>락하였다. 이어 이익정에게 술 한 잔을 내리고 한익모 등 기로사(耆老社)의 여러 당상(堂上)에게 명하여 나이 순으로 신래(新來)18533) 를 불러 서로 짝을 지어 춤을 추게 하니 아악과 속악이 아울러 연주되었다. 이날 문무(文武)의 종신(宗臣)과 사서(士庶)의 늙은이로서 연회에 참여한 사람이 수백 인이었는데 사서민(士庶民)의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천세를 부르고 앞으로 나오니, 천세 소리가 궐정(闕庭)에 가득하였다. 늙은 백성으로 80세 이상인 자는 아울러 가자(加資)하라고 명하고 1백 3세된 사람에게는 특별히 지중추(知中樞)를 제수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의 가장 오래된 구포(舊逋)와 공인(貢人)의 오래된 미납(未納)을 모두 탕척하고 시민(市民)18534) 요역과 태학(太學) 전복(典僕)의 속전(贖錢)도 다음 달까지 특별히 감면해 주게 하였다.</p>	<p>是日文武宗臣士庶耆耆，與宴者數百人，士庶民耆耆，荷杖蹈舞，呼千歲而前，呼嵩之聲滿闕庭。命耆民八十以上并加資，百三歲人，特授知中樞。八道兩都最久舊逋及貢人舊遺在，并蕩滌，市民徭役，太學典僕贖錢，限來朔特減。</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윤3월 5일(갑자) 2번째기사 신수채를 특별히 지중추에 승진시키다</p>	<p>임금이 신수채(辛受采)가 정묘년(18536)에 태어났다 하여 특별히 지중추(知中樞)에 승진시켰다. 그리고 ‘정묘년과 갑술년(18537)의 두 해에 같이 기로소에 들었는데[丁甲兩年同耆社], 지금 이때 나의 회포는 일만 가지라.[今辰此日予懷萬]’라는 글귀를 손수 써 주었으며, 이어 하교하기를, “풍악을 잡히고 선온(宣醞)할 것이니, 영수각(靈壽閣)18538)에 가서 숙사하고 기로소(耆老所)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놀도록 하라.”</p>	<p>上以辛受采丁卯生，特陞知中樞。手書‘丁甲兩年同耆社，今辰此日子懷萬’之句，仍教曰：“賜樂宣醞，往謝靈壽閣，與耆社諸臣同遊焉。”</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4월 9일(정유) 4번째기사 홍낙명 등에게 가자하고, 박상갑 등을 승록시키다. 이한일이 과장 문란 등을 아뢰다</p>	<p>홍낙명(洪樂命)·이미(李瀾)에게 가자(加資)하고, 전(前) 주서(注書) 박상갑(朴相甲)·오재소(吳載紹)와 금제한 이병모(李秉模)에게는 모두 승록(陞六)하라고 명하였는데, 영의정 한익모(韓翼謨)의 주달에 의한 것이다. 지평 이한일(李漢一)이 아뢰기를, “이번 과장(科場)은 엄숙하지 못하여 떡·엿·술·담배 따위를 현장에서 터놓고 팔았으니, 그때의 금란관(禁亂官)에게는 삭과(削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였고, 또 아뢰기를, “강계 부사(江界府使) 유혁(柳赫)은 사람부터 용렬(庸劣)한데다가 성질도 흐릿</p>	<p>命加洪樂命、李瀾資，前注書朴相甲·吳載紹及第李秉模并陞六，因領議政韓翼謨所奏也。持平李漢一啓曰：“今番場屋不嚴，餅飴酒草之屬，亂賣於燈傘之間，其時禁亂官，宜施削罷之典。”又曰：“江界府使柳赫，人既孱劣，性又昏暗，檢田失稔，換穀招怨，宜施斥罷之典。工曹佐郎朴質，居在江上，武斷豪橫，奪取上納，名登文簿，宜施</p>

	<p>하여 검전(檢田)이 실임(失稔)하자 곡물을 바꿔치기하여 원성을 초래하였으니, 척과(斥罷)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공조 좌랑 박질(朴質)은 강가에 살면서 무단(武斷)으로 전횡(專橫)하였으며, 상납(上納)하는 것을 탈취하여 이름이 문부(文簿)에까지 올랐으니 삭판(削版)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응환(朴應煥)은 왕명(王命)을 받드는 관리로서 고을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도 태연히 무릅쓰고 놀러 앉아 있으니, 참으로 극히 유약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파직을 시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외방에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세궤(歲饋)18566) 나 절선(節扇)18567) 은 본래 정례(定例)가 있는 것인데도 요행을 엿보고 바라는 자들이 대부분 한도 이상으로 선사하여 벼슬을 도모하는 지름길로 삼고 있으며, 그곳의 소산(所産)에 따라 많은 것만을 위주로 하여 심지어 한 달에 두번 문안하는 일까지 있으니, 풍속을 손상함이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은(金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작의 고하(高下)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니 각도(各道)의 영읍(營邑)에 엄히 신칙하여 전처럼 지나치게 문안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지금 청한 것은 엄치를 권장하고 아침을 막는 길이다. 비국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엄히 신칙하게 하라.”</p> <p>하였다.</p>	<p>削版之典。 扶餘縣監朴應煥， 身爲命吏， 逢辱邑子， 晏然冒居， 誠極疲軟。 宜施罷職。” 上并從之。 又曰：“外方賂遺之公行， 誠爲今日痼弊。 歲饋節扇， 自有定例， 希覬僥倖者， 率多科外之饋， 以圖媒官之逕， 隨其土産， 以多爲主， 至於一月兩問之舉， 傷風敗俗， 實非細慮。 臣恐金銀多少， 官爵高下之說， 安知不有於今日乎？ 嚴飭各道營邑， 俾無如前濫問之弊。” 上曰：“今者所請， 卽勵廉恥杜諂諛之道也。 令備局嚴飭諸道。”</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4월 11일(기해) 2번째기사</p>	<p>가뭄을 근심하여 어공미(御供米)를 하루에 3승(升)씩 감하라고 명하였다가 이튿날 영의정 한익모(韓翼謨)의 주달로 인하여 앞서의 명을 도로 거두었다.</p>	<p>以憫旱， 命減御供米日三升， 翌日因領議政韓翼謨奏， 還收前命。</p>

어공미의 견감을 명하였다가 거두다		
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4월 14일(임인) 1번째기사 가뭄으로 월령 봉진을 정지하도록 하고 탕제도 들지 않다	임금이 가뭄을 민망히 여겨 월령 봉진(月令封進)을 비가 내리기 전에는 모두 올리지 말라 하고 탕제(湯劑)도 들지 않으니, 약방에서 재계(再啓)까지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壬寅/上以悶旱，月令封進，皆令得雨前停封，不進湯劑，藥房再啓，上不許。
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4월 22일(경술) 3번째기사	임금이 독서당(讀書堂)에 소장된 수정배(水晶盃)를 들여오라고 명하고 어필(御筆)로 ‘이제야 옛날 물건을 보니 팔순에 좋은 구경을 하였다. 특별히 써서 내리며 술잔 셋을 다함께 보관하라.’고 써서 내리고, 전(前) 대제학에게 명하여 발문(跋文)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上命入讀書堂所藏水晶盃，御筆書下‘今見故物，八旬壯覽。特書以賜，同藏三杯’，命前大提學製進跋文。
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4월 30일(무오) 2번째기사 주강에 《대학》을 강하고, 정범조에게 시를 짓게 하다	임금이 승정전(崇政殿)의 동월대(東月臺)에 나아가 주강(晝講)에서 《대학(大學)》을 강하였다. 친히 호당(湖堂)의 사전(謝箋)을 받고, 정범조(丁範祖)에게 시를 짓게 하여 호당의 옛 술잔을 가져다가 이어 선온(宣醞)하였다.	上御崇政殿東月臺，晝講《大學》。親受湖堂謝箋，使丁範祖製詩，取湖堂舊杯，仍宣醞。
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5월 5일(계해) 1번째기사 덕유당에 나아가 보리를 받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보리를 받았다. 임금이 판위(板位)에 나아가자 봉사 제조(奉常提調)가 보리 상자를 받들고 꿇어앉아 승지에게 전하매, 승지가 꿇어앉아 올리니, 임금이 친히 받았다.	癸亥/上御德游堂受麥。上詣板位，奉常提調奉麥箱，跪傳承旨。承旨跪進，上親受。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 (乾隆) 38년) 5월 11 일(기사) 1번째기사 대사헌 정광충이 상소 하여 휴퇴와, 임금의 보색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청하다</p>	<p>대사헌 정광충(鄭光忠)이 상소하여 스스로 연로(年老)한 것을 아뢰어 휴퇴(休退)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물膳(物膳)을 풍년이 들기까지 정봉(停封)하라신 명은 너무 중도에 지나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매년 초조하게 근심하는 때를 맞기만 하면 간혹 보색(保齋)하시는 절차를 소홀히 여겨 한데서 거처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부복하여 성체(聖體)의 젖음도 생각지 않으시는데 종사(宗社)를 부탁(付托)받은 성체를 어찌 스스로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으로 답하여 연로한 것을 인용한 것만은 허락하지 않았다.</p>	<p>己巳/大司憲鄭光忠上疏引年請休，又言：“物膳之限年豐停封之命，無亦過中之甚乎？且殿下每當焦憂之時，或忽保齋之節，不憚露處而俯伏，罔念聖體之沾濕，宗社付托之聖躬，寧可自輕乎？”上優批答之，不許引年。</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 (乾隆) 38년) 5월 11 일(기사) 5번째기사 석우의 성경대에 나아가 대신 등을 입시하게 하고 농민을 불러 술을 내리다</p>	<p>임금이 석우(石隅)의 성경대(省耕臺)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 및 경기 감사를 입시하라 명하고 농민을 불러 술을 내렸으며, 정범조(丁範祖)로 하여금 희우부(喜雨賦)를 짓게 하였다. 또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차운(次韻)하여 올리게 하였으며, 지나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렀다.</p>	<p>上御石隅省耕臺，命大臣備堂畿伯入侍，召農民賜酒。令丁範祖製喜雨賦。下御製詩，使入侍諸臣賡進，歷臨關王廟。</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 (乾隆) 38년) 5월 13 일(신미) 2번째기사 구익을 삭판하고, 내시교관의 폐단에 대하여 하고하다</p>	<p>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갔다. 구익(具麩)을 잡아들일때에 하고 가운데에, ‘만약 내가 연잉군(延昞君)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찌 이런 광경(光景)이 있었겠느냐?’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도승지 구익이 받아 쓰지 않자 임금이 진노하여 이러한 조치가 있게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조부는 내가 사지(死地)에서 빼내어 비단 방석 위에 앉혔는데, 네가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느냐? 너의 종형(從兄)은 ‘맑을 청[淸]’자로 자복(自服)하더니 너는 어찌 감히 ‘이름 명[名]’자의 여습(餘習)으로 나에게 갚으려 하느냐?”</p>	<p>上御建明門，拿入具麩時，下教中有若在延昞君，豈有此光景之句？都承旨具麩不爲奉書，上震怒有是舉。上曰：“汝之祖父，予拔之坑坎之中，置之祗席之上，汝乃負恩如此乎？汝之從兄，以淸字自服，汝何敢以名字餘習，售之於予乎？”麩曰：“不忠不孝，致有此境，惟願速死。”上曰：“汝之兄弟，</p>

	<p>하니, 구익이 말하기를,  “불충(不忠)·불효(不孝)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라웁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은 어찌 그리 쉽게 자복을 하느냐? 이로써 보건대, 어찌 참다운 ‘청명(淸名)’이었겠느냐? 그러나 특별히 너그럽게 풀어 주어 삭판(削版)만 하여 끌어내고 구윤옥(具允錡)에게는 특별히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모년(暮年)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 남야(南衙)18586) 와 북시(北寺)18587)가 엄숙해야만 나라가 다스려 질 수 있다. 아! 지난날에는 법도 엄하게 서고 한계도 엄하였는데, 그 뒤로는 씻은듯이 없어졌다. 중관(中官)의 자식이 심익창(沈益昌)에게 글을 배워 신축년(18588)·임인년(18589)의 사화(士禍)를 빚어냈다. 이른바 동·서학(東西學)의 학도도 전에는 남의 집에서 기식(寄食)하는 궁색한 선비를 스승으로 삼더니 근자에는 동서학의 교수나 훈도를 저희들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제방(隄防)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내시(內侍)의 교관(敎官)은 왕자의 사부(師傅)나 동몽 교관(童蒙敎官)과 같은데도 고강(考講)할 때에는 술을 제공(提供)하니, 이는 왕자의 사부에게도 없는 일이다. 비록 고강할 때에는 상대해도 괜찮다 하지마는 여러 학도가 세시(歲時)로 방문하는 것은 모두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何其遲晚之易耶? 以此觀之, 豈眞淸名乎? 特用寬釋, 刊版拿出, 具允錡特施不敘之典。” 敎曰: “暮年靜思, 南衙北寺嚴然後, 可以爲國。 嗚呼! 昔年樹法嚴界限嚴矣, 其後蕩然。 中官之子, 受學於沈益昌, 釀成辛壬。 所謂東西學徒, 前則以寄食窮儒爲師矣。 近者東西學敎訓, 以自其中爲之, 此庶可爲隄防。 而內侍敎官, 與王子師傅童蒙敎官同, 而考講時饋酒, 此則王子師傅所無者。 而雖然考講時, 相對可也, 而諸學徒歲時尋問, 皆禁焉。”</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6월 6일 (갑오) 1번째기사  평·생선·참외·수박 등</p>	<p>하교하기를,  “평·생선·참외·수박 등은 이미 간품(看品)을 하고 올라온 것이니, 각전(各殿)의 도설리(都薛里)가 중간에서 조종(操縱)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p>	<p>甲午/敎曰: “雉鮮眞西瓜, 已看品而來者, 各殿都薛里, 毋得操縱。”</p>

<p>의 중간 조종을 막도록 하교하다</p>		
<p>영조 120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6월 24일(임자) 2번째기사 도승지를 체차하여 구익으로 삼다</p>	<p>임금이 탕제(湯劑)를 들기 어렵다 하여 도성 안의 사자(士子)들에게 방도를 물으려 하였으나 미처 와서 대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거(停擧)를 명하였으며, 도승지는 능히 아랫사람을 잘 단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체차하라 명하고 구익(具廡)을 도승지로 삼았다.</p>	<p>上以湯劑之難進，欲詢城中士子，而未及來待，故命停擧，都承旨不能檢飭下人，命遞差，以具廡爲都承旨。</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7월 4일 (신유) 3번째기사 비가 내리기를 한정하여 감선하고, 경기·충청의 잡선 봉진도 정지하도록 명하다</p>	<p>비가 내리기까지를 한정하여 감선(減膳)18612) 하게 하고 경기·충청도의 잡선(雜膳)도 봉진(奉進)을 정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p>	<p>命限得雨減膳，京畿湖西雜膳，亦停封。</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7월 27일(갑신) 1번째기사 사용원에 나아가서 찬품을 받다</p>	<p>임금이 사용원에 나아가서 올리는 찬품을 받았다. 임금이 어제(御製) 2구(句)를 내려서 여러 신하들에게 차운(次韻)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먼저 두 상(床)을 올리라고 명하여 친히 살펴보고,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창덕궁(昌德宮)과 육상궁(毓祥宮)에 모시고 나아가게 하여 쌍적(雙笛)으로 앞을 인도하게 하고 이어 찬품을 올렸다. 도제조(都提調) 김상철(金尙喆)이 고취(鼓吹)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금(絃琴) 한 쌍만 올리기를 명하였다. 왕세손이 작(爵)을 올리니, 여러 신하가 모두 일어나 서서 부복(俯伏)하며 일제히 천세(千歲)를 세번 불렀다. 제조(提調)가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모두 천세(千歲)를 빌었는데, 제조(提調)에게 모두 말[馬]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어 상의원(尙衣院)에 나아가니, 제조 김한기(金漢耆)·정후겸(鄭厚謙)이 사배(四拜)</p>	<p>甲申/上詣廚院，受進饌。上下御製二句，命諸臣廣進。命先進二床，親自看審，令中官陪詣昌德宮、毓祥宮，以雙笛前導，仍進饌。都提調金尙喆請進鼓吹，上命只進絃琴一雙。王世孫進爵，諸臣皆起立俯伏，齊呼千歲者三。提調以次進爵，皆祝千歲，提調并命錫馬。上仍詣尙衣院，提調金漢耆、鄭厚謙行四拜。上下御製二句，使入侍諸臣廣進，如前送二床于兩宮，</p>

	<p>를 행하였다. 임금(御製) 2구(句)를 내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에게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전과 같이 두 상(床)을 두 궁(宮)18641) 에 보내게 하였으며, 이어 찬(饌)을 올렸다. 김한기(金漢耆)가 고취(鼓吹)를 올리기를 청하니, 헌가(軒架) 고취와 무동(舞童)의 처용(處容)18642) 을 격식을 갖추어 들이게 하였다. 왕세손이 작(爵)을 올리고 여러 신하가 승호(嵩呼)18643) 함을 사용원의 예(例)와 같이 하였다. 두 제조(提調)에게 말을 내려 주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정후겸(鄭厚謙)과 도승지 심이지(沈頤之)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 등은 오늘 술잔으로 감정을 푸는 것이 옳다.”</p> <p>하고, 세손(世孫)에게 말하기를,  “두 경(卿)18644) 에게 이미 감정을 풀게 하였는데, 만약 풀지 못하면 네가 반드시 억제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고취(鼓吹)와 무동(舞童)이 앞을 인도하라 명하고, 대내로 돌아왔다.</p>	<p>仍進饌。漢耆請進鼓吹，上命軒架鼓吹，舞童處用，俱格以入。王世孫進爵，諸臣呼嵩如廚院例。命兩提調錫馬。上執厚謙及都承旨沈頤之手曰：“卿等，今日杯酒，釋憾可也。”謂世孫曰：“二卿今既釋憾，而若不能，汝必抑制也。”命鼓吹舞童前導，還內。</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7월 28일(을유) 1번째기사  덕유당에 나아가 충훈부에서 올린 찬을 받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충훈부(忠勳府)에서 올린 찬(饌)을 받았다. 왕세손이 모시고 앉았는데, 임금이 어제(御製) 1구(句)를 내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어 진찬(進饌)을 어제의 예(例)와 같이 하고, 충훈부 당상관에게 각각 말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p>	<p>乙酉/上御德游堂，受勳府進饌。王世孫侍坐，上下御製一句，命入侍諸臣賡進。仍命進饌如昨日例，勳堂各錫馬。</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7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연화문 밖에 나아가 향을 공경히 맞이하는 예식을 행하고, 기로</p>	<p>임금이 연화문 밖에 나아가 향(香)을 공경히 맞이하는 예식을 행하고 이어 기로소(耆老所)에게 나아가니, 왕세손이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고 어첩(御帖)과 어필(御筆)을 봉심(奉審)한 다음 기영관(耆英館)에 나아가니, 왕세손이 시좌(侍坐)하고 여러 당상들이 사배(四拜)를 행하였다. 먼저 두 상(床)을 창덕궁(昌德宮)과 육상궁(毓祥宮)에 보내게 하였는데, 쌍적(雙笛)은 제치(除置)하였다. 임금이 어제(御製) 1구(句)를 내리고, 입시한 여러 신하와 수가(隨駕)한 비국 당상에게 화답(和答)해 올리라고</p>	<p>丙戌/上詣延和門外，行香祇迎禮，仍詣耆老所，王世孫隨駕。上詣靈壽閣行禮，奉審御帖御筆，御耆英館，王世孫侍坐，諸堂行四拜。先送二床于兩宮，而雙笛置之。上下御製一句，命入侍諸臣隨駕備堂賡進。諸臣請進樂，上以靈壽閣之密邇不許，諸臣力請，上</p>

<p>소·의정부에 들르다</p>	<p>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풍악을 올리기를 청함에 임금이 영수각이 가까우므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힘써 청하니, 임금이 왕세손에게 명하여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서 대신 아뢰게 한 뒤에 고취(鼓吹)를 올리라고 명하였다. 왕세손이 작(爵)을 올리고 천세를 부르니, 대신(大臣)과 기로소 당상관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기로소 당상관에게 말을 내려 주기를 명하고, 의정부(議政府)를 역립(歷臨)하였다.</p>	<p>命王世孫詣靈壽閣替奏後，命進鼓吹。王世孫進爵呼嵩，大臣耆堂以次進爵。命耆堂錫馬，歷臨議政府。</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8월 9일 (을미) 1번째기사 준천사 장교를 시사하고, 입시한 신하에게 선은하다</p>	<p>임금이 용무당(隆武堂)에 나아가서 준천사 장교(將校)에게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어제시(御製詩) 2구(句)를 지어 내리고,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和答)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어 선은(宣醞)18648) 하고, 장교로 하여금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였다.</p>	<p>乙未/上御隆武堂試射濬川將校。製下御製詩二句，命入侍諸臣廣進。仍爲宣醞，使將校起舞。</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0월 23일(무신) 2번째기사 사서인으로 나이가 80인 자 등을 불러 보고 가자하다. 김시교를 지중추로 삼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서 사서인(士庶人)으로 나이가 80인 자와 정묘(丁卯)18753) ·무진(戊辰)18754) ·계유(癸酉)18755) 년에 출생한 노인들을 불러 보고, 국수[麵] 한 그릇과 주면(紬綿)18756) 을 내려 주고, 80세 이상은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전 동돈령(同敦寧) 김시교(金時敎)를 지중추(知中樞)로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선의 왕후(宣懿王后)18757) 의 제부(娣夫)이기 때문이었다.</p>	<p>上御德游堂，召見士庶年八十及丁卯、戊辰、癸酉生等老人，賜麪一器及紬綿，八十以上并命加資。前同敦寧金時敎特授知中樞，以宣懿王妃娣夫也。</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1월 7일(임술) 1번째기사 공시인을 불러 보고</p>	<p>임금이 승정전 월대에 나아가서 향(香)을 공경히 맞이하는 예식을 행하였다.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공시인(貢市人)을 불러 보고 폐막(弊瘼)을 물었다. 형조의 수도안(囚徒案)을 들여오도록 명하여 특사령(特赦令)을 내렸다. 각도(各道)의 방물(方物)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농사의 흉년에 대해 친히 묻고, 또 유개인(流丐人)18770) 에게 죽[粥]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시임·원임 대신</p>	<p>壬戌/上御崇政殿月臺，行香祇迎禮。御延和門，召見貢市人，問弊瘼。命入刑曹囚徒案，特下赦令。親問農歉於各道方物領來人，又命饋粥流丐人。時、原任大臣，請冬至賀儀，上不許。</p>

<p>폐막을 묻고, 특사령을 내리다</p>	<p>이 동지 하의(冬至賀儀)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1월 14일(기사) 1번째기사 봉조하 김치인에게 식물을 보내주도록 하다</p>	<p>하교하기를, “멋뻐한 녹봉[常廩]을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형식(形式)에 가깝다. 간밤 꿈에 보았으니 그에게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쌀·콩 각각 3석과 황육(黃肉) 5근, 생선(生鮮) 5마리[尾]를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에게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己巳/教曰：“常廩過辭，近於文具。今夜夢見，其宜表意。令本官米太各三石肉五斤魚五尾，輸給于奉朝賀金致仁。</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2월 6일(경인) 2번째기사 입직한 군병을 불러 위로하고 죽을 먹이다. 승보에 뽑힌 유생을 불러 보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입직(入直)한 군병(軍兵)을 불러 노고를 위문하고, 이어 죽(粥)을 마련하여 먹이게 하였다. 승보(陞補)에 뽑힌 유생(儒生)을 불러 보았다.</p>	<p>上御延和門，招入直軍兵勞問，仍命設粥而饋。召見陞補被抄儒生。</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2월 10일(갑오) 1번째기사 종루의 거지를 데려다가 선혜청에 넘겨주어 죽을 먹이도록 하다</p>	<p>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종루(鍾樓)18807) 의 거지를 데려다가 선혜청(宣惠廳)에 넘겨주어 죽(粥)을 먹이도록 하였다.</p>	<p>○甲午/命宣傳官，率鍾樓乞人，付惠廳饋粥。</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乾隆) 38년) 12월 13일</p>	<p>임금이 탕제(湯劑) 복용키를 괴워하여, 현상(懸賞)으로, ‘탕제를 올리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말을 올리기를 요구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p>	<p>上苦於湯劑，命懸賞求言湯劑之不宜進，而人無敢言之者。</p>

<p>일(정유) 2번째기사 탕제의 복용을 괴로워 하다</p>		
<p>영조 121권, 49년 (1773 기사 / 청 건륭 (乾隆) 38년) 12월 13 일(정유) 5번째기사 한성부 5부의 관원을 잡아들었다가 석방하 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관원을 잡아 들었다가 곧 석방하였는데, ‘탕제를 올리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 서인(士庶人)을 대령(待令)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p>	<p>上御延和門，拿入漢城府五部官員，卽 放。以其不能待令，士庶之能言湯劑 不當進者也。</p>
<p>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2일 (병진) 3번째기사 입시한 실직인을 추고 하고, 우금 이외의 금 지를 정지토록 하다</p>	<p>하교하기를, “차대(次對)를 진정(進定)한 것은 의미가 대개 깊었다. 여러 당상(堂上)들이 모두 모였고 삼사(三司)가 입시(入侍)하였으니, 아름다운 말과 좋은 계책을 들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시체(時體)에 억눌리고 기운이 저상되어 그러한 가? 지난해 김고(金樺)가 처음 대간(臺諫)의 자리에 들어와서는 능히 10번이 나 계달을 하였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것이 어떤 세계이고 이것이 무슨 대간 의 풍습인가? 늘그막에 겸연(歉然)하다. 오늘 입시한 실직인(實職人)은 모두 추고(推考)하고, 양사(兩司)에서 비록 한번 계달을 하였으나 유신(儒臣)은 묵 묵히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체차(遞差)하라.” 하고, 다시 하교하기를, “우금(牛禁) 이외에 모든 금지는 10일 이내에 모두 정지하고, 각사(各司)의 패(牌) 역시 이날로 한정하며, 현방(懸房)18826) 에서 내는 속전(贖錢)은 10 일로 한정하라. 특히 형조(刑曹)에서 형벌(刑罰)을 쓰는 것을 감하여 보름 뒤 에 거행하고, 영어(囹圄)의 가벼운 죄수와 포도청(捕盜廳)에 구류된 사람은 오 늘 곧 방송(放送)하도록 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늘그막에 있는 임금 의 마음을 알도록 하라.”</p>	<p>敎曰：“次對進定，意蓋深矣。諸堂皆 會，三司入侍，意謂聞嘉言善謨，壓於 時體氣沮而然乎？昔年金樺，初入臺 地，能爲十啓，今則此何世界，此何臺 風？暮年歉然。今日入侍實職人并推 考，兩司雖一啓，而儒臣默無一言，遞 差。”又敎曰：“牛禁外諸禁，十日內 皆停，各司牌，亦限此日，懸房贖限十 日。特減刑曹用刑，望後舉行，囹圄 輕囚，捕廳拘留，卽日放送，令此輩咸 知暮年君心焉。”</p>

	하였다.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3일 (정사) 1번째기사 입직 군병에게 호궤하 고, 강을 잘하는 자에 게 강을 하도록 명하 다	임금이 승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신·구번(新舊番)의 입직 군병(入直軍兵)에게 호궤(犒饋)하고, 구군(舊軍) 중에 강(講)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와 강을 하라고 명하였는데, 한 사람이 강에 응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매우 명료[了了]하다.” 하고, 본영(本營)의 집사에 임명하도록 명하였다.	○丁巳/上御崇政殿月臺， 犒饋新舊番入直軍兵， 命舊軍中， 有能講者入講， 一人應講， 上曰：“極了了矣。” 命付本營執事。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15 일(기사) 3번째기사 의정부·사헌부에 명하 여 면·떡·고기 등을 가 지고 대령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와 백부(柏府)18840) 에 명하여 각각 면(麵)·떡[餅]·고기[肉] 한 그릇씩을 가지고 대령(待令)하도록 하였다.	命政府柏府， 各以麪餅肉一器待令。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17 일(신미) 3번째기사 기로소에서 면 한 그 릇을 진상하다	기로소(耆老所)에서 면(麵) 한 그릇을 진상하였다.	耆社進麪一器。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25 일(기묘) 2번째기사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두 본궁(本宮)의 노인(老人)들을 불러들이고 각각 쌀·고기·비단을 하사하였다.	上御德游堂， 招入兩本宮老人， 各賜米肉帛。



<p>덕유당에 나아가 두 본궁의 노인들을 불러 들여 쌀·고기 등을 하 사하다</p>		
<p>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27 일(신사) 1번째기사 윤광신·윤구연에게 직 첩을 지급하도록 명하 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삼공(三公)과 의금부(義禁府)의 당상을 모으고, 윤광신(尹光莘)·윤구연(尹九淵)에게 모두 직첩(職牒)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윤광신은 충청도 병사(兵使)가 되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으나, 왕명을 업신여기고 죄를 다스리는 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와 국문(鞫問)받다가 장패(杖斃)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일컬었고, 윤구연은 금주(禁酒)할 때에 술병을 가졌다 하여 선전관(宣傳官)에게 잡혀 와서 남문 밖에서 효시(梟示)되었는데, 사건이 금령(禁令) 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p>	<p>辛巳/上御集慶堂， 會三公禁府堂上， 尹光莘、尹九淵， 并命給牒。 光莘爲忠淸兵使， 因事被拿， 慢命不就理， 故拿鞫杖斃人， 以狂人稱之。 九淵以酒禁時酒壺， 被捉於宣傳官， 梟示南門外， 事在令前， 人皆冤之， 至是有是命。</p>
<p>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1월 28 일(임오) 1번째기사 조정에서는 뜰에서 문후(問候)하고 약방에서는 입진(入診)하였는데, 기로소(耆老所)의 당상이 함께 입시하자 임금이 음식을 주고 어제(御製)를 하사하면서 화답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p>	<p>조정(朝廷)에서는 뜰에서 문후(問候)하고 약방에서는 입진(入診)하였는데, 기로소(耆老所)의 당상이 함께 입시하자 임금이 음식을 주고 어제(御製)를 하사하면서 화답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p>	<p>壬午/朝廷庭候， 藥房入診， 耆社堂上同爲入侍， 上宣饌， 賜御製命廣進。</p>
<p>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2월 29 일(임자) 1번째기사 저경궁의 생신일로, 의 식을 행하도록 하다</p>	<p>이날은 저경궁(儲慶宮)의 생신일(生辰日)이었다. 임금이 안으로부터 다례(茶禮)를 갖추어 의식을 행하도록 하고 왕세손(王世孫)을 보내어 대신 전작(奠酌)하라고 명하였다.</p>	<p>壬子/是日， 乃儲慶宮生辰也。 上命茶禮自內備行， 遣王世孫替奠酌。</p>
<p>영조 122권, 50년</p>	<p>홍성신(洪聖臣)이 영친(榮親)하러 내려갈 때 지나가는 고을에서 양식(糧食)을</p>	<p>給洪聖臣榮親時， 所經官給糧， 到本官</p>

<p>(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년) 4월 14일(병신) 4번째기사 홍성신에게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가</p>	<p>지급하게 하고, 본 고을에 도착한 뒤에는 감영(監營)으로부터 미·태(米太)와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하되,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먼저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또 쇠마(刷馬)18895) 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시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혼수(婚需)를 지급하고 혼사를 치르게 한 뒤에는 장계(狀啓)하여 아뢰도록 하였다.</p>	<p>後，自監營米太食物題給，自惠廳先爲給糧，亦給刷馬。又命道臣給婚需，成婚後狀聞</p>
<p>영조 122권, 50년(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년) 4월 25일(정미) 2번째기사 대사헌 송형중 등이 약원의 인원을 갖출 것과 유가를 정배할 것 등을 청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헌 송형중(宋瑩中)·대사간 임희증(任希曾)이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약원(藥院)에서 문후(問候)할 일로써 진달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에 나아갔으니 진실로 개연(慨然)합니다. 지금 눈앞의 많은 일들이 성상의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에 벗어남이 없는데, 약원이 전부 텅 비어서 쇠초(鎖抄)를 내리지 못하니, 이것을 청하여 얻지 못하면 전례를 따라 전계(傳啓)하는 것도 여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약원의 제조(提調)에게 빨리 인원을 갖추고 쇠초를 내리도록 명하는 것이 곧 신 등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전계(傳啓)를 먼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우러러 진달하니 체모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송형중은 말하기를, “대신(臺臣)의 계달은 묘당(廟堂)의 계책과 다르니 청하여 얻어내지 못하면 감히 물러가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입시한 좌상(左相)을 약방 도제조로 삼고, 이조 판서를 제조로 삼고, 도승지는 전례에 의거하여 부제조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송형중과 임희증에게는 특별히 차비문(差備門)에서 말[馬]을 내리도록 하여, 칭찬하고 장려한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였다. 대사헌 송형중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p>	<p>上御集慶堂，引見大臣備堂。大司憲宋瑩中、大司諫任希曾奏曰：“大臣以藥院問候陳達，未蒙允許，遽然就坐，誠慨然矣。目今萬事，無過於保蓄聖躬，而藥院全空，鎖抄不下，此不得請，則循例傳啓，有不暇及矣。藥院提調，亟命備員，仍下鎖抄，卽臣等區區之望也。”上曰：“其言是矣。不先傳啓，以此事仰達，可謂得體。”瑩中曰：“臺臣之啓，異於廟謨，不得請則不敢退矣。”上卽以入侍左相，爲藥房都提調，吏判爲提調，都承旨依例兼副提調，宋瑩中、任希曾特爲錫馬於差備門，以示嘉獎之意。大司憲宋瑩中申前啓，不允。又啓曰：“近來國綱解弛，干連逆獄之類，敢生伸雪之計，至若柳綏、柳縝所坐何如，而頃者柳哥之擊鼓鳴冤，都出於僥倖之望。此不嚴處，無以懲後，請擊鼓人柳哥邊遠定配。”上曰：“定配可也。”</p>

	<p>“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역옥(逆獄)에 간련(干連)된 무리가 감히 신설(伸雪)할 계책을 세우니, 유수(柳綏)와 유정(柳縝)같은 사람들은 연좌된 죄상이 어떠한데, 지난번에 유가(柳哥)가 북을 치고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니, 이것은 모두가 요행을 바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뒷날 징계할 수 없으니, 청컨대 북을 친 사람 유가를 변방의 먼 곳에 정배(定配)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p>	
<p>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5월 8일 (경신) 1번째기사 유생과 방민을 소견하 여, 탕제를 정지하는 일에 대하여 묻다</p>	<p>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서 유생(儒生)과 방민(坊民)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탕제(湯劑)가 쓴 것을 괴롭게 여겨, 탕제를 정지하도록 말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두 자금을 올려 주고 백금(百金)을 상으로 주겠다는 영을 내렸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이 때에 이르러 정중(庭中)에 북을 매달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중탕(理中湯)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자는 북을 두번 치고, 하교가 지나치다고 여기는 자는 북을 한번 치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안재규(安載圭)라는 자가 북을 두 번을 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오동잎으로 희롱한 것[桐葉作戲]18902) 을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그대로 〈그 아우를〉 봉(封)하였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다.”</p> <p>하고, 이어서 두 자금을 올려주고 백금의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빈대(賓對)에서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일제히 안재규의 외람되고 무엄(無嚴)함과 또한 공(功)을 바라고 엿보는 마음이 있었다고 아뢰었고, 대사헌(大司憲) 송형중(宋瑩中)은 인심(人心)이 옛날과 같지 않으므로 요행을 바라는 문이 갈래가 많으니 이 길을 한번 열어 주면 공(功)을 바라고 엿보는</p>	<p>庚申/上御建明門，召見儒生坊民。先是上悶其湯劑之苦，下令有能言湯劑之可停者，當超二資賞百金，人無有應之者。至是懸鼓庭中，仍教曰：“謂理中過者，撞鼓二，謂下教過者，撞鼓一。”有安載圭者二鼓之，上教曰：“成王以桐葉戲，史官書之，仍以封焉，況人無信不立。”仍命超二資賞百金。其翌日賓對，大臣諸臣齊奏載圭之猥越無嚴，且有窺覷之心，大司憲宋瑩中，以人心不古，倖門多岐，此路一開，希覷之徒，恐將接踵爲陳戒，上嘉納。</p>

	우리가 아마도 앞으로 잇달아 일어나 것이라고 진계(陳戒)하자, 임금의 옳게 여겨 받아 들었다.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5월 12 일(갑자) 1번째기사 향을 전하고 지영하는 예를 행한 뒤에, 적진 의 양맥을 살피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친히 향(香)을 전하고 이어서 지영하는 예를 행한 뒤에, 친히 적진(籍田)의 양맥(兩麥)을 받았다.	甲子/上御德游堂, 親傳香, 仍行祇迎禮後, 親受籍田兩麥。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5월 25 일(정축) 6번째기사 진상할 물선의 봉진을 정지하라는 명을 정지 시키다	특별히 진상(進上)할 물선(物膳)의 봉진(封進)을 정지하라는 명을 정지시켰다.	特寢物膳停封之命。
영조 122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6월 15 일(정유) 2번째기사 기로사의 포폄을 고례 대로 하고, 서울에 있 는 봉조하를 입시하도 록 명하다	임금이 기로사(耆老社)의 포폄(褒貶)을 고례(古例)대로 하고, 기로사에 진찬(進饌)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서울에 있는 봉조하를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였는데, 홍봉한(洪鳳漢)이 탕제(湯劑)를 받들어 올리고 세번 천세를 부르자, 임금이 한 구(句)의 시(詩)를 써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上以耆社褒貶古例, 命耆社進饌。 仍命在京奉朝賀入侍, 洪鳳漢奉進湯劑, 三呼嵩, 上命書一句詩, 使諸臣賡進。
영조 123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임금이 회상전(會祥殿)의 뜰에 나아가서 1백 5세 노인과 88세 이상 노인을 소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자(加資)하고 말[馬]을 하사하였으며, 어떤 사	上御會祥殿庭, 召見百五歲老人及八十八歲以上老人, 或加資錫馬, 或賜米肉

<p>(乾隆) 39년) 7월 24일(을해) 2번째기사 1백 5세 노인과 88세 이상 노인을 소견하다</p>	<p>람에게는 쌀과 고기와 표리(表裏)18984) 를 하사하였다. 입시한 김기대(金器大), 김효대(金孝大)·윤동석(尹東哲)·어필명(魚必溟)에게는 각각 면전에서 말을 내리고, 승지와 사관(史官)에게도 역시 말을 하사하였다. 어필명에게 명하여 《대학(大學)》의 수장(首章)을 읽게 하고, 임금 또한 몸소 외었다.</p>	<p>表裏。 金器大、金孝大、尹東哲、魚必溟入侍， 各面給馬， 承史亦錫馬。 命必溟讀《大學》首章， 上亦親誦。</p>
<p>영조 123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7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환후가 있어, 내국이 사용원으로 옮겨 숙직하다</p>	<p>임금에게 환후가 있어서 내국(內局)이 사용원(司饗院)으로 옮겨 숙직하였다</p>	<p>庚辰/上候違豫， 內局移直廚院。</p>
<p>영조 123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8월 1일(임오) 2번째기사 정시 무과 초시를 열다</p>	<p>정시 무과 초시(庭試武科初試)를 열었으니, 임금의 환후가 평상으로 회복된 경사를 이때에 이르러 행한 것이었다. 이 해는 임금이 전(前) 갑오년(18985)에 시탕(侍湯)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선왕(先王)을 추모하여 풍악을 중지했다가 이때에 이르러 풍악을 회복하게 하였다.</p>	<p>設庭試武科初試， 上候平復之慶， 至是行焉。 是年上以前甲午侍湯回甲， 追慕藏樂， 至是復樂。</p>
<p>영조 123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 (乾隆) 39년) 9월 20일(경오) 1번째기사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이 소찬을 올릴 것을 청하니</p>	<p>기로소(耆老所)의 여러 신하들이 소찬(小饌)을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익정(李益炆)이 소찬을 받들어 올리면서 은잔에 술을 따르고 절하면서 헌수(獻壽)하니 여러 신하들은 전상(殿上)에서 천세(千歲)를 불렀다. 은잔은 곧 선조(先朝) 을해년(19000)에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소의 신하들에게 사연(賜宴)할 때 하사한 것이었다.</p>	<p>庚午/耆社諸臣， 請進小饌， 上許之。 李益炆奉饌以進， 以銀盃酌酒， 拜以獻壽， 諸臣於殿上呼千歲。 銀盃， 卽先朝乙亥景賢堂耆社臣賜宴時所賜也。</p>
<p>영조 123권, 50년 (1774 갑오 / 청 건륭</p>	<p>연천 현감(漣川縣監) 조중국(趙重國)의 사관(仕版)을 즉시 깎아버리라고 명하고,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선정신(先正臣) 조헌(趙憲)의 신주를 그 봉사손(奉</p>	<p>命漣川縣監趙重國亟施刊版， 令禮官尋置先正臣趙憲木主於其奉祀孫家， 製下</p>

<p>(乾隆) 39년) 11월 12일(신유) 2번째기사 연천 현감 조중국의 사판 삭제를 명하다</p>	<p>祀孫)의 집을 찾아 세우고 제문을 지어 내려보내어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고, 음식물과 옷감을 그 집에 제급(題給)하며, 봉사손의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벼슬을 주어 쓰고, 봄 가을 제수(祭需)는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도와 주되 봉사손이 벼슬을 얻어 녹봉으로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조정에서는 선정신의 자손이 가난하여 제사를 잇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조혁(趙赫) 부자(父子)를 임용함이 옳다 하고 조혁을 단성(丹城) 수령으로 임명하였으며, 조중국 또한 대신들이 경연에서 아된 것으로 인해 6품직으로 올라 연천 수령이 되었는데 조중국이 몰래 종가(宗家)를 빼앗을 계획을 품고 억지로 선정신의 사당을 임소(任所)에 두고 받들었다. 선정신의 봉사손의 나이가 겨우 열 셋이었으므로 그의 어머니 오씨(吳氏)가 휘양[揮項]을 쓰고 대궐문으로 들어와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리니, 임금의 그를 현명하게 여겨 이런 명을 내린 것이었다.</p>	<p>祭文, 令本官致祭, 食物衣資題給其家, 奉祀孫待年長調用, 春秋祭物, 令本官助給, 以待奉祀孫得官官享。先是, 朝廷以先正家子孫零替, 香火不繼, 故趙燠父子, 謂可調用, 燠爲丹城倅, 重國又因大臣筵奏, 出六爲漣川倅, 重國隱然懷奪宗之計, 勒奉先正祠宇於任所。其奉祀孫年方十三, 其母吳氏着揮項入闕門, 擊申聞鼓, 上賢之, 有是命。</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2월 24일(임인) 1번째기사 주금을 신칙하도록 명하다</p>	<p>주금(酒禁)을 신칙하도록 명하고, 빼앗아 온 술독을 입직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동부(東部)의 관원이 기한을 늦춘 후 크게 술을 빚었기 때문에 태거(汰去)하도록 명하였다.</p>	<p>壬寅/命申飭酒禁, 所捉酒甕, 分給入直軍兵。東部官員, 以其寬限後有大釀, 故命汰去。</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3월 14일(신유) 1번째기사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고, 상경한 향민을 불러 보리 농사와 물가에 대해 묻다</p>	<p>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상경(上京)한 향민(鄉民)을 불러 보고, 보리 농사와 시가[市直]에 대해 하순(下詢)하였다. 또 입직한 금위군(禁衛軍)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달밤에 숙위군(宿衛軍)을 불러 본 것은 고사(故事)가 있기 때문에 모년(暮年)에 불러 본 것이다. 오늘밤에는 마땅히 죽을 공궤(供饋)하겠다.” 하였다. 또 기로 당상(耆老堂上) 안복준(安復駿)을 불러 보고, 해조(該曹)에 명하여 그 아들을 조용(調用)하게 하고, 지나가는 세 도(道)의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지공(支供)하게 하였다.</p>	<p>辛酉/上詣延和門外, 行香祇迎禮, 召見鄉民之上京者, 下詢麥農與市直。又召見入直禁衛軍曰: “月夜召見宿衛軍, 有故事, 故暮年召見。今夜當饋粥矣。”又召見耆堂安復駿, 命該曹調用其子, 所經三道, 令本官支供。</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4월 2일 (경진) 1번째기사 기구로서 89세 된 사 람을 불러 보고, 각각 음식을 내려 주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기구(耆耆)로서 89세 된 사 람들을 불러 보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 그 자손들이 부축하여 예를 행하 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그들을 위해 일어나고, 각각 음식을 내려 주었다. 또 면주(綿紬)·쌀·콩·고기를 내려 주었는데, 대개 효사(孝思)의 추모(追慕)에서 나 와 그들의 나이를 공경한 것이었다.</p>	<p>庚辰/上御崇政殿東月臺， 召見耆耆八 十九歲人， 命扶杖而入， 以其子孫， 扶 掖行禮。 上爲之起立， 各賜饌。 又賜 綿紬米太肉， 蓋出孝思之追慕， 而敬其 年也。</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5월 18 일(갑자) 4번째기사 대신 등이 또 진찬을 청하다</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예조 당 상과 여러 신하들이 또 진찬(進饌)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 았다.</p>	<p>上御集慶堂引見大臣、備堂， 禮堂諸臣 又請進饌， 上又不許。</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5월 30 일(병자) 1번째기사 문·무관의 신은에게 사은을 받고, 정극환· 송익언에게 명하여 잔 을 올리게 하다</p>	<p>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문관·무관의 신은(新恩)에게 사은(謝恩)을 받 고, 정극환(鄭克煥)·송익언(宋翼彦)에게 명하여 잔을 올리게 하였으며, 각각 상방 은배(尙方銀杯) 하나씩을 내려 주었다. 도승지 안겸제(安兼濟)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新恩)이 올린 술은 바깥에서 준비해 들어온 것이므로, 신이 마땅히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체모를 얻었다 여겨 특별히 말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丙子/上御德游堂， 受文武新恩謝恩， 命鄭克煥、宋翼彦進酌， 各賜尙方銀杯 一。 都承旨安兼濟進奏曰：“新恩所進 之醞， 自外備入， 臣當知味。” 上以爲 得體， 特命錫馬。</p>
<p>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6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장령 윤경룡이 녹봉</p>	<p>장령 윤경룡(尹慶龍)이 아뢰기를, “백관의 녹봉(祿俸)을 쌀과 콩으로 반급(頒給)하면서 이속(吏屬)이 환롱(幻弄) 하여 매조미쌀로 바꾼 다음 흙을 섞었습니다. 청컨대, 녹봉을 반급한 관원과 고직(庫直)의 무리를 조사해 내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런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였다.</p>	<p>掌令尹慶龍啓曰：“百官頒祿米太， 吏 屬幻弄， 換以造米， 雜以塵土。 請頒 祿官員及庫直輩， 查出科罪。” 上依 啓。</p>

반급 시의 부정을 아뢰다		
영조 124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6월 6일 (임오) 2번째기사 명릉의 기신을 맞아 탕제를 진어하지 않다	임금이 명릉(明陵)의 기신(忌辰)이 가까워져서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하여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지 않으니, 여러 신하들이 소리를 같이하여 굳게 청하고 왕세손이 친히 받들어 올리며 말하기를, “오늘 잘 진어하신다면, 내일 창덕궁(昌德宮)에서 대신 헌작(獻酌)할 때 영랑께 마땅히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감동하여 깨닫고 진어하였다.	上以明陵忌辰之在邇，追慕益切，不進湯劑，諸臣齊聲固請，王世孫親自奉進曰：“今日善爲進御，則明日昌德宮替酌時，當仰奏陟降矣。” 上感悟而進之。
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7월 29일(갑술) 1번째기사 덕유당에 나아가 음식을 들다	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음식을 들었다. 왕세손이 봉조하(奉朝賀) 이하를 거느리고 사배(四拜)하였다. 임금이 먼저 천세를 부르도록 명하니, 왕세손이 천세를 부르고 다시 사배하였다. 임금이 어제 지어 내려보낸 가장(歌章)의 선창(先唱)을 명하고 악공이 연주하게 하였다. 기로소(耆老所)에서 진찬(進饌)하였는데, 임금이 이익정(李益炅)·이정철(李廷喆)·안유행(安允行)·심성진(沈星鎭) 등에게 각각 대무(對舞)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와 중추부(中樞府)·주원(廚院)19137) 에서도 또한 진찬하였다. 왕세손이 술잔을 올리고 봉조하 이하도 술잔을 올렸다. 임금이 영의정 한익모(韓翼謨) 부자(父子)에게 대무를 명하고, 또 판서 조영진(趙榮進) 부자에게 대무를 명하였다. 그리고 또 조창규(趙昌逵)와 김사목(金思穆)에게 대무를 명하였다. 임금이 서유린(徐有隣)에게 술을 내려 주면서 이르기를, “이 술잔을 그대의 할아버지에게 드려라.” 하였는데, 서유린은 곧 서명구(徐命九)의 손자였다. 또 92세의 노인을 불러 보고, 광성(光城)·여양(驪陽)·경은(慶恩)·달성(達城)·오흥(鰲興)의 국구(國舅) 집에 음식 한 쟁반과 술 한 병씩을 보내 주라고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한익모는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매를 추켜들고 악공들의 사이에서 춤을 추었으며, 또한 부자(父子)간에는 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경솔하게 일어나서 춤을 추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비웃었	甲戌/上御德滄堂，進饌。王世孫率奉朝賀以下四拜，上命先爲呼嵩，王世孫呼嵩，復四拜。上命先唱，樂工進奏昨日製下歌章。耆老所進饌，上命李益炅、李廷喆、安允行、沈星鎭各對舞。政府中樞府廚院亦進饌。王世孫進爵，奉朝賀以下進爵。上命領議政韓翼謨父子對舞，亦命判書趙榮進父子對舞。又命趙昌逵與金思穆對舞。上賜酒徐有隣曰：“以此爵薦于爾祖。”有隣卽命九之孫也。又召見九十二歲老人，光城、驪陽、慶恩、達城、鰲興國舅家，饌一盤酒一壺命輸送。 【史臣曰：韓翼謨在具瞻之位，舉袖婆娑於樂工之間，且父子非偶也，而率爾起舞，人皆駭笑。】



	다.”	
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8월 3일 (무인) 2번째기사 유생들에게 탕제 복용 여부를 묻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부관(部官)19148)에게 명하여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입시하게 하고, 탕제(湯劑)를 들여야 되는지의 여부를 하순(下詢)하였다. 유생 중에 경옥고(瓊玉膏)를 드시기를 청하는 이가 있어서 임금이 약원(藥院)에 약을 지어올리라고 명하였다. 유생을 전조(銓曹)에 명하여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上御集慶堂，命部官率儒生入侍，下詢湯劑進御當否，有儒生請進瓊玉膏。上命藥院製進，儒生命銓曹調用。
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8월 4일 (기묘) 3번째기사 순화방 노인들을 불러 보고 술을 내리다	순화방(順化坊) 노인들을 불러 보고 술을 내렸다. 김효대(金孝大)에게 이르기를, “경 등을 또한 가인(家人)의 예(禮)로써 볼 것이니, 각자 먼저 술잔을 들라.” 하였다. 은잔[銀盃] 하나를 김효대에게 특별히 내려 주어 국구(國舅)의 집에 보관해 두도록 명하였다. 양정재(養正齋) 주인 윤광심(尹光心)에게는 구마(廐馬)를 특별히 내려서 광명전 앞에서 친히 받아 가도록 하고, 노인들에게는 각자 명주(明紬) 한 필(疋)씩을 내려 주었다. 노인들이 탕제(湯劑)를 드시기를 청하니, 임금이 웃으며 윤택하였다. 노인들은 천세(千歲)를 부르며 절하고 춤추면서 나갔다.	召見順化坊老人賜酒，謂金孝大曰：“卿等亦以家人禮見之，各先進酌。”特賜銀盃一於孝大，命藏國舅家。養正齋主人尹光心，特賜廐馬，使殿前親受，老人等各賜紬疋。老人等請進湯劑，上笑許之，老人山呼拜舞而出。
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8월 18 일(계사) 1번째기사 친히 향을 전하고, 한 성부에 8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 풀어 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친히 향(香)을 전하였다. 한성부에 명하여 8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라고 하였다.	癸巳/上御德游堂，親傳香，命京兆八十以上人設饌。
영조 125권, 51년	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경운궁 동내(洞內)의 노인 중 60세 이상 되는 사람	辛丑/上御德游堂，召入慶運宮洞內老

<p>(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8월 26일(신축) 1번째기사 경운궁 동내의 노인중 60세 이상을 불러들여 가자하고 쌀을 주다</p>	<p>을 불러들여 모두 가자(加資)하고 쌀을 주었으며, 궐문(闕門)의 각곳을 지키는 군사들에게도 쌀을 주었다.</p>	<p>人六十以上人, 并加資賜米, 闕門各處軍士亦賜米。</p>
<p>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0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호조 판서 구윤옥이 통신사에 쓰일 삼을 사들일 일에 대하여 아뢰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錡)이 아뢰기를, “앞으로 통신사(通信使)를 보낼 때에 쓰게 될 삼(蔘)을 사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삼(體蔘) 1백 80근(斤) 중 1백 60근과 미삼(尾蔘) 45근을 명년부터 두 해에 나누어 강계(江界)로 하여금 사서 바치도록 하고, 그 값은 금년에 사들인 수량과 함께 전례(前例)에 따라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3만 5천 석과 별향전(別餉錢)19212) 2만 냥과 무명[木] 2백 14동(同)을 구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甲午/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戶曹判書具允錡奏: “以前頭通信使時所用蔘, 不可不買, 體蔘一百八十斤內一百六十斤, 尾蔘四十五斤, 自明年分兩年, 令江界買納, 價則并與今年所買之數, 而依前例請以關西小米三萬五千石, 別餉錢二萬兩, 木二百十四同區劃。” 上從之。</p>
<p>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윤10월 25일(기사) 1번째기사 제주에서 감귤을 바치고, 왕세손에게 명하여 천신례를 행하게 하다</p>	<p>제주(濟州)에서 감귤(柑橘)을 바쳤다. 임금이 왕세손에게 명하여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천신례(薦新禮)를 행하게 하였다. 숙종조(肅宗朝)에 당금귤(唐金橘) 종자를 제주에 보내었는데, 그 뒤 귤 나무가 열매를 맺어 목사(牧使)가 해마다 공물을 바치면 임금은 곧 선원전(璿源殿)에 천신(薦新)하였다. 이때 임금은 요양중에 있었으므로 왕세손에게 명하여 섭행(攝行)하게 한 것이다. 이어서 승정전(崇政殿) 뜰에서 감귤을 나누어 주고 선비에게 시험을 보일 것을 명하였는데, 이수함(李壽咸)을 뽑아 급제를 내렸다.</p>	<p>己巳/濟州柑橘來貢。上命王世孫, 詣昌德宮, 行薦新禮。在肅廟朝送唐金橘種子于濟州, 其後橘樹結子, 牧使年年獻貢, 上即爲薦新於璿源殿。時上在靜攝中, 故命王世孫攝行。仍命頒柑, 試士于崇政殿庭, 取李壽咸賜第。 【태백산사고본】</p>
<p>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1월 5일(무인) 2번째기사 영의정 한익모가 별복</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한익모(韓翼謨)가 강계에서 별복정(別卜定)19229) 의 인삼 약간의 수량을 북도(北道)에 나누어 보내도록 양진(仰陳)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한익모가 또 통영(統營)의 영하(營下)에 있는 어전(漁箭)을 그들로 하여금 그전처럼 구관(句管)하게 하고, 세전(稅錢)은 수량대로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하게 할 것을 아뢰니, 임</p>	<p>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領議政韓翼謨, 以江界別卜定蔘若干數, 分送於北道仰陳, 上許之。翼謨又以統營營下漁箭, 使之依前句管, 而稅錢如數上納於均廳, 上許之。司諫趙榮弼</p>

<p>정의 인삼을 북도에 나누어 보낼 것 등을 청하다</p>	<p>금이 윤희하였다. 사간 조영필(趙榮弼)이, 제도(諸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을 엄칙(嚴飭)하여 진곡(賑穀)을 이획(移劃)하는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전(移轉)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익모가 통영에 대하여서는 똑같은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통영에 대하여서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p>	<p>啓請嚴飭諸道道臣， 帥臣賑穀移劃外， 不得擅自移轉， 上從之。 翼謩以統營則難用一切之法仰奏， 上曰：“統營則勿禁。”</p>
<p>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1월 13일(병술) 2번째기사 중첩된 도살이나 사사로운 도살을 엄금하다</p>	<p>하교하기를, “한때의 식욕(食慾)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농우(農牛)를 잡아 죽이는 것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 중첩된 도살이나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라.” 하였다.</p>	<p>教曰：“因一時之食慾， 宰殺勤勞之農牛， 是豈忍也？ 嚴禁疊屠及私屠。”</p>
<p>영조 125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1월 14일(정해) 2번째기사 태학과 사학 유생에게 제술을 시행하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태학(太學)과 사학(四學) 유생에게 제술(製述)을 시행하였다. 이때 임금이 꿈에 현자(賢者)를 만나 함께 국사(國事)를 의논하였는데, 이는 필시 훌륭한 보필을 얻을 징조일 것이라고 여겨 이 과거를 실시한 것이다. 책제(策題)를 승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달도록 명하였는데, 과차(科次)를 정하는 데 이르러서는 임금이 한 사람도 요지를 간략하게 양대(仰對)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차등(次等)을 두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백세(百世)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혼모(昏耗)하여 능히 가르치지 못하는 한탄스러움을 모두 알게 하라. 이것이 어찌 노여움을 전가하는 것이겠는가? 곧 내가 부덕한 때문이다.” 하고, 또 음관(蔭官)들은 와서 기다리고 제목을 걸어 시취(試取)하라고 명하였다. 고관(考官)이 먼저 올라온 시축(試軸)을 가져와서 읽어 아뢰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 시권(試券)에 쓰기를, “현자(賢者)를 구하려는 희망이 간절하였다. 허두(虛頭)는 비록 준엄하고 강직</p>	<p>上御集慶堂， 行太學四學儒生製述。 時上夢見賢者， 與議國事， 以爲必是得良弼之兆， 故設此科。 命懸策題於崇政殿月臺， 及其科次， 上以無一人眞截仰對， 命并置次等， 教曰：“使百世人， 咸知予爲君師位， 昏耗莫能教之歎。 是豈遷怒？ 卽予否德。” 更命蔭官來待， 懸題試取。 考官持入先捧軸讀奏， 上命書其券曰：“望切求賢。 虛頭雖似峭直， 挾雜籲君。 何不快直洞言， 不負予心乎？” 十餘張皆如是， 品題置諸下考。 上曰：“連日求賢， 無一可取， 豈特四境不治？ 特爲減膳。” 夜深後，</p>

	<p>한 것 같으나 험잡(挾雜)하여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어찌 명쾌하고 정직하게 탁 터놓고 말하여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못하느냐?”</p> <p>하였다. 10여 장이 모두 이와 같으니, 품제(品題)19235) 를 하고(下考)로 두도록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연일 현자를 구하려 하였으나 뽑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 다만 4경(四境)이 다스려지지 않을 뿐이겠는가? 특별히 감선(減膳)하라.”</p> <p>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고관(考官)이 2개의 시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낭독하고 아뢰기를,</p> <p>“한 장은 잘 지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탁봉(塚封)19236) 하게 하니 바로 조진관(趙鎭寬)이었다. 임금이 이르기를,</p> <p>“이 사람이 조상경(趙尙綱)의 손자인가? 문장을 만드는 데 말이 간략하고 임금의 부족한 점을 말한 것이 진실로 심절(深切)하니, 조엄(趙瞻)은 자식을 잘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그 아버지를 사면하여 그 자식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겠다.”</p> <p>하고, 조엄을 외직(外職)에 임명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정지하였다. 또 비점(批點)19237) 을 명하고, 이르기를,</p> <p>“너의 대책(對策)은 내가 꿈속에서 수작한 것과 서로 비슷하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p> <p>하니, 독권관(讀券官) 이은이 말하기를,</p> <p>“다만 그 사람에게만 영광일 뿐 아니라 감선(減膳)하라는 전교도 자연히 거두시게 되니, 진실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은 구현과(求賢科)로서 조진관에게 급제를 내리라 명하고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고 판서 조상경에게 치제(致祭)하였다.</p>	<p>考官持入二券讀奏曰：“一張善作矣。”</p> <p>上命塚封，乃趙鎭寬也。上曰：“此是尙綱之孫耶？爲文語簡，衰闕誠深，趙瞻可謂有子矣。宜赦其父，用慰其子。”特寢趙瞻補外。又命批點曰：“汝對與夢中酬酢相似，事非偶然。”</p> <p>讀券官李湑曰：“非但於渠爲榮，減膳之教，自然還寢，誠極慶幸。”上命以求賢科，趙鎭寬賜第，親製祭文，致祭于故判書尙綱。</p>
영조 125권, 51년	조엄(趙瞻)을 예조 판서로 삼고, 홍문관 제학 조진관(趙鎭寬)을 특명으로 가자	己丑/以趙瞻爲禮曹判書, 弘文提學趙

<p>(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1월 16일(기축) 1번째기사 조음을 예조 판서로 삼고, 조진관을 가자하다. 권무 군관을 시취하다</p>	<p>(加資)하였다. 임금이 시관(試官)에게 명하여 용무당(隆武堂)에서 삼청(三廳)19238) 의 권무 군관(勸武軍官)을 시취(試取)하게 하고 용호방(龍虎榜)19239) 을 갖추게 한 뒤에 그날로 집경당에서 창방(唱榜)하도록 하였다. 조진관에게 명하여 전상에 올라와 술잔을 잡게 하였다. 조금 진어(進御)한 뒤 조진관에게 내려 주며 이르기를, “너는 꿈속에 만난 훌륭한 보필지신(輔弼之臣)이다. 그리하여 마시다가 남은 술잔을 친히 내려 주니, 반드시 다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홍인한(洪麟漢)이 승자(陞資)가 너무 빠르다고 우러러 진달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또한 〈부열(傳說)을〉 정승으로 임명한 일이 있다.” 하였다.</p>	<p>鎭寬特命加資。 上命試官於隆武堂，試取三廳勸武軍官，具龍虎榜，即日唱榜於集慶堂。 命趙鎭寬上殿執杯。少進御後， 賜鎭寬曰：“爾是夢中良弼。 故親賜飲餘之杯， 必盡飲之。” 右議政洪麟漢以陞資之太驟仰奏， 上曰：“古亦有爰立之事矣。”</p>
<p>영조 125권, 51년(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1월 25일(무술) 1번째기사 영남의 납저를 돌려보낸 일에 대해 이르다</p>	<p>사용원(司饗院) 초기(草記)19255) 에 영남에서 보낸 납저(臘猪)19256) 를 돌려보냈다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납저가 기준에 맞는 것을 구하기는 과연 어렵다. 봉진관(封進官)을 파직하지 말고, 가지고 온 사람도 벌주지 말라.” 하였다.</p>	<p>○戊戌/司饗院草記， 退送嶺南臘猪， 上曰：“臘猪之準尺， 果難得矣。 勿罷封進官， 勿治領來人。”</p>
<p>영조 126권, 51년(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2월 16일(기미) 4번째기사 임금이 집경당에서 방방하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방방(放榜)하였다. 왕세손이 판위(版位)에 나가 사배(四拜)를 마치고 당에 올라가 시좌(侍坐)하였다. 문무(文武)의 신방(新榜)이 전정(殿庭)에 서서 방방(放榜)·반화(頒花)를 마치고, 음악을 연주하자 백관(百官)과 신은(新恩)이 사배(四拜)하고 산호(山呼)하였다. 60세 된 문과(文科) 신은(新恩) 차언보(車彦輔)에게 고기와 비단을 내리라 명하고, 무과(武科)로 62세인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를 명하였다.</p>	<p>上御集慶堂放榜。 王世孫出版位， 四拜畢， 陞堂侍坐。 文武新榜立於殿庭， 放榜頒花訖， 樂作， 百官與新恩四拜山呼。 六十歲文新恩車彦輔， 命賜肉帛， 武科六十二歲二人， 特爲加資</p>
<p>영조 126권, 51년(1775 을미 / 청 건륭(乾隆) 40년) 12월 17</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9작(九爵)·6기(六器)의 음식을 을유년(19336) 의 수작례(受爵禮)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p>	<p>藥房入診時， 上曰：“九爵六器味， 依乙酉受爵例爲之。”</p>

<p>일(경신) 3번째기사 약방에 9작 6기의 음 식을 을유년의 수작례 에 의거해 올리게 하 다</p>	<p>하였다</p>	
<p>영조 126권, 51년 (1775 을미 / 청 건륭 (乾隆) 40년) 12월 29 일(임신) 6번째기사 집경당에서 종신 조신 으로 83세된 노인들과 연회를 갖다</p>	<p>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종신(宗臣)·조신(朝臣)·사서인(士庶人)으로 83세 된 노인을 불러 보았는데, 사찬(賜饌)하고 고취(鼓吹)·무동(舞童)을 들이라 명하 였다. 왕세손이 술잔을 올리고 봉조하와 시임·원임 대신이 차례로 잔을 올렸 다. 임금이 대풍가(大豐歌)19393) 를 본받아 노래를 지어 악공에게 노래하도 록 명하고, 이어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라 명하였다. 여러 노인들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기를 명하니, 노인 모두가 춤을 추고 천세(千歲)를 불렀다. 임금 이 말하기를, “내가 임어한 몇 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도 혜택을 주지 못하여 내일 하례 (賀禮)를 받기가 실로 부끄럽다. 내가 권정(權停)하고자 한다.” 하니,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 하교는 실로 받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푼 일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하례를 받을 것이 다.”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한 일에 극력 힘써 하지 않음이 없으셨습디만, 갑자기 양대하지 못하겠으니, 신들이 마땅히 물러가 생각해서 내일 양주하겠습니다.” 하였다.</p>	<p>上御集慶堂，召見宗臣朝臣士庶八十三 歲老人，命賜饌，入鼓吹舞童。王世 孫進爵，奉朝賀、時·原任大臣，以次 進爵。上製效大風歌，命樂工歌之， 仍命諸臣賡進。諸老人并命加資，老 人盡爲鼓舞，呼千歲。上曰：“予臨御 幾年，無一惠民，明日受賀，實爲自 惡。予將權停矣。”洪鳳漢曰：“此下 教，實非奉承者。”上曰：“若有爲民 施惠之事，予當受賀。”金尙喆曰： “爲民之事，靡不用極，而倉卒之間， 無以仰對，臣等當退以商確，明日仰奏 矣。”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 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 基永堯明舞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 顯孝大王實錄卷之百二十六</p>
<p>영조 127권, 52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1월 1일</p>	<p>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진하(陳賀)를 받았다. 호조 판 서 구윤옥(具允錡)이 진찬(進饌)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지고 들어오라.”</p>	<p>上御集慶堂，受百官賀。戶曹判書具 允錡請進饌，上曰：“持入”命金孝 大、尹東哲進酌。</p>

<p>(계유) 6번째기사 집경당에서 백관의 진하를 받다</p>	<p>하고, 김효대(金孝大)·윤동석(尹東晳)에게 명하여 진작(進酌)하게 하였다.</p>	
<p>영조 127권, 52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3월 3일 (갑술) 9번째기사 임금의 병환이 악화되 다</p>	<p>술시(戌時)에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상복(金相福)·제조(提調) 박상덕(朴相德)·부제조(副提調) 서유린(徐有隣)이 의관(醫官) 오도형(吳道炯)·정운검(鄭允儉)·유광익(柳光翼)·서명위(徐命緯)를 거느리고 입시(入侍)하였다. 왕세손이 서유린에게 말하기를, “저녁 뒤부터 가래와 어지러운 증후가 더욱 심하고 눈꺼풀이 열렸다 감졌다 하며 손발의 온도가 여느때와 다르시다. 강굴다(薑橘茶) 두어 술을 드시게 하여 보았더니 온기(溫氣)가 있는 듯하다가 곧 다시 차지셨으니, 애가 타서 어쩔 줄 모르겠다. 탕제(湯劑)는 달여서 대령하였는가?” 하매, 서유린이 말하기를, “달여서 대령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세손이 오도형을 시켜 진찰하게 하였는데, 오도형이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가래가 막혀서 그럴 것입니다. 백비탕(百沸湯)을 먼저 드시고 계굴다(桂橘茶)에 곱향(藿香) 한 돈을 더하여 달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왕세손이 임금을 부축하고 손가락으로 백비탕을 떠서 드리니, 임금이 잠시 돌아누우려 하며 작은 옥음(玉音)에 떨리는 기가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음(茶飲)이 왔는가?” 하매, 왕세손이 서유린에게 말하기를, “다음(茶飲)을 빨리 달여 오라.” 하였다. 한참 있다가 임금이 돌아 움직이려는 뜻이 있으므로, 왕세손이 손가락으로 다음을 떠서 드렸다. 두어 술에 이르러 혹 순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토하여 내기도 하였는데, 왕세손이 박상덕을 시켜 한 첩을 다시 달여 오게 하였</p>	<p>戌時，藥房都提調金相福、提調朴相德、副提調徐有隣、率醫官吳道炯·鄭允儉·柳光翼·徐命緯入侍。王世孫謂有隣曰：“自夕後，痰眩之候益添，眼胞開睫，肢末寒溫，異於常時。試進薑橘茶數匙，則似有溫氣，旋復還冷，焦迫罔措。湯劑煎待乎？”有隣曰：“煎待矣。”王世孫使吳道炯診察，道炯曰：“此必痰候之停滯而然矣。百沸湯先爲進御，桂橘茶加藿香一錢煎進好矣。”王世孫扶上，以匙進百沸湯，上乍欲回臥，微微玉音，有戰掉之氣。上曰：“茶飲來乎？”王世孫謂有隣曰：“茶飲速爲煎來。”良久上有轉動之意，王世孫以匙進茶飲。至數匙，或順下或吐出，王世孫使之相德，更煎一貼而來。王世孫扶上而進之，上吐出痰涎及所進茶飲，道炯曰：“吐症於膈滯之症，甚好矣。”上又吐痰涎，王世孫使之相德，煎入桂橘茶。王世孫奉御手，使道炯頻頻診視，泣謂曰：“昨日以前，雖有如此之時，有頃則痰候少止，而今</p>

	<p>다. 왕세손이 임금을 부축하여 들게 하였는데, 임금이 가래침과 들었던 다음을 토하여 내니, 오도형이 말하기를,  “토하는 증세는 막힌 증세에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가래침을 토하였는데, 왕세손이 박상덕을 시켜 계갈다를 달여 들여오게 하였다. 왕세손이 어수(御手)를 받들어 오도형을 시켜 자주 진찰하여 보게 하고, 울며 말하기를,  “어제 이전에는 이러한 때가 있기는 하였으나 조금 지나면 가래 증후가 조금 멈추셨는데, 오늘은 아직도 동정(動靜)이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는가?”  하고, 성체(聖體)를 주무르며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애태우니, 보는 신하들이 모두 느껴 울었다. 박상덕이 탕체를 달여 바쳤는데, 왕세손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도형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제는 손발이 차가운 것이 더욱 심하시니, 어찌하는가?”  하였다. 이때 임금이 잠든 듯하여 오래 가래 소리가 없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문 밖에 물러가 었드렸다. 조금 뒤에 왕세손이 울며 김상복 등에게 말하여 진찰하게 하였는데, 오도형이 진후(診候)한 뒤에 물러가 었드려 말하기를,  “맥도(脈度)가 이미 가망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달리 쓸 약이 없습니다. 한 냥 중의 좁쌀 미음을 달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왕세손이 달여 들여오게 하고, 또 하령하여 궁관(宮官)과 승지들과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大臣)을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서유린이 청하여 유문 표신(留門標信)19492) 을 냈다. 박상덕이 좁쌀 미음을 받들어 들어오니, 왕세손이 숟가락으로 떠서 드렸으나, 임금이 이미 들지 못하게 되었다. 왕세손이 울며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좁쌀 미음도 효험이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는가?”  하고,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정후겸(鄭厚謙)·김효대(金孝大)·김한기(金漢耆)·김한로(金漢老) 등을 입시하게 하였다.</p>	<p>日則尙無動靜，此將奈何？”按摩聖體，不暫離側，垂涕焦煎，諸臣仰瞻者，莫不感泣。相德煎湯劑以進，王世孫涕淚滂滂，顧謂道瓘曰：“今則肢末寒冷愈甚，奈何？時上似就寢，久無痰響，諸臣退伏戶外。移時王世孫泣謂相福等，使之診察，道瓘診候後，退伏曰：“脈度已無可望，今則無他進用之藥矣。以一兩重粟米飲煎用似好矣。”王世孫令煎入，又下令宮官、諸承旨、時·原任大臣入侍。有隣請出留門標信。相德奉入粟米飲，王世孫以匙進之，上已不能進矣。王世孫泣謂諸臣曰：“粟米飲亦無效，此將奈何？”令錦城尉朴明源、昌城尉黃仁點、鄭厚謙、金孝大、金漢耆、金漢老等入侍。時、原任大臣入侍。領議政金尙喆等曰：“聖候若此，不勝焦迫矣。然邸下不顧睿候，若是過爲焦煎，臣等尤爲悶迫矣。”王世孫垂泣下令曰：“大臣及醫官，入寢內，診察聖躬也。”尙喆等吳道瓘等，入寢戶內按察。諸臣曰：“萬萬罔措矣。”令曰：“宗社山川祈禱卽速舉行。”王世孫奉御手，俯伏號擗，不離御榻，尙喆等曰：“睿情</p>
--	---	---



	<p>시임·원임인 대신이 입시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상철(金尙喆) 등이 말하기를,  “성후(聖候)가 이러하시니, 애가 타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저하(邸下)께서 예후(睿候)를 돌보지 않고 이처럼 지나치게 마음졸이시면 신들은 더욱이 몹시 민망합니다.”  하니, 왕세손이 눈물을 흘리며 하령하기를,  “대신과 의관이 침내(寢內)에 들어가 성궁(聖躬)을 진찰하라.”  하매, 김상철 등과 오도형 등이 침호(寢戶) 안에 들어가 살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종사(宗社)와 산천(山川)에 기도하는 일을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왕세손이 어수를 받들고 부복(俯伏)하여 슬피 울며 어탑(御榻)을 떠나지 않으니, 김상철 등이 말하기를,  “예정(睿情)이 어찌 그러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이러서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어탑에서 조금 떨어지소서.”  하였으나, 왕세손이 듣지 않고 부여잡고서 슬피 울기를 마지않았다. 서유린이 말하기를,  “궁성(宮城)의 호위(扈衛)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세손이 소리내어 울며 답하지 않으니, 김상철이 나아가 말하기를,  “이런 황급한 때에 호위하는 일을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승지는 어찌하여 써서 아뢰지 않습니까?”  하고, 영지(令旨)로 궁성의 호위를 규례에 따라 거행할 것을 써서 반포하였다. 김상철이 어탑 앞에 나아가 유교(遺敎)를 쓸 것을 청하자, 도승지 서유린</p>	<p>安得不然? 而此時不可如此。 伏願少離御榻。” 王世孫不聽， 攀擗不已。 有隣曰：“宮城扈衛， 不可遲滯矣。” 王世孫號哭不答， 尙喆進曰：“當此蒼黃之際， 扈衛之舉， 豈可暫時遲緩乎? 承旨何不書奏乎?” 以令旨宮城扈衛， 依例舉行事， 書出頒布。 尙喆進御榻前， 請書遺敎， 都承旨徐有隣書遺敎，“傳曰。 大寶傳于王世孫。” 書訖， 尙喆復詣御榻前， 告宣遺敎， 使有隣立於寢門外， 高聲讀奏。 尙喆等請屬纊， 王世孫泣曰：“姑少待之。” 時天未明， 少頃尙喆等又請屬纊， 王世孫號擗曰：“唯令曰：“內殿進御粟米飲， 待令可也。” 尙喆曰：“屬纊時執事當同入矣。” 令曰：“錦城尉朴明源、 昌城尉黃仁點、 工曹判書金漢耆、 副司直鄭厚謙、 兵曹參議金漢老爲之。” 都提調金相福奉進粟米飲， 王世孫俯伏號哭， 却而不進。 三提調諸大臣泣奏曰：“帝王之孝， 與匹庶有異。 宗社之重， 生靈之望， 惟在邸下一身， 邸下何不念及於此乎?” 王世孫號哭不已， 終不進服。 諸執事進御床傍屬纊。 訖， 下番翰林李心淵書上大漸三字， 周示外庭，</p>
--	---	--

	<p>이 유교를 썼는데, 이르기를,  “전교(傳敎)한다. 대보(大寶)를 왕세손에게 전하라.”  하였다. 쓰기를 마치자, 김상철이 다시 어담 앞에 나아가 유교를 선포할 것을  고하고 서유린을 시켜 침문(寢門) 밖에 서서 큰소리로 읽어 아뢰게 하였다.  김상철 등이 속광(屬纊)19493) 을 청하니, 왕세손이 울며 말하기를,  “아직 조금 기다리라.”  하였다. 이때 날이 밝기 전이었는데, 조금 뒤에 김상철 등이 또 속광을 청하  니, 왕세손이 소리내어 슬피 울며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하령하기를,  “내전(內殿)에서 드실 좁쌀 미음을 대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철이 말하기를,  “속광할 때에는 집사(執事)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금성위 박명원·창성위 황인점·공조 판서(工曹判書) 김한기·부사직(副司直) 정  후겸·병조 참의(兵曹參議) 김한로로 하라.”  하였다. 도제조 김상복이 좁쌀 미음을 바쳤으나, 왕세손이 부복하여 소리 내  어 울며 물리치고 들지 않았다. 세 제조와 여러 대신이 울며 아뢰기를,  “임금의 효도는 필서(匹庶)와 다릅니다. 종사(宗社)의 중한 부탁과 백성의 희  망이 오직 저하 한 몸에 달려 있는데, 저하께서는 어찌하여 생각이 여기에 미  치시지 않습니까?”  하였으나, 왕세손이 소리내어 울기를 마지않고 끝내 들지 않았다. 집사들이  어상(御床) 옆에 나아가 속광하였다. 속광이 끝나고 하번(下番)인 한림(翰林)  이심연(李心淵)이 ‘상대점(上大漸)’ 석 자를 써서 외정(外庭)에 두루 보이니,  바로 묘시(卯時) 초 3각(三刻)이었다. 조정(朝廷)에서 대전(大殿)·중궁전(中宮</p>	<p>乃卯初三刻。 朝廷庭候于大殿、中宮  殿。 王世孫泣諭大臣曰：“ 列朝禮陟  之時， 每在臥內， 臯復時， 諸臣始入參，  今番自大漸之前， 至于今卿等入參， 仰  瞻聖德之至于正終， 若是卓然， 而今則  更無仰觀之所矣。” 仍號哭不止， 尙喆  等曰：“ 姑未臯復矣。 伏望少抑睿孝，  以從禮制。” 時大臣諸臣， 立於廳事以  俟， 厚謙以執事入來， 假托脚病， 咫尺  殿庭， 乃敢扶杖， 狠毒之色， 發於面目，  了無悲憾之容， 究厥心腸， 吁亦凶穉  矣。</p>
--	---	---

殿)에 정후(庭候)하였다. 왕세손이 울며 대신에게 유시하기를,  
 “열조(列朝)에서 예척(禮陟)19494) 때에는 번번이 와내(臥內)에 계셨으므로  
 고복(阜復)19495) 때에야 신하들이 비로소 입참(入參)하였는데, 이번에는 대  
 점(大漸) 전부터 지금까지 경들이 입참하여 성덕(聖德)이 정종(正終)에 이르러  
 이처럼 뛰어나신 것을 우러러보았으나, 이제는 다시 우러러볼 데가 없어졌  
 다.”

하고 소리내어 울기를 그치지 않으며, 김상철 등이 말하기를,  
 “아직 고복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효(睿孝)를 조금 억제하고 예제  
 (禮制)를 따르소서.”

하였다. 이때 대신과 여러 신하가 청사(廳事)에 서서 기다리는데, 정후겸이  
 집사로서 들어와 다리 병을 핏계하고 전정(殿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감히  
 지팡이를 짚고서 표독한 빛이 낮에 나타나고 조금도 슬픈 모습이 없었으니,  
 그 마음을 캐어 보면 아! 또한 모질다.



## 2. 정 조 실 록 기 사 자 료 집



## 정조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3월 10일(신사) 1번째기사 경희궁의 승정문에서 즉위하다</p>	<p>영종 대왕 52년(1776) 【청나라 건륭 41년이다.】 3월 병자일(丙子日)에 영종이 흥(薨)하고, 6일 만인 신사일(辛巳日)에 왕이 경희궁(慶熙宮)의 승정문(崇政門)에 즉위하였다. 왕은 영종 28년(1752) 【임신년이다.】 9월 기묘일(己卯日) 【22일 축시(丑時)이다.】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탄생하였다. 처음 장헌 세자가 신룡(神龍)이 구슬을 안고 침실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꿈을 깬 다음에 손수 꿈속에서 본 대로 그림을 그리어 궁중벽에 걸어 놓았었다. 탄생하면서 영특한 음성이 큰 종이 울리듯 하므로 궁중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영종이 친림하여 보고서 매우 기뻐하며 혜빈(惠嬪)에게 하교하기를, ‘이 애는 너무도 나를 닮았다. 이런 애를 얻었으니 종사가 근심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날로 원손(元孫)으로 호를 정하였다. 30년(1754) 【갑술년이다.】 가을에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했고 35년(1759) 【기묘년이다.】 2월 계해일(癸亥日)에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립(冊立)되었다가 윤6월 경자일(庚子日)에 명정전(明政殿)에서 책(冊)을 받게 되었고, 37년(1761) 【신사년이다.】 3월 기유일(己酉日)에 입학하였고 8일 만인 정사일(丁巳日)에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冠禮)를 행하고 38년(1762) 【임오년이다.】 2월 병인일(丙寅日)에 어의궁(於義宮) 【효종(孝宗)의 잠저(潛邸)인 곳이다.】에서</p>	<p>辛巳/丙子, 英宗薨, 越六日辛巳, 王卽位于慶熙宮之崇政門。 王以英宗二十八年【壬申。】秋九月己卯【二十二日丑時。】誕降于昌慶宮之景春殿。 初莊獻世子夢神龍抱珠入寢室, 既覺手畫夢中所覩, 揭之宮壁。 及誕降, 英音發如洪鐘, 宮中皆驚, 英宗臨見喜甚, 教惠嬪曰: “是酷類予。 得此兒, 宗社其無憂乎?” 卽日定號爲元孫。 三十年【甲戌。】設輔養廳, 三十五年【己卯。】春二月癸亥, 冊王世孫, 夏閏六月庚子, 受冊于明政殿, 三十七年【辛巳。】春三月己酉入學, 越八日丁巳冠于景賢堂, 三十八年【壬午。】春二月丙寅行嘉禮于於義宮, 【孝廟潛邸】嬪金氏。 【籍淸風淸原府院君時默女。】夏閏五月, 莊獻世子薨, 秋七</p>

가례(嘉禮)를 거행하니, 빈(嬪)은 김씨(金氏)이다. 【본적은 청풍(淸風)이고 청원 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이다.】 윤5월에 장헌 세자가 흥하였고, 7월에 명(明)나라의 고사에 의하여 세손궁(世孫宮)을 동궁(東宮)으로 칭하며 다시 춘방(春坊)1) 과 계방(桂坊)2) 을 설치했고, 40년(1764) 【갑신년이다.】 2월 임인일(壬寅日)에 왕을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후사로 삼아 종통(宗統)을 이어받도록 하고, 51년(1775) 【을미년이다.】 12월 경술일(庚戌日)에 서정(庶政)을 대청(代聽)하며 경현당(景賢堂)에서 조하(朝賀)를 받았다. 이에 이르러 영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왕이 정도에 지나치게 슬퍼하며 물이나 미음도 들지 않았고, 상사(喪事) 이외의 일은 명계(命戒)하는 바가 없었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왕위를 이어 받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울며 허락하지 않았고, 여러 날을 정청(庭請)하는 동안 계사(啓辭)가 올라오면 그만 울기만 하다가, 성복(成服)하는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억지로 따르며 하교하기를, ‘뭇 신하들의 심정에 몰리어 장차 왕위에 서기는 하겠지만, 면복(冕服)차림으로 예식을 거행하기는 내 마음 속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예(禮)는 《서경(書經)》의 강왕지고(康王之誥)에 보이는데, 소식(蘇軾)의 주설(註說)에 ‘상복(喪服) 차림 그대로 관례(冠禮)를 거행해야 한다.’라고 한 대문을 인용하여 예법이 아닌 일이라고 비난해 놓은 것을 채침(蔡沈)이 《서집전(書集傳)》에 수록해 놓았었다. 양암(亮闇)에 관한 법을 비록 거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옛적의 예법과 국조(國朝)의 법제를 들어 극력 청하자, 왕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오시(午時)에 대신들이 어보(御寶) 받기를 청하니 왕이 굳이 사양하다가 되지 않자, 면복(冕服)을 갖추고 부축을 받으며 빈전(殯殿)의 문밖 욕위(褥位)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거행하였고,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유교(遺敎)를 받들고 좌의정 신회(申晦)는 대보(大寶)를 받들어 올리니, 왕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받고서 다시 사배례를 거행하였고, 자정문(資政門)으로

月, 依皇明故事, 世孫宮稱東宮, 復設春桂坊, 四十年【申甲。】春二月壬寅, 命以王爲孝章世子嗣承宗統, 五十一年【乙未。】冬十二月庚戌, 代聽庶政, 受朝賀于景賢堂。至是英宗禮陟, 王哀毀踰度, 不進水漿, 喪事外無命戒。大臣諸臣請嗣位, 王哭不許, 庭請屢日, 啓至則輒哭, 及成服日始勉從, 教曰: “迫於群情忍將踐位, 而冕服行禮, 於予心益覺怵然。此禮見於《康王之誥》, 蘇軾註說引‘因喪而冠’之文, 譏其非禮, 蔡氏載之集傳。亮闇之制, 雖不得行, 釋衰從吉其可乎?” 諸臣以古禮與國制力請, 王乃許之。午時, 大臣等請受寶, 王固辭不獲, 具冕服扶詣殯殿門外褥位, 行四拜禮, 領議政金尙喆奉遺教, 左議政申晦奉大寶以進, 王涕泣強受, 復行四拜禮, 出資政門乘輿, 詣崇政門降輿。宗親文武百官, 分東西序立, 侍衛如儀, 王嗚咽不忍陞座。大臣以下又力請, 王號哭曰: “此座卽先王所御之座也。豈意今日予當此座乎?” 大臣以日已晚, 縷縷仰請, 王遂陞御座, 百官行禮, 釋冕反喪服。



	<p>나와 승여(乘輿)를 타고 승정문(崇政門)에 이르러 승여에서 내리었다. 종친(宗親)들과 문무 백관이 동서로 나뉘어 차례대로 서서 의식대로 시위하니, 왕이 울먹이며 차마 어좌(御座)에 오르지 못하였다. 대신 이하가 또한 극력 청하자 왕이 울부짖기를, ‘이 어좌는 곧 선왕께서 앉으시던 어좌이다. 어찌 오늘 내가 이 어좌를 마주 대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였다. 대신들이 해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들어 누누이 우러러 청하자, 왕이 드디어 어좌에 올랐는데 백관들이 예를 행하니, 면복을 벗고 도로 상복을 입었다.</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3월 14일(을유) 1번째기사 세 도감에서 사용할 물력을 내리다</p>	<p>세 도감에서 사용하게 될 물력(物力)으로 경자년16) 의 사례에 의거하여 경사(京司)의 쌀 4천 6백 석 및 돈 4천 냥과 면포 50동, 제도(諸道)의 면포 1백 60동 및 베 14동을 가져다 쓰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p>	<p>○乙酉/三都監以所用物力，請依庚子例，京司米四千六百石，錢四千兩，綿布五十同，諸道綿布一百六十同，布十四同取用，允之。</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3월 17일(무자) 1번째기사 혼전·산릉의 제전에 쓰는 각종의 것을 정축년에 수교한대로 하게 하다</p>	<p>혼전(魂殿)·산릉(山陵)의 제전(祭奠)에 쓰는 각종의 것을 한결같이 정축년21)에 수교(受敎)한 대로 하여 민력(民力)이 펴지도록 하고, 산릉 역사에 쓰이는 민력에 있어서도 저축해 두고 있는 쌀로 회감(會減)하도록 명하였다.</p>	<p>戊子/命魂殿、山陵、祭奠所用各種，一遵丁丑受敎，以紓民力，陵役之用民力者，以儲置米會減。</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4월 16 일(정사) 1번째기사 비빈·대군·공주의 각처 의 묘와 묘에의 제향을 간소하게 하라 명하다</p>	<p>하교하기를, “막중한 태묘(太廟)에서도 조천(祧遷)하여 봉안한 다음에는 단지 봄과 가을에 묘(廟)에서 대향(大享)만 있고, 한식(寒食)에는 능(陵)에 법식대로 친(薦)하니, 예절은 문란할 수 없음이 이러한 것이다. 순회묘(順懷廟)와 민회묘(愍懷廟) 등에 있어서도 대(代)가 멀어지면 사당의 신주를 묻고 묘각(墓閣)에서 한 차례 제사할 뿐이다. 수진궁(壽進宮)은 후손이 없이 일찍 돌아갔는데, 비빈(妃嬪) 및 대군(大君)·공주(公主)의 각처의 묘(廟)와 묘(墓)에의 제향이 빈번하여 태묘보다도 더하다. 당초에 창설할 때 어느 제도를 모방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법을 어지럽히게 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내가 궁중의 고사를 들어 보건대 당초에는 한 때의 우연히 거행한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부시(婦寺)의 무리들이 잘못을 답습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고치고 개혁함은 본시 어려워할 것이 없는 일이다. 이 뒤로는 무릇 수진궁에 부(祔)한 모든 제위(祭位)에게 묘(墓)에는 봄과 가을에, 묘(廟)에는 한식에만 거행하고, 이 이외의 제향은 한결같이 모두 혁파하여 예법이 엄중하게 하고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라. 수진궁의 제위 조목 가운데 작호가 없는 이른바 대군 아기씨(阿只氏) 및 숙원(淑媛) 장씨(張氏)·숙의(淑儀) 나씨(羅氏)·명빈(明嬪) 김씨(金氏)·증 경빈(慶嬪) 이씨(李氏)의 5위(位)에는 단지 묘제(墓祭)만 남겨 두고 묘주(廟主)는 본묘(本墓)에 묻어 두게 하여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해궁(該宮)에 명령을 내어 알도록 하라.” 하였다.</p>	<p>○丁巳/教曰：“以太廟之重，祧奉之後，只有春秋大享於廟，寒食式薦於陵，禮節之不可紊也如是矣。至如順懷、愍懷等廟，代遠則廟主埋安，墓閣一祭而已。壽進宮無後早逝，妃嬪及大君公主各處廟墓祭享之頻，甚於太廟。當初創設，雖不知倣於何制，而其所亂禮，莫此爲甚。予聞之宮中故事，初不過一時偶行之事，伊後婦寺輩襲謬而然云，然則釐革之政，本非疑難者。此後凡諸祔壽進宮祭位，廟則春秋，墓則寒食行之，其外祭享，一併罷去，以嚴禮制，以節經費。當宮祭位條中，無爵號而所謂大君阿只氏及淑媛張氏、淑儀羅氏、明嬪金氏、贈慶嬪李氏五位，只存墓祭，廟主埋置於本墓，令內需司知委該宮。”</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5월 1일</p>	<p>경모궁(景慕宮)의 제례(祭禮)를 정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사위(嗣位)하여, 경모궁의 제향에 희생을 사용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 한지의 여부를</p>	<p>○定景慕宮祭禮。初上嗣位，以景慕宮祭享，用牲用樂當否，令弘文館博</p>

(신미) 2번째기사  
경모궁의 제례를 정하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고찰해 보도록 했었는데,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의 제대자묘 시향조(諸太子廟時享條)를 고찰하건대, ‘태악령(太樂令)이 사당 뜰에 헌현(軒懸)을 차린다.’라고 하였고, 또한 ‘재인(宰人)이 난도(鑿刀)로 희생(犧牲)을 벤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음악을 사용하고 희생(犧牲)을 사용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역대로부터 황조(皇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면(三面)에 헌현(軒懸)을 차리는 제도를 사용하여, 유명(幽明)의 이치가 본래부터 차이가 없었는데, 향사(享祀)하는 제례는 더욱 마땅히 융숭하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평일에 쓸 수 있는데 죽은 뒤에는 유독 쓸 수 없고 연례(宴禮)에서는 허락하면서 사전(祀典)에는 도리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犧牲)을 쓰는 일에 있어서는 《송사(宋史)》를 고찰해 보건대, 영종(英宗)이 복왕(濮王)에게 사용하였고 효종(孝宗)이 수왕(秀王)에게 사용했었습니다. 오직 이 두 왕은 지위는 번왕(藩王)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속은 선계(璿系)에서 멀었는데도 특별히 보본(報本)하는 의리에 따라 곧 높이거나 낮추는 절차가 있었던 것인데, 여러 현인들이 이를 그르게 여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경모궁은 지위로는 높이 이극(貳極)의 자리에 임했었고 가깝기로는 성상의 몸을 낳고 기르신 분입니다. 선왕의 명을 받아 이미 온갖 정사를 맡아 보셨고 선왕의 하교를 받드느라 또한 헌현(軒懸)을 차리셨습니다. 성인이 죽었을 때 섬기기를 살았을 때 섬기듯이 하고 돌아간 이 섬기기를 생존한 이 섬기듯 하는 의리에 있어서도 무릇 할 수 있는 예절은 마땅히 지극하게 하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하물며 이 한두 가지의 것처럼 고사를 그대로 의거하여 거행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효종 대왕께서 장차 소현 세자의 묘에 임하게 될 적에 예관이 의절(義節)에 있어서 어렵게 여기자, 상신 민정중(閔鼎重)이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동평왕(東平王)의 능에 대퇴(大宰)148)로 제사한 일을 들어 행전(行殿)에 차자(筓子)를 진달했었는데 말은 명쾌하고 의리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

考, 弘文館啓言: “謹考《杜氏通典》諸太子廟時享條曰: ‘太樂令設軒懸於廟庭。’又曰: ‘宰人以鑿刀割牲。’此實用樂用牲之一大明證。 粵自歷代迄于皇朝, 皆用軒懸三面之制, 則幽明之理, 本自無間, 而享祀之禮, 尤宜致隆。 在平日則可用, 而在歿後則獨不可用, 在宴禮則可許, 而在祀典則反不可許也耶? 至若用牲, 則攷之《宋史》, 英宗用之於濮王, 孝宗用之於秀王。 惟彼二王, 位不過乎藩王, 屬則遠於璿系, 而特以報本之義, 爰有隆殺之節, 而未聞諸賢以此非之也。 惟我景慕宮, 以位則尊臨貳極也, 以親則誕育聖躬也。 受先王之命, 而既聽庶政, 奉先王之教而亦舉軒懸。 在聖人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之義, 凡係可爲之禮, 則宜無所不用其極。 況此一二故實之可據而行者耶? 昔我孝宗大王將臨昭顯墓也, 禮官難於儀節, 相臣閔鼎重引漢帝太牢祀東平陵事, 陳筓行殿, 辭明義正。 若使我朝曾有牢園陵之例, 則相臣必請之矣, 聖祖必行之矣。 東平之於漢帝, 昭顯之於聖祖, 語其親則兄也, 諸父也, 致敬而盡禮, 尙且如

이 대뢰로 원릉(園陵)에 제사한 사례가 있기만 했다면, 상신이 반드시 주청(奏請)했을 것이고, 성조(聖祖)께서도 반드시 거행했을 것입니다. 동평왕이 한 나라 명제에 있어서와 소현 세자가 성조에 있어서 가깝기로 말하면 형이었고 제부(諸父)였지만, 공경을 다하고 예를 극진히 하기를 오히려 또한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가깝기가 더욱 가깝고 예가 더욱 높아야 할 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제사의 예절은 희생과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대개 강림하여 흠향하는 이치와 와서 다다른 효험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삼아 주(周)나라 때의 《시경》 소아(小雅)를 보더라도, 초자편(楚茨篇)의 주인공은 곧 공경(公卿)으로서 땅과 녹(祿)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너의 소와 양을 깨끗이하여 나아가 제사하는데, 삶기도 하고 잡기도 한다.[絜甫牛羊 以往蒸嘗]’라고 하였고, 또 ‘악기를 모두 들여다 연주하여 후록이 안정되게 한다.[樂具入奏 以綏後祿]’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유독 천자와 제후만이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금의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제례에 있어 천리로 헤아려 보고 인정에 근본해 볼 적에 불가할 것이 없을 듯 싶습니다.”

하므로,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했었는데, 여러 대신과 유신들이 말하기를,

“유신이 의견을 드린 것이 이처럼 세밀하게 되어 있어 다른 의논을 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대신·예관과 태상시(太常寺)·장악원(掌樂院)의 제조를 불러 보며 차례차례 물어 보아 희생을 사용하고 음악을 사용하기로 정하여, 희생은 소와 양을 쓰고 음악은 3성(成)을 쓰고 춤은 6일(佾)을 쓰도록 하였다. 대사(大祀)는 친향(親享)하고 중사(中祀)는 섭향(攝享)하며, 친향 때의 희생은 대뢰(大牢)로 하고, 친히 나아가 희생을 살필 때에는 또한 친향 때의 준례대로 하였다. 오향(五享) 때에는 변(籩)이 10개, 두(豆)가 10개, 등(甄)이 3

此，伏況親愈尊而禮愈隆者耶？祭祀之禮，莫重於牲與樂，蓋其降歆之理，來格之效，灼然可見。試觀乎《周雅》，《楚茨》之主人即公卿，有田祿者，其詩曰：‘絜爾牛羊，以往蒸嘗。’又曰：‘樂具入奏，以綏後祿。’以此推之，則不獨天子諸侯之爲可用也。雖曰古今之異，宜若乃今日之禮，揆諸天理，本之人情，恐無不可。”命議大臣儒臣，諸大臣儒臣以爲：“儒臣獻議，若是纖悉，無容別議。”至是召見大臣、禮官、太常·樂院提調，歷詢乃定用牢用樂，牢用牛羊，樂用三成，舞用六佾。親享大祀，攝享中祀，親享時牲用太牢，親臨省牲則亦依親享例。五享籩十，豆十，甄三，鉶三，簠二，簋二，俎六，爵三，筐一肝膋甄一，毛血槃一。朔望俗節告由祭，籩二，豆二，簠一，簋一，俎一，爵一，告由祭用幣。酌獻禮籩二，豆二，爵一。五享用四仲朔，上旬內卜日，及臘日傳香祝，先於諸廟墓齋，令享官親祭。及春秋展拜時服色，春秋奉審與太廟同。肆儀前享一日，行於內神門外，著爲式。

	<p>개, 형(銅)이 3개, 보(篋)가 2개, 궤(篋)가 2개, 조(俎)가 6개, 작(爵)이 3개, 비(篚)가 1개, 간료등(肝膋甗)이 1개, 모혈반(毛血槃)이 1개씩으로 하였다. 삭망 속절 고유제(朔望俗節告由祭) 때는 변이 2개, 두가 2개, 보가 1개, 궤가 1개, 조가 1개, 작이 1개씩으로 하되, 고유제에는 폐백을 썼다. 작헌례(酌獻禮) 때는 변이 2개, 두가 2개, 작이 1개씩으로 하였다. 오향은 사중삭(四仲朔)에 하되 상순 동안에서 날짜를 가려서 정하고, 납일(臘日)에 당해서는 향축(香祝) 전달을 여러 묘(廟)의 묘재(廟齋)에 앞서 하고, 향관(享官)이 친히 제사하게 한다. 봄·가을 전배(展拜)할 때의 복색과 봄·가을 봉심할 때의 복색은 태묘(太廟)에서와 같이 한다. 이의(肄儀)는 향사 하루 전에 내신문(內神門) 밖에서 하는 것으로, 기록하여 정식(定式)을 삼았다.</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6월 12 일(신해) 1번째기사 제주 백성들이 능의 역사에 부역하러 오니 양식을 넉넉히 주라 하교하다</p>	<p>제주(濟州) 백성들이 능(陵)의 역사에 부역하러 왔다.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에도 매양 우홀(優恤)하는 덕음(德音)을 내리셨음은 곧 내가 일찍이 양문(仰聞)하고 있는 바이다. 요사이 듣건대 제주 민인(民人)들이 또한 부역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정축년(190)의 전례에 의하여 양식과 반찬을 되도록 넉넉하게 제급(題給)하라.” 하고, 이어서 봉명(奉命)한 신하로 하여금 노문(勞問)해 주고 또한 경자년(191)의 전례대로 대궐 뜰에서 주과(酒果)를 먹이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p>	<p>○辛亥/濟州民來赴陵役。教曰：“先朝每加優恤之德音，卽予嘗所仰聞者。近聞濟州民人，亦有赴役者云，依丁丑年例，糧饌從優題給。”仍令奉命之臣勞問，亦依庚子年例，闕庭饋以酒果。</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p>		

<p>(乾隆) 41년) 6월 14일(계축) 1번째기사 장마가 한 달을 넘기니 재관을 가려 기청제를 거행하라 하교하다</p>	<p>이때에 장마가 한 달을 넘겼었는데, 하교하기를, “시우(時雨)가 장마로 변해 한 달이 넘도록 개지 않고 있으니, 민생들의 일을 생각하면 한없이 초조해진다. 더구나 지금 외재궁(外梓宮)을 받들어 나아가는 일도 또한 기일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전례를 상고해 보건대 또한 의거할 만한 것이 있기도 하거니와, 기청제(祈晴祭)의 거행을 입추(立秋)까지 지체하며 기다릴 수 없으니, 날을 가릴 것 없이 설행하고, 재관(齋官)도 별도로 가려서 하라.” 하였다.</p>	<p>○癸丑/時潦雨闕月，教曰：“時雨成霖，跨朔不霽，言念民事，極爲焦慮。況今外梓宮奉詣，亦不能如期，尤庸悶然。考之前例，亦有可據，祈晴之舉，不可遲待立秋，不卜日設行，齋官另擇。”</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6월 16일(을묘) 1번째기사 혜경궁의 탄신에 조정에서 대전에게 문안하는 것을 의식대로 하도록 명하다</p>	<p>혜경궁(惠慶宮) 탄신(誕辰)에 조정에서 대전(大殿)에게 문안하는 것을 의식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자궁(慈宮)의 탄일에 비록 궁료(宮僚)들이 자궁께는 문안하지 않고 단지 동궁(東宮)에만 문안을 했지만 이제는 조정에서 대전에도 문안하라.” 하였다.</p>	<p>○乙卯/命惠慶宮誕辰，朝廷問安於大殿，著爲式。教曰：“予在春邸時，慈宮誕日，宮僚雖不問安於慈宮，只爲問安於東宮，今則朝廷問安於大殿。”</p>
<p>정조 1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7월 28일(정유) 1번째기사 효명전에서 반우제를 행하다</p>	<p>효명전에서 반우제(返虞祭)를 행하였다. 임금이 최복을 갖추고 현모문(顯謨門) 밖으로 나아가 재우제(再虞祭)의 축문에 친압(親狎)하고 교자를 타고 흥인문 밖으로 나아가 신련(神輦)이 이르자 곡영례(哭迎禮)를 행하고, 이어 신련을 모시고 환궁하였다.</p>	<p>○丁酉/返虞于孝明殿。上具衰服，御顯謨門親狎再虞祭祝，乘輜出興仁門外，神輦至，行哭迎禮，仍陪神輦還宮。</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9월 13 일(신사) 1번째기사 선조의 탄신일이므로 효명전에서 작헌례를 친히 행하다</p>	<p>효명전(孝明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였으니, 선조(先朝)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었다.</p>	<p>○辛巳/親行酌獻禮于孝明殿， 以先朝誕辰也。</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9월 17 일(을유) 1번째기사 때 아닌 천둥이 치니 3일간 감선할 것을 명 하다</p>	<p>천둥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과매(寡昧)한 소자(小子)가 외람되게 큰 기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관상감의 통보는 또 어찌하여 이르렀는가? 우리의 소리가 곧 가을철에 발생하였는데 재앙은 헛되게 생기는 법이 없어 반드시 불러온 바가 있으니, 그 연유된 바를 따져보면 죄가 한 사람에게 있다. 오직 나 한 사람은 억조(億兆)의 백성 위에 군림(君臨)하면서 위로는 하늘의 뜻을 선양(宣揚)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능히 백성을 편안하게 못하였다. 이에 인애(仁愛)하신 하늘이 이와 같이 경고(警告)하기를 인자한 아버지가 혼미한 아들을 가르치 듯하여 정녕(丁寧)하고 반복하며 알아듣게 제시하고 직접 명하는 것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두려운 한 생각에 편히 있을 겨를이 없다. 아! 조정은 사방의 근본이 되고 인주(人主)는 조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고인(古人)이 어찌 인주의 한 마음으로 만화(萬化)의 근원을 삼지 않았겠는가? 근원에 마음을 더하려 하나 함양(涵養)하는 공부가 지극하지 못하고 국사에 정진(精進)을 힘쓰려하나 포로(蒲蘆)473)의 효과가 나타남이 없다. 척리(戚里)가 서로 알력을 부리니 세도(世道)가 해이해지고 민생(民生)은 곤궁한데, 경비도 따라서 또한 탕갈(蕩竭)되었으며 염치와 예의는 땅을 쓸 듯 없어져 명</p>	<p>○乙酉/雷。 教曰：“嗚呼！小子寡昧，叨承丕基，夙夜祗懼，若隕淵谷。 乃者青臺之報， 又胡爲而至也？ 轟轟之聲， 乃發於收藏之時， 災不虛生， 必有所召， 究厥所由， 罪在一人。 惟予一人， 臨于億兆之上， 上不能對揚， 下不能奠安。 仁愛之天， 若是警告， 無異於慈父之詔迷子， 丁寧諄複， 耳提面命， 一念懷揚， 不違寧處。 噫！ 朝廷爲四方之本， 而人主爲朝廷之本， 則古人豈不以人主一心， 爲萬化之原乎？ 非不欲加意於本原， 而涵養之工未至， 非不欲勵精於國事， 而蒲蘆之效莫見。 戚里相軋， 而世道以之泮渙， 生民困悴， 而經用隨亦罄竭， 廉防之掃地， 而弁髦於名義， 私意之橫流， 而纏繞於習俗。 有一於此， 莫非可以干和而致災， 況兼有此數事者乎？ 靜言思惟， 不待咎</p>

	<p>의(名義)는 쓸데없는 것[弁髦]이 되었고 사의(私意)가 범람하여 습속(習俗)이 어지러워졌다. 이에 하나라도 있으면 화기(和氣)를 간범(干犯)하여 재앙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몇가지 일이 겹하여 있는 것이겠는가?</p> <p>고요히 생각건대 허물의 조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과연 이 때아닌 비와 절기에 어긋나는 천둥이 있게 되었으니 거의 시인(詩人)이 이른바 편치 못하고 착하지 못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착하지 못한 내가 새로 왕위(王位)에 올라 실은 한가지 정령(政令)도 하늘의 아름다움에 우러러 보답하거나 인심에 굽어 만족하게 함이 없었으니 가까이서 듣는 하늘이 어찌 재앙을 내려 나를 경계하지 않겠는가?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로서 복채에 따라 복이 올리 듯하는 것이니,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는 또한 내 마음 안에 달려있다. 어찌 감히 자신에 돌이켜 허물을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우러러 보답하지 않겠는가? 오늘부터 3일간 감선(減膳)할 것이니 아! 너희 삼사(三司)의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이 두려워하는 뜻을 체득하여 위로 곤직(袞職)의 꺾유(闕遺)와 아래로 시정(時政)의 득실을 숨김없이 조목별로 진달하라.” 하였다.</p>	<p>徵之見，已多戒懼之心矣。果然有此非時之雨，失節之雷，不幾近於詩人所謂不寧不令者乎？肆予不穀，新服厥命，實無一政一令之可以仰答天庥，俯愜人心者，聽鬼之天，安得不降災警予乎？天人一理，應捷桴鼓，弭災之道，亦在予方寸之間。曷敢不反躬省愆，仰答天譴？自今日減膳三日，咨爾三司近密之臣，體此恐懼之意，上以袞職之闕遺，下以時政之得失，條陳無隱。”</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10월 4일(임인) 2번째기사 영남 포항창의 곡식을 운송하고 교제창의 곡식을 획급하여 북관의</p>	<p>영남(嶺南) 포항창(浦項倉)의 곡식 3만 석(石)을 북관(北關)으로 운송하게 하고 교제창(交濟倉)의 곡식 1만 석을 더 획급(劃給)하여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였으니, 함경도 관찰사 조중회(趙重晦)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했는데,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p>	<p>○命嶺南浦項倉穀三萬石運送于北關，加劃交濟倉穀一萬石，以補賑資，因咸鏡道觀察使趙重晦狀啓備局覆奏，從之。</p>



진자에 보태게 하다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10월 7 일(을사) 1번째기사 다음날에 있을 태묘의 동향 대제에 특히 정성을 다하라고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즉조(即阼)한 뒤로 처음 행하는 대제(大祭)이니,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들은 특별히 경건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가 다음날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백산사고본】</p>	<p>○乙巳/教曰：“卽阼後初行大祭，獻官諸執事，另加虔誠。”以太廟冬享，在明也。</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10월 21 일(기미) 1번째기사 관동에 진자첩에 의한 별비곡 5천 석을 획급해 주다</p>	<p>관동(關東)의 진자첩(賑資帖)에 의한 별비곡(別備穀) 5천 석을 획급해 주었다. 대신(大臣)이 전 강원도 관찰사 김하재(金夏材)가 올린 장계(狀啓)로 인하여 복주(覆奏)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p>	<p>○己未/劃給關東賑資帖別備穀五千石。大臣以前江原道觀察使金夏材狀啓覆奏，從之。</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 (乾隆) 41년) 10월 28 일(병인) 1번째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다례를 행하고 두 칙사와의 대화를 준례대로 행하다</p>	<p>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다례(茶禮)를 행하고 두 칙사(勅使)와 대화를 준례대로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양(瀋陽)에서 은(銀)을 잃어버린 것은 소방(小邦)의 봉사신(奉使臣)이 행리(行李)를 삼가지 않은 소치인데 사신들이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고 번거롭게 정문(呈文)하여 배상(賠償)해 주라는 황지(皇旨)의 명(命)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격외(格外)의 은혜와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인덕에 황송하고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물화(物貨)의 득실(得失)을 가지고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사심(私心)에 송구스러움 오래도록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신(使臣)과 통사(通事)는 즉시 파직시켰으며 바야흐로 다시 봉성(鳳成)으로 통</p>	<p>○丙寅/幸太平館，行茶禮，與兩勅酬酢如例。上曰：“瀋陽失銀，卽小邦奉使之臣，不謹行李之致，而使臣輩，不知自反，致煩呈文，有皇旨賠還之命云，格外之恩，柔遠之德，不勝惶感，而些少物貨之得失，煩聞天聽，私心悚慄，久而未已。使臣通事，卽爲革職，而方更馳通鳳城，轉報禮部，期於還納矣。”副勅曰：“失銀事，略已聞知。今茲國王之教，謹當歸奏皇上，而銀事</p>

	<p>사를 보내어 예부(禮部)에 전보(轉報)하게 하여 도로 바치기를 기필하고 있습니다.”</p> <p>하니, 부칙사(副勅使)가 말하기를,  “은(銀)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는 이미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왕(國王)께서 하신 하교는 삼가 돌아가서 황상(皇上)에게 아뢰도록 하겠습니다만 은에 대한 일은 고달(告達)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예(禮)를 끝내고 환궁(還宮)하였으며 의식(儀式)대로 교서를 반포하였다.</p> <p><b>【태백산사고본】</b></p>	<p>則不可告達矣。” 禮畢還宮， 頒教如儀。</p>
<p>정조 2권, 즉위년 (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12월 26일(계해) 2번째기사  충주의 가흥 등의 창고에 있는 쌀과 콩을 관동의 진구를 위해 획급하게 하다</p>	<p>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가흥(可興)·양진(楊津) 두 창고에 있는 쌀과 콩 각 1천 석(石)을 관동(關東)의 진구(賑救)를 위한 자곡(資穀)에 보태도록 획급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죄인을 체포할 때에 문서(文書)를 수색(搜索)하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전례이기는 합니지만, 근래 들건대 이 일을 빙자하여 곧바로 집안에 들어가 재산을 노략하여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혹 부녀자들을 욕보이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뒤로는 문서를 수색하는 이외에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次對。 左議政金尙喆啓請：“以忠州可興、楊津兩倉米豆各一千石，劃補關東賑資之資。” 從之。 又啓言：“罪人就捕時，搜索文書，雖是應行之例，而近聞憑藉此事，直入家內，不但掠取其財產，至或有侵辱婦女之舉云，事極驚駭。 此後文書搜探外，若有此等之弊，則請隨現重繩。” 從之。</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1월 2일(기사)</p>	<p>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농사를 권면하는 윤음(綸音)을 내리기를,</p>	<p>○己巳/下勸農綸音于八道兩都曰：“農</p>

1번째기사

팔도와 양도에 농사를 권면하는 윤음을 내리다

“농사(農事)는 천하의大本(大本)인 것으로, 백성들이 하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수(歲首)에 동칙(董飭)하는 것은 곧 우리 열성(列聖)들께서 대본을 힘쓰게 하는 성대한 뜻인 것이며 수령(守令)의 칠사(七事)601 가운데도 농사가 첫번째에 들어 있으니, 풍교(風教)를 받드는 감사(監司)·곤수(閫帥)와 고을을 다스리는 수재(守宰)들이 감히 만에 하나 소홀히 함이 없게 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문득 문구(文具)가 되어 하나도 실효가 없으니,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다. 더구나 금년의 세수(歲首)는 곧 내가 즉위한 원년(元年)이요 원조(元朝)이니, 무릇 백성을 구휼하는 정치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에 대해 의당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우리 열성조(列聖祖)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는 덕을 본받아야 한다. 백성의 산업(產業)에 있어 더없이 절실하고 방본(邦本)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오직 농사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아! 옛말에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열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온 몸이 땀에 젖고 밭에 진흙을 묻히면서 여름에 농사짓느라 극심하게 시달려도 가을에 마당에서 타작하여 수확하자마자 겨울 양식이 금방 떨어지게 되고 관조(官租)를 가까스로 바치고 나면 저축이 이미 고갈되어 버리니, 가난한 농가(農家)에서 곡식이 떨어져 울부짖는 정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것으로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결국 나라의 관부(官府)의 수요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날마다 한지(閑地)를 개간하고 해마다 황전(荒田)을 다시 경작하더라도 백성의 산업이 넉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엿친 데 덮치는 격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기르도록 경계하는 이가 있지 않으며, 말리(末利)만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놀고 먹기만 하는 폐단이 많이 있다. 때문에 불행히 흉년을 당하게 되면 떠돌아 사방으로 흩어져 구령을 메워 나뒹굴게 되는 것은 사세가 그러한 것이다.

者天下之大本，民之所以爲天者也。歲首董飭，卽我列聖務本之盛意，而守令七事，農又居首，則承流之臣，守土之官，罔敢或忽，事理則然，而逮至挽近，便作文具，無一實效，可勝歎哉！況今年歲首，卽予元年元朝，凡在恤民之政，安民之道，宜無所不用其極，以體我列祖子惠之德，而莫切於民產，最關於邦本者，惟農事是已。噫！古語有之，一夫耕之，十人食之。霑體塗足，夏畦爲甚，而秋場纔收，冬糧輒渴，官租僅免，餅罌已空，薳屋呼庚之狀，如在目中。是知終歲之勤勞，竟歸王國官府之需，則雖使日闕閑土，歲起荒田，民產之不敷，固無怪矣。重之以莅民者，未有佩犢之戒，超末者實多遊食之弊。不幸而間值饑饉，則流而之四，至於墳壑，勢之然也。《經》曰：‘三年耕，必有一年之食。’又曰：‘既富方穀。’既不得仰事俯育之樂，則又何責親君死長之義哉？分憂之臣，體宵旰之愍恤，念民生之疾苦，省耕課農，補其不足，堤堰灌溉，務興實惠。滿車盈箱，爲農夫之慶，遺秉滯穗，伊寡婦之利，使地無不關，民樂其業，庸副

	<p>《예경(禮經)》에 이르기를,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 먹을 곡식이 저축되어야 한다.’ 하였고,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부유하게 된 다음에야 바야흐로 착하게 된다.’ 했는데, 이미 우리러 어버이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먹여 살리는 즐거움이 없다면 또 어떻게 임금을 친애(親愛)하고 관장(官長)을 위하여 사력(死力)을 다하는 의리를 바랄 수 있겠는가?</p> <p>나의 걱정을 나누는 지방관들은 나의 밤낮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본받고 민생의 질고(疾苦)를 생각하여 경작하는 것을 살피고 농무(農務)를 권면함에 있어 부족한 것을 도와줄 것이며 제언(堤堰)을 만들어 물을 대는 데 지장이 없게 함으로써 실제의 혜택이 있게 할 것을 힘쓰라. 곡식이 수레에 가득하고 궤에 가득 차는 것이 농부들의 경사인 것이고 빠뜨린 곡식과 떨어진 이삭은 과부(寡婦)들의 이익인 것이니, 땅을 모두 개간하고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즐기게 하여 나의 은근한 하유(下諭)에 부응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愍恤之諭。”</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1월 6일(계유) 1번째기사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휘령전에 전배하고 연복전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휘령전(徽寧殿)에 전배(展拜)하고 연복전(延福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p>	<p>○癸酉/詣昌德宮， 展拜于璿源殿、徽寧殿， 行酌獻禮于延福殿。</p>
<p>정조 3권, 1년(1777)</p>		<p>○甲戌/行酌獻禮于景慕宮， 歷拜毓祥</p>

<p>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1월 7일(갑술) 1번째기사 경모궁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나서 육상궁·의열궁을 두루 배알하다</p>	<p>경모궁(景慕宮)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나서 육상궁(毓祥宮)·의열궁(義烈宮)을 두루 배알하였다. 하교하기를, “도로가 좁아서 반열(班列)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으니, 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을 아울러 추고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오른쪽 반열에서 지영(祗迎)하는 시신(侍臣)은 몸을 굽혀 부복하지 말도록 어제 이미 무장(武將)에게 신칙(申飭)했는데, 글을 읽었다는 학사(學士)가 또 이렇게 한단 말인가?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p>	<p>宮、義烈宮，教曰：“道路狹窄，班列不能成樣，致使觀瞻有駭，漢城府堂上竝推考。”又教曰：“右班祗迎侍臣，不鞠躬而俯伏，昨已申飭武將，而讀書學士又如是乎？竝推考。”</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2월 13일(기유) 1번째기사 홍릉에 작헌례를 행하고 명릉을 봉심하게 하다</p>	<p>홍릉에 작헌례를 행하고 나서 별운검(別雲劍) 김효대(金孝大)를 보내어 명릉(明陵)을 봉심(奉審)하게 하였다.</p>	<p>○己酉/行酌獻禮于弘陵，遣別雲劍金孝大，奉審明陵。</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2월 22일(무오) 1번째기사 24일에 연복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할 것을 예조에 알리다</p>	<p>하교하기를, “입묘(入廟)한 뒤 아직 친히 제향(祭享)을 올리지 못했는데, 탄일(誕日)의 다례(茶禮)는 부모(祔廟)하기 전에 전례에 의하여 행사(行事)하도록 일찍이 하교하였다. 24일에는 연복전(延福殿)에 나아가 마땅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이니, 의조(儀曹)653)에서는 알고 있으라.” 하였다.</p>	<p>○戊午/教曰：“入廟後尙未親享，而誕日茶禮，祔太廟前，依例行事，曾有受教，二十四日詣延福殿，當行酌獻禮，儀曹知悉。”</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3월 2일(무진) 2번째기사 혜청미와 호조미를 혜 청과 본조에 환속시키 게 하다</p>	<p>호조 판서 홍낙순(洪樂純)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각전(各殿)에는 으레 각기 속궁(屬宮)이 있는데 내가 책봉(冊封)되기 전에는 단지 호조에서 보역미(補役米)를 획송(劃送)했었고 책봉된 뒤에는 명례궁(明 禮宮)을 속궁으로 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보역미를 의당 혁파해야 하는데 그 대로 자궁(慈宮)에서 쓰고 있다. 그런데 자궁께서는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다 는 것으로 본조(本曹)로 환속(還俗)시키라는 하교가 있으셨다. 이것이 경비가 부족한 것을 진념(軫念)하신 자의(慈意)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나의 뜻은 우선 혁파하지 말고 자궁(慈宮)의 용도에 보태도록 하고 싶다.” 하니, 홍낙순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은 천하를 가지고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타고 난 효성을 지녔으니 어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미년(658) 이전에는 혜청미 (惠廳米) 1백 50석과 호조미(戶曹米) 50석을 용동궁(龍洞宮)으로 옮겨 획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체가 전과는 다르니 혜청(該廳)과 본조(本曹)에 환속(還屬)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召見戶曹判書洪樂純。 教曰：“各殿 例各有屬宮，而予之冊封前，只自戶曹 劃送補役米，冊封後劃明禮宮爲屬宮。 今則補役米自在當罷，而仍爲慈宮所 用。 慈宮以國家經費之不足，有還屬 本曹之教。 雖出於軫念經用之慈意， 而予意則姑欲勿罷， 仰補慈宮用度 矣。” 樂純曰：“古人曰：‘養以天下。’ 以殿下出天之孝，豈不思所以慰悅之道 乎？ 癸未以前惠廳米一百五十石，戶曹 米五十石，移劃龍洞宮。 今則事體與 前自別，請還屬該廳與本曹。” 從之。</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3월 8일(갑술) 1번째기사 태평관에 나아가 다례</p>	<p>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p>	<p>○甲戌/詣太平館，行茶禮。</p>

<p>를 행하다</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3월 8일(갑술) 4번째기사 영운곡을 실은 배가 침몰한 것에 대해 독운 도사 등의 관리들을 처벌하게 하다</p>	<p>강원도 관찰사 김이소(金履素)가 영운곡(嶺運穀)을 실은 배가 침몰된 것 때문에 아뢰니, 하교하기를, “남쪽의 곡식을 북쪽으로 운송한 것은 나의 북쪽 백성들을 살리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물에 빠져 죽은 인명(人命)이 수천 명에 이르고 침몰된 곡물(穀物)도 수천 포(包)가 넘는다. 근래에 이것 때문에 올리는 장보(狀報)가 잇따랐는데 이는 북쪽 백성을 구하려다 도리어 남쪽 백성을 해롭게 한 것이니, 내가 딱하고 마음이 아파 차라리 죽어 몰랐으면 싶다. 전후 패선(敗船)된 것이 모두 배가 완전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을 하니, 자신이 독운(督運)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잘 점검하여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없다. 독운 도사(督運都事) 김재인(金載人)은 일을 끝마친 뒤 나문(拿問)하여 엄히 조처하라. 경상 감사 이연상(李衍祥)과 강원 감사 김이소(金履素)는 모두 중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지방관은 함사 추고(緘辭推考)하라.” 하였다.</p>	<p>○江原道觀察使金履素，以嶺運穀臭載啓，教曰：“南穀之運北，出於活我北民之意，而人命之滄死，至於數千名，臭載之穀物，亦過累千包。比者以此狀報陸續，是欲救北民而反害南民，予庸惻傷，寧欲無訛。前後敗船，皆以船之不完爲說，則身爲督運之任，難免不善檢察之罪。督運都事金載人，竣事後拿問嚴處。慶尙監司李衍祥、江原監司金履素并從重推考，地方官緘辭推考。”</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3월 17일(계미) 4번째기사 세곡을 영운하는 차사원이 잘못하여 배가 침몰하게 되면 해당</p>	<p>하교하기를, “빈대(賓對)할 때 대신(大臣)이 이미 연석(筵席)에서 아뢰었는데, 더구나 선조(先朝)께서 이에 대해 자상한 칙교(飭教)가 있었던 것을 우리러 들은 적이 있는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대저 세곡(稅穀)은 군국(軍國)의 경비(經費)일 뿐만이 아니라 이는 곧 백성들의 고혈(膏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영운(領運)하는 차사원(差使員)을 두고 길을 인도하는 지방관을 둔 것인데 기</p>	<p>○教曰：“賓對大臣既有筵奏，況在先朝，諄諄飭教，曾所仰聆？大抵稅穀，不特軍國之經用，卽是生民之膏血。故領運有差使員，指路有地方官，而法紀解弛，每致臭載，殊極可駭。自備局嚴飭諸道，不候風勢促發，致敗者到處逗留，故爲臭載者，當該守令，依法</p>

<p>수령을 엄히 감죄하게 하다</p>	<p>강이 해이해져 매양 배가 침몰되고 있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비국에서 제도(諸道)에 엄히 신칙시켜 풍세(風勢)를 기다리지 않고 재촉하여 출발하게 함으로써 패몰시킨 경우와 도처에서 머뭇거리면서 고의로 패몰시킨 경우에는 해당 수령을 법전에 의하여 엄히 감죄(勘罪)하게 하라.” 하였다.</p>	<p>典嚴勘。”</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3월 20일(병술) 2번째기사 통영의 어전이 해민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p>	<p>조강(朝講)과 차대(次對)를 겸하여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들건대 통영(統營)의 어전(漁箭)이 해민(海民)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변통시킬 방법이 있는가?” 하니,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연전(年前)에 묘당(廟堂)에서 연품(筵稟)하여 해영(該營)의 절목(節目)을 변통시켜 거행하게 한 것은 이것이 잔폐된 통영을 소생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만, 만일 해민(海民)들이 이 때문에 폐단을 받는다면 균역청(均役廳)에서 법을 세운 의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가(朝家)에서 한번 상세히 살펴본 연후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균역청의 절목(節目)은 30년 동안이나 시행하여 오면서 감히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재작년 관서(關西)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영남(嶺南) 연해(沿海)의 어전(漁箭)을 도로 통영에 예속시켰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이 탄식하면서 생각하기를, ‘해민들이 놀라 소요가 일게 되면 뒤 폐단이 말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영남의 도신(道臣)이 비국에 논보(論報)한 것을 보니, 불행하게도 신이 예측했던 것과 합치되었습니다. 대저 통영의 수천 호(戶)가</p>	<p>○朝講兼行次對 上曰：“近聞統營漁箭，爲海民之痼弊，有變通之策乎？”左議政金尙喆曰：“年前廟堂之筵稟變通，該營之節目舉行，雖是爲統營蘇殘之地，若使海民因此受弊，則有非均廳立法之意。朝家不可不一番審察後處之也。”兵曹判書蔡濟恭曰：“均廳節目，行之三十年，無敢有撓改者。臣於再昨年，自關西歸，始聞嶺沿漁箭之還屬統營，私自憂歎。意謂：‘海民驚騷，後弊難言’。見嶺南道臣之論報備局，不幸與臣所料度者合矣。夫統營屢千戶之近來凋殘，職由於均役以後不得蒙利也。朝家如有別般顧恤，則容或可也，至於還給漁箭，係是撓毀，均役事目，設令無弊，決不可開路。況萬無無弊之理乎？堅守事目，與銷刻有異，臣意則雖命既日還罷，恐無不可</p>



근래 조잔(凋殘)된 것은 오로지 균역법(均役法)을 행한 이후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조가에서 별도로 돌보아 구휼하는 조처를 내리는 것은 혹 가하겠습니까만 어전(漁箭)을 환급(還給)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균역청의 사목(事目)을 허물어뜨리는 데에 관계되는 것이며, 설령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폐단이 없을 리가 만무한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사목을 굳게 지키는 것은 소각(銷刻)672) 과는 차이가 있으니 신의 의견은 즉시 도로 과하라고 명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행 사직(行司直) 정홍순(鄭弘淳)은 말하기를,  
 “균세(均稅)의 사목은 가장 엄중한 것이어서 금석(金石) 같은 법전일 뿐만이 아니며 30년 동안이나 행하여 왔어도 폐단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8, 9년 전에 어떤 통수(統帥)가 앞바다에 왕래하는 선척(船隻)을 관검(管檢)하는 일 때문에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가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국법을 경시(輕視)한 것이라고 하여 죄주었습니다. 진실로 한번 정해진 법제를 허물어뜨리면 뒤 폐단이 끝이 없게 될 것이니, 은미할 때 방지하는 도리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어찌 폐단을 고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국용(國用)에 저축이 있다면 1필(疋)씩 바치는 균역법을 아울러 폐기시켜 뒷사람의 것을 덜어내어 앞사람을 도와주는 방도를 삼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겠다. 생각건대 선대왕(先大王)의 성덕(聖德)이 어떠했었으며, 당시의 조정에 인재가 많았었으나 오히려 변통시키지 않았는데, 더구나 지금 과인(寡人)은 부덕한 몸이고 조정에 인재가 부족한 때인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한(漢)나라의 문제(文帝)·경제(景帝) 때에는 재화(財貨)가 축적되어 여유가 있

矣。” 行司直鄭弘淳曰：“均稅事目，最爲嚴重，不啻若金石之典，行之三十年，得以無弊。曾於八九年前，有一統帥，以前洋去來船隻管檢事爲請，朝家不但不許，以輕視國法罪之。誠以一撓定制，後弊無窮，防微之道，不得不如是矣。” 上曰：“苟利於民，豈不思革弊之道乎？大抵國用有儲蓄，則并罷一疋之役，以爲損上益下之道，未爲不可，而第念先大王聖德何如，伊時朝廷亦多人才，尙不能變通。況今寡人否德，朝端乏才之時乎？漢之文、景之時，財蓄有積，武帝用竭，而桑弘羊聚之，宋青苗之法，乍廢乍起，畢竟并以聚財一端，俱病國脈。但知惜財，不知愛民，其不病國者幾希矣。前戶判及兵判所陳皆好矣。謹守成憲，以爲勿失可也。至於漁箭，以罷爲主，思其節目間事可矣，而今若卒罷，則亦不無海民失利之嘆矣。” 均廳堂上洪國榮曰：“均廳事目不可闊狹，而統營事勢亦合軫念。漁場中民力不逮而廢棄，魚產之昔無今有，案付之可設簾箭處，使統制使查報廟堂，詳量決給，以爲軍民兩便之道爲便。” 諸臣議同，從之。

	<p>었는데 무제(武帝)가 이를 다 써 버리자 상홍양(桑弘羊)이 다시 모아들였으며 송(宋)나라 때에는 청묘법(靑苗法)을 잠시 폐기했다가 금방 다시 시행하였다가 마침내 아울러 재화를 모아들이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국맥(國脈)을 병들게 하고 말았다. 단지 재화를 아낄 줄만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면 나라를 병들게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전 호판(戶判)과 병판(兵判)이 진달한 내용이 모두 좋다. 삼가 성헌(成憲)을 지켜 어기지 않는 것이 옳다. 어전(漁箭)에 이르러서는 혁파하는 것을 주로 하되 절목(節目) 사이의 일은 생각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혁파한다면 또한 해민(海民)들이 이익을 잃는 데 대한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다.”</p> <p>하니, 균역청 당상(均役廳堂上) 홍국영(洪國榮)이 말하기를,  “균역청의 사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만 통영(統營)의 사세도 진념(軫念)하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어장(漁場) 가운데 백성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폐기된 것과 물고기나 해채(海菜)가 옛날에는 없다가 지금은 있는 것으로 안부(案付)되어 있어 염전(鹽箭)을 설치할 만한 곳은 통제사(統制使)로 하여금 조사하여 묘당(廟堂)에 보고하게 한 다음 상량(詳量)하여 결급(決給)함으로써 군·민(軍民) 양쪽에 모두 편리하게 하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의 의논도 같았으므로 그대로 따랐다.</p>	<p>【태백산사고본】</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4월 24일(기미) 3번째기사  가뭄이 드니 기우제의 설행, 술·담배 금지 등</p>	<p>가뭄이 들었다. 예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은데 단비가 내릴 조짐이 아득하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매우 초조하고 안타깝다. 효묘조(孝廟朝)로부터 선조(先朝) 원년(元年)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전례가 있으며 4월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것은 또한 숙묘(肅廟)</p>	<p>○旱。 召見禮曹判書洪樂性， 教曰：“旱氣如此， 甘露漠然， 言念民事， 殊甚焦悶。 自孝廟朝， 至于先朝元年， 皆有已例， 四月祈雨， 亦有肅廟元年之</p>

<p>에 대해서 신칙시키다</p>	<p>원년의 전례가 있었으니, 날짜를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고, 이어서 향관(享官)을 택차(擇差)하고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는 등의 절도를 잘 지키도록 신칙시켰다.</p>	<p>例，祈雨祭不卜日設行。”仍飭享官擇差，禁酒禁草等節。</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5월 3일(정묘) 2번째기사 가뭄이 계속되니 자신을 성찰하고 감선하는 내용의 윤음을 내리다</p>	<p>윤음(綸音)을 내리기를, “돌아보건대 과덕(寡德)한 내가 외람되이 큰 서업(緒業)을 이어 받았으므로 주야로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정치가 아직도 뜻대로 성취되지 않아 조정이 안정되지 않았고 은혜가 아래에 미치지 못하여 방본(邦本)이 공고하지 않은 실정이다. 매양 생각할 적마다 썩은 새끼줄로 육마(六馬)715) 를 어거하듯 두렵다는 것은 오히려 혈후(歇後)한 말이라고 여겨왔다. 작년에는 동북(東北)에 흉년이 들어 거의 굶주려 낭패될 뻔했는데 간신히 접제(接濟)하여 다행히 구렁에 나뉘는 참상은 없었다. 따라서 의뢰할 것이라 고는 금년에 처음에는 날씨가 농사에 알맞게 되어 농지의 수확이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어찌하여 봄과 여름이 교체되는 즈음에 한 달이 넘도록 가뭄이 든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도신(道臣)의 보장(報狀)은 팔도가 다 같은데 팔도 가운데 삼도(三道)가 더욱 극심하고 삼도 가운데 기내(畿內)가 더욱 극심하다. 보리는 이미 결단이 났고 수전(水田)도 또한 시기를 어기게 되어 하지(夏至)가 멀지 않았으니, 가을 수확을 가히 알 수 있다. 관원에게 명하여 경건히 기도한 것이 이미 3차에 이르렀는데 간혹 가랑비를 뿌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억수로 쏟아지지 않은 채 비가 내릴 듯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으니, 서교(西郊)에 구름이 일면 내가 수시로 우러러 바라보느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속담에 이르기를, ‘7년 대한(大旱)에 비 안 오는</p>	<p>○下綸音曰：“顧予寡昧，叨承丕基，夙夜寅畏，不遑寧謐。朝著未靖，而治未後志，邦本未固，而惠不下究。每一思惟，凜乎朽索之六馬，尙是歇後語也。昨年東北告歉，幾乎顛頡，辛勤接濟，幸無溝壑之慘，而所賴今年雨暘初適，田疇有望，夫何春夏之交，閱月曠乾，一至於此哉？道臣之報，八路同然，而八路之中，三道尤甚，三道之中，畿內尤甚。麥事已判，水田亦將愆期，夏至不遠，秋成可知。命官虔禱，已至三次，間或霏灑，尙靳沛然，欲雨不雨，雲自西郊，予時仰覩，心焉如焚。諺曰：‘七年大旱，無日不雨。’近者日候，無或大旱之兆歟？噫！災不虛生，必有所召。昨年之極備，今歲之極無，俱在臨御之初，皇天警告，何</p>

날이 없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기가 혹 크게 가물 조짐이 아니겠는가?  
 아! 재변(災變)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작년의 극비(極備)716) 와 금년의 극무(極無)717) 가 모두 임어(臨御)한 초원(初元)에 있었는데, 황천(皇天)의 경고(警告)가 어찌면 이렇게도 자상하고 정녕하여 어진 아버지가 얼굴을 마주하고 귀엣말로 우매(愚昧)한 아들에게 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한단 말인가? 아! 과인이 죄가 있으면 재앙은 과인의 몸에 있어야 하는데 저 어리석은 창생(蒼生)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성탕(成湯)은 성인(聖人)인데도 오히려 육사(六事)718) 로 자책하였지만 과인은 범주(凡主)이니 반성하는 방도에 있어 어찌 육사에 그칠 뿐이겠는가?  
 시험삼아 큰 것만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한 마음은 정치를 내는 근원인데 존양(存養)이 독실하지 못하여 근기(根基)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칠정(七情)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노여움인데 성찰(省察)이 지극하지 못하여 편급(偏急)만을 힘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세(主勢)가 더욱 외로워져 치양(稚陽)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국시(國是)가 안정되지 않아 군음(群陰)이 아직도 잠복되어 있으며, 언로(言路)가 막혀 함묵(含默)이 풍습을 이루었고, 경비(經費)가 부족하여 남은 저축이 없으며, 성례(誠禮)가 부족하여 산림(山林)의 어진 이들이 마음을 돌릴 기대가 없고, 사세상 부득이한 토목 공사이지만 이것이 흥작(興作)하는 혐의에 관계가 되며,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난한 집에서 굶주려 울부짖는데도 산업(產業)을 제정해 주는 정치가 있지 않았다. 이 몇 가지 일 가운데 진실로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재앙을 부르고 이변을 빚어낼 수 있으며 위로는 하늘의 화기(和氣)를 간범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이 몇 가지가 모두 있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 백관(百官)은 만민의 근본이 되고 조정은 백관의 근본이 되며 또 그 근본

若是諄復丁寧，無異耳提面命，而慈父之詔迷子耶？嗚呼！寡人有罪，災在寡躬，蠢彼蒼生，于何有辜？成湯聖人也，猶以六事自責，而寡人凡主也，其所反省之道，奚止於六？而試以大者言之，則一心爲出治之原，而存養未篤，根基不立，七情最難制者怒，而省察未至，偏急是務。主勢愈孤，而稚陽未長，國是靡定，而群陰尙伏，言路枳塞，而含默成習，需費匱乏，而蓄儲無餘，誠禮有欠，而山林無幡然之望，事勢不已，而土木涉興作之嫌，紀綱之漸解而人不知法，郤屋之呼庚而政未制產。凡此數者，苟有一焉，足可以召災而致異。上以干天和，下以拂民心，況有此數者乎？嗚呼！百官爲萬民之本，朝廷爲百官之本，又推其本，卽人主之一心是已。大抵天下萬事，有本不正而未治者，寡人未之聞也。倘欲探微而溯源，雖不外乎自省自察。思所以感回天心，轉災爲祥之道，而亦微我左右匡弼之言，其何能隨症投藥，隨事儆予哉？其令廚院自今日減膳三日。咨爾！三司之臣，勤攻予闕失，無或有隱。亦越諸道方伯列邑守宰，凡係下民之疾

	<p>을 미루어 나간다면 곧 임금의 한 마음이 그 근본인 것이다. 대저 천하 만사가 근본이 바르지 않은데 끝이 잘 다스려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과인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만일 은미한 기미를 탐구하여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성찰(省察)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고 재앙을 전환시켜 상서로 만드는 방도를 생각하여 보건대 또한 나의 좌우에서 바로잡아 돕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증세에 따라 약을 투여하고 일에 따라 나를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주원(廚院)719) 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減膳)하게 하라.</p> <p>아! 그대 삼사(三司)의 신하들은 나의 궤실(闕失)을 부지런히 공격(攻斥)하여 혹시라도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제도(諸道)의 방백(方伯)과 각 고을의 수재(守宰)들도 백성들의 질병(疾苦)과 서옥(庶獄)의 억울함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항식(恒式)에 구애없이 혹은 장계(狀啓)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소장(疏章)을 올리기도 하여 상세히 조목별로 진달함으로써 혹시라도 숨겨진 것이 없게 하라. 또 백집사(百執事)에게 자신의 직분에 따라 간(諫)하게 한 것은 옛날의 교훈(教訓)이 있으니, 각기 자기가 맡은 직장(職掌)에 따라 피폐된 것을 회복시키고 폐막(弊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의당 등문(登門)함으로써 과인이 주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 정원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敎書)를 초안하되 힘써 간측(懇惻)하게 하여 경외(京外)에 하유(下諭)하라.”</p> <p>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찬(代撰)하는 것은 걸치레가 되니 내리신 율음을 곧바로 선포(宣布)하소서.”</p> <p>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p>	<p>苦，庶獄之幽鬱，不拘恒式，或以狀啓，或以疏章，纖悉條陳，無或有蔽。又如百執事執藝而諫，古有其訓，各隨其所司之職掌，所以蘇弊而救瘼之方，其宜登聞，毋負寡人宵旰求助之意。政院代予草敎，務從懇惻，下諭京外。”</p> <p>政院啓言：“代撰文具也，請以所下綸音，直爲播告。”從之。</p>
정조 3권, 1년(1777)		○敎曰：“受誓戒文，雖有不飲酒不茹

<p>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5월 5일(기사) 5번째기사 기우제를 행할 때 술만을 금하고 담배는 허락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서계(誓戒)받는 글에 술을 마시지 말고 여훈(茹葷)722) 을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삼가는 것은 재계(齋戒)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재계한다는 말은 마음을 정제(整齊)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마음을 정제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고요한 것을 주로 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매양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마다 허다한 하속(下屬)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였으나 도리어 시끄러운 단서만 야기되었는데, 더구나 사람들이 각기 기호(嗜好)하는 것이 있어 매양 재계하는 날을 당하여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먼저 흉중에 있으니, 이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단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음을 정제하는 방도가 아니다. 이 뒤로는 단지 술만 금하게 하라.” 하였다.</p>	<p>葷之條，而未見不飲草之文。且所慎莫過於齋，齋之爲言齊也。故齊其不齊之心，固當主靜以致敬。而每於禱雨之時，輒以許多下屬之禁草，反致紛撓之端，況人各有所嗜，每當齋日，欲飲之心，先着胸中，不特役心之端，亦非心齋之道。此後只令禁酒。”</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5월 9일(계유) 2번째기사 비올 징조가 없으니 5일 동안 감선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돌아보건대 과매(寡昧)한 내가 어찌 하늘에 미더움을 얻어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는가마는 어제는 자못 비가 내릴 가망(可望)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막연하기만 하다. 따라서 마음 속에 계구(戒懼)가 엇갈리는 것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허물은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만백성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5일 동안 감선(減膳)하겠다.” 하였다.</p>	<p>○教曰：“顧予寡昧，豈望孚格，而昨日頗有望，今日則漠然。戒懼交中，曷可言喻？咎在一人，萬姓奚辜？減膳五日。”</p>
<p>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p>		<p>○癸巳/教曰：“今夏亢旱，可謂極無。此月將晦，霏意愈邈，民事其判。此</p>

<p>42년) 5월 29일(계사) 1번째기사 큰 비가 내리기 전에는 기우제를 정지하지 말 것과 10일 동안 감 선할 것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금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은 끝이 없다고 할 만하다. 이 달이 다 저물어가는 데도 비가 억수로 쏟아질 기미는 전혀 아득하기만 하니, 백성의 일은 이제 판 가름이 난 것이다. 이를 장차 어찌 한단 말인가? 거기다가 썩늘한 바람과 차 가운 안개가 아침에 끼고 저녁에 부니, 이것이 과인(寡人)의 허물에 연유된 것이다. 재차 기우제(祈雨祭)를 다시 설행(說行)하되, 큰 비가 억수로 내리기 전에는 해조(該曹)·해방(該房)에서 절대로 정지할 것을 번거롭게 품하지 말 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시경(詩經)》에도 이르지 않았던가? ‘신명(神明)이 이르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듯이 성의(誠意)가 신명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큰 비가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감선(減膳)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수성(修省)하는 가운데 으레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도 또다 시 꺾(闕)하였으니, 어찌 내가 게을러진 일단(一端)이 아니겠는가? 10일 동안 감선하라.” 하였다.</p>	<p>將奈何? 重以淒風冷霧, 朝聚夕起, 此蓋由於寡人之過。 再次祈雨祭, 更爲設行, 未得大霑之滂沱, 該曹該房, 切勿以停止煩稟。” 又教曰: “《詩》不云乎?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斲思.’ 誠意未格, 一霑尚靳, 至於減膳, 雖是修省中備例之事, 亦復闕然。 豈非予斲思之一端乎? 減膳十日。”</p>
<p>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9월 25일(정해) 2번째기사 예조에서 각 능·원·묘의 위토전 결수를 80 결로 정식화 하다</p>	<p>예조에서 각 능·원·묘(陵園墓)의 위토전(位土田)의 결수(結數)가 동일하지 않 은 곳을 들어, 건원릉(健元陵)의 예대로 80결을 정식(定式)으로 하고, 정식 이 외의 결수는 모두 도로 감해 줄 것을 아뢰니, 광릉(光陵)·명릉(明陵)은 감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감해야 할 결수가 그다지 현격하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p>	<p>○禮曹以各陵圖墓位田結數之不同處, 依健元陵例, 以八十結定式, 而式外結數, 并還減啓, 命光陵、明陵勿減。以當減之結, 不甚懸殊也。</p>

	<b>【태백산사고본】</b>	
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12월 15일(정미) 1번째기사 효명전에서 보름 제사를 거행하다	효명전(孝明殿)에서 보름 제사를 친히 거행하였다.	○丁未/親行望祭于孝明殿。
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12월 21일(계축) 4번째기사 대관이 의관과 부동한 의녀의 인삼 약제 도둑질을 논계하나 정지시키다	지평 송진(宋銓)이 아뢰기를, “방태여(方泰輿)가 인삼(人蔘) 약재를 도둑질하여 감춘 죄는 본래부터 본율(本律)이 있는 것이고, 부동(符同)한 문녀(文女)가 표지(標紙)를 많이 도둑질한 일은 더욱 천만 번 흉악하고 간사한 것이어서 다만 범장(犯贓)만으로 논죄(論罪)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전석(全釋)하도록 명하시어 너무도 너그럽게 실형(失刑)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자복을 받아서 당률(當律)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하찮은 의관(醫官)을 무엇하러 발계(發啓)할 것 있겠는가? 시급히 정지하라.” 하였다. 방태여는 수의(首醫)로서 의녀(醫女)와 부동(符同)하고 문녀와 결탁하여 내입(內入)을 핑계하고서 약원(藥院)의 인삼 약재를 도둑질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이미 자복을 받았으나 나이가 늙었다는 것으로 특별히 놓아주었기 때문에 대관(臺官)의 논계(論啓)가 있었던 것이다.	○持平宋銓啓言：“方泰輿盜隱蔘材之罪，自有本律，而符同文女多竊標紙之狀，尤萬萬凶猾，不可但以贓犯論，遽命全釋，失之太寬。請窮覈取服，施以當律。”批曰：“么鷹醫官，何足發啓？亟停。”泰輿以首醫，符同醫女，交結文女，假稱內入，盜竊藥院蔘料，事發拿問既取服，以年老特放，故有臺啓也。
정조 5권, 2년(1778)		○下綸音于八道、兩都曰：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1월 1일(임술)  
2번째기사  
팔도와 양도에 윤음을  
내리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과인(寡人)이 간난(艱難)하고도 거대(巨大)한 왕업(王業)을 이어받았기에 낮  
이나 밤이나 조심하고 두려워하느라 편안하게 있을 틈이 없으며 종사(宗社)에  
대한 부탁을 저버리게 될까 염려해 왔다. 임어(臨御)한 이래로 비록 1, 2차례  
사륜(絲綸)을 내리어 조정에 선시(宣示)하고 국중(國中)에 반유(頒諭)한 것이  
있었지만, 보는 사람도 심상하게 여겨버리고 듣는 사람도 응당 있는 문식  
(文飾)으로 돌려버리어 더욱 근간(慙懇)하게 말을 했었으나 효과는 더욱 멀어  
지기만 했기에, 한 돌이 되는 달에 교화(教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5년쯤이나 7년쯤이면 다스려지는 것도 오히려 기필할 수가 없게 되었  
다. 그러저럭 하는 동안에 이미 세 차례나 한서(寒暑)가 바뀌어졌는데, 자신  
을 반성해 보건대, 성찰(省察)과 검속(檢束)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었음을 느끼  
게 되었으니, 사방의 신민(臣民)들이 머리를 들고 목을 빼어 바라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이는 대개 과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세속(世俗)을 선도(善導)해  
가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스릴 길을 찾지 못해서이니, 오히려 누구를  
원망할 일이겠느냐? 아! 내가 오직 처음부터 피하여 책임을 다하려 기약하였  
으나, 지덕(知德)을 닦아 크게 성취하는 공부가 독실하지 못하고 성행(性行)이  
일신되어 현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며, 풍속이 어그러져서 인재(人才)가  
발흥(勃興)하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무너져 재용(財用)이 고갈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역하는 요열(妖孽)들이 겹겹으로 생겨나 국가의 정세가 안정되지 못  
하였으니, 오늘날의 시상(時象)을 옛적의 것에 비한다면 어떠했던 시절에 해  
당되겠느냐? 과인은 불곡(不穀)하여 비록 큰 일을 해낼 능력이 있지 못하더라  
도 여러 직위(職位)에 있는 백관(百官)들은 어찌 감히 각기 그 직위를 공경하  
여 지키고 그 직책을 다하려고 주력하여, 나 한 사람을 받들어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지금 한 해가 넘어가고 새봄이 시작되어 만물이 모두 소생

寡人承艱大之業，夙夜祇懼，不遑寧處，恐負宗社之托。臨御以來，雖有一二絲綸之宣示朝著，頒諭國中者，而見者視之以循常，聽者歸之於應文，言愈勤而效愈邇，朞月之化尙矣，五年七年之治，猶未可必，荏苒之頃，已三易寒暑矣。反諸身省檢，尙覺欲然，奈四方翹首延頸之情，何哉？茲蓋寡人不能以至誠導俗、實心求治也，尙誰之咎？嗚呼！予惟訪落，期在仔肩，而蛾述之工未篤，豹變之美莫見。風俗之乖而人才不興；紀綱之隳而財用告乏。從以逆孽層生，國勢未定，以今日之時象，方之於古，當若何等時也？寡人不穀，雖不足有爲，凡百有位，曷敢不各敬爾位，職思其居，以承予一人，況今獻歲發春，庶品咸蘇。天道屆發育之節，王政屬維新之會。對時育物，此其時也。天以陽和，煦噓萬物，王者亦以仁恩惠澤，懷保小民。《書》曰：“視民如傷。”又曰：“如保赤子。”曰如傷、曰如保，夫豈徒爾？如傷則必思所以安之之道；如保則又思所以養之道，安與養也有道。《孟子》曰：“有恒產，則有恒心。”夫富其業而裕其

(蘇生)하는 때인지라, 천도(天道)가 발육(發育)하는 계절에 이르렀고 왕정(王政)은 유신(維新)해야 할 기회에 당했으니, 시기에 대응(對應)하여 만물을 발육되게 해야 할 참이 바로 이때이다.

하늘은 온화한 양기(陽氣)로 만물을 따뜻하게 불어 주고 왕자(王者)는 또한 인자한 은덕과 혜택으로 소민(小民)들을 감싸 보호해 주어야 하는 법이니,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을 상해 입은 사람 대하는 것처럼 본다.’고 했고, 또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고 했다. ‘상해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고, ‘보호하듯이 한다.’고 한 것이 무릇 어찌 그저 하게 되는 것이겠느냐? 상해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려면 반드시 안정되게 할 바의 방도를 생각해야 하고, 보호하듯이 하려면 또한 부양(扶養)해 갈 바의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안정되게 하거나 양육해 가기에 방도가 있는 것이니,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항산(恒産)이 있으면 항심(恒心)이 있게 되는 법이다.’라고 했다. 대저 생업(生業)이 부요(富饒)해지게 하고 재물이 유족해지게 하기란 무엇을 줌으로써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강역(疆域)의 우리 민생들에게 농상(農桑)을 부지런히 하고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가볍게 해주어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妻子)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채찍질하여 받아내는 고통이 없게 하고 안도(安堵)하여 편안해지는 낙(樂)이 있게 하면, 민산(民産)이 족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유족해지고, 민심(民心)이 안정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안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기에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인 것이니, 근본이 튼튼해져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이다.’라고 하게 된 것인데, 이를 일러 한 말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오직 그 생업(生業)이 부요해지게 하고 재물이 유족해지게 하는 방도는 내가 위에서 단독으로 운영(運營)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근심을 분담(分擔)한 신하들이 나의 지극한 심정을 깊이 유념하면서 흘러나오는 뜻을 이어받아 교화(教化)를 선양(宣揚)하여 임금의 혜택이 아래로 미치게 하기에 달

財，匪可以錫賚爲也。使我匡域黔黎，勤其農桑，輕其徭賦，仰事俯育，無椎剝之苦，有奠安之樂，則民産不期足而自足，民心不期定而自定。故曰：“民維邦本，本固邦寧。”此之謂也。雖然，惟其富業裕財之道，予不可以獨運於上，亶係分憂之臣，念予至意，承流宣化，使惠澤下究也。方當東作不遠，耕犁伊始。勸課之政、濟恤之道，宜其實心講究，以求實效。至若畿、湖、關、嶺之民，既有水旱之災，重以盜賊之憂，飢饉顛連之狀，如在目中。言念民生，恫若在己。咨！爾分憂之臣，欽哉欽哉！毋負宵旰之憂也。嗚呼！苟使民生，既安之、又養之，則可以足衣食，而知禮節矣。夫如是，則本維固而邦維寧矣，何憂乎風俗乖，而人才之不興乎？何患乎紀綱隳，而財用之告乏乎？又何有乎逆孽層生、國勢未定乎？嗚呼！寡人不穀，政不足以覆育民生，言不足以感動臣隣。惟此十行諄複，實由心腹。內而三事、百僚，外而方伯、守令，明聽予誥，實體予心，俾我一國臣庶，共沐陽春之澤，無有不獲之歎，則非獨寡人之幸也，實宗

린 것이다. 바야흐로 동작(東作)1018) 이 멀지 아니하여 밭갈이를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권과(勸課)하는 행정과 구휼(救恤)해 갈 방도를 마땅히 착실한 마음으로 강구(講究)하여 실속이 있는 효과를 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기호(畿湖)와 북관(北關)·영남(嶺南)의 백성들에 이르러서는 이미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었는데다가 도적(盜賊)의 우환이 겹치게 되었기에, 굶주리며 의지할 데가 없을 상황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하여, 민생들을 생각하노라면 내 몸에 아픈 데가 있는 것같이 된다. 아! 너희 근심을 분담한 신하들은 조심하고 조심하여 내가 낮이나 밤이나 근심하고 있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 진실로 민생들이 이미 안정되었고 또 부양되었다면 의식(衣食)이 족하게 되어 예절(禮節)을 알게 될 것이다. 대저 이렇게 되면 오직 근본이 튼튼해져 나라가 편안해지게 될 것인데, 무엇하러 풍속이 어그러지고 인재가 발흥하지 않음을 우려하며, 무엇하러 기강이 무너지고 채용이 고갈되는 것을 근

심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어찌 역적과 요열들이 겹겹으로 생겨나 국가의 정세가 안정되지 못함이 있겠느냐? 아! 과인이 불곡하여 국정(國政)이 민생들을 부육(覆育)해 가지 못하고 하는 말이 신린(臣隣)들을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오직 이 순순(醇醇)하게 되풀이한 십행(十行)1019)의 글은 진실로 심복(心腹)에서 나온 것이니, 안으로 삼사(三事)1020)·백관(百官)과 밖으로 방백(方伯)·수령(守令)들은 분명하게 나의 고계(誥誡)를 듣고서 착실하게 나의 마음을 깊이 유념하라. 우리 온 나라의 신서(臣庶)들이 함께 따뜻한 봄 기운과 같은 혜택을 입어 부득(不得其所)한 한탄이 없게 한다면, 단지 과인(寡人)만의 행복이 아니라 진실로 종사(宗社)와 만백성의 행복이 될 것이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하였다.

社生靈之幸也。 勉之勉之。

<p>정조 5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5월 4일(계해) 2번째기사 팔도에 이전의 적곡 10만 석을 감해 주게 하다</p>	<p>팔도(八道)의 그전 적곡(糶穀) 10만 석을 감해 주었다. 하교하기를, “아! 부묘(祔廟)하는 예식(禮式)이 순성(順成)되고 진하(進賀)하는 의식(儀式) 이 이미 거행되었는데, 자리에 나아가 행례(行禮)하노라니 경구(警懼)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었다. 선대왕(先大王)께서 50년 동안의 고심(苦心)이 진 실로 민생들을 자식처럼 애호(愛護)하는 데에 있었거니와, 오늘날에 계지 술 사(繼志述事)하는 도리도 이에 벗어날 수 없으니, 어찌 민생들에게 혜택을 배 풀어 우리 선왕(先王)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시던 성의(聖意)를 뒤쫓 아 따르는 일이 없겠느냐? 팔도의 그전 환곡(還穀) 중에 가장 오래 된 조목 10만 석을 특별히 탕감(蕩減)해 주고, 공인(貢人)들의 그전부터 남아 있는 가 장 오래 된 한 해의 조목도 또한 탕감해 주며, 시민(市民)의 요역(徭役)도 2 삭(朔)을 한도로 면제해 주고, 현방축(懸房贖)1294) 도 10일 한도로 감해 주 도록 하라. 그전의 환곡에 있어서는 명색이 10만 석이나 되니 많지 않은 것 이 아니다. 실지의 혜택이 아래에 닿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 1되[升], 1홉[合] 이라도 미처 가게 되어야 할 것이다마는, 요사이에는 허(虛)와 실(實)이 서로 혼동되어 매양 고르게 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니, 따로 제도(諸道)에 신칙하 여 그전처럼 소루(疎漏)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減八道舊糶十萬石。 教曰：“嗚呼！ 祔禮順成，賀儀已舉。 踐位行禮，采 切警懼。 先大王五十年苦心，亶在於 愛民如子。 今日繼述之道，無外乎 此。 豈無施惠於民，以追我先王若保 之聖意乎？ 八道舊還中，最久條十萬 石，特爲蕩減。 貢人舊遺，在最久一 年條，亦爲蕩減。 市民徭役，限二朔 除役。 懸房贖，限十日除減，至於舊 還。 名曰十萬，不爲不多。 實惠下究 之道，爲升合之及。 而近來虛實相蒙， 每有不均之弊。 叨飭諸道，俾無如前 疎漏。</p>
<p>정조 5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6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초간택을 거행하고 가 례 때 낭비하지 않도록</p>	<p>초간택(初揀擇)을 거행하였는데, 가례(嘉禮) 때에 낭비(濫費)하는 폐단을 신칙 (申飭)하였다.</p>	<p>○辛丑/行初揀擇， 申飭嘉禮糜費之 弊。</p>

<p>록 신칙하다</p>	<p>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 정홍순(鄭弘淳)이 아뢰기를,  “포항창(浦項倉)은 본래 북로(北路)로 전수(轉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데, 해가 오래되자 폐단이 생기어 별장(別將)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적(糶糶)을 나누어 준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그 출납(出納)을 점검(照檢)하도록 하자 따라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먼 지경의 민생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창고 터가 바다가의 탄탄한 자리에 있는데 해마다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한결같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반드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편의(便宜)한 계책을 요량해 보아 계문(啓聞)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홍순이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도(道) 위쪽 수십 고을의 민생들은 오로지 낙동강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한 번 산산창(蒜山倉)을 감영(監營)에서 관장(管掌)하게 되면서 부터는 일을 맡은 무리들이 이익을 독점하기를 일삼아서 관염(官鹽)을 방매(放賣)하기 전에는 사상(私商)을 일체 금단하여 염가(鹽價)가 고등(高騰)하게 되어버리므로 민생들의 병폐가 많아지게 되었으니, 이 뒤로는 사상을 금단하고 염가를 조절(操切)하는 폐해를 따로 더 통렬(痛烈)하게 금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이르기를,  “저치미(儲置米)는 무엇을 위하여 두게 된 것인가? 대동미(大同米) 이전에도 있었던가?  하매, 정 홍순이 주대(奏對)하기를,  “저치미는 중간에 두게 된 명색(名色)인데, 대동미(大同米) 속에서 회감(會減)</p>	<p>○甲子/次對。 右議政鄭弘淳啓言：  “浦項倉，本爲北路轉輸而設，年久弊生，別將不能勝任，使糶糶分授之各邑守令，照檢其出納，吏緣作奸，遠民受病。況其倉基在海上平衍之地，年年浸囓，一任拋置，必致莫可收拾。令道臣，商量便宜之策，以聞爲宜。”從之。弘淳又啓言：“嶺南上道數十邑生民，專以洛東販鹽，爲仰哺，一自蒜山倉爲監營句管，任事之徒，權利爲事，官鹽未賣之前，切禁私商，以致鹽價高騰，民多爲病。此後禁斷私商，操切鹽價之弊，另加痛禁爲宜。”從之。上曰：“儲置米何爲而設也？大同之前有之乎？”弘淳對曰：“儲置，中間所設名色，而大同中會減五分之一，置於列邑，以備不虞，四分置之京倉，以補經用。蓋出於儲十年之穀，資一日之用之意，而近來巧作名色，攢那幻弄之弊，不可勝言矣。”上曰：“孝廟朝歲入九萬石，而經用優足，目今歲入，比之其時，不啻較多，而一年之蓄，不能當一年之用，豈不哀痛乎？革弊之道，只當徐徐節省，漸次無跡而除之矣。”</p>
---------------	---	--

	<p>한 5분의 1을 열읍(列邑)에다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한 것이고, 4분은 경창(京倉)에다 두어 경상(經常)적으로 쓰는 비용에 보충하게 한 것입니다. 대개 10년을 저축한 곡식으로 하루에 쓸 비용의 밀천이 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근래에는 교묘하게 명색(名色)을 만들어 내니 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모은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효종조(孝宗朝)에는 세입(歲入)이 9만 석(石)으로 정상적으로 쓰는 비용이 넉넉했었는데, 바야흐로 지금은 세입이 그 때에 비하여 많을 뿐만이 아닌데도, 일년의 저축으로 1년에 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폐단을 개혁하는 도리는 다만 마땅히 서서히 절생(節省)해 가면, 점차로 자취가 나지 않게 제감해 갈 것이다.”</p> <p>하였다.</p>	
<p>정조 5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윤6월 7일(을축) 1번째기사</p> <p>오랜 비로 곡식이 상하게 되어 영제를 거행하게 하다</p>	<p>이때에 오랜 비로 곡식이 상하게 되어 장차 영제(禳祭)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하교하기를,</p> <p>“제관(祭官) 한 사람이 3차의 제향을 거행하게 되면 재계(齋戒)와 성경(誠敬)의 마음이 깨어러지고 소홀해지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 이미 멈추었던 음우(陰雨)가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 더욱 마땅히 십분(十分) 경건(敬虔)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사대문(四大門)의 헌관(獻官)에게 따로따로 신칙(申飭)해야 한다.”</p> <p>하였다.</p>	<p>○乙丑/時, 久雨傷農, 將行禳祭。 教曰: “以一祭官, 行三次祭享, 齋敬之心, 易生怠忽。 況今陰雨既息復作, 尤宜十分虔誠, 分飭四門獻官。</p>

<p>정조 6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8월 5일(임술) 1번째기사 예조에서 제주목이 바 친 청골이 썩어 진상 하지 않도록 명할 것 을 건의</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종묘에 천신(薦新)할 청골(靑橘)은 곧 3월에 해야 하는 데, 이를 영술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표류되어 소주(蘇州)에 이르렀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썩고 마르고 하여 천진(薦進)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천진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였다.</p>	<p>○壬戌/禮曹啓言: “濟州牧封進宗廟薦新靑橘, 卽三月令。 而領來校吏, 漂至蘇州, 今始來納。 已盡腐枯, 不合於薦進。 命勿薦進。”</p>
<p>정조 6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10월 1일(정사) 1번째기사 서계에 제향에 앞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다</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는 예(禮)에 있는 것으로 무릇 종묘와 사직에 제향할 때에 기일에 앞서 재계(齊戒)하고 서약(誓約)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잘 행하겠다는 도리를 보이는 것이니, 대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법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 제목이 모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不飲酒]’고 한 한 조항은 지난 사서(史書)를 조사해 보고 국조(國朝)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모두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不縱酒]’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보다 앞서 몸소 제향할 때에는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린(臣隣)들에게 계고(誡誥)했던 것인데, 이제 서위(誓位)에 임하여 비로소 서문(誓文)의 내용을 들어 보니 내가 하교한 것과 같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래도 스스로 믿지 못하여 예문(禮文)을 가져다 고증해 보았더니 과연 내가 알았던 것과 같았다. 중간에 잘못된 것을 따라 그릇되게 전해진 것이 있어서 잘못 쓴 것인가? 정원에서는 서령문(誓令文)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不飲酒]’는 문구를 예문에</p>	<p>○丁巳朔/御仁政殿, 行太廟冬享誓戒。 教曰: “禮有之。 凡享于廟、祭于社稷, 先期戒且誓之, 示衆以易行之道。 蓋不如是, 反致違令也。 目凡有七, 不飲酒一條, 考之往史, 稽諸國朝典禮, 皆以不縱酒載焉。 故前此躬享之時, 以不縱酒, 誠誥臣隣。 今莅誓位, 始聽誓文, 與予所教, 有不同者。 猶未自信, 取考禮文, 果若予曾所知之者。 中間循訛, 有此誤傳, 而錯書歟? 自政院就誓令文中, 不飲酒句, 從禮文釐正, 仍令頒示諸司。”</p>

	따라 이정(釐正)하고, 이어 제사(諸司)에 반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7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2월 15일(경오) 1번째기사 경기 유생 안발이 기 자묘 제사를 요청하였 으나 불허하다	경기 유생(京畿儒生) 안발(安撥)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문묘(文廟) 옆에다 기자묘(箕子廟)를 따로 세우고 부자(夫子) 1589) 와 함께 똑같이 높여 제사지내게 한 다음 승인전(崇仁殿)에 봉안(奉安)되어 있는 진상 (眞像) 1본(本)을 이봉(移奉)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庚午/京畿儒生安撥等， 上疏請別立 箕子廟於文廟之傍， 與夫子一體尊祀， 移奉崇仁殿所奉眞像一本。 不許。
정조 7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4월 7일(신유) 1번째기사 종묘에 나가 책보를 봉심하고 희생과 제기 를 살피다	임금이 종묘(宗廟)에 나아가 직접 하향(夏享)을 거행하기 위해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다.	○辛酉/上詣宗廟， 將親行夏享也。 奉 審冊寶， 省牲器。
정조 8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9월 28일(기유) 7번째기사 봉조하 집에 달마다 쌀과 고기 등을 보내	호조(戶曹)에서 봉조하(奉朝賀) 집에 달마다 보내는 쌀과 고기를 아뢰니, 하고 하기를, “봉조하에게 달마다 보내는 것을 어찌 상례(常例)를 따르겠는가? 달마다 쌀 2석(石), 황두(黃豆) 2석, 저육(豬肉) 6근(斤), 산 닭 4수(首)로 참작하여 정식 (定式)하되 이에 따라 실어 보내고, 봄·가을과 세시(歲時)에 상례로 보내는 것	○戶曹， 以奉朝賀家月致米肉啓。 教 曰：“月致於此奉朝賀者， 豈循常例? 每朔米二石、黃豆二石、豬肉六斤、 活鷄四首， 參酌定式， 依此輸送。 春 秋及歲時例致， 則米十石、黃豆二石、 民魚十尾、石首魚十束、鹽六石輸



<p>도록 하다</p>	<p>은 쌀 10석, 황두 2석, 민어 10미(尾), 조기 10속(束), 소금 6석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p>	<p>送。”</p>
<p>정조 8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11월 5일(을유) 5번째기사 무술년의 목은 환곡을 줄여서 받고 기한을 물려서 폐단을 늦추라고 명하다</p>	<p>차대(次對)하였다. 무술년(1779)의 각도의 목은 환곡(還穀)은 갑오년(1774)의 목은 환곡을 분표(分俵)한 수량대로 줄여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기한을 물려서 백성에게 한꺼번에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폐단을 늦추라고 명하였다.</p>	<p>○次對。 命戊戌諸道舊還，依甲午舊還分俵數減捧。 其餘停退，以紓小民一時督捧之弊。</p>
<p>정조 8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12월 3일(계축) 2번째기사 내의원에서 우황을 별무하는 일을 아뢰자 죄를 논하여 어약을 중히 여기도록 하다</p>	<p>내의원(內醫院)에서 우황(牛黃)을 별무(別貿)하는 일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어약(御藥)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대한가? 납제(臘劑)로 말하더라도 어약하기 때문에 해마다 별단(別單)에 죽 벌여 써서 시기에 앞서 품정(稟定)한 뒤에 계하(啓下)를 기다려서 거행하는 것이 탕제(湯劑)를 지어 들이는 규례와 마찬가지로인데, 이번에는 당초에 연품(筵稟)이 없고 또 미품(微稟)이 없었는데 아래에서 임의로 절충하여 정식(定式)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는 하나 명색이 어약이라면 이처럼 방자한 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엄하게 감죄(勘罪)하지 않으면 어약을 중히 여기는 뜻이 땅을 쓴 듯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이어서 당해 의관(醫官) 김광국(金光國)을 의적(醫籍)에서 제명하고 해</p>	<p>○內醫院以別貿牛黃事啓。 敎曰：“御藥事體 何等重大? 而至於臘劑，亦是御藥之故， 每年列書別單， 先期稟定， 然後待啓下舉行， 一如湯劑製入之例。 則今番初無筵稟， 又無微稟， 而自下任意折衷定式， 萬萬無嚴。 此雖小事， 名以御藥， 則如是擅恣者， 誠有不可勝言之弊。 此不嚴勘， 重御藥之意， 將掃地矣。” 仍命該醫官金光國， 刊名醫籍， 下該府照律重繩。 都提調洪樂純胥命金吾， 命勿待命。</p>

	<p>부(該府)에 내려 조율(照律)하여 엄중히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홍낙순(洪樂純)이 금오(金吾)에서 서명(胥命)하니,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정조 8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12월 8일(무오) 1번째기사      납향이 다가오자 종묘와 경모궁에 전배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다. 납향(臘享)이 이튿날에 있기 때문이었다.</p>	<p>○戊午/展拜于宗廟景慕宮， 省牲器。臘享在翌日也。</p>
<p>정조 8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12월 28일(무인) 5번째기사      궁방에 바칠 세곡의 배가 파선되었는데 오히려 독촉하여 침징한 당해 궁임을 징계하다</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하동(河東)의 뱃사람 장맹용(張孟用)이 의열궁(義烈宮)의 여러 궁방(宮房)에 바칠 세곡(稅穀)을 나르다가 파선(破船)된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호소하였 습니다. 무릇 큰 바다에서 파선되어 사람이 빠져 죽었으면 침징(侵徵)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법전에 실려 있으므로 해궁(該宮)에서 독촉하여 거두어 들 이게 한 것이 이미 법을 벗어난 것인데, 도리어 장맹용이 호소하였다 하여 곧 바로 조율(照律)하기를 청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당해 궁임(宮任)을 조율 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대저 궁방의 수본(手本)을 엄히 방지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일로 말하면 이미 첨가하여 실는 데에 관한 사목(事目)을 어겼고 또 명목을 농간한 의심스러운 꼬투리가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계하(啓下)하였는데, 경부(卿府)에서 이처럼 아뢰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청한 대로 시행하여 뒷날 다</p>	<p>○漢城府啓言：“河東船人張孟用， 以義烈宮諸宮房所納稅穀敗船事， 上京呼籲。 凡大洋致敗， 人物滄死， 則勿爲侵徵， 昭載法典， 該官督令徵捧， 已是法外。 反以孟用呼籲， 直請照律， 殊極駭然。 該宮任請照律科治。” 教曰：“大抵宮房手本， 非不欲嚴防， 而至於茲事， 既違添載之事目， 又有幼名之疑端， 故循例啓下矣。 卿府如是執奏， 殊可尙也。 所請依施， 以爲後日他宮房懲戡之道。”</p>

	른 궁방에서 징계되어 삼가게 하는 방도로 삼으라.” 하였다.	
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2월 5일(갑인) 3번째기사 화재를 당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고 미납을 탕감하다	하교하기를, “아침 빈대(賓對) 때에 대략 제급(題給)한 것이 있으나, 이것이 어찌 화재를 당한 백성을 구제하는 한 가지가 될 만하겠는가? 곡물을 잡곡으로 하지 않고 절미(折米)로 제급한 것은 실효(實效)가 있기를 바란 것이니, 반드시 곡수(斛 數)를 채운 포(包)와 정실(精實)한 쌀을 재해를 입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신구(新舊)의 미납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연기하고 묵은 미납 가운데 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특별히 탕감하여 혜택을 고루 미치게 하라.” 하였다.	○教曰：“朝者賓對，略有題給，而此 何足爲救焚之一端？穀物之不以雜穀， 而以折米題給者，欲其有實效也。必 令準斛之包、精實之米，分給被災民人 所負新舊逋，一竝停退，舊逋中最久 者，特爲蕩滅，以爲均惠之地。”
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2월 10일(기미) 1번째기사 경모궁에서 희생과 제 기를 살피다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춘향(春享)에 쓸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다.	○己未/詣景慕宮，省春享牲器。
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2월 25일(갑술) 1번째기사 영의정 김상철이 삼의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전 평안도 관찰사 이휘지(李徽之)의 장계(狀啓)에 강계 부사(江界府使) 유당 (柳憇)의 첩정(牒呈)을 날낱이 들어서 삼폐(蔘幣)가 매우 심하여 강계 백성이	○甲戌/次對。 領議政金尙喆啓言： “平安道前觀察使李徽之狀啓，枚舉江 界府使柳憇牒呈，備陳蔘弊孔劇，江民 難支之狀，仍以爲稅蔘二十一斤零內， 內局五斤外，十六斤，皆是京上司、監

폐단을 지적하고 민정을 살필 것을 아뢰다

지탱하기 어려운 정상을 상세히 아뢰고, 이어서 말하기를, ‘세삼(稅蔘) 21근(斤)안에서 내국(內局)2100) 의 5근 이외의 16근은 다 경상사(京上司)와 감영·병영에 바치는 것이니, 절반만을 5년 동안 권감(權減)하고 호조에 바치는 6근도 경상사의 예(例)에 따라 받을 권감하며, 본부(本府)에서 받아들이는 약삼(藥蔘) 4근도 줄여서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삼을 바치는 원호(元戶) 7천 6백여 호(戶) 안에는 허호(虛戶)와 거듭 적힌 것이 1천의 수(數)일 뿐만 아니라, 모두 실호(實戶)에 따라서 적안(籍案)을 바로잡아 신역(身役)을 지게 하고, 내시 노비(內寺奴婢)의 신공(身貢)은 은(銀)으로 상납하므로 2냥(兩)을 거두어야 할 자에게는 3냥을 거두는데 도내의 각 고을의 예에 따라 돈으로 대봉(代捧)하고, 삼을 받아들일 때에 관가에서 잉삼(剩蔘)2101) 이라 칭하는 것이 22근인데, 그 가운데에서 7근 12냥은 본관 자비(本官自備)라 하고 그 나머지 14근을 다 관부(官府)에서 사용(私用)하는 것이었으나, 정칭(正稱)을 10근을 기준으로 개칭(改稱)한 도칭(都稱)을 정식(定式)하여 시행하였는데, 도칭으로 개칭한 뒤에는 이른바 잉삼이라는 것은 절로 폐지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비(自備) 7근 12냥은 마찬가지로 호조에 바치는 예무(例貢)2102) 가운데의 일에서는 권감시켜 줄 것을 아울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세삼으로 상납하는 것 가운데에서 경상사와 감영·병영에 바치는 10여 근을 합쳐 계산하여도 수가 이미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절반을 권감하여 강계의 백성이 힘입어 소생하여 보전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어찌 족히 교계(較計)할 일이겠습니까마는, 차왜(差倭)에게 주는 예단(禮單)에 한 해 동안 쓰이는 것으로 말하면 별무(別貢)2103) 이외에 예무하는 체삼(體蔘)·미삼(尾蔘)이 거의 60근에 가깝고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는데, 이제 갑자기 개칭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줄게 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많아진다면 다시 장차 어디에서 내도록 요구하겠습니까? 교린(交隣)은 일이 중대하므로 폐기할 수 없는 형세이니, 반드시 뒷 폐단이 없이 영구히 준행(遵行)할 방책을 얻고

·兵營所納也。限折半權減五年，戶曹納六斤，依京上司例，一半權減。本府所捧藥蔘四斤，亦當減給。捧蔘元戶七千六百餘戶之內，虛戶疊錄，不啻千數，一從實戶，釐正籍案，使之責役。用寺奴婢身貢，以銀上納，故當徵二兩者，輒徵三兩，依道內各邑例，以錢代捧。捧蔘時，官稱剩蔘，爲二十二斤，而其中七斤十二兩，謂之本官自備。其餘十四斤，皆爲官府私用。以正稱改稱十斤，都稱定式施行，而改稱都稱之後，所謂剩蔘，自在革罷。其中自備七斤十二兩，一體權減於戶曹納例貢中事，竝請廟堂稟處矣。稅蔘上納中，如京上司、監兵營所納十餘斤，合而計之，數旣不多。今使之折半權減，若得江民之賴以蘇完，此何足較計，而但以差倭禮單，一年所用言之，則別貢外例貢體、尾蔘，殆近六十斤，無他變通之道，而今忽以改稱之故，向後見縮，比前倍多，則更將責出於何處乎？交隣事重，勢不可廢。必得無後弊，永久遵行之策，然後庶爲祛弊之實效。今此前道臣，有此狀請，苟有弛張之善策，他日造朝，必有歸

	<p>서야 폐단을 바로잡는 실효(實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 도신(道臣)이 이렇게 장청(狀請)하였으므로 변통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뒷날 조정에 오면 반드시 돌아와 아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새 도신이 순찰하여 본부에 이르렀을 때에 또한 민정(民情)을 상세히 살펴서 사의(事宜)를 참작하여 헤아리고 신칭(新秤)·구칭(舊秤)을 행용(行用)하는 득실(得失)과 호조 계사(戶曹計士)2104)의 존폐의 당부(當否)와 시노비(寺奴婢)가 돈으로 대봉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조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윤택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강계 백성의 일은 참으로 민망하다. 근래 산택(山澤)의 이익이 전보다 점점 줄어서 한 해 동안에 캐는 인삼이 한 해 동안 쓰는 것을 당해 내지 못하므로 거북 등에서 털을 찾는 것과 같으니 그 형세가 견딜 길이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기에 이르렀다. 강계 일경(一境)이 뒤숭숭하여 보전하기 어려운 정상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이제 그 도신이 세삼의 권감을 청한 것이 당장 우선 편안할 생각에서 나왔더라도, 수토(守土)하는 신하가 특별히 크게 경장(更張)하고 크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강계의 온 고을 안이 반드시 텅 비게 되고야 말 것이니, 어찌 가엾고 슬프지 않겠는가?” 하였다.</p>	<p>奏，而新道臣巡到本府時，亦令詳察民情，參量事宜，新、舊秤之行用得失，戶曹計士之存罷當否，寺奴婢示以錢代捧，更爲論理狀聞後稟處宜矣。”上可之。仍教曰：“江民事，誠悶矣。近來山澤之利，比前漸減，一年所採之蔘，不能當一年所用，故便同龜背括毛，其勢末由支堪，至於散而之四。每念江界一境，嗷嗷難保之狀，玉食靡寧。今此該道臣減蔘之請，雖出於目下姑息之計，守土之臣，若不別般大更張、大釐正，江界一邑，必將空虛而後已。豈不矜惻乎？”</p>
<p>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3월 12일(신묘) 1번째기사  자경전에서 화빈의 가</p>	<p>자경전(慈慶殿)에서 화빈(和嬪)의 가례(嘉禮)를 행하였다.</p>	

례를 행하다		
<p>정조 9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4월 8일(병진) 2번째기사 명절일이므로 백성이 놀이 마시는 것을 금 하지 말라고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오늘은 명절일(名節日)이다. 가항(街巷) 사이에서 백성이 모여 놀고 마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오늘 밤에는 삼법사(三法司)에서 나가 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敎曰: “今日, 名節日也。 街巷之 間, 民庶之會集遊飲, 不是異事。 今 夜, 令三法司, 勿爲出禁。</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8월 5일(신해) 1번째기사 경모궁에 나아가 가을 제사의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차대하였다. 경모궁에 나아가 가을 제향에 쓸 희생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 다. 이어 하교하기를, “정성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도리는 오직 제사를 올리는 한 가 지 일뿐인데, 어찌 대신 행하게 하고 싶겠는가마는 때마침 사고(事故)로 인하 여 태묘의 봄과 여름의 대향(大享)을 이미 몸소 거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 모궁의 가을 제사에 의식(儀式)을 집행하라는 명이 있었던 것은 대개 마지못 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은 탄식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고, 이내 월근문(月觀門)으로 나아가 제기를 살펴보고 의식을 익히는 절차 를 행한 다음 궁으로 돌아왔다.</p>	<p>○辛亥/次對詣景慕宮, 省秋享牲器。 敎曰: “伸誠寓慕之道, 惟是享祀一事, 豈欲替行, 而適因事故, 春夏大享, 既 未躬行於太廟, 故景慕宮秋享, 有攝儀 之命者, 蓋出於不得已也。 然予如不 祭之歎, 豈容但已。” 遂由月觀門省 器, 行肄儀而還。</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9월 3일(무인)</p>	<p>내시를 보내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p>	<p>○遣內侍, 致祭於和平翁主墓。</p>

<p>2번째기사 화평 용주의 묘소에 제사지내다</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9월 10일(을유) 2번째기사 각 도에서 거들 환곡 의 양을 묘당에 의논 케 하다</p>	<p>하교하기를, “아침 연석에서 각 도에 받아들여야 할 옛 환곡조에 대해 10분의 1을 분배하 라고 허락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건대, 대체로 연달아 흉년이 든 나머 지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지금의 10분의 1은 바로 연전의 10분의 3, 4에 해당된다. 작년과 금년의 농사가 다행히 흉년은 면하였으나 이러한 때에 수량을 채워 받아 들이는 것은 비록 내년의 걱정에 관계되어 하 는 것이기는 하나, 일시에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하지 못하 는 탄식이 있게 된다. 병신년(2356) 과 기해년(2357) 에 분정(分定)한 수량 중 에서 많은 것을 떼어내 부족한 것에 보태 대략 절충하여 분수(分數)와 석수 (石數)를 다시 초기해 여쭙어 처리하도록 하라. 북관(北關)에 있어서는 요사이 의 장계를 살펴보건대, 칠도(七道)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 분배할 때에 마 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p>	<p>○教曰：“朝筵以各道舊還當捧條，以 十分一分俵事許施，而更思之，大抵荐 歉之餘，未捧甚多。今之十分一，即 年前十分之三四。昨今年年事，幸獲 免歉，此際準徵，雖關嗣歲之憂，一時 催科，誠有不忍之歎。就丙申、己亥 分定數中，哀多益寡，略綽折衷，分數 與石數，更令草記稟處。至於北關， 近以狀聞觀之，大不若七路排俵之際， 所宜斟酌，並令廟堂知悉。”</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9월 13일(무자) 1번째기사 영조 탄신일을 맞아 작헌례를 행하다</p>	<p>선원전(璿源殿)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영종(英宗)의 탄신일이기 때 문이다.</p>	<p>- ○戊子/行酌獻禮于璿源殿，以英宗誕 辰也。</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0월 6일(신해) 1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겨울 제사에 쓸 희생과 제 기를 살피다</p>	<p>태묘에 나아가 겨울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祭器)를 살피보았다.</p>	<p>○辛亥/詣太廟，省冬享牲器。</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0월 16일(신 유) 4번째기사 김하재가 동지사의 겸 행, 제사의 희생과 음 악, 강릉 앞산에 묘 쓴 일 논하다</p>	<p>대사헌 김하재(金夏材)가 상소하기를, “때아닌 천둥이 해마다 발생하자 자신을 책망하면서 도움되는 말을 갈수록 더욱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상의 마음에 들 만한 재앙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존 혼자만 위에서 근심하고 세도는 날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 어찌 늑연(凜然)히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아래서 인사가 잘못이 있어야만 위에서 재이가 나타나는 것 입니다. 근일에 삼사(三司)에서 간쟁하는 바는 모두 반드시 토벌을 시행해야 하는데 위아래가 서로 버티면서 고식에 젖어 있으니, 오늘날 하늘이 어찌 위 엄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궁성(宮省)에서 화재가 발생한 변고는 또한 어찌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사에서는 아직까지도 경계의 말이 없으니 신은 애석하게 여깁니다. 옛적에 고당용(高堂隆) 2395) 과 왕조(王朝) 2396) 는 모두 궁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수정(修省)의 방 도를 극력 진달하였습니다. 그 말에 ‘비록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 다고 하더라도 어찌 하늘이 견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게 어찌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먼저 마음속에 하늘을 대응하는 공부를 힘써 밝히고 나서 누차</p>	<p>○大司憲金夏材上疏曰： 匪時之雷，逐年斯生，責躬求言，愈往 愈摯，而未聞消弭之策。有可以當聖 心，至尊獨憂於上，世道日趨於下，豈 不凜然而心寒？噫！人事失於下而後災 異見於上。近日三司之所爭執，皆是 天討之所必加，而上下相持，狃於姑 息，今天安得不動威以警之哉？向來宮 省失火之變，亦豈非可驚可愕之事？而 三司之地，迄無陳戒之言，臣竊惜之。 昔高堂隆、王朝，皆當宮禁失火之時， 極陳修省之方。其言有曰：‘雖曰由人 火，寧知非天譴？’此豈非今日所可法 耶？伏願聖明，先從方寸之間，懋昭對 越之工，屢省厥躬，慎乃攸止，以爲答 天警、召和氣之道焉。我國之於彼人， 金繒往來，今已百餘年。雖以畏天圖 存之意，有此卑辭厚幣之舉，而凡賓</p>



자신을 반성하고 거지(擧止)를 신중히 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고 화기를 부르는 방도로 삼으소서.

우리 나라가 저들 청(淸)나라 사람과 금(金)과 비단을 교환한 지 이제 이미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늘을 두려워하고 보존을 도모하는 의미로 이처럼 언사(言辭)를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주기는 하였으나 무릇 빈례(賓禮)와 향례(饗禮)의 사이에 전일 중국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삼가 듣건대, 이번 동지 사행(冬至使行) 이외에 또 별도로 사신을 보내는데 출발하는 날짜가 사이가 열흘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신은 비록 성상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으나 연로(沿路)에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열읍(列邑)에서 분주하게 접대하는 바람에 나라의 재용이 점차 고갈되고 백성의 힘이 더욱 지치고 있으니,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내리신 분부를 빨리 정지하고 종전대로 동지사(冬使)가 겸행(兼行)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폐단을 덜어주소서. 그리고 또 듣건대, 표문(表文)의 양식이 종전에 비해 점차 융숭해져서 찬양할 때에 더러 요(堯)·순(舜)·공자(孔子)의 명언(名言)을 쉽사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선정(先正)이 말한 ‘아픔을 참고 원한을 안고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다.’는 뜻이겠습니까? 신의 구구한 지나친 계책으로는 저들 나라가 만일 만족을 모르는 야욕이 자라나 한번 오늘날의 행위를 뒤집는다면 장차 어떻게 그 뒤를 잇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다시 더 생각해 보시고 세폐(歲幣) 이외에는 수량을 더 추가하지 말고, 이에 사신(詞臣)에게는 문자(文字)의 양식을 옛 준례에 따라 하여 후일의 폐단을 생각하여 제한을 두도록 명하소서.

신은 살펴보건대, 《예기(禮記)》에 천자와 제후는 각각 짐승을 관장하는 벼슬아치가 있는데, 결점이 없는 완전한 희생을 바치면 살펴보고 모색(毛色)을 선택하여 길일(吉日)을 잡은 다음에 기릅니다. 그러므로 소가 밤중에 울면 그 고기가 악취가 나고, 양(羊)의 털이 영성하고 차거나 털끝에 솜털이 맺힌 것

禮、饗禮之間，與前日事大，迥然不同。伏聞今番冬至使行之外，又出別使，而發行日字，相距不一旬。臣雖未知聖意攸在，而沿路之冠蓋相望，列邑之供億旁午，國用漸耗，民力益困，非細事也。伏願，亟寢成命，依前以冬至使兼行，以省一分之弊焉。且聞表文之式，視前漸隆，贊揚之除，或以堯、舜、孔子之名言，容易加之。此豈先正所云，忍痛含冤迫不得已之意哉？區區過計，以爲彼國若長其無厭之欲，一反今日之爲，則將何以繼其後耶？伏乞，更加三思，歲幣之外，勿加其數，爰命詞臣，文字之式，只按舊例，以慮後弊，以存防閑焉。臣按《禮》天子、諸侯，各有掌獸之官。納其犧牲而視之，擇其毛而卜之吉，然後養之。是故，牛夜鳴則廝；羊冷毛則毳毼，所以重血食，而循軌物也。以今番冬享省牲時事言之，牲牛放逸，直奔御前，玉體驚動，大祝失措。此莫非養之不豫，致此踈虞也。且《詩》‘稱清廟朱絃疏越，一唱三歎。’顧今，雅樂殘缺，古制雖難猝復，而今日堂上、堂下軒架之樂，煩促太甚。以臣所聞，

은 누린내가 나는 것이니, 이는 혈식(血食)을 중히 여기고 궤물(軌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제향(祭享)에 희생(犧牲)을 살필 때 일로 말한다면 소가 우리에서 나와 곧바로 어전으로 뛰어들어 옥체(玉體)를 놀라게 하고 대축(大祝)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는 모두 미리 사육하지 않아 이런 허술한 우려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기》에 일컫기를, ‘청정(淸靜)한 묘(廟)의 슬(瑟)은 주홍색의 현(絃)에다 바닥에 구멍이 있어 소리를 소통시키며, 한 사람이 창(唱)을 하면 세 사람이 화답(和答)한다.’고 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아악(雅樂)이 폐되어 옛날의 제도는 갑자기 회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날 당상(堂上)과 당하(堂下)의 헌가(軒架) 음악이 너무나 심하게 번거롭고 급박합니다. 신이 들은 바로는 몇 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절주(節奏)가 너무나도 급박해졌을 뿐만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생관(牲官)과 악관(樂官)에게 거듭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희생(犧牲)을 미리 사육하고 음악을 분명하게 강론하여 음절이 늦추어지고 희생(犧牲)이 순조롭게끔 하소서.

요사이 강릉(康陵) 2397 의 앞산에 투장(偷葬)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입니다. 비록 여러 무덤의 사이에 묘를 썼기 때문에 범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명정(銘旌)에 증고(贈誥)를 함부로 쓴 것에 관한 법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체로 간사하거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풍수(風水)의 설에 현혹되어 이따금 남의 묘소의 위에다 묘를 써 복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찌 뒤에 한(漢)나라 장석지(張釋之) 2398 의 염려한 바가 없을는지 알겠습니까? 신은 본래부터 풍수의 방술이 망매(茫昧)하고 뿔뿔히 못하여 사람을 매우 많이 그르친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더러 유식한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면 반드시 정자(程子)·주자(朱子)가 논한 말을 인용하여 합리화하곤 합니다. 아! 정자와 주자가 논한 것은 임금과 아버지의 체백(體魄)을 편안한 자리에 묻는 것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근세 지사(地師)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자리에는 아무 공(公)이 나오고 아무 자리에는 아무 경(卿)이 나온

參之數年之前，則節奏不啻轉急。伏願，申命牲官及樂官，使之養有素，而講必明，俾音調疏緩，犧牲馴擾焉。近者康陵案山偷埋之事，誠一變怪。雖以問於衆塚，得免如法抵罪，而銘旌之冒贈誥，其法甚重。蓋姦民、蠢民，惑於風水之說，往往有厭勝求福之舉，安知後來無漢釋之之所慮乎？臣素疾堪輿之術，茫昧不經，誤人甚多。或被有識者排觚，則必引程、朱所論以文之。噫！程、朱所論，不過慎擇君親體魄，所藏安寧之地耳。曷嘗如近世地師所云：‘某地出其公；某地出某卿乎？’且國典山訟之法，略倣周制墓大夫之規，而條例不一，眩於舉行，甚至百般圖囑，枉法循情，次諸西則西之，諸決東則東之，低昂之間，流弊滋甚。乞命京兆及諸道，《續典》山訟條，法例之不齊者，悉加稟裁，更頒新制，仍就地家陰陽之書，焚其妖誕之方，禁其誑誘之習，以定民志，以嚴國典焉。批曰：“寂然之中，有此無隱之說，謂之差疆人意可乎。上段諸條，當留意，其次數件，事係不可洩，亦有相左者矣。末端事，申飭攸司，至於焚方書，

	<p>다.’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전(國典)에 산송(山訟)의 법은 주(周)나라 제도인 묘대부(墓大夫)2399)의 규정을 대략 모방하였는데, 규례가 많아 거행하는데 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백방으로 청탁하여 법을 굽히고 인정(人情)에 따라 하여 서쪽으로 물을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물을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듯이 조종하는 사이에 말류의 폐단이 극심합니다. 한성부 및 여러 도에 명하여 《속전(續典)》 산송 조항의 법례 중 들쪽 날쪽 통일되지 않은 것은 모조리 품계를 거쳐 다시 새 제도를 반포하고 이어서 지가(地家)의 음양 서적 중 요망하고 허탄한 방술은 불태워서 속이고 유혹하는 습관을 금지시킴으로써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법을 엄중히 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  “적적하던 중 이렇게 숨김없이 말해 주니, 사람의 마음을 조금 분발시켰다고 하겠다. 윗 대목의 여러 조항은 마땅히 유의하겠다. 그 다음 몇 건의 일은 발설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서로 어긋나는 점도 있다. 끝 대목의 일은 유사(攸司)에게 신칙하겠다만 방서(方書)를 불태우는 것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윤택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舉措不容易，不允。”</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1월 6일(경진)  1번째기사  육상궁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육상궁(毓祥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p>	<p>○庚辰/行酌獻禮于敏祥宮。</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1월 8일(임오) 1번째기사 경모궁 겨울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를 살 피고 재속하다</p>	<p>경모궁 겨울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나서 드디어 재속(齋宿)하였다.</p>	<p>○壬午/詣景慕宮，省冬享牲器，遂齋宿。</p>
<p>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2월 9일(계축) 1번째기사 수령의 잦은 교체, 군 포, 어세, 대동미, 각 사 노비 등에 대한 정 언 이공연의 논의</p>	<p>정언 이공연(李兢淵)이 상소하기를, “민생의 고락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신중하게 선발하는 방도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자주 교체하는 폐해가 고을에 크게 관계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수령들이 더러 몇 달 안에 자리를 옮기기도 하니, 이와 같은 경우 비록 공수(龔遂)·황패(黃霸) 2422) 와 같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형의 부서에 신칙하여 구전(舊典)을 거둬 밝혀 자주 전직시키지 않게 하여 오랫동안 위임시켜 성공을 책임지우는 방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방 고을의 군포(軍布)를 돈과 베로 반반씩 받아들이게 한 법은 좋기는 하나, 한번 필수를 감한 뒤로부터 한 명의 장정이 바치는 것이 한 필에 지나지 않고 보면 한 필 가지고는 반반씩 내게 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례 전부 돈으로 징수하고 나서 비로소 절반은 베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는 번번이 모두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큰 민폐(民弊)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도백으로 하여금 도내 목화 농사의 작황을 살펴 목화가 귀한 곳은 전부 돈으로 받고 목화가 천한 곳은 전부 베로 받아 본래 절반씩 받아들이도록 한 수량을 채우게 한다면 나라에도 손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p>	<p>○癸丑/正言李兢淵上疏曰： 生民休戚，專係守令。慎擇之方，不容少緩，數遞之害，大關民邑。近來守宰，或移遷於數朔之內，若此者，雖有龔、黃之才，亦何以展其所蘊乎？宜飭銓曹，申明舊典，勿數遷轉，以爲久任責成之道。外邑軍布之錢布參半法，非不好，而一自減疋之後，一夫所納，不過一疋，則一疋之內，無以行參半之法。故例以純錢徵之，始乃分半作布。以是之故，布邊則輒皆加徵，大爲民弊。臣意則令道臣，商量道內綿農之豐歉，綿貴處，則以純錢；綿賤處，則以純布，以準其本，參半之數，則無損於國，而有益於民。近來，魚產漸貴，民不得鮮食久矣。蓋緣均役之後，諸處魚箭，皆有定稅，雖不得魚，亦皆納稅，故民不敢隨意設箭之致也。均</p>

근래에 어물의 생산이 점차 귀해져 백성들이 생선을 먹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균역(均役)의 뒤에 여러 곳의 어전(魚箭)이 다 정해진 세금이 있어 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모두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마음대로 어전을 설치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균역의 사목(事目)은 비록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만약 각도로 하여금 원래 정한 수량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균역청(均役廳)에서 다시 주관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동미(大同米)를 군문(軍門)에 떼어 주는 것은 본래 부득이한 일이었는데, 뱃사람들이 이를 실어다 바치느라 폐단이 많습니다. 비록 호남으로 말하더라도 대동미 천 석의 배 값은 2백 석이 되는데, 천 석 가운데서 만일 수백 석을 떼어 주고 나면, 받는 배 값은 태반이나 군문의 정채(情債)가 됩니다. 그러므로 배 결꾼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정말 가공한 일이지만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한결같이 각 궁방(宮房)의 관례에 따라 호조에서 받아들여 나누어 주되, 아울러 묘당에 문의하여 따로 바로잡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 고을에 있는 각사(各司)의 노비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죽은 자가 있더라도 면감(免減)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 백 세가 넘은 자도 여전히 노비의 호적 중에 있고, 징수할 곳이 없는 자도 공납하라고 독책하므로 일가붙이에게도 징수하고 이웃에게도 징수한 바람에 백성들이 부지할 수 없습니다. 각 관사에 신칙하여 상세히 조사해서 면제해 주게 하소서. 경성의 시장은 바로 도성 백성들이 살아가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도시 장사꾼들이 요로(要路)에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조종하여 은밀히 판매하는 폐단이 날과 달로 불어난 바람에 시민이 생업을 잃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은 비록 미세하지만 그 해는 큼니다. 법사(法司)를 엄중히 신칙하여 특별히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役事目，雖不可輕易變改，若使各道徵納其元定之數，均廳不復主管，則民亦蒙惠。大同之移劃軍門，固是不得已之事，而船人輸納，爲弊多端。雖以湖南言之，大同千石之船價，爲二百石，而千石之中，若移劃數百石，則所受船價，太半爲軍門情債。故船漢之呼冤，固已可矜，而納稅之民，亦因此受害。一依各宮房例，自戶曹收納分給，并詢廟堂，另行矯揉。各司奴婢之在外邑者，厥數夥然。而雖有逃老，故不許免減，故年過百歲者，尙在案中。指徵無處者，亦責其貢，族徵隣徵，民不能支。申飭各司，詳加查免。京城市肆，卽都民資生之源，而所謂都賈要路，罔利操縱，潛賣之弊，日增月滋。市民失業，物貨騰踊。事雖微細，爲害則大。嚴飭法司，另加禁斷。

批曰：“所陳數條，寂然之中，猶賢乎已。下廟堂逐條覆奏。”後於次對。領議政金尙喆啓言：“守令數遞，爲今切弊。移遷自有朔數，如非不拘常格之時，毋或輕遷之意，請別飭銓曹。”從之。又啓言：“外邑軍布，綿貴處徵

“진달한 몇 가지 조항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오히려 훌륭하였다. 묘당에 내려 조목마다 의논해서 아뢰게 하겠다.”

하였다. 뒤에 차대에서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수령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 오늘날의 절실한 폐단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달 수가 있으니, 만일 정상적인 격례에 구애하지 않는 때가 아닐 경우에는 혹시라도 경솔히 교체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특별히 전조(銓曹)에 신칙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지방 고을의 군포에 대해서, 목화가 귀한 곳은 돈으로 징수하고 목화가 천한 곳은 베로 징수하는 것은 오직 여러 도의 도백이 적당히 헤아려서 재정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균역청의 어세(魚稅)를 변동하는 일은 성급하게 의논하기 어려우니, 다시 의논해야겠습니다. 군문에 대동미를 떼어 주는 것은, 한결 같이 각 궁방의 사례에 따라서 할 경우 형세상 서로 방해될 수도 있어 폐단이 도리어 전보다 배로 늘어날 것이니, 시행하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관사의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면제해 주는 일은 조정에서 전후로 신칙한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도에 내린 비총(比摠)2423)의 영은 실로 많은 것은 덜고 모자란 것은 보태어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으니, 이를 여러 도에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은 도신의 책임이다. 조정에서 온 도를 통틀어 비총하도록 한 것은 남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보태는 정사일 뿐만이 아니다. 당초에 제도를 제정할 때 몇 해의 총 수량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조목을 취하였고 보면 이것만도 차라리 백성에게 잃어버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폐단을 시정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이처럼 폐단이 발생하였으니, 이러한 도백에게 어찌 걱정을 나누어

錢，綿賤處微布，此惟在諸道道臣之量宜裁定。均廳魚稅變通，事難遽議，更合商確。軍門移劃大同，一依各宮房例，勢或相妨，弊反倍前，似難許施。各司奴婢，詳加查免事，前後朝家申飭，非一非再。況且道比摠之令，實出於哀益多寡，使民無怨之意，以此嚴飭諸道爲宜。”批曰：“此道臣之責也。朝家許令通一道比摠，不但哀多益寡之政而已。當初定制也，較數歲之摠，取其最少條，則已是寧失於民之意，而釐弊未久，生弊又如此。此等道伯，何責分憂？論以綜實之道，不勤舉行之道伯，所當摘發重勘，而事屬既往，亦非一二人，今姑參酌。大抵此邑雖多逃故，彼邑豈無生產？強者不漏，弱者不侵，則此爲蘇瘼之要。方行會嚴飭，俾各惕念，無或如前泛忽。”又啓言：“京城都買之弊，請飭法司，俾有禁斷之實效。”批曰：“都買實係都民大弊，已往雖不可一一推覈，嗣後復踵前習，則法司官隨聞重繩，斷不可已。”

	<p>갖자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명실(名實)을 따지는 도리로 논한다면 근실하게 거행하지 않은 도백은 마땅히 적발하여 중하게 논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왕 지나간 일이고 또한 한두 사람도 아니니, 지금 우선 참작하겠다. 대체로 이쪽 고을에는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저쪽 고을까지 어찌 사람이 태어나지 않겠는가? 강한 자를 누락시키지 않고 약한 자를 수탈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폐막을 소생시키는 중요한 방도이니, 바야흐로 공문을 보내어 엄히 신칙하여 각자 깊이 유념하여 혹시라도 종전처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성의 도회지 장사꾼의 폐단은 법사(法司)를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지하는 실효가 있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도회지의 장사꾼은 실로 도성 백성의 큰 폐단이니, 이미 지나간 일은 낱낱이 소급해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이 뒤에도 다시 종전의 버릇을 답습할 경우 법사의 관원이 결코 듣는 대로 중하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p> <p>하였다.</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1월 1일(갑술) 1번째기사  팔도와 양도에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을 내리다</p>	<p>팔도(八道)와 양도(而都)에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내가 임어(臨御)한 이래로 농사를 권장하는 교서(敎書)를 모두 몇 번이나 내렸는가?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달려 있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에 달려 있으며, 농사의 근만(勤慢)은 또 동칙(董飭)을 어떻게 하느냐에</p>	<p>○甲戌朔/下勸農綸音于八道兩都: “王若曰, 予自臨御以來, 勸農之敎, 凡幾下矣? 國之本在民, 民之本在農, 而農之勤惰, 又在董飭之如何。 肆先王設農師、置田畯, 汲汲焉惟是之爲先務, 予其敢忽諸? 茲故每當歲首, 輒數十行, 用飭我道臣、守令, 俾盡勸農之</p>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왕(先王)께서 농사(農師)와 전준(田隰)을 설치하여 오로지 이를 급선무로 삼기에 급급해 하셨던 것이니, 내가 감히 그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매년 세수(歲首)를 맞이하면 번번이 십행(十行)의 교서를 내려 나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을 계직하여 권농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게 하였으나, 지금껏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아랫사람의 미더움을 받기에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장리(長吏)들이 태만하여 나의 덕의(德意)를 잘 봉선(奉宣)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 무릇 팔방(八方)의 백성은 모두 나의 적자(赤子)인데, 혹 식량의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여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될까 걱정스럽고 두려워 비록 하전(廈氈)2437)에 거처하면서 옥식(玉食)을 대하더라도 마음은 일찍이 잠시도 백성과 농사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늘이 돌보아 주시는 데 힘입어 1, 2년 이래 우양(雨暘)이 순조로웠던 탓으로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기는 하였으나, 또한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에 모두 굶주림이 없는지, 떠돌아 흩어졌던 백성이 다 안집(安集)되었는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식량이 모두 부족하지 않으며 황폐(荒廢)한 전토(田土)는 다 개간되었는지 모르겠다. 진실로 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늦추겠는가? 무릇 굶주림을 구제하여 편안하게 감싸주고, 식량을 도와 주어 황폐한 전토를 개간하게 하는 책임이 돌아보건대 장리(長吏)에게 달려 있지 않은가? 더구나 천심(天心)이 반드시 누차 풍년이 들게 할지는 기약하기 힘들고 인정(人情)은 조금만 넉넉해도 게을러지기 쉬우니 참으로 동척을 배가하여 부지런히 힘써 행하지 않으면 다가 오는 가을의 걱정이 도리어 전일보다 심하게 될까 염려스럽니다. 대저 <밭> 갈고 씨를 뿌리는 데에는 때가 있고, 김매고 북주어 가꾸는 데에는 철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시기를> 빼앗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제때에 달려가 일하게 하여 서직(黍稷)이 무성하게 하면 기뻐하여 상을 주고, 전토를 잘 손질하지 않

方，而迄無其效何也？豈予愛民之誠，未足以下乎歟？抑長吏怠慢，不克奉宣予德意歟？噫！凡茲八方民庶，皆予赤子也。或未免艱于食，而填于壑，是憂是懼，雖處廈氈、臨玉食，而心未嘗一息不在於民于農。賴天之眷佑，一二年來雨暘不愆，稼穡稍登，抑未知蔀屋之生，其盡無饑歟；流移之氓，其盡安集歟；耕耘之糧，其盡不匱，而荒廢之土，其盡墾闢歟。苟未盡然也，予之憂懼，曷敢少弛？而凡所以救饑而懷安，助糧而闢荒，其責顧不在於長吏歟？況天心難必於屢豐，人情易懈於稍裕，苟不倍加董飭，作勞服勤，則竊恐來秋之虞，反有甚於前日矣。夫耕種有時，耘耔有節。倘能不奪，使趨其期，而黍稷茂則喜而賞，田不治則怒而罰，亦必如古長吏之爲，則民豈不競勸疾作，而庶幾其有秋乎？咨！爾長吏，有勤、有慢，朝廷亦宜有賞罰。今予誕諭，其毋曰應故事，而惕念舉行。”別諭關北道臣曰：“勸農之教，今方敷予心腹，誕告諸道，而噫！茲北關一路，十數年來，豐少歉多。丁酉之大無，凋瘵未蘇，儲蓄已空，而昨年之農，又



으면 노하여 벌을 주어서 또한 반드시 옛날의 장리처럼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다투어 권면하고 힘써 농사를 지어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만하지 않는가? 아! 너희 장리들의 근면과 태만에 대해서 조정에서도 또한 마땅히 상과 벌이 따를 것이다. 이제 내가 널리 하유하는 것을 고사(故事)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 말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고, 별도로 관북(關北)의 도신(道臣)에게 유시하기를,  
 “농사를 권장하는 교서를 이제 바야흐로 나의 성심(誠心)을 펴서 여러 도에 널리 고유(告諭)하였다. 아! 이 북관(北關) 일도는 십수 년 이래 풍년은 적고 흉년이 많았다. 정유년(2438)의 큰 흉년에 시달려 상처받은 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저축도 이미 바닥이 났는데다가, 작년의 농사가 또 수재와 한재를 입었다. 그리하여 칠도(七道)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나 이 도(道)만이 유독 흉년이 들었다. 일도가 흉년이 든 가운데 육진(六鎭)이 가장 극심한 상황이었어서, 다른 곳의 사람들은 모두 풍년이 들어 배가 부른 즐거움이 있건만 이곳은 부황이 든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곳의 사람들은 모두 편안히 생업을 누리고 있건만 이곳은 굶주려 쓰러지는 참담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매양 도신의 등문(登聞)을 볼 때마다 미상불 내 몸이 아른 것만 같아 밥을 먹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였다. 주진(調賑)하는 방도를 즉시 구획하였고, 과세(科稅)를 재촉하는 고통을 또한 정퇴(停退)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반품이나마 감싸 보호하는 방도로 삼았다. 아! 너희 방백(方伯)과 수령들은 과연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서 나의 적자(赤子)들로 하여금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되는 걱정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 세율(歲律)이 이미 바뀌어 봄일이 바야흐로 <눈 앞에> 닥쳤다.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은 비록 풍년이 든 끝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렇게 흉년이 든 뒤이니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확히 할 수 있겠는가? 농량(農糧)은 넉넉하지 못한 것을 도와 주어 굶주리고 부족한 것을 면하게 하며, 경운(耕耘)은 반드시 제때에 하게

被水旱。七路稍登，而茲道獨歉。一道失稔，而六鎭最甚，人皆得樂歲之飽，而此不免顛顛，人皆有安堵之業，而此不免顛連。每覽道臣之登聞，未嘗不恫若在己，食不甘味也。調賑之方，已卽區劃，催科之苦，又許停退，以爲一半分懷保之道。咨！爾方伯、守宰，果然體予至意，俾我赤子，不至有填壑之憂歟。噫！歲律已改，春事方及。嗣歲之計，雖於豐熟之餘，在所當急。矧茲歉荒之後，寧容少忽？農糧助其不給，而使免飢乏，耕耘必及其時，而常加勸課，每審田野，考其勤惰，毋擾村閭，俾安力作，然後庶幾秋成可期，吾民少甦。古人以田野之關、不關，爲長吏之賞罰。九重雖曰深遠，藪屋如在咫尺，爲道臣、邑宰者，其各惕慮奉行，無負予別諭之意。”

	<p>하되 항상 권과(勸課)를 가하고 매번 전야(田野)를 살펴 그 근만함을 조사하되 마음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편안히 힘써 농사짓게 한 연후에야 거의 가을걷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의 백성도 조금은 소생(蘇生)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은 전야(田野)가 개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지고 장리를 상주고 벌주는 기준으로 삼았었다. 구중 궁궐이 비록 깊고도 멀다고 하지만 부옥(藪屋)의 사정을 지척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 도신과 수령이 된 자들은 각기 조심스런 마음가짐으로 봉행하여 내가 특별히 유지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1월 5일(무인) 1번째기사 기곡제를 지내기에 앞서 유문 안의 관리에 소홀한 입직관 홍윤호를 중중 감처시키다</p>	<p>임금이 사직(社稷)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내려고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고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사관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유문(墻門) 안을 전혀 수리하고 깨끗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입직관(入直官) 홍윤호(洪允浩)를 태거(汰去)시키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중중 감처(從重勘處)하도록 명하였다.</p>	<p>○戊寅/上將祈穀于社稷，命史官摘奸往審。史官回奏言：“墻門內全不修掃。”命汰入直官洪允浩，令該府，從重勘處。</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1월 25일(무술) 3번째기사 제향 때 과과 이외의 제물을 새 것으로 쓰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제물(祭物)을 비록 조치하여 준비했다라도 모래 제향(祭享) 때에는 과과(果菓) 외에는 모두 새것으로 바꾸어 쓰라. 이미 비치(備置)한 물종(物種)은 모래 동가(動駕)한 뒤에 의당 가져다 볼 것이니, 절대로 이미 만든 것을 그대로 쓰지 말라. 새로 준비하는 물종은 본사(本寺)의 제조(提調)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직접 점검(照檢)하여 향소(享所)로 수송(輸送)하게 하라.”</p>	<p>○教曰：“祭物雖措備，再明日祭享時，果菓外，皆以新件改用。已備置物種，再明日動駕後，當取見，切勿以已造者仍用。新備物種，令本寺提調，今日內親執照檢，輸送于享所。”</p>

	<p>하였다.</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3월 9일(임오) 1번째기사 서명선, 이휘지 등의 환곡의 폐단과 그 대 책에 관한 논의</p>	<p>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호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관서(關西) 각진(各鎭)의 환곡을 지방관으로 하여금 조적(糶糶)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시다만, 환곡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실로 진졸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어 참으로 변통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요상(僚相)의 의견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비변사 당상 가운데도 또한 갑론 을박(甲論乙駁)이 있는 실정이니, 청컨대, 하순(下詢)하여 재처(裁處)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이휘지(李徽之)는 아뢰기를, “각진의 환곡을 만약 지방관으로 하여금 조적하게 한다면, 본진에 있어서는 비록 환곡이 많은 폐단이야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방관의 경우는 본읍(本邑)의 환곡 가운데 외창(外倉)에 있는 것도 오히려 다 조검(照檢)할 수 없을까 걱정인데, 더구나 원진(遠鎭)의 창곡(倉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세(事勢)상 장차 감색배(監色輩)로 하여금 멋대로 출납(出納)하게 하여 폐단이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졸(鎭卒)들은 창곡에 의지해 먹고 있는데, 창곡을 모두 본관(本官)에 소속시키면 전혀 의지할 데가 없게 되어, 그 폐단이 혹 도산(逃散)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대로 본진(本鎭)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되, 만약 사람은 적고 환곡이 많은 곳이 있으면, 그 곡수(穀數)를 계산하여 적당히 참작해서 본진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읍(本邑)과 인읍(隣邑)의 환곡이 적은 곳으로 옮겨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공조 판서李明식(李命植)은 말하기를,</p>	<p>○壬午/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因戶曹判書鄭尙淳， 關西各鎭還穀， 請令地方官糶糶， 穀多民少， 實爲鎭卒難支之弊， 固不可不變通， 而第僚相之意， 以爲不便， 備堂中， 亦有甲乙之論。 請下詢裁處。” 右議政李徽之曰：“各鎭還穀， 若使地方官糶糶， 則在本鎭， 雖無穀多之弊， 地方官於本邑還穀之在外倉者， 猶患不能盡爲照檢， 況遠鎭之倉穀乎？ 其勢將使監色輩， 任自出納， 爲弊不些。 且鎭卒， 以倉穀仰哺， 而倉穀盡屬本官， 則仕無所賴， 其弊似或逃散。 臣意則依前使本鎭主管， 而若有人少穀多處， 計其穀數， 量宜使本鎭分還， 其餘移給本邑及隣邑穀少處似好矣。” 工曹判書李命植曰：“列鎭若曰穀多， 本邑亦將穀多， 爲弊則一也。 不如嚴飭鎭將， 使之依前舉行。” 行副司直李柱國曰：“穀多民少， 誠爲關西諸鎭之弊端。 臣意則諸鎭還穀， 量其</p>

“여러 진에 환곡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읍도 또한 장차 환곡이 많게 되면 폐단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니, 진장(鎭將)에게 엄히 계칙하여 전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행 부사직(行副司直) 이주국(李柱國)이 아뢰기를,

“환곡이 많고 백성이 적은 것은 참으로 관서(關西) 여러 진의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여러 진의 환곡은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 각 진민(鎭民)에게 마련하여 나누어 준 뒤에, 읍민(邑民) 가운데 받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부(本府)에서 정리하여 책자(冊子)로 만들어 진장(鎭將)에게 보내어 받들게 한다면, 거의 진민들이 흩어지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전(前) 도신(道臣)이 관서에서 왔으니, 반드시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나,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익히 소상하게 아는 것만은 같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새 도신으로 하여금 수신(帥臣)에게 왕복하여 의논하고 수령과 변장에게 탐문(探問)하여 사리를 따져 계문(啓聞)하게 한 뒤,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호서(湖西)의 수령(守令)이 모환(牟還)을 마음대로 나누어 준 일로 인하여 모환을 분리하여 남겨 두고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모환은 그 물품이 가장 잘 썩고 상하는 것인데, 만약 융통성 없게 법의(法意)만을 고수한다면, 진토(塵土)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조적(糶糶) 기간이 두세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체(事體)에 구애되어 거의 대부분은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법령을 거둬 엄하게 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한다면, 창고에 쌓인 곡식을 공연히 쓸데없는 물건으로 만들 것이며, 또 알고서도 묻지 않고 멋대로 나누어 주도록 일임한다면, 금석(金石) 같은 나라의 법전(法典)을 도리어 실효가 없는 데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금년 이

多寡，以各鎭民磨鍊分給後，邑民受食之類，自本府，修成冊送于鎭將，使之收捧，則庶無鎭民渙散之弊矣。”命善曰：“前道臣，自西來，必當詳悉事情，而猶不如坐在裏許，爛漫消詳。請令新道臣，往復帥臣，探問於守令、邊將，論理啓聞後，更爲稟處。”從之。又啓言：“頃因湖西守令牟還擅分事，有牟還分留稟處之命矣。牟還之爲物，最善腐傷，若膠守法意，則易作庫中之塵土。且糶糶之間，不過數朔，故拘於事體，舉皆盡分。今若申嚴法令，毋敢違越，則倉庚之積，公然作無用之物。又若知而不問，一任擅分，則金石之典，反爲無實之歸。臣意自今年以後，牟還則無論大、小麥，許令盡分，以其實數，修送會案，恐合事宜矣。”從之。又啓言：“牟還既以盡分定式，則牟還最多之邑，不可不先爲變通。請令諸道臣，或作租、或移轉，從便論理啓聞後稟處。”從之。

	<p>후부터는 모환은 대맥(大麥)과 소맥(小麥)을 막론하고 모두 나누어 주게 허락하여 그 실제 수량을 정리하여 회안(會案)으로 송부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 싶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모환을 이미 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법식을 정하였으니, 모환이 가장 많은 고을을 먼저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여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혹은 작조(作租)하거나 이전(移轉)하게 하되 편의에 따라 사리를 논하여 계문(啓問)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4월 5일(무신) 1번째기사</p> <p>영의정 서명선의 환곡의 폐단과 무분별한 소나무 벌채에 관한 논의</p>	<p>주강(晝講)하였는데, 겸하여 차대(次對)도 행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p> <p>“지난번 우승지 신응현(申應顯)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안주영(安州營)의 환곡을 다른 고을에다 이송(移送)하는 일을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평안 병사 이창운(李昌運)의 장계 내용을 보건대, ‘본주(本州)2663)의 응분(應分)의 수량이 모두 합쳐 5만 3천 9백 16석인데, 1호(戶)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거의 10석에까지 이르고 있어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영의 곡식 가운데 3만 4천 53석 영(零)은, 곧 본곡(本穀)은 보존하고 모곡(耗穀)을 취하여 달마다 급료[料]를 지급하는데에 쓰기 위한 것으로 그대로 병영의 관리 하에 남겨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7천 1백 석은 모곡을 취하여 공적인 비용에 충당하는 데 불과한 것이니, 비록 각 고을에 있더라도 실로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영(本營)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박천(博川)·숙천(肅川)·영변(寧邊)·개천(价川)</p>	<p>○戊申/晝講，兼行次對。領議政徐命善啓言：“頃因右承旨申應顯所奏，安州營還移送他邑事，令帥臣，論理狀聞，卽見平安兵使李昌運狀啓則：‘本州應分之數，合爲五萬三千九百十六石。一戶所收，殆至十石，實爲痼弊。營穀中三萬四千五十三石零，乃是存本取耗，逐朔放料者，不可不仍留營下。其餘七千一百石，不過取耗公費者，雖在各邑，實無所妨。距本營最近博川、肅川、寧邊、价川等穀少邑接界坊民處，略略分徙爲宜。’云。民少穀多之弊，庶有省弊之道。請依狀請施行。”從之。命善又啓言：“目</p>

	<p>등의 곡식은 경계를 접하여 있는 작은 고을의 방민(坊民)들에게 약간씩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은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니, 청컨대 장계로 청한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명선이 또 아뢰기를,</p> <p>“지금 여러 도의 폐단 가운데 가장 근심스러운 것은 송정(松政)입니다. 각처의 송산(松山)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것은 오로지 전선(戰船)을 개조(改造)한 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앞서 기한이 찬 배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서 직접 살펴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잇달아 신칙을 가하였는데, 근일 통제사의 장본(狀本)을 살펴보건대, 처음에 아뢴 다섯 척의 전선 가운데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이 2척이나 들어 있으니, 청컨대 전 통제사 서유대(徐有大)를 종종 추고하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 도의 수신(帥臣)들에게 신칙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今諸道之弊，最可悶者，松政也。各處松山之濯濯，專由於戰船改造之致，故前以限滿船，自兵水營，親審更報之意，連加申飭，而試以近日統制使狀本觀之，一啓五船，限未滿者居二。請前統制使徐有大，從重推考。以此意申飭諸道帥臣。”從之。</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5월 7일(기묘) 1번째기사 초계 문신의 과강을 시험보이고 외방에서 오는 사람에게 곡식과 말을 지급게 하다</p>	<p>초계 문신의 과강(課講)을 직접 시험보였다. 하교하기를, “문신의 강제(講製) 때 원래 외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낙점(洛點) 받아 응시할 경우, 그들이 올라올 때에는 모두 북도(北道) 부거생(赴學生)의 준례에 의거하여 곡식과 말을 지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己卯/親試抄啓文臣課講。 教曰： “講製文臣，原在外人之受點赴試，上來時皆令依北道赴學生，給糧馬。”</p>
<p>정조 11권, 5년(1781</p>		

<p>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5월 7일(기묘) 5번째기사      먹은 것이 체하다 내국의 삼제조를 소견하다</p>	<p>내국(內局)의 삼제조(三提調)를 불러 보았다. 이때 임금이 체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제조가 안부를 묻기 위해 청대(請對)한 것이다.</p>	<p>○召見內局三提調。 時上以膈滯有欠安節， 三提調承候請對也。</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5월 30일(임인) 1번째기사      각도 모환의 4분의 1을 창고에 남기도록 하다</p>	<p>제도(諸道) 모환(牟還)의 4분의 1을 창고에 남겨 두는 법을 정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모환이 많이 적유(積留)되어 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순문(詢問)할 것을 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주(覆奏)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b>【태백산사고본】</b></p>	<p>○壬寅/定諸道牟還四分之一留庫之法。 領議政徐命善， 以牟還多積之爲弊， 請詢諸道矣。 至是覆奏施行。</p>
<p>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윤5월 10일(임자) 1번째기사      봉상시에서 친경전의 보리를 올리다</p>	<p>봉상시에서 친경전(親耕田)의 보리를 올렸는데, 하교하기를,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방도에 있어 낭관(郎官)이 직함을 갖추어 정단(呈單)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사체(事體)가 어찌 상의원(尙衣院)·장흥고(長興庫)만도 못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뒤로는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직함을 써서 단자(單子)를 정리하여 입계(入啓)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똑같은 진헌(進獻)인데도 장흥고·상의원·약방 이외에는 안으로 주원(廚院)과 밖으로 진배(進排)하는 각사(各司)에서 간혹 낭청이 직함을 써서 정단(呈單)하는 예(例)가 많은데, 이 또한 매우 산만(散漫)스러운 일이다. 각 해방(該房)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이 뒤로는 일체 이정</p>	<p>○壬子/奉常寺進親耕田大麥。 教曰：“重其事之道， 郎官之具銜呈單， 萬萬未妥。 事體豈不如尙衣院、長興庫乎？ 此後都提調提調， 并着銜修單子入啓。 因此思之， 均是進獻， 而長興庫、尙衣院、藥房外， 內而廚院， 外而進排各司， 或多郎廳具銜呈單之例， 亦甚屑越。 各該房知悉， 分付各該司，</p>

	(釐正)하여 균일한 법제로 정하게 하라.” 하였다.	此後一并釐正，以定均一之制。”
정조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윤5월 28일(경 오) 2번째기사 호남의 세선이 전복되 다	호남(湖南)의 세선(稅船)이 전복(顛覆)되었다. 하교하기를, “전복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가 없었다. 본도의 도백(道伯)이 충분히 잘 동 독(董督)하였다면, 법을 무시한 고의적인 패선(敗船)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본(狀本)을 올린 것이 본도에 전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전에 없는 거조에 대해 또한 한 글자도 등문 (登聞)한 것이 없는 것도 이것이 또한 전례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패선한 데 서 한 톨의 쌀도 건져낸 것이 없으니, 이것도 또한 전례가 있다는 말인가? 배 한 척에다 2천여 석(石)이나 2천 석 가까이 넘치게 실었으니, 이것도 또한 전 례가 있는 것인가? 선인(船人)들은 본도(本道)에서 패선되었다고 하고, 감사는 타도에서 패선되었다고 하니, 이것도 또한 전례가 있는 것인가? 조사 신문하 는 과정에서 여러 날 지체시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거론하여 보고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전례가 있는 것인가? 이미 추고(推考)했는데도, 장본에서 다시 대죄(待罪)를 청하였으니, 이 또한 전례가 있는 것인가? 전례 는 전례대로 따랐다 해도 사리에 어두운 것은 어두운 대로 남는다. 이 뒤로 다시 이런 간폐(奸弊)가 있을 경우에는 도신(道臣)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이니, 조심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湖南稅船臭載。 教曰：“臭載未有如 今年。 本道伯若能十分董督，冒法故 敗，豈至於此？ 形止狀報本道，雖無前 例，此等無前之舉，亦無一字之登聞， 此亦前例乎？ 且敗船之無一粒拯出，此 亦前例乎？ 一船之二千餘石，或近二千 石濫載，此亦前例乎？ 船人則曰：‘本 道致敗。’ 監司則曰：‘他道致敗。’ 此 亦前例乎？ 查問之下，淹旬過期，今始 枚報，此亦前例乎？ 既推考，而更請待 罪於狀本，此亦前例乎？ 前例從他前 例，矇然自是矇然。 此後復有如許奸 弊，按道之臣，難免其責。 使之惕念 舉行。”
정조 11권, 5년(1781		丁酉/下綸音于濟州三邑曰：“咨! 爾耽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6월 26일(정유)  
1번째기사  
제주 3고을에 윤음을  
내리다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아! 탐라(耽羅) 한 섬은 천리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귤유(橘柚)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것은 하(夏)나라 때의 양주(楊州)와 같고 해마다 화류(驩柚)를 바치는 것은 한(漢)나라 때 대완(大宛)에서와 같아서, 현모(玄牡)를 바쳐 희생(犧牲)에 대비하고 비실(篋實)으로써 변두(邊豆)에 공봉(供奉)하였으며, 또한 빈주(蠙珠)·모혁(毛革)·죽목(竹木)·지전(芝箭) 등의 것으로 기용(器用)의 자료와 도규(刀圭)의 수요에 공급되는 것도 이루 헤일 수 없이 많다. 그곳의 백성들은 돌을 모아서 담장을 쌓고 띠풀을 엮어 집을 만들며,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양(禮讓)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질병(疾病)이 적어 수고(壽考)하는 이가 많으니, 또한 해도(海島) 가운데 하나의 도회(都會)이다. 그곳은 토지(土地)가 척박하여 모맥(麩麥)과 두숙(豆粟) 만이 생산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 뱃길에 기탁하고 있으니, 아! 또한 위태롭고도 험난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특별히 진념(軫念)하여 내지(內地)의 백성들과 똑같이 사랑하였고, 무릇 위무(慰撫)하고 민홀(憫恤)하는 방도에 있어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 우리 선 대왕(先大王)께서는 지도(地圖)를 조사하고 공물(貢物)을 살펴 인정(仁政)을 시행하였으므로 흉년이 들면 배로 곡식을 운송해 먹여 주었고, 방물(方物)을 바치러 오면 식량을 주어서 보내었으며, 인재를 찾고 폐막(弊瘼)을 묻기 위해서는 번번이 암행 어사를 파견하였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살피기 위해서는 매양 부임되어 가는 관원을 신칙하는 등 온 섬의 수많은 생명(生靈)들이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정화(政化)에 흠뻑 젖어 온 지가 50년이 되었다. 과인(寡人)이 등극한 이래로 지금껏 한 가지 은혜도 그대들에게 크게 베푼 것이 없는 가운데, 전지(田地)에 흉년이 든 적이 없어 비록 천심(天心)이 돌보아 주는 혜택을 받았지만, 선박은 표류된 것이 있어 해파(海波)가 고르지 못한 것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 멀리 푸른 바다

羅一島，處于海外千里。包貢橘柚，有似乎夏后之楊州。歲獻驩驩，有似乎漢家之大宛玄牡，而備犧牲、篋實，而供邊豆。亦粵蠙珠、毛革、竹木、芝箭之屬，可以資器用而需刀圭者，指不勝擣。厥民聚石爲垣，編茅爲屋，俗癡儉有禮讓，少疾病多壽考，抑海島之一都會也。第其壤地嶢瘠，惟麩麥、豆粟，生之經紀契活，寄于本道。吁！亦危乎崎哉！肆朝家特垂軫念，視同內服，凡所以慰撫之、憫恤之者，靡不肅極。猗歟！我先大王，考圖按貢，發政施仁，告饑饉，則船粟而往哺之，獻方物，則糶糧而資送之。搜才詢瘼，則輒遣衣繡之臣，輕徭審刑，則每飭佩符之官，環一島幾萬生靈，涵囿於柔遠之化者，五十五所矣。逮寡人御極以來，迄無一惠一恩之覃及爾等，田無荒歲，縱荷天心之眷顧，舟有漂流，多愧海波之不揚。又是逃矣滄溟，隔絕九重，有疾苦而控訴無處，抱才略而薦拔罔階，予甚憐之。噫！貢獻之許多物種，弊端必滋，而孰肯爲爾等導達？州縣之幾處衙門，差役必繁，而孰肯爲爾等蠲除？生才實均於今古，降衷無間於

가운데 있어 구중 궁궐과는 현격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공소(控訴)할 곳이 없고, 훌륭한 재략(才略)을 지니고 있어도 천발(薦拔)될 계제(階梯)가 없으므로, 내가 매우 안스럽게 여기고 있다. 아! 공물로 바치는 허다한 물종(物種)으로 인한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인데, 누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런 사실을 알리려 하겠으며, 주현(州縣)의 여러 아문(衙門)에서 시키는 부역이 반드시 번거로울 터인데, 누가 그대들을 위하여 이를 견제(鑷除)하여 주려 하겠는가?

하늘이 인재를 낳은 것은 실로 고금(古今)이 똑같은 것이고, 하늘이 사람에게 양심(良心)을 준 것은 섬과 육지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마을이라도 어찌 고유(高維)·고조기(高兆基) 같은 준재(俊才)가 없겠는가마는 누가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려 하겠으며, 그곳 백성들 가운데 어찌 김평(金秤)·정씨(鄭氏) 열부(烈婦) 같은 효자와 절부가 없겠는가마는 누가 포양(褒揚)하려 하겠는가? 원목(元牧)과 산목(山牧)의 말들을 번식시키는 데 있어 말을 해치거나 백성을 해치는 정사가 없으며, 포인(鮑人)과 선인(船人)이 편안한 삶을 누림에 있어 생업을 잃거나 거처를 잃는 탄식은 없는가? 옥송(獄訟)은 그 판결이 공평하여 과연 억울함을 품은 부류들이 없으며, 이서(吏胥)들은 가림 주구를 엄격히 금단하여 과연 피곤하게 시달리는 걱정이 없는가? 이와 같은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완연히 떠올라 매양 남쪽을 바라볼 적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달갑지 않다.

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두가 나의 적자(赤子)인 것이요, 이제 나는 그대들의 부모인 것인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하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선부(選部)에 명하여 문신(文臣)·무신(武臣) 가운데 자급(資級)과 경력(經歷)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세 고을의 네 장리(長吏)를 바꾸어 앓혀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리는 정사를 새롭게 하게 하였다. 또 전 홍문관 응교 박천형(朴天衡)을 어사(御史)에

島陸。圭竇之間，豈無如高維、高兆基之俊彥，而孰肯賓貢，編戶之中，豈無如金秤、鄭烈婦之孝節，而孰肯褒揚？元牧、山牧之蕃孳，而能無害馬害民之政？鮑人、船人之寧謐，而能無失業失所之歎歟？訟獄則剖決稱平，而果無抱冤之類；吏胥則誅求痛斷，而果無疲困之患歟？似此民隱，宛在目中，每一南顧，玉食靡甘。噫！無遠、無邇，皆予赤子。今予爲爾等父母，而未能盡父母之責，中宵興惟，寧不自惡？茲命選部，擇文武有資歷者，易三邑四長吏，俾新字牧之政。又命前弘文館應教朴天衡，爲御史，往布予心腹，仍令設科試取。此正有願必送，有才必用之會也。咨！爾大小軍民，靜聽予申懇之諭，克體予採訪之意，無隱于予。噫！向來引馱之特命減數，雖不過九牛之毛，或有，一分半分之效，而至於六苦役之革罷，輪回各山場之創始，橫築驅點軍之永除前規，牛馬監之新定勸賞，亦有比前斟酌之益否？自餘係關於民瘼、邑弊者，事無巨細，感須奔訴于御史，予其待登聞，爲爾等裁處。”

	<p>임명하여 가서 나의 속마음을 선포하고, 이어 과거(科擧)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게 하였으니, 이때가 바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수 있고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쓰여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아! 그대 대소 군민(軍民)들은 내가 거듭 간곡히 내리는 하유(下諭)를 조용히 듣고 내가 채방(採訪)하려는 뜻을 잘 본받아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아! 지난번 인복(引馘)의 수효를 특명(特命)으로 감하게 한 것이 구우 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한 혜택이었지만, 혹 일꾼 반푼이나마 효과가 있고, 여섯 가지 고역(苦役)의 윤회(輪回)를 혁파한 것과 각 산장(山場)의 횡축(橫築)을 창시(創始)한 것과 구점군(驅點軍)의 전규(前規)를 영구히 제거한 것과 우마감(牛馬監)의 권상(勸賞)을 새로 정한 것에 있어서도 또한 전에 견주어 헤아려 보면 유익한 점이 있는가? 그 나머지 민막(民瘼)과 읍폐(邑弊)에 관계된 것은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모름지기 어사에게 달려가서 호소하면 내가 등문(登聞)되기를 기다려 그대들을 위하여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7월 8일(무신) 1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세초할 때 의 연회를 취소할 것 을 청하다</p>	<p>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세초(洗草)할 적에 연회를 베풀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곧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행한 성대한 거조이니, 신 등이 어떻게 고례에 따라 그 일을 중히 여기는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서북(西北)에는 홍수가 났고 영호(嶺湖)에는 가뭄이 들고 있으니, 이야말로 바로 공구 수성(恐懼修省)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즐기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삼가 바라건대, 연회를 내리라는 명을 속히 환수하</p>	<p>○戊申/承政院啓言：“今此洗草設宴之命，卽祖宗朝已行之盛舉。 臣等豈不欲仰體遵古例、重其事之聖意？ 而第今西北之澇，嶺湖之旱，正是恐懼修省之日。 豫大之舉，恐非其時，伏乞亟收賜宴之命。” 答曰：“設宴以勞，擬遵故事，而院啓覆難。 亦修已例，依兩朝辛丑、丁巳批旨辭意舉行。”</p>

	<p>소서.”  하니, 답하기를,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은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준행하려는 것인데, 원계(院啓)에서 곤란하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또한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니, 양조(兩朝)의 신축년(2813)·정사년(2814) 비지(批旨) 내용에 의거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7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실록》청의 당랑들  에게 술을 하사하다</p>	<p>중사(中使)를 보내어 의정부(議政府)에서 실록청(實錄廳)의 당랑(堂郎)들에게 선온(宣醞)하게 하였다.</p>	<p>○壬戌/遣中使，宣醞實錄堂郎于議政府。</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8월 22일(임진)  3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소견하고 수재민의 환  곡을 면제하는 것을  의논하다</p>	<p>대신과 비국의 유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영남의 비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실로 매우 혹독하여 가사(家舍)가 물에 떠내려가고 인명(人命)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매우 놀랍고 참혹스러운데, 고령(高靈)·합천(陝川) 두 고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매우 불쌍하고 안쓰럽다. 오늘 특별히 경들을 부른 것은 장차 건감하고 구휼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신미포(身米布)는 본래 당연히 탕감시켜야 하는 것이고, 환곡(還穀)에 이르러서도 또한 아울러 정퇴(停退)시켜야 거의 일푼이나마 백성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p>	<p>○召見大臣、備局有司堂上。上曰：“嶺南風雨之災，實爲孔酷，家舍之漂失，人命之滄沒，極爲驚慘，而至於高靈、陝川兩邑而極矣。言念民事，誠甚矜憫。今日特召卿等，將欲講究蠲恤之策，滄死人名身米布，自當蕩滅。至於還穀，亦并停退，庶可爲一分民惠矣。”領議政徐命善對言：“高、陝兩邑外被災諸邑，自有淺深之別。高、陝還穀，或可停退，而他邑則不可用兩</p>

	<p>이다.”</p> <p>하니,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대답하기를,  “고령·함천 두 고을 이외의 재해를 입은 모든 고을은 절로 천심(淺深)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함천의 환곡은 혹 정퇴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고을에는 두 고을의 예(例)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신환(新還)에 대해서는 더욱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금년의 수재(水災)는 온 도내(道內)가 다 같아서 우심(尤甚)과 지차(之次)를 구별할 수 없다. 구환(舊還)은 도내 전체를 정퇴(停退)시키고 신미포(身米布)는 단지 사망한 사람만을 탕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이미 대신(大臣)에게 순문하였으니, 재변을 당한 여부를 막론하고 도내 각 고을의 구환은 일체 아울러 정퇴하게 하라.”</p> <p>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번 영남의 여러 고을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백 39명인데, 지난번 전교에서 당년(當年)조의 신미포(身米布)는 특별히 탕감시키셨습니다. 그 나머지 물에 떠내려갔거나 사태에 뒤덮인 민호(民戶)에 대해서도 또한 지난번 아홉 고을의 예(例)에 의거하여 혹은 채목(材木)을 모아 주고 곡식을 보태 주어 마음을 다해 구휼하여 전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함으로써 살 곳을 잃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도신과 수령에게 신칙시키게 하소서.”</p> <p>하니, 그렇게 하게 하였다.</p>	<p>邑之例。 新還則尤不可着手矣。” 上曰：“今年水災， 通一道同然， 不可區別其尤甚、之次。 舊還全一道停退， 身米布， 則只死亡人蕩減似好矣。” 仍教曰：“既問大臣， 無論被災與否， 道內各邑舊還， 一并停退。” 命善曰：“今番嶺南諸邑滄死民人一百三十九名， 頃日傳教， 當年條身米布， 特爲蕩減。 其餘漂失頽壓民戶， 亦依頃日九邑例， 或鳩材助糧， 着意調恤， 如舊安堵， 俾無失所之意。 請申飭道臣守宰。” 可之。</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p>		

<p>46년) 9월 11일(경술) 2번째기사 영조가 세자로 책봉된 구갑을 맞아 진전 행 례 때에 전·현직 대신 을 참여케 하다</p>	<p>하교하기를, “금년은 곧 선대왕(先大王)께서 저사(儲嗣)에 오르신 구갑(舊甲)이다. 내일 진 전(眞殿)에서 행례(行禮)할 때 시임·원임 대신(大臣)을 입참하게 하라.” 하였다.</p>	<p>○教曰：“今年，卽先大王陞儲舊甲。 明日眞殿行禮時， 時・原任大臣入 參。”</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9월 29일(무진) 2번째기사 여러 도의 옛 환곡을 면하여 주다</p>	<p>하교하기를, “금년 제도(諸道)의 연사(年事)가 비록 천심(淺深)의 구별은 있지만 모두 흉황 (凶荒)을 면할 수 없으니, 무마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에게 위임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가(朝家)에서도 또한 어떻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신환(新還)은 다음해의 종량(種糧)에 관계된 것 이어서 경솔하게 의의(擬議)할 수 없으나, 오직 이 구환(舊還)은 충분히 신축 성 있게 조치할 수 있다. 영남(嶺南)·관서(關西)는 먼저 이미 정면(停免)시켰 으니, 제도(諸道)의 구환도 또한 모두 정봉(停捧)시키라.” 하였다.</p>	<p>○教曰：“今年諸道年事，雖有淺深之 別，俱未免歉荒，撫摩之責，專委道 臣、守令，而自朝家，亦豈可愒視乎？ 新還係是嗣歲種糧，不可輕易擬議。 惟是舊還，足可闊狹。嶺南、關西， 先已停免，諸道舊還，亦皆停捧。”</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10월 25일(갑 오) 1번째기사 임금이 격체에 걸려 약원의 제조와 각신을 소견하다</p>	<p>임금의 체후(體候)가 격체(膈滯) 때문에 편치 않았다. 약원(藥院)의 제조(提調) 와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p>	<p>○甲午/上候以膈滯靡豫， 召見藥院提 調、閣臣。</p>
<p>정조 12권, 5년(1781</p>		

<p>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11월 13일(신해) 1번째기사</p> <p>내국에서 관동에서 공물로 바친 삼이 열악하다고 아뢰자 물리지 말라고 하다</p>	<p>내의원(內醫院)에서 아뢰기를,  “관동(關東)의 공삼(貢蔘)이 매우 열악(劣惡)하니, 청컨대 해당 도신(道臣)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찍이 들건대, 관동의 공삼은 납등(臘等)과 춘등(春等)·추등(秋等)을 막론하고 이를 수봉(收捧)함에 있어, 각 고을이 거개 민간(民間)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교활한 장사꾼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취사(取捨)를 조종하면서 마음먹은 것을 멋대로 행하여 이미 장쾌(駟儉)2998)의 이익을 노리고 다시 한없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관동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 온 지 오래라고 한다. 일이 어공(御供)에 관계되어 수령(守令)들 또한 감히 따져 통제하지 못하는 탓으로, 갖가지 비루한 일과 부정한 횡령(橫斂)의 명색(名色)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수록 더욱 극심한데, 이것이 거듭 관동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런 때문에 조가(朝家)에서 매양 관동 백성에 대해 진념(軫念)하면서 그 고통이 몸에 있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제 만일 다시 개색(改色)하여 봉진(封進)하게 한다면 영읍(營邑)에서는 사세가 다시 민간(民間)에서 징수하게 될 것이니, 이는 참으로 차마 못할 점이 있는 것이다. 또 생각건대, 납약(臘藥)2999)에 쓰이는 것은 탕제(湯劑)에 쓰여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니, 받아들인 납삼(臘蔘)을 이번에는 특별히 그대로 받도록 하라.”  하였다.</p>	<p>○辛亥/內醫院啓：“關東貢蔘甚劣，請該道臣罷職。”允之。教曰：“曾聞關東貢蔘，無論臘等與春秋等應捧，各邑率皆徵之民間，而從以猾賈居中售奸，操縱取捨，肆行胸臆，既射駟儉之利，更充豁壑之慾，東民之受病久矣。事係御供，守令亦莫敢誰何，種種鄙瑣不正之橫斂名色，不一而足，愈往愈甚，重爲東民難支之端。以是朝家每念東民，恫若在己。今若更令改色封進，營邑勢將再徵民間，是誠有所不忍。且念臘藥所用，猶與湯劑所用差異，所捧臘蔘，今番特爲仍捧。”</p>
<p>정조 12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p>		<p>○教曰：“名以御藥所用，則事體不輕而重。以是之故，前此內局獻御之物，</p>

<p>46년) 11월 13일(신해) 2번째기사          품질이 떨어지는 삼을 바친 것 때문에 강원 감사를 종종 추고하다</p>	<p>하교하기를,          “명색이 어약(御藥)에 쓰여지는 것이면 사체(事體)가 가볍지 않고 중한 것이다. 이런 때문에 이에 앞서 내국(內局)에 헌어(獻御)하는 물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찮은 물품일지라도 봉진(封進)한 관원은 매양 모두 견책을 받았다. 그리하여 건복(乾馱)이 썩어 부패하자 17고을의 수령이 아울러 잡혀 와서 과직당하는 죄에 걸렸고, 건과(乾果)가 썩자 30고을 수령이 아울러 치대(置對)하는 형을 당하였는데, 이런 일은 수십 년 전에 있었다. 좀 전에 내국(內局)의 초기(草記)에서 도신(道臣)을 과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이를 윤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개 고례(古例)를 따르고 사체(事體)를 보존시키는 뜻에서 나온 것이요 반드시 그대로 감죄(勘罪)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방백(方伯)을 체차시키는 것을 상세히 하고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인데, 더구나 흉년을 만났으니 또 진념(軫念)해야 하는 데 합치된다. 강원 감사 김희(金憲)는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는 것으로 전지(傳旨)를 받들라.” 하였다.</p>	<p>如有不合，則雖係微物，封進官員，每皆被譴。乾馱之餒敗十七邑守令，並坐拿罷。乾果之腐朽三十邑守令，並被置對，事在數十年前。俄者，內局草記，道臣請罷，不得不允許者，蓋出於遵古例，存事體之意，而未必欲仍以勘罪也。方伯遞易，在所審慎。況值歉歲又合軫念。江原監司金憲，以從重推考，捧傳旨。”</p> <p>【태백산사고본】</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월 1일(무술) 2번째기사          기신에게 세찬을 내렸는데, 111세인 정이천에게는 더 지급하다</p>	<p>기신(耆臣)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하교하기를,          “전 동추(同樞) 정이천(鄭二天)은 나이가 1백 11세인데, 일찍이 선조(先朝) 때 매양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여 사찬(賜饌)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였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병이 없으니, 어찌 희한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이는 의의에 있어 은혜롭게 돌보아 주는 거조가 없을 수 없으니, 세찬을 더 지급하라.” 하였다.</p>	<p>○賜耆臣歲饌，教曰：“前同樞鄭二天年爲百有十一歲，曾在先朝，每命入侍賜饌，而予所目擊。此人之至今無病，豈不稀異？尊高年之義，不可無優恤之舉，歲饌加給。”</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4일(경오) 4번째기사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지내기 전에 우선 농 사 상황을 보고하게 하다</p>	<p>가뭄었다. 하교하기를, “양맥(兩麥)을 수확할 때를 당하여 서늘한 바람이 잇따라 불어오고 솟아오르 는 햇볕이 타는 듯하여, 이삭이 팠 것은 말라서 시들어 버리고 아직 이삭이 꽤지 않은 것은 길마르고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경파(耕播)가 시기를 어기게 되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따라서 비를 비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는데, 우선 기읍(畿邑)의 농형(農形)이 어떤지를 알 수 없어 바야 흐로 주저하고 있다. 기내(畿內) 각 고을의 일전에 내린 비가 어느 정도인지 와 당장 비를 바라는 양상에 대해 기백(畿伯)에게 내일 등대(登對)하여 아뢰 게 하라. 구거(溝渠)를 수리하고 천맥(阡陌)을 깨끗이 하고 해골[骸骨]을 묻어 주는 것은 모두 응당 행해야 하는 일에 속하는 것이니, 안으로는 경조(京兆) 와 밖으로는 기읍(畿邑)에서 아울러 마음을 다져먹고 봉행(奉行)토록 하라. 호 농(湖農)에 가뭄이 든 것이 기농(畿農)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일체로 엄히 계 척시키라.” 하였다.</p>	<p>○旱。 教曰：“正值兩麥登場之會，淒 風連吹，出日如烘，發穗者枯損，未發 穗者乾縮，從以耕播愆期，民事切悶。 禱雨不容少緩，而姑未知畿邑農形如 何，方趑趄。 畿內列邑，日前得雨， 目下望雨之狀， 畿伯明日登對以奏。 修溝渠、淨阡陌、掩骸骸，皆屬應行之 節。 內而京兆，外而畿邑，並令着意 奉行。 湖農之曠乾，無異畿農，一體 嚴飭。”</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5일(신미) 1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이형규에 게 기내의 농사상황을 묻다</p>	<p>주강(晝講)하고, 겸하여 차대(次對)도 행하였다. 경기 관찰사 이형규(李亨達) 를 불러 보고서 기내(畿內)의 농형(農形)과 비를 바라는 것의 완급(緩急)에 대 해 하문하였다.</p>	<p>辛未/晝講，兼行次對。 召見京畿觀察 使李亨達，問畿內農形，望雨緩急。</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10일(병자) 1번째기사 영우원에 나아가 작헌 례를 행하고, 환궁할 때 농부를 불러 농사 형편을 묻다</p>	<p>임금이 영우원(永祐園)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나서 뒷 산등성이를 살펴보았다. 대가(大駕)가 돌아오는 길에 안악현(安樂峴)에 이르러 노농(老農)을 불러 농사의 형편에 대해 묻고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들렀다.</p>	<p>丙子/上詣永祐園，行酌獻禮，巡審後麓。駕還，至安樂峴，召老農問農形，歷臨東關王廟。</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13일(기묘) 2번째기사 사복사에서 조마법을 정하여 아뢰다</p>	<p>사복사에서 아뢰기를, “매달 초1일·11일·21일은 관(官)에서 조마(調馬)하고, 초5일·초10일·15일·20일·25일·30일은 후원(後苑)에서 조마를 하고, 초7일·17일·27일은 사사로이 조마하도록 1개월에 모두 12차에 걸쳐 조마하는 것을 법식으로 드러내어 정하였습니다.” 하였다.</p>	<p>司僕寺啓言：“每月初一、十一、二十一日，官調馬，初五、初十、十五、二十、二十五、三十日，行後苑調馬，初七、十七、二十七日，私調馬，一朔調馬爲十有二次，著爲式。”</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23일(기축) 2번째기사 전세와 대동미 조선 40소를 같은 날에 출 발시킨 호남의 도신에 게 하유하다</p>	<p>호남의 도신(道臣)에게 하유하기를, “전세(田稅)·대동(大同)의 조선(漕船) 40소(艘)를 같은 날 장발(裝發)시킨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도백(道伯)이 공무(公務)를 봉행한 것이 매우 가상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잘 호송하지 못하면 지방관과 도백은 계척시키지 못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p>	<p>諭湖南道臣曰：“田稅、大同，漕船四十艘，同日裝發，近所罕見。道伯奉公，殊可嘉然，若不善護送，則地方官與道伯，難免不飭之罰也。”</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30일(병신) 1번째기사 영의정 서명선이 쌀값 이 오르자 도고인을 엄단할 것을 청하다</p>	<p>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특별히 도민(都民)들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을 진념(軫念)하고 또 쌀값이 한껏 뛰어오를 것을 염려하여, 내수사(內需司)의 쌀 천 석(石)을 값을 낮추어 팔도록 허락하였고 혜청(惠廳)의 공가미(貢價米) 2만 석(石)도 기일에 앞서 미리 내렸습시다만, 시가(市價)는 전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전 인(塵人)들이 깊이 저장해 두었다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계교를 부리고 있는 것일 것이니, 청컨대 도고(都賈)의 부류를 엄히 금단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무친(貿遷)하는 즘음에 수시로 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니, 평시서 제조(平市署提調)로 하여금 간간이 살펴서 계칙하게 하라. 도고(都 賈)의 폐단도 또한 엄금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새로 녹용(錄用)된 옥당(玉堂)은 특교(特敎)나 죄보(罪補)가 아니고서는 으레 읍재(邑宰)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청컨대 홍주 목사(洪州牧使) 윤장렬 (尹長烈)은 개차(改差)하고 정관(政官)은 추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丙申/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 “特軫都民之艱食， 且慮米直之高騰， 內需司米四千石， 減價許買， 惠廳貢價 米二萬石， 前期預下， 而市直依舊踊 貴。 必是塵人輩， 深藏罔利之計。 請 嚴禁都賈之類。” 敎曰：“貿遷之際， 隨時高下， 不是異事。 令平市署提調， 間間察飭。 都賈之弊， 亦爲嚴禁。” 左議政洪樂性啓言：“新錄玉堂， 非特 敎與罪補， 例不得出宰。 請洪州牧使 尹長烈改差， 政官推考。” 從之。</p>
<p>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4월 30일(병신) 5번째기사 호남과 관북의 도신에 게 농정에 힘쓸 것을</p>	<p>호남(湖南)과 관북(關北)의 도신(道臣)에게 칙유(飭諭)하기를, “호남에는 우양(雨暘)이 알맞게 되어 산군(山郡)과 연읍(沿邑)의 보리농사가 잘 여물었다고 하니, 백성의 일이 더없이 다행스럽게 되었다. 이 뒤로의 과농 (課農)과 급량(給糧) 등의 일에 관해 수재(守宰)들에게 거듭 신유(申諭)시켜 각각 마음을 다져먹고 일을 하게 할 것은 물론, 몸소 전준(田峻)3151) 이 되</p>	<p>飭諭湖南、關北道臣曰：“湖南雨暘均 適， 山郡沿邑， 麥事登稔云， 民事萬 幸。 嗣後課農給糧等節， 申諭守宰， 俾各着意， 身作田峻， 遍行溝洫， 動者 勸之， 惰者警之， 無以目前， 稍熟地 心。 北關向聞嘆乾太甚， 米直勝踊，</p>

<p>칙유하다</p>	<p>어 구혁(溝洫)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더욱 권면시키고 게으른 자는 경책시켜서, 목전에 조금 곡식이 잘 되었다는 것으로 해이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북관은 지난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뭄이 너무 극심하여 쌀값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황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열흘 넘어 세 번 오고 스무날 넘어 두 번 온 비의 다과(多寡)가 어떠하며, 농형(農形)은 소생할 가망이 있는지를 상세히 치문(馳聞)하게 하라.” 하였다.</p>	<p>民情惶汲云。旬三念二之雨，多寡何居，農形有蘇醒者乎，詳細馳聞。”</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8월 13일(정축) 1번째기사 경기의 한재지에 세금 감면, 대여곡물 감해주어 백성이 유리되지 않게 하다</p>	<p>경기의 백성들에게 유시하기를, “아! 너희 경기 백성들은 내 속마음의 유시를 잘 들으라. 내 일찍이 《주례(周禮)》를 보니, 흉년을 구제하는 열두 가지의 정사 중에서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두 번째에 들어 있었다. 세금을 적게 받는 요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금을 줄이고 대여해 준 곡식의 이자를 줄여야 한다. 올해 농사는 경기·영남·호남이 흉년이 들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경기가 특히 더 심하고 경기 중에서도 연야(沿野)가 또 더 심하였다. 이는 대체로 처음에는 가물었다가 나중에 홍수가 졌고 간간이 충재(蟲災)와 풍재(風災)가 드는 등 여러 가지로 농사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아! 한재가 들면 몸소 빌고 충재가 생기면 포양(醕禳)3231) 을 하고 한번 비가 오거나 한번 바람이 불면 내 아침부터 밤늦도록 까지 정사에 열중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감히 쉬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근을 당하게 하고 말았으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한 사람에게 그 잘못이 있다. 동방 수천 리의 백만 백성들이 그 누가 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마는, 경기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지역이니, 당(唐)나라의 기방(冀方)과 한(漢)나라의 삼보(三輔)와 같다. 원침(園寢)을 받들고 있으며 요</p>	<p>○丁丑/下綸音于京畿民人曰：“嗟！爾畿甸民人，明聽予心腹之諭。予嘗觀《周禮》十二荒政，薄征居第二。薄征之要，莫先於蠲稅與減糶也。今年穡事，畿甸·嶺·湖，以歉告，而畿甸最甚，畿甸之中，沿野又尤甚。蓋始旱終澇，間以蟲風，凡所以害我禾稼者，無所不有。噫！旱則躬禱，蟲則醕禳，一風吁予食，一雨宵予衣，自春徂秋，予不敢遑息，而使吾民罹此饑饉，靜言思之，咎在一人。環東土數千里，百萬生靈，孰非吾赤子，而曰若畿甸，國家根本之地也，在唐冀方，在漢三輔。奉園寢，而列保障。水陸之要衝，舟車之都會，捍衛上都，應接諸路，賦役繁而重，人民貧且瘵。雖在</p>

새지가 줄지어 있다. 수로나 육로의 요충 지대이므로 수레나 배가 모두 모인다. 도성을 호위하고 여러 도를 응접하므로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가난하고 수척하다. 그러므로 비록 풍년이 든 해일지라도 창고에 수송하느라 시달리는데 더구나 흉년을 만났으니, 어찌 납부할 세금을 마련해 낼 수 있겠는가? 별자리가 허성(虛星)의 성좌로 옮겨져 가을철이 한창이다. 저 제대로 경작하고 농사에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농기구를 손질하여 사방의 마을에서 모두 나오는데, 아! 우리 경기의 백성들은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참혹하게 재해를 입어 항아리도 채우지 못하고 또 한줌의 이삭도 얻지 못하였구나. 어찌 너희들이 영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나에게 덕이 없는 소치이다. 아! 너희들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양육하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며 허둥지둥하면서 입에 풀칠을 할 계책도 없으니, 어느 겨를에 곡물을 마련해내어 세금과 대여받은 곡물을 납부하겠는가? 10월에 창고를 열면 온 경내에 해독이 퍼진다. 납부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죄다 굶어모아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는데, 사세상 어떻게 아이를 껴안고 이끌며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과인이 계미년(3232)·경인년(3233)의 흉년에 아우성치던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밤늦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내가 또 생각해 보니, 차라리 몇 천 경(頃)의 세금과 몇 만 포(包)의 대여해 준 곡물을 못 받더라도 차마 백성의 부부(夫婦)가 구렁으로 쓰러지는 것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다. 이에 도신에게 명하여 기한 전에 순시할 사람을 파견하여 다른 작물로 대파(代播)한 전답의 세금을 면제해 준 곳 이외에 늦게 이앙하고 재해를 받아 전혀 거두어 들이지 못한 곳은 들마다 자세히 재해의 상황을 조사한 다음 그 역시 모두 부세를 면제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대여해 준 곡물에 있어서는, 특히 재해를 심하게 입은 고을은 3분의 1을 감해 주고, 그 다음은 4분의 1을 감해 주고, 조금 나은 고을은 5분의 1을 감해 주게끔 하여 일도(一道)의 대소 백성들로 하여금 골고루 똑

樂歲，尙困倉廩之輸，況值荒年，寧辦總結之納？星次在虛，秋序方殷。彼耕不讟、穎不害者，庠錢理鑄，四隣皆出，而嗟！我畿氓，備經辛苦，慘被災損，既置甑石之收，又乏穗秉之利，豈汝不啓？由予否德。嗚呼！爾等，仰不得以事父母，俯不得以育妻子，嗷嗷皇皇，無計餬口，尙有何暇出粟米，以應公稅與官糴也哉？倉開十月，毒遍一境。欲納則括如龜毛，不納則加以犴牢，其勢安得不保抱携持，散而之四乎？予寡人所以如聞癸庚之呼，靡安乙丙之枕者也。予又思之，寧失幾千頃公稅、幾萬包官糴，不忍坐視一夫一婦之轉于丘壑。廼命道臣，前期發巡，代播田蠲稅處外，晚移受災之全不掛鎌者，逐野逐坪，細審執災，亦欲竝行免賦。至於還穀尤甚邑，減三之一，之次邑減四之一，稍實邑減五之一，俾一道小大民庶，均蒙一視之澤，而尤甚邑、面里尤甚處，何拘三之一。雖或減其半，無所不可。且聞旱田頗勝於水田，雖在已減之外，當捧條中，亦許相當穀，酌量代捧。以稅則蠲，以糴則減，如是而爾輩棄鄉里離親戚，去將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 중 특히 심한 읍(邑), 면(面), 리(里)의 더욱 심한 곳은 어찌 3분의 1에 구애되리오. 비록 절반을 감해 주어도 불가할 것이 없다. 또 들건대, 한전(旱田)은 수전(水田)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비록 이미 감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나, 받아들일 조항 중에서도 그와 상당한 곡물을 적당히 헤아려 대신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세금은 감면해 주고 대여해 준 곡물은 감해 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그대들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 장차 어디로 가려고 한단 말인가? 아! 우리 백성들은 사는 곳에 정착하여 혹시라도 뿔뿔이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쓰러져 의지할 데가 없는 무리들은 등급을 나누어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내년 봄에 창고를 열어 진휼하고 대여해 주겠다.

아! 그대 경기 백성들은 내 속마음의 유시를 잘 들으라. 아! 재해를 봐주게 할 경우 허위와 진실이 쉽게 뒤섞이어 사특한 집안에서 대뜸 먼저 차지하고 갑자기 병이 생긴 벼도 모두 억지로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 곡물의 대여를 중지할 경우 연말 때마다 빈궁한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토호(土豪)들만 농간을 부리고 있으므로, 내가 매우 가슴 아파하였다. 지금 가을이 되기 전에 거둬 유시를 선포한다마는, 시행의 여부는 수령에게 달려 있으며 관리와 단속은 도백에게 달려 있다. 하나라도 근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象魏)3234)에 법이 걸려 있는데다가 경기는 지척에 있어서 뜨락이나 차이가 없으니, 내 마땅히 근실히 하였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상벌을 시행하겠다.

아! 다른 작물로 대신 과중하고 늦게 이앙을 해서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었거나 혹 그 다음 가는 것에 대해 대여의 곡물로 감해 준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혜택을 베풀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재해를 입은 실상이 마땅히 구별이 있어야 하고 감해 주는 것은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농사의 양식과 진휼의 밀천은 모두 그대들의 밥거리와 죽거리이며 공사간에 창고는 그대들이 간직해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대들은 모

何之? 咨! 我民人, 奠厥攸居, 罔或流散, 若其最顛連, 尤無依之類, 又俟分等啓聞, 予於開春, 發倉而賑貸之, 嗟爾畿甸民人, 明聽予心腹之諭。 噫! 俵災則虛實易蒙, 汙邪之室, 輒先橫占; 卒瘁之稼, 竝入勒徵, 停糴則每在歲末, 窮民未嘗沾惠, 豪鄉得以售奸, 予竊甚痛之。 迨今未秋, 布茲申諭, 能否在守宰, 管檢在道伯。 一有不勤, 法懸象魏, 邦畿咫尺, 無間戶庭, 予當考勤慢, 行賞罰。 嗚呼! 代播及晚移之執災, 尤甚或之次之減糴, 非曰稱意, 非曰施惠。 災實宜有區別, 捧減俱出懷保。 農糧賑資, 皆汝飯粥, 公倉私困, 等汝蓋藏, 爾等咸須聞知。 凡停退外穀物, 趁此甕罍未罄, 各宜隨力早輸, 又若換捧之令, 姑掇目前賙飢之政, 擬舉歲後。 咨! 我民人, 恃而無恐。 噫! 葭屋疾苦, 宛若在己。 聞汝等安堵, 予眉可展, 聞汝等不安堵, 予心如焚。 嗟! 爾畿甸民人, 明聽予心腹之諭。”

	<p>두 알아야 할 것이다. 뒤로 물린 대상 이외의 곡물은 향아리의 곡식이 바닥이 나기 전에 빨리 힘닿는 대로 일찍 바치도록 하라.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납부하라고 한 법령은 잠시 목전의 상황을 구제하려는 것이고, 굶주림을 구제하는 정사는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니, 아! 우리 백성들은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 민가의 고통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대들이 안도(安堵)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눈썹이 펴지고 그대들이 안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타는 것 같다. 오! 그대 경기 백성들은 나의 진심어린 유시를 잘 듣도록 하라.”</p> <p>하였다.</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8월 25일(기축) 1번째기사 영의정 서명선이 경기 의 미가상승을 막기 위해 관서 등의 쌀로 구제할 것을 청하다</p>	<p>차대를 하였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경기의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판단이 나자 도성의 쌀값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청컨대 관서(關西)의 전미(田米) 3만 석과 해서(海西)의 전미 1만 석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배로 운반해 들여와야만 실로 곡물을 옮겨다 구제하는 도리에 맞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성부 판윤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일찍이 오부(五部) 인구의 전체 수효를 헌수(獻數)의 고사에 의거해서 매년 연말에 별단(別單)에 써서 아뢰면 이어 사국(史局)에 간직해 두라고 명하셨으니, 서울이나 지방이 달라서는 아니됩니다. 팔도와 양도(兩都)의 인구 수효도 연말 안에 죽 써서 신의 부서에 보내어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己丑/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畿農已判歉荒，都下米踊。 請關西田米三萬石、海西田米一萬石，自今秋限明春船運，實合移粟接濟之道。” 從之。</p> <p>漢城府判尹徐有隣啓言：“曾有五部人口總數，依獻數故事，每歲末別單書啓，仍有藏史局之命，京外不可異同。八道、兩都人口數，請令趁歲末列錄，送于臣府以啓宜也。” 從之。</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p>		<p>癸巳/觀刈于觀豐閣。</p>

<p>47년) 8월 29일(계사) 1번째기사 관풍각에서 벼 베는 것을 관람하다</p>	<p>관풍각(觀豐閣)에서 벼 베는 것을 관람하였다.</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0월 6일(기사) 6번째기사 태묘 제사시에 친히 제사 지낼 때와 차이 나지 않게 하라고 헌 관에게 전하다</p>	<p>태묘에 겨울 제사를 지낼 헌관(獻官)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몸소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 사실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탄 식이 나온다. 대행(代行)할 때에 의식의 절차가 허술해지기 쉬우니, 새벽에 술을 올릴 때부터 변두(籩豆)3254) 를 철거할 때까지 일체 찬홀(贊笏)3255) 의 구령에 따라서 하도록 하라. 그리고 악무(樂舞)로 말하건대, 신을 맞이할 때에는 반드시 구성(九成)3256) 에 따라 하고 술잔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일 장(一章)을 끝마쳐서 혹시라도 내가 친히 제사를 지낼 때와 차이가 나지 않도 록 하라는 뜻으로 헌관에게 전하라. 제물이 규식에 어긋나는 것이나 재관(齋 官)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각별히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p>	<p>諭太廟冬享獻官曰：“未能躬將，實有 如不祭之歎。攝行之時，儀節易致草 草，自晨裸，至于撤籩豆，而一從贊笏 爲之。且以樂舞言之，迎神則必準九 成，奠酌時必卒一章，無或與親享差異 之意，傳于獻官。祭品之違式，齋官 之失次者，另加糾察。”</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0월 16일(기 묘) 5번째기사 경기 재해지 결수를 1 만 3천여 결에 준하여 대여 곡물을 더 줄 것 을 명하다</p>	<p>비변사에서 경기의 재해에 대여해 주는 곡물을 더 줄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 를, “올해 경기의 흉년은 최근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재해를 돌봐주는 일은 사실 백성의 고통을 돌보아 주는 것 중에서 큰 것이므로 옛날에 없던 예라도 만들 어 시행해도 되는데 더구나 이미 행한 한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는가? 본도에서 청한 재해지 결수를 원획(元劃)을 통계내어 1만 3천여 결에 준하여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다.</p>	<p>備邊司，以京畿俵災加劃啓。教曰： “今年畿農失稔，挽近所無。惟此劃災 之舉，實係民隱之大者，無於古之例， 尙可創行，況有一二已例？本道所請災 結，通計元劃，準一萬三千餘結，特爲 許施。”</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0월 28일(신 묘) 1번째기사 하례시 기근으로 고생 하는 기호, 영남의 방 물은 올리지 말 것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현재 기호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정처를 잃고 있으니, 소중하다는 뜻에서 하례할 것이라면 거행하되, 의문(儀文)에 있어서는 생략하는 쪽으로 해야겠다. 19 조정의 보감을 친히 올리고 하례를 드릴 때에 기호 및 영남의 방물 물선은 모두 올리지 말고 그 나머지 여러 도는 해당되는 전(殿)에만 봉 진하게 하라.” 하였다.</p>	<p>辛卯/教曰: “見今畿湖告歉, 民不奠居, 以爲所重之意, 賀則行焉。 凡係儀文 則宜從省略。 十九朝《寶鑑》親上陳 賀時, 畿湖及嶺南方物物膳, 竝停免, 其餘諸道, 只令於當殿封進。”</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1월 4일(정유) 1번째기사 겨울 향사를 위해 희 생과 제기를 살펴보다</p>	<p>경모궁에 전배하고 나서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는데, 겨울 향사(享祀)가 다 음날이었기 때문이다.</p>	<p>○丁酉/展拜于景慕宮, 省牲省器。 冬 享在翼日也。</p>
<p>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1월 17일(경 술) 1번째기사 영희전에 전배하고 나 서 제기를 살펴보고 재속하다</p>	<p>영희전(永禧殿)에 전배하고 나서 제기를 살펴보고 이내 재속(齋宿)하였다</p>	<p>○庚戌/展拜于永禧殿省器, 遂齋宿。</p>
<p>정조 14권, 6년(1782</p>		<p>○庚午/備邊司啓請, 各貢貢價, 以純</p>

<p>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2월 8일(경오)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공물의 가격을 순전으로 미리 내릴 것을 청하다</p>	<p>비변사에서 각종 공물의 가격을 몇 년까지 순전(純錢)으로 미리 내릴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돈이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이다.</p>	<p>錢限數年預下。從之。蓋是時，錢荒太甚也。</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월 4일(병신) 1번째기사 군사들에게 음식을 배풀어 위로하다</p>	<p>춘당대에 나아가 군사들을 호궤(犒饋)3324) 하였다.</p>	<p>○丙申/御春塘臺，犒饋軍兵。</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월 8일(경자) 3번째기사 사직서에 제사의 의식·제단·유래 등을 편찬하여 비치할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사직서 영 윤광호(尹光濩)를 불러 보고 사직서의 의궤(儀軌)를 가져오라고 하자, 윤 광호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사직서의 제거(提舉)에게 명하여 제사지내는 의식·제단·관사 및 유래된 사실을 종류별로 나누어 편찬해서 사직서에 비치해 두라고 명하였다.</p>	<p>○上召見社稷署令尹光濩，徵本署儀軌。光濩對以無有。上命本署提舉，撰次凡祀享儀式、壇壝、館舍及流來事實，彙分類次，藏于本署。</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2월 8일(기사) 1번째기사</p>	<p>경모궁에 전배하고 나서 봄 제사에 사용할 희생과 그릇을 살펴보았다.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려는 참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자 대신에게 대행하라고 명</p>	<p>己巳/展拜于景慕宮，仍省春享牲器，上將親行享事，雨甚命大臣攝行。</p>

<p>비가 오자 제사를 대신에게 대행시키다</p>	<p>하였다.</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2월 8일(기사) 2번째기사 의식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헌관에게 주의시키다</p>	<p>하교하기를, “옷을 적시어 모습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고인이 경계하였으므로, 제사 때 비가 내릴 적마다 날짜를 뒤로 물려서 거행하라고 하거나 설행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백관과 군사에게 주는 폐단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경과 정성이 결여될까 염려해서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곤 하였다. 예방승지는 제사지내는 곳에 가서 나의 이러한 뜻을 헌관(獻官)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미 직접 제사지내는 것과 크게 다르고 또 집사의 수효도 적으니, 제례를 거행할 때에 처마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의식대로 제사를 지내어 초라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직접 주의시키고 제사가 끝나면 돌아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教曰：“沾服失容，古人所戒，每於祀典，或值雨下之時，輒命退行。或攝儀，不特爲百官軍兵之弊而已。誠以欠敬欠誠爲慮故耳。然如不祭之歎，實不能自己。禮房承旨詣享所，傳予此意於獻官，既與親享大異。且執事數少，行禮時簷楹之內，足可避雨，必須如儀行祀，無或草率之意面飭，待祭畢回奏。</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2월 19일(경진) 8번째기사 경기의 농사, 봄갈이를 살피게 명하다</p>	<p>사관(史官)과 선전관을 나누어 파견하여 가까운 경기(京畿)의 봄갈이를 살피보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여러 도 가운데 경기도가 농사에 가장 게으르다. 지금으로 말하더라도 봄갈이를 하지 않은 밭이 거의 절반이나 되는데, 소가 없다고 핑계대기도 하고 종자가 없다고 핑계대기도 하는 등 부지런히 갈고 심는 일을 보지 못하였다. 새해 처음에 농사를 권장하는 의의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수령이 만약</p>	<p>分遣史官、宣傳官， 審察近畿春耕。教曰：“畿甸懶農，實爲諸道之最。雖以目下言之，不墾之田，殆至強半，或稱無牛，或托乏種，未見有服田力穡之舉。歲初勸農之意，果安在哉？爲邑宰者，若能躬任田畯之事，無牛則借給，乏種者優分，日闢蕪菜，考其勤怠，民雖欲懶農，得乎？今日一二處審察所</p>

	<p>몸소 농사의 일을 맡아 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를 빌려서 주고 종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종자를 넉넉히 나누어 주어 날로 묵은 전지를 갈게 하되, 근실히 하였는지의 여부를 상고하면 백성들이 비록 농사를 게을리하고 싶어도 되겠는가? 오늘 한두 곳을 살펴보고 보고한 것도 이러하니, 이밖에 고을들도 똑같다는 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다. 의정부로 하여금 경기의 도백에게 공문을 보내어 순시하는 곳마다 직접 수령을 주의시키고 백성을 일깨워서 절대로 그전처럼 소홀히 하지 말게끔 하라.” 하였다.</p>	<p>登聞者，如許，外此列邑之同，足可反隅。令廟堂，行會畿伯，巡到處，使之面飭邑宰，曉諭民人，切勿如前泛忽。”</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3월 1일(임진) 1번째기사 각도에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에 힘쓰라고 주의시키다</p>	<p>여러 도에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를 잘 하라고 주의시켰다.</p>	<p>壬辰朔/飭諸道課農之政。</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3월 2일(계사) 1번째기사 황단의 제사를 대행시키려하나 우의정 김익이 조정에 나오지 않는다</p>	<p>황단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다. 재계할 때에 비가 많이 내리자, 약원(藥院)의 신하들과 여러 승지들이 아뢰기를, “비로 인해 섭행시킨 기왕의 사례가 한번뿐만이 아니니, 섭행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섭행시키고 싶으나 우의정이 조정에 나올 의향이 없다. 만약 제사가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빨리 조정에 나온다면 섭행하라고 명하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교리 엄사만(嚴思晩) 등이 차자를 올려 섭행시키라고 청하니, 비답하</p>	<p>○癸巳/詣皇壇，省牲器。齋宿時，雨甚，藥院諸臣、諸承旨啓言：“因雨命攝，已例不一，請攝儀。”批曰：“雖欲命攝，而右揆無意造朝。若念享事之莫重，趁時造朝，何難命攝也？”校理嚴思晩等，上劄請攝儀。批曰：“因雨命攝，已例可按，而見今中書曠任，雖欲命攝，實無奈何。躬將與否，在大臣之造朝矣。”右議政金煜胥命。</p>

	<p>기를,  “비로 인해 섭행시킨 지난 사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정승의 자리가 비어서 섭행시키고 싶어도 사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여부는 대신이 조정에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하였다. 우의정 김익이 명을 기다리니, 하유하기를,  “제사를 하룻밤 앞두고 있는데, 의정부에 공무를 보는 사람이 없다. 가령 경에게 반드시 사양해야 될 의리가 있더라도 잠시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도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이유없이 사양하는 경 때문에 막중한 제사의 반열에 시임 대신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조정에 체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은 즉시 조정에 나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김익이 끝내 명을 따르지 않았다.</p>	<p>諭曰：“享儀隔宵，而中書無行公之人。藉令卿有必辭之義，暫膺旋引，抑或一道，豈可因卿無端異讓，致使莫重祭班，無時任大臣？其可曰朝廷有體統乎？卿其卽爲造朝。” 燧終不應命。</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4월 14일(갑술) 2번째기사  중국 사신 올 때의 비용으로 관서의 소미 1만 석을 개성부에 떼어주다</p>	<p>관서의 소미(小米) 1만 석을 개성부에 떼어주어 중국의 사신이 올 때에 들 비용에 보태라고 명하였다. 이는 좌의정 홍낙성의 말을 따른 것이다.</p>	<p>○許劃關西小米一萬石于開城府，俾補勑需。從左議政洪樂性言也。</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4월 19일(기묘)</p>	<p>진휼청에서 굶주린 호구에 대여의 쌀을 돌면서 다 나누어 주었다고 아뢰었다.</p>	<p>○賑恤廳，以饑戶糶米畢巡啓。【五部抄戶總一萬三千八百八十九戶，五巡發</p>

<p>2번째기사          굶주린 호구에 대여의 쌀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진휼청의 보고</p>	<p>【오부(五部)의 호수가 총 1만 3천 8백 89호였는데, 다섯 차례 발매한 소미(小米)가 2천 4백 44석이었다.】 1월부터 발매하기 시작하여 한 차례 돌며 나누어주었다. 임금이 그때마다 한성부 판윤과 진휼청 당상을 불러 주의시켜 정밀하게 뽑고 정밀하게 나누어주어 한 사람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 나누어준 것이다.</p>	<p>賣小米二千四百四十四石。】自正月始糶，每一巡分糶。上輒召漢城府判尹賑恤廳堂上，飭諭之，俾精抄精分，毋令一夫不獲。至是，畢分。</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5월 28일(무오) 1번째기사          관북에 배정한 단삼을 4근까지 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다</p>	<p>비변사 당상 서유린을 불러 보고 관북에 별도로 배정한 단삼(單蔘)을 4근까지 기한을 뒤로 물리도록 하였다. 관찰사 서유녕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戊午/召見備邊司堂上徐有隣，命關北別卜定單蔘，限四斤停退。從觀察使徐有寧啓請也</p>
<p>정조 15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6월 25일(을유) 1번째기사          기강을 세우고 언로를 열며, 호서의 제민창의 3천 석을 경기로 옮기기로 하다</p>	<p>상참과 차대를 겸행(兼行)하였다. 영의정 정존겸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정치를 논한 자는 반드시 규모를 정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을 우선적인 일로 삼았는데, 도(道)는 정치를 하는 근본이고 마음은 정치가 나오는 근원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고하게 뜻을 세워 정밀한 마음과 전일한 뜻으로 규모를 정하는 터전으로 삼고, 중도와 표준을 세우는 것으로 기강을 세우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가상히 받아들였다. 또 아뢰기를, “숨기지 않고 건의하는 문로(門路)를 활짝 열어서 일세의 풍습을 크게 변화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p>	<p>○乙酉/常參，兼行次對。領議政鄭存謙啓言：“自古論治者，必以定規模、立紀綱爲先，而道乃出治之本，心爲出治之源。伏願殿下，立志卓然，以惟精惟一，爲定規模之基址，建中建極，爲立紀綱之根本焉。”上嘉納。又啓請：“廣開不諱之門，使一世風習丕變。”批曰：“含默成風，由予來諫之誠，未能孚人而然，思益自勉也。”又啓言：“畿內穀簿，本自不敷。昨年代捧，其數夥然，明年種子，勢難分排。請湖西濟民倉租五千石，以漕船分載，</p>

	<p>“입을 다물고 있는 풍속이 성행하는 것은 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나의 정성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므로 더욱 스스로 힘쓰려고 한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의 곡물이 본래부터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다른 곡물로 대신 받아들인 수량이 많아서 내년에 과중할 종자를 사세상 나누어 주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호서의 제민창(濟民倉)에 받아 놓은 조세 5천 석을 조운(漕運)의 배에 나누어 실어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올려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수송하는 폐단을 끼친다고 하여 3천 석 한도 내로 실어오라고 명하였다.</p>	<p>趁風高前上送。”上以運輸貽弊，命限三千石運來。</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7월 18일(정미)  2번째기사  수레·벽돌의 사용, 당  나귀·양의 목축 등 중  국의 문물에 대한 홍  양호의 상소문</p>	<p>대사헌 홍양호(洪良浩)가 상소하기를,  “신이 그 동안에 외람되게도 전대(專對)하는 사명(使命)을 띠고 연경(燕京)과 계주(薊州) 사이를 왕래해 보건대 산천(山天)과 성읍(城邑)은 모두가 요(堯)임금과 우(禹)임금 때의 고적(古跡)이었지만,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은 다시 옛날의 것이 아니었기에 둘러보고서 자다가도 한탄스러웠다고, 더욱이 황왕(皇王)의 훌륭한 시절을 보게 되지 못했음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땅은 곧 옛 중화(中華)의 것이고 사람은 곧 선왕(先王)들의 백성이어서, 흘러 온 풍습과 남아 있는 세속은 그래도 징거(徵據)할 만한 것이 있었고, 이용(移用)과 후생(厚生)의 기구에 있어서도 모두 법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개 주관(周官)이 옛 제도가 백대(百代)토록 서로 전해지면서, 비록 여러 차례 병화(兵火)의 변이 있어 화이(華夷)가 번갈아 들게 되었지만, 민생과 국가의 큰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금(古今)의 변함이 없는 법이어서, 마침내 어느 외국(外國)이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p>	<p>大司憲洪良浩上疏曰：  臣於向來，猥膺專對之命，往來燕、薊之間，山川城邑，皆是堯、禹舊跡，而衣冠文物，非復昔日，顧瞻寤歎，益恨未及見皇王盛時也。然地是中華之舊；人是先王之民。流風餘俗，尚有可徵。至於利用厚生之具，皆有法度。蓋是周官舊制，百代相傳，雖有金火之屢燼，華夷之迭入，而民國之大用，亘古不易，終非外國之所可及者。臣嘗於簡編中，粗有一二究揣者，而耳聞不如目見，乃今身履其地，蓋有犁然可信者。夫觀風、詢俗，使臣職也。謹取其有裨於國計，寢切於民用者，分爲六</p>

신이 일찍이 간편(簡編) 내용에서 조금이나마 한두 가지를 연구하여 헤아린 것이 있었기는 해도, 귀로 듣게 된 것이 눈으로 보게 된 것만은 못한 법인데, 이제 와서 몸으로 그 땅을 밟아 보니 대개 놀랍게도 믿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저 풍습을 관찰하고 세속을 물어봄은 사신(使臣)의 직책인 것이기에, 삼가 국가의 계획에 도움이 되고 민생의 사용에 절실한 것들을 취택하여 여섯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아랫 구절에 개열(開列)하였으니, 오직 성명께서 살펴보아 주소서.

첫째는, 수레 제도[車制]를 말하겠습니다. 옛적에 황제씨(皇帝氏)가 비로소 배와 수레를 만들어 통행할 수 없는 데를 건너 가게 하였기에 현원(軒輶)이라고 이름하였음은, 만세의 공로가 수레를 만든 것보다 더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일이고, 예법에 그 나라 임금의 부(富)를 묻게 되면 수레의 수효를 들어 답변하였음은, 그 나라의 사용하는 것으로 수레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온갖 공장(工匠)의 일은 각각 구실이 한 가지씩인데, 오직 수레에 있어서는 윤인(輪人)·여인(輿人)·거인(車人)·주인(輶人) 등의 직책이 있고, 경(徑)·위(圍)·척(尺)·촌(寸)의 제한과 장(長)·단(短)·숭(崇)·박(博)의 식(式)이 그림처럼 섬실(纖悉)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가 손으로 대보며 자귀로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유(先儒)의 말이 ‘수레는 천지의 형상을 갖춘 것으로, 사람이 그 속에 있게 됨은 역리(易理)의 삼재(三才) 육획(六畫)을 본받은 것이다.’고 했으니, 또한 민생의 기구(器具)는 수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대저 이러한 까닭에 다닐 적에 승차(乘車)가 있게 되고 싸울 적에는 용차(戎車)가 있게 되고, 짐을 실을 때는 대차(大車)가 있고 농가에는 역차(役車)가 있고 밭에 물을 댈 적에는 수차(水車)가 있으며, 천백(千百) 가지의 제작으로 각각 사용을 하게 되어, 안으로는 중국(中國)과 밖으로는 사방의 변방까지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험삼아 이번의 사행(使行)에

條，開列于左，惟聖明垂察焉。一曰車制。昔黃帝氏始作舟車，以濟不通，號以軒輶者，可見萬世之功，莫盛於造車也，禮問國君之富，數車以對，可見有國之用，莫大於車也。《周禮》《考工記》，百工之事，各一其官，而獨於車也，有輪人、輿人、車人、輶人等職。徑、圍、尺、寸之制，長、短、崇、博之式，纖悉如畫，足令人手按而斤斲焉。先儒之言曰：“車有天地之象，人在其中，法易之三才六畫。”又可見生民之器，莫重於車也。夫如是，故行則有乘車焉，戰則有戎車焉，任載有大車，農家有役車，灌田有水車，千百其制，各致其用，內而中國，外而四裔，莫不用車也。試以今行所見言之，燕京之內，輪轂相擊，填街溢巷，苟非賤隸、婁兒，則舉皆乘車而行。自燕至遼千餘里之間，軌轍相連，如印一跡，鑾鈴相聞，日夜不絕。關、陝、川、蜀之險，江、浙、閩、廣之遠，豪商、鉅賈，如行門庭。此不但通道大國，財貨殷富之致，足見用車之利，什百於馬也。今以行用商車觀之，一乘所駕，不過五六騾馬，而所載



본 것으로 말을 하건대 연경(燕京)에는 윤곡(輪轂)이 서로 거리에 그득하고  
 향간(巷間)에 넘치었는데, 진실로 비천(卑賤)한 노예나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  
 면 거개 모두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연경에서 요동(遼東)까지 1천여 리의  
 사이에 궤도(軌道)가 서로 이어져 마치 하나의 도장[印]을 찍어 놓은 것 같았  
 는데, 방울 소리가 서로 들리며 낮이나 밤이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섬서(陝  
 西) 관중(關中)·사천(四川) 촉도(蜀道)의 험악한 길과 강소(江蘇)·절강(浙江) 및  
 민월(閩越)·광둥(廣東) 등의 먼 길을 호상(豪商)과 대고(大賈)들이 마치 문정  
 (門庭)을 드나들듯이 했는데, 이는 단지 길이 뚫린 대국(大國)이고 재화(財貨)  
 가 풍부한 소치 만이 아니라, 수레를 사용하는 편리가 말을 쓰는 것보다 몇  
 십, 몇백 배가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수레를 두고 보건대 1승(乘)을 메는 말이 5, 6  
 의 나마(騾馬)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재(積載)하는 짐은 수십 필(匹)의 힘이 들  
 게 되는 것이었고, 당나귀 한 마리가 끌고가는 가벼운 수레도 세 사람이 함께  
 타고 다니며, 바퀴가 하나인 작은 원(輶)은 하나의 지아비가 뒤에서 밀고 다  
 니니, 또한 일은 절반이나 하고 공효는 배나 뒹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수레라는 것은 먹이지 않아도 되는 말이자 길을 다니는 짐과 같은 것이  
 었습니다. 민생들이 크게 사용하게 되고 온 나라의 편리하게 쓰는 기구가 이  
 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수레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가 험악하다는 것  
 이고 하나는 우마(牛馬)가 희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신이 하나하나  
 변해(辨解)하겠습니다. 대저 천하에 험악한 길은 촉도(蜀道)보다 더한 것이 없  
 는데도,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적차 사마(赤車駟馬)로 일찍이 성도(成都)를 지  
 나갔었고, 제갈량(諸葛亮)은 또한 목우 유마(木牛流馬)로 검각(劍閣)의 잔교  
 (棧橋)를 통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신이 지나가 본 바를 가지고 말하건

之任，可敵數十匹之力，至於一驢輕  
 車，三人竝乘，獨輪小輶，一夫後推，  
 亦可見事半而功倍也。蓋車者不食之  
 馬，行路之屋也。生民之大用，有國  
 之利器，無大於是。而獨我東方，不  
 能用車者何也？人之恒言，大約有二。  
 一曰道路之巖險也，一曰牛馬之鮮少  
 也。臣請逐一辨之。夫天下之險，莫  
 過蜀道，而相如之赤車駟馬，嘗過成都  
 矣；諸葛之木牛流馬，亦行劍棧矣。  
 直以臣之所經言之，則青石、摩天之  
 峻，殆過於我國之洞仙嶺，而車行無  
 礙，商旅相望，舉一而可推其餘也。  
 然則道路之險，不足憂也。夫我東牛  
 馬之鮮少，非生畜之不殖也，特由牧養  
 之不得其方，服乘之不順其性也。耽  
 羅之產，素稱大宛之種。北關之馬，  
 不讓冀北之駿。鳥場、沙苑，某置雲  
 布，豈真無馬耶？職由牧子之耗蠹，監  
 守之踈惰也，是謂失在於牧養也。至  
 於牛畜之蕃，莫如我國。京外屠殺，  
 一日不知幾千，而生生不息，則土風所  
 宜，不言可知。《經》曰：“服牛乘  
 馬。”蓋謂牛宜於服箱，馬宜於騎乘，  
 未嘗言用馬載物也。傳曰：“牛以引

대, 청석령(靑石嶺)과 마천령(摩天嶺)의 험준(險峻)은 자못 우리 나라의 동선령(洞仙嶺)보다도 더했지마는, 수레가 거리낌없이 다녔고 상인과 나그네가 서로 바라보았으니, 이 하나만 들어도 여타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험악한 것은 근심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대저 우리 동방(東方)에 우마(牛馬)가 희소한 것은 생산이 번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히 사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리기를 그의 성질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탐라(耽羅)에서 나는 말은 본래부터 대완(大宛)의 종자라고 했고, 북관(北關)의 말도 기북(冀北)의 준마(駿馬)만 못하지 않습니다. 도장(島場)과 사원(沙苑)에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어찌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목자(牧子)들이 좀먹듯이 소모해 버리고 감독하여 지키는 사람이 허술하여 태만하기 때문인 것이니, 이는 잘못이 목양(牧養)에 있다고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축(牛畜)의 번성이 우리 나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도살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천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생산이 쉬지 않게 되니, 풍토(風土)가 합당한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역경(易經)》에 ‘복우 승마(服牛乘馬)’라 하였으니, 대개 소는 복상(服箱)하기에 합당하고 말은 기승(騎乘)하기에 합당함을 말한 것으로, 일찍이 말에다 물건을 적재(積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傳)에 ‘소로써 인중(引重)하고 말로써 치원(致遠)한다.’고 했는데, 인중이란 것은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한 것이지 등에다 무거운 것을 짊어짐을 말한 것이 아니요, 치원이란 것은 행진(行進)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물건을 먼 데까지 가져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있어서 말은 타고 다니기에 합당한 것이지 인중(引重)하는 힘은 소와 같지 못함을 볼 수 있고, 소는 복상(服箱)하기에 좋지만 치원(致遠)하는 힘은 말만 같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니, 또한 일찍이 소에다 물건을 적재(積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소와 말이 모두 등에다 짐을 지게 되는데, 소는 그래도 가능하

重, 馬以致遠。” 引重者, 引車之稱, 非謂以背負重也。 致遠者, 行致之稱, 非謂致物於遠也。 於以見馬宜騎行, 而引重之力不如牛; 牛可服箱, 而致遠之健, 不如馬也。 亦未嘗言用牛載物也。 我國則不然, 牛馬皆任其背, 牛則尚可, 馬其殆矣。 由是之故, 江上載米之馬, 率半年而一易。 城中運柴之蹄, 過三冬而力盡, 大抵不斃則斃, 以之屠肆矣。 此豈馬之罪哉? 是謂失在於服乘也。 然則二者之說窮矣, 何苦而不用車也? 臣則謂非不能也, 乃不爲也, 非不爲也, 蓋未嘗求行之術也。 豈惟是哉? 君子安於循常, 不欲爲變通之論, 衆人狃於見聞, 不樂爲稀異之事, 故國家未嘗設法而禁之, 終無一人創行者, 雖或有慨然有志, 而苟非朝廷之令, 則力有所不及, 行之有不便焉耳。 臣嘗宦游諸路, 亦見國中, 多用車之處。 嶺南之安東、義城, 海西之長淵、信川, 關北之咸興以南六鎮諸邑, 皆用一兩牛之車, 運穀載柴, 往來數百里之間, 而制樣粗鈍, 不能行遠, 專由於未得其法, 而亦可見車無不可行之理也。 今欲行車, 莫如取法於中

지만 말은 위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에 강 가에서 쌀을 실어나르는 말은 대부분 반년이면 한 번씩 바꾸어야 하고, 성 안에서 시목(柴木)을 운반하는 말은 삼동(三冬)이 지나고 나면 힘이 다 되어버려, 대체로 죽지 않으면 앓은뱅이가 되는 탓에 따라서 도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말의 죄이겠습니까? 이는 잘못이 복승(服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한 것은 궁하게 된 것인데, 무엇이 괴로워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아니라 곧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일찍이 시행해 갈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어찌 오직 이것뿐이겠습니까? 군자(君子)들은 상례대로 하기만 편안히 여겨 변통해 가는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인(衆人)들은 견문(見聞)에만 익숙하여 희귀하고 특이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찍이 법을 만들어 금하지 않는데도 마침내 한 사람도 창시(創始)하여 실행해 가는 수가 없는 것인데, 비록 더러 분발하여 뜻을 가지게 된다하더라도 진실로 조정에서 명령하게 되지 않는다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게 되어 실행하기가 편리하지 못함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신이 일찍이 여러 도에 벼슬살이 다닐 적에 또한 우리 나라 안에도 수레를 사용하는 데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영남(嶺南)의 안동(安東)과 의성(義城), 해서(海西)의 장연(長淵)과 신천(信川), 관북(關北)의 함흥(咸興) 이남 육진(六鎭)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한두 마리의 우차(牛車)를 사용하여, 곡식을 운반하고 시탄(柴炭)을 실어나르느라 수백 리의 사이를 오고가고 했는데, 제작이 거칠고 둔하여 멀리 가기는 불가능했음은 오로지 법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 또한 수레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레를 운행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중국에서 취해 오는 것이 좋으니, 먼저 여러 군문(軍門) 및 양서(兩西)의 감영(監營)·병영(兵營)과 의주(義州) 등의 곳으로 하여금 수레 공장(工匠)을 연경(燕京)에 보내어 모든 수레의

國。先令諸軍門及兩西監、兵營，義州等處，送付車工於燕，使摸來諸車之制，各造幾輛，先使行用，各見便利，則列邑效之，他道效之，富戶效之，不過幾年，遍於一國，而其利之博，不可勝言矣。試言其大者，一則商賈轉輸，百貨流通也；一則貢獻賦稅，雇賃費省也；一則馬力不困，騎馬可裕也。以至戎車備，而武威自壯；傳車成，而駟騎少閒；水車行，而田野大關矣。且以使行言之。三价所帶驛馬、刷馬，至於數百匹之多，及到柵內，歲幣乾糧，輒雇車運，其直費銀數千。此皆逐年尾閭之洩也。豈若我車我載，可行可止？既省雇賃之費，又除遲淹之弊，利害豈不較然乎？誠自灣府，較量使行馬匹，造成幾輛輕車，以備載運往來，則所把之馬，可減三五之一，而彼之雇價，因此自除。計一年造車之費，不過捐數年雇馬之資，而永除無窮之費矣。《易》曰：“不言所利，大矣哉。”王政，不必言利，而節用，所以愛民。苟便於民，則國受其福矣。此所謂不言之大利也。故一行車制，則國不期富而自富，民不期足而自足，兵

제작을 모사(摸寫)해다가 각각 몇 양(輛)씩을 만들도록 하고, 먼저 내다 사용하여 각자가 현리함을 보도록 한다면, 각 고을들이 본받게 되고 여타의 도(道)에서도 본받게 되며 부호(富戶)들도 본받게 되어,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 이익이 넓어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삼아 그 중에도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하나는 상고(商賈)들이 전수(轉輸)하여 온갖 화물(貨物)이 유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부세(賦稅)를 거두어 들이는 데에 고임(雇賃)을 덜게 되는 것이며, 하나는 말의 힘이 지치지 않게 되어 탈 말이 넉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거(戎車)에 있어서도 구비되어 자연히 무위(武威)가 썩썩해지게 될 것이고, 채전(遞傳)하는 수레도 이루어져 역마(驛馬)가 다소 한가로워지게 될 것이며, 수차(水車)가 운행되어 전야(田野)가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행(使行)으로 말하더라도 세 사신(使臣)이 대동(帶同)하는 역마(驛馬)와 쇄마(刷馬)가 수백 필(匹)이나 되도록 많은데, 책문(柵門) 안에 이르게 되면 세폐(歲幣)와 건량(乾糧)을 으레 수레를 샅을 주고 운반하여, 대가로 수천의 은(銀)을 소비하게 되니, 이는 모두가 해마다 한정 없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수레에 우리가 신고서, 갈려면 가고 썰려면 쉬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미 고임(雇賃)의 허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지체하게 되는 폐해가 제거될 것이니, 그 이혜가 어찌 교연(較然)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만부(蠻府)에서 사행(使行)의 마필(馬匹)을 헤아려 보고 몇 양(輛)의 가벼운 수레를 만들어서 신고 왕래하도록 예비해 놓는다면, 잡혀야 하는 말[馬]을 3분의 1이나 5분의 1로 감하게 될 수 있고 그 고가(雇價)도 이에 따라 자연히 제감될 것입니다. 1년의 수레 만드는 비용을 헤아려 보더라도 두어 해의 말을 세내는 비용에 지나지 않으면서, 영구히 한없는 소비를 제감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롭게 되는 바를 말하지 않았으니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였듯이, 왕정(王政)은 이로우를 말할 필요가 없이 용도(用

不期強而自強矣。豈少補哉? 惟是治道之政, 不無少費, 而嶺阨橋梁, 則自官治之。衢路、阡陌, 則使民修之, 不過一號令之間耳。

《詩》曰: “彼岨矣岐, 有夷之行。” 又曰: “周道如砥, 其直如矢。” 治道一事, 亦是王政所先, 不獨爲行車地也。 二曰甃法, 夫甃之所起, 不見於經傳, 而陶器, 肇於虞帝, 瓦屋, 始自夏后, 則燔土之法, 瓦甃一也。 以甃爲城, 亦未知昉於何代, 而城之爲文, 從土從成, 蓋謂築土以成也; 甃之爲文, 從壁從瓦, 蓋謂以瓦成壁也。 城者墻壁之大者也。 《易》曰: “城復于隍。” 言城崩而復於土也。 《詩》曰: “土國城漕。” 亦見城以土而不以石也。 所謂土築者, 不當以散渙之土, 成仡仡之墉也。 “都城百雉。” 見於《春秋》, 雉堞之形, 非燔土則不可。 由是觀之, 甃之爲城, 厥惟舊矣。 史言: “夏王勃勃, 蒸土爲城, 堅不可拔。” 蒸土者, 燔甃之謂也。 秦之長城, 曾聞用甃, 而猶未之詳, 臣於今行, 目見舊城之周絡山頂者, 皆是甃也。 夫巫、閭之石, 不可勝用, 而必用甃焉

度)를 절약함은 곧 민생들을 애호(愛護)하게 되는 바인 것이니, 진실로 민생들에게 편리하게 되면 국가도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말할 것이 없는 큰 이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가는 부유(富裕)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부유해지며, 민생들이 풍족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풍족해지고, 군사를 강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강해지는 법이니, 어찌 도움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오직 도로를 닦는 행정에 있어서는 다소 비용이 없지 않게 될 것입니다만, 고개의 좁은 목과 교량(橋梁)에 있어서는 관(官)에서 닦아가고, 가로(街路)와 천맥(阡陌)에 있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닦아가게 하면 되어, 한 번 호령을 내리는 사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저 험악한 기산(岐山)에 평탄한 길을 내도다.’라고 하였고, 또 ‘숫돌 같은 한 길이 화살처럼 곧았다.’고 했습니다. 길을 닦는 한가지 일은 또한 왕정(王政)이 먼저 해야 하는 바인 것이고 유독 수레가 다니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벽돌 만드는 법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벽돌이 생겨난 것은 경전(經傳)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도기(陶器)는 우제(虞帝) 때에 시작되었고 와옥(瓦屋)은 하후(夏后) 때에 비롯되었는데, 흙을 구워서 만드는 방법은 기와나 벽돌과 똑같습니다. 벽돌로 성을 쌓았음은 또한 어느 시대에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성(成)’이란 문자(文字)는 ‘토(土)’로 되고 ‘성(城)’으로 되어 있으니, 대개 흙을 쌓아 이루게 됨을 말한 것이고, ‘벽(甃)’이란 문자는 ‘벽(壁)’으로 되고 ‘와(瓦)’로 되어 있으니, 대개 기와로 벽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城)이란 것은 장벽(牆壁)을 크게 쌓은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성복우황(城復于隍)’이라 했는데, 이는 성이 무너져 흙으로 되돌아갔음을 말한 것이고, 《시경(詩經)》에 ‘토국성조(土國城漕)’라 했으니, 또한 성은 흙으로 쌓고 돌로 쌓은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른바 흙으로 쌓았다는 말은, 마땅히 풀리어 흩어지는 흙으로 높다란 담장을 이루게 된 것은 아닐

者, 誠以甃之勝於石也。 蓋石非不堅也, 惟其太堅, 故可斷而不可磨, 萬石之衆, 長短不可盡齊也, 累仞之築, 縫線不可盡合也。 風雨之所蕩擊, 丸礮之所撞撲, 一石或缺, 全堞皆動, 曷若燒土爲甃, 範出一型, 長短廣厚, 均齊方平, 千層萬疊, 鑿鑿相合者乎? 夫如是, 故內而宮城、都城, 外而州府郡縣, 小而烽臺、譙樓, 虹蜺之門, 碑碣之宇, 皆用甃築, 其制則一縱一橫, 長短互錯, 若左若右, 厚薄齊等, 太牙相銜, 魚鱗相聯, 而兩甃之交, 填以泥灰, 混合膠固, 泯然成石, 直如斤削, 滑如礪磨, 雖猿猱之捷, 不可攀緣, 其堅完精緻, 非累石之比也。 夫以中國之富, 築城之法, 大抵如此, 則古人規畫之意, 豈徒然哉? 甃之爲用, 不寧惟是? 宮室焉、倉廩焉, 以此牆壁也、階庭也, 以此花甃紋甃, 錯落枝梧, 機巧百狀。 不費人工, 故大廈之材, 不過棟椽窗牖而已, 用木既寡, 釘鐵隨省, 其費至簡, 其制極完。 外絕穿窬之患, 傍無延燒之憂。 官舍民居, 亦惟甃是賴。 甃之爲器, 豈不大哉? 其利之博, 正與車等矣。 蓋嘗思之, 車者以木爲

것입니다. ‘도성(都城)이 백치(百雉)였다.’는 말이 《춘추(春秋)》에 있는데, 치첩(雉堞)의 형태는 흙을 구운 것이 아니고서는 안되니, 이로 본다면 벽돌로 성을 쌓았음은 그 유래가 오래 된 것입니다. 사책(史冊)에 ‘하(夏)나라 임금 발발(勃勃)이 흙을 써서 성을 쌓았는데 견고하여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했으니, 흙을 찼다는 것은 벽돌 구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진(秦)나라 만리 장성도 일찍이 듣건대 벽돌을 사용했다고 했었지만 여지껏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가, 신(臣)이 이번 사행(使行) 길에 목도(目觀)하건대 산 정상에 주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모두 곧 벽돌이었습니다. 대저 무산(巫山)과 여산(閻山)의 돌은 이루 쓸 수 없는 것인데도 반드시 벽돌을 사용하였음은, 진실로 벽돌이 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대개 돌은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오직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깎을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기에, 많고 많은 돌들의 장단(長短)을 모두 가지런하게 할 수가 없고, 여러 길을 쌓을 적에 봉선(縫線)을 모두 딱 맞출 수 없어서입니다. 비와 바람이 쳐 씻기게 되고, 총과 포(砲)에 부딪치어 돌이 흑시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치첩(雉堞) 전체가 모두 움직이게 될 것이니,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은 하나의 틀로 찍어내는 것이라 장단과 광후(廣厚)가 균일하고 방정하여, 천층 만층을 쌓더라도 착착 들어맞게 되는 것과 어찌 같게 되겠습니까?

대저 이러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궁성(宮成)·도성(都城)과 밖으로는 주부(州府)·군현(郡縣)과 작게는 봉수대(烽燧臺)·초루(譙樓)에나, 홍예문(虹蜺門)과 비갈(碑碣)의 집까지 모두 벽돌을 사용하여 쌓게 되는 것입니다. 쌓는 방법은 하나는 종(從)으로 하고 하나는 횡(橫)으로 하여 장단(長短)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좌(左)인 듯하기도 하고 우(右)인 듯하기도 하여 후박(厚薄)의 등급이 가지런하며, 견아(犬牙)가 서로 물리듯 하고 어린(魚鱗)이 서로 연결된 듯한데, 두 벽돌의 사이는 회(灰)를 이기어 메우므로 견고하게 혼합되어 널찍하게

質，而成器於金；斲者以土爲質，而成器於火。此乃天地生成之材，爲生民之大用者也。故《虞書》曰：“水火金木土穀惟修。”《春秋傳》曰：“天生五材，民并用之。”生之者天也，修之者人也。古昔聖人，觀象制器，備物致用者，皆所以財成，天地之宜也。且夫車者，形圓而以動爲用；斲者，形方而以靜爲利。方圓動靜，而陰陽具焉。一陰一陽，而萬化生焉。此殆天地造化之寓於器，而自然爲萬世生民之利者，實非人力所能爲也。況斲與車，其利雖均，而其費至微，取具於無禁之土，責成於不窮之薪。是真斯民之無盡藏，而天下之所公共者也。惟我國，不能用焉。豈無土也，豈無薪也？人顧不用耳，寧不惜哉？臣於今行，目見斲窯，大略如我國之瓦窯，而所燔之土，亦與瓦同，處處在在，初非難得。至於印割、燔造，別無奇方。而但熱火之法，非燒乃蒸，故一窯之薪，不過蜀黍幹數十擔而足，其費可謂至薄矣。史所稱蒸土云者，誠得其實，而古人名言之不苟，蓋如此。然則用斲之易，尤非用車之比，臣請亦令軍門，遣人取

성석(成石)하여 자귀로 깎은 듯이 직선(直線)이게 되고 숫돌로 갈듯이 매끄럽게 되는지라, 비록 날랜 원숭이라 하더라도 발 붙이지 못하게 되는데, 견고하고도 완전하고 정미하고도 치밀함이 돌로 쌓은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대저 부요(富饒)한 중국(中國)으로도 성 쌓는 방법이 대저 이와 같았고 보면, 옛사람이 규획(規畫)한 뜻이 어찌 그저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벽돌을 사용함은 오직 이것만이겠습니까? 궁실(宮實)에 있어서도 창고에 있어서도 이로써 짓고 장벽(牆壁)과 계정(階庭)에 있어서도 이로써 쌓는데, 꽃 벽돌과 문의(紋儀) 벽돌로 뒤섞어 괴어 놓아 온갖 형상으로 기교(機巧)를 부립니다. 사람의 공력을 허비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대하(大廈)의 목재(木材)도 기둥과 서까래나 창틀과 들창의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목재를 씌이미 적게 되므로 따라서 정철(釘鐵)도 감하게 되어 비용이 지극히 간략하지만 제도는 지극히 완전하게 되어, 밖에도 도둑 맞게 될 염려가 없고 곁에서 화재가 나도 연소(延燒)하게 될 우려가 없습니다. 관사(官舍)도 민가(民家)도 또한 오직 벽돌을 힘입게 되니, 벽돌이란 이기(利器)로 어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익이 넓음은 바로 수레와 동등하게 됩니다.

대개 일찍이 생각해 보건대, 수레란 것은 목재(木材)로 바탕을 하여 쇠로 이루어지는 이기(利器)이고, 벽돌이란 것은 흙으로 바탕을 하여 불로 이루어지는 이기로서, 이는 곧 천지가 생성(生成)해 놓은 자재(資材)가 민생들의 큰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서(虞書)에는, ‘오직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닦는다.’고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는, ‘하늘이 낸 다섯 가지 자재(資材)를 민생들이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생성(生成)하는 자는 하늘이고 닦아가는 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적에 성인들이 천문(天文)을 관찰하여 이기(利器)를 마련하고 물건을 구비하여 사용하게 하였음은 모두가 천지에 합당하게 재성(財成)해 간 것입니다.

또한 그 수레란 것은 형체가 둥근 것을 움직여서 사용하게 되고, 벽돌이란 것

制於燕行，如法蒸造，先從宮城，始隨缺改築，仍頒其制於諸道，凡關防、州郡，有城而當修補，無城而可新築處，悉令用甃，而掇築之法，一倣華制，其爲固國壯圉之道，豈不大哉？至若公私室屋生民日用之資，乃是次第事耳。三曰牧驢羊。夫地上之用，莫大於牛馬，故以畜物之微，應乾坤之象，聖人之重之也如此。然牛馬之生息有數，生民之需用無窮，必有以繼之，然後斯乃不匱，繼之維何？驢羊，是也。蓋驢羊者，馬牛之同類異族也。故三牲之享，柔毛亞於大武，四牡之馳，劣衛或補下駟，此亦畜物之良者也。古禮，國君無故不殺牛，而我國之俗，宰殺無藝，蓋由賓祭之差，無物可代故耳。特以牛產素蕃，不至絕乏，而農家耕犁，每患不備，今若多畜羊羔，以代俎實，則牛不過耗，而耕有餘耦矣。況羊之爲物，最稱易生，列於六畜，徧於四方，皮、毛、腸、角，靡不中用。故臣於出疆之前，已有陳白，今行略有貿來，而每年曆貢之行，邊門之市，輒令和買，漸致孳息，則可以救萬牛之命，開三農之利矣。驢之爲物，健不

은 형체가 모난 것을 인정시켜 이용하는 것이니, 모난 것과 둥근 것의 움직임과 안정됨은 음(陰)과 양(陽)을 갖춘 것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니, 이는 자못 천지의 조화(造化)가 이 이기(利器)가 붙여지면서 자연스럽게 만세(萬世)토록 민생들의 이익이 되어진 것이진실로 사람이 힘으로 능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벽돌과 수레는 비록 이롭기는 균등하면서도 비용(費用)은 지극히 미미하여, 금단(禁斷)할 수가 없는 흙에서 재료를 취하게 되고, 한 없는 쟁나무[薪]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만백성들의 무진장(無盡藏)이고 천하가 공공(公共)으로 하게 되는 바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 나라에서는 능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어찌 흙이 없어서이고 어찌 쟁나무가 없어서이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이번의 사행(使行)에 벽돌 굽는 가마[窯]를 목도(目觀)하건대, 대략 우리 나라의 기와 굽는 가마와 같았고, 구워 내는 흙도 또한 기와를 굽는 흙과 똑같아 곳곳마다 산재(散在)해 있는 것이기에 당초부터 구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찍어내기와 번조(燔造)에 있어서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곧 찌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쟁나무가 촉서(蜀黍) 대 수십 단이 되지 않아도 족했으니, 그 비용이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책(史冊)에 말한 바 ‘증토(蒸土)’라는 말은 진실로 사실대로 된 것으로, 옛사람들은 구차하지 않게 이름을 붙여 말을 함이 대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돌 사용이 용이함은 더욱 더 수레 사용과도 비교가 안되는 것이니, 신(臣)은 청컨대 또한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연경(燕京)의 사행(使行)에 사람을 딸려 보내 제작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그 법대로 증조(蒸造)하도록 하여, 먼저 궁성(宮城)에서부터 시작하여 헐어지는대로 개축(改築)하게 하고, 이어 제작하는 방법을 제도(諸道)에 반포(頒布)하여 모든 관방(關防)과 주군(州郡)의 성(城)이 있는데도 마땅히 보수(補修)해야 할

如馬，而性馴易使，價輕易求，故中國之人，家家畜之，以之駕車，以之載物，以之服犁，或令磨粟運水，惟意指使，如僮僕，然其代人勞，而分馬力甚大。至若騾者，出於驢，而健於驢，真同雀生鷓，而貙生狼也。任重致遠，兼牛馬之長，故明皇幸蜀，常乘青騾而疾馳。宋之姚平仲，乘白騾一日踔八百里，信蹄物之奇品也。況又其性易長，墮地半年，輒勝騎馳，故華人之愛之也，有甚於馬。我國驢騾，雖有自北來者，未嘗孳長，力盡而斃，是不閑牧畜之過也。誠能多貿燕市，放諸牧場，取其種息，以備國用，則服乘有餘，戎馬自足，而車制若行，用以駕載，可當牛馬之半，商旅流行，民蒙其利矣。大抵畜牧之政，費少而利遠，畜驢羊，乃所以畜牛馬也。牛馬蕃，則民富而兵強矣。

四曰禁銅器。臣聞天地之生物也，各專其性。聖人之理財也，各適其職。相侵則兩病，偏重則有缺，此不易之理也。故斲木爲室，凝土爲器，順其性也。以釜甗爨，以鐵耕，當其職也。其用器也亦然。上古只用陶匏，其後



데와 성이 없어서 새로 쌓아야 할 데에 모두 벽돌을 쓰도록 하되, 쌓아 가는 방법은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대로 하도록 한다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변방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 어찌 대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公私)의 가옥이나 민생들이 일용(日用)하는 자재가 되어질 것에 있어서는 곧 그 다음의 일입니다.

셋째는, 당나귀와 양을 길러 내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땅 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소와 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축산물(畜產物)이지만 건(乾)과 곤(坤)의 상징(象徵)으로 하게 된 것이니, 성인들도 이처럼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소와 말의 생식(生殖)은 수효가 있는데 민생들의 수용(需用)은 한이 없게 되니, 필경에는 뒤를 이어 가는 것이 있는 다음에야 동이 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오직 무엇으로 이어 가야 할 것입니까? 당나귀와 양이 곧 그것입니다.

대개 당나귀와 양은 말이나 소와 동류(同類)이면서도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생(三牲)의 제향(祭享)에는 유모(柔毛)가 대무(大武)의 다음이 되고, 사모(四牡)로 달리게 될 적에도 더러는 하사(下駟)를 열위(劣衛)로 보충하게도 되는 법이니, 이것들도 또한 축산물 중에 좋은 것들입니다. 옛적의 예법은 임금도 일이 없이는 소를 잡지 않았었는데, 우리 나라의 풍속에서 법도가 없이 도살을 하게 됨은 대개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소는 생산이 본시 번성하는 것이어서 아주 없지 않는 것인데도, 농가(農家)에서 쟁기질하게 될 적에는 매양 구비되지 못하여 걱정하게 되니, 만일 지금부터라도 양을 많이 길러 제사 접시에 채우는 것을 대신하게 된다면, 소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게 되어 쟁기질하기에 남아도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양이란 것은 가장 생산하기 쉽다는 것으로 육축(六畜)에 끼어 사방에 펼쳐져 있고, 가죽·털·내장(內腸)·각재(角材)가 사용에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국경(國境)을 나가게 되기

質變而文，儉趨於華，始有簠簋俎豆瑚璉之制焉。簠簋，竹也。俎豆，木也。瑚璉，玉也。未聞用金銀銅錫焉。觀乎制字，可見矣。甗，煎食之器也。瓶罍，貯水之器也，皆從瓦。觴、觥、觶，盛酒之器也，而從角。杯、椀、碗，盛羹之器也，而從木，舉一可以反三。惟樂器尚聲，彝鼎銘功，故不得不用銅，而至於釜、鑊之屬，則從金而多用鐵耳。後世侈靡，或用金銀之器，而未嘗用銅，中國之俗，至今如此。臣之是行，觀乎閭店、市肆，器皆用磁，而不見銅錫。至如皇帝宴卓，玉罍、金罍非不爛然，而餅果葢羹之盛，只是磁與鉛耳。此其故何哉？竊嘗思之，蓋由銅以鑄錢故也。夫錢者，百貨之源，生民之命脈，一有所缺，則民國受其病，故收天下之銅，悉歸之司農、水衡，鼓鑄不窮，然後可以運萬寶之權，盡四海之利也。是以惜之甚於金銀，寶之加於珠玉，珠玉、金銀，入於輿馬冠佩之飾，而一寸之銅，不得他用。試以新頒聚珍板序觀之，至於銷毀活字，付之寶源，則其計豈不長，其法豈不嚴乎？是所謂：

전에 이미 진백(陳白)했던 것이고, 이번의 사행(使行)에 조금 사오기도 했습니다만, 역공(曆貢)의 길에 변문(邊門)의 저갓거리에서 으레 화매(和買)하도록 하여 점차로 번식시켜 간다면, 소 1만 마리쯤의 생명을 구출하여 삼농(三農)의 이익을 열어 놓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나귀의 뒹뒹이는 말처럼 건장하지는 못하지만 성질이 길들이어 부리기 쉽고 값이 싸서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키우면서 이로써 수레를 매기도 하고, 이로써 물건을 싣기도 하며, 이로써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곡식을 갈기도 하고 물을 운반하기도 하여, 마음대로 부리기를 마치 동복(僮僕) 부리듯이 하므로, 사람의 노력을 대신해 주고 말의 힘을 분담(分擔)함이 매우 큼니다.

노새라는 것에 있어서는 당나귀에서 나온 것인데 당나귀보다도 건장하여, 참으로 참새가 송골매를 낳고 추호(獬虎)가 이리를 낳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어 소와 말의 장점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명(明)나라 황제가 촉(蜀)으로 행행(幸行)할 적에도 항시 파란 노새를 타고서 질주(疾走)했었고, 송(宋)나라의 요평중(姚平仲)도 흰 노새를 타고서 하루에 8백리를 뛰었었으니, 제물(蹄物) 중에 기이한 물건입니다. 하물며 그의 성질이 쉽게 자라 태어난 지 반년이면 으레 타고 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화(中華) 사람들이 아끼기를 말보다도 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나귀와 노새를 비록 북방(北方)에서 가져온 것이 있기는 해도 일찍이 새끼 쳐 자라게 되지 않고 힘이 다하여 죽어버리게 되니, 이는 목축(牧畜)에 익숙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진실로 연경(燕京)의 저갓거리에서 많이 사다가 목장(牧場)에 놓아 기르며 종자가 번식한 것을 가져다가 국가의 사용에 대비한다면, 타고 다닐 것이 여유가 있게 되고 용마(戎馬)도 자연히 족하게 될 것이며, 흑시라도 수레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타고 다니거나 싣고 다니기에 사용한다면 소와 말의 절반을

“順生物之性，而各得其職者也。”此殆《周禮》泉府之遺制，而自夫用錢以後，中國世守之，百代不敢改也。惟我國則輕視鑄錫，造器無章，不但用之於酒食羹膳之承而已，大而盤、盂、鑪、鍋、賤而盥洗溺矢之具，并用而無惜。假使國有銅穴，生出不竭，用物之道，不宜如是。況本無土產，遠市於日本，而倭人夸詐，輒售重直，其所從來，可謂貴且艱矣，國俗顧不知重焉。朝家每於鑄錢之日，出鉅萬不貲之貨，易海外難得之財，及其鑄成，所得不補所費，故開局鑄錢，最爲難慎，不過十年而一舉，錢安得不荒，民安得不貧，府庫財安得不匱乎？夫以中國之富，盡天地之產，括山海之毛，舟車四達，無所不有，而用物之必謹，理財之有節也如此。楊州之三品，吳、蜀之銅山，非不泉涌而輻輳，其惜之也如此，豈非生民之命脈，國家之利權，不可不重而然歟？豈獨中國？惟倭亦然。其國銅產，甲於天下，而未嘗用以爲器，惟燔沙漆木而爲之，其制之精巧，不讓於金銀。所費必加於鑄銅，而不以此易彼者，亦能解理財之道也。

담당하게 되어, 상인(商人)과 행려(行旅)들이 퍼지게 되고 민생들이 복리(福利)를 입게 될 것입니다. 대저 목축(牧畜) 행정은 비용이 적고 이익이 원대해야 하는 법이니, 당나귀와 양을 기르는 곧 소와 말을 기르게 되는 것으로써, 소와 말이 번성하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 구리 그릇[銅器]을 금단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천지가 만물을 낼 적에 각각 그 성질에 전주(專主)하게 되고, 성인들이 재물(財物)을 다스릴 적에도 각각 그 직(職)에 맞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침해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병들게 되고 한 쪽을 편중(偏重)하게 되면 결함이 생기게 되니,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깎아 집을 짓고 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었음은 그 성질에 순응(順應)한 것이고, 가마와 시루로 밥을 짓고 쇠로 쟁기질을 하였음은 그의 직에 합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릇을 사용함도 또한 그러하여, 상고(上古) 적에는 단지 질그릇과 바가지만 사용하였는데, 그 뒤에 질(質)이 변하여 문식(文飾)하면서 검소가 화려함으로 치달게 되어, 비로소 보궤(篋簞)와 조두(俎豆)와 호련(瑚璉)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궤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 조두는 나무로 만든 것이며, 호련은 옥(玉)으로 만든 것이고, 금(金)·은(銀)·동(銅)·석(錫)을 사용했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글짜의 제정에 있어서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증(甗)과 언(甗)은 음식을 끓이는 그릇이고, 병(瓶)과 앵(罍)은 물을 담는 그릇인데 모두가 와부(瓦部)로 되어 있고 상(觴)·광(觥)·치(觶)는 술을 담는 그릇인데 각부(角部)로 되어 있고, 배(杯)·권(椀)·완(碗)은 국을 담는 그릇인데 목부(木部)로 되어 있어, 한 가지를 들어도 세 가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악기(樂器)는 소리를 송상하는 것이고 이정(彝鼎)은 공적(功績)을 새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부(釜)와 당(鑊) 등의 것을 금부(金部)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철(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는 사치가 퍼져 더러는 금(金)이나 은(銀)그릇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찍

我國之所以不然者，亦有其說。蓋於國初，未嘗用錢，只以銀、布爲貨，故倭銅之出於貢市者，無所用之，作爲器升，因而成俗。逮夫行錢之後，當國主事之人，未能深究古制，因循不變爾。到今錢幣日滋，民國俱困之時，何可不變而通之乎？臣謂國中鑄銅之物，祭器、樂器外，一切禁絕，限以時月，使之輸官，計還其直，則民無騷擾之弊，國有永久之利，而代用之器，不患無物矣。通一國鑄銅之器，可以億萬斤計，而所償之價，必不及遠易倭市之費，藏之度支，以之鑄錢，則國用自裕，銅直自輕矣。且觀中國之法，不但銅也，惟鐵亦不妄用，農具之外，雖於宮室之構，專用土木，用鐵至少者，蓋以鐵是兵器之材也。欄檻廳壁，皆需瓦甃。盤盒櫃篋，多用紙皮，用木至少者，蓋以木是舟車之材也。筆管烟莖，亦用盧藤，而不用竹者，蓋以竹是箭弩之材也。此皆中國理財之法，古今相傳之秘訣，百姓日用，而不知者也，國安得不富，民安得不阜，兵安得不強耶？至於耕織確磑之具，筆墨膠漆之類，亦是生民日用之不可闕者，而簡

이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풍속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신(臣)이 이번의 사행(使行) 길에 여염(閭閻)의 점포나 저자의 가게에서 보건대 그릇은 모두 자기(磁器)를 쓰고 있고 구리나 주석으로 된 것은 볼 수가 없었으니, 가령 황제(皇帝)의 연탁(宴卓)·옥가(玉罍)·금뢰(金罍)에 있어서는 찬란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떡과 과일이나 고깃국을 담는 그릇은 단지 자기(磁器)와 연기(鉛器) 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일찍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대개 구리를 가지고 돈[錢]을 주조(鑄造)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저 돈이란 것은 온갖 재화(財貨)의 근원으로 민생들의 명맥(命脈)인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바가 있게 되면 민생이나 국가가 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구리를 수집하여 모두 사농(司農)과 수형(水衡)3481) 에 돌리어 한없이 주조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야 여러 가지 보화(寶貨)의 권형(權衡)을 운용(運用)하여 사해(四海)의 복리(福利)를 다하게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리므로 금은(金銀)보다도 더 아끼고 주옥(珠玉)보다도 더 보물(寶物)로 치게 되어, 주옥과 금은은 여마(輿馬)와 관패(冠佩)의 장식에 사용하게 되지만, 한 치[村]의 구리도 다른 데에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삼아 새로 반포(頒布)한 취진판(聚珍板)의 서문으로 보더라도, 활자(活字)를 녹이어 부원(寶源)으로 돌리도록 하게 된 것이니,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고 어찌 엄격(嚴格)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생물(生物)의 성질에 순응(順應)하게 각각 그 직분(職分)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주례(周禮)》에 나와 있는 천부(泉府)의 유제(遺制)로서, 무릇 돈을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 중국에서 대대로 지켜 오는 것으로, 백대(百代)토록 감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나라에서는 유(鑰)와 석(錫)을 함부로 여겨 법도가 없이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단지 술과 음식 및 국과 반찬을 담는 것으로만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소반과 사발 및 화로와 냄비, 천하

易精利，皆有自然之巧，不易之矩。《經》曰：“智者創物，巧者述之，百工之事，皆聖人之作也？豈不信歟。”中國者，聖人之舊居也，制作之妙，所由來遠矣。臣於禁銅之利，竊有推類而默契者，竝此附陳焉，謀國計者，皆不可不知也。

五曰罷帽子。夫交隣互市之法，各以所有，易其所無，欲其兩利而俱便，可久而無弊焉耳。宋與夏市，以茶易馬，元昊尚幼，諫其父勿許，當時識者，憂其爲他日患，亦可見互市之不可不慎也。今我西北之市，便同貢獻，不可較挈多寡，而至於使行時，商譯交貨，則一從和買之例，不可不計其得失也。我國所挾之貨，惟銀爲長物，而前時倭銀通行，將此入燕，既去既來，如環之轉。故雖有物貨之貴賤、貿遷之輸贏，而本國自無所失矣。挽近以來，倭銀路絕，代送礦銀，是則一渡鴨水，永不還來，殆同投金於淵，非計之得也，以故，國中之銀貨日耗。試以臣行言之，員譯包銀，太半空虛，商貨之涸枯，可推而知。爲今之計，政宜稍節北人之銀，以備逐歲之費，而盤纏公用，不可

게는 세수 대야와 소변 그릇으로 마구 사용하기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라에 동광(銅鑛)이 있어 끊임없이 생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물자(物資)를 아끼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본래부터 토산(土產)은 없고 멀리 일본(日本)에서 사오게 되는데, 떠벌리며 속이기 잘하는 왜인(倭人)들이 으레 비싼 값으로 팔게 되니, 그 유래(由來)하는 바가 희귀(稀貴)하고도 힘드는 것이라 하겠는데, 우리 나라 풍습은 도리어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가(朝家)에서 매양 돈을 주조하게 되는 날에는 수만 냥의 적지 않은 재물을 내어 해외(海外)의 구득하기 어려운 재물을 무역(貿易)해 오지만, 주조해 낸 때에 당해서는 소득이 소비한 것을 보충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을 차리고 돈을 주조하는 것을 가장 어렵고 신중해야 하게 되는데, 10년이 되지 못하여 한 번씩 거행해야 하니, 돈이 어떻게 흉년 들지 않을 수 있으며, 민생들이 어떻게 가난 들지 않을 수 있고, 부고(府庫)의 재정(財政)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중국의 부유(富裕)는 천지의 산물(產物)을 다 모으고 산해(山海)에서 자라는 것을 긁어모아, 배와 수레가 닿는 사방에 있지 않는 것이 없지만 물자(物資)의 사용을 반드시 근신(謹慎)스럽게 하고 재물의 운용(運用)을 절도가 있게 함이 그와 같았습니다. 양주(楊州)의 삼품(三品)인 <금·은·동(金銀銅)과> 오(吳)·촉(蜀)의 동산(銅山)이 샘물 솟듯이 폭주(輻輳)하게 되지 않는 수가 없지만 것처럼 아끼는 것은, 어찌 민생들의 명맥(命脉)이자 국가의 이권(利權)이어서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유독 중국뿐이겠습니까? 오직 왜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들의 나라는 동(銅)의 생산이 천하에 으뜸인데도 일찍이 그릇 만드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기(沙器)와 칠기(漆器)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교(精巧)한 제작이 금·은 그릇과 못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반드시 유기(鑪器)와 동기(銅器)보다도 더하게 되는데는 이것과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또한 재물 운용하는 도리를 잘 알

減也, 譯員定額, 不可缺也, 無寧就其交貿之物, 換來實用之需, 則猶不失互市之本意也。 惟是帽子一物, 最爲無用之費, 耗國漏財, 莫甚於此, 不可不急塞其孔也。 蓋帽子者, 經史之所不載, 天下之所未有, 而獨我國用之。 男子則冠上加冠, 已失禮意; 婦人則非笄非巾, 實爲無稽, 不過爲禦寒之資而已。 只爲禦寒, 豈無他物, 而何必遠求於異國乎? 中國則無所用之, 故遼商一肆, 聚毛打造, 專售我國, 坐收大利, 豈不爲華人之所笑乎? 一年帽價, 動費鉅萬。 以不費之活貨, 易無用之蠢物, 甫經秋冬, 弊而投地, 今年如此, 明年如此。 山川之寶藏有限, 天下之氈毛無盡, 將何以繼之乎? 臣謂亟罷帽子之貿, 仍下國中之禁, 而入燕之包, 代貿有用之物, 如騾馬、布絹之類, 則庶有補於利用厚生之具, 而日計不足, 歲計有餘矣。 至於帽稅之充補公用, 稍爲通變之端, 惟在廟堂之商確區畫耳。 六曰肄華語。 夫漢人之語, 卽中華之正音也。 一自晉代以後, 五胡交亂, 方言屢變, 字音亦僞, 而猶可因其似而求其眞矣。 我國之音, 最近於中國。

아서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까닭은 또한 그럴 만한 논의가 있습니다. 대개 국가 초기에 일찍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은(銀)과 포(布)로 재화(財貨)를 삼았었기 때문에 공물(貢物)의 저자에 나오는 왜인들의 구리를 쓸 데가 없으므로 집기(什器)를 만들게 되고 따라서 풍습이 된 것인데, 돈을 사용하게 된 뒤에 이르러서는 국사(國事)를 담당하여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깊이 옛 제도를 강구(講究)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변통해 가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와서는 돈의 폐해가 날로 퍼지게 되어 민생들이나 국가가 다같이 곤궁해진 때인데 어찌 변경하여 변통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온 나라 안의 유·동(鑛銅)으로 된 물건들을 제기(祭器)와 악기(樂器) 이외의 것은 일체로 금단하고, 시일의 기한을 정하여 관(官)에 수납(輸納)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계산하여 상환(償還)해 준다면, 민생들은 시끄럽게 될 폐해가 없고 국가에는 영구한 이로움이 있게 될 것이고, 대신 사용할 그릇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그릇이 없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나라의 유(鑛)·동(銅)으로 된 그릇을 통계하면 억만(億萬) 근 가량이 될 것이나, 상환해 주어야 할 대가는 반드시 먼 왜인들의 저자에게 무역(貿易)하는 비용에 미치지 않을 것이니, 호조[度支]에 저장해 두고서 그것으로 돈을 주조해 낸다면 국가의 용도가 자연히 유족(裕足)해지고 구리의 값도 자연히 헐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의 법제를 보건대 구리뿐만이 아니라, 오직 철(鐵)에 있어서도 또한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농기구(農機具) 이외에는 비록 궁실(宮室)을 짓는 데에 있어서도 주로 흙과 목재를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는 수가 지극히 적으니, 대개 철이 곧 병기(兵器)의 재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간과 대청의 벽은 모두 기와와 벽돌을 수용(需用)하고, 소반과 함(盒), 껌짜과 상자는 대부분 가죽이나 종이를 사용하여 목재(木材)를 쓰는 수가 지극히 적었으니, 이는 대개 목재는 곧 배와 수레의 재료이기 때문이고, 붓대와 담뱃대는 또한 갈대와

而羅、麗以來，既無翻解之方，每患通習之難。惟我世宗大王，睿智出天，獨運神機，創造訓民正音，質諸華人，曲盡微妙。凡四方之言語、萬竅之聲籟，皆可形容於筆端，雖街童、巷婦，亦能通曉，開物成務之功，可謂發前聖之未發，而參天地之造化矣。以此翻出漢音，迎刃縷解，於以諧字韻，於以叶聲律，故當時士大夫，多通華語，奉使迎詔之時，不假譯舌，酬答如響。及至壬、癸之際，如乞靈辨誣，國之大事，多賴其力，華語之不可不習也如此。挽近以來，漢學之講，便成文具，能通句讀者絕少，故使臣之與彼相對也，耳襲而口噤，片言單辭，專仗象胥，所謂象胥，亦葶解街巷例話而已，將何以通情志、盡辨難乎？今幸兩國交好，使事無阻，而設有奏請陳辨之事，則恐無以責辦，非細憂也。至於蒙學一科，徒擁虛名，全不講習。蒙之於我，今雖不與通信，而疆域甚邇，兵馬寂悍，他日之事，有未可料，庸詎忽而不省乎？臣謂董飭譯院，嚴課諸學，激勸有方，從以賞罰，期使通熟，而朝士之被選漢學者，亦宜申明科條，專意肄習，

등(藤)나무를 사용하고 대나무를 쓰지 않음은 대개 대나무가 곧 화살과 활의 재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재물을 운용(運用)하는 법도이고 고금(古今)에 서로 전해 오는 비결(秘訣)로써, 백성들은 날마다 그대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니, 어찌 국가가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민생들이 살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군사가 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작(耕作)과 방직(紡織) 방아와 맷돌 같은 기구와 붓과 먹, 아교와 칠 같은 등류에 있어서는 또한 곧 민생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것으로써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간단하여 용이하고 정밀하면서도 편리하게 되어, 모두가 자연스러운 솜씨와 바꿀 수 없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경서(經書)에 ‘지혜스러운 사람은 물건을 창안하게 되고 솜씨가 있는 사람은 이를 이어가게 되는 법이니, 온갖 공장(工匠)의 일 모두가 성인들이 창작해 놓은 것이다.’라고 한 말이 어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그전에 성인들이 살던 곳이니, 오묘한 제작(制作)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臣)이 구리를 금단하는 이익에 있어서 그옥이 유추(類推)하여 묵계(默契)한 것이 있기에, 아울러 이를 결들여 진달하게 된 것인데, 국가의 정책을 도모해가는 사람은 모두 알지 않으면 안될 일입니다.

다섯째는, 모자(帽子)를 혁파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교린(交隣)하고 호시(互市)하는 방법은 각기 소유(所有)한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꾸게 되는 것으로, 둘이 다 이롭고 다같이 편리하면서 오래도록 폐단이 없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송(宋)나라가 서하(西夏)와 호시(互市)하여 차(茶)를 가지고 말[馬]과 바꾸려고 할 적에, 원호(元昊)3482)가 아직 어린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말도록 간했었는데, 그 당시에 식견있는 사람들이 그가 앞날에 근심거리가 될 것임을 우려했었으니, 또한 호시(互市)는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俾養專對之才焉。噫! 天下之平久矣。不幸值疆場多事, 冠蓋旁午, 國之輕重, 繫於辭命。若不及此閒暇, 預爲之備, 則將何以應卒乎? 語曰: “醫不儲藥, 無以治急病。農不漑種, 無以食嘉實。” 言物不可不素具也。又曰: “水則具車, 旱則具舟。” 言事不可不早圖也。爲國之道, 亦如是矣。今臣所陳, 俱是切近易知之事, 初非闊遠難行之法。車制則故相臣金瑄, 嘗陳使臣乘輜之弊, 請令乘車, 以寬駟騎之力; 鑿法則故相臣李恒福, 盛稱城郭之制, 亦言燒造之易, 並載遺集。先輩有識之論, 概可見矣。其餘一二通變之政, 亦非有拂於人情, 而實爲民國經遠之謨。伏乞聖明, 恕其煩猥, 而留神澄省, 詢于卿士, 採而行之, 則庶有補於足國裕民之道矣。

上下其疏于廟堂, 使之稟處。備邊司啓言: “車制創行事, 車之爲用, 實關民國。請令各軍門, 另擇巧藝之人, 節使赴燕時, 使之帶去, 各樣車制, 一一摸來, 效而行之。土鑿燔造事, 燔鑿之論, 自古有之, 而未得其要, 有意莫試, 請令軍門, 取制於燕中, 詳探燔

지금 우리의 서북(西北)에서의 호시는 그만 공헌(貢獻)과도 같아 가진 것의 다과(多寡)를 비교해 볼 수가 없게 되고, 사행(使行)에 상인과 역관들이 교환(交換)하게 되는 물화(物貨)에 있어서는 일체를 화매(和買)하는 사례대로 하고 있으니, 그 득실(得失)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는 화재(貨財)는 오직 은(銀)이 제일 좋은 것이고 지난날에는 왜인(倭人)들의 은이 통행(通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경(燕京)에 들어가기를 어느새 갔다가 어느새 왔다가 하여 마치 고리가 돌아가듯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물화(物貨)의 귀천(貴賤)과 무역(貿易)의 수영(輸贏)이 있다 하더라도 본국(本國)에서는 으레 손실(損失)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근(挽近) 이래로는 왜인들의 은이 들어오는 길이 끊어졌기에 그 대신 광은(鑛銀)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은은 한번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가기만 하면 영구히 돌아오지 않게 되어, 마치 깊은 연못에다 금(金)을 던져버린 것과 같게 되어 좋은 계획일 수 없으니, 이런 이유로 온 나라 안의 은화(銀貨)가 날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험삼아 신(臣)의 사행(使行)에 대해 말하더라도 원역(員譯)들의 포은(包銀)3483이 태반이나 비게 되었으니, 상화(商貨)가 고갈될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면한 지금의 계획은 마땅히 바로 북인(北人)들의 은(銀)을 조금 절약하여 해마다의 자재(資財)를 비축해야 하는데, 공용(公用)의 반전(盤纏)3484도 감할 수 없고 역원(譯員)의 정액(定額)도 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무역(貿易)하는 물건에 있어서 실용(實用)하게 될 것만 바꾸어 오게 한다면, 오히려 호시(互市)의 본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모자(帽子) 한 가지는 가장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으로써, 국가의 재정(財政)을 손모(損耗)시켜 빠져나가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시급히 그 구멍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모자란 것은 경사(經史)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천하에 있지도 않던 것인데 유독 우리 나라에서

造之方，以爲需用之地。驢羊畜牧事，先使灣府，貿來驢羊略干頭，驢則放牧於閑曠牧場。羊則分屬於關西各邑，倣彼牧法，以爲廣殖之道。至於銅器禁用事，爲補鑄錢之需，永禁行用之需，則不無生擾之慮，請置之。帽子禁貿事，使行公用，專靠帽稅。請待稅代區劃，更商處之。華語肄習事，兩國通情，專在語言。請申嚴譯院舊制，修復三學講規，飭文臣習華語，勸象胥熟蒙學，俾無如前拋棄。”從之。



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관(冠) 위에다가 관을 더 쓰는 것이어서 이미 예법의 뜻을 잃게 된 것이고, 부녀들에 있어서는 비녀[笄]도 아니고 건(巾)도 아니어서 진실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직 추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찌 달리 할 것이 없어서 하필이면 멀리 딴 나라에서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쓸 데가 없는 것이기에, 요동(遼東) 상가(商街)의 한 가게에서 털을 모아다가 타조(打造)하여 오로지 우리 나라에다 팔아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으니, 어찌 중화(中華)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모자 값으로 거만(鉅萬)의 재물을 허비하게 됩니다. 셀수 없는 활화(活貨)를 가지고 쓸데없는 취물(蠢物)을 무역해다가 겨우 가을과 겨울을 지내고 나면 헤어져 땅에 버리게 되는데, 올해에도 그러하고 내년에도 그러하게 됩니다. 산천(山川)에서 나는 보장(寶藏)은 한이 있는 법이고, 천하의 전모(氈毛)는 무진장한 것인데 장차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시급히 모자(帽子) 무역을 혁파하고 이어서 온 나라 안에 금령(禁令)을 내리고, 연경(燕京)에 들어가는 포은(包銀)으로 대신 쓸 데 있는 물건인 나(騾)·마(馬)와 포(布)·견(絹) 같은 것들을 무역해 오도록 한다면 거의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의 재료에 도움이 있게 되어, 그날그날 헤아려 보면 부족하게 될지라도 한 해를 통산해 보면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모자세입(稅入)으로 공용(公用)을 보충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변통해 가야 하는 단서가 오직 묘당(廟堂)에서 상확(商確)하여 구획(區畫)해 가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째는, 화어(華語)를 익혀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한인(漢人)들의 말은 곧 중화(中華)의 정음(正音)입니다. 한번 진(晉)나라 시대에 오호(五胡)들이 서로 어지럽힌 이후부터는 방언(方言)이 자주 변하게 되고 자음(字音)도 또한 위작(僞作)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유사한 것에 따라 진짜 음(音)을 찾

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음(語音)은 가장 중국의 것에 가까웠었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변해(翻解)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通習)하는 어려움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오직 우리 세종 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睿智)로 혼자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화인(華人)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릇 사방의 언어(言語)와 갖가지 구멍에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붓끝으로 그려 낼 수 있게 되는데, 비록 길거리의 아이들이나 향간의 아낙네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니, 개물 성무(開物成務)한 공로는 전대(前代)의 성인들도 밝혀 내지 못한 것을 밝혀 낸 것으로써 천지의 조화(造化)와 서로 가지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한음(漢音)을 변해(翻解)해 나가면 칼을 만난 울이 풀이듯 하여, 이로써 자음(字音)을 맞추게 되고 이로써 성률(聲律)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四大夫)들은 대부분 화어(華語)를 통달하게 되어, 봉사(奉使)하러 나가거나 영조(迎詔)하게 될 적에 역관(譯官)의 혀를 빌리지 않고도 메아리치듯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진년(3485) 과 계사년(3486) 무렵에 이르러서는 걸령(乞靈)하기도 하고 변무(辨誣)하기도 하는 국가의 큰 일들에 있어서 그 힘을 입게 되는 수가 많았으니, 화어를 읽히지 않을 수 없음이 이릅니다.

만근(挽近) 이래로는 한학(漢學)의 강구(講究)가 그만 형식이 되어버려 능히 구두(句讀)를 통하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사신(使臣)들이 그들과 상대할 적이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 한 마디 말이나 간단한 말에 있어서도 오로지 상서(象胥)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소위 상서들도 또한 겨우 길거리나 향간의 예사 말만 알게 될 뿐이니, 장차 어떻게 심정과 의지를 통하게 되고 변란(辨難)을 다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두 나라가 교호(校好)하므로 사신(使臣)들의 일이 방해될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주청(奏請)하고 진변(陳辨)해야 할 일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책임지워 해 갈 수가 없게 될 듯싶으니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몽학(蒙學)에 있어서도 한갓 헛 명칭만을 끼고 있고 전연 강습(講習)을 하지 않습니다. 몽고와 우리 나라가 지금은 비록 함께 통신(通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경 지역이 매우 가까운데 그들의 병마(兵馬)가 가장 거세므로 앞날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어찌 소홀히 여기어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사역원(司譯院)을 감독하고 신칙하여 모든 어학(語學)의 과정을 엄격하게 하여 방법이 있게 격려하고 권면하도록 하고, 따라서 상벌(賞罰)로 기어코 통숙(通熟)하게 되도록 하고, 조사(朝士)들 중에서 한학(漢學)에 선발된 사람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과조(科條)를 거듭 밝히어 전일한 뜻으로 이습(肄習)하게 하여, 전대(專對)해 갈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 천하가 태평한 지 오래입니다. 불행히도 강토(疆土)에 일이 많아져 관개(冠蓋)의 왕래가 한창이게 될 적을 만나게 된다면, 국가의 경중(輕重)이 사령(辭令)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처럼 한가한 참에 있어서 미리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줄급(卒及)할 때에 대응해 갈 것입니까? 진해 오는 말에 ‘의원이 약재를 저축해 놓지 않으면 다급한 병을 다스리게 될 수 없고, 농군(農軍)이 곡종(穀種)에 물을 대주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수 없는 법이다.’고 하였음은, 물건을 평소에 갖추지 않아서는 안됨을 말한 것입니다. 또, ‘홍수(洪水)에는 수레[車]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 가뭄에는 배[舟]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하였음은 무릇 일을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안됨을 말한 것인데, 나랏일을 해 가는 방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신(臣)이 진달한 말은 모두가 지극히 가까운 주변(周邊)의 알기 쉬운 일이고 당초에 동떨어지게 멀어 시행하기 어려운 법의 것이 아닙니다. 수레의 체도에 있어서는 고 상신(相臣) 김육(金瑨)이 일찍이 사신(使臣)들이 교자(轎

子) 타는 폐단을 진달하면서, 수레를 타도록 하여 일기(駟騎)의 힘을 펴주도록 청했었던 것입니다. 벽돌을 쓰는 법에 있어서는 고 상신 이항복(李恒福)이 성곽(城郭)의 제도를 한창 칭찬하고 또한 구워내기가 쉬움을 말해 놓은 것이 모두 그의 유집(遺集)에 실려 있으니, 선배들의 식견에 있는 논의에서 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의 한두 가지 변통을 해 가는 정책에 있어서도 또한 인정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민생과 국가를 원대하게 경륜(經綸)해 가는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번거롭고 외람된 것임을 용서하시며 유의(留意)하여 말끔히 살펴 주시고, 경사(卿士)들에게 물어보시고서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신다면, 거의 국가가 넉넉해지게 하고 민생들이 유족(裕足)해지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의 상소를 묘당에 계하(啓下)하며 품쳐하도록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수레 제도를 창시하여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레 사용은 진실로 민생과 국가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각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따로 기교(技巧)가 있는 사람을 가려 놓았다가 절사(節使)가 연경(燕京)에 가게 될 때에 데리고 가도록 하여, 갖가지 수레 제도를 하나하나 모사(摸寫)해다가 그대로 본받아 시행하게 하기 바랍니다. 흙벽돌을 구워내는 일에 있어서는, 벽돌을 굽자는 의논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시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군문으로 하여금 연경에서 제도를 가져오되 구워내는 방법을 자세히 탐지해 오도록 하여, 수용(需用)하게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나귀와 양을 목축(牧畜)하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만부(灣府)로 하여금 약간의 당나귀와 양을 무역해 오도록 하여, 당나귀는 한광(閑曠)한 목장에다 방목(放牧)하도록 하고, 염소는 관서(關西)의 각 고을에 나누어 주며 저들에게 키우는 방법을 본받아 널리 번식시키는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 그릇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

	<p>주조(鑄造)에 수용(需用)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영구히 사용을 금하게 된다면 소란이 생기게 될 우려가 없지 않으니,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모자(帽子) 무역을 금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행(使行)의 공용(公用)이 오로지 모자의 세수(稅收)에 의존하고 있으니, 대신할 세수를 구획(區劃)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상확(商確)하여 처결하기 바랍니다. 화어(華語)를 학습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심정을 통해 가기는 오로지 언어(言語)에 달려 있으니, 거듭 사역원(司譯院)의 옛 법제를 엄격하게 하고 삼학(三學)의 강규(講規)도 닦아서 복구하도록 하고, 문신(文臣)을 신칙하여 화어를 익히게 하고, 상서(象胥)에게도 몽학(蒙學)을 익히도록 권과(勸課)하여, 그전처럼 포기(拋棄)하는 일이 없게 하기 바랍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8월 21일(경진)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 심이지가 곡식 저축의 일을 아뢰니 품처하다</p>	<p>경기 관찰사 심이지(沈頤之)를 불러 보았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당면한 지금의 시급한 일은 오직 곡식을 저축하는 한 가지 일에 있는데, 본도(本道)의 1년 용하(用下)인 저치미(儲置米)가 5천여 석(石)이고, 각 아문(衙門)의 둔곡(屯穀)으로 본도에서 실어갈 것이 또한 4, 5천 석이 됩니다. 만일 이번에 돈으로 보충하여 각 고을 및 각 아문에서 수용(需用)하도록 수납(輸納)하고, 원곡(原穀)에 있어서는 각자 해당 고을에 봉류(奉留)하였다가 진휼(賑恤) 물자에 보충하게 하고, 또한 만일에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을 얻게 된다면, 단지 전재(錢財)가 여유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각 아문에 수납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그 소미로써 근본 수량대로 옮겨 보내 작전(作錢)해서 보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명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아뢰기를,</p>	<p>○庚辰/召見京畿觀察使沈頤之。 頤之啓言：“目今急務， 惟在儲穀一事， 而本道一年用下儲置米， 爲五千餘石， 各衙門屯穀之自本道輸去者， 亦爲四五千石。 今若以錢充補， 需用於各邑及各衙門輸納， 而原穀則各自該邑奉留， 以補賑資， 又若得關西小米二萬石， 則非但錢財有裕， 各衙門輸納， 亦當以小米， 依本數移送， 使之作錢充補。” 上命廟堂稟處。 備邊司啓言：“儲置米用下， 則以錢需用， 留作賑穀， 實爲便當，</p>

	<p>“저치미의 용하에 있어서는 돈으로 수용을 해 가고, 머물러 두었다가 진제(賑濟)하는 곡식으로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합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둔곡에 있어서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두 군영의 방료(放料)를 오로지 이에 의존하고 있어서 구애(拘礙)될 듯하므로, 다른 영문(營門)에 추이(推移)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돈으로 수봉(收捧)하던 둔곡(屯穀)에 있어서는 이번은 재년(災年)을 당하게 되었기에 곡식으로 바치게 함은 민생들의 심정에 거슬리게 되니, 단지 처음부터 곡식으로 받던 둔(屯)에 있어서만 올해에는 일체로 도신(道臣)에게 맡기어 본읍(本邑)에 받아 놓았다가 순환(巡還)할 때에 첨가하여 돕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서(關西)의 소미 2만 석은 소청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而屯穀則守、摠兩營放料，專靠於此，似有掣礙，有難推移他營門。自前以錢收捧之屯，今當災歲，以穀責納，有拂民情，只就自初捧穀之屯，今年則一付道臣，捧留本邑，使之添助巡還。關西小米二萬石，依所請劃給爲宜。”從之。</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9월 9일(정유) 3번째기사 승지 유의양이 어염세에 대해 아뢰니 답하다</p>	<p>승지 유의양(柳義養)과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 이만운(李萬運)을 불러 보았는데, 유의양 등은 명을 받들고 바야흐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수하는 참이었다. 유의양이 아뢰기를,</p> <p>“해세(海稅)를 증가하자 생선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한서(漢書)》에 나와있는 소망지(蕭望之)의 말입니다. 지금 포구(浦口) 백성이 모두들 하는 말이, ‘균역(均役) 이후에는 어묘(魚苗)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호(魚戶)들이 생리(生利)를 놓쳐 버리고 더러는 이산(離散)하게 되어 해물(海物)이 극도로 귀해지기 때문에 여타의 물건 값도 또한 따라서 갑절이나 뛰게 되었습니다. 민생들이 의존하여 먹고 사는 것들이 모두 이러하니 민생들이 어떻게 견디어 내게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시급히 어염세(魚鹽稅)를 혁파하게 된다면, 한사(漢史)에 말한 바, ‘나의 백성에게서 이제는 생선이 나오게 되었</p>	<p>○召見承旨柳義養、尙瑞直長李萬運。義養等承命，方修《文獻備考》。義養奏曰：“加海稅而魚不出，《漢書》蕭望之之言也。今之浦民皆言：‘均役以後，魚苗不出。’魚戶失利，或至流散，海物極貴，故他物之價，又從而倍蓰。民生所賴而食者，皆如此，民何以堪乎？臣以爲亟罷魚鹽之稅，則漢史所稱：‘予民魚乃出’之效，可復見矣。魚鹽之稅，前日則爲十萬兩，昨年則僅爲六萬兩。以六萬兩之難充其代，不念生靈之疾苦乎？”上曰：</p>

	<p>다.’는 효과를 다시 보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어염세가 전일에는 10만 냥(兩)이나 되던 것이 작년에는 겨우 6만 냥이 되었습니다. 그 6만 냥의 대신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생령(生靈)들의 질고(疾苦)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p> <p>“마침내 변통해 갈 만한 좋은 계책이 없어서인데, 어찌 민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무릇 일을 하기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구득한 다음에야 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를 구득하기가 쉽지 않다.”</p> <p>하였다.</p>	<p>“終無善策之可以變通者，豈不可悶乎？凡做事，必得人然後乃可，而人自不易得矣。”</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0월 2일(경신) 1번째기사</p> <p>태묘에 전알하고 동향의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태묘(太廟)에 전알(展謁)하고, 동향(冬享)의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피 보았다.</p>	<p>○庚申/展謁于太廟，省冬享牲器。</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0월 19일(정축) 2번째기사</p> <p>각 지방 방백이 물건 유출을 못하게 하는 일을 방지하다</p>	<p>하고하기를,</p> <p>“진제(賑濟)를 경영해 갈 물자를 조가(朝家)에서 바야흐로 이것에다 마음을 다하여 강구(講究)하고 있거니와, 이 이외에는 곡식을 마련하는 방법이 오직 무역(貿易)하여 옮기는 한 가지 길에 달려있는데, 듣건대 호남(湖南)과 영남(嶺南)도 모두 흉년이 든 까닭에, 각 해당 방백(方伯)이 도내(道內)의 곡물(穀物)을 다른 지경에 흘러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여 모든 육로(陸路)로 실어 가고 배로 운반해 가는 일을 극력 방지하여 막는다고 했다. 이는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는 일이지는 하지마는 자못 공제(共濟)하는 마음이 모자라는 것이니,</p>	<p>○教曰：“營賑之需，朝家方此悉心講究，而外此生穀之方，惟在貿遷一路。聞以湖嶺俱歉之故，各該方伯，不欲使道內穀物，流出他境，諸凡陸輸船運之事，極力防塞云。此固無怪，殊欠共濟，廟堂行會，勿令如前防塞。”</p>

	<p>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여 그전처럼 방지하여 막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0월 23일(신사) 4번째기사 원춘도 관찰사 서정수가 진제미 4만 석을 청하니 영남 곡식 1만 석을 다시 나누어 주게 하다</p>	<p>원춘도 관찰사 서정수(徐鼎修)가 장계(狀啓)를 올려 진제(賑濟)할 물자 4만 석(石)을 더 나누어 주기 청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영남(嶺南) 포항창(浦項倉)의 곡식 1만 석을 다시 나누어 주도록 윤허하기를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유사(有司) 당상과 전 원춘도 관찰사 김상집(金尙集)을 불러 보며 말하기를, “관동(關東)의 진제 물자를 비록 이미 1만 석을 더 주었지만 이는 태부족(太不足)할 듯하다. 일찍이 듣건대 칠원(漆原) 고을 등에 보리 저축이 자못 많다고 했으니, 만일에 흑시라도 도백(道伯)이 다시 청하게 된다면, 이를 옮겨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상집에 말하기를, “낙동강(洛東江)은 배를 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칠원은 낙동강의 수로(水路)에 비하여 매우 가깝기도 하고, 또한 조곡(糶穀)이 많은 것도 폐해가 되니, 이를 갈라 옮기는 것이 합당할 듯 싶습니다.” 하였다.</p>	<p>○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請加劃賑資四萬石。 備邊司啓請嶺南浦項倉穀一萬石，更爲許劃。 從之。 仍召見有司堂上及前原春道觀察使金尙集語之曰：“關東賑資，雖已加給一萬石，而此似太不足矣。 曾聞漆原等邑麥儲頗多云， 道伯如或更請， 則以此移轉何如？” 尙集曰：“洛東江則船運甚難， 漆原則比洛東水路甚近， 且以糶多爲弊， 就此移劃， 恐宜矣。”</p>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1월 3일(경인) 1번째기사 경모궁에 나가 제기와</p>	<p>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제기(祭器)와 희생(犧牲)을 살펴 보았다.</p>	<p>庚寅/詣景慕宮，省器牲。</p>



희생을 살피다		
<p>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1월 19일(병오) 1번째기사</p> <p>춘당대에 나가 거재 유생에게 어착 2가를 내리고 식당에서 하교하다</p>	<p>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대사성 심풍지(沈豐之)에게 거재 유생(居齋儒生)을 데리고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여 어착(魚錯) 2가(架)를 내리며 말하기를, “저번날 전문(箋文)을 올렸을 때에 불러 보며 음식을 내리려고 하다가 마침 재일(齋日)을 만났었기에 실현하지 못했었다. 오늘 여기에 임하여 특별히 너희들을 불러 간략하나마 몇 가지 어물(魚物)을 발급(頒給)하는 것은 대개 우악(優渥)하게 예대(禮待)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아야 한다. 반수(班首)가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미 너희들을 불렀으니 재주를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 드디어 어제(御題)를 내어 시험보이고 친히 시권(試券)을 고사(考査)하여 차등이 있게 상을 내리었다. 이어 저녁 식당(食堂)으로 나아가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경(卿)들이 매양 식당의 음식 솜씨가 거칠어 먹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친히 맛보건대 단지 맛이 있어 보이니, 어찌면 천하 사람들의 입이 같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대저 앞에다 여덟 가지 진미(珍味)를 늘어놓아도 먹게 되는 것은 입에 맞는 것에 지나지 않는 법이니, 어찌 유독 추환(芻豢)만 맛이 있는 것이겠는가? 비록 소사(疏食)와 채갱(菜羹)이라도 또한 처음부터 배부르게 되지 않는 수는 없는 법이니 경들은 힘을 써야 한다.”</p> <p>하였다.</p>	<p>○丙午/御春塘臺， 命大司成沈豐之， 率居齋儒生入侍， 賜魚錯二架曰：“向來進箋時， 欲爲召見賜饌， 而適值齋日， 而未果矣。 今日臨此， 特召爾等， 略以數種魚物頒給者， 蓋出於優禮之意。 頒悉此意， 班首責去分頒。” 又教曰：“既召爾等， 不可無試藝之舉。” 遂宣御題試取， 親自考券， 施賞有差。 仍御夕食堂， 語承旨等曰：“卿等每謂：‘食堂烹飪之麤糲不堪食。’ 今予親嘗， 但見其旨， 豈天下之口不同而然耶？ 夫羅八珍於前， 所食不過適口， 豈獨芻豢之爲可悅？ 雖疏食菜羹， 亦未始不飽。 卿等其勉之。”</p>
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p>48년) 11월 29일(병진) 3번째기사 영의정 정존겸이 주조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p>	<p>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저자 민생들이 도하(都下)에 전황(錢荒)3554) 든 것을 목하(目下)의 큰 폐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폐해를 구제하는 방도는 오직 돈 주조(鑄造)에 있는데 다만 매우 큰 역사이어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염려되는 것은 책임자를 구득할 수 없는 것인데, 진실로 책임자만 구득한다면 돈 주조는 편리하게 됩니다.” 하고, 비변사 당상 김화진(金華鎭)·서유린(徐有隣) 등이 말하기를, “전황의 폐해를 구제하는것은 돈 주조 만한것이 없는데 진실로 물력(物力)을 조치하여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정 존겸이 다시 더 상확(商確)하여 처리하기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甲子/嶺南督運御史金載人，以關東移轉穀九千二百石裝發馳啓。 教曰：“觀此督運御史狀本，許多船隻，無弊裝載，如期發送，餘只是若干數，民事萬幸。 然昨今日寒猝劇，念彼轉運之苦，恫若在己。 行會督運御史及原春監司，發送之際，十分審慎，到泊之後，劃卽分俵，俾各另加惕念。 且以諸道飢民言之，採葛延活之類，當此嚴沍，歲且垂暮，顛頷不已，必至捐瘠。 此時接濟，萬一失宜，小民之困窮，還有甚於開春後設賑時，亦以此意，嚴飭兩西外諸道監司，使之多般救急，歲前救急處邑名人口，不拘常格，亦令據實狀聞。”</p>
<p>정조 17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2월 3일(기미) 1번째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습의(習儀)가 끝나기를 기다려 환궁하였다. 이날 춘향(春享)을 친히 행하려 하였으나 밤에 비가 쏟아져 아침까지 개지 않으므로 승지(承旨)들이 원계(院啓)를 올려 그만두기를 청하니, 하고하기를, “우세(雨勢)가 이러하니 제사할 즈음에 실의(失儀)하기 쉽거니와, 백관(百官)·군병(軍兵)이 밤새 젖은 괴로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특별히 명하여 섭의(攝儀)하게 하였다.</p>	<p>○己未/上展拜景慕宮，省牲省器，待肄儀畢還宮。 是日將親行春享，夜雨執沱，至朝不霽，諸承旨上院啓請寢。 教曰：“雨勢如此，將事之際，易致失儀。 百官、軍兵，達夜沾濕之苦，亦不可不念。” 特命攝儀。</p>

<p>정조 17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3월 3일(무자) 3번째기사</p> <p>독운 어사 김재인이 진구할 곡식의 운구 모습을 그려 바치니 입시를 명해 백성의 병폐를 묻다</p>	<p>독운 어사(督運御史) 김재인(金載人)이 진구(賑救)할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장자(障子)를 만들어 바치니, 이어서 입시(入侍)하도록 명하고 여러 고을 백성들의 병폐를 묻자, 김재인이 아뢰기를,</p> <p>“포항창(浦項倉)의 곡부(穀簿)가 요즈음에 매우 넉넉하지 못하여 매년 관북(關北)으로 운송할 때를 당하면 바닷가 여러 고을에서 융통하여 마련하는데, 주민들의 폐해가 대단히 많고 수로(水路)도 험하고 먼지, 원대한 경영을 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포항창의 곡식 저장은 본래 3만 석(石)으로 표준을 삼는데 현재 바치고 남은 것이 수천 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관동(關東)으로 운송한 뒤에 임시 방편(方便)으로 이웃 고을의 환곡(還穀)을 이전(移轉)하도록 하여 그 대신으로 채우게 하였지만 각 고을에서 거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거듭 본도(本道)에 신칙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안동(安東)의 사인(士人) 남시윤(南時潤)이 계묘년(3610) 봄에 과거 시험장에서 죽었는데, 그의 처(妻) 신씨(申氏)가 장례(葬禮)를 치른 뒤에 못가[澤畔]의 길을 지나다가 치마로 낚을 가리고 물에 뛰어들어 죽자, 그의 비자(婢子)도 동시에 물에 뛰어들어 죽었으므로 하루 동안에 절의(節義)가 쌍(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이 안동에 이르자 온 고을의 사인(士人)들이 말을 에워싸고 진소(陳訴)하였으니, 정포(旌褒)를 가하여 풍성(風聲)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하니, 절의가 뛰어나니 특별히 작설(綽楔)하는 법을 시행하라는 것으로 하고</p>	<p>○督運御史金載人，以賑穀船運之狀，繪畫作障子以進。仍命入侍，詢列邑民瘼。載人啓言：“浦項倉穀簿，近甚不裕，每當北運時，通融磨鍊於右沿諸邑，而民弊滋廣，水路險遠，宜令預爲經遠之道。浦項倉穀儲，本以三萬石爲準，而目今捧留，未能滿數千石。今番東運後，方便移轉隣邑還穀，以充其代，而各邑多不舉行。請令廟堂，申飭本道。”從之。又啓言：“安東士人南時潤，癸卯春，致斃於場屋。其妻申氏，過葬後，路過澤畔，以裳掩面，投(冰) [水] 而死，其婢子同時赴水。一日之間，節義成雙。臣到安東，一鄉士人，擁馬陳訴，宜加旌褒。以樹風聲矣。”教以節義卓然，特施(綽) [綽] 楔之典。</p>
--	--	---

	<p>하였다</p>	
<p>정조 17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3월 27일(임자) 2번째기사 사간 이복휘가 쌀값 등 7건의 일을 상소하 니 비답하다</p>	<p>사간 이복휘(李福徽)가 상소하기를, “며칠 전에 도성(都城) 백성들의 생활하는 방도가 날마다 급박하다고 하여 특별히 수십만 동(銅)을 내어 열전(列廩) 및 군교(軍校)에게 나누어 대여해 주고, 공인(貢人)의 쌀 값 또한 미리 내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돈과 곡식이 함께 유통되지 않는 탄식이 없게 하였으니, 은덕이 지극히 후(厚)합니다. 그러나 쌀 값은 그전대로 조금도 줄어든 바가 없는데 이것은 쌀가게[米]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탐하려고 마음대로 조종(操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니 그 해당 관서(官署)에다 값을 보고하기는 그 되[升]와 말[斗]을 증가시켜 천청(天聽)을 속이는데 이르렀으니, 신은 생각하기를 해당 관서에 엄중히 신칙하여 쌀 값을 조금 줄여야 하겠습니까.</p> <p>그리고 요즈음 군사감(軍資監)에 포핍(逋欠)한 일로 적발되어 논죄(論罪)한 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서(吏胥)의 무리가 도둑질을 하여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매번 요(料)를 나누어 줄 때를 당하면 액레(掖隸)가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욕(辱)하면서 이서를 때리고 차며 곡(斛) 위에 곡을 더하여 다른 것과 비교하여 갑절이나 다섯 갑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요를 나누어 주는데 더 들어가는 것이 수십 석(石) 뿐만이 아니니 달마다 보태지고 해마다 쌓이니 거의 어떻게 수천 곡(斛)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해조(該曹)에 엄중히 신칙하여 각별히 금단(禁斷)하게 하소서.</p> <p>그리고 삼가 들으니 호남(湖南)의 삭선(朔膳)을 진상(進上)하는 규정은 각 고을에서 민간(民間)에 값을 바치게 하여 영주인(營主人)에게 출급(出給)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역(貿易)하여다 진배(進排)하게 하였는데, 이른바 영주</p>	<p>○司諫李福徽上疏曰： 日昨以都民之生理日急， 特出數十萬銅， 散貸列廩及軍校， 貢人米價， 亦爲預下， 俾無錢穀俱荒之嘆， 德至厚也。 然米價依舊， 少無所減。 此由於米廩人， 乘時牟利， 惟意操縱之致， 而聞其報直於該署， 則增其升斗， 以至欺罔天聽。 臣謂嚴飭該署， 稍減米直焉。 近以軍資監逋欠事， 有摘發論罪之舉。 此非但吏胥輩偷竊之致， 每當頒料之時， 則掖隸侮辱官長， 拳踢吏胥， 斛上加斛， 比他倍蓰， 故一番頒料加入， 不啻數十石， 月添歲積， 幾何不爲數千斛耶？ 臣謂嚴飭該曹， 各別禁斷。 伏聞湖南朔膳進上之規， 各邑捧價於民間， 出給營主人， 使之貿易進排， 而所謂營主人， 消盡於私用， 及其封進， 無計辦出， 輒訴本邑， 圖得還穀。 今年如是， 明年如是， 一主人所負， 多則五六千石， 少不下四五百石， 五十三州， 無不皆然云， 此實南路之一大痼弊也。 臣謂令廟堂， 卽速釐正可也。 昇平日久， 武備踈虞， 筒箇弓矢之屬， 只取華飾，</p>

인이 그것을 사용(私用)에 모두 소비하여 버리고 그 봉진(封進)할 때에 이르러서는 판비해 낼 계획이 없어 번번이 본읍(本邑)에 호소하여 환곡(還穀)을 얻으려고 도모하니, 금년에 이와 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하여 한 사람 영주인이 빚을 부담한 것이 많게는 5, 6천 석(石)이고 적어도 4, 5백 석에 밑돌지 않으며 53고을이 모두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니, 이는 실로 남도의 하나의 큰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빨리 바로잡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무비(武備)가 허술해져 동개(筒筒)와 궁시(弓矢)의 부류들이 단지 화려한 장식으로 취해지며 전적으로 실질적인 효용이 없으니, 만약 완급(緩急)함이 있게 되면 장차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시위(侍衛) 및 각영(各營)의 수신(帥臣)에게 신칙하여 한결같이 옛날의 제도를 따라 그 기계(器械)를 예리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월과(月課)인 약환(藥丸)에 이르러서는 삼남 및 해서의 변진(邊鎭)에 선혜청에서 나누어 준 것이 없지 않습니다만 애당초에 저축하여 준비한 일이 없으므로 매년 조련(操鍊)을 당하게 되면 여러 고을에서 몰래 사들이니 급박할 때이면 어떻게 갑자기 판비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비변사에서 강구(講究)하고 장신(將臣)에게 널리 물어 제때에 변통(變通)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홍문관은 청선(淸選)이니 책임이 매우 중대합니다. 요즈음에 와서 관방(官方)3656) 이 어지럽게 뒤섞여 문식(文識)이나 지별(地閥)을 논할 것이 기필코 피차(彼此)가 서로 대적하도록 하게 하였으니 시험삼아 이번의 관록(館錄)으로 말한다면 지처(地處)가 낮고 한미한 이익진(李翼晉)·권유(權裕) 같은 자와 배우지 못하여 식견이 없는 홍낙항(洪樂恒) 같은 자가 갑자기 극선(極選) 가운데 뒤섞여 권점(圈點)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묵(李顯默)이 지난번 역적을 성토하는 아뢰를 발설하려다 곧바로 정지한 것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專無實用，脫有緩急，將焉用哉？臣謂申飭侍衛及各營帥臣，一從舊制，利其器械可也。至於月課藥丸，三南及海西邊鎭，非無惠廳劃給，而初無儲備之事，每當操鍊，潛買列邑，緩急何以猝辦？臣謂講究籌司，廣詢將臣，及時通變可也。瀛館淸選，責任甚重。近來官方淆雜，無論文識地閥，必以彼此互對，試以今番館錄而言之，地處卑微之如李翼晉·權裕、不學無識之如洪樂恒者，遽然混圈於極選之中。至若李顯默之向來討逆之啓，欲發旋寢，四百年臺風，於斯掃地，刊改之請，至發於論思之列，而彈墨未乾，華銜濫叨，其可曰國有公議乎？臣謂李翼晉、權裕、洪樂恒、李顯默，特施刊改之典。其時參圈玉堂，竝施譴罷之典。至於都堂錄，一依本館錄施行，全無黜陟可否之意，夫如是則何必更圈於都堂乎？竊爲大臣慨然也。日前朝堂，崇品元戎，發怒於辭疏之退却，醜辱不捧之承宣，同座駭視，傳說狼藉。彼雖武夫，其在搢紳相敬之道，何可肆其口氣，損其體貌，若是之甚也？臣謂訓練大將具善復，特施譴罷之典。

4백 년을 내려온 대풍(臺風)이 여기에서 땅을 쓸어버린듯 없어졌으며, 삭제하고 고치라는 주청이 논사(論思)하는 반열에서 발설되는데 이르렀고, 탄핵하는 먹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높은 직함이 외람되게 더해지니, 그 국가에 공의(公義)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이익진·권유·홍낙항·이현목에게는 특별히 삭제하고 고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며, 그 당시 권점에 참여한 옥당(玉堂)의 관원은 아울러 견책하여 파면하는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도당록(都堂錄)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본관록(本館錄)에 의거하여 시행하였기에 출척(黜陟)과 가부(可否)를 표시한 뜻이 전혀 없으니, 대저 이와 같다면 하필 도당 의정부에서 다시 권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옥이 대신(大臣)을 위하여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당(朝堂)에서 품계가 높은 원용(元戎)이 사소(辭疏)를 퇴각(退却)시킨 데 대하여 화를 내며 받들지 아니한 승지에게 추잡한 욕을 하였으므로 같은 좌석에서 놀랍게 보았으며 전해지는 말이 낭자(狼藉)합니다. 그가 아무리 무부(武夫)라 하더라도 그 진신(摺紳)에게 서로 공경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 입을 마음대로 놀려 그 체모(體貌)를 손상시키기를 이와 같이 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훈련 대장 구선복(具善復)에게 특별히 건과(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맨 먼저 진달한 일과 그 다음에 진달한 일은 의당 유념하겠다. 그리고 쌀 값에 대한 일과 포흠(逋欠)에 대한 일은 해당 관사에 거듭 신칙하겠으며, 제5건(件)의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온편한 데로 따라 강구하게 하겠고, 제6건의 일은 각별히 신칙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으며, 제7건의 일은 폐단이 되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데 이르렀음을 알지만 경솔하게 고쳐서 바로잡을 필요는 없으며 도리어 시끄러운 탄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지금

批曰：“首陳事、次陳事，當留意。米價事、逋欠事，申飭該司。第五件事，令廟堂便講究。第六件事，各別申飭，俾有實效。第七件事，固知爲弊，至於有名無實，不必草率釐正，反致紛紜之歎，今姑置之。第四玉堂事，何乃一筆句勘，售此齷齪手段？予甚非之。參圈諸玉堂事，不允。至於侵斥都堂，不但以妄率言，都堂有甚所失，爾以爲慨然乎？末端事，誠有是也。譴罷可謂未勘，而此屬風傳，將臣去就，亦係不輕，不允。”

	<p>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라. 그리고 제4건의 옥당(玉堂)에 대한 일은 어찌 한편의 짧은 문장으로 구감(句勘)하여 이렇게 자질구레한 수단을 행하려 하는가? 내가 매우 그르게 여긴다. 권점(圈點)에 참여한 여러 옥당 관원에 대한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정부를 침해하고 배척한데 이르러서는 망령되고 경솔하게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에서 무슨 실수한 바가 있기에 그대가 개탄스럽게 여겼었는가? 말단(末端)의 일은 진실로 옳은 것이 있다. 견책하여 파면하는 것은 말감(末勘)한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풍문으로 전해진데 속하며 장신(將臣)의 거취(去就) 또한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정조 17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5월 5일(기미) 1번째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는데, 하향(夏享)이 이튿날이었기 때문이었다.</p>	<p>○己未/展拜于景慕宮，省牲器，夏享在翼日也。</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7월 2일(을묘) 8번째기사 책봉 예식 비용을 절약할 것에 대해 하고하다</p>	<p>선원전(璿源殿)에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경모궁(景慕宮)을 전배하였는데, 경사를 고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와서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하교하기를, “지위와 칭호를 비록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릇 비용에 관계되는 것은 마땅히 절약하고 생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곧 복을 아끼려는 지극한 뜻이다. 연여(輦輿)와 말안장·의관·기물은 책봉 예식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거든 모두 관례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도록 할 것은 물론이요, 이날 공급하는 삭선(朔膳)과 모든 공헌(供獻)하는 여러 물품은 호조·예조·공조로 하여금 별단</p>	<p>○展拜璿源殿，仍展拜景慕宮，告慶也。還御宣政殿，教曰：“位號雖定，凡係糜費，宜有節省之舉。此乃惜福之至意。輦輿、馬鞍、衣冠、器用，除非冊禮所用，並令待冠禮舉行外。此日供朔膳及諸凡供獻之物，令戶禮工</p>

	<p>(別單)으로 써서 궁궐에 들어온 다음에, 비답(批答)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진배(進排)하도록 하라. 동궁(東宮)의 사약(司鑰)은 중관(中官)의 관례에 의하여 사알(司謁) 중에서 겸하여 일보도록 하고, 액례(掖隸)는 숙종 경오년(1759)에는 16명이었고, 선조 병진년(1760)에는 20명이었는데,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에는 16명의 관례를 적용하였다. 이번에도 16명으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曹，別單書入，待批下進排。東宮司鑰，依中官例，司謁中兼察。掖隸，則肅廟庚午十六人，先朝丙辰二十人，而予在春邸時，用十六人之例。今番，以十六人磨鍊。”</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7월 3일(병진) 1번째기사 세자궁에 바치는 방물·물선·절선의 숫자를 결정하다</p>	<p>예조에서 세자궁(世子宮)에 바치는 방물(方物)·물선(物膳)·절선(節扇)의 숫자에 대하여 아뢰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절선은 관례대로 세자궁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있으니, 관례대로 봉해 올리고, 책봉하는 날에는 중앙과 지방의 방물과 물선을 관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丙辰/禮曹以世子宮方物、物膳、節扇數爰啓。教曰：“節扇則例有頒給宮僚之事，依例封進，冊禮日則京外方物、物膳，依例舉行。”</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7월 27일(경진) 2번째기사 동궁 책봉의 아홉 가지 예식을 규례대로 행할 것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동궁(東宮)의 책봉 예식에는 아홉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째는 좋은 길일을 택하여 기일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 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청에 나가 책문을 선포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례하는 전문(箋文)을 올리는 것이고, 넷째는 왕비에게 조알(朝謁)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백관들이 전문을 올려 진하(陳賀)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백관들이 동궁에게 하례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길일을</p>	<p>○教曰：“東宮冊禮，有九儀。其一，擇吉前期告廟社。其二，臨軒宣冊。其三，上謝箋。其四，朝于王妃。其五，百官上箋陳賀。其六，百官賀東宮。其七，擇吉謁宗廟。其八，會百官。其九，會命婦，而今番則在沖年，儀文多從省約。然祖宗朝制禮之盛意，至詳且備。且見實錄考來者，國初皆</p>



	<p>택하여 종묘에 배알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백관들을 모으는 것이고, 아홉째는 명부(命婦)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번에는 동궁이 나이가 어린 만큼, 의식 절차를 많이 생략하는 것에 따랐으나,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서 예법을 마련한 성대한 뜻을 상세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록(實錄)을 상고해 온 것을 보아도 국초(國初)에 모두 이 의식 절차를 적용하였다. 종묘에 배알하는 것은 성장한 다음에 당연히 거행할 터이지만, 백관들을 모아서 연례(宴禮)를 하는 것은 비록 경솔히 논의할 수 없으나, 의식 절차의 순서만은 의당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교(傳敎)를 《의궤(儀軌)》에 신도록 하라. 책봉 예식이 끝난 뒤에 으레 사(師)·부(傅)·빈객(賓客)들이 상견례(相見禮)를 행하는데, 이것은 의식 절차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으니,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用此儀。謁廟待成長，卽當行之，而會百官，系是宴禮，雖不輕議儀節次第，宜有傳示來後。以此傳敎，載之《儀軌》。冊禮後，例行師、傅、賓客相見禮，此則儀節不甚繁多，依例舉行。”</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8월 7일(경인) 2번째기사 비변사 모곡조의 절반 을 경기 감영에 양도 할 것을 명하다</p>	<p>각신(閣臣), 춘방(春坊), 비변사 당상관과 경기 관찰사 심이지(沈頤之)를 소견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신의 감영에 아병(牙兵)을 설치한 뒤에 아직 군향(軍餉)을 접제(接濟)할 방도가 없습니다. 매양 배종(陪從)할 때를 당하여 문득 아래 역참의 세패(貫牌)를 고용하여 전배(前排)의 파수(把守)를 세우게 되니, 어찌 이런 군용(軍容)이 있겠습니까? 도내에는 비변사에서 구관(句管)하는 군향(軍餉)인 쌀·벼·콩이 모두 3천 4백여 석(石)이나 되니, 청컨대, 이 수량을 신의 감영에다 넘겨주어 경기 감영의 군향(軍餉)이라고 이름하여 매년 모곡조(耗穀條)에서 절반을 신의 감영에 떼어주고, 절반은 원 수량에 첨부(添付)하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묘당(廟堂)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는데,</p>	<p>召見閣臣、春坊、備邊司堂上京畿觀察使沈頤之。頤之啓言：“臣營設置牙兵之後，尙無軍餉接濟之道。每當陪扈之時，輒雇下驛貫牌，把立前排，寧有如許軍容乎？道內備局句管軍餉米租豆，并爲三千四百餘石，請以此數，付之臣營，名以畿營軍餉，而每年耗條，折半劃給臣營，折半添付元數。”</p> <p>命廟堂草記稟處，以本司句管，不可出付外營，只就每年耗條中，劃給折半。</p>

	<p>본사(本司)에서 구관하고 있는 것을 외영(外營)에 내어맡길 수 없다고 하여, 다만 매년마다 모곡조 가운데에서 절반을 떼어주기로 하였다.</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8월 15일(무술) 1번째기사 숙종 탄신일을 맞아 선원전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숙종(肅宗)의 탄신일이기 때문이었다. 명하여 시임·원임 대신·각신(閣臣)·승지·사관·도위(都尉)에게 반열에 참가하게 하였다.</p>	<p>○戊戌/行酌獻于璿源殿，肅宗誕辰也。命時·原任大臣、閣臣、承史、都尉、參班。</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9월 16일(무진) 2번째기사 북관에서 신역으로 내는 쌀과 포의 절반을 탕감해 줄 것을 명하다</p>	<p>임금이 하교하기를, “이번에 팔도(八道) 신군포(身軍布)의 절반을 탕감한 수량 가운데 많은 곳은 영남처럼 거의 8만 석이 넘고, 적은 곳은 관서처럼 5천 석에 떨어지지 않는 데, 유독 북관(北關) 한 도(道)는 겨우 1천여 금(金)이 될 뿐이다. 이것은 서울에 바치는 수량이 같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의 형세상 그런 것이니,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러나 본 도(本道)는 원래 태조가 태어난 고향[豐沛舊鄉]이므로 언제나 조정에서 각별히 진념(軫念)해 왔는데, 겨우 큰 진휼을 겪고난 다음이라서 온갖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것이니, 또한 특별히 돌봐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전에 특별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명한 것은,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북관의 신역(身役)으로 내는 쌀[米]과 포(布)로서 경사(京司)에 관유(關由)하는 것은 해당 고을에서 받아서 보관하거나 주창(州倉)에서 들이었다가 바치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절반을 탕감해서 관서보다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 내가 관서과 관북을 하나로 본다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아! 큰 혜택을 베풀어</p>	<p>- ○教曰：“今番八路身軍布，折半蕩減之數，多如嶺南，殆過八萬，寡如關西，不下五千，而獨北關一道，僅爲千餘金。此既由於京納多寡之不同，事勢無怪其如許。然本道自是豐沛舊鄉，每勤朝家軫念，而才經大賑，瘡痍未蘇，亦宜有別般顧恤之舉。日前之特命考奏，予意有在。北關身米布之關由京司者。無論該邑捧留，州倉入上，併折半蕩減，無令減於關西，以示予一視西北之意。噫！大霽蠲除，寔爲元良，慶既無前，惠亦無前，而小大同歡，遐邇均被，然後予心可安。茲於北關，</p>

	<p>조세를 건감(蠲減)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실로 원량(元良)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경사가 전에 없었으니, 이는 대소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멀고 가까운 지역에서 다같이 고루 은혜를 입은 뒤에라야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관에 대하여 다시 이처럼 거듭 유지하는 것이다.” 하였다.</p>	<p>復此申諭。”</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9일(신묘) 1번째기사 칙사를 대접하는 의궤를 책자로 편집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다</p>	<p>비변사 제조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의궤(儀軌)는 그 상세하고 소략함이 같지 않아서 거행할 즈음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칙사 일행이 회환(回還)한 뒤에 호조 판서는 일을 주관할 능력이 있는 낭청(郎廳)과 상당히 일에 밝은 역관[任譯]을 데리고 각 연도의 의궤(儀軌)를 차례차례 분류한 다음 책자를 만들어, 한 건(件)은 궁중에 들여오고, 한 건은 예조에 보관하며, 한 건은 사역원(司譯院)에 보관함으로써 후일에 상고할 자료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辛卯/召見備邊司提調，教曰：“支勅儀軌，詳略不同，舉行之際，易致眩亂矣。勅行回還後，戶判與翰事郎廳及詳明任譯，就各年儀軌，秩秩分彙，仍成冊子。一件內入，一件藏禮曹，一件藏司譯院，以爲後考之地。”</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9일(신묘) 2번째기사 칙사 영접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민폐를 끼치지 말것을</p>	<p>하교하기를, “매양 칙사(勅使) 일행을 맞아 나례(儼禮)를 설행(設行)할 때에, 해당 도감에 소속된 자들이 탈을 만드는 밀천에 드는 값이라고 일컬으면서 부호(富戶)를 침어(侵漁)하거나, 또는 임시 무대를 설치할 재물을 마련할 때 강인(江人)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에는 날날이 금지하게 하라. 또 듣건대, 나례의 비용을 모두 시민(市民)들에게 부담시</p>	<p>○教曰：“每當勅行，有儼禮設行之時，該都監所屬，稱以像帖價木，侵漁富戶，又於假家材木，作挈江民，種種弊端，不一而足云。今番則一一禁遏。且聞儼禮之需，皆令市民責應，此亦無據。至於勒奪富民財貨，尤所當禁。計其所入，自該曹量給物力，俾無一毫</p>

명하다	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지어 부유한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금지해야 할 것이다.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해당 조(曹)에서 물력(物力)을 헤아려 지급함으로써 털끝만큼도 폐를 끼치는 단서가 없게 하라.” 하였다.	貽弊之端。”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칙사를 위한 연례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윤허하다	칙사(勅使)를 위한 연례(宴禮)에 옛날에는 금주(禁酒)로 인하여 꿀물을 썼는데, 이때에 이르러 술을 쓰도록 명하였다.	○勅使宴禮，舊因禁酒，用蜜水，至是命用酒。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1월 12일(계해) 1번째기사 공작미를 5년 기한으로 물리게 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공작미(公作米)를 5년으로 기한을 물리는 것은 순치(順治)3891) 경자년 3892) 부터 모두 전례로 되었습니다. 기축년·갑오년·기해년에 처음에는 책망하여 유시하였으나 끝내는 실시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기해년으로부터 또 만 5년의 기한이 되었습니다. 차왜(差倭)가 나온 뒤에 빈손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세(事勢)로 보아 괴이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을 위로하는 정사로 보아 줄곧 망설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특별히 명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癸亥/備邊司啓言：“公作米五年退限，自順治庚子，便成前例。己丑、甲午、己亥，始則責諭，末乃許施。今去己亥，又滿五年之限。差倭出來之後，不欲空還，事勢無怪，其在綏遠之政，恐不必一向斬。”特命許施。
정조 18권, 8년(1784)		○濟州饑，牧使嚴思晚狀請，自明年正

<p>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1월 27일(무인) 3번째기사          제주의 기근을 진휼하도록 8천석의 정조 모곡을 내리다</p>	<p>제주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목사 엄사만(嚴思晩)이 장계를 올려, 내년 정월부터 보릿가을까지 한하여 진휼곡을 나누어 주는데, 임피(臨陂) 나리포(羅里舖)의 창고 곡식 8천 석(石)을 기준하여 제때에 들여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호남 지방의 바닷가 고을들은 이제 막 큰 진휼을 거쳤으므로 8천 석의 곡식은 형세로 보아 마련해 내기 어려우니, 청컨대, 원순(元巡) 때에 부족했던 6천 4백 석을 바닷가 고을 소재의 아무 아문(衙門)의 곡식 중에서 먼저 미루어 옮겨서 취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나리포에 창고를 설치한 지가 지금 65년이나 오래 되었는데, 남아 있는 저축이 얼마 안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결같이 경인년(3905)에 규정을 만든 이후로 곧 유명 무실한 데로 귀결되고 있다. 창고 안의 정곡(正穀)이 모자란다고 하니, 형세로 보아 장차 바닷가의 고을에서 마련해 내야 할 텐데, 거둬 기근이 든 후이고 또 전수(轉輸)한다는 것은 어찌 어렵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주도 백성들이 먹여줄 것을 바라는 심정도 또한 진념(軫念)하지 않을 수 없으니, 8천 석의 수량에 준하여 본 창고의 정조(正租) 모곡(牟穀)으로서 특별히 시행할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엄사만을 보릿가을까지 한하여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명하였다.  <b>【태백산사고본】</b></p>	<p>月, 限麥秋分賑, 臨陂、羅里舖倉穀, 準八千石, 趁卽入送。 備邊司啓: “湖南沿邑, 才經大賑, 八千石穀, 勢難辦出, 請以元巡不足六千四百石, 沿邑所在某衙門穀中, 推移劃給。 教曰: “羅里設倉, 今爲六十五年之久, 而遺儲未免苟簡。 一自庚寅定式之後, 便歸名存而實無, 倉內正穀, 既云不敷, 勢難辦出於沿邑, 而荐飢之餘, 又令轉輸, 豈非難慎處乎? 然島民仰哺之情, 亦不可不軫念, 準八千之數, 本倉正租牟穀, 特爲許施。” 仍命嚴思晩, 限麥秋仍任。</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2월 6일(정해)</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칙사(勅使)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p>	<p>○丁亥/御仁政殿, 宴饗勅使。</p>

<p>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칙사들에 게 연회를 베풀다</p>		
<p>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2월 24일(을 사) 2번째기사 칙사 영접에 필요한 물자의 문건을 만들어 민폐가 없도록 엄히 명하다</p>	<p>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칙사(勅使)의 행차가 나오던 초기의 모든 칙사에 관계되는 물자 때 문에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거듭 신칙하였는 데,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들은 과연 한마음 한뜻으로 대양(對揚)하여 백성 들에게 폐단을 끼치지 않았는가? 지금 만약 물고기나 과일은 방리(坊里)에서 징수하지 않고, 또 기명(器皿)은 촌려(村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책임 을 모면하려고 핑계대면서, 도리어 전해 오는 그릇된 습관을 답습하여 살림이 조금 넉넉한 백성들에게 이전대로 침해한다면, 이름은 비록 아전과 향리(鄉 吏)지만 아전과 향리도 또한 백성이니, 또한 오로지 무슨 까닭인가? 설령 수 령들이 개연히 조정의 명령을 받드는 데에 성의를 다하여 자기의 능률(廩菽) 을 희사하여 스스로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비단 공적으로 쓰는 것과 사적으로 쓰는 것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고을들의 물력을 더 보충하는 데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곤궁에 빠지지나 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대저 이번 책봉 칙사(冊封勅使)는 실지 전에 없던 나라의 경사에서 비롯되는 데, 만일 칙사에 대한 공급하는 물자 때문에 한 고을·한 백성이라도 빚을 지 는 것이 생긴다면, 내가 사전에 신칙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즐기려는 본 의와 크게 어긋난다. 또 칙사를 접대하는 기준 수량에 구애되어 감해 준 것이 들어오는 물자와 맞지 않는다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저절로 돌아가는 데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들에 대해서 말하면, 관서(關西)·해서(海西)의</p>	<p>○教曰：“向於勅行初頭，以凡係勅需， 無得一毫煩民之意，申申提飭，道臣、 守令，果皆一心對揚，不貽民弊否耶？ 今若以魚果則不徵於坊里，器皿則不責 於村閭，誘之塞責，而反循流來謬習， 若於富實稍饒之民，依前侵漁，則名雖 吏鄉，吏鄉亦民耳，抑獨何故？藉令守 令，慨然銳意於奉承朝令，捐廩自備， 非但公私用之，不宜相混，近來列邑事 力之優於充補，不底窘乏，予莫之知 也。大抵今番封勅，寔由於無前邦慶， 若因支勅供億之資，雖有一邑一民負逋 之事，大非予前期申飭，普率同樂之本 意。且或拘於支勅度數之限，所減不 準所入，則末流之害，自有所歸。至 若畿甸諸邑，比兩西尤有甚焉。各站 米、支供米外，率多官辦云，殘廩薄 況，將何支保？支勅定例，從優磨鍊， 纔已面諭於戶判，而此猶屬前頭事。 今番會減，豈可無別般軫念？令廟堂， 分付三道道臣，使之體予至意，勿拘二 勅三勅之限，勿拘會減常規，從實入竝</p>

두 지방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각 역참의 쌀과 공급하는 쌀 이외에는 거의 다 관청에서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보잘것없는 늬룩과 박하게 주는 물자를 가지고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칙사를 접대하는 정해진 규례는 될수록 넉넉하게 마련하라고 겨우 이미 호조 판서에게 직접 유시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할 일에 속한다. 이번에 회계하여 감(減)해 주는 일에 대하여 어찌 별도로 진념(軫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삼도(三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게 하고, 칙사가 두 사람이건 칙사가 세 사람이건 관계하지 말뿐만 아니라 회계하여 감해 주는 정상적인 규정에도 구애되지 말고, 실지 들어온 수량에 따라 아울러 전 수량을 회계하여 감해 줄 것이다. 그런데 관서 지방은 감사가 스스로 오로지 주관하고, 해서 지방은 병사가 대신하여 행하고, 경기 지방은 경청(京廳)에서 총괄하여 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각 그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왕복하여 적당히 하게 하되, 되도록 세밀하게 하도록 하라. 관사(館舍)를 보수하는 것도 칙사 접대에 관계되는 하나의 일인데, 거기에 들어갈 물자와 노력도 도신이 적당히 주선하여 좋을 대로 구처하여 백성들과 고을들에게 칙사 접대 때문에 폐단을 끼친다는 한탄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교가 내린 뒤에도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혹시 성실하지 못하여 민간을 침해하였다는 말이 들려오기만 하면, 해당 고을 수령에게 엄한 법으로 죄를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도신부터 먼저 논죄하여 처벌할 것이다. ‘구중(九重)이 깊고 으스스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원래 탐문하는 길이 있다. ‘눈 앞의 일이나 미봉하고 나면 요행으로 무사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 것이다. 어제 접대하는 관리의 말을 듣자니, 정유년(3914)의 칙사 접대 때에 남은 빛은 지금까지도 마감짓지 못한 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록 명령을 내리기 전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만일 해가 오래된 뒤에라도 금년의 칙사 접대 때에 빛진 일이 발각된다면, 죄의 등급을 더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이고 결코 용서

令全數會減，而關西，則道臣自可專管，海西則兵使替行，畿甸則京廳摠察云，此則令各其道臣，往復停當，務歸纖悉。館舍修葺，亦係文勅中一事，所入物力，道臣量宜拮据，從長區劃，俾無民邑間因支勅貽弊之歎。如是下教之後，雖在微細之物，一或不勤，侵及民間，有所及聞，則該守令嚴法科罪，姑捨是，道臣首先論勸，以勵一道。莫曰九重之深邃。予自有按廉之道，亦莫曰目下彌縫，苟幸無事。昨聞僉臣言，丁酉支勅之流逋，至今有未收殺處云。此雖屬之令前，而若於年久之後，有以今年支勅時逋債事現發，則加等重繩，斷不饒貸。自廟堂，措辭嚴飭。”

	하지 않을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문건을 만들어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2월 29일(경술) 1번째기사 사직단에 나아가 제기와 희생을 살피다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서 제기(祭器)와 희생(犧牲)을 살폈다.	庚戌/詣社稷, 省器省牲。
정조 19권,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월 4일(갑인) 1번째기사 춘당대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서 군사들에게 호궐(犒饋)하였다.	○甲寅/御春塘臺, 犒饋軍兵。
정조 19권,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월 7일(정사) 5번째기사 송지를 보내 춘향의 헌관에게 제사 절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유시하다	송지를 보내어 춘향(春享)의 헌관(獻官)에게 유시하기를, “이번 춘향에서는 서계(誓戒)3917) 를 하는 날이 단향(壇享)과 기곡일(祈穀日)과 서로 합치기 때문에, 비록 어쩔 수 없이 헌관에게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실지로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한탄이 있으니, 경 등은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 집사(執事)들을 감독하고 신칙하여 각각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새벽 북이	○遣承旨諭春享獻官曰: “今番春享, 以誓戒之與壇享, 祈穀日相值, 雖不得不命攝。 實有如不祭之歎, 卿等將事, 察飭諸執事, 俾各虔誠。 見今曉鼓將動, 待初獻畢後, 承旨回奏。 月初親



	<p>울릴 때까지 대기하다가 초헌(初獻)하기를 끝마친 뒤에는 승지가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이달 초에 내가 친향(親享)할 때에도 또한 신칙을 잘 하고 제사 음식을 거두는 절차를 헌관이 반드시 남아서 기다렸다가 감시할 것이며, 또 제사 음식을 거두기를 기다렸다가 묘사(廟司)가 종묘 안팎을 돌아본 다음에야 비로소 문을 닫도록 하라. 이후로는 예식이 끝난 뒤에는 사리를 아는 수복(守僕)이 이튿날 새벽에 함문(閤門) 밖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서 이것을 본서(本署)의 등록(騰錄)에 올리도록 명령하였다.</p>	<p>享時，亦有申飭，而徹饈之節，獻官必留待監視，又俟徹饈，廟司巡審廟內外，然後始乃闔門。此後禮成後，事知守僕，翌曉來告閤外。”仍令載之本署騰錄也。</p>
<p>정조 19권,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2월 1일(신사) 1번째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펴다</p>	<p>경모궁(景慕宮)에 전배하고 희생(義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는데, 춘향(春享)이 이튿날에 있기 때문이다.</p>	<p>○辛巳朔/展拜于景慕宮，省牲器。春享，在翼日也。</p>
<p>정조 20권,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0월 5일(신사) 1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다</p>	<p>태묘에 나아가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다.</p>	<p>○辛巳/詣太廟，省牲器。</p>
<p>정조 20권, 9년(1785) 을사 / 청 건륭(乾隆) 50년) 11월 2일(무신)</p>	<p>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다.</p>	<p>○戊申/詣景慕宮，省冬享牲器。</p>

<p>1번째기사 동향 대체에 쓸 희생 과 제기를 살펴다</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1월 1일 (병오) 2번째기사 김치인과 김상철에게 음식을 보내 위문하다</p>	<p>호조의 낭청에게 쌀과 고기를 주어 기신(耆臣)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 영중추부사 김상철(金尙喆)에게 보내어 위문하였는데, 이는 관례를 닦은 것이었다.</p>	<p>○遣戶曹郎持米肉，存問耆臣奉朝賀金致仁、領中樞金尙喆，修例也。</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3월 2일 (병오) 1번째기사 황단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 보는 예 를 행하다</p>	<p>황단(皇壇)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는 예를 거행하였다.</p>	<p>○丙午/詣皇壇，行省牲省器禮。</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3월 18 일(임술) 2번째기사 평안도의 100세 넘는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 를 지급하다</p>	<p>하교하기를, “평안도에서 올린 품계를 올려 주어야 할 노인에 대한 계본(啓本)을 보니, 나 이 1백 세가 넘는 사람이 무려 16인이나 되었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평 안도에서 특별히 쌀과 고기를 지급하여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뜻을 보이 도록 하라.” 하였다.</p>	<p>○敎曰：“觀平安道應資老人啓本，年 過百歲者，至於十六人之多，事甚稀 異。自該道特給米肉，以示朝家優老 之意。”</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4월 20일(계사) 1번째기사 화삼세의 감면·중들의 요역·대동미 등의 수세에 대해 논의하다</p>	<p>차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의 화삼세(火蔘稅)는 이미 백성의 고통에 속하는 것이다. 전 영동 도백이 지금 마침 입시하였으니, 품처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선혜청 당상 서유린이 아뢰기를,  “강릉·삼척·울진 등 세 고을에서 유망호(流亡戶)의 화삼세는 계산해서 감해야 하겠습니다. 세 고을 화전(火田)은 균청(均廳)에 예속시켜 흩어진 호구가 다시 모이고 묵은 땅이 개간될 때를 기다려서 삼값을 보태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공(京貢)을 변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국(內局)과 의견을 교환하여 나중에 여쭙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차당(次堂) 조시준(趙時俊)이 말하기를,  “별로 처리할 도리가 없으니, 사세상 원공(元貢)은 혹 경공(京貢) 가운데서 떼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감해 주겠다는 뜻을 보였으므로 영동 백성들의 기대 역시 간절할 것이다. 지금 만약 총세액에서 천면(千緡)의 수량이 감해지는 것에 구애되어 즉시 변통하지 않는다면 어찌 실망하지 않겠는가? 경공을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세 고을 화삼세 1천 2백여 냥을 즉시 감해 주어 영동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덜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훈련 대장 구선복이 말하기를,  “속리산(俗離山)은 호남과 영남의 사이에 있는데, 균역(均役)한 뒤에 중들의 역사가 도리어 무거워져서 사찰이 온통 비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산일 뿐만 아니라, 산 뒤에 선유동(仙遊洞)과 용유동(龍遊洞)이 있고, 그 밑에 또 송면현(松面峴)이 있습니다. 즉 무신년(4184)에 여러 적들이 모여서 전입한 곳</p>	<p>○癸巳/次對。 上曰：“嶺東火蔘稅，既係民隱。 前東伯，今適入侍。 稟處可也。” 宣惠廳堂上徐有隣啓言：“江陵、三陟、蔚珍等三邑， 流亡戶火蔘稅，計減。 三邑火田，則屬均廳，待其流戶之還集、蓄土之墾闢， 隨起隨稅，以爲添補蔘價之地。 至於京貢變通，往復內局，從後稟處好矣。” 次堂趙時俊曰：“他無區劃之道，勢將於元貢、或京貢中，可以計除矣。” 上曰：“已示蠲除之意，東民之懸望亦切。 今若拘於千緡稅摠之減數，不卽變通，豈非失信？ 京貢磨鍊，猶屬次第間事。 三邑火蔘稅一千二百餘兩，卽爲減給，以紓東民一分之弊。” 訓鍊大將具善復啓言：“俗離山在湖嶺間，均役之後，僧役反重，寺刹一空云。 此非但名山，山背有仙遊洞、龍遊洞，其下又有松面峴，卽戊申諸賊聚會轉入之處，此非閑漫之地，不可不防守。 請令本道，從長變通，減其僧役，使之還集。” 批曰：“平時，豈有他慮？ 而本寺，自是勝區，到今仍至荒廢，事甚無義。 朝</p>
---	---	--

	<p>이니, 이는 한만(閑漫)한 지대가 아니므로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안에 따라 변통하여 중들의 요역을 줄여 주어 다시 모여 들게 하소서.”</p> <p>하니, 비답하기를,</p> <p>“평소에야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는가? 본 사찰은 본디 명승의 구역이었는데, 이제 와서 황폐해졌으니,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조정에서 비록 석가의 가르침을 높이 믿지는 않지만, 옛날의 경관을 닦아 회복하고 중들을 모집해 두는 것이 실로 명산을 수호하는 옛날의 제도와 합치될 것이다. 도백에게 신칙하여 기어코 피폐해진 것을 소생시키게 하라.”</p> <p>하였다. 좌승지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p> <p>“이천(伊川)과 안협(安峽)은 비록 강과 접해 있지만 물이 본래 얕고 좁은가 하면 또 험한 여울이 많아서 대동(大同)의 세금을 상납할 때에 경내를 벗어나기 전에 대부분 침몰하며, 혹 오랜 가뭄을 만나면 장단(長湍)·고랑포(高浪浦)로 수백 리를 육지로 운반해야 하므로 사실 두 고을의 막대한 폐단이 됩니다. 전세(田稅)는 사체가 중대하므로 비록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만, 대동은 돈으로 환산하여 상납하는 것이 실로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소서.”</p> <p>하고, 선혜청 당상 서유린과 조시준이 모두 본청의 공가미(貢價米)는 잇대어 쓰기 어려우니,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비답하기를,</p> <p>“이미 민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으니, 경들이 비록 모두 어렵게 여기지만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경연에서 물러간 뒤에 상의하여 품처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家雖不崇信釋教，修復舊觀，募置僧徒。實合守護名山之古制。申飭道伯，期於蘇弊。”左承旨李時秀啓言：“伊川、安峽，雖曰沿江，水本淺狹，又多險灘，稅大同上納，未過境內，輒多臭敗。或值久旱，則陸運於長湍、高浪浦數百里之地，實爲兩邑莫大之弊。田稅體重，雖不敢議，大同則折錢上納，實爲大惠。請下詢廟堂處之。”惠堂徐有隣、趙時俊，皆以爲：“本廳貢價米，繼用爲難，決不可施。”批曰：“既知民情之如此，卿等雖皆持難，不可仍以勿施。筵退後商確稟處。”</p>
정조 21권, 10년		○甲辰/時諸道老人年過百歲者，北關

<p>(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5월 2일 (갑진) 1번째기사 백 살이 넘은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내리다</p>	<p>이때 여러 도의 노인 중 나이 백 세가 넘는 사람으로, 북관(北關)에 5인, 호서(湖西)에 9인, 관동(關東)에 15인이 있었는데,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별도로 쌀과 고기를 주라고 명하였다.</p>	<p>五人，湖西九人，關東十五人。因本道啓聞，命別致米肉。</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6월 1일 (계유) 1번째기사 빈궁에서 친히 주다례를 거행하다</p>	<p>- 빈궁에서 친히 주다례를 거행하였다.</p>	<p>○癸酉朔/親行晝茶禮于殯宮。</p>
<p>정조 21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6월 15일(정해) 4번째기사 제사 때의 복식과 절을 하는 예에 대한 논의</p>	<p>이에 앞서 예조 판서 윤시동이 아뢰기를, “아침저녁에 전을 올리고 상식(上食)할 적에 절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각 해의 의례와 《오례의(五禮儀)》·《상례보편(喪禮補編)》을 가져다 상고해보았습니다. 신미년(4216) 겨울 효순 왕후 국상 때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렴하여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이동의(異同議)를 사용해 절하는 예절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성상께서 하교하기를 ‘이 뒤로 무릇 크고 작은 상례나 장사 전에 비록 대신 전을 올리더라도 술잔을 올린 뒤에 곡하고 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고 나서 두 번 절하라.’ 하고 상례 수교에 기록하였습니다. 《상례보편》을 간행할 때에는 한결같이 《오례의》에 따라 초하루·보름에 전을 드리는 것 이외에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 드릴 때와 상식할 때에 모두 절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신미년에 정승 김재로가 현의한 가운데 3년 안에는 항상 모시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상식할 때에 절하지 않았는데,</p>	<p>○先是，禮曹判書尹著東啓言：“朝夕奠上食拜禮當否，取考各年《儀軌》及《五禮儀》、《喪禮補編》，則辛未冬，孝純王后國恤時，收議大臣，用先正臣文敬公金集異同議，定行拜禮。其時，上教曰：‘此後凡大小喪葬前，雖代奠，酌獻後，哭四拜，哭再拜事。’載於《喪禮受教》。及夫《補編》之刊行也，一遵《五禮儀》，朔望奠外，朝夕哭奠及上食，皆無拜禮。辛未，相臣金在魯獻議中，三年內有常侍之義，故朝夕奠上食無拜，亦象生之意也。抑未知因此而然否？葬後則有拜</p>

살았을 때를 상징한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장사를 치른 뒤에는 절하는 예가 있고 장사를 치르기 전에는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비록 초하루·보름의 전으로 말하더라도 백관은 절하는 예가 있고 전하는 절하는 예가 없다는 것이 《오례의》와 《상례보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전에는 수교를 실었다가 뒤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필시 모두 의의와 예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히 자세히 알 수 없고 보면 다시 널리 상고하고 널리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절하는 예를 행할 경우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아주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상고하여 한 말이 좋다. 지금 소급해서 고칠 필요없이 이를 《등록(瞻錄)》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윤시동이 아뢰기를,  
 “무신년 《등록》과 《상례보편》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전하께서 기년 중에 중묘와 사직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는 평상시의 복색을 착용하고 궁을 나갈 때와 들어갈 때의 복색은, 성상께서는 익선관에 흑단령포와 옥대를 착용하고, 백관은 흑단령에 품대를 착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로써 의논하여 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반열에 참여할 때 백관은 무슨 복색을 사용해야 하겠는가? 궁을 출입할 때에는 위에서 무양 흑단령포(無揚黑團領袍)를 착용할 경우 백관도 흉배(胸褙)와 품대(品帶)를 떼버리고 무양흑단령을 착용해야 하겠다. 지난 계미년에 칙사 일행이 왔을 때 임금의 흑단령포를 무양으로 사용하였다. 그때 백관은 흉배를 떼버리고 무양의 차림으로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내가 직접 보았다. 임신년에 수교가 있었고 계미년에 그 복색을 사용하였다. 뒤따라 준행하는 의리로 논할 때 임금이 무양의 복색을 착용하면 신하들도 마땅히 임금의 복색을

禮，葬前無拜禮。’雖以朔望奠言之，百官則有拜禮，殿下無拜禮，明載於《五禮儀》與《補編》。其或有、或無及前載受教，後不編入，必皆有意義與禮制。今不敢詳焉，則不更廣考博議，而遽行拜禮，其於慎重之道，未知其爲十分是當。”教曰：“卿考據之言好矣。今不必追改，以此載之瞻錄。”

先是，著東啓言：“取考戊申瞻錄及《喪禮補編》，則殿下基年中，宗社親祭，則常時服色，而出還宮時服色，自上翼善冠、黑團領袍、玉帶，百官黑團領品帶。今亦以此議定。”允之。教曰：“參班時百官，當用何服乎？至於出還宮時，則自上既着無揚黑團領袍，則百官亦當去胸褙、品帶，着無揚黑團領，往在癸未年，勅行自上黑團領袍，用無揚，伊時百官，以去胸褙無揚參班，予所目覩。受教在壬申，服着在癸未。論以從後遵行之義，上服無揚，則群下亦當從上服。更考草記。”著東啓言：“自上御遠遊冠、絳紗袍及冕服時，則百官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而出還宮時，自上既御無揚黑團領袍，則百官當用無紋黑團領，去

	<p>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초기를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임금이 원유관과 강사포 및 면복을 착용할 때에는 백관 4품 이상은 조복을 착용하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해야 하는데, 환궁할 때에 임금은 이미 무양 흑단령포를 착용할 경우 백관은 마땅히 무문 흑단령(無紋黑團領)을 사용하되, 흉배와 품대를 떼어야 하는데, 《상례보편》 가운데 이미 평상시에 의하여 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논하여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를 받고 보니, 실로 마땅하였습니다. 백관의 복색은 비록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한결같이 성상의 복색을 따르는 것이 변경할 수 없는 규례입니다. 묘사(廟社)·전궁(殿宮)에 예를 행하려고 궁을 출입할 때 백관의 복색은 흉배와 품대를 떼내고 무문흑단령과 오각대를 사용하기로 정하되, 후일 경연에 나왔을 때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듣건대, 헌관 이하는 대궐 안에서부터 흉배가 달린 흑단령과 품대를 착용하고 나가며, 기우제 때도 그러한다고 하였다. 참배하거나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궁을 출입하는 복색을 아직도 강정하지 못하였으니, 제관이 향을 받을 때의 복색은 누가 과연 상고하여 알려 주겠는가? 그리고 사리로 말하건대, 향을 전하는 승지는 무양 흑단령과 각대를 착용하고 헌관은 흉배가 달린 문초단령과 품대를 착용하니,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향을 전하고 향을 받는 사람의 복색이 같지 않은 것은 크게 예의를 잃은 것이고 매우 공경이 결여되었다.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윤시동이 아뢰기를,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복색은 전에 일이 있을 때 입직하면서 모두 평상복인 흑단을 입고 흉배를 떼내지 않았기 때문에 향을 받을 때에도 그 복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모궁은 종묘서의 관례를 따랐습니다. 문묘 관원이 입직할 때</p>	<p>胸襟品帶，而《補編》中既有依常時之文，故遵此議定。及承聖教，實爲至當。百官服色，雖有隨時之異，一從上服，乃是不易之規。請廟社、殿宮行禮出還宮時，百官服色，去胸襟，品帶，以無紋黑團領、烏角帶議定，命後日登筵稟處也。” 教曰：“聞獻官以下，自闕內着具胸襟、黑團領、品帶進去，祈雨祭時，亦然云。展謁及親祭時，出還宮服色，尙未講定，則祭官受香服色，孰果考據而知委乎？且以事理言之，傳香之承旨，則着無揚黑團領、角帶，獻官則具胸襟紋紗團領、品帶，亦甚逕庭。傳香受香服色之不同，大是失義，大是欠敬。令該曹查啓。” 著東啓言：“宗廟署官員服色，在前有事之時，入直皆着常服黑團領，不去胸襟，故受香時，亦因其服色。景慕宮依宗廟署例。文廟官員入直時，烏帽、白團領，受香、焚香時，黑團領不去胸襟。居齋儒生，常時白袍素帶，焚香時青袍、黑帶，只憑流來之例，竝無考據之文云。” 教曰：“在前有事之時，着常服具胸襟云，此似竝言大喪時，而雖以丙申已例言之，受香之齋</p>
--	---	--

에 오모와 백단령을 착용하고, 향을 받거나 향을 피울 때에는 흑단령을 착용하되, 흉배를 떼내지 않았으며 거제 유생(居齋儒生)은 평상시에는 백포와 소대를 착용하고, 분향할 때에는 청포와 흑대를 착용하는데, 유래된 사례에 의거하여 할 뿐, 모두 근거할 조문이 없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전 일이 있을 때에 평상복에 흉배를 갖춘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상 때를 아울러 말한 것 같다. 비록 병신년(4217)의 지난 사례로 말하더라도 향을 받는 제관과 향을 전하는 승지가 모두 흉배를 떼낸 무양 흑단령과 오각대를 착용하고 거행하였으며, 묘문(廟門)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간행된 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건대, 청시의(請諡議)에 ‘백관이 바로 종묘로 가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평상복에 흑각대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 영의정 이하 집사관의 복색 조항에도 ‘평상복에 흑각대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시호를 청함과 아울러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복색도 이러한데 도리어 향을 받을 때에 묘중에서 착용하지 않는 흉배가 달린 유문 흑단령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전하는 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답의 뜻을 종묘·전·궁 등록에 기록하도록 하라. 그리고 향을 받을 때 착용할 복색은 다시 여쭙도록 하라.”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윤시동이 말하기를,

“종묘·전·궁에 참배하거나 친히 제사를 지내면서 궁을 출입할 때 위에서 입을 복색을 먼저 강정해야만 신하들이 어가를 수행할 때 착용할 복색과 전향관과 수향관의 복색도 저절로 따라서 바로잡힐 것입니다. 《상례보편(喪禮補編)》 수교 조항을 취하여 상고해 보니, 무신년(4218) 기년복 중 태묘를 참배하거나 친히 제사를 지낼 적에는 궁을 출입할 때, 임금이 익선관에 흑단령포·옥대를 착용하는데, 신하들의 복색은 애당초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하가 무문 흑단령에 흉배를 떼내어 임금의 복색을 따르는 의의를 존속해 두자고 청하였

官、傳香之承宣，皆以去胸襟、無揚黑團領、烏角帶舉行，入廟門內亦然。且以刊冊所載者言之，請諡議有曰：‘百官徑詣宗廟變服。’註云：‘常服黑角帶。’又於領議政以下執事官服色條，亦云：‘常服黑角帶。’請諡兼行告祭，而服色猶如此，則反於受香時，用廟中所不着之胸襟有紋團領、品帶云者，決知爲傳者之誤。以此批旨，載之廟、殿、宮謄錄。至於受香時服色，更稟。”及是，著東啓言：“廟殿宮展謁親祭出還宮時，自上服色，先爲講定，然後諸臣隨駕服色及傳香、受香官服色，自當隨而釐正矣。取考《喪禮補編》《受教條》，則戊申碁服中，太廟展謁及親祭出還宮時，自上御翼善冠、黑團領袍、玉帶，而諸臣服色，初無變節。有以無紋黑團領去胸襟，以存從上服之義爲請，而先大王下教若曰：‘若有祈雨之舉，則百官皆以常時吉服參之。大享親祭時服色，豈有間焉。’蓋此下教，即指大享時陪享百官服色，則展謁與省牲、省哭時，亦必照此爲例，而至於出還宮時服色，終無明白定制矣。今番君臣服制，同爲基年，



	<p>는데, 선대왕께서 하교하기를 ‘만약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백관은 모두 평상시의 길복(吉服)을 입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향(大享)에 친히 제사지낼 때의 복색도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대체로 이 하교는 바로 대향 때 모시고 제사지내는 백관의 복색을 가리킨 것이고 보면 참배나, 희생과 제기를 살필 때에도 반드시 이를 참조하여 예로 삼았을 터인데, 궁을 출입할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끝내 명백하게 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 군신의 상복 제도는 다 같이 기년인데, 익금은 흑단령포를 착용하고 신하들은 평상시 옷을 착용할 경우 위를 따르는 의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법의 뜻에 있어서도 매우 거북스럽습니다. 각년의 등록과 《상례보편》에 기록된 것으로 참작하여 절충한다면 신문(神門) 안과 묘문(廟門) 안은 사체가 각기 다릅니다. 전할 때나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전하께서는 법복(法服)을 갖추고, 모시고 참여하는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되, 신문 밖에서 궁을 출입할 때에 전하께서 흑단령포를 착용하면 신하들은 모두 무양 흑단령에 흉배와 오각대를 떼더라도 조금도 압존(壓尊)의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각 제사 때 향을 받는 관원과 향을 전하는 승지도 또한 다 같이 무양 흑단령을 착용해야만 얼룩지게 차이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소서.”</p> <p>하였다. 영의정 정존겸, 도감 도제조 홍낙성, 관중추부사 김익, 도감 당상 이성원·서유린, 예조 참관 이병모, 참의 박천행이 모두 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自上御黑團領袍，而群下則服常服，不但有乖於從上之義，其在禮意，亦甚未安。參以各年騰錄及《補編》所載而折衷，則神門內，與廟門內，事體各異。展謁及親祭時，殿下具法服，諸臣陪參者，爲服吉服，而其於神門外出還宮時，殿下御黑團領袍，則諸臣皆服無揚黑團領，去胸襟烏角帶，少無壓尊之嫌。各祭受香官、傳香承旨，亦當同服無揚黑團領，然後可無斑駁逕庭之弊。請下詢大臣。”領議政鄭存謙、都監都提調洪樂性、判中樞府事金燧、都監堂上李性源·徐有隣、禮曹參判李秉模、參議朴天行，皆無異見。從之。</p>
<p>정조 22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윤7월 13일(갑신) 3번째기사</p>	<p>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혼궁(魂宮)에 직접 제사를 지낼 때에 신주(神主)를 내려 놓는 의절과 폐백과 향을 올릴 때에 앉고 서는 절차에 대해 좌우의 의논이 많으니, 널</p>	<p>○禮曹又啓言：“魂宮親祭時 神主降座儀節，奠幣上香時，坐立一節，多有左右之論。請博議。”從之。領議政鄭存謙、左議政李福源謂：“親享時神</p>

제사를 지낼 때의 예에 대해 논의하다

리 의논해 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 정존겸, 좌의정 이복원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신주를 내려 놓는 의절이 시호를 선포할 때에 신백(神帛)을 내려 놓는 의절과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앉고 서는 것은, 《가례(家禮)》의 우제조(虞祭條)에 ‘어른은 앉아 있고 젊은이는 서 있다.’는 의절로 미루어 본다면 앉아서 향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익은 말하기를,  
 “장사를 치르기 전에는 살아 있을 때처럼 하고 우제 이후부터 신(神)으로 여깁니다. 신으로 여긴 뒤에는 다시 살아 있을 때의 의절을 사용해서는 안되니, 친히 제사지내는 의절도 시호를 선포할 때보다도 더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례》에 제사나 전(奠)을 올릴 때 서서 향을 올리고 꿇어앉아 술잔을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술잔을 드릴 때 꿇어앉는 것은 꿇어앉아야만 술잔을 들고 떠 다발에다 술을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서서 하는 것을 공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례의(五禮儀)》에 길제(吉祭)나 상제(喪祭)를 막론하고 먼저 꿇어앉은 다음 향을 올리고, 오직 사자(使者)를 보내어 왕자, 공주, 옹주의 상에 전을 드릴 때에는 사자가 서서 향을 올리고 서서 술을 올리는데, 이는 꿇어앉은 것이 공경을 드린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면 중국에서는 서서 하는 것을 공경으로 여기고 우리 동방은 꿇어앉아서 하는 것을 공경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혼궁에 향을 올릴 때에 꿇어앉는 것을 서서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앉아서 곡(哭)하는 의의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하고, 홍문관 제학 서유린은 말하기를,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은 의리로 헤아려 새로 제정한 것이지, 《예경(禮經)》에 압굴(壓屈)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향을 올리는 것은, 《보편(補編)》을 두루 참조해 보니, 앉아서 곡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있는 대로 거행하고 없

主降座之節，與宣謚時神帛降座之儀，似無異同。坐立一節，以《家禮》、《虞祭條》尊長坐，卑幼立之儀推之，則似當坐而上香。” 右議政金煜謂：“葬以前象生，虞以後神之。神之後，不宜復用象生之禮，則親享儀節，亦有殺於宣謚之時耶？《家禮》，凡於祭奠，可知其立而上香，跪而奠酌。而奠酌之跪，似以跪而後，可以執盞酌茅也。是豈非以立爲敬者耶？《五禮儀》，無論吉祭、喪祭，先跪而後上香，惟遣使奠王子、公主、翁主之喪，使者立上香，立祭酒，是則跪爲致敬之意也。或者中原以立爲敬，我東以跪爲敬耶？今於魂宮上香，變跪爲立，則似有違於坐哭之義。” 弘文館提學徐有隣謂：“降座義起。《禮經》，無壓屈之文。焚香，旁照《補編》，有坐哭之節。行其所有，不行其所無，恐爲得中。” 藝文館提學俞彥鎬謂：“降座一節，不見《禮經》。而惟我朝卿大夫迎謚宣誥之時，降主于地，未知斯禮昉於何時。而竊稽古今君臨臣奠儀，只有主人避阼，以位其君等節而已，降屈之禮，初不及於所祭之神座，其或遣

는 것은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예문관 제학 유언호는 말하기를,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은 《예경》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우리 나라 사대부들이 시호를 맞이하여 유시를 선포할 때에 땅에다 신주를 내려 놓았는데, 이 예절이 어느 때에 비롯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금에 임금이 신하의 상에 전(奠)을 드리는 의절을 상고해 보니, 다만 주인이 자리를 피하여 그의 임금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애당초부터 제사를 지내는 신주에게는 강굴(降屈)의 예가 없었고, 혹시 사자를 보내어 명을 고할 때에도 신주를 내리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이는 어찌면 생사(生死)의 길이 다르고 사람과 귀신의 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살펴보니, 명(明)나라 목종 황제(穆宗皇帝) 융경(隆慶) 원년에 헌희 태자(憲懷太子)에게 시호를 더 내리고 나서 신주를 고쳐 쓰면서 책문을 선포할 때에 처음부터 신주를 내려 놓지 않았으며, 신주를 고쳐 쓴 뒤에도 반드시 신주를 받들어 도로 올려 놓은 뒤에 전을 드리고 축문을 읽었는데, 이것이 또한 넉넉히 신주를 내려 놓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이것은 황제께서 친히 선포한 의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압존(壓尊)되는 것을 구애로 여긴다면 친히 선포하는 것과 사자를 보내어 선포하는 것이 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장사를 치르기 전의 상제(喪祭)는 의절의 절목을 따라 하기에 힘써야만 은정을 퍼는 도리에 지장이 없고 우제(虞祭) 이후로는 슬픔이 점차로 줄어들고 공경히 하는 것이 중해지므로 오로지 신도(神道)로 섬겨야 하는 것이니, 한결같이 살았을 때의 의의에 따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은 이미 시호를 내릴 때 거행하였는데 우제 이후에도 그대로 거행한다는 것은 예에 정말 합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서 향을 올리고 앉아서 술잔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본디 예서(禮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지내는 분이 더러 신분의 높고 낮은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 송시열이 상

使致命，而亦無降座之文。豈不以生死殊塗，人神異禮而然哉？又按皇朝穆宗皇帝隆慶元年，憲懷太子加諡題主儀宣冊時，神主初不降座，改題後奠獻讀祝，必待奉主還陞之後者，亦足爲不降之證也。但此非皇帝親宣之儀節。然苟以壓尊爲拘，則親宣與遣官，又何間焉？大抵喪祭在葬前，則儀文節目，務從宛轉，不害爲伸情之道，而自虞以後，則哀漸殺而敬彌重，專以神道事之，恐不合一遵象生之義也。今此降座一節，以已行於賜諡，而虞後仍而行之，未知其允合於禮也。至於立而焚香，坐而奠酌，自是《禮書》所載，而所祭者，或有尊卑之別，故先正臣宋時烈，引《喪禮》尊長坐哭之文，以爲：‘祭禮，亦無異同。’然則尊之於卑，焚香奠酌，皆當以坐爲正。在昔王公大臣、親藩外戚，帛、奠、冊、贈之禮，多有立上香、立祭酒、立讀祝之文，此又似以立爲敬於坐矣。如臣諛陋，無以折衷於二者。”奎章閣提學金鍾秀謂：“降座一節，若曰象生，則大凡喪禮，虞而神之，不復用葬前象生之禮矣，若曰諸臣家致祭及宣諡時，神主降

례(喪禮)의 ‘어른은 앉아서 곡한다.’는 조문을 인용하면서 ‘제례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향을 올리고 술잔을 드릴 때에 마땅히 앉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옛날 왕공대신(王公大臣)과 친번 외척(親藩外戚)에게 조문, 전, 책봉, 증직(贈職)을 하는 예에 서서 향을 올리고 서서 술잔을 올리고 서서 축문을 읽은 조문이 많이 있는데, 이는 또 서서하는 것을 앉아서 하는 것보다 더 공경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처럼 견문이 좁은 사람은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규장각 제학 김종수는 말하기를,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이 살았을 때처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상례는 우체를 지내고 나서부터 신으로 여기어 다시는 장사 전에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예를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신하들 집에 제사를 지내주거나 시호를 선포할 때에 신주를 내려 놓고 맞이하는 예를 참조해야 한다고 한다면 친히 하는 의절을 한결같이 임금이 신하의 상에 친히 임하는 예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신은 이해가 안갑니다.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가(禮家)들이 더러 서서 향을 올리는 것을 옳다고 하는데, 이는 서서 향을 올리는 것이 공경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왕조(王朝)의 예는 거의 다 꿇어앉아서 향을 올리는데, 혼궁에 향을 올릴 때에 꿇어앉지 않고 서서 올리려고 하면 낮은 사람은 서서 하고 높은 사람은 앉아서 한다는 조문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일반 가정에서 서서 향을 올리면서, 서서 하는 것을 공경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꿇어앉은 대신 보통 앉아도 참으로 안될 것이 없지만 꿇어앉는 것을 서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규장각 제학 이성원은 말하기를,  
 “공경을 드릴 곳에는 예의상 내려 놓아야 하고 곡하는 의절은 앉는 것을 존

迎之禮可照，則親臨儀節之一遵君臨臣喪之禮，臣不敢知也。坐立一節，禮家或以立焚香爲是，則是以立焚香爲敬也。王朝之禮，幾皆跪上香矣，魂宮焚香時，乃欲避跪而爲立，則不但有違於卑幼立尊長坐之文，反與私家立焚香以立爲敬，同歸矣。代跪以坐，固無不可，變跪爲立，恐未恰當。”奎章閣提學李性源謂：“致敬之地，在禮當降，臨哭之節，以坐爲尊。親享日神座，宜遵宣謚已行之儀，奠幣時上香，當照補編坐哭之文。”奎章閣直提學李秉模謂：“親享時降座，與宣謚差異。宣謚則專寓象生之義，純用君臣之禮，揆以情文，宜有降座之節，而葬後祭禮，既以神之。神道尙靜，每享降奉，終似重難，純用君臣之禮，亦未知其如何也。上香一款，坐哭之文實合旁照。”奎章閣直提學朴祐源謂：“每當親享，靈應輒降，不無煩屑之嫌。坐立一款，太廟以跪拜爲節，尊長有坐哭之禮，坐而焚香，恐合事宜。”奎章閣直閣鄭大容謂：“神座降奉，已行於宣謚。小喪坐哭，亦載於《補編》。親享上香時儀節，恐當以此旁照。”教

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시호를 선포할 때 이미 시행한 의절에 따라 신주를 내려 놓아야 하고 폐백을 올리고 향을 올릴 때에는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앉아서 곡한다.’는 조문을 참작해야 합니다.”

하고, 규장각 직제학 이병모는 말하기를,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은 시호를 선포할 때와는 다릅니다. 시호를 선포할 때에는 오로지 살아 있을 때에 하는 의의를 부여해서 순전히 임금과 신하의 예를 사용한 것이므로 인정과 예절로 비추어 보아 신주를 내려 놓는 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치른 뒤의 제례는 이미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신도는 고요한 것을 숭상하는데 제사지낼 때마다 신주를 내려 놓는다는 것은 결국 어려울 것 같으니, 순전히 임금과 신하의 예를 사용한다는 것도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향을 올리는 것은 실로 앉아서 곡하는 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하고, 규장각 제학 박우원은 말하기를,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신주를 내려 놓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건은, 태묘에서 꿇어앉아서 하계꿈 절목이 되어 있고 어른은 앉아서 곡을 하는 예가 있으니, 앉아서 향을 올리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규장각 직제학 정대용(鄭大容)은 말하기를,

“신주를 내려 놓는 것은 시호를 선포할 때에 이미 거행하였고 소상(小喪)에는 앉아서 곡한다고 《상례보편》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친히 제사를 지내면서 향을 올릴 때의 의절을 이로써 참조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초빈(初殯)에 있을 때에는 살아있을 때처럼 하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고요한 것을 숭상하므로 신주를 옮겨 봉안할 때에는 시호를 선포할 때의 의절을

曰：“在殯象生，既葬尚靜，遷奉不當用宣諡儀，而考之魂殿、魂宮祭常奠，則仍於龕內神座開櫛時，享則遷于龕外，神榻出主。大抵座與榻，高低懸殊，其間不啻幾尺。蓋此遷仍之異儀，而或開櫛或出主者，隨其祭名祭禮之大小輕重也。今若略綽定制，則凡遇親行時，無論常奠及時享，並用時享攝事儀出主，降奉於榻上曲几之前，未必爲無於禮之禮，依此施行。至於焚香一款，坐固當耳，況有《補編》《小喪成服條》明文乎？特以有然疑之論，使之博詢，而及見僉議別無異同。以坐焚香磨鍊。”

	<p>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혼전(魂殿), 혼궁(魂宮)의 제례 의절을 상고해보니, 평소 전을 드릴 때에는 그냥 감실(龕室) 안의 신주의 독(櫝)을 열어 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감실 밖으로 옮겨 신탐(神槨)에다 신주를 내놓았다. 대체로 신좌와 신탐은 고하가 크게 차이가 나 그 사이가 몇 척도 더 된다. 대체로 이는 신주를 그냥 놔두거나 옮기는 것에 따라 의절이 다르고, 독을 열거나 신주를 내놓는 것은 제사의 대소 경중에 따른 것이다. 지금 만약 대략 제도를 정한다면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평소의 전(奠)이나 제사 때를 막론하고 모두 시향섭사의(時享攝事儀)를 사용하여 신주를 탁 위 곡궤(曲几)의 앞에다 내려 놓게 하더라도 반드시 예에 없는 예는 아닐 것이니, 이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향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는, 앓아도 타당한데 더구나 《상례보편》의 소상 성복조(小喪成服條)에 분명한 조문이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의심쩍은 의논이 있기에 널리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 것인데, 여러 의견을 보니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앓아서 향을 올리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p>	
<p>정조 22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9월 7일 (정축) 1번째기사 효창묘에 작헌례를 거행하고, 혼궁에 다례를 거행하다</p>	<p>효창묘에 작헌례를 거행하고 나서 경희궁에 두루 들렀다가 혼궁에 다례를 거행하고 대궐로 돌아왔다.</p>	<p>○丁丑/行奠酌禮于孝昌墓， 歷臨慶熙宮， 行晝茶禮于魂宮， 還宮。</p>
<p>정조 22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乾隆) 51년) 9월 15</p>	<p>하교하기를, “이번 장사를 치를 때에 각종 비단은 대궐 안에서 사다가 쓰고 기타 진상하</p>	<p>○乙酉/敎曰：“今番禮葬時， 緞疋諸種， 自內貿用， 其他進排， 皆省減。 各司官員， 亦勿待令。”</p>

<p>일(을유) 1번째기사 장사를 치를 때 진상 품을 줄이도록 하다</p>	<p>는 물품도 모두 줄이도록 하라. 그리고 각사의 관원들도 대령시키지 말라.” 하였다.</p>	
<p>정조 22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11월 2 일(임신) 1번째기사 경모궁에 참배하고 나 서 희생과 제기를 살 피다</p>	<p>경모궁(景慕宮)에 참배하고 나서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다.</p>	<p>○壬申/展拜于景慕宮, 省牲器。</p>
<p>v정조 22권, 10년 (1786 병오 / 청 건륭 (乾隆) 51년) 12월 27 일(병인) 2번째기사 토산물 중 생물의 봉 진에 관한 장령 이사 증의 상소문</p>	<p>장령 이사증(李師曾)이 상소를 올리기를, “보통 진상하는 물건은 모두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인데, 수질과 토질의 좋 고 나쁜 것이 고금이 판이합니다. 앞으로 토질이 나쁜 고을은 특별히 토산의 생물(生物)을 봉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또 역참의 노비가 누적(漏籍)된 폐단에 대해 아뢰니 비답하기를,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p>	<p>○掌令李師曾上疏言： 凡進上之物，莫不以其土之所產，而水 土之美惡，古今判異。請自今惡土之 邑，則特停土產之生物。 又言驛奴漏籍之弊。批曰：“令廟堂稟 處。”</p>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1월 2일 (신미) 2번째기사</p>	<p>팔도와 양도(兩都)에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그 윤음에 이르기를, “《시경(詩經)》 빈풍(邠風)의 칠월시(七月詩)는 곧 농사를 권장하는 글인데</p>	<p>- ○下綸音于八道、兩都曰：“《邠風》 《七月》之詩，卽一觀農之書。自舉</p>

팔도와 양도에 권농의  
윤음을 내리다

‘밭꿈치를 들고[舉趾], 들밥을 먹고[饁畝]’에서부터 ‘곡식을 수확하고[納稼], 술잔을 든다.[稱觥]’에 이르기까지 들판의 시종(始終) 광경을 그림처럼 잘 나타내었으며 전편(全篇)에서 나타낸 뜻을 요약컨대 ‘예비(豫備)’란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등극한 이후에 공손히 열조(列朝)의 고사(故事)를 준수하여 매양 세시(歲時)를 당할 때마다 번번이 윤음(綸音)을 내리곤 하였는데, 지금 비록 말을 하더라도 전보다 나올 것이 없으나 항상 거행하던 일을 형식적인 것이라 해서 빠뜨릴 수는 없다. 다시 예비하라는 뜻으로 거듭 말하노니, 공경하여 태만히 하지 말라. 대저 미리 서두르면 성사가 되고, 준비함이 있으면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이다. 풍년과 흉년이 어찌 세운(歲運)에만 달려 있겠는가?

사람이 부지런히 힘쓰는가, 게으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종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과종을 할 것이며, 양식이 떨어지면 어찌 경작에 부지런할 수 있겠는가? 넉넉하지 못한 농우(農牛)를 도와주고 부족한 농기구를 보태주어 갈고 김매고 물대는 것에 그 때를 잃지 않게 한다면 하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아서 올해 보리가 잘 될 상서(祥瑞)를 내리는 것이 부신(符信)의 좌계(左契)를 잡은 것처럼 확실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일을 닦아서 천휴(天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백성들이어서 부지 불식 간에도 독려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그 공효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어찌 장리(長吏)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제 정월 원일(元日)에 몸소 규폐(圭幣)를 잡고 장차 사직단에서 기곡제를 지내려 한다. 이 일 역시 해마다 하는 일이나 제사를 지내는 저녁에 일심으로 염려하여 또 이처럼 촛불을 밝히고 고하여 전파하는 것이다. 모든 우리 방백(方伯)과 수령(守令)들은 모름지기 각자 힘써서 내가 백성을 위해 농사를 중히 여기는 지극한 뜻을 본받으라.”

하였다.

趾饁畝，至納稼稱觥，盡出田野間始終光景，要之全篇立意，無出備豫二字。予於御極以後，敬遵列朝故事，每當歲時，輒降綸音。今雖爲說，無踰於前，而常行之舉，不可以應文闕之。更將備豫之意，申誦之，欽哉毋怠。大抵豫則立，有備無患。豐歉，豈但在歲？在人服力之勤懶。種乏何以始播，糧絕何以勤作，農牛助不給，田器補不足，使耘耔灌溉，毋失其時，則天其不遺吾民，貽我來牟，降康之祥，如執左契，茲豈非修人事以答天休者哉？然蚩蚩者氓，不識不知，不有董勸，罔成厥功，此又非長吏之責乎？今以月正元日，躬執圭幣，將祈穀于社壇，茲舉也。亦歲以爲常，將事之夕，一心耿耿，又此秉燭播告。凡我方伯、守令，須各勉旃，以體予爲民重農之至意。”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2월 2일 (경자) 3번째기사 전 대제학 황경원에게 의복과 음식물을 하사 하다</p>	<p>전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에게 의자(衣資)와 음식물을 특별히 하사하였는데, 이해가 그의 소과(小科) 회방(回榜)이었기 때문이다.</p>	<p>○特賜前大提學黃景源衣資食物，以是 年小科回榜也。</p>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2월 10 일(무신) 2번째기사 설진할 때에 폐단을 들어 곡물을 적절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 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설진(設賑)할 때에 굶주린 인구를 거짓으로 늘려 곡물을 낭 비하여 유명 무실한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근래에 여러 도(道)의 장본(狀本)을 보건대 폐단이 뭍이 대체로 상반(相反)되어 도백(道伯)의 책려(責勵)와 읍재 (邑宰)의 바램이 모두 ‘극삭(剋削)4494)’이란 두 글자에 있어 인구를 줄여 곡식 아끼는 것을 잘하는 일로 삼고 있으니, 이른바 총핵(綜核)4495) 하는 정 사로는 금년이 가장 심한데, 헤아려 본 바로써 초록(抄錄)한 것을 비교해 보 면 서로 맞지 않은 곳이 많다. 많아도 서로 뒤섞이게 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 도 너무 인색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인색한 것과 더불어 굶주리는 사 람이 많이 누락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서로 뒤섞이는 것이 낫다. 배부른 자는 더 배부르게 되는가 하면 또한 더러는 누락되어 죽기에까지 이르니, 비록 정 밀하게 초록했다는 이름은 얻을 테지만 절로 제 손으로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참으로 매우 불인(不仁)한 것이다. 굶어죽는 자가 있는 곳 의 수령은 곧바로 그곳에 정배하고, 도신(道臣)은 잡아다 신문한다는 것으로 써 설진(設賑)하는 여러 도에 엄중히 신칙하라.”</p>	<p>○教曰：“曾聞設賑之時，虛張飢口， 浪費穀物，有有名無實之弊云。近觀 諸道狀本，爲弊大抵相反，道伯之責 勵，邑宰之承望，皆在於剋削二字，減 口吝穀爲能事，所謂綜核之政，今年爲 最甚。以所料較所抄，多有不相當 處。多而毋至相混，寡而無至太慳， 與其太慳顧領者多漏，反不若相混。 而飽者又飽，又或見漏，而至於死亡， 則雖得精抄之名，何異自渠手殲之？是 誠不仁之甚者。有餓孳邑守令，卽其 地定配，道臣拿問，嚴飭設賑諸道。”</p>

	<p>하였다.</p>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12일(경술) 1번째기사 수빈의 가례를 행하다</p>	<p>수빈(綏嬪)의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빈(嬪)이 예궐(詣闕)하자 의위(儀衛)를 격식대로 하고, 때가 되자 명복(命服)을 갖추고 수식(首飾)을 가하고 가마를 타고 나왔는데 궁인 이하가 길에서 배위(陪衛)하며 인도하고 따르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가례청(嘉禮廳)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과 오상사(五上司)와 육조(六曹)의 참관 이상이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수종(隨從)하여 돈화문(敦化門) 서쪽 협문[西夾門]을 거쳐 들어와 함문(閤門) 밖에 이르렀다. 빈이 가마에서 내리자, 궁인이 배위하여 따라 들어가고 가례청 당상관·낭관 이하는 물러 나왔다. 미시(未時)에 조현례(朝見禮)를 행하고, 상침(尙寢)이 별전(別殿)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좌우에 향안(香案)을 설치했으며 동서에 의장(儀仗)을 진열하고, 내합(內閣) 밖에다 빈의 자리를 설치하고, 배위(拜位)를 전(殿)의 섬돌 아래에다 설치하였다. 때가 되자 전빈(典賓)이 자리로 나오기를 청하니, 빈이 명복을 갖추고 수식을 한 차림으로 나오자 전빈이 빈을 인도하여 함(閤)에 이르렀다. 상의(尙儀)가 꿇어앉아 중엄(中嚴)4500 을 아뢰니, 전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상(西廂)에 동향으로 섰다. 상의가 꿇어앉아 외판(外辦)4501 을 아뢰니, 임금이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규(圭)를 들고 자리로 올라가니,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를 정해진 의식(儀式)대로 하였다. 전빈이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자 전빈이 ‘사배(四拜)’라고 창(唱)하니, 빈이 사배를 마쳤다. 상의가 꿇어앉아 아뢰니,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들어가고, 전빈이 빈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갔다. 신시(申時)에 동뢰(同牢)를 행하였다. 내시(內侍)가 내합(內閣) 밖에다 빈의 자</p>	<p>○庚戌/行綏嬪嘉禮。 嬪詣闕，陳儀衛如式，時至，具命服、加首飾，乘轎以出。 宮人以下陪衛導從如儀。 嘉禮廳堂郎、五上司、六曹參判以上，俱以黑團領隨從，由敦化門西夾，入至閤外。 嬪降轎，宮人陪衛隨入。 嘉禮廳堂郎以下退出。 未時，行朝見禮，尙寢設御座於別殿，設香案於左右，陳儀仗於東西，設嬪次於內閣外，設拜位於殿階下。 時至，典賓請出次，嬪具命服、加首飾以出，典賓引嬪至閤。 尙儀跪啓中嚴，典賓引嬪，立於西廂東向。 尙儀跪啓外辦，上具遠遊冠絳紗袍，執圭陞座。 繖扇、侍衛如常儀。 典賓引就拜位。 典賓唱四拜，嬪四拜訖。 尙儀跪啓上降座還內，典賓引嬪還次。 申時，行同牢。 內侍設嬪次於內閣外，鋪褥席如儀。 尙寢設御帳於殿內，鋪地席重茵，設屏障，尙食設酒亭，置兩盞於其上。 尙寢帥繖扇、典燈、執燭者，列立於嬪次前。 時至，典賓贊請出次， 嬪具命服、加首飾以</p>

	<p>리를 설치하였는데, 욕석(褥席) 퍼기를 의례대로 하였다. 상침이 어장(御帳)을 전내(殿內)에 설치하고 지석(地席)·중茵(重茵)을 펴고 병장(屏障)을 설치하고, 상식(尙食)이 주정(酒亭)을 설치하고 그 위에 근잔(罇盞) 2개를 두었다. 상침(尙寢)이 산선(緞扇)·전등(典燈)·집촉(執燭)하는 자를 거느리고 빈의 자리 앞에 죽 늘어섰다. 때가 되자, 전빈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청하니, 빈이 명복(命服)을 갖추고 수식(首飾)을 한 차림으로 나왔다. 전빈이 빈을 인도하여 합문(閣門) 밖에 이르니, 임금의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으로 규(圭)를 들고 나왔다. 상궁(尙宮)이 앞에서 인도하여 합문 안으로 나아가자 전빈이 빈을 인도하여 들어갔다. 전빈이 '사배(四拜)'를 창(唱)하니, 빈이 사배를 마쳤다. 임금이 자리로 가자 빈이 자리로 갔다. 상식(尙食)이 찬안(饌案)을 들고 들어가 진설하고 상식 두 사람이 잔을 들어 술을 따르고 끓어얹아서 올리니 초윤(初醢)을 예(禮)대로 하고 재윤(再醢)·삼윤(三醢)을 초윤처럼 하였다. 상의가 끓어얹아 예필(禮畢)을 아뢰고, 전빈이 빈을 인도하고, 상궁이 임금을 인도하여 위악(帷幄)으로 들어갔다.</p>	<p>出。典賓引嬪至閣外，上具遠遊冠、絳紗袍，執圭以出。尙宮前導詣閣內，典賓引嬪以入。典賓唱四拜。嬪四拜訖。上卽座，嬪就坐。尙食舉饌案入設。尙食二人取盞酌酒，跪進初醢如禮。再醢、三醢并如初。尙儀跪啓禮畢，典賓引嬪，尙宮導上，入于帷幄。</p>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7일(을축) 1번째기사 호남 연읍의 대동미를 3분의 1을 한하여 정퇴하도록 명하다</p>	<p>호남 연읍(沿邑)의 대동미(大同米)를 3분의 1을 한하여 정퇴(停退)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p>	<p>○乙丑/命湖南沿邑大同，限三分一停退。</p>
<p>정조 23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4월 16</p>	<p>하교하기를,</p>	<p>○教曰：“自去年季夏晦得雨之後，通計跨年，所得僅爲廿餘次，水深又僅爲尺。玄遠之理，縱難推測，苟求厥由，</p>

<p>일(계축) 2번째기사 기우제를 올리는 것을 수향하게 하다</p>	<p>“작년 계하(季夏) 그믐에 비가 온 후로부터 과년(跨年)4582) 까지 통틀어 계산하니 비가 온 것이 겨우 20여 차례였고 수심(水深) 또한 겨우 1척(尺)이었다. 현묘하고 원대한 이치는 비록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진실로 그 까닭을 따지자면 어찌 빌미된 바가 없겠는가? 내가 바야흐로 조심하며 수성(修省)하기에 스스로 겨를이 없는데 경건하게 비는 일을 또한 어찌 잠시라도 늦추겠는가? 절서(節序)는 비록 조금 이른 듯하나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봄에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우물과 샘이 모두 고갈되고 묘(苗)가 말라 죽었다. 지금의 갈급(渴急)함이 거의 여름 농사철보다 더 심하니 농사일에 생각이 미치면 마음이 타는 듯하다. 삼가 전례를 상고해 보건대, 오월절(五月節) 전의 기우(祈雨)는 숙중[肅廟] 경오년(4583) 에 행했었고, 선조(先祖) 임진년(4584) 에도 행하였으니 오늘날에 우리러 계술(繼術)할 단서가 된다.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행하도록 수향(受香)하라.” 하였다.</p>	<p>豈無所崇? 予方側身修省, 不違自暇, 而虔禱之舉, 亦豈容暫緩? 節序雖似差早, 冬無雪、春不雨, 井泉俱涸, 苗則枯矣。目下渴急, 殆甚於農夏。念及穡事, 心焉如焚。謹考往例, 五月節前祈雨, 肅廟庚午行之, 先朝壬辰亦行之, 爲今日仰述之端。祈雨祭不卜日受香。”</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7월 17 일(임오) 1번째기사 종묘와 경모궁에 전배 하다</p>	<p>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다.</p>	<p>○壬午/展拜于宗廟、景慕宮。</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7월 23 일(무자) 1번째기사 경희궁에 나가 문효</p>	<p>임금이 경희궁(慶熙宮)에 나가서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혼궁(魂宮)에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p>	<p>○戊子/上詣慶熙宮, 行奠酌禮于文孝世子魂宮。</p>

<p>세자의 혼궁에서 전작례를 행하다</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7월 25일(경인) 3번째기사 김재찬이 울산의 해척 등이 울릉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하다</p>	<p>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장계(狀啓)하기를,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鰯)·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복공문(採鰯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강오성(姜五成)과 울산 부사 심공예(沈公藝)를 먼저 파직(罷職)하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p>	<p>○原春道觀察使金載瓚狀啓言：“蔚山海尺等十四名，潛入鬱陵島，採取魚鰯、香竹，被捉於三陟浦口。本島防禁至嚴，而蔚民每持兵營之採鰯公文，年年犯禁。該兵使、府使，宜勘罪。” 備邊司覆奏，請慶尙左道兵馬節度使姜五成、蔚山府使沈公藝，先罷後拿。允之。</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8월 8일(계묘) 3번째기사 정언 조성규가 인재의 등용·어염에 대한 세의 폐단 등을 상소하다</p>	<p>정언 조성규(趙星逵)가 상소하기를, “신이 마음에 구구하게 우애(憂愛)하는 것이 있으므로 감히 우러러 번거롭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제왕(帝王)의 학술에 마음을 두고 장구(章句)의 말단에 마음을 쓰지 않으시니, 그 본심을 지키고 치령(治令)을 내는 방도가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근래 오징(五徵)4683 이 시서(時序)에 맞지 않고 삼신(三辰)4684 이 상궤(常軌)를 따르지 못하여 큰물과 가뭄이 해마다 잇달아 기근이 거듭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하여 가져온 것이겠는데,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는 오로지 화기를 감소(感召)하는 데에 있고 화기를 감소하는 방도는 또한 숨어서 침체되어 있는 선비를 거용(擧用)하고 원통한 옥사(獄事)를 신리(伸理)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p>	<p>- ○正言趙星逵上疏曰： 臣有區區憂愛於中者，茲敢仰瀆焉。我殿下遊心於帝王之術，不屑於章句之末，其於存心出治之方，無所不盡其極，而近來五徵不得時序，三辰不能順軌，水旱連年，饑饉荐臻。此必感傷和氣而致之者，弭災之方，實在於感召和氣。召和之方，亦不外於擧幽滯、理冤獄。臣恐聖學之於天戒之謹，或</p>

신은 성학(聖學)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일에는 혹 버려두고 지나치시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신이 듣건대, 그 임금을 모르면 부리는 바를 본다 하며, 또 듣건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 합니다. 근래 머뭇거리 는 것이 버릇되고 부드러운 것이 버릇되어 겸손한 말만 들리고 귀에 거슬리 는 충직을 보지 못하니, 신은 성학이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공부에는 혹 미진하신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근래 사치한 버릇이 크게 성하 여 재물을 쓰는 것이 절도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한 집이 가멸한 것은 한 사람이 검약할 줄 아는 데에 달려 있고 천하가 가멸한 것은 임금이 검약할 줄 아는 데에 달려 있다 합니다. 그 이른 바 검약이라는 것이 어찌 복식(服食)·기용(器用)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검약은 안에 달려 있고 겉에 달려 있지 않다.’ 하였는 데, 대개 일신(一身)으로 오관(五官)을 다스리고 도타(道柁)로 기선(氣船)을 부 리는 것을 말하였을 것이니, 신은 성학이 오관을 다스리는 일에는 혹 조금 소 흘하신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 듯합니다.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에는 실효(實效)를 힘쓰고 허명(虛名)을 버려야 한다 합니다. 따라서 정령(政 令)·시조(施措)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도 그 실효를 힘쓰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겉보기를 꾸미는 사람이 조정에서 기세를 올리니, 중후(重厚)하고 걸치레가 적은 자는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괴이할 것 없습니다. 심하면 천거하 는 방법에서도 그 문벌이 훌륭한 것만을 물으니, 미천한 자는 안자(顔子)·민 자(閔子)의 행실이 있더라도 누구를 뽑겠습니까? 또 나이 젊고 겉보기가 화려 한 것을 물으니, 나이 늙은 자는 관중(管仲)·제갈 양(諸葛亮)의 재주가 있더라 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요즈음 사람을 뽑는 방도는 오로지 문벌에 달려 있으 니, 신은 전하께서 실효를 힘쓰는 학문에는 혹 손상되는 바가 있는 듯합니다. 또, 대저 사람은 옛것을 구한다는 것은 지임(遲任)의 말이고, 늙은이에게 묻 는다는 것은 진목공(秦穆公)의 말입니다. 국가에서 어진이를 쓰되 수레를 좇

有所放過而然也。 臣聞不知其君，視其所使。 又聞君明則臣直。 近來媮媮成風，軟熟爲習，徒聞遜志之言，不見逆耳之忠。 臣恐聖學之於虛受之功，或有所未盡而然也。 近來奢風大熾，用財無節。 臣聞一家之富，在於一人之知儉；天下之富，在於王者之知儉。 其所謂儉者，豈但謂服食器用？ 先儒曰：“儉在內，而不在外。” 蓋言以一身而治五官， 以道柁而御氣船而已。 臣恐聖學之於五官之治，或不無差忽而然也。 臣聞爲國，當務實效，而去虛名。 以至政令、施措之間，亦不可不務其實效。 修飾邊幅之人，揚眉於朝，則重厚少文者， 無怪其不容於世矣。 甚至薦剡之法，只問其門閥軒赫，則側微者，雖有顏、閔之行，其誰取者；又問其少年浮華，則年老者，雖有管、葛之才，將焉用哉？ 今者取人之道，專在於地勢，臣恐殿下之於懋實之學，容或有所損也。 且夫人惟求舊，遲任之說也，詢茲黃髮，秦穆之言也。 國家之用賢，若使追車而赴馬，則無所事於耆舊矣，至於坐策而論事，決疑而定謀，則此正楚丘生所謂：“七十而吾始壯者

고 말을 좃게 한다면 기구(耆舊)에게서 채용할 것이 없겠으나, 앉아서 책략을 세우고 일을 논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결정하고 모책(謀策)을 정하는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초구생(楚丘生)이 이른바 일흔에 내가 비로소 씩씩하다고 한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을 뽑는 방도는 한갓 나이 젊은 데에 있으니, 신은 전하께서 실효를 힘쓰시는 정사에 있어서도 손상되는 바가 없지 않을 듯합니다.

아! 한 나라의 정사에 깊은 폐단이 되고 만백성의 목숨에 해독이 되는 것은 그 큰 것으로 말하면 어염(魚鹽)에 대하여 세(稅)를 거두는 폐단과 과거(科擧) 때에 남에게 누를 끼치는 폐단과 무비(武備)가 해이한 폐단과 관작(官爵)을 치우치게 제수하는 폐단과 전화(錢貨)가 풍속을 그르치는 폐단과 의관(醫官)을 선택하지 않은 폐단과 고을의 하례(下隸)의 액수가 많은 폐단과 토호(土豪)가 방결(防結)하는 폐단과 조졸(漕卒)이 농간 부리는 폐단과 수령(守令)이 탐오(貪汚)한 폐단인데, 전후에 일을 말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한 가지 말을 채용하거나 한 가지 계책을 시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한 까닭은 모두 해사(該司)에서 관례에 따라 방계(防啓)하였기 때문이니, 우리 성상께서 구언(求言)하신 성의(盛意)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신의 말을 죄로 여기시어 홀로 교화를 베풀고 못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어, 시원히 결단하여 새로운 교화를 크게 행하시면 국가의 행복이고 백성의 행복이겠습니까.”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아뢰 바 학문의 요체는 말마다 절실하니 깊이 유념하겠다. 붙여서 아뢰 여러 가지가 모두 절실하게 맞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그 가운데에서 어염의 폐단은 반드시 한번 변통하려 하였다. 이것은 대개 감면하고 돌보신 성덕(盛德)·지선(至善)을 계술(繼述)하는 것이겠으나, 그 변통이 적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성헌(成憲)에 누가 될세라 염려되므로 근년 이래 묘당(廟堂)에 여

也。” 今者取人之道，徒在於年少，臣恐殿下之於懋實之政，亦不無所傷也。嗚呼！痼弊於一國之政，蠹害於萬民之命者，若以其大者言之，則魚鹽收稅之弊也、科擧累人之弊也、武備解弛之弊也、官爵偏授之弊也、錢貨誤俗之弊也、醫官不擇之弊也、邑隸額衆之弊也、土豪防結之弊也、漕卒舞弄之弊也、守令貪墨之弊也。前後言事者，非不爲多，而未聞有用一言、行一策者，莫非該司循例防啓者也。我聖上求言之盛意，果安在哉？今殿下若不以臣言爲罪，而獨化於陶甄之上，無奪於衆多之口，廓揮乾斷，大行新化，則國家之福，生民之幸矣。

批曰：“所陳爲學之要，言言切實，當體念。附陳諸條，無不切中，予甚嘉之。其中魚鹽之弊，必欲一番變通。此蓋繼述錫恤之盛德至善也，然其變通，如不適宜，反恐有累於成憲，年來屢詢廟堂，訪及諸道，而尙未得畫一之策。以此耿耿在中，與科弊、武備、官方、錢貨、醫選、邑額、防結、漕卒、貪風事，下廟堂。別講矯弊之方，期有實效。”

	<p>러 번 묻고 제도(諸道)에까지 물었으나 아직도 한결같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마음에서 늘 염려되니, 과폐(科弊)·무비·음액(邑額)·방결·조졸·탐풍(貪風)에 관한 일과 함께 묘당에 내려서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여 반드시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8월 18일(계축) 1번째기사 구례의 사서로서 여든이 된 사람에게 가자하는 것 등을 하다</p>	<p>하교하기를, “구례(舊例)는 지방에서 밤을 지내면 사서(士庶)로서 나이 일흔이 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든이 된 자에게 가자(加資)하여 두 번 행행(行幸)을 겪으면 모두 가자한다. 나도 연전에 이 전례를 본뻐는데, 더구나 이 고을에서는 즉위한 이후 여러 번 밤을 지냈고 예전에 선조(先朝)를 모시고 와서도 밤을 지냈으니, 다만 두 번 밤을 지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고을의 사서로서 나이가 여든이 된 사람에게는 가자하고, 일흔이 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되, 본디부터 이 곳에 살면서 선조 정해년(4691) 밤을 지낸 동가(動駕) 때에 빈 사람은 두 번 밤을 지낸 동가 때의 예(例)에 따라 마찬가지로 가자하라.” 하였다</p>	<p>○癸丑/教曰：“舊例，經宿地方士庶年七十給食物，八十加資。再經行幸者，并加資。予亦於年前，倣用此例，況本郡，御極以後，屢次經宿，昔陪先朝，亦已經宿，不可但以再經言。本郡士庶年八十人加資，七十人給食物，原居而及瞻先朝丁亥年經宿動駕人，依再經宿動駕例，一體加資。”</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8월 27일(임술) 1번째기사 잔치를 열어 어머니를</p>	<p>제학 김종수(金鍾秀)의 집에 먹을 것을 내렸는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어머니를 축수하기 때문이다. 김종수가 전문(箋文)을 바쳐 사은(謝恩)하였다.</p>	<p>○壬戌/賜食物于提學金鍾秀家。爲其設宴壽母也。鍾秀進箋謝。</p>



<p>축수하는 제학 김종수의 집에 먹을 것을 내리다</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9월 1일 (을축) 2번째기사 채제공의 집에 음식을 보내는 명을 거역한 호조 참판 조경을 홍주에 부처하다</p>	<p>호조 참판 조경(趙瓊)을 홍주(洪州)에 부처(付處)하였다. 이때 채제공(蔡濟恭)의 집에 먹을 것을 날라 보내라는 명이 있었는데, 판당(判堂)이 유고하므로 차당(次堂)에게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으나, 조경이 지키는 바가 있다 하여 명을 받들지 않으니, 하교하기를, “근래 정신(廷臣)의 버릇이 무엄한 것도 모자라서 거의 완롱(玩弄)에 가까운 데 작금의 조경의 일에 이르러 극진하였다.” 하고, 드디어 이 명이 있었다.</p>	<p>○付處戶曹參判趙瓊于洪州。時蔡濟恭家，有食物輸送之命，而判堂有故，命次堂舉行，瓊謂有所執，不奉命。教曰：“近來廷臣習氣，無嚴之不足，殆近玩弄，至於昨今趙瓊事極矣。”遂有是命。</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9월 7일 (신미) 1번째기사 경희궁에 나가 문효 세자의 혼궁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임금이 경희궁(慶熙宮)에 가서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혼궁(魂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전에 춘방(春坊) 벼슬을 지낸 사람은 참반(參班)하라고 명하였다. 거가(車駕)가 돌아오다가 분부총관(分副總管) 정술조(鄭述祚)가 길가에서 지영(祇迎)하는 것을 보고 불러서 그 나이를 물으니, 정술조가 대답하기를, “일흔 일곱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분사(分司)에서 입직(入直)함에 따라 오늘 연로(輦路)에서 불러 보니 연전보다 더욱 노쇠하였다. 예전 궁료(宮僚)로서 아직 아경(亞卿)에 있으니, 이것이</p>	<p>○辛未/上詣慶熙宮，行酌獻禮于文孝世子魂宮，命曾經春坊人參班。駕還，見分副總管鄭述祚，祇迎于路左，召問其年。述祚對曰：“七十七”教曰：“以分司入直，今日輦路召見，比年前益衰。以舊時宮僚，尚在亞卿，是豈常時記念之意？休致之請，無異許可，則及今變品，未足爲償。博勸講之功，亦可謂優待耆臣。分副總管鄭述祚，陞授分都總管。”仍令謝恩於魂宮。此後分司堂郎，皆用此例。</p>

	<p>어찌 평소에 기념(記念)하는 뜻이겠는가?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겠다는 청을 허가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제 와서 변품(變品)하여도 값을 만하지 못하거니와, 권강(勸講)한 공(功)을 넓히는 것도 기신(耆臣)을 우대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분부총관 정술조를 분도총관(分都總管)으로 높여 제수(除授)하라.” 하고, 이어서 훈공에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다. 이 뒤로 분사의 당상(堂上)·낭관(郎官)은 다 이 예(例)를 썼다.</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9월 13일(정축) 1번째기사 영종의 탄신에 선원전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영종(英宗)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다</p>	<p>○丁丑/行酌獻禮于璿源殿。 英宗誕辰也。</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0월 4일(무술) 1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광묵이 전세·대동의 면포를 돈으로 대납하기를 청하다</p>	<p>- 경상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장계(狀啓)하기를, “전세(田稅)·대동(大同)을 면포(綿布)로 상납하는 것은 지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지난해의 예에 따라 순전히 돈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참으로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마는,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전세의 대봉(代捧)은 전에 없던 것이고 대동을 순전히 돈으로 거두는 것도 그 예가 드문데, 도신(道臣)이 곧바로 대봉할 것을 청하지는 않았으나 논열(論列)하여 아뢴 것은 참으로 매우 미안하니, 당해 도신을 중중(從重) 추고(從重推考)하소서.”</p>	<p>○戊戌/慶尙道觀察使金光默狀啓言：“田稅、大同之以綿布上納，顧今民情爲難。若依昨年例，純錢收捧，則實爲大惠，而不敢仰請，恭俟處分云。” 備邊司覆啓言：“田稅代捧，前所未有。大司純錢，亦罕其例。道臣雖不直請代捧，論列登聞，誠極未安。當該道臣，從重推考。” 教曰：“稅大同作錢事，別具狀本，或上章陳請可也，焉敢以無於例之事，憑藉一時特教，續續陳啓乎？重推失之太寬，越俸一等。” 翌日，教曰：“雖以事體有所飭</p>

	<p>하니, 하교하기를,  “전세·대동을 돈으로 만드는 일은 따로 장본(狀本)을 갖추거나 상소하여 아뢰어 청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감히 전례에 없는 일을 한때의 특교(特敎)를 빙자하여 잇달아 아뢰는가? 중추(重推)도 너무 너그러운 잘못에 빠지는 것이니, 1등(等)을 월봉(越俸)하라.”  하였다. 이튿날 하교하기를,  “사체(事體) 때문에 칙유(飭諭)한 바가 있기는 하나, 백성에게 이롭다면 어찌 상공(常貢)에 얽매이겠는가? 대동 면포는 더욱이 심한 고을에서는 특별히 전수(全數)를 대봉하도록 허가하고, 그 다음 가는 고을에서는 일부를 대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諭，苟益於民，何拘常貢？大同綿布尤甚邑，特許全數代捧，其次分數代捧。”</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0월 21일(을묘) 1번째기사  천둥하다</p>	<p>천둥하였다. 사흘 동안 감선(減膳)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자신을 꾸짖는 뜻으로 특별히 상선(常膳)을 줄인다. 대신(大臣)이 인의(引義)하는 차자(筭子)로 말하면 잇달아 할 것 없다. 전례에 없는 예이니 도리어 방만한 것이 될 뿐더러, 대저 이 경고(警告)를 가져온 것은 첫째도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도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니, 대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 더구나 일전에 인의하여 상차한 것도 전례를 벗어난 것이니, 이번에는 각각 안심하라고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들에게 전유(傳諭)하여 내가 자신을 꾸짖는 뜻을 보이라.”</p>	<p>乙卯/雷。減膳三日。教曰：“予以責躬之意，特減常膳。至於大臣引義之筭，不必續續。爲無於例之例，不但反歸屑越，大抵致此警告，一則由予否德，二則由予否德，何有於大臣？況日前引筭，亦是前例之外，今番則須各安心事，傳諭于時任大臣，以示責躬之意。”</p>
<p>정조 24권, 11년</p>		<p>○己巳/行酌獻禮于毓祥宮，歷拜延祐</p>

<p>(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11월 6 일(기사) 1번째기사  육상궁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연호궁·의열궁에 들러 전배하다</p>	<p>육상궁(毓祥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연호궁(延祐宮)과 의열궁(義烈宮)에 들러 전배(展拜)하였다.</p>	<p>宮、義烈宮。</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12월 4 일(정유) 1번째기사  올해 강민이 얼음을 캐는 역을 면제하다</p>	<p>올해 강민(江民)이 얼음을 캐는 역(役)을 면제하였다.</p>	<p>○丁酉/除今年江民伐氷之役。</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 (乾隆) 52년) 12월 28 일(신유) 2번째기사  기곡을 섭행하는 제의를 높여서 대사 줄에 넣으라고 명하다</p>	<p>기곡(祈穀)을 섭행(攝行)하는 제의(祭儀)를 높여서 대사(大祀) 줄에 넣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기곡제(祈穀祭)는 사령(祀令)에 끼지 않았으므로 친행(親行)이 아니면 단헌(單獻)·소뢰(小牢)로 하고 악무(樂舞)도 없다. 아조(我朝)의 기곡은 숙묘(肅廟)에서 비롯하였는데, 사(社)에서 하고 교(郊)에 하지 않은 것은 상고하고 본떠서 짐작한 것이니, 성의(聖意)를 우러러 알 수 있다마는, 섭행하는 제의에는 오히려 결전(缺典)이 있다. 춘(春)·추(秋) 중월(仲月)의 시향의(時享儀)를 써서 삼헌(三獻)·태뢰(太牢)로 하고 악무도 갖추어 늘여서 대사 줄에 넣으면 예의(禮宜)에 맞을 것이니, 예조를 시켜 대신(大臣)에게 문의하게 하라.” 하였다.</p>	<p>○命祈穀攝儀，陞列大祀。 教曰：“祈穀祭，不列於祀令，非親行，則單獻、小牢，無樂舞。 我朝祈穀，始自肅廟，而于社不于郊，攷倣斟酌，聖意可以仰認，第於攝儀，尙有缺典。 若用春秋仲時享儀，三獻、太牢，具樂舞陞列於大祀， 允合禮宜， 令禮曹， 問議大臣。”</p>

<p>정조 24권, 11년 (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2월 30일(계해) 2번째기사 예조에서 기곡을 섭행하는 제의를 대신의 의논을 청하다</p>	<p>예조에서 기곡(祈穀)을 섭행(攝行)하는 제의(祭儀)를 대사(大祀)로 높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은 말하기를, “《주례(周禮)》에 ‘무릇 대신(大神)·대시(大示)4766) 를 제사할 때에 왕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종백(宗伯)이 대행한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왕이 유고하면 그 제사를 대행한다.’ 하였을 뿐이고 의절(儀節)을 줄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전조(田祖)4767) 에게 풍년을 빌 때에 빈약(飶籥)4768) 을 불고 북을 치는 의절이 있으니, 또한 음악이 없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직(社稷)의 삼향(三享)4769) 은 비록 친림(親臨)이 아니라도 반드시 삼헌(三獻)을 갖추니, 이것도 의거할 수 있는 일단(一端)입니다. 한결같이 삼향을 대행할 때의 의절에 따라 높여서 대사 줄에 넣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다른 대신의 의논도 모두 같았는데, 하교하기를, “선조(先朝) 갑오년(1770) 에 희생을 늘리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성의(聖意)를 우러러 알 수 있다. 또, 단의(壇儀)가 예전에 부족하였는데 이제는 갖추었다. 본사(本祀)의 의절이 그러할 뿐 아니라 춘·추 및 납향 대제(臘亨大祭)의 서계(誓戒)에 친림하는 의절이 없었는데 선조에 이르러 비로소 중화(中華)의 구제(舊制)를 따라 회복하였다. 시향(時享)의 의문(儀文)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기곡 대사(祈穀大祀)이겠는가? 내년 봄 상신(上辛)의 기곡부터 춘·추 및 납향 대제의(臘亨大祭儀)를 써서 올려서 대사 줄에 넣고 축문(祝文)과 악장(樂章)은 그대로 쓸 것인지 고쳐 지을 것인지를 경들이 상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서(本署)의 의례(儀軌)를 상고하니, 섭행(攝行)할 때의 악장은 친향할 때와</p>	<p>○禮曹以祈穀攝儀，陞大祀當否，議大臣。 領議政金致仁以爲：“《周禮》，凡享大神、大示，王不與祭祀，則宗伯攝位。” 註曰：“王有故，代行其祭祀而已。” 未聞其有減損儀節，而祈年田祖，有籥豳擊鼓之節，亦見其不可無樂也。 且社稷三享，雖非親臨，必備三獻，用樂舞，此亦爲可據之一端。 一依三享攝祿之儀，陞列大祀，恐爲得宜。” 他大臣議竝同。 教曰：“先朝甲午年，增牲品之教，聖意可以仰認。 且壇儀之昔缺今備。 不獨本祀儀爲然，春秋及臘大享誓戒，無親臨之儀，至先朝，始遵復中華舊制。 時享儀文之增衍，猶尙然矣。 況祈穀大祀乎？ 自來春上辛祈穀，用春秋及臘大享儀，陞列於大祀，祀文、樂章，仍用與改撰間，卿等詳考以啓。” 禮曹啓言：“取考本署儀軌，則攝行時樂章，亦用於親享時及祈穀祭親享之時。 則祈穀祭措行時樂章，亦當依春秋臘享時例，仍用似無容更議。 祝式則時享有應用之祝，祈穀祭則臨時撰進，古例也。 親行時，則文任撰進攝行，令知製教撰進，恐</p>
---	---	---

	<p>기곡제를 친향할 때에도 씁니다. 그렇다면 기곡제를 집행할 때의 악장도 춘·추·납향 때의 예에 따라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니, 다시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축식(祝式)은 시향에는 써야 할 축문이 있고 기곡제에는 임시하여 지어 바치는 것이 고례(古例)이니, 친행 때에는 문임(文任)이 지어 바치고 집행 때에는 지제교(知製敎)를 시켜 지어 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윤희하였다.</p>	<p>宜。”允之。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二十四終</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월 2일 (을축) 1번째기사 전직 공료인 부사직 정방에게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내리게 하다</p>	<p>부사직 정방(鄭枋)이 시골에서 올라오니, 해조에 명하여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내리라고 하였다. 정방이 전직 공료이고 또 연로(年老)했기 때문이다.</p>	<p>○乙丑/副司直鄭枋，自鄉來，命該曹，優賜米肉。以枋曾經宮僚，年且老也。</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월 2일 (을축) 3번째기사 경외에 연례에 따라 노인들에게 가자를 명하다</p>	<p>경외(京外)에 연례에 따라 가자할 노인직(老人職)이 모두 4백 40인이었는데, 이조와 병조에 명하여 즉일(卽日)로 하비(下批)해서 파발마로 달려가 발급(頒給)하게 하고 해마다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였다. 경외의 1백 세 되는 노인에게는 쌀과 고기를 더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京外老職年例加資者，凡四百四十人。命吏、兵曹，卽日下批，馳撥頒給，歲以爲式。命京外百歲老人，加賜米肉。</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월 3일 (병인) 1번째기사</p>	<p>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군병(軍兵)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p>	<p>○丙寅/御春塘臺，犒饋軍兵。</p>

<p>춘당대에 나아가 군병들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월 21일(갑신) 1번째기사 경모궁에서 작헌례를 행하다</p>	<p>경모궁(景慕宮)에서 작헌례를 행하였다.</p>	<p>甲申/行酌獻禮于景慕宮。</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2월 27일(경신) 1번째기사 목화 흉년이 심한 영남 고을에 세납 목면을 돈으로 대납케 하다</p>	<p>영남의 목화 흉년이 더욱 심한 고을에 세납 목면(稅納木綿)을 돈으로 대신 받을 것을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듣자니 영남에 목면이 귀하여 심한 곳에서는 반 꾸러미의 돈으로 목면 한 단(端)을 산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리 늦게 보고하는가. 해조(該曹)에 물어 보았더니 한 고을도 세목(稅木)을 받은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 때에 맞출 수가 있을 듯하니, 그중에 가장 받기 어려운 곳과 다음으로 받기 어려운 곳에 한하여 절반이나 삼분의 일을 돈으로 대납(代納)할 것을 허락하고, 이밖에 기한을 물려줄 곳은 참작해서 기한을 물려 주되, 영백(嶺伯)으로 하여금 민정(民情)과 사세를 참작하여 은혜가 실지로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도록 하라. 두 필 낼 것을 한 필만 내도록 한 것은 바로 선대왕의 성덕 대업(盛德大業)이 백성들의 골수에 스며든 것이다. 그런데 듣건대 한 필의 값이 종전의 두 필의 값보다 곱절이 된다고 하니 【국법(國法)에 목면 한 필을 돈으로 대신 받을 경우 2백 전(錢)을 받는다고 하였다.】 일이 체면에 구애되어 융통성있게 처리하기를 생각지 않는다면 어찌 선왕의 뜻을 본받고 계승하는 것이 되겠는가.” 하였다.</p>	<p>○庚申/命嶺南綿歉尤甚邑稅納木綿，以錢代捧，教曰：“聞嶺邑綿貴，甚處以半緡易一端云，何聞之晚也？問該曹稅木，姑無收捧云，然則或可及時，其中最難捧處及之次處，或折半、或三分之一，特許以錢代納。外此退限處，量宜退限，令嶺伯，參量民情、事勢，俾實惠下究。二疋之爲一疋，卽先大王盛德大業之浹民肌髓者。既聞一疋之價，倍於二疋。【國法，木綿一疋，代捧二百錢。】拘於事面，不思闊狹，是豈仰體而仰述之意乎？”</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3월 21 일(계미) 2번째기사 제도에 농사를 잘 짓 도록 신칙하다</p>	<p>제도(諸道)에 농사를 잘 짓도록 신칙하였다.</p>	<p>○飭諸道課農。</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4월 2일 (갑오) 2번째기사 호조 판서 서유린이 사직 기곡 대제의 제 물값을 잔여 원공쌀로 전용하기를 청하니 신 공으로 가정케 하다</p>	<p>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사직 기곡 대제(社稷祈穀大祭)의 제물값으로 가미(價米) 41석을 더 정하였는데, 원공(元貢)에 남은 쌀을 그 쪽으로 전용(轉用)하기를 계청하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기곡제에 품계를 높여 크게 제사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미(大同米)가 비록 경용(經用)에 관계된 것이나, 백성들에게 거두어 백성들의 힘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지금 이 제사의 제수(祭需)를 정함에 있어 어찌 그 수입을 계산하겠는가. 남은 수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모두 신공(新貢)으로 가정(加定)해서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백성을 위한 뜻임을 보이라.” 하였다.</p>	<p>○戶曹判書徐有隣啓請：“社稷祈穀大祭物種加定米四十一石，以元貢餘米，推移進排。”教曰：“年年祈穀，陞秩大祀，出於爲民重農之意。大同，雖關經用，卽賦於民，以紓民力者，今於本祭需，何可較量其所入乎？餘數有無，姑無論，竝以新貢加定，以示重農，所以爲民之意焉。”</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4월 4일</p>	<p>영우원(永祐園)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지나는 길에 관왕묘(關王廟)</p>	<p>○丙申/詣永祐園，行酌獻禮，歷臨關王廟。</p>



<p>(병신) 1번째기사 영우원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관왕묘에 들르 다</p>	<p>에 들렀다.</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4월 16 일(무신) 2번째기사 고 영의정 이종성의 연시연에 물자를 도와 주고, 그 부인에게는 음식물을 주다</p>	<p>고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의 연시연(延諡宴)에 물자를 도와 주고, 정경 부인(貞敬夫人) 심씨(沈氏)에게는 음식물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命助給領議政李宗城延諡宴需, 貞敬夫人沈氏贈食物。</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5월 1일 (임술) 3번째기사 전궁에 바치는 산 꿩 이 떨어졌을 때에는 산 닭으로 대신케 하 도록 정식으로 삼다</p>	<p>각 전궁(殿宮)에 날마다 바치는 생치(生雉)를 꿩이 떨어져 없을 때에는 산 닭을 대신 바치라고 명하고, 이어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았다.</p>	<p>○命各殿宮日供生雉, 以活鷄隨乏代捧, 仍著爲式。</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 (乾隆) 53년) 5월 23 일(갑신)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봄여름 이래로 비록 비가 자주 내렸으나, 여러 도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이 른바 각각 많이 내린 곳과 적게 내린 곳이 있는 것이 호서가 더욱 심한 것</p>	<p>○甲申/教曰: “春夏以來, 雨澤雖幸頻沾, 觀於諸道狀辭, 所謂各有多少, 湖西似甚焉。 大體有裕於牟農, 不足於種秧, 蓋可推知。 何幸今日之雨, 優</p>

<p>봄여름의 강우로 인한 권농과 강우량 조사 보고를 전교하다</p>	<p>같다. 대체로 보리 농사에는 넉넉하지만 모를 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오늘의 비가 두어 보지락은 충분히 넘었다 하니 매우 기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 것 같다. 여러 도에 고루 내렸는지의 여부를 각각 상세하게 장계로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어 보리 농사가 약간 익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거듭 읍재(邑宰)들에게 당부하여 마음을 다해 권농(勸農)하여 인력을 다하지 못한 탄식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p>	<p>過數犁云，欣幸之極，如渴得飲。諸道均沾與否，各卽詳細狀聞。”仍令勿以牟農之稍熟弛心，申諭邑宰，悉心勸課，俾無人力未盡之歎。</p>
<p>정조 25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6월 28일(기미) 1번째기사 자궁의 탕제를 의논해 정하기 위해 약원 제조를 불러 보다</p>	<p>약원 제조를 불러 보았다. 자궁의 탕제를 의논해 정하기 위해서이다.</p>	<p>○己未/召見藥院提調，議定慈宮湯劑。</p>
<p>정조 26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7월 6일(병인) 1번째기사 경희궁에서 문희묘의 별다례를 지내다</p>	<p>경희궁(慶熙宮)에 나아가서 친히 문희묘(文禧廟)의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p>	<p>○丙寅/詣慶熙宮，親行文禧廟別茶禮。</p>
<p>정조 26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7월 16일(병자)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사냥한 꿩을 여름철에는 바치지 말라고 이미 명하였는데, 하물며 사냥한 멧</p>	<p>○丙子/教曰：“臘雉既令夏月勿捧，況臘猪乎？畿邑臘猪之弊，熟聞之。此後臘猪，亦依夏雉及獐、鹿新定式，勿以本色封進。”</p>

<p>여름철에는 사냥한 멧돼지를 봉진하지 못하게 하다</p>	<p>돼지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기 고을의 멧돼지 사냥으로 인한 폐단을 익히 들었다. 앞으로는 사냥한 멧돼지도 여름 썩·노루·사슴에 대해 새로 정한 규식(規式)에 따라 본색(本色)으로 봉진(封進)하지 말라</p>	
<p>정조 26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7월 18일(무인) 1번째기사 관북 지방의 농사 형편에 관한 장계를 보고 전교하다</p>	<p>상이 관북의 농사 형편에 관한 장계를 보고 전교하였다. “늦곡식은 다행히 조금 여물었으나, 귀리[耳牟] 등 여러 종류는 지난번 비에 대부분 소실되었으니, 앞으로 식량의 어려움이 염려된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살게 할 책임이 수령들에게 있으니, 수령을 책임자로 언지 못하면 조정에서 날마다 운음(綸音)을 내리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몸받아 관남과 관북의 수령들 중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안면이나 숫자의 다소에 구애되지 말고 10월 이전에 논계(論啓)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용렬한 자가 일을 망치는 데 이르지 않고 우수한 자가 더욱 그 능력을 힘쓰도록 한 뒤에야 북도의 백성들이 참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p>	<p>○戊寅/上覽關北農形啓，教曰：“晚穀，雖幸稍稔，耳牟諸種，多消於去月雨水，來頭艱食可慮。懷保奠接，責在守宰。守宰不得其人，朝家雖日下十行，何補焉？卿須體此意，就南北關守宰之不勝任者，勿拘顏私，勿拘多少，滌場前論啓，使劣者不至於僨事，優者益勉其所能，然後北民可得沾眞箇實惠矣。”</p>
<p>정조 26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0월 2일(경인) 1번째기사 태묘에서 동향에 쓸 희생과 그릇들을 살펴다</p>	<p>태묘(太廟)에 나아가 동향(冬享)에 쓸 희생과 그릇들을 살펴보았다.</p>	<p>○庚寅/詣太廟，省冬享牲器。</p>
<p>정조 26권, 12년</p>		

<p>(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0월 4일(임진) 2번째기사  자전의 구휼 전교로 북도에서 각전과 궁에 바치는 방물을 정지시키다</p>	<p>북도에서 각전(各殿)·궁(宮)에 바치는 방물(方物)을 정지시켰다. 자전(慈殿)의 전교로 재상(災傷)을 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휼한 것이었다.</p>	<p>○停北路封進殿宮方物。 以慈教， 軫恤災民也。</p>
<p>정조 26권, 12년 (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년) 11월 6일(갑자) 1번째기사  문희묘에서 중삭제, 육상궁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연호궁과 의열궁을 전배하다</p>	<p>친히 문희묘(文禧廟)에 중삭제(仲朔祭)를 지내고, 이어 육상궁(毓祥宮)으로 거동하여 작헌례를 행하고, 연호궁(延祐宮)과 의열궁(義烈宮)에 차례로 전배(展拜)하였다.</p>	<p>○甲子/親行仲朔祭于文禧廟， 仍詣毓祥宮， 行酌獻禮， 歷拜延祐宮、義烈宮。</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1월 3일(경신)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기곡 대제에 쓸 향축에 서명하고, 사직에 가서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다</p>	<p>인정전(仁政殿)에 거동하여 기곡 대제에 쓸 향축(香祝)에 친히 서명하고서 이어 사직에 가서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다.</p>	<p>○庚申/御仁政殿， 親押祈穀大祭香祝， 仍詣社稷， 省牲器。</p>
<p>정조 27권, 13년</p>		

<p>(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1월 6일 (계해)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춘향에 쓸 향축에 서명하고, 태묘로 가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인정전(仁政殿)에 거둥하여 춘향(春享)에 쓸 향축(香祝)에 친히 서명(署名)하고서 이어 태묘(太廟)로 거둥하여 희생과 제기를 살폈다.</p>	<p>○癸亥/御仁政殿，親押春享香祝，仍詣太廟，省牲器。</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1월 21일(무인) 1번째기사 경모궁에 작헌례를 행하다</p>	<p>경모궁에 작헌례를 행하였다.</p>	<p>○戊寅/行酌獻禮于景慕宮。</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2월 3일 (경인) 1번째기사 춘향의 일로 경모궁에서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폈다. 내일이 춘향(春享)이기 때문이었다.</p>	<p>○庚寅/詣景慕宮，省牲省器，以春享在翌日也。</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4월 13일(기해) 2번째기사 준천하고, 역부들에게 음식과 술을 내리다</p>	<p>준천(濬川)하였다. 준천사의 여러 신하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날씨가 삼복 더위와 다름없는데, 역부(役夫)들이 띄약벌 밑에서 진흙탕을 뒤집어 쓸 것을 생각하니 가없기 그지없다. 특별히 반찬과 쌀을 내릴 것이니 밥도 짓고 술도 빚어, 역사를 마치는 날에 경이 도청(都廳) 이하 장교와 역군(役軍)들을 거느리고 넓게 트인 곳에서 풍악을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주</p>	<p>○濬川。敎濬川諸臣曰：“近日日氣，無異庚炎，言念役夫，當陽沾塗，豈勝憫恤。特下膳米，以飯以酒。畢役日，卿率都廳以下將校役軍，通廣處設樂分饋，一以追踵故事，一以酬獎勞役。”</p>

	<p>어, 한편으로는 고사(故事)를 따르고 한편으로는 힘든 일을 해낸 데 대해 보답하고 칭찬해주라.” 하였다.</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윤5월 1 일(병술) 1번째기사 평으로 납육을 대신하 게 하다. 경상도에서는 평 대신 사슴으로 할 것을 청하다</p>	<p>여러 도에 명하여 납육(臘肉)4947) 을 평으로 대신 바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납육을 바치기 위해 행하는 사냥이 크게 민폐를 끼친다는 것을 듣고서 경기 고을들에서 바치는 멧돼지·노루·사슴을 평으로 대신 바치라고 명하였다. 또 호남 지방은 바닷가가 아니면 평야 지대인데다가 주변의 산마저 벌거숭이여서 납육을 바치라고 독촉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여 경기 감영의 예에 따라 대신 평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어 여러 도로 하여금 각각 편리한지의 여부에 대해 진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납육과 평상시에 별봉(別封)하는 멧돼지·노루·사슴을 평으로 준절(準折)해 대신 바치라고 명하였으며, 이어 사옹원에서 받아들일 때 점퇴(點退)하여 금품을 강요해 받아내는 폐단을 금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그 내용을 써서 사옹원 청사(廳舍) 벽에 게시하게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홍억(洪億)이 추계(追啓)하기를, “경주(慶州)·안동(安東)·상주(尙州)·함양(咸陽)·안의(安義)·창원(昌原)·진주(晋州)·김해(金海)·거제(巨濟)·남해(南海) 등 고을에는 평이 없어서 한 마리의 사슴을 잡는 것이 도리어 쉬우므로 모두 이전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p>	<p>○丙戌朔/命諸道臘肉，以雉代封。先是，上聞臘肉行獵，大貽民弊，命畿邑所進豬、獐、鹿，以雉代之。以湖南幅員，非沿則野，邊山又童濯，臘肉責納，無異緣木求魚。依畿營例代捧，仍令諸道，各陳便否。命臘肉及常時別封豬、獐、鹿，以雉準折代捧，仍禁廚院捧入時，點退徵索之弊，著爲定式，揭板于該院廳壁。慶尙道觀察使洪億追啓言：“慶州、安東、尙州、咸陽、安義、昌原、晋州、金海、巨濟、南海等邑無雉，反不如一鹿之易得，皆願仍舊。”許之。 <b>【태백산사고본】</b></p>
<p>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p>		

<p>(乾隆) 54년) 6월 6일 (경신) 3번째기사 삼성사를 개수하고 제사 의식을 개정하다</p>	<p>삼성사(三聖祠)를 개수(改修)하고 제사 의식을 개정(改正)하였다. 삼성사는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을 제사하는 사당으로 문화현(文化縣) 구월산(九月山)에 있는데, 본도에 명하여 봉심(奉審)해 개수하게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근시(近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평안 감사의 연주(筵奏)를 듣건대, 평양 같이 큰 곳에서도 기성(箕聖)의 사당에 미비된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본 사당이겠는가. 감사로 하여금 해당 고을에 물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니, 감사 이홍재(李洪載)가 삼성사의 제품(祭品)과 제사 의식으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본 사당의 체모가 송인전(崇仁殿)4952) 과 일반이기는 하지만, 기자(箕子)는 동방으로 와서 임금이 되었고 단군은 요(堯)와 나란히 서서 임금이 되었으니, 맨 먼저 나와서 비로소 나라를 세운 업적을 상고해 보면 높여 받드는 절차에 있어 기자보다 더욱 존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12변두(籩豆)는 종묘와 사직 제사에만 사용하고 이 밖에 역대 시조(始祖)의 사당에는 각각 2두와 2변씩을 감하였는데, 유독 본 사당에만 변·두의 수를 종묘와 사직의 예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니, 개정한 본의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희생을 사용하는 것도 어디에서 모방한 근거가 있겠는가. 축문의 서식과 홀기(笏記)에, 첫째 신위(神位)와 둘째 신위에 곧장 환인·환웅이라 쓰고 별칭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 이 밖의 의식 절차에도 치제(致祭)하는 홀기에 단지 ‘홀을 잡는다.’ ‘홀을 쏘는다.’는 말만이 있을 뿐이니, 시향(時享) 때는 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변에 개자(芥子) 등 네 가지와 두에 초와 간장 두 가지에 있어 바꾸어 쓰는 것과 응당 써야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현행 진설 도식(陳設圖式)이 도리어 옛 도식만 못한 것은 무슨 곡절에서인가? 헌관(獻官)을 으레 지방관으로 차정(差定)하고 지방관이 유고시에는 향임(鄉任)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송인전에는 없</p>	<p>○修三聖祠，釐正祭式。三聖祠，祀桓因、桓雄、檀君之祠，在文化九月山。命本道奉審修改，親撰祭文，遣近侍致祭。教曰：“聞關西前伯筵奏，以平壤之大處，箕聖殿宇，亦有未備之儀式，況本祠乎？令道伯詳問於該邑狀聞。”道臣李洪載以三聖祠祭品、祭式啓。教曰：“本祠體貌，與崇仁殿一般，而箕聖則東來君臨，檀君則與堯竝立，若稽首出肇造之跡，崇奉之節，尤合尊敬。十二籩豆，廟社外，歷代始祖廟，則各減二豆二籩，而本祠籩豆，獨用廟社例，未知釐正之本意。然則牲用二品，有何可倣？祝式與笏記，第一二位直書無別稱，此亦可訝。外此儀節之致祭笏記，只有執笏措笏之語，時享時不用祭服而然乎？籩之以芥子等四品，豆之以醋與醬二品，換用應用之品者，果何所據乎？見行陳設圖式之反不若舊本，緣何委折？獻官例差地方官，有故則鄉任替行云，此崇仁殿所無之例。典祀兼大祝，以邊將填差，亦甚未安。守祠之人，人地何如，亦有僕隸等監護之屬乎？既聞祠儀之如是草率，豈可一味因循？關問該道，問議</p>
---	--	---

는 예이다. 전사(典祀) 겸 대축(大祝)을 변장(邊將)으로 차정하는 것도 매우 타당치 않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됨과 처지가 어떠하며 종이나 하인 등 감독하여 보살피는 무리는 있는가? 이미 사당의 의식이 이처럼 엉성하다는 것을 들은 이상 어찌 무턱대고 인습할 수만 있겠는가. 관문(關文)으로 해도(該道)에 묻고 여러 신하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해도가 아뢰기를,

“옛 도식에 10변두로 되었던 것이 새 도식에 12변두로 바뀐 것은 어느 해에 고쳐진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제복이 다 떨어져서 임시 방편으로 흑단령(黑團領)을 입은 것도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축년에 감사가 치제할 때 ‘홀을 쫓는다.’ ‘홀을 잡는다.’는 등의 말은 있으나 애당초 홀을 잡고 쫓는 절차가 없었으니,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변에 개자 등 네 가지와 두에 초·간장 등 두 가지에 있어서도 바꾸어 쓴다는 예문(禮文)이 없으며, 절향(節享) 때 헌관을 으레 지방관으로 차정하고, 전사 겸 대축과 도예차(都預差)는 첨사(僉使)·만호(萬戶)·별장(別將) 중에서 차정합니다. 지방관이 공석(空席)일 경우이면 겸관(兼官)4953 이 헌관이 되고, 지방관이 있으나 유고할 경우이면 전사 겸 대축이 헌관으로 오르고 도예차가 전사 겸 대축으로 오르면, 향임이 일찍이 대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집사(執事)는 생원·진사·유학(幼學) 중에서 차정합니다. 두 가지 희생을 쓰는 것과 홀기에 첫째 신위와 둘째 신위를 곧장 환인·환웅이라고 쓰고 별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할 만한 문적이 없으므로 억측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도감(都監)과 감관(監官)이 있고, 하인으로는 사당지기 와 산지기 등의 명색이 있습니다. 절향 때 전사 겸 대축을 찰방으로 차정하지 않는 것은 비단 내려오는 전례일 뿐만이 아니라 사신의 행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므로 세 역(驛)의 찰방을 여기저기 나누어 파견할 겨를이 없는 소치입니다.”

諸臣。” 該道以爲：“舊圖之十籩豆，新圖之十二籩豆，不知變改於何年。祭服破毀，權着黑團領，亦不知爲幾年。辛丑道臣致祭時，有搯笏執笏之語，而初無執搯之節，此等沿革，皆無可據。籩之芥子等四品，豆之醋與醬二品，亦無換用之文，節享時獻官，則例以地方官差定，典祀兼大祝與都預差，僉使、萬戶、別將中差定，而地方官若值空官，兼官爲獻官，地方官若在官有故，則典祀兼大祝陞獻官，都預差陞爲典祀兼大祝，而鄉任未嘗替行，諸執事以生進、幼學中差定。牲用二品，笏記第一二位之直書無別稱，文跡無徵，亦難臆對。守祠則有都監監官，僕隸則有祠直、山直等名色，而至於節享時，典祀兼大祝，不以郵官填差者，非但流來前例，使行絡續，三驛察訪分差無暇之致云。” 右議政蔡濟恭以爲：“廟社籩豆，數皆十二，而歷代帝王之廟，用十減二，意本有在。本祠今式之變舊式，不知創於何人，祝式之直書無別稱，雖屬可訝，檀君之時，風氣未關，人文何論？桓因、桓雄之爲號爲名，今不可強度，況位版既以此書之，



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종묘와 사직에 변·두는 그 수가 모두 12이고 역대 제왕(帝王)들의 사당에는 10만 쓰고 둘을 감한 데에는 본래 뜻이 있는데 본 사당에 옛 도식을 지금 도식으로 변경한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문의 서식에 곧장 환인·환웅이라고 쓰고 별칭이 없는 것이 비록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단군 시대에는 풍속이 미개하였으니 문명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환인·환웅이 호(號)인지 이름인지를 지금에 와서 함부로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위관(位版)에 이미 이렇게 쓰여 있는 이상 이것이 아니고서는 달리 호칭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관을 변장으로 대체(代替)하는 것은 엉성하고 구차하니, 현관은 반드시 본 고을의 현령으로 차정하고 전사 겸 대축은 반드시 찰방으로 차정해야 합니다. 현령과 찰방이 모두 유고시에는 원근을 막론하고 도내(道內)의 수령으로 대신 차정해야 합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미 도감·감관의 호칭이 있고 모두 본 고을의 유생 중에서 차정하고 있는 이상 각별히 선택하게 할 뿐입니다. 사당지기 5명과 산지기 1명에게도 모두 역(役)을 지우지 말아 수호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박한 풍속은 멀어지고 걸치레의 형식만 날로 심해가는 이때에 무엇 때문에 절차 사이의 번잡한 의식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본 사당의 체모가 각별하니 제사가 격식에 맞지 않으면 실로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탄식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을 엮어서 관하(判下)한 것도 실로 이런 마음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변·두의 가짓수 중에 전에 없던 것이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포한 조령(朝令)이 없었으니 속히 옛 제도로 돌아가라. 토산물(土產物)로 바꾸어 쓰는 것도 편의에 따르도록 허락하겠다. 희생에 관한 일은 증거할 만한 문적은 없으나 예의에는 전거가 있다. 축문 서식과 홀기에 쓴 것이 호인지 이름인지 분간해 알기 어려우니, 이 두 조항은 모두 예전

非此則無可以別稱。 獻官之以邊將替代，草率苟簡。 獻官必以本縣令典祀，大祝必以郵官，而縣令郵官皆有故，勿論遠近，以道內守令差代。 守祠之人，既有都監與監官稱號，而皆自本縣儒生中差定，則但使另擇而已。 祠直五名、山直一名，竝勿侵役，俾得盡心於守護之節爲宜。” 教曰：“淳風逖矣，文勝日甚，何必勤咨於節目間繁縟之儀，而本祠體貌自別，祭不合式，實有如不祭之歎。 向者措辭判下，諒由於是。 籩豆品數之昔無今有，無朝令之頒示，則斯速復舊制。 土產換用，亦許從便。 牲牢事，文蹟雖無徵，禮義則有據。 祝式與笏記，若號若名，難以辨知，此兩段，竝仍舊無妨。 祭服之權着團領，事近擅便，飭令該道新備，敝又改爲。”

	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제복 대신 임시 방편으로 흑단령을 입는 것은 마음대로 결정한 데 가까우니 해도에 신칙해서 새로 제복을 마련하고 또 떨어진 것은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정조 27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7월 11 일(을미) 5번째기사 외규장각에 가서 영릉 과 장릉의 천장 의궤 를 가져오게 하다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외규장각에 가서 영릉(寧陵)과 장릉(長陵)을 옮겨 모실 때의 의궤(儀軌)를 가져오게 하였다.	○命閣臣進外奎章閣，奉來寧陵、長陵遷奉儀軌。
정조 28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乾隆) 54년) 8월 1일 (갑인) 1번째기사 제사에 대한 하교를 내리다	하교하였다. “신원(新園)을 가려 정한 곳이 서울에서 백여 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매년 거행하는 전성(展省)을 뜻대로 행할 수 없는 형세이다. 그러므로 지금 천봉(遷奉)하기 이전에 자주 가서 예를 펴고 싶다. 이와 같은 상황이니 금년 가을의 능행(陵幸)은 겸행(兼行)할 수 없다. 원소(園所)의 여러 가지 일들은 친히 살핀 후 결정할 것이 많으니, 그때 가서 영(令)을 내려 의위(儀衛)를 간략하게 차리고서 편한 대로 왕래해야겠다. 잇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령(神靈)을 모독하는 것이니, 단지 전배례(展拜禮)만 거행하겠다.”	○甲寅朔/教曰：“新園卜吉之地，距京百餘里，每歲展省，勢不得若意，趁今遷奉之前，欲頻往伸禮。如是則今秋陵幸，無以兼爲。園所凡事，自多親審決定者，當臨時出令，簡儀衛從便往來。續續行祭，近於瀆褻，只行展拜禮。”
정조 28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	평안도 관찰사 정창성(鄭昌聖)이 도내의 농사 상황을 계문하니, 하교하기를,	○平安道觀察使鄭昌聖，以道內農形啓，教曰：“去月望後，日候調順，雖甚

<p>(乾隆) 54년) 8월 1일 (갑인) 2번째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농사 상황을 계문함에 이에 하교하다</p>	<p>“지난달 보름 뒤부터 날씨가 순조로운 것이 매우 다행이기는 하다만, 남쪽 고을처럼 곡식이 잘 여물지 못했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백성들을 보살필 대책을 미리 고을 수령들에게 엄히 신칙하고, 경 역시 유념해서 연로의 곡식을 저축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여유있게 하고, 잡역(雜役)을 덜어주어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하라. 지금 밤낮으로 두근거리는 이 심정으로서야 어찌 기무(機務)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있겠는가마는, 백성들의 일이 지극히 중하므로 부득불 이와 같이 거듭 당부하는 바이니, 경과 고을 수령들은 굳은 각오로 나의 뜻에 보답하기를 평상시보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p> <p>대저 곡물이 제대로 여문 해의 경우에도 백성들이 가림 주구에 시달리느라 풍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처지가 오히려 더없이 불쌍하거늘, 하물며 본도의 올해 민정(民情)이야 오죽하겠는가. 경은 마땅히 잘 살피도록 하라. 수령들의 거리낌없이 사육을 채우는 버릇이 유행처럼 되다시피 하여, 조정도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여기고 순영(巡營)의 비호만 믿고 있다. 탐욕을 징계하는 법을 이런 자들에게 시행하지 않고 어디다 쓸 것인가.</p> <p>농정(農政)이 추수 준비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영칙(營飭)이 엄격한지 엄격하지 않은지 살필 겸하여, 마땅히 별도로 안렴사(按廉使)를 보내 일벌 백계의 징치(徵治)를 각별히 거행할 것이다. 근래에 어사의 종적이 드러나는 폐단이 진실로 민망스러운데, 이번에는 설령 암행 어사가 나가게 되더라도, 은밀히 왕래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의 이 미리 알리는 교서(敎書)는 그 뜻이 속이지 말도록 하는 데에 있으니, 경은 이 전교를 열읍(列邑)에 반포하여 각자 조심해서 나라의 법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p> <p>하였고, 경상도 관찰사 홍역(洪億)이 도내의 농사 형편을 계문하니, 하교하기를, “가을철이 이미 깊었고 시령(時令) 또한 이르니, 지금의 8월은 곧 예전의 9월이다. 그러니 풍흉(豐凶)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때인데, 설령 한 도(道)를 통</p>	<p>多幸，決知其不若南邑之登熟。來頭懷保之策，預須嚴飭邑宰，卿亦留意，儲沿穀以裕民食，蠲雜徭以息民力。以今夙宵憧憧之神思，何暇念及於機務，而民事至重，不得不如是重複，卿與邑宰之惕念對揚，宜倍常時。大抵在登熟之歲，小民之困於剝割，不知爲樂歲，猶且切矜，況本道今年民情乎？卿宜戢察。守令之放意濟私，便成習俗，謂朝廷可欺，恃巡營阿庇。懲貪之典，不施於此輩而何？稍竣農政之滌場，兼探營飭之不嚴。當別遣按廉之行，另行懲一之舉，而近來露蹤之弊，誠可悶。今番則設有繡衣，當潛往潛來。惟茲先甲之教，意在勿欺。以此傳教，卿其頒示列邑，各自惕勵，無陷邦憲。”慶尙道觀察使洪億，以道內農形啓，教曰：“秋序已深，時令亦早，今之八月，卽古九月也。歉與豐，庶可領略，而設令通一道登熟，今夏雨水，近年所無，反落浸墊處，必當夥然。此所以庚戌之給災，不下於常年。前此已慮檢田之臨時驟報，俾各先期分抄，果依朝令舉行乎？此壤爾界，不分虛實，則烏在其別諭之本意？令廟堂，</p>
--	---	--

	<p>틀어 곡물이 제대로 영글었다고 하더라도 금년 여름의 장마는 근년에 보지 못한 바이니, 떨어지고 물에 잠긴 곳이 필시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경술년(4972)의 급재(給災)가 예년에 밀돌지 않았던 이유이다. 이전에 이미 검전(檢田)을 때가 되어서야 급작스레 보고하게 될까 염려하여, 각자 기한에 앞서 분초(分抄)하도록 하였는데, 과연 조정의 명령대로 거행을 하였는가. 이곳과 저곳의 허실을 분간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유시를 한 본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경기 및 삼남(三南)의 제도(諸道)에 한 줌의 나락일망정 마구 거두는 일이 없도록 엄히 신칙하도록 하였는데, 본도의 경우는 연해의 읍이 아니면 산골짜기 고을이니, 모쪼록 배전의 힘을 들여, 명령대로 시행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申加嚴飭，京畿及三南諸道，俾無把束之混徵，至於本道，非沿邑則山郡，須用加倍之力，不負對揚之責。”</p>
<p>정조 28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8월 6일 (기미) 1번째기사 차대하여 녹용 공납 폐단에 대해 신칙하다</p>	<p>차대하여 북도(北道)에서 녹용을 공납하는 폐단에 대해 신칙하였다. 이에 앞서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북영(北營)을 맡고 있을 적에, 녹용 한 대(對)의 값을 80냥으로 정했었는데 요즘에는 4, 5백 냥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가 심약(審藥)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북지(北地)의 녹용은 봉진을 허락하지 않고 곧장 본값으로 징납하는데, 각 고을에서 나오는 데가 없고 보니 부득불 해마다 민간에다 강제로 떠맡기고 있습니다. 불가불 한 차례 탕척하여 간악한 짓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감진 어사(監賑御史) 정대용(鄭大容)에게 물으니, 대용이 대답하기를, “녹용의 폐단은 오로지 양수(兩數)가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만약 3, 4 냥 이</p>	<p>○己未/次對。 飭北道貢茸之弊。 先是， 右議政蔡濟恭奏曰：“臣頃年待罪北營時， 鹿茸一對價， 定以八十兩， 近爲四五百兩云。 此莫非審藥居間操縱。 北茸則不許封進， 直以價本徵納， 而各邑既無出處， 則不得不年年勒責於民間。 不可不一番刷滌， 以防奸竇。” 上問監賑御史鄭大容。 大容對曰：“茸弊專由於兩數之高重。 若以三四兩以上， 依例封進， 庶無價增之患。” 教曰：“雖萬般百倍， 加於此者， 苟利於民， 何事靳惜？ 貢茸一事， 是不過藥料</p>

상으로써 예에 따라 봉진하게 한다면, 값이 불어나게 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이것보다 백배 더한 것이더라도,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 무슨 일을 아까워하겠는가. 공납하는 녹용은 곧 약재 가운데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데, 그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 때문에 누차에 걸쳐 신칙하는 하교를 내리게 하는가. 한 해 두 해 벌써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른바 ‘조령(朝令)’이니 ‘도계(道啓)’니 하는 것들이 죄다 형식이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는 한 대에 수백 냥 한다는 설이 한술 더 떠 6백 금이나 된다고 하니,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양수를 감하는 것은 이미 절목(節目)을 만들었으니, 이제 별도로 알릴 필요 없겠고, 작공(作貢)·감가(減價)·경무(京貿)·향무(鄉貿)·자비(自備) 또는 어떻게 폐단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일을 논할 것 없이 또 다시 녹용을 공납하는 일을 가지고 털끝만큼이라도 예전 처럼 폐단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 법이 없는 나라에 도백(道伯)과 수령을 둔들 무엇에 쓰겠는가. ‘폐단’이라는 두 글자가 또 내 귀에 들리게 될 경우 일의 곡절을 불문하고, 북도의 감사와 병사는 모두 가장 먼 육진(六鎭) 땅에 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정배할 것이며, 간교한 짓을 한 비속(裨屬)과 심약(審藥)은 어사를 내려보내 그 경계에서 죽지 않을 만큼 곤장 50도(度)를 친 후 백성들에게 돌려 보일 것이며, 예전의 버릇을 고치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왕부(王府)에 잡아들여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낸 후 곧 그곳에 정배시키고 아울러 금고를 하도록 하라.

그 폐단의 근원을 따져보면 내국(內局)이 퇴짜를 놓고 농간을 부리는 까닭이니, 이 또한 마땅히 드러나는 대로 수의(首醫)는 수령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장무관(掌務官)은 심약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해당 제조 또한 감·병사에 대한 율을 적용하겠다.

中微物，而以其救弊之方，屢勤飭教，一年二年，積有年所，所謂朝令也、道啓也，皆歸文具。到今一對數百兩之說，變爲六白金。國有紀綱，寧有如是？兩數減定，既有節目，今不必別爲知委。無論作貢與減價，與京貿與鄉貿，與自備與如何救矯，更以茸貢一事，一毫如前貽弊，則是國無法也。無法之國，置道伯·守令何爲乎？弊端二字，又若入徹予聽，則勿問本事曲折，北道監兵使，竝最遠六鎭，勿限年定配，作奸之裨屬·審藥，下送御史，卽其境上，限死決棍五十度，回示民衆。循襲之守令，拿致王府，刑推得情，卽其地定配，仍爲禁錮。原其弊源，亦由於內局之點退操縱。此亦當隨現首醫用守令律，掌務官用審藥律，當該提調，亦當用監兵使律。大抵藥不隕眩，疾猶不瘳。況法不嚴而何以責永效乎？今茲之教，出於申令之意，以此傳教，內而內局，外而該道營闔邑揭板，自來年春等，如無刮目之效，道帥臣不可以無弊彌縫，仍以置之。如欲穩踰鐵嶺，復立朝班，先自此事，悉心對揚。”

	<p>대저, 약이 독하지 않으면 병도 낫지 않거늘, 하물며 법이 엄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금번의 이 하교는 명령을 거듭 밝히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이 전교를 안으로는 내국과 밖으로는 해외의 병영 및 고을에 게시토록 하고, 내년 봄부터서 만일 괘목할 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도수신(道帥臣)을, 폐단이 없이 대충 미봉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한 몸으로 철령(鐵嶺)을 넘어 다시 조정의 반열에 서고 싶거든, 먼저 이 일부터 마음을 다해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p>	
<p>정조 28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9월 17일(경자) 2번째기사 《원행정례》를 편찬 하도록 명하다</p>	<p>《원행정례(園幸定例)》를 편찬하여 올리도록 명하고, 하교하였다. “신원(新園)이 서울과의 거리가 백 리는 족히 넘으므로, 매년의 전성(展省)을 전처럼 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비록 2년에 한 번씩 거동한다 치더라도 구애되는 점은 여전하여, 서울은 각사(各司)·각영(各營)의 폐해가 있고 외방에는 민읍(民邑)의 폐해가 있으며, 이밖에 허다한 경비의 원식(原式)·근규(近規)가 어느 것 하나 폐해를 끼치는 단서 아닌 게 없다. 폐해를 끼치는 정도가 이와 같지만 정은 억제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반드시 별달리 강구하여 특별 규례를 만드는 일이 있어야겠다. 그런 뒤라야 정을 펴고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니, 오늘날 묘당의 유사로 있는 신하들이 만약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찌 별도로 보답하는 정책을 생각하여 편리하고 좋은 도리를 찾지 아니하겠는가. 내년 봄의 전성(展省) 때로부터 선박은 경강(京江)에서 마련하고 교량은 선혜청에서 쓰지 말도록 할 것이며, 기용(器用)이나 양초(糧草)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지 말라. 수행하는 백관(百官)·군병(軍兵)은</p>	<p>○命編進《園幸定例》。教曰：“新園距京恰過百里，每歲展省，勢難若前。雖欲間年一行，拘掣自如。京而各司、各營之弊，外而民邑之弊，外此許多經費之原式、近規，無非貽弊之端。貽弊如此，抑情至難，須有別般講究，拔例創定之舉，然後情可伸而弊可祛。爲今日廟堂有司之臣，若知予心，寧不另思對揚之策，以求便好底道理乎？自來春展省之行，船楫取辦於京江，橋梁勿用於惠廳，以至器用、糧草，亦竝無以儲置米會減。陪扈百官、軍兵，各有定數，官受盤纏，各有定界，軍得息肩，排比磨琢，十分稱好，爲京外按行之指南，則自此情文無缺，軍民永賴，</p>

	<p>각기 정수를 두고 고을이 받는 노자에 각기 일정한 한계를 두며 군(軍)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갖가지로 강구하여 매우 좋게 마련함으로써, 경외(京外)에서 근거하여 행하는 법식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로부터 내용과 형식에 부족함이 없고 군민(軍民)들이 영구토록 힘을 입을 것이며,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어찌 평범한 정령(政令)이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일을 중히 여긴다는 뜻을 보여, 행하기 알맞은 조목들을 하나의 책으로 모아 완성하여 《원행정례(園幸定例)》라 이름을 붙이라. 대신이 총괄하고 당상은 비국 당상 가운데서 임명하여, 비국에 모여 마련해서 들이라.”</p>	<p>予可以安意展省，是豈尋常政令？則宜示重其事之意，合行條件，彙成一副典，則名之以《園幸定例》。大臣摠裁，堂上以備堂中差定，會于備局，編摩以進。”</p>
<p>28권, 13년(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10월 3일(을묘) 1번째기사 조전·조상식·주다례를 친행하다</p>	<p>조전(朝奠)·조상식(朝上食)·주다례(晝茶禮)를 친행하였다. 상이 찬궁(欝宮)의 문을 열고 재궁(梓宮)을 부여잡으며 핏빛같은 눈물을 흘리니, 충호사 채제공이 울며 아뢰기를, “오늘 이후로는 성효(聖孝)에 유감이 없게 될 것인데,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슬퍼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봉(遷奉)을 의정(議定)할 처음에 이미 고(故) 정 영부사(鄭領府事)의 일로 말을 주고 받은 바가 있었다만, 당시에 본 것은 단지 나무 한 조각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현궁(玄宮)을 살펴보니, 더욱 나의 마음에 유감이 없어지게 되었다. ‘은감(恩感)’이라는 두 글자를 그야말로 고상(故相)을 위해 할 말이다.” 하자, 제공이 아뢰기를, “정 영부사의 지극한 정성과 원대한 사려에 대해서는 이루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p>	<p>○乙卯/親行朝奠、朝上食、晝茶禮。上開欝宮門，攀拊梓宮，玉淚成血。摠護使蔡濟恭泣奏曰：“今日以後，聖孝可以無憾，何如是過哀耶？”上曰：“遷奉議定之初，已以故鄭領府事事，有所酬酢矣，當時所見，只是木頭一片。今審玄宮，尤可以無憾於予心。恩感二字，政爲故相而言也。”濟恭曰：“鄭領府事之至誠遠慮，不勝艷歎。”【故相鄭弘淳，壬午敦匠治梓宮，克致誠愼，留裁餘一片于東園，飭守吏謹識。】上詣靈座前，披視帷幄，顧謂濟恭曰：“今而後，儀物得大備矣。”不覺涕隨而零。濟恭等掩泣，不敢仰對，仍請暫還齋殿。上曰：“予於今</p>

	<p>하였다. 【고상 정홍순(鄭弘淳)이 임오년에 장인(匠人)을 감독하여 재궁을 만들면서 성의와 신중함을 쏟아 다듬고 남은 한 조각을 동원(東園)에 남겨두어 수리(守吏)로 하여금 삼가 기억하도록 당부하였던 것이다.】 상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유악(帷幄)을 헤치고 살핀 다음, 재궁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오늘 이후로는 의물(儀物)이 크게 갖추어지게 되었다.”</p> <p>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떨구었다. 재궁 등이 눈물을 닦느라 감히 대답하지 못하다가, 이어 잠시 재전에 돌아가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오늘 같은 날 어찌 한 시각일망정 재전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늙은 대신을 위하여 잠시 청을 따르노라.”</p> <p>하였다. 조전(朝奠) 때가 되어, 유사가 예찬(禮饌)을 올리니, 시전례(視膳禮)를 몸소 친행하였다. 【이 뒤로 친행한 제전(祭奠)은 이와 같다.】 하교하기를, “총호사와 도감의 당상·낭청은 모두 제전(祭奠)에 들어와 참여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 “다섯 상사(上司)의 진향(進香)을 오늘 안으로 거행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도리어 번독(煩瀆)스런 감이 있으니, 조전·조상식·주다례·석상식·석전을 겸행하라.”</p> <p>하였다. 이때 상이 제전을 몸소 행하면서도 특별히 대전관(代奠官)을 두었는데, 이는 국전(國典)의 상제(喪制)를 사용한 것이며, 또한 예(禮)에 우제(虞祭)가 아니면 목욕 재계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p>	<p>日，豈可一刻安坐齋殿，而爲念老病大臣，姑從之。” 朝奠時至，攸司進禮饌，親行視膳禮。【此後，親行祭奠倣此。】教曰：“摠護使、都監堂郎，竝入參祭奠。” 又教曰：“五上司進香，當於今日內爲之，而屢次行祭，反涉煩瀆。 朝奠、朝上食、晝茶禮、夕上食、夕奠，兼行。” 時，上親行祭奠，而特置代奠官，用國典亮陰之制，且取禮非虞不沐之義也。</p>
<p>정조 28권, 13년 (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10월 7일(기미) 3번째기사</p>	<p>상이 석상식(夕上食)·석전(夕奠)·계찬전(啓攢奠)을 친히 거행하였다. 관을 싸매는 의식을 처음에 했던 대로 거행하였다.</p>	<p>○上親行夕上食、夕奠、啓攢奠，行結裹如初。</p>



<p>석상식·석전·계찬전을 친행하다</p>		
<p>정조 29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1월 4일 (을유) 1번째기사 거동시 민폐를 줄이도 록 하교하다</p>	<p>하교하였다. “풍덕(豐德)에 있는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에 있는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에 행행(幸行)할 때와 온천에 행행할 때,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 으레 아침 저녁의 찬공(饌供)과 주물상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조(先朝)께서 여주에 행행하였을 때와 경오년에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로부터 모두 없애도록 명하고, 서울에서 적당히 날라다가 거행하였었다. 더구나 본원(本園)에 거동할 때에는 매사에 폐단을 모두 줄이려고 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금번의 거동 때부터 수원·과천 두 고을에서 준비해 오던 음식물 공급은 전부 다 없앨 것이며, 혹시라도 이를 위배(違背)하는 경우에는, 지방관과 도백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본부(本府)는 새로 창설한 고을이어서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 비록 선비를 시험보이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남한 산성(南漢山城)이나 송도(松都)의 규례를 적용하겠는가. 경신년의 행행 때 풍덕 부사가 과외(科外)로 공급한 일로 처분이 지엄하였다. 이것 또한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一端)이다. 더더구나 어공(御供)조차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점을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고 해당 도백 및 부사에게 행회(行會)하도록 하라.”</p>	<p>○乙酉/教曰：“如豐德齊、厚陵、驪州英、寧陵幸行及溫幸沿路各邑，例有朝夕饌供、晝物等措備。自先朝驪州幸行時，庚午溫幸時，皆命除之，自京從便輸置舉行。況本園舉動，每事皆欲省弊者乎？自今番舉動，水原、果川兩邑待令饌供，一竝除之。一或違越，地方官及道伯，難免其責。本府以新創之地，凡百姑未就緒，雖試士日，豈用南城、松都之例乎？庚申幸行時，以豐德府使之科外供饋，處分至嚴，此亦仰述之一端。且況御供猶勿措備，至於諸臣私饋，尤豈可舉論？令廟堂嚴飭，行會該道伯及府使處。”</p>
<p>정조 29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2월 6일 (정사) 2번째기사</p>	<p>진휼청이, 4도(道)의 유민(流民)들에게 쌀과 베를 나누어 주었음을 아뢰었다. 【4도의 유민이 3백 42명이었는데 장정(壯丁) 1인당 쌀 5두씩을 주고 어린아</p>	<p>○賑恤廳以四道流民米布分給啓。 【四道流民三百四十二名，壯每名米五斗，弱每名米三斗。其中老弱四十五名，襦衣代綿布四十五疋、錢四十五</p>

<p>진휼청이 4도 유민에게 쌀과 베를 나누어 주었음을 아뢰다</p>	<p>이에게는 각기 쌀 3두씩을 주었다. 그 가운데 노약자 45명에게는 유의(襦衣) 대신 면포(綿布) 45필(匹)과 돈 45냥을 주었고, 추가로 넘겨준 1백 45명에게 장정에게는 쌀 3두, 어린아이는 쌀 2두씩을 주었다.】</p>	<p>兩，追付一百四十五名，壯每名米三斗，弱每名米二斗。】</p>
<p>정조 29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2월 24일(을해) 1번째기사 반궁에 나가 계성사에 전작례를 행하고 명륜당에 재숙하다</p>	<p>- 반궁(泮宮)에 나가서 계성사(啓聖祠)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재숙(齋宿)하였다.</p>	<p>○乙亥/詣泮宮，行啓聖祠奠酌禮，齋宿于明倫堂。</p>
<p>정조 29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2월 24일(을해) 4번째기사 명륜당에 차린 저녁 식당에 참석하다</p>	<p>상이 명륜당에서 차린 저녁 식당(食堂)에 친히 참석하였다.</p>	<p>○親臨夕食堂于明倫堂。</p>
<p>정조 29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3월 14일(갑오) 1번째기사 의소묘 제사 때 쓰는 축문에 수압 두는 것</p>	<p>의소묘(懿昭廟)에 제사할 때 쓰는 축문(祝文)에 수압(手押)을 두는 것을 규식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p>	

<p>을 규식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5월 9일 (기축) 1번째기사 제주 목사 이철모가 백성들에게 쌀을 고루게 분배하여 구제한 내용을 보고하다</p>	<p>제주 목사 이철모(李喆模)가 치계하였다. “본섬은 지난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환자곡을 받은 민호에게 그 완급에 따라 차례로 뽑아 구제 대상에 넘겼는데, 결식하는 기민이 장년과 노약을 합쳐 모두 3백 19명입니다. 신이 따로 마련해두었던 쌀 1백 12섬을 가지고 10일마다 일정하게 분배한 결과 다행히 1명도 굶주리는 일이 없습니다.”</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6월 7일 (병진) 2번째기사 평안도 관찰사 심이지가 강계의 인삼 행정 등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 말하다</p>	<p>평안도 관찰사 심이지가 강계(江界)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 아뢰기를, “본부의 인삼 행정의 간교한 술책과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래에 와서 강계 백성들은 거두어들이는 정사에 너무도 시달리므로 전일에 채삼을 전업으로 삼던 자들은 그 이익이 적고 해가 많음으로 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삼에 관한 행정이 극도로 어렵게 된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산(下山)할 때면 수색하는 일이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게까지 두루 미쳐 몽땅 약탈해 가니 남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 바칠 때면 저울질의 농간이 한결같이 아전과 군교에 맡겨지는 결과 1냥의 감축이 많게는 4, 5전씩이나 되며 남은 것은 결국 관청의 용도로 돌아가게 되니 민원이 일 것은 또한 알 만합니다. 많이 썩 사람의</p>	<p>○平安道觀察使沈頤之以江界弊瘼啓言：“本府蔘政之奸竇弊窩，不一其端，而挽近以來，江民積困於徵斂之政，前日之業採者，以其利少而害多，入山之數，比前大減，蔘政之極艱，專由於此。方其下山之際，搜括之舉，遍及於未筭之女，而盡數掠奪，則無遺利可知也。捧上之時，稱鍾俯仰，一付於吏校，而一兩之縮，多至四五錢，而剩餘終歸官用，則民怨之起，亦可知也。勒奪多採者，移施於未採之類，而畢竟價直出給，不過元詳定四兩二錢之數，</p>

것을 강제로 빼앗아 캐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만 결국 그 값을 내줄 때에는 원래 정해 놓은 4냥 2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인삼흉년을 만나 채삼자가 본업을 잃게 되면 온 경내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폐단이 번번이 있습니다. 강계 백성이 어찌 떠돌지 않을 수 있으며 조정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이 남몰래 사들이는 것을 엄금하여 한없이 새는 구멍을 막고 기타 소소한 폐단은 본 고을에서 요량해 조처할 일로 계속 엄한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레 바치기로 된 원액(元額)의 인삼을 산을 끼고 있는 여러 고을과 북관에 나누어 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산을 끼고 있는 여러 고을에 어찌 껌만한 인삼의 종자가 없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이 본디 본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연례대로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한결같이 강계 고을에서 하는 것 같이 한다면 또 강계 고을의 폐단을 산을 끼고 있는 여러 고을에 두루 파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목전에 닥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실은 훗날의 고질적인 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관에 대해서는 연전에 조정으로부터 특별히 강계 백성들의 노고를 걱정하여 그 힘든 것을 덜어주게 하였는데 지금 또 수량을 배정하여 몫으로 떼어준다면 과연 곤란한 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삼의 가격을 통틀어 4냥 2전으로 정하여 일정한 규례로 삼는 것 또한 실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물건의 실패로서 그 가격의 높고 낮은 것은 산출의 많고 적음과 품질의 좋고 나쁨이 때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만약 일률적으로 값을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마도 고집불통의 의견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군정에 있어 어린아이를 군적에 등록하고 죽은 사람에게 신역을 물리는 일에 대해서는 본 고을은 본디 면적이 넓고 토질이 비옥한 데다가 인삼과 초피까지 생산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온 도내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강계 고을을

而若值歉歲，採者失業，則通一境收斂之弊，比比有之，江民安得不流散，而爲朝廷之憂也？嚴禁商賈之潛買，以防尾閫之泄，而其他小小弊端，自本邑量宜措處事，連加嚴飭。至於例納之元蔘，分定於中山諸邑及北關事，則中山諸邑，豈無蔘種之可採，而民人本不爲業。今若年例分定，一如江州之爲，則又將江州之弊，遍布於中山諸邑，雖似目前之救急，實爲日後之痼瘼。至於北關，則年前自朝家，特軫江民之苦，使之分力，而今又定數移劃，未知果無難便之端。蔘價之通同以四兩二錢，定爲恒式云者，亦是行不得之事。物之不齊，物之情也，價之高下，以其產出豐歉、品數優劣，隨時不同。今若一例同價，恐不免爲不通之論。軍政之黃簽白徵事，則本府素以地廣土沃，兼有蔘貂之利，一道樂土，最說江州，而邑倅不施懷保之政，民人積困拮克之苦，昔之數萬戶，今爲四千餘戶。有勢土豪，竝其挾率，而規避應役；無勢貧戶，舉其老弱，而同編軍籍，黃簽白徵，安得不然？臣發關該府，自官親執帳籍，查括漏丁，不緊雜色軍之係關

	<p>첫째로 칩니다. 그러나 고을 수령이 돌보아주며 보호하는 정사를 펴지 못함으로써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림주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수만 호가 되던 것이 지금은 4천여 호밖에 안 됩니다.</p> <p>세력있는 토호는 그 협솔(挾率)까지도 응당 저야 할 신역을 회피하지만, 세력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그 노약자까지 군적에 등록하게 되니, 어린아이를 군적에 등록하고 죽은 사람에게 신역을 물리는 일이 왜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해당 고을에 공문을 띄워 관에서 직접 장부를 잡고 누락된 장정을 조사해내며 필요치 않은 잡색군으로서 강계부에 매여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혁파하여 빠진 자리에 대신 보충하여 한두 가지의 신역을 이중으로 지는 걱정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p> <p>전결(田結)을 고쳐 측량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부의 1만 6천여 결이나 되는 많은 토지를 5천여 호가 다 경작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형편으로 보아 그럴 법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숲으로 되어버린 땅에 대하여 이웃 사람과 친족들에게 공공연하게 조세를 징수한다는 백성들의 말이 지나친 것 같기는 하나, 지금 강계의 민호가 점점 비는 것으로 보아 또한 무리한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조사하여 현재 경작하는 토지에 따라 조세를 거둔다면 백성들은 징수를 원망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토지측량에 대한 명이 지금 거듭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방 알려주고 일일이 정신차리라는 뜻으로 본부에 엄중히 당부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本府者，一二革罷，以爲填充於有闕之代，而俾無一二役疊簽之患。田結改量事，則以本府一萬六千餘結之多，五千餘民戶，不能盡墾云者，其勢似然，而成林之地，隣族之公然徵稅，民言雖似過當，以今江州民戶之漸空，亦不可謂無理之言。一一摘奸，隨其時起而收稅，則民無冤徵之患。量田飭命，方又申嚴，今方知委，隨處惕念之意，竝爲嚴飭本府。”</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6월 20</p>		<p>○教曰：“今番告廟陳賀日，慈殿、慈</p>

<p>일(기사) 3번째기사 원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에 대해 말한다</p>	<p>전교하였다. “이번 종묘에 고유하고 축하하는 날에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에 대해 경외(京外)에서 바칠 전문(箋文)의 허두는 이미 계하하였다. 그날 자전과 자궁에게 축하의식을 친히 거행한 다음에 대궐에 나아가 하례를 받겠다.”</p>	<p>宮京外所進箋頭辭，已啓下。 其日當親行殿宮賀禮後，臨殿受賀。”</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6월 25일(갑술) 2번째기사 북경에서 황제의 연회에 참석하는 것 등의 자문을 보낸다</p>	<p>예부가 성경(盛京) 등의 곳을 진수(鎭守)하는 장군 아문(將軍衙門)에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좌례사(左禮司)는 건륭(乾隆) 55년 6월 18일 자로 예부의 자문에 준하여 각처에 자문을 보내는 일이다. 주객사(主客司)의 공문에 의하면, 금년 5월에 조선 국왕이 차임하여 보낸 재자관(齎咨官) 장렴(張濂) 등의 자문에 준하여 본 예부에서 황제에게 주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 나라 국왕이 만수성결(萬壽聖節)을 맞이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치겠다는 일들이다. 이에 본 예부에서는 물건을 갖추어 황제에게 주달하여 허락을 받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금 안남(安南)·남장(南掌)·면전(緬甸) 등의 나라가 만수절을 축하하기 위한 공물 사신을 다 같이 7월 10일에 열하에 도착하여 미리 연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자문을 성경의 장군에게 급히 보내는 만큼, 성경에 있는 장군은 조선국의 공물 사신에게 이첩 신칙하여 길을 재촉하여 열하로 달려가되 반드시 7월 10일 이전에 도착하게 하라. 북경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되돌아올 필요는 없다.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 이런 사유에서다. 전례대로 이에 상응한 자문을 조선 국왕에게 급히 보내니, 자문이 도착하거든 예부의 자문 내용에 따라 귀국의 공물 사신을 7월 10일 이전에 앞질러 열하에 도착하여 연회에 참가하게 하고 조금도 어기지 말</p>	<p>○禮部咨鎭守盛京等處將軍衙門，爲咨行事。 左禮司案呈於乾隆五十五年六月十八日，準禮部咨，開爲咨行事。 主客司案呈，本年五月，準朝鮮國王差來齎咨官張濂等咨，請本部轉奏，該國王謹擬萬壽聖節，仍遣使恭進方物等因，經本部具奏，奉旨準行在案。 今安南、南掌、緬甸等國，恭祝萬壽貢使，俱定於七月初十日到熱河，預備筵宴。 相應飛咨盛京將軍，轉飭朝鮮國貢使，妥速趨行，徑赴熱河，務於七月初十日以前趕到。 不必到京後，再行前往，轉致紆折可也。 須至咨者等因，前來相應飛咨朝鮮國王文到，遵照部咨事宜，貴國貢使官，務於七月初十日以前，徑行前赴熱河，以備筵宴，勿得稍遲外，仍飭知該國貢使，務須遵照部文，星速趨行，毋誤可也等情。 據此爲此合咨，</p>

	<p>도록 하라. 이밖의 해당 나라 공물 사신에게 알려 반드시 예부의 자문에 따라 속히 길을 재촉하여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유로 자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p>	<p>須至咨者。</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7월 23 일(신축) 1번째기사 특별히 축하연을 베풀 때 올리는 물선에 대 해 규정을 정하다</p>	<p>특별히 축하연을 베풀 때 올리는 물선(物膳)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하교하기를, “이번 축하연의 물선으로써 호서(湖西)에서는 모두 말린 꿩을 올렸지만, 경영고(京營庫)의 진상은 오히려 제철이 아니라 하여 모두 대봉(代捧)을 허락하고 이것을 일정한 규례로 삼았다. 본도 또한 마땅히 주원(廚院)과 상의하여 규례에 따라 올렸어야 할 것인데 감사가 한 일은 몹시 소홀하였다. 이후부터는 특별히 베푸는 축하연의 물선 중에 만약 제철이 아닌 물품은 다른 물건으로 대봉하는 것을 규례로 정하고 과일도 역시 그렇게 하여 똑같이 규례로 정하라. 이로 인하여 한가지 알아볼 일이 있다. 호서에서는 물선과 삭선(朔膳)을 모두 올리지 않고 경청(京廳)에서 대봉하고 있는데, 탁지(度支)에서 만든 규례 중에 삭선가미(朔膳價米)와 건수어가미(乾秀魚價米)라는 명색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유독 축하연에 대한 물선만 이렇게 바치는 것은 의의가 없다. 주원과 탁지, 선혜청으로 하여금 그 문적(文蹟)과 경위를 자세히 상고해보도록 하라.” 하고, 이어 주원으로 하여금 하나로 단락지를 방안을 초기(草記)하게 하였다.</p>	<p>○辛丑/定別陳賀物膳之式。 教曰：“今番陳賀物膳，湖西則皆以乾雉封進，京營庫封進，猶以非節，皆許代捧。作爲定式，則本道亦當往復廚院，而循例封進，道伯事殊甚踈忽。此後別陳賀物膳中，除非時品，以他物代捧事定式，果品亦然，一體定式。因此而有一番提問者，湖西物膳朔膳，皆不封進，自京廳代封，度支定例中，朔膳價米、乾秀魚價米名色，卽此也。獨於陳賀物膳，如是封進無意義，令廚院及度支惠廳，詳考文蹟及委折。”仍令廚院，指一論理草記。</p>
<p>정조 30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7월 25</p>	<p>내의원 제조 홍익(洪億)이 아뢰기를, “어전에 쓰는 약에 관한 일은 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한번 가</p>	<p>○內醫院提調洪億啓曰：“御藥事體，何等嚴重，而一自家蓼盛行之後，慶尙、原春兩道封進，率多家蓼。至於</p>

<p>일(계묘) 2번째기사 내의원 제조 홍익이 경상도 등지에서 좋은 인삼을 선택하여 올리 도록 청하다</p>	<p>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한 것이 대부분 가삼입니다. 특히 원춘도의 경우는 가삼을 첩첩이 덧놓아 온갖 교묘한 방법을 내었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실로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겨울분을 봉진할 때부터는 각별히 살펴 선택함으로써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사에게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인삼에 관한 정사가 갈수록 구차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관동 등의 고을에 하나의 명산을 인삼밭으로 만들고 빙 둘러 봉진(封田)하기를 황 장목(黃腸木)의 예와 같이 한다면 10년이 못 되어 인삼을 이루 다 쓸 수 없 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은 정승 서지수(徐志修)도 일찍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행되지 못 하였다.” 하자, 홍익이 아뢰기를, “인삼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폐사군(廢四郡)만한 곳이 없는데 여전히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캐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이 극히 귀한 때에는 인 삼밭을 봉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p>	<p>原春, 則必以家蔘, 層連疊付, 巧樣百 出, 揆以事體, 誠極駭然。 自冬等封 進時, 各別審擇, 俾無抵罪之意, 請申 飭兩道道臣。” 從之。 左議政蔡濟恭 曰: “蔘政去益苟簡, 臣意則如關東等 邑, 占一名山, 作為蔘田, 環而封田, 如黃腸之例, 則不出十餘年, 其蔘將不 可勝用矣。” 上曰: “故相徐志修曾有 此論, 而未果行矣。” 櫛曰: “產蔘莫 如廢四郡, 而猶有犯境潛採之弊。 當 此蔘政極貴之時, 蔘田雖封, 成效恐難 期必矣。”</p>
<p>정조 31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9월 12 일(기축) 3번째기사 진사로서 나이 80이 된 사람들에게 쌀과</p>	<p>전교하기를, “이번에 진사로서 나이 80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각권(角圈) 그대로 내려보 내겠는가. 70살이 된 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원 성이집(成爾漵)·강명래(姜 命來)·정행언(鄭行彦)·이택로(李宅魯) 등을 모두 가자하여 80세가 된 사람은</p>	<p>○敎曰: “今番進士年八十人, 豈令仍 以角圈下送乎? 七十者亦然。 生員成 爾漵、姜命來、鄭行彦、李宅魯等, 并 加資, 八十歲人, 五衛將作窠擬入, 七 十歲人, 兪樞作窠擬入, 還鄉後, 令地 方官, 優給米肉。”</p>



<p>고기를 주게 하다</p>	<p>오위 장(五衛將)의 자리를 만들어 그 자리에 추천하여 들이고, 70세가 된 사람은 첨추(僉樞)의 자리를 만들어 그 자리에 추천하여 들이라. 고향에 돌아간 뒤에는 지방관을 시켜 쌀과 고기를 넉넉히 주게 하라.” 하였다.</p>	
<p>정조 31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9월 28일(을사) 1번째기사 조식당을 춘당대에서 설행하게 하고, 유생들에게 응제를 명하다</p>	<p>조식당(朝食堂)을 춘당대에서 설행하게 하고 이어 유생들에게 응제(應製)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p>	<p>○乙巳/行朝食堂于春塘臺， 仍命儒生應製</p>
<p>정조 31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10월 28일(을해) 2번째기사 육상궁에 나가 행례하는 의식 절차를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다</p>	<p>전교하였다. “6일에 자전께서 육상궁에 나아가 행례하는 것은 선대왕의 유지를 따르자는 뜻이다. 예조로 하여금 그리 알고 종묘를 참배하거나 본궁을 참배하는 의식 절차를 상고하여 이에 대한 의주(儀注)를 마련하게 하라. 본궁의 안뜰이 좁아서 내·외 명부(內外命婦)가 비록 규례대로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궁전의 행례는 그만둘 수 없다. 6일 중궁전이 육상궁에 나갈 때는 자전께서 육상궁에서 나온 뒤에 떠나게 하되 시각은 적절히 알아서 하도록 하라.”</p>	<p>○教曰： “初六日慈殿詣毓祥宮行禮， 遵先大王下教之遺意也。 令禮曹知悉， 參考謁廟、謁本宮儀節， 磨鍊儀注。 本宮內庭狹窄， 內外命婦， 雖不如例參班， 中宮殿行禮， 在所不已。 六日中宮殿詣毓祥宮時， 待慈殿出宮後離發時刻隨時。”</p>
<p>정조 31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11월 5</p>	<p>육상궁(毓祥宮)을 참배하고 제물과 제기를 둘러보았다. 이어 봉안각(奉安閣)·</p>	<p>○辛巳/展拜于毓祥宮， 省牲器。 歷拜奉安閣、延祐宮、宣禧宮， 還詣毓祥宮， 齋宿。</p>

<p>일(신사) 1번째기사 육상궁을 참배하고 제 물과 제기를 둘러보다</p>	<p>연호궁(延祐宮)·선희궁(宣禧宮)을 참배하고 육상궁으로 돌아와 재계하면서 밤 을 지냈다.</p>	
<p>정조 31권, 14년 (1790 경술 / 청 건륭 (乾隆) 55년) 12월 25 일(신미) 3번째기사 강릉 현감 이집두가 화전세와 인삼세 등의 폐단을 상소하다</p>	<p>강릉 현감(江陵縣監) 이집두(李集斗)가 상소하기를,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으로서 바꾸고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다의 폐단과 군사의 폐단이며 조세의 폐단과 인삼의 폐단입니다. 이른바 바다의 폐 단이란 것은 어부가 현재 양인(良人)의 신역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이중 부담에 속하는 일입니다. 신이 부임한 후 일일이 조사해서 즉시 면제해 주었 으며, 그 밖의 폐단도 감사와 상의하여 절목을 정하여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고을은 대도호부(大都護府)의 큰 고을로서 경향의 군안에 등록된 군액이 모두 3천 7백 60여 명이나 되는데, 계묘년과 갑진년의 큰 흉년을 겪 고 난 후부터 절반 이상이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민호는 겨우 2천 5백 70여 호가 될 뿐입니다. 게다가 소위 반호(班戶)가 3분의 1은 되니, 한 사람의 신역을 대신 정하려 하여도 온 면리(面里)가 소란하고, 한 사람이 도 망쳤거나 죽어도 이웃과 친척을 침해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군적에 등록하 고 죽은 사람에게 조세를 물리는데 대해서는 조정의 명령이 비록 엄격하지만 수령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빈 고을 이 되고 말까 염려됩니다. 이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서(嶺西) 지방에 화전세와 인삼세가 편중된 것은 가장 산골 백성들의 지탱 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년 이래 자주 흉년을 겪어 흩어진 백성 들이 모이지 않고 황폐한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으므로 조세의 총액을 옛날대 로 복구하기란 전연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더</p>	<p>○江陵縣監李集斗上疏曰： 邑弊民隱之可以矯革， 曰海弊、軍弊 也， 稅弊、蔘弊也。 所謂海弊者， 海 夫之見充良役， 係是疊徵。 臣自莅任 之後， 一一查出， 劃卽除給， 其餘爲弊 者， 與道臣商確， 定節目蠲減。 第本 邑以大都護巨邑， 京外案付軍額， 摠爲 三千七百六十餘名之多， 而自經癸甲大 無之後， 流亡過半， 時存民戶， 僅爲二 千五百七十餘戶， 而所謂班戶， 殆三之 一。 一役之代定， 騷擾面里， 一人之 逃故， 侵漁隣族。 黃口之簽， 白骨之 徵， 朝令雖嚴， 邑守無奈。 如不及今 矯革， 實恐來頭空邑而後已， 寧不悶 然？ 至於嶺西火蔘稅之偏重， 最爲峽民 難支之端。 比年以來， 屢經歉荒， 流 民未集， 荒田未墾， 稅摠之復舊， 斷無 其望。 就時徵者言之， 土稅之每負所 納， 三錢零矣。 以稅民之役重， 創設 場稅， 減其零數， 而每負三錢之納， 係 是加減不得。 以此之故， 山峽貧氓，</p>

라도 토지의 1부(負)당 바치는 세액은 3전 남짓합니다. 세를 무는 백성들의 부담이 과중하다 하여 장세(場稅)를 창설하여 그 3전 이외의 나머지 수를 감해 준다 하지만 1부당 3전씩 바치는 것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협의 가난한 백성들은 경작하는 정전(正田)마저 편안한 마음으로 힘써 경작하지 못하여 끝내는 원 토지의 면적이 해마다 축소되고 산골 마을이 날로 비게 됩니다. 만약 그 세를 좀 가벼이 매겨 흠어진 백성을 소집하지 않는다면 앞날의 폐단은 실로 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인삼의 폐단에 있어서는, 본 고을은 예로부터 인삼이 생산되는 고장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을 분기와 겨울 분기에 봉진하는 인삼이 55냥쯤이며 기타 각종 명목으로 바치는 인삼도 16냥쯤 남짓합니다. 근래에 이 지방에서 캐는 인삼은 옛날에 비하여 10분의 9는 줄었고 민호의 감축도 전에 비하여 또한 그 절반은 줄었으므로 사세로 보아 감당해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경인년과 임진년 두 해에 걸쳐 상급관청으로부터 본전 6천 1백 냥을 요청해 얻어서 민간에 나누어 주고 10분의 3의 이자를 취하여 인삼값을 보충하도록 하였지만 그래도 오히려 부족하여 보삼군(補蔘軍)이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인원수가 7백 56명이었습니다. 한 명당 돈 1냥 5전씩 징수하여 공삼(貢蔘) 1냥쯤마다 47냥을 보태주어 원가 80냥과 아울러 1백 27냥을 만들어 한꺼번에 내주어 공삼 밀천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양민의 장정을 찾아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 군사 폐단이 더욱 극심해진 것은 이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산삼의 폐단을 먼저 없애게 되면 그 밖의 세 가지 폐단은 아마 차차 바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봉진하는 인삼 55냥쯤 내에서 30냥쯤까지는 간성(杆城)에서 인삼을 공급하는 관례에 따라 인삼 1냥쯤의 원가 80냥을 서울의 공물로 만들어 원가 2천 4백 냥을 서울의 관청에 바쳐 서울의 관청에서 봉진하게 한다면 30냥쯤의 인삼에 보태준 값 1천 4백 13냥은 저절로 남을 것입니다. 이 남은

并與正田而不得安業力作，遂致元結歲縮，山村日空。如不稍輕其稅，招集流民，則前頭爲弊，誠有難言。至如蔘弊，本邑古稱產蔘之鄉。秋臘等元封人蔘爲五十五兩，其他各樣供蔘，亦爲十六兩零。伊來土採之蔘，視古減却九分，民戶之縮，比前亦損其半，蔘以事勢，莫可擔當。往在庚寅、壬辰兩年，請得六千一百兩本錢於上司，散給民間，以什三取殖，添補蔘價，尙有不足。別創補蔘軍官名色，其額爲七百五十六名。每名徵錢一兩五錢，貢蔘每兩添給四十七兩零，並與元價八十兩，合爲一百二十七兩，一時出給，以爲供蔘之地。自是以後，良丁之括得，轉益艱辛，今日軍弊之滋甚，未必不由於此。若先祛蔘弊，其餘三弊，或可次第矯揉。元封蔘五十五兩內，限三十兩，依杆城蔘作貢之例，每蔘一兩，以元價八十兩，作爲京貢，元價二千四百兩，上納京司，使之封進，三十兩蔘添價一千四百十三兩零，自歸剩數。以此餘錢，減給火蔘稅，每負一錢，補蔘軍官番錢所徵者，亦爲稱量存減；除出餘丁、海尺之疊應良役者，各軍保之

돈을 가지고 화전세와 인삼세를 감해 주며, 토지 1부(負) 당 1전과 보삼군관(補蔘軍官)이 번드는 대가로 내는 돈도 역시 적당히 감해 주고, 여정(餘丁)과 바다의 어부들로서 양인 신역을 이중으로 지는 자를 덜어내어 각 군보(軍保)로서 도망갔거나 죽은 자, 어린아이나 이미 죽은 자에게 신역을 물리는 사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대신 보충해 줌으로써 이미 죽은 자에게 물리거나 이웃에 물리는 걱정이 없게 한다면 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어서 함부로 변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적용하여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도내 환자미의 정량이 언제나 부족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만 섬씩 더 늘릴 것을 장계로 청하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어 있으니, 지금 만약 더 나누어 주는 장리 중 매년 환산한 쌀 1천 40섬에서 5백 20섬을 떼어내 매섬에 3냥씩 돈으로 만들면 1천 5백 60냥이 됩니다. 이것을 본도에서 관리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다가 감영 창고에 전부 모아들어 수량을 채워 본 고을에서 관리하는 영공삼상(營貢蔘商)에게 내어 준다면 인삼값을 내주는 수량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화전세와 인삼세는 41결 70부인데, 1부당 1전씩만 감한 것이 합하여 4백 17냥이 되며, 보삼군관의 번드는 대가로 내는 돈이 1천 1백 34냥 남짓 하니, 이를 합하여 계산하면 1천 5백 41냥이 자연 견감하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삼군의 돈으로 바다 어부의 신역을 면한 대가 및 각종 군보의 도망갔거나 죽은 자에 대한 이중 신역의 결원에 옮겨 보충하고 그 나머지 환산한 쌀 5백 20섬은 원주(原州)에서 인삼값을 더 보충한 관례에 따라 보삼곡(補蔘穀)이라고 이름을 붙여 해마다 이 숫자에 준하여 등록하고 장리에 장리를 내어 우선 8년 동안만 계속한다면 5천 9백 40여 섬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5천 2백 섬은 그대로 보삼곡의 명칭을 따로 세워놓고 나누어 주었으니, 장리를 늘려 일정한 규례로 산삼값에 보태게 하며, 나머지 곡식 7백 40

逃故、黃白兩役之類，一併查櫛充代，俾無徵骨徵隣之患，則豈不大幸，而事係所重，有難變通。亦有一策，可以援例請得者。道內還穀應分，每患不足，故年年數萬石狀請加分，已成規例。今若於加分耗中，每年除出折米一千四十石，五百二十石，每石以三兩作錢，則可得一千五百六十兩零。此則本道旬管，分定各邑，都聚營庫，充數出給於本邑所管營貢蔘商，則蔘價出給之數，依前自如。在前火蔘稅四十一結七十負，每負減一錢，則所減合四百十七兩，補蔘軍官番錢爲一千一百三十四兩零，合以計之，一千五百四十一兩，自在蠲減中。以補蔘軍移充海夫免役之代及各樣軍逃故疊役之闕，其餘折米五百二十石，依原州蔘價添補例，名以補蔘穀，每年準此數會錄，耗上生耗，姑限八年，則可作五千九百四十餘石穀物。就其中，五千二百石，仍以補蔘穀別立名色，盡分取耗，依例補用於蔘價，餘穀七百四十石，還付元還後，加分耗中取用一款，更不舉論，則在國穀無永損之患，於四弊有可掇之方。亟令廟堂稟處。

	<p>섬은 원래의 환자로 되돌린 후 더 나누어준 장리 중에서 떼어 쓰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곡식에는 영원히 손실을 볼 염려가 없게 되고 네가지 폐단에 대해서도 없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 조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시종신으로 있다가 지방에 나가 네 가지 조항의 민폐를 자세히 진술하고 아울러 개선할 방법까지 언급하였으니,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민생의 고초가 어느 고을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관동 1개 도에 이르러서는 토지가 제일 척박하고 백성도 제일 가난하다. 게다가 부역마저 고되며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물건을 모두 받아내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먹는 것도 달지 않고 잠자리도 편치 못하다. 실로 백성들에게만 이롭다면 사소한 개선은 주저할 것이 없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의 조처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해당 도에 공문을 띄워 물어볼 것을 청하자, 그 의견에 따랐다.</p>	<p>批曰：“出自近密，備陳四條民瘼，竝及矯揉之策，殊用嘉乃。生民之困悴，何邑不然，至如關東一路，土最瘠、民最貧，重以賦役偏苦，水陸俱徵。每一念至，食何甘而寢何便乎？苟利於民，些少更張，不足顧。卽令廟堂，論理稟處。”備邊司請關問該道，從之</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1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나이 70세 이상으로 부부가 해로한 자 13인에게 쌀과 고기와 비단을 보내다</p>	<p>송제로(宋濟魯) 등 나이 70살 이상으로서 부부가 해로한 자 13인에게 쌀과 고기와 비단을 내렸다. 제로는 나이가 가장 많아서 특별히 그 직급을 올려주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하였고, 경외의 노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오부(五部)는 조관(朝官)이 13인에 사서(士庶)가 1인이고, 경기도는 조관이 4인에 사서가 47인이고, 원춘도(原春道)는 사서가 93인이고, 충청도는 사서가 80인에 부녀자가 7인이고, 황해도는 조관이 1인에 사서가 61인, 평안도는 조관이 4인에 사서가 2백 10인이고, 경상도는 조관이 2인에 사서가 1백 65인이고 부녀자가 7인이며, 전라도는 조관이 2인에 사서가 91인이고, 강화</p>	<p>○賜宋濟魯等年七十以上十三人夫妻偕老者米肉疋帛。以濟魯年最多，特陞其秩，入耆社，推恩京外耆老。【五部，朝官十三人，士庶一人；京畿朝官四人，士庶四十七人；原春道，士庶九十三人；忠清道，士庶八十人，婦女七人；黃海道，朝官一人，士庶六十一人；</p>

	<p>부(江華府)는 조관이 1인에 사서가 3인이었다.】</p>	<p>平安道，朝官四人，士庶二百十人；慶尙道，朝官二人，士庶一百六十五人，婦女七人，全羅道，朝官二人，士庶九十一人，江華府，朝官一人，士庶三人。】</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월 20일(을미) 1번째기사 정언 정취성이 태묘의 대향 때 제사 고기를 나누는 장소를 바꾸도록 상소하다</p>	<p>정언 정취성(鄭取成)이 상소하기를, “태묘의 대향(大亨) 때 하인들이 음식을 쟁상에서 물려 제기고(祭器庫)로 옮겨가는데 그곳은 태실(太室)의 동쪽입니다. 제사 고기를 나눌 때 희생으로 쓴 고기를 태묘의 결채에 낭자하게 늘어놓고 사람들의 소리가 뜨락에 왁자하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제사에 쓰는 곡식과 술이며 과일은 전처럼 제기고에 갖다 두더라도 제사 고기는 전사청(典祀廳)에 옮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성균관 시험에서 오래 있던 두 낭관의 경우, 하나는 자제들이 모두 뽑혔고, 하나는 인척들이 다 합격했으나 다만 애초에 대독관(對讀官)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혹은 다른 죄로 말미암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서반(西班)에 태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생 이문연(李文淵)은 마침내 위협을 가해 합격하려고 꾀하였습니다. 작년의 승시(陞試)와 합제(合製)를 파방하소서. 포교(捕校)가 성균관에 숙직하는 것은 단속하고 규찰하는 데는 힘이 될 것 같지만 공자의 엄숙한 사당이자 선비들이 글을 읽는 곳이니, 이런 무리들이 숙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포교들이 대령하는 규례를 고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제사 고기를 나누는 것은 네 말이 옳으니 그대로 시행하라. 성균관 시험에</p>	<p>○乙未/正言鄭取成上疏曰： 太廟大亨時，守僕輩，移奉餽餘於祭器庫。此乃太室東頭也。分膳之際，牲肉狼藉於廟廡，人聲喧聒於階庭，事面未安。粢盛酒果之品，雖或如前入藏，牲肉則移置典祀廳爲宜。昨冬泮試，久任兩郎官，一則子弟俱占，一則姻婭盡濟，而特以初不對讀，故不入查勘，或因他罪而薄勘，或自晏然於西廡。儒生李文淵，畢境脅持而圖占。昨年陞試合製，請罷榜。捕校之守直於泮宮，似有力於禁戢糾治，而聖殿肅嚴之地，章甫絃誦之所，恐不合此輩之看守，請罷捕校待令之規。 批曰：“分膳之所，爾言是矣，依施。泮試事，臺言既如此，渠必引義，以久任郎除拜守令者改差。昨年陞試合製</p>

	<p>관한 일은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들은 반드시 피험할 것이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낭관으로 수령에 임명된 자는 바꾸어 차임하라. 작년 승시에 합격한 자를 과방하는 것은 지나치다. 포교가 번갈아 성균관에 숙직하는 것은 당초에 반드시 법을 정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p>	<p>罷榜，過矣。捕校輪直泮宮，當初必有法意矣。”</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2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경모궁에 가서 희생과 제사 그릇 등을 살펴보다</p>	<p>경모궁(景慕宮)에 가서 희생(犧牲)과 제사 그릇 등을 살펴보았다. 내일 춘향제(春享祭)가 있기 때문이다. 명광문(明光門)에 돌아와서 문신에 대한 제술 시험, 초계 문신(抄啓文臣)에 대한 친시(親試), 춘도기(春到記) 유생들의 강경과 제술 시험을 거행하였다. 초계 문신과 선전관들에게 지난해부터 따져서 상을 나누어주고, 유생으로서 제술 시험에 수석을 차지한 심반(沈鑿)과 강경 시험에 수석을 차지한 한영건(韓永建)은 곧바로 전시(殿試)에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계 문신으로서 강경 시험에 수석을 차지한 윤광안(尹光顏)은 통정대부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p>	<p>○丁未/詣景慕宮，省牲器。春享在明日也。還御明光門，行文臣製述、抄啓文臣親試、春到記儒生製講。頒抄啓文臣、宣傳官去年都計劃賞典，儒生製居首沈鑿、講居首韓永建直赴殿試，抄啓文臣講居首尹光顏加階通政。</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3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사근역의 오래된 환자 곡식 2천여섬을 탕감 해주도록 명하다</p>	<p>사근역(沙斤驛)의 오래된 환자 곡식 2천 섬을 탕감해 주었다. 이보다 앞서 영남 함양군(咸陽郡)에 환곡의 폐단이 있으므로 상이 특별히 어사를 과견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어사가 돌아와 사근역의 환곡의 폐단이 함양과 다름이 없다고 아뢰니, 상이 감사에게 바로잡아 구제할 계책을 강구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이에 도신 이조원(李祖源)이 아뢰기를, “본역의 원래 환곡 8천 5백 섬 가운데 정실(精實)한 것 1천 5백 섬을 골라 5</p>	<p>○丁亥/蕩減沙斤驛舊糶二千石。先是，嶺南之咸陽郡有還弊，上特遣繡衣釐正之。繡衣歸奏，沙斤驛還弊，與咸陽無異，上命道臣，講究矯揉之策以聞。道臣李祖源啓言：“本驛元還八千</p>

백 섬은 본역에 두고 1천 섬은 속역(屬驛)에 나누어 보내 환자로 운영하게 하며 이미 썩어 흙먼지가 되어버린 것 이외에는 모두 돈으로 바꾸어 다른 고을에서 사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장계가 분실되어 즉시 아뢰어 처리하지 못했다. 이때에 와서 상이 찰방 유정모(柳鼎模)를 불러 보고서야 그 사정을 알고, 전교하기를,

“내가 사근역의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게 되었다. 내가 만약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내 매우 두렵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함양의 환곡의 폐단은 비록 이미 바로잡았다 하지만 사근역의 환곡도 함양과 다를 것이 없다. 대체로 본역은 본읍에 끼어 있는데, 읍의 백성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으나 역에 속한 백성들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어찌 똑같이 보아주는 도리이겠는가. 작년에 어사가 조정에 돌아와 연석에서 아뢰는 말을 듣고 특명으로 감사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조사하여 바로잡으라 했으므로, 내 생각에는 감사가 이미 조사하여 바로잡아 역에 속한 백성들도 역시 실질적인 은혜를 받았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 실태에 대하여 듣지 못해 늘 마음속으로 미심쩍게 여겨 지난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달포 전까지 경연에서 물은 일이 10여 번 뿐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묘당과 정원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본도에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처 못하였다. 그러다가 엇그제 대신의 말을 듣고서야 본도에서 아직도 회답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본도의 백성들이 해를 넘기면서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어찌 보고가 늦다고 찰방을 죄주었던 본뜻이겠는가. 오늘 찰방을 불러 묻고서야 사실을 자세히 알았으니, 어찌 묘당에서 회계하길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썩어 흙먼지가 된 곡식과 거칠고 나빠서 팔기 어려운 것으로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하라.”

五百石之中，擇其精實一千五百石，五百石留置本驛，一千石則分送屬驛，以爲糶糴之地，已成塵土者外，并作錢，移質他邑爲便”，狀本旋遺漏，未卽稟處。至是，上召見察訪柳鼎模，得其狀，教曰：“予於沙斤之民，未免失信。予若有誠信愛民之心，豈有是也？予甚瞿然。”又教曰：“咸陽糶弊，雖已釐正，沙斤驛還穀，無異於咸陽。大抵本驛，介在本邑，邑民則紓眉，驛屬則喫困，是豈一視之道乎？昨年聞繡衣還朝後筵奏，特令道伯，查正矯瘼，而意謂道伯已查矯，而驛屬亦蒙實惠。猶以形止之未聞，心常訝之，昨秋及冬至于月前，提問於筵席者，不啻十數遭。廟堂、政院，輒曰不知，故直欲提問本道而未果。日昨聞大臣言，知本道之至今待回下。於是乎始覺本驛民人之經歲懸企，是豈以晚報罪郵官之本意乎？今日召問察訪，詳知事實，豈待廟堂回啓？塵土穀與麤劣難質者，留庫牟，一并蕩滅，”仍命李祖源罷職，備局有司堂上李秉模削職。



	<p>하고, 이어 이조원은 파직하고 비국의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병모(李秉模)를 삭직하도록 명하였다.</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5월 22일(병신) 4번째기사 각도에서 납제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치다</p>	<p>각도에서 납제(臘祭)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쳤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좌의정 채제공이 납제의 고기를 꿩으로 대신하게 하자고 아뢰는 것으로 인해 전부 호서(湖西)에서 말린 송어 값으로 바치는 예에 따르는 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대신 바치는 해당 각도에 공문을 보내 물어서 하나로 귀결지어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경기 관찰사 서정수(徐鼎修)는 아뢰기를 ‘납제의 돼지고기를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은 목은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 덧붙이는 값이 관청 경비에서 나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나오기도 하여 그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제 말린 송어의 예에 따라 값을 대신 바치도록 하면 각 고을이 모두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충청도 관찰사 박종약(朴宗岳)은 아뢰기를 ‘납제 고기의 덧붙인 값을 본 회감(會減) 이외에 관청 창고에서 내기도 하고 민간에서 내기도 하는데 전부 말린 송어의 예에 따라 그 값을 돈으로 바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고, 함경도 관찰사 이문원(李文源)은 아뢰기를 ‘추가된 값을 관청에서 내기도 하고 백성에게 징발하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어 사려고 하면 값이 폭등하니, 이제부터는 여러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기한 전에 미리 사둔다면 거의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는 아뢰기를 ‘납제에 쓰는 고기를 꿩으로 대신해 각읍에서는 영저리(營邸吏)에게 맡겨 바치게 하는데, 덧붙인 값을 주는 고을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합니다. 이른바</p>	<p>○改諸道臘肉進上之式。 宣惠廳啓言：“因左議政蔡濟恭所啓，臘肉代雉，有一依湖西乾秀魚價封進例，關問便否於各該代捧諸道，指一以啓之命矣。 京畿觀察使徐鼎修以爲：‘臘豬代捧，宿弊夫祛，若其添價之或出官用，或出民間，其規不一，今依乾秀魚例，以價代捧，則各邑皆便’云。 忠清道觀察使朴宗岳以爲：‘臘肉添價元會減外，或出公庫，或出民戶，一依乾秀魚例，以價封進爲便’云。 咸鏡道觀察使李文源以爲：‘添價或出於官，或徵於民，而臨時貿取，價直踴貴，自今以後，嚴飭諸邑，前期預買，庶可無弊’云。 全羅道觀察使鄭民始以爲：‘臘肉代雉，自各邑付營邸吏封進，而添價之邑，或有或無。 所謂添價，或徵民結，或出官庫，其規雖不一，比諸生豬封進時，別無弊端。 今若以本價上納，則非但列邑之皆稱不便，雖以全州民勢言之，生理絕艱，所以聊賴者，只是邸吏之</p>

덧붙인 값은 백성들의 토지에 의하여 받아내거나 관청 창고에서 대기도 하여 그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나, 생돼지를 바칠 때와 비교해보면 특별한 폐단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 본가(本價)를 바치게 한다면, 비단 여러 고을에서 모두 불편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전주(全州)의 백성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살아갈 방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단지 이 영저리의 일 뿐이므로 값에 맞춰 서로 전해주는 것이 서울 공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익의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이 담당했던 물건마저 놓쳐버리면,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장차 어려울 것이니 본가(本價)를 바치는 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인 값은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지급하여 감영에서 준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였고,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은 아뢰기를 ‘생평 한 마리의 정가가 9전이므로 상정(詳定)에 따라 내줄 것 같으면 감영이나 읍에서 값을 덧붙여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평은 곧 산골 읍에서 나는 것이므로 평이 귀한 때라도 값이 부족할 걱정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사람의 말이 차이가 없지 않은데 경기·충청 두 도는 마른 송어 값의 규례에 따라 바치는 것이 편하다 하니,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해야겠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이미 폐단이 있다고 했으니 경기·충청의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전라도에서는 덧붙인 값을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주어 감영의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내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백성들과 고을에서 모두 편리하다고 하였으니, 억지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

단 경기와 호서의 각 고을에서는 생돼지 1마리당 본 회감 값이 쌀로 5섬인데, 5섬을 대동미 값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0냥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으로 평 80마리를 사자면 1마리당 3전에 불과하여 값이 맞지를 않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생돼지 한 마리당 본 회감 값이 안변(安邊)은 55냥, 영흥(永興)은 40

役, 故準價相傳, 無異京貢, 毋論利之多少, 失此擔當之物, 其所聊活, 又將耗縮, 本價上納, 亦有掣礙之端. 減罷添價, 只給元會, 減價與營下錢, 仍付邸吏’ 云. 江原道觀察使尹師國以爲: ‘生雉一首定價九錢, 以詳定出給, 別無營邑之所添, 雉卽峽邑所產, 雖值雉貴之時, 價無不足之慮’ 云矣. 諸說不無參差, 京畿、忠清兩道, 以乾秀魚價例封進稱便, 依所請許施; 咸鏡道, 既云有弊, 依畿、湖例舉行; 全羅道, 以減罷添價, 只給元會, 減價與營下錢, 出付邸吏, 俾作生活爲請; 江原道, 以永無弊端爲言. 民邑既皆稱便, 則不必強爲釐改. 竝依所報施行. 但京畿、湖西各邑, 生豬一口元會減價, 米爲五石, 五石, 大同準折, 只爲三十兩, 以此質取八十之雉, 每首不過三錢, 價不相當. 咸鏡道, 生豬一口元會減價, 安邊五十五兩, 永興四十兩, 北青四十兩, 吉州續布六十疋; 生鹿一口, 元會減價, 高原四十兩, 德源、定平、咸興各二十兩, 明川、鏡城續布各三十疋. 以雉代封之例, 於豬爲八十首, 於鹿爲三十首, 各邑之價,

냥, 북청(北靑)은 40냥, 길주(吉州)는 속포(續布) 60필이며, 생사슴 1마리당 본 회감 값이 고원(高原)은 40냥, 덕원(德源)·정평(定平)·함흥(咸興)은 각각 20냥, 명천(明川)·경성(鏡城)은 속포 각각 30필입니다. 꿩을 대신 바치게 한 규례는 돼지 한 마리에 꿩 80마리, 사슴 1마리에 꿩 30마리이고 각 고을의 값이 서로 달라 꿩을 사들일 때에 혼란스러움을 면할 수 없으니,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경기·호서·북관 지방을 막론하고 꿩 1마리의 값을 7전으로 정하되, 전에 관청에서나 백성들이 덧붙여주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이던 값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며 매년 12월 초하루에 본 선혜청에서 각 전궁(殿宮)에 바치는 말린 송어값의 규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왕 백성과 고을을 위해 폐단을 바로잡자고 말린 송어 값을 쌀로 받아들이는 예를 준용하기로 한다면, 그저 서울 관청의 본 회감 값은 서울 관청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른바 덧붙여 준 값이 도리어 폐단이 되는 것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전에 영남에서 꿩으로 대신 바치려 하지 않은 것이나 이번에 호남에서 영저리의 폐단을 걱정하는 것은 모두 조정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관동의 경우는 산골 고을이 많아서 토산물과 다름없으나 한 도만 유독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은 나라를 똑같이 보아주는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또한 폐단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안이 아닌 것이다.

고 선혜청 당상 김좌명(金佐明)은 고 상신(相臣)5178)의 아들로 백성과 고을을 위해 호서에서 말린 송어를 진상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청하여 숙종께서 허락하셨다. 이 어찌 오늘날 삼가 계승할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경기와 호서에서의 납제의 고기로 쓰는 생돼지 이외에 원래 있던 것을 도로 없앤 일은 더욱 오늘날 본받을 점이 아니겠는가. 경기·호서·호남·영남·북관·관동의 납제

互相不同, 質雉之際, 未免斑駁, 不可無一定之制。 毋論畿、湖、北關, 每首價定以七錢, 而在前官與民添給橫斂之價, 一竝革罷, 每年十二月朔日, 自本廳, 依各殿宮乾秀魚價例輸入, 事合便宜。” 教曰: “既欲爲民邑矯拔弊瘼, 遵用乾秀魚價米輸納之例, 則只當以京廳元會減者, 自京廳舉行而已。 如是然後, 所謂添價之反有弊端, 不期除而自除矣。 前此嶺南之不欲代雉, 今番湖南之爲慮邸弊, 皆出於未能領會朝家本意而然。 至於關東多峽邑, 便同土產, 而一道之獨漏, 有違一視, 亦非拔本塞源之道。 故惠堂金佐明, 以故相之子, 爲民邑請除湖西乾秀魚封進之弊, 而聖祖許之, 豈非今日仰述之一端乎? 況畿、湖臘肉之生豬外, 原有而旋除者, 尤豈非今日仰法處乎? 京畿、湖西、湖南、嶺南、北關、關東臘肉所管生豬、生鹿、生獐及原封雉、代封雉, 竝依代封以前元會減, 一依昔年乾秀魚價矯弊時例, 仍自京廳, 進獻于殿宮, 釐正之後, 所謂添價之出於民邑者, 嚴飭各該方伯, 卽令革罷。 萬一循襲, 勿計多少, 該守令, 狀聞嚴勘,

에 쓰는 고기와 관계된 생돼지·생사슴·생노루 및 원래 바치던 꿩, 대신 바치던 꿩은 모두 대신 바치던 이전의 본 회감에 따라 지난날 말린 송어 값의 폐단을 바로잡던 때의 사례와 똑같이 서울의 관청에서 각 전공에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바로잡은 뒤에도 덧붙인 값을 백성이나 고을에서 내게 하는 경우에는 각도의 해당 감사에게 엄히 신칙해서 즉시 혁파하도록 하고, 만일 과거의 관행을 따르는 일이 있으면 값의 다과를 따지지 말고 해당 수령을 장계로 보고하여 엄히 다스림으로써 조정에서 옛날 민폐를 영구히 제거하고자 한 뜻을 우러러 받든다는 것을 알게 하라.

호남의 영저리(營邸吏)가 삭선(朔膳)으로 바치는 물선(物膳)도 역시 원공(元貢)의 하나로서 그 권리를 비싼 값에 매매하여 대대로 전하니, 경공인(京貢人)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마다 봄에 참배하는 행차 때 저자거리에 연(輦)을 멈추고 경공인들에게 고통을 물어보는 것을 규례로 삼았는데, 대체로 조정에서는 서울이나 지방을 똑같이 보고 있다. 기왕 여기에 생각이 미쳤으니 한 차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연전에 무리배들이 함부로 호남 영저리의 공물에 대한 권리를 엿보아 감히 서울의 공물로 만들 계획을 부렸던 일은 항상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상언(上言)한 자나 정소(呈訴)한 자를 막론하고 그 주도자를 묘당으로 하여금 법사(法司)에 넘겨 엄히 처벌하여 섬에 유배하고 사면령이 내릴 때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 호남의 도백에게 향공인(鄉貢人)들에게 이 점을 효유해줘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였다. 선혜청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변통을 한 뒤에는 서울의 관청에서 바칠 것이니, 꼭 선달로 기한을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말린 송어나 인삼 값의 규례대로 매년 정월에 한꺼번에 바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돈·베·쌀의 수량을 나누어 마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했더니 말하기를, ‘말린

俾知朝家仰體昔年永除民瘼之意。湖南營邸之備納朔膳物膳，亦一元貢也。厚價賣買，世世傳守，何異於京貢人乎？每歲春謁之行，駐輦市街，詢瘼於京貢人，以爲例，大抵朝家之視之京與鄉，一也。既思之，不可無一番明示之舉。年前無賴輩之妄意窺覬於湖南邸貢，敢生京作貢之計者，常所駭痛。此後更或有如此之類，無論上言與呈訴，狀頭令廟堂，移付法司，嚴刑島配，勿揀赦典。”仍令湖南道伯，曉諭於鄉貢各人等處，俾得安意樂業。宣惠廳又啓言：“今此變通之後，既自京廳輸納，則不必以臘月爲限，一依乾秀魚、蓼(苦) [桔] 價例，每年歲首，同時輸納，恐爲穩便。至於錢、布、米分數磨鍊之節，就議大臣，則以爲：‘乾秀魚、蓼(苦) [桔] 價，雖以五分內、二分米、二分布、一分錢，定式，臘肉之六道會減米錢各異，五分參互之際，自多掣礙，略倣錢米參半之例，從便酌定爲宜’云。請依此施行。”允之。

	<p>송어와 인삼 값은 다섯 등분해서 들은 쌀로, 들은 벼로, 하나는 돈으로 바치는 방식을 정했지만, 납제에 쓰는 고기에 대해서는 여섯 도가 회감하는 쌀과 돈의 값이 제각기 다르므로 다섯으로 나누어 서로 참작하는 과정에서 자연 모순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돈과 쌀을 대략 반반씩 내는 규례를 모방하여 편리한 대로 요량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에 따라 시행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p>	
<p>정조 32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6월 26일(기사) 3번째기사</p> <p>호서에서 바치는 음식 재료의 공납 규정을 변통하다</p>	<p>-</p> <p>호서에서 바치는 삭선(朔膳)5198) 은 모두 경청(京廳)에서 대신 바치지만 진하(陳賀) 때 쓰는 음식 재료만은 본도에서 봉해 올렸다. 전교하기를,</p> <p>“진하가 얼마나 성대한 일인가. 그러나 음식 재료의 문제로 우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은 경사를 함께 나누는 뜻이 아니다. 묘당에 물어보도록 하라.”</p> <p>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p> <p>“주원(廚院)5199) 의 음식 재료 공납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명색 가운데 삭선조(朔膳條)에, 1월에는 껍질이 있는 생전복이 있고 4월에는 황조기가 있고 8월에는 울홍시와 생송이버섯이 있고 9월에는 울홍시와 생전복이 있으며, 물선조(物膳條)에는 탄신일과 동지(冬至)에 모두 생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복과 울홍시는 토산품일 뿐만 아니라, 위에 올려 보낼 때 거리도 가장 가깝고 더욱이 본도의 생전복은 여러 도 가운데서도 맛이 가장 좋다는 평이 있으며, 울홍시와 송이도 그와 같은 경우로서 서울의 저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례대로 거행하소서. 황조기에 대해</p>	<p>○湖西朔膳，皆自京廳代封，而獨陳賀物膳，自本道封進，教曰：“陳賀是何等盛事，而以物膳事，貽弊吾民，甚非同慶之意，詢于廟堂。” 備邊司啓言：“詳閱廚院貢膳定例，則所餘名色朔膳條，正月有有匣生鰻，四月有黃石首魚，八月有早紅柿子、生松茸，九月有早紅柿子、生鰻。物膳條，誕日與冬至，俱有生鰻矣。生鰻、早紅，不特爲土產，輸上之際，道里最近，況本道生鰻，以甲於諸道，最有雋稱，早紅、松茸，亦如之，非京肆所可求得。此三種，依前舉行。至於黃石首魚，本係瑣少，亦不必改例，而但念聖意，專在於不以天下奉一人，則廟堂之臣，惟當將順其美而已，付之價米定式之中。</p>

	<p>서는 본디 소소한 것이라서 또한 규례를 고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생각건대 성상의 뜻이 오로지 온 나라를 동원하여 한 사람을 봉양하지 않겠다는 데 있기 때문에 묘당의 신하로서는 그저 그 미덕을 받들 따름입니다. 그 값을 쌀로 대신 받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는 대상에 붙이게 하소서. 나아가 도계 진상(到界進上)5200) 은 수십 년만에 한 번이나 있는 일이지만 물건 종류 가운데 산 노루 2마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고친 뒤에 다른 도에는 산 노루에 대한 명목은 모두 없어졌는데 본도에만 군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영구히 다른 것으로 대신 봉해 올리라는 뜻을 주원과 해당 관청 및 해당 도에 분부하시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호서 지방에서는 생똥을 산 채로 잡아서 보내기 때문에 봉하여 올린 뒤에는 매번 산 것을 놓아 준 선왕의 거룩하신 덕을 본받아 곧바로 대궐 숲에 놓아 준다. 그러면 날아갔다가 다시 모이고 한참 뒤에 자유롭게 날아가버리는데, 이것이 곧 궁중의 고사가 되었다. 쓸모도 없으면서 폐단만 생기는 것이 사실 그와 같았으니, 앞으로는 도계 진상에서 생똥을 제외시키고 영구히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 편포(片脯)5201) 는 우금(牛禁)5202) 이 매우 엄격하여 비록 크고 작은 연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음식 재료로 쓰이는 짐승 이외에는 옛 규례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설사 감영 부근의 푸줏간에서 쇠고기를 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라는 경우와 근사하지 않겠는가. 편포도 역시 다른 물건으로 때에 따라 대신 바치게 하라.”</p> <p>하였다.</p>	<p>至於到界進上，係是數十年一有之事，而物種中有生獐二口，今番改式之後，他道則生獐名色，都歸烏有，不當於本道，留作贅肉。此種永爲代封之意，請分付廚院、該廳、該道。” 教曰：“湖西生雉，活捉送之，故封進之後，每遵放生之聖德，輒放于上林，則翔而復集，久而後悠然飛去，便作宮中之故事。其爲無用而有弊，果如許，自今到界進上活雉除之，永久遵行。片脯，牛禁至嚴，雖於大小宴饗，除非大膳牲脚一味外，古例無得用牛肉，則設有營下庖肆，以牛肉獻御，得不近於法之不行，自上犯之乎？片脯，亦以他物，隨時代封。”</p>
정조 32권, 15년		○命大嬪宮祭品釐正，著爲式。 教曰：

<p>(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6월 27일(경오) 2번째기사 대빈궁의 제사 물품을 바로잡아 규정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p>	<p>대빈궁(大嬪宮)의 제사 물품을 바로잡아 규정으로 정할 것을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원(園)보다 지나치게 하면 사치한데 가깝고 묘(墓)보다 못하게 하면 그 또한 박대하는 것 같다. 당초의 수교(受敎)에서는 신비(愼妃)와 인빈(仁嬪)을 기준으로 삼게 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다르니, 이렇게 참작하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겠다. 이로써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p>	<p>“過於園則近於汰， 不及於墓則亦如何。 至於當初受敎， 以愼妃、仁嬪爲式， 今則事面異於其時， 如是裁酌磨鍊， 甚爲得宜， 依此定式。”</p>
<p>정조 33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9월 8일 (경진) 2번째기사 전라도에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어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다</p>	<p>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치계하여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든 사정을 아뢰고 각사와 각영에 바치는 군보(軍保)의 포를 내년 가을까지 전부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것은 남쪽 백성들로 하여금 숨이 없더라도 추위를 잊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정적인 조세도 오히려 이처럼 대신 바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보다 중요하지 않은 목화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외를 막론하고 만약 여전히 독촉해 받아들인다면 어찌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혹시 부자와 세력가들이 감영 고을의 큰 길목을 모두 장악하여, 앞서 영남에서 했던 것처럼 도성의 목화 값이 금처럼 귀하게 된다면 아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고심과는 어찌 크게 상반된 것이 아니겠는가. 도신에게 이 점을 분부하라.” 하였다.</p>	<p>○全羅道觀察使鄭民始馳啓， 陳綿歉狀， 請各司、各營納軍保布， 限明秋純錢代捧， 許之。 敎曰：“此乃欲使南民無絮而忘其寒也。 常賦猶如是許代， 則下於此之綿納， 無論京外， 萬一依舊徵督， 其可曰國有紀綱乎？ 又或富豪， 都執營邑過路， 使都下綿貴如金， 如前此嶺南之爲， 則惟此急於益下之苦心， 亦豈不太相反乎？ 分付道臣。”</p>
<p>정조 33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p>	<p>영남 경시관 서영보가 돌아와 아뢰기를,</p>	<p>○嶺南京試官徐榮輔歸奏曰：“豐基、順興等邑， 有會簿田米， 以租換捧者，</p>

<p>(乾隆) 56년) 9월 21일(계사) 2번째기사          풍기·순흥 등 고을에 회계 장부에 있는 좁쌀을 벼로 바꾸어 바치게 하다</p>	<p>“풍기(豊基)·순흥(順興) 등 고을에는 회계 장부에 있는 좁쌀을 벼로 바꾸어 바치게 한 것이 몇해 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벼는 좁쌀과 맞출 수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본색(本色)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좁쌀은 토산 곡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오므로 백성들이 장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말을 어찌 이처럼 뒤늦게야 들었던 말인가. 어려운 처지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일이라면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이 없다.”          하고, 해도에 좁쌀로 바꾸도록 명하였다.</p>	<p>不知在於幾年之前。近來以其租，不可以準米也，又令還本色，非土產而轉質他境，民將不堪。”教曰：“何聞之晚也？揀民倒懸，多寡不須論。”仍命該道作租。</p>
<p>정조 33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9월 28일(경자) 4번째기사          황해 도사 유성한이 염전·둔전·군정의 폐단 등에 대해 진술하다</p>	<p>황해 도사 유성한(柳星漢)이 돌아와 폐단이 되고 있는 염전·둔전·군정(軍丁)과 돌림병에 대해 고을의 보고 속에서 누락된 일 등을 진술하였다. 상이 불러 만나보고 자세한 내용을 물은 뒤에 묘당에서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한이 아뢴 것이 너무 복잡하니 만약 그대로 시행하자면 이는 곧 제도의 개혁이 됩니다. 한(漢) 문제(文帝)가 ‘말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면 내버려두라.’고 말했는데, 신도 역시 이 일은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였다.</p>	<p>○黃海都事柳星漢，歸陳弊瘼鹽盆、屯田、軍丁及癘疫邑報漏落等事。上召見問之，仍命廟堂稟處。左議政蔡濟恭奏曰：“星漢所陳，太煩屑。如欲施行，便是更張。漢文帝曰：‘言不可用則置之。’臣以爲此亦置之爲宜。”</p>
<p>정조 33권, 15년 (1791 신해 / 청 건륭 (乾隆) 56년) 10월 12일(계축) 1번째기사          우리가 치자 상선을</p>	<p>우리가 쳤다. 전교하기를,          “밤에 우리가 약하게 친 경고가 있었다고 아침에 관상감의 단자가 올라왔으나 나는 전혀 몰랐다. 잠자리에 든 때도 아니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모두 내 성의가 한 순간 소홀하였기 때문이니, 만약 하늘을 경외하는 일념</p>	<p>○癸丑/雷。教曰：“夜有微雷之警，朝登雲觀之單，予則邈然未聞知。時非就寢，響未諦聽，都緣誠意，或忽於</p>



<p>줄이고 간관과 홍문관에 구언하다</p>	<p>이 혹시라도 중단되지 않았다면 관상감에서는 들어서 안 것을 나는 어찌 모를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반성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안 것보다 배나 되는 이유이다. 예전에 겨울 우레가 며칠 사이에 계속 칠 경우, 상선(常膳)을 줄이지도 않고 직책에 따라 경계를 올리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전교가 너무 번다하면 도리어 하늘에 대해 무례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고 폄하하는 조건으로 삼고자 한다. 주원(廚院)으로 하여금 오늘 상선을 줄이게 하고 간관과 홍문관의 관리들에게 좋은 경계의 말을 해 주기를 바라니, 각자 모두 알아서 부응하게 하라.”</p> <p>하였는데, 승지 이형원(李亨元) 등은 아뢰기를,  “실다운 마음으로 실다운 정사를 행하여 하늘의 뜻에 응하고 재앙을 해소하는 요체로 삼아야 합니다.”</p> <p>하고, 옥당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분발하고 힘써 형식만 갖추는 폐단을 경계하고 성실하고 근면히 함으로써 재앙을 해소할 방도를 다하소서.”</p> <p>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였다.</p>	<p>造次。苟使對越一念，莫或間斷，則雲觀所聞知者，予豈不聞知乎？此所以反省恐悸，有倍於聞而知之。在前冬雷，若在數日之內，則常膳不減，藝箴不求者，以辭教之煩復，反涉於瀆褻也，而今以不聞知，爲責躬貶己之端。令廚院，減今日常膳，申求良規之言於言責論思之地，俾各知悉對揚。”承旨李亨元等，啓請以實心行實政，爲應天弭災之要；玉堂上筭，言奮勵以戒文具之弊，篤實以盡消災之道，上嘉納。</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월 1일 (신미) 3번째기사  해조가 친경과 선농제의 병행을 건의하나, 선농제만 거행키로 하</p>	<p>-</p> <p>해조가 친경(親耕)과 선농제(先農祭)를 행할 것을 품의하니, 하교하기를,  “밤낮없이 정성을 다하여 오늘 사직단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고, 지금부터 추수할 때까지 마음속으로 묵묵히 풍년을 축원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것이니, 어찌 친경하는 것과 차등이 있겠는가. 금년에는 선농제만을 거행하겠다.”</p> <p>하였다.</p>	<p>○該曹。以親耕及先農祭稟，教曰：“夙宵處誠，今日祈穀于社壇。自今至西成之日，無非默祝於方寸之時，豈有間於親耕乎？今年只行先農祭。”</p>

다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월 1일 (신미) 2번째기사 농사 장려의 운음을 내리다</p>	<p>농사를 장려하는 운음을 내렸다. “정월 원조(元朝)가 마침 상신일(上辛日)이기에 삼가 사직단에 나아가 농사가 잘되기를 비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상신일이 원조에 당하여 몸소 제사를 지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대하고 잦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축원은 어느 해인들 하지 않겠는가마는, 이해 이날 이 축원은 어느 해보다 갑절 더 간절하다. 대저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것은 오로지 농정(農政)의 권면에 달려 있다. 아, 너희 여러 도의 방백(方伯)으로 있는 신하가 만약 원조(元朝)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내 마음처럼 마음을 갖는다면 비록 조금이나마 소홀히 하고자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는가. 반 걸음을 걸을 때에도 이를 생각하고 먹고 설 때에도 이를 생각하여 내가 거듭 유시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토록 하라.”</p>	<p>○下勸農綸音曰：“月正元朝，維日上辛，祇詣社壇，行祈穀大亨。上辛在元朝，親將享禮，卽初行之學也。大有之祝，屢豐之願，何歲不然，而是歲是日是祝是願，尤有倍於常年。大抵穡事之有秋，專係農政之勸課。咨爾諸道方伯居留之臣，若以元朝祈穀之予心爲心，則雖欲一毫泛忽得乎？跬步念念於茲，食息念念於茲，以副予申諭之至意。”</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춘당대에서 군사들에 게 음식을 베풀어 위 로하다</p>	<p>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세수 호궤(歲首犒饋)5346) 를 거행하였다.</p>	<p>○壬申/上御春塘臺，行歲首犒饋。</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p>		

<p>(乾隆) 57년) 1월 27일(정유) 2번째기사 지방의 공물을 규정대로 바치게 하다</p>	<p>여러 도에서 바치는 음식물 중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라고 명하고,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절기가 각각 이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는데, 아래에서 마음대로 월령(月令)을 고칠 수 없으니 수시로 봉진(封進)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영남에서 봉진한 김[海衣]을 보건대 모양이 예전 그대로이니 몹시 놀랍다. 명령을 내린 후 즉시 바로잡지 않은 감사는 중하게 추고하고, 봉진한 수령도 잡아다 심문하여 엄히 처단하라.” 하였다.</p>	<p>○命釐正諸道物膳之不中式者，尋教曰：“節候各有早晚，而自下不得擅改月令者，許使隨時封進矣。今見嶺南封進，海衣制樣依舊，萬萬駭然。令後不卽釐正之道臣重推，封進守令，亦令拿問嚴勘。”</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4월 10일(무신) 3번째기사 예조의 당상관에게 북도의 두 본궁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다</p>	<p>예조의 당상관에게 명하여, 북도(北道)의 두 본궁(本宮)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집행(攝行)하고 각 능을 봉심(奉審)하도록 하였다.</p>	<p>○命禮堂，詣北道兩本宮，攝行酌獻禮，奉審各陵。</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4월 25일(계해) 1번째기사 함흥과 영월의 두 본궁과 준원전의 제사 준비를 하다</p>	<p>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本宮) 및 준원전(濬源殿)의 작헌례(酌獻禮)에 사용할 축문에 몸소 임금의 이름을 써 넣었다. 이때 두 본궁의 제사 의식을 개정하고 예조 판서 서호수(徐浩修)를 보내어 다음달 16일 갑술일에는 함흥의 본궁에 작헌례를 거행하고, 26일 갑신일에는 영흥의 본궁과 준원전에 작헌례를 거행하게 한 것이다.</p>	<p>○癸亥/御仁政殿月臺，親押咸興、永興兩本宮及濬源殿酌獻禮祝。時，釐正兩本宮祭式，遣禮曹判書徐浩修，以本月甲戌，行酌禮于咸興本宮，以甲申，行于永興本宮、濬源殿。</p>
<p>정조 34권, 16년</p>		

<p>(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4월 28일(병인) 1번째기사 경모궁의 제수로 쓸 6 가지 곡식을 호남에서 올리라 명하다</p>	<p>경모궁(景慕宮)에 제수로 올리는 여섯 가지의 곡식을 호남(湖南)에서 봉진(封進)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본궁(本宮)에 올리는 밀[小麥]·벼[稻]·기장[粱]·피[稗]를 적전(籍田)에서 봉진하였는데, 간혹 제수를 바칠 때를 당하여 적전의 곡식이 익지 않았으면 호남에서 먼저 봉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봉진한 것으로 똑같이 종묘에 올렸었다. 이때에 이르러 봉상시에 명하여 지금부터는 호남에서 봉진하는 여섯 가지 곡식을 각각 2되씩 더 봉진하게 하고 적전에서 봉진하는 것은 폐지하게 하라고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대신들의 말로 인하여 보리와 밀만 호남에서 더 봉진하게 하였다.</p>	<p>○丙寅/命景慕宮薦獻六種穀，自湖南封進。先是，本宮所薦小麥、稻、粱、黍、稷，自籍田封進，而間值薦獻之時，籍田未熟，湖南先封，故以其所封，一體薦于廟宮。至是命太常，自今湖南六種穀加封各二升，籍田封進則革罷之。尋因大臣言，只以小麥，自湖南加封。</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윤4월 9일(정축) 5번째기사 김해·연일에서 균역청에 납부하는 염세를 탕감하게 하다</p>	<p>김해(金海)와 연일(延日)에서 균역청(均役廳)에 납입하는 염세(鹽稅)를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영남 감사가 치계(馳啓)하여 그 폐단을 진달하자, 비변사가 복주(覆奏)하기를, “소금은 하나의 땅에서 나오는 것인데, 토지와 가마솔에 각각 세금이 있어 도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으로 되었습니다. 궁장(宮庄)과 마위전(馬位田)은 모두 토지세에 속한 것이므로 비록 탕감할 수 없으나 가마솔[釜稅]은 균역청에 속한 것으로 감손이 크지 않으니, 장계에 따라 탕감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命蠲減金海、延日鹽稅之納均役廳者。嶺南伯馳啓，陳其弊，備局覆奏言：“鹽出一土，而土與釜各有其稅，爲島民難支之弊，而宮庄、驛位，俱屬土稅，雖不可蠲減，釜稅則屬之於均廳者，所損不大，請依狀辭許令蠲減。”允之。</p>
<p>정조 34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윤4월</p>	<p>선전관을 나누어 보내어 경기 고을의 농사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p>	<p>○分遣宣傳官，審察畿邑農形。</p>

<p>23일(신묘) 2번째기사 선전관을 보내 경기도 일대의 농정을 살피게 하다</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5월 3일 (경자) 1번째기사 광성 부원군과 신평 부원군 집의 제사에 쓸 쌀을 경청에서 내 주게 하다</p>	<p>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과 신평 부원군(新豐府院君) 두 국구(國舅) 집의 제수(祭需) 가미(價米)를 경청(京廳)에서 내주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두 국구 집의 제수 미가를 기읍(畿邑)에서 수송했었는데, 기백(畿伯)의 아뢰를 인해서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p>	<p>○庚子/命光城、新豐兩國舅家祭需價米，自京廳出給。先是兩國舅家祭需米，自畿邑輸送，因畿伯所奏，有是命。</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5월 22 일(기미) 5번째기사 김해 명지도의 공염 1 천 5백 석을 견감하게 하다</p>	<p>김해(金海) 명지도(鳴旨島)의 공염(公鹽) 1천 5백 석을 견감하라고 명하였다. 본도 염민(鹽民)이 상언(上言)한 것과 관련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물으니,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본도에서 굶는 소금 3천 석을 반으로 줄이면 민력(民力)이 반드시 퍼질 것입니다. 또 본창(本倉)에 전에 준 1천 5백 석의 쌀 역시 여유가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시가(柴價)에 보태주면 양쪽이 다 편리한 정사가 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p>	<p>○命鑷減金海鳴旨島公鹽一千五百石。因本島鹽民上言，詢問矯救之策，左議政蔡濟恭以爲：“本島煮鹽三千石，減其半，則民力必紓。且於本倉前所給千五百石米，亦當有餘，以此添給柴價，恐爲兩便之政。”允之。</p>
<p>정조 35권, 16년</p>		<p>○命湖西所在兩南拯劣米，從民願發</p>

<p>(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5월 22일(기미) 10번째기사 호서에 있는 양남의 물에 빠진 쌀을 팔게 하다</p>	<p>호서(湖西)에 있는 양남(兩南)의 증열미(拯劣米)5422) 를 민원(民願)에 따라 팔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賣。</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6월 14일(신사) 2번째기사 기전의 재해를 입은 곳에 메밀을 대신 심게 하다</p>	<p>기전(畿甸)의 재해를 입은 곳에 구례(舊例)를 비추어서 메밀을 대신 심으라고 명하였다.</p>	<p>○命畿甸被災處，照舊例代播木麥。</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6월 30일(정유) 1번째기사 이성현에서 밤나무의 채취를 금하게 하다</p>	<p>이성현(尼城縣)에서 밤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관동·영남·호남의 황장판(黃腸板)을 베어 운반할 때 징렴하는 폐단을 바로잡았다.</p>	<p>○丁酉/罷尼城縣栗木採取之規，釐關東、嶺南、湖南黃腸板斫運時徵斂之弊。</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7월 16일(계축) 1번째기사 제주의 세공마가 올라 오다</p>	<p>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가 이르렀다. 상이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예(例)대로 반사하고, 나머지는 후원(後苑) 및 제영(諸營)·태복(太僕)에서 나누어 기르라고 명하였다.</p>	<p>○癸丑/濟州歲貢馬至。上御映花堂，頒賜如例，餘命分牧于後苑及諸營、太僕。</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7월 18 일(을묘) 3번째기사 수원 독성 산성에서 고유때 쓰는 제사 용 기, 제문의 규식을 정 하다</p>	<p>수원 독성 산성(禿城山城)에서 고유(告由) 때 쓰는 제품(祭品)·제문(祭文)의 규식을 정하였다. 독성 산성을 수축하여 토신(土神)에게 고유하는 것인데 사 체가 전에 비교하여 존엄하였다. 부사를 헌관(獻官)으로, 중군(中軍) 및 읍 안 의 당상(堂上), 선천(宣薦) 조관(朝官)을 차헌(次獻)으로 삼고, 향축은 향관(香 官)이 기영(畿營)에 전하면 기영에서는 문관 찰방(察訪)을 정하고 대축(大祝) 을 겸하게 한 다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p>	<p>○定水原禿城山城告由祭品、祭文之 式。 修築禿城山城，告由土神，而以 事體之較前尊嚴，府使爲獻官，中軍及 邑內堂上、宣薦朝官爲次獻，香祝則香 官傳于畿營，畿營定文察訪，兼大祝行 祀。</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8월 21 일(정해) 2번째기사 좌의정 채제공이 강계 에서 상납하는 인삼의 수량 문제를 아뢰다</p>	<p>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강계(江界)에서 상납하는 인삼(人蔘) 중 30근을 정수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모 두 경공(京貢)으로 삼았었는데, 신은 삼이 풍작일 때에는 반드시 30근 이외의 남은 수량이 있어서 도리어 훗날 강계 수령이 이익을 독점하는 밀천이 될 것 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량의 다소를 논하지 않고 삼을 캔 사람에게 내주어 서로 매매하게 하자는 뜻으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강계 원의 사찰(私札)을 보니 말하기를 ‘조정에서 백성을 위하는 뜻은 아주 감탄스러우 나 만약 이 법을 시행하면 도리어 본부(本府)에 폐단이 될 것이다. 대개 강계 경내에서는 감히 삼을 사사로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밭머 리에서 캔 삼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관부(官府)로 달려가서 관에서 정식(定式) 한 값을 받아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京司)의 상공(上供)이 전 핍(全乏)하지 않았는데 이제 만약 스스로 매매하는 길을 열면, 이것은 바로 큰 이익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삼을 캐는 백성들이 반드시 갖은 방법으로</p>	<p>○左議政蔡濟恭啓言：“江界上納人蔘， 以三十斤爲定數，其餘則竝令京作貢之 後，臣爲慮蔘豐之時，必有三十斤外剩 數，反爲日後江倖權利之資。 剩數無 論多少，出付所採民人，俾令自相賣買 之意，行會矣，纔見江倖私札，則以爲： ‘朝家爲民之意，殊極感歎，然若行此 法，則反致本府弊端。 蓋江界境內， 不敢以蔘私相和賣，故民人輩，雖得田 頭所採，不得不走入官府，受出官定式 價錢。 故京司上供，不至全乏，今若 開其自賣之路，則此是大利所在，採蔘 之民，必百計藏匿，奸謀無所不至。 (差)然則設令蔘豐之時，三十斤萬無充</p>

숨기기 위해 간특한 모의를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삼이 풍작일 때라 하더라도 30근의 수량을 채울 리가 만무하다. 매매하는 법을 전대로 엄금하고, 30근 이외의 남은 수는 실제의 숫자에 따라 호조로 옮겨 납부하고 한편으로는 비국에 보고해 제목(題目)을 받아두었다가 만일 삼이 흉작이어서 30근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전일 더 납부한 수량으로써 경사(京師)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면 실로 사의에 합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기는 하나 다만 생각건대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설사 남은 수량이 있더라도 결코 실제대로 모조리 보고할 리가 없으며, 또 받아서 호조에 두더라도 비단 해마다 많은 숫자가 축났다고 일컬을 뿐만 아니라 필경에는 전부 없어지게 될 근심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이 겪어본 일이어서 그 폐단을 깊이 알기 때문에 양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찍이 도백(道伯)을 지낸 해부의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였다. 예조 판서 홍익(洪億)이 아뢰기를,  
“왜역(倭譯)에게 내주는 것보다 편리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형조 판서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왜역에게 내주어 왜관(倭館)의 수용(需用) 밀천을 삼고, 기영(箕營)에서 매년 내려보내는 삼값 가운데서 수를 나누어 저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체제공은 아뢰기를,  
“강계 원의 말대로 정해진 수량 이외에 남는 것은 전부 올려보내게 해 곧바로 왜학청(倭學廳)에 내주어 저축해 두게 하면 공연히 축날 근심은 저절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로는 강계 원이 혹 모조리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삼고자 하면 도신이 반드시 엄히 염찰(廉察)을 가해 조정에 보고하도록 해 탐오(貪汚)의 율로 다스리소서.”

하니, 따랐다.

數之理矣。 賣買之法，依前嚴禁，三十斤外剩數，從實數送納戶曹，一邊報于備局，受題以置，如或蓼荒，有不滿三十斤之時，則以前日加納之數，自京師充其不足，則實合事宜’云。 所言不爲無理，但念除非律已奉公之人，設有剩數，決無從實盡報之理，且受置戶曹，不特年年有許多稱縮，畢竟沒數烏有之患， 間多有之。 此則臣所經歷，深知其弊，故仰達。” 上命曾經道伯該府人， 各陳所見。 禮曹判書洪億曰：“恐不如出付倭譯之爲便。” 刑曹判書沈頤之曰：“出付倭譯，以爲倭館需用之資，就箕營每年所下蓼價中，分數儲留好矣。” 濟恭曰：“依江倅所言，定數外所剩，沒數上送，直爲出付倭學廳，俾爲儲留，則公然耗縮之患，自可無慮。 日後江倅，或不盡報，欲以利己，則道臣必嚴加廉察，狀聞于朝，請繩以貪汚之律。” 從之。



<p>정조 35권, 16년 (1792 입자 / 청 건륭(乾隆) 57년) 8월 26일(임진) 1번째기사          각 도의 쌀 유통을 원활히 하라고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연전에 영남의 면(綿)에 관한 일로써 허실을 물론하고 연석(筵席)에서 전하는 말에 의해 방백(方伯)을 특과(特罷)하였는데 더군다나 면보다 중한 곡식에 있어서이겠는가. 비록 삼남(三南)으로 말하더라도 이 군(郡)과 저 현(縣), 서주(西疇)와 남묘(南畝)가 직접 서로 자뢰(資賴)하여 교역(交易)할 수 있는데, 수령이 된 자가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며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해서 알적(遏糴)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아 곡식을 무역하는 길을 막고자 하는데도 감사가 듣고서 금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온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정사를 본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일을 하기 앞서의 염려로써 이처럼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유시를 하는 것이니, 대신은 잘 알아서 즉시 삼남의 도신에게 알려져 제도(諸道)에 일체 신칙하게 하라. 경사(京師)는 바로 근본인데 어제 이미 내린 10행(行)의 하교가 어찌 한번 으레 하는 신칙이겠는가.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통상(通商)하는 본의를 날날이 들어서 먼저 서북 및 다른 도에 신칙하여 미가(米價)가 두루 고르게 통행되게 하라.”</p>	<p>○壬辰/教曰：“年前以嶺綿事，毋論虛實，猶以筵席傳說，特罷方伯。況穀重於綿者乎？雖以三南言之，此郡彼縣，西疇南畝，自可相資於交易，則爲守令者，知我而不知他，見牛而未見羊，不顧遏糴之戒，欲阻貿穀之路，而監司聞而不禁，其可曰體朝家一視之政乎？特以先事之慮，有此先甲之諭，大臣知悉，卽爲知委於三南道臣，諸道一體申飭。京師，卽根本也。昨日旣下十行之教，豈可一番例飭爲哉？亦令廟堂，枚舉通商之本意，先飭西北及他道，使米價，得以周流通行。”</p>
<p>정조 35권, 16년 (1792 입자 / 청 건륭(乾隆) 57년) 9월 5일(신축) 8번째기사          정언 이명연이 쌀값 안정을 위해 금주법</p>	<p>정언(正言) 이명연(李明淵)이 아뢰기를,          “지금 가을철에 쌀 값이 매우 높으니 겨울과 봄에는 더욱 치솟을 것인데, 백성의 일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달리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면 우선 낭비되는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가장 낭비가 심한 것으로 논하자면 양호(釀戶)가 그 으뜸입니다. 도성 안에는 양호가 각 통(統)마다 2, 3호씩은 꼭 있으니 묘당으</p>	<p>○正言李明淵啓言：“方秋米直極高，冬春之間，且當益高，民事誠極憂悶。旣無他矯揉之術，則宜先杜糜費之竇，而若論糜費之最，釀戶實居其首。都下釀戶，每統必居二三，請令廟堂，亟講禁酒之法，期日施行。”上曰：“糜</p>

<p>시행을 청하다</p>	<p>로 하여금 속히 금주법(禁酒法)을 강구하게 하여 날짜를 정해 시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곡식을 낭비하는 것이 술을 빚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다. 그러나 명령만 내려놓고 일체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선 신중히 하는 것이 낫겠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대양(大釀)을 경계하고 술주정을 금지하는 것은 본래 법전(法典)에 있는 일인데 굳이 새로이 조령(條令)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무릇 법이란 반드시 시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 도성의 주사(酒肆)가 지나치게 범람하여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을 제거해야 한다. 비록 묘당이랄 할지라도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요령을 얻은 다음에야 시행을 의론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먼저 백성을 동요시킬 수 있겠는가.”</p> <p>하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p> <p>“대신(臺臣)이 아뢰는 대양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자는 의론도 진실로 곡식을 넉넉히 하는 정책이기는 하나, 안주를 금지시키는 일도 백성의 생활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근래에 백성의 풍속이 점차 교묘해져서 푸줏간의 고기와 시장의 생선이 태반은 술안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을 무절제하게 차리는 바람에 시장의 반찬값이 날마다 뛰고 있으니 일체 엄히 금지시키소서.”</p> <p>하니, 따랐다.</p>	<p>穀莫甚於此，而與其令出而不能一切禁止，曷若姑且鄭重？此所以至今泯默者也。至於大釀之飭、酗酒之禁，自是法典，何必新出條令乎？大抵法也者，欲其必行，則都下酒肆太濫之祛汰甚。雖廟堂，得其令行之要然後，議到於施行，豈可徑先擾民乎？”左議政蔡濟恭曰：“臺臣所奏大釀出禁之論，誠爲裕穀之策，而禁肴一事，大有關於民生日用。近來民習漸巧，庖肉肆魚，大半歸於酒肴珍羞。妙饌錯雜無節，市上饌物，日就踊貴，請一切嚴禁。”從之。</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9월 8일 (갑진) 3번째기사</p>	<p>정언 이명연(李明淵)이 상소하여 윤영희(尹永禧)를 도배(鳥配)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금양(禁釀)의 방법을 논하여 아뢰기를,</p> <p>“현재 백성들의 소원은 금주(禁酒)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비교적</p>	<p>○正言李明淵上疏，請尹永禧鳥配之典，因論禁釀之方曰：</p>

정언 이명연이 윤영희의 귀양과 금주의 방법을 논하여 아뢰다

풍년이 든 해가 많아서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소비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점이 매우 번성해 있는데, 올해는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백성들의 식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들도 그 화(禍)됨을 깨닫고 있으며 술을 빚는 자들도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들이 도리어 온 세상에 술이 없기를 바라고 술을 빚는 자들도 도리어 온 세상이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물며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빚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소원이며 또 더구나 술을 마시는 자들의 부모나 처자식의 소원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고집스레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술에 빠진 무리이며 남의 것을 훔치는 간사한 자이니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전하께서 시험삼아 한번 명령을 내리신다면 순식간에 크게 호응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의 말이 망녕되지 않음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지시키는 법을 말하자면 각통(各統)의 민호(民戶)끼리 서로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또 반드시 각동계(洞契)의 존위(尊位)로 하여금 금지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여 통 안에 범한 자가 있으며 5호가 모두 죄를 받고 동계 안에 범한 자가 있으면 존위도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나가 금지하면 삼사(三司)와 오부(五部)가 모두 폐단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관장하게 하되 대신(大臣)과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수시로 호조·병조·혜청(惠廳)·군문(軍門) 등의 미포(米布)를 다루는 아문(衙門)의 이예(吏隸)를 소집하고 금리(禁吏)와 금예(禁隸)를 임시로 차출하여 금지시키게 한다면 뇌물을 받고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 집의 제사와 장례 및 제약(劑藥)과 혼인이나 잔치에 필요한 술은 반드시 기한 전에 통수(統首)와 존위에게 보증을 받아 비국에 점목(粘目)을 올려 허락을 받은 다음에 술을 빚게 하고, 사용할 날짜가 지난 뒤에도 그 나머지를 감추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들도 금양률(禁釀律)로 논죄(論罪)해야 할 것입니다. 금양률은 사서

目今民情所願，莫切於禁酒。蓋緣比多樂歲，人不惜豪學之費，故行處壚帘，至於極繁，而今值年穀不登，民食漸艱，飲者亦悟其爲禍，釀者亦憂其害人，飲者反願舉世無酒，釀者反願舉世不飲。況不飲不釀者之公願，又況飲者之父母妻兒之願乎？若其悍然不願，是酗迷之徒，攘竊之奸也，殺固無惜，又何惜乎？殿下試一發令，則不日丕應之效，當驗臣言之非妄矣。若其禁止之法，無如統戶相保，而又須令各洞契尊位，掌其禁戢，統內有犯，則五戶受罪，契內有犯，則尊位亦有其罰，而至於自官出禁，則三司五部，俱必有弊，須令備局專管，大臣及有司堂上，每無時招致戶·兵曹·惠廳·軍門等米布衙門吏隸，權差禁吏禁隸，使之行禁，則當無捧賂擾民之弊矣。凡人家祭葬及劑藥婚宴之需，必令先期受保於統首及尊位，粘呈備局許釀，然後得釀，而過其當用之日，尙藏其餘，則亦以禁釀論可也。至如禁釀之律，士庶人刑推一次，朝官限年禁錮，無致太重而反啓掩匿，太輕而頑不懲畏，則亦庶可以永久遵行矣。臣亦嗜飲，貧不免沾酒之

인(士庶人)은 한 차례 형추(刑推)하고 조정 관원은 연한을 한정하여 금고(禁錮)하며, 너무 무겁게 하여 은폐시키게 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면 거의 영구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또한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가난해도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형편입니다마는 모두 같은 소원임을 깊이 생각하여 신의 입으로 이 말씀을 아뢰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충정을 살피시어 어리석은 소견을 받아주소서. 우선 경조(京兆)에 명하여 길목에 방을 붙여 기일을 정해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삼남(三南)은 기근이 든 곳이어서 더욱 시급한 일이거니와 경기 및 각도에도 일제히 엄히 금지하게 하되 관서(關西)에는 술을 많이 빚어서 간혹 한 사람이 한 번 취하도록 먹는 데 열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을 소비하기도 하니, 가장 먼저 통렬히 금지하게 하는 일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성인(聖人)의 말씀에 ‘음식과 군대는 버릴 수 있어도 신의를 버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 풍속이나 기강이 옛날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용주(鎔鑄)하고 제어하는 권한을 잡고 있는 것은 나의 한 생각이 시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조정의 어극(御極) 이후 한 번이라도 꺼내었다가 곧 다시 환수한 명령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이 하교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주금(酒禁)을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곡식을 낭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소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술은 예전과 같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대략 앞의 비답에 언급했던 것이다.

그대가 소진(疏陳)한 방법은 첫째 통(統)과 계(契)가 서로 감시하여 금지하는 것이요, 둘째 대신과 비국의 유사 당상이 미포 아문의 이예를 전담하여 관장하고 금리를 임시로 차출하는 것이요, 셋째 사람 집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술

食，而深念大同之情，自臣口發此言。伏願察其衷而納其愚，先命京兆，揭榜通衢，指日爲期，使之斷釀。三南饑饉之地，尤其是急務，京畿及諸道，一體嚴禁，而關西侈釀，或至一夫一醉，可作十口之飽者，最先痛禁，斷不可已也。

批曰：“聖人之言曰：‘去食去兵，不可去信。’以今俗習紀綱之不古，猶且執以爲鎔鑄(賀)〔駕〕馭之櫛權者，悠悠一念，在於不出不可行之令，以脉信於人爾。嘗觀夫朝家御極以後，有發而旋收之令者乎？爾以此教爲信然，須反觀於酒禁可乎！糜穀非不知也，耗財非不知也，決知其設禁，而酒猶昔也。此所以鄭重等語，略及於前批者。今爾疏陳之方略，一曰統契相禁也，二曰大臣、備局有司堂上、專管米布衙門吏隸，權差禁吏也，三曰人家大事許釀也。五家作統，乃國朝金石之舊典，豈不誠美好，而在昔五衛團束之時，紀律嚴明，士民用命，而已有漸弛之歎，至于近來，不特有其名而已。今爲酒禁而作統，則既異軍制，又違籍。法統而無長，果孰主張？洞契尊位掌禁之

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오가작통(五家作統)은 곧 우리 조정의 옛부터 내려오는 금석(金石) 같은 법이니 어찌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옛날 오위(五衛)가 단속할 때는 규율이 엄하고 밝아서 사민(士民)들이 명령을 잘 수행하였었는데 그뒤로 점차 헤이해져 왔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이 있을 뿐이다. 지금 주금 때문에 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군제(軍制)와 다르고 또 적법(籍法)을 어기는 것이다. 통에 통수가 없다면 누가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동계(洞契)의 존위(尊位)에게 금지를 관장하게 한다는 주장과 묘당이 송옥(訟獄)을 번갈아 가며 행한다는 일은 전혀 일의 모양에 맞지 않는다. 아, 타사(他司)의 이예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식양 역고(食楊役高)의 일을 한단 말인가. 사람 집에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대도 술 빛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은 일에도 큰 일을 빙자하여 술을 빛는다면 어느 관사(官司)로 하여금 금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서생(書生)이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또 율(律)의 경중(輕重)에 이르러서는 그대의 의견이 매우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백성에게 장형(杖刑)을 가하는데도 따르지 않고 사대부(士大夫)에게 금고(禁錮)와 찬축(竄逐)을 가하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어떤 율을 적용해야만 위엄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비록 상고시대 순박한 때에서 멀리 찾아보더라도 천중(千鍾)과 백고(百觚)의 많은 술이 있고 역사에서는 요(堯)·순(舜)과 주공(周公)도 없애지 않았다고 칭하고 있으며 중니(仲尼)께서도 일정한 양을 정해 놓고 마시지 않았다. 대우(大禹)는 홍수를 다스리고 맹수를 내쫓는 큰 업적을 달성했는데 술을 멀리하기만 하였을 뿐 금지시킨 일이 있지 않다. 이것은 술이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곡식을 뿌리지 않아야만 술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니, 그렇게 한다면 옛날 백성들에게 곡식을 먹게 하고 영원히 도움을 받게 하였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오직 술맛을 알지 못하고 맛좋은 술을 경계한다는 가르침을 대강 들었으나, 일에 있어서는 그 분수를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으

說，廟堂替行訟獄之事，萬萬不成體段。唉哉！他司吏隸，又何辜，爲此食楊役高之役乎？至於人家大事，爾亦許釀。然則小事之混釀，又當令何司禁察乎？惜乎！書生之不職時務也。又若用律輕重，爾請亦有太不然者。於民而杖之刑之而不從，於士夫而禁錮竄逐而不率，則更施何許之律然後，得以立威而行令耶？雖遠求諸上古淳厯之時，千鍾百觚，史稱堯、舜、周公不徹，而仲尼無量。且以大禹治洪水驅猛獸之巍勳蕩烈，特疏而不之禁焉。蓋酒出於穀，穀不播，則酒可禁，烏在乎烝民乃粒，萬世永賴也？予惟不閑麴味，粗聞惡旨之戒，而事不可不先看分數，故曰決知其設禁，而酒猶昔也。”仍命以此批答，令京兆布示坊曲，若有必可禁之策，而批旨中有未及照燭者，朝官則上疏，士庶言于判堂。

	<p>므로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술은 예전과 같을 것임을 잘 안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이 비답을 경조(京兆)로 하여금 방방곡곡에 게시하게 하고 만약 반드시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비답 중에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있으면 조관(朝官)은 상소하고 사서인(士庶人)은 판당(判堂)에게 말하도록 명하였다.</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9월 13 일(기유) 1번째기사 광릉 행차에 동행한 안춘군 이용과 서청군 이성에게 음식을 하사 하다</p>	<p>안춘군(安春君) 이용(李彤)과 서청군(西淸君) 이성(李暉)에게 음식물을 하사하였는데, 이 두 사람도 선조(先朝)가 광릉에 행차할 적에 수행했었던 사람들로써 이번에도 대가를 수행했기 때문이었다.</p>	<p>○己酉/賜安春君彤、西淸君暉食物。 兩人亦先朝幸光陵時陪從，而今又隨駕也。</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9월 15 일(신해) 9번째기사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70세 이 상인 자에게 쌀을 하 사하게 하다</p>	<p>양주 목사(楊州牧使)에게 명하여 본주의 부로(父老) 중 나이가 70 이상인 자에게 차등을 두어 쌀을 하사하게 하였다.</p>	<p>○命楊州牧使賜本州父老年七十以上人，米有差。</p>

<p>정조 35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9월 19 일(을묘) 4번째기사 관윤 김문순이 금주법 을 청하나 윤택하지 않다</p>	<p>관윤 김문순(金文淳)이 후주(酎酒)에 대한 금지령을 다시 내릴 것을 청하였다. 관중주부사 박종악(朴宗岳)이 아뢰기를, “곡식의 소비는 술을 빚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금주령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술이 곡식을 낭비한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아주 금지한다는 것은 시 행될 수 없는 일이므로 하우씨(夏禹氏)도 의적(儀狄)을 멀리하기만 하고 술을 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왕조(先王朝) 때 권극(權極)의 상소로 인하여 일률 (一律)을 적용해 본 적이 있었으나 그때에도 술은 그대로 있었다. 그후 다른 일로 인하여 권극을 나국(拿鞠)하였으니 선왕이 뜻하신 바를 알 수 있는 것이 다. 크게 술을 빚는 것과 가정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이미 관윤으로 하여금 금 단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유사(有司)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조 정에서 별도로 금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 하였다.</p>	<p>○判尹金文淳，請申酎酒禁。判中樞 府事朴宗岳曰：“糜穀莫如釀酒，酒禁 恐不可已。”上曰：“酒爲糜穀，予豈 不知？永禁，係是行不得之事。夏禹 氏只疏儀狄而不之禁焉。先王朝，囚 權極疏，至用一律，伊時酒猶自在。 後因他事，拿鞠權極，聖意所在，可以 仰揣。至於大釀與家家賣酒，已使判 尹禁斷。此則有司之臣，足可爲之， 不必自朝家，別設禁令矣。”</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0월 16 일(신사) 3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대용 이 진휼곡 10만 석을 요구하니 허락하다</p>	<p>경상도 관찰사 정대용(鄭大容)이 아뢰기를, “일찍이 전에 대규모로 진휼할 때는 진휼곡이 금방 수십만 석에 달했고 근년 으로 말하더라도 무술년에는 청곡(請穀)이 14만 6천여 석이었고 신축년에도 청곡이 13만 1천여 석이었습니다. 본도는 사진(私賑)·비황(備荒)·첩가(帖價)를 모두 합해야 원 수량이 2만여 석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의 반에 해당되는 수</p>	<p>○慶尙道觀察使鄭大容啓言：“曾前大 賑時，賑穀輒不下數十萬石。且以近 年言之，戊戌請穀爲十四萬六千餘石， 辛丑請穀爲十三萬一千餘石。本道私 賑、備荒帖價等穀，元數不過爲二萬餘 石，半分之數，又多在於災邑，計除停 減，餘者無幾，而至於備局軍作牟租，</p>

	<p>효는 또 대부분 재해가 든 고을에 몰려 있어 기한을 물려주거나 감해준 양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흉년이 들면 비국의 군대용 보리며 벼를 청곡한 예가 많았지만 지금은 쌓여 있는 것이 1만 자루 미만이어서 형편상 병자년 전례대로 상진곡(常賑穀)을 당겨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세 종류의 진휼곡과 비국의 군대용 보리와 벼, 상평창·진휼청의 쌀과 콩 각 1만 석, 합계 10만 석을 특별히 더 떼어주게 한다면 분배할 수가 있겠습니다.”</p> <p>하니, 허락하였다.</p>	<p>從前災歲，雖多請得之例，目今餘儲未滿萬包，勢將依丙子已例，拖犯於常賑穀。若於三賑各穀，備局軍作牟租，常賑米大豆各一萬石，合十萬石，特令加劃，則可以分排。”許之。</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1월 4일(기해) 1번째기사 6일 육상궁에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겠다고 명하다</p>	<p>전교하였다. “이달 6일이면 해마다 친히 술잔을 올렸었다. 그것은 선왕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찌 날씨가 춥다 하여 예를 빠뜨릴 수 있겠는가.”</p> <p>하고, 이어 6일에 육상궁(毓祥宮)에 친히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겠다고 명하였다.</p>	<p>○己亥/教曰：“每歲再明，親行酌獻，卽以先王之心爲心，豈可以日寒曠禮乎？”仍命初六日親行酌獻禮於毓祥宮。</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1월 22일(정사) 8번째기사 감서에서 받던 요미를 사과 네 자리, 사정 한 자리, 사맹 한 자리로</p>	<p>내각이 아뢰기를, “감서(監書)는 바로 본 내각에 소속된 벼슬아치입니다. 그런데도 받는 것이 녹(藜)도 아니고 요(料)도 아니니 일의 체모가 심히 어땡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여 종전에 받아오던 요미(料米)를 사과(司果) 네 자리, 사정(司正) 한 자리, 사맹(司猛) 한 자리로 바꿔 만들면 경비에 있어서 더 축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녹봉 책정 때 그 양을 조절하여 녹을 붙여 주는 것이 온당하겠으니</p>	<p>○內閣啓言：“監書乃是本閣屬官，而所受非祿非料，事面極涉如何。自今爲始，以從前所受料米，移作司果四窠、司正一窠、司猛一窠，則在經費無損，而升降付祿於祿都目，實爲穩當，請分付戶兵曹。”允之。</p>



<p>바꾸고 녹봉의 양을 조절하여 주도록 건의 하다</p>	<p>호조와 병조에 분부하소서.”</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2월 1 일(을축) 1번째기사 기근이 든 제주에 진휼미를 보내고, 각종 공물을 정지 건감시키고 환자의 기한을 물려주다</p>	<p>제주에 기근이 들어 호남의 곡식 1만 석을 운송해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 그리고 본부에서 올리는 삭찬(朔饌)과 방물을 보릿가을 때까지 정지시키고 경사(京司)가 납부하는 각종 노공(奴貢)의 당해년 몫도 함께 건감했으며 묵은 환자는 기한을 물리고 새 환자는 수효를 나누어 기한을 물렸다.</p>	<p>○乙丑朔/濟州饑，運，湖南穀一萬石補賑資。本府所進朔饌方物，限麥秋停免，京司所納及各樣奴貢當年條，並蠲減，舊還停退，新還分數停退。</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2월 6 일(경오) 3번째기사 제향 때 내시들의 간섭을 엄히 단속케 하다</p>	<p>전교하였다. “각궁의 내시는 불과해야 수직하는 일과 문을 지키는 일을 할 뿐이다. 제향 때는 이것을 주관하는 이로 헌관(獻官)이 있고 전사관(典祀官)이 있어서 저들이 감히 간섭할 바 아닌 것이고 정결 여부는 적간(摘奸) 때 자연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근래 각궁의 제향 때 내시들이 제물과 저주지(楮注紙)·폐백(幣帛) 등을 저들 멋대로 점검 퇴각하는 폐단이 끝이 없다고 한다. 너무 놀랍고 통탄스런 일이다. 이 뒤로는 내시들이 제물·폐백·종이 등 제사에 관계되는 일을 만일 혹시라도 종전과 같이 간섭을 하면 해당 내시를 귀양보낼 것이다. 이 뜻을 내시부(內侍府)에 엄히 분부하여 단속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수복들로 말하더라도 더더욱 어떻게 감히 막중한 일에 혀를 놀릴 것인가. 역시 각별히 엄중 단속하고 이 전교를 태상의 등록에 등재할 것이며 또 각궁의 수직 내시와 내시부로 하여금 베껴서 벽에 붙여두게 하라.”</p>	<p>○敎曰：“各宮內侍，不過守直守門而已。若其祭享所管，有獻官焉，有典祀官焉，非渠輩所敢干涉，精潔與否，自當入於摘奸之時矣。近來各宮祭享時，內侍輩以祭物及楮注紙幣帛等品，操縱點退之弊，罔有紀極云，萬萬駭痛。此後則內侍輩凡係祭物、幣帛、紙地等事，若或如前干涉，則該內侍當定配。以此意嚴飭，分付於內侍府。雖以守僕輩言之，尤何敢容喙於莫重之事乎？亦爲各別嚴飭，以此傳敎，載之太常謄錄，亦令各宮守直內侍及內侍</p>

		府, 謄書付壁。”
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2월 10 일(갑술) 3번째기사 태복시가 올해 목장에 서 기르는 말의 수를 올리다	태복시(太僕寺)가, 올해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말의 숫자를 올렸다. 각도 목 장의 암말과 숫말 총수가 8천 6백 18필이었다.	○太僕寺進今年牧場馬畜之數, 諸道牧 場雌雄馬摠八千六百十八匹。
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2월 21 일(을유) 1번째기사 황해·평안도에 지급한 군량미 1천 5백석을 총융청에 떼 주어 수 원부가 납부할 것을 대신케 하다	황해도와 평안도에 더 지급했던 군량미인 좁쌀 1천 5백 석을 총융청에 떼 주 어 수원부가 납부할 쌀을 대신하게 하였다.	○乙酉/劃兩西添餉小米一千五百石于 摠戎廳, 以爲水原府所納收米之代
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 (乾隆) 57년) 12월 24 일(무자) 2번째기사 각도와 개성·강화의 대장에 올라 있는 배 와 소금가마·어살 등	각도와 개성·강화의 대장에 올라 있는 배와 소금가마와 어살 등의 세(稅)를 조정하였다. 【충청도는 대장에 오른 배가 1천 3백 58척인데 고장난 배를 제 외하고 세가 7백 29냥이고, 그물터는 2백 76개소로 세금이 6백 1냥이고, 온 돌(溫垓)—온돌은 바닷가의 고기를 잡는 곳이다.—의 세는 37냥이고, 그물[綱 子] 1백 43개 중에서 13개는 오래되어 못 쓰게 되었고 남은 1백 30개에 세	○釐正諸道兩都案付, 船隻及鹽盆、漁 箭等稅。【忠淸道案付船一千三百五 十八, 除有頃, 所稅七百二十九兩零。 網基二百七十六, 所稅六百一兩零。 溫垓〈溫垓, 海邊捕魚所也。〉稅三 十七兩零, 網子一百四十三機內, 十三 機陳廢, 在一百三十機, 稅八十六兩

의 세금을 조정하다

가 86냥이고, 청어(淸魚) 어살 32개소에 세가 1천 1백 47냥이고, 민어(民魚) 어장 한 곳에 세가 6냥이고, 방구렴(防口簾) 12개소에 5개소는 오래되어 못 쓰고 남은 7개소에 세가 13냥이니, 도합해서 세로 거두는 돈이 8천 2백 57냥이다. ○평안도는 중화(中和) 등 13고을의 배는 바람에 부서진 것과 해가 오래되어 썩고 남은 것이 67척이고 새로 찾아 대장에 올린 배가 24척이며, 순안(順安) 등 10개 고을의 소금가마는 오래되어 못 쓰게 된 것이 38좌(坐)이고 신설한 곳이 3좌이며, 어망(魚網)은 오래되어 못쓰는 것이 6부(浮)이고 새로 만든 것이 1부이며, 어살은 오래되어 못 쓰는 것이 2개소이고, 새우 어살은 오래되어 못 쓰는 곳이 3개소이다. ○함경도는 바람에 부서진 배가 42척이며 썩고 남은 배가 75척이며 세를 낮추어 준 배가 20척이고, 파손된 소금구이 쇠가마가 40좌(坐)이고 폐기된 소금구이 토기가마가 46좌이며, 방렴(防簾)이 43좌이고, 후릿그물이 18좌이고, 가는 그물[細綱]이 6좌이고, 굴을 따는 막[石花幕]이 27좌 등으로 이에서 감해준 세가 1천 4백 54냥이고, 새로 만들어 더 찾아진 배가 1백 1척이고 세를 올린 배가 66척이며, 소금구이 쇠가마가 26좌이고 소금구이 토기가마가 45좌이며, 방렴 18좌 중에서 줄어든 곳이 1백 51좌이고 더 나타난 곳이 1백 13좌이다. 이전의 총 숫자와 비교하면 배는 38척이 줄고 세는 1백 4냥 7전(錢)이 준 것이며, 소금가마와 어살의 오래되어 못 쓰고 더 나타난 것들을 일체 실지 대로 조사하여 대장에 올린 세금은 총 7천 7백 47냥인데 이번에 조사해 바룬 것에는 배는 줄었으나 어살과 가마는 늘었다. 그러므로 통틀어 상쇄하면 부족분이 78냥이다. 내년 봄 고기잡이 이익으로 생산이 늘 때를 기다렸다 조사해서 숫자를 채우도록 한다. ○전라도 각고을과 진영은 부서진 배가 3백 41척이며 세를 낮추어 준 배가 97척이고, 오래되어 못 쓰게 된 소금가마가 17좌이고, 어살이 46개소이고, 어조(漁條)가 1개소이고, 파손된 어망이 1백 7개이고, 어렴(漁簾)이 2건(件)이고, 세를 낮추어 준 소금가마가 37좌이고, 어살이 30개소이고, 어조

零。 青魚箭三十二所，稅一千一百四十兩。 民魚場一所，稅六兩。 防口簾十二所內，五所陳廢，在七所，稅十三兩。 都合稅錢八千二百五十七兩零。 ○平安道中和等十三邑船隻，風破及年久傷朽爲六十七隻，加現爲二十四隻。 順安等十邑鹽釜，陳廢爲三十八坐，新設爲三坐。 漁網陳廢六浮，新設一浮。 蝦箭陳廢二所，魚箭陳廢三所。 ○咸鏡道，風破船四十二隻，朽傷船七十五隻，降稅船二十隻。 破傷鐵鹽盆四十坐，廢棄土鹽盆四十六坐。 防簾四十三坐，揮羅十八坐，細綱六坐。 石花幕二十七坐等，欠減稅錢一千四百五十四兩，新造加現船一百一隻，陞稅船六十六隻。 鐵鹽盆二十六坐，土鹽盆四十五坐。 防簾十八坐內欠縮一百五十一坐，加現一百十三坐。 比較前摠，船隻所減爲三十八隻，稅錢所減爲一百四兩七錢，而鹽盆、魚箭之陳廢、加現者，一體查實，案付稅摠爲七千七百四十七兩，而今此查正者，有減於船隻，而加於箭盆，故通濼充補，則其爲不足爲七十八兩，待明春魚利之發產，搜括充數。 ○全羅道各邑鎮，破碎船

가 2개소이고 미역밭이 1개소이고, 김밭이 1개소이고, 청태밭[苔田]이 1개소 등으로 이에서 줄어든 세가 1천 5백 17냥 5전이고, 새로 조사된 것으로는 배가 1백 69척이고, 소금가마가 16좌이고, 어살이 43개소이고, 어조가 1개소이고, 어장[漁基]이 1개소이고, 어망이 51건이고, 어렴이 2건이고, 세를 올린 배가 4백 51척이고, 소금가마가 83좌이고, 어살이 25개소이고, 어망이 3건 등 더 나타난 세가 1천 4백 58냥 6전이다. ○경상도는 대장에 올라 세를 내는 배의 원래 총 숫자가 6천 1백 63척으로 그 중 새 것과 낡은 것에서 축난 것이 1천 5백 42척이고 더 나타난 것이 6백 33척이며, 세가 면제된 배 2백 91척 내에서 새 것과 낡은 것에서 축난 것이 17척이고 더 나타난 것이 1척이며, 소금가마 8백 5좌 내에서 새 것과 낡은 것에서 축난 것이 1백 47좌이고 더 나타난 것이 14좌이며, 미역밭은 3백 17개소 중에서 오래된 것에서 축난 곳이 12개소이고, 어조는 2천 3백 57개소 내에서 새 것과 낡은 것에서 축난 것이 1백 6개소이고 더 나타난 곳이 85개소이며, 방렴은 8백 95개소 내에서 새 것과 낡은 것에서 축난 것이 1백 17개소이고 더 나타난 것이 28개소이며, 어장은 23개소이다. 신해년 실지 총 숫자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은, 세를 내는 배가 3백 76척이고 세를 면제해 준 배가 7척이고 소금가마가 4좌이고 방렴이 28개소이며, 미역밭은 총 숫자에 준하고, 어조는 10개소가 늘었다. ○황해도는 대장에 오른 각고을과 진영의 원래 배는 1천 1백 75척으로 그 중 23척은 다른 고을로 옮겨 갔고 21척은 썩어 손상되었고 79척은 풍랑에 부서졌고, 현재는 1천 52척에 22척이 다른 고을에서 옮겨 오고 69척이 더 나타나 도합 1천 2백 13척으로 세가 2천 5백 99냥이고, 소금가마는 3백 12좌 내에서 7좌가 오래되어 못 쓰며 더 나타난 것이 도합 3백 11좌로 세가 1천 8백 44냥이고, 여러 어살은 3백 7개 내에서 22개소가 오래되어 못 쓰며 더 나타난 것이 도합 28좌이고, 후릿그물은 19좌이고 가는 그물이 6좌이고, 굴 따는 막이 27좌 등으로 더 나타난 세가 1천 2백 11냥이다 ○개성부는 본

三百四十一隻，降稅船九十七隻。 陳廢鹽盆十七坐，漁箭四十六所，漁條一所，破傷漁網一百七件，漁簾二件。 降稅鹽盆三十七坐，漁箭三十所，漁條二所，藿田一所，海衣田一所，苔田一所等， 欠減稅錢爲一千五百十七兩五錢。 新查船一百六十九隻，鹽盆十六坐，漁箭四十三所，漁條一所，漁基一所，漁網五十一件，漁簾二件。 陸稅船四百五十一隻，鹽盆八十三坐，漁箭二十五所，漁網三百件等，加現稅錢爲一千四百五十八兩六錢。 ○慶尙道案付稅船，元摠六千一百六十三隻內，新舊欠一千五百四十二隻，加現六百三十三隻。 免稅船二百九十一隻內，新舊欠十七隻，加現一隻。 鹽盆八百五坐內，新舊欠一百四十七坐，加現十四坐。 藿田三百十七所內，舊欠十二所，漁條二千三百五十七所內，新舊欠一百六所，加現八十五所。 防簾八百九十五所內，新舊欠一百十七所，加現二十八所，漁場二十三所。 比辛亥所實摠，不足稅船爲三百七十六隻，免稅船七隻。 鹽盆四坐，防簾二十八所，藿田準摠，漁條加十所。 ○黃海道案付，

	<p>개성부의 임자년 대장에 오른 배가 1백 25척으로 그 중 해가 오래되어 썩고 손상된 것이 1척이고 폭풍에 휩쓸려간 배가 1척이고 부서진 배가 23척이며, 찾아낸 배가 2척이다.】</p>	<p>各邑鎮元船一千一百七十五隻內，二十三隻他邑移去，二十一隻朽傷，七十九隻致敗，在一千五十二隻，二十二隻他邑移來，六十九隻加現，合一千二百十三隻，稅二千五百九十九兩零。鹽盆三百十二坐內，七坐陳廢，加現合三百一十一坐，稅一千八百四十四兩。雜漁箭三百七所內，二十二所陳廢，加現合二十坐，揮羅十九坐，細網六坐，石花幕二十七坐等，加現稅錢一千二百一十一兩零。○開城府本府壬子案付船一百二十五隻中，年久朽傷一隻，飄風如一隻，破碎二十三隻，查得二隻。】</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2월 26일(경인) 1번째기사 비국 당상 서유린이 안면도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를 소금 굽는 일에 쓰도록 청하니 허락하다</p>	<p>비국 당상 서유린이 아뢰기를, “안면도(安眠島)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들을 신임 수사(水使)에게 넘겨 주어 지금 팔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 바람에 쓰러져 장마를 두 번 지낸 것들은 단지 소금 굽는 데나 알맞고 기타 가지와 잎은 모두 다 버리게 되어 아깝다고 합니다. 관에서 가마를 설치하고 비장과 군교를 따로 정하여 그들의 입회하에 일제히 소금을 굽고 일제히 철거하게 하면 송정(松政)에 있어서도 잘못될 것이 없고 흉년에 바닷가 고을의 백성들은 소금을 구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충청도 수사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착실히 거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p>	<p>○庚寅/備局堂上徐有隣啓言：“安眠島風落松，付之新水使，今方發賣，而舊風落之兩經潦雨者，只合煮鹽，其他枝葉，空棄可惜云。自官設釜，別定裨校，眼同昭祭，一齊煮取，一齊撤去，則在松政無悚虞之事，歉歲沿邑之民，可以激鹽資生。以此付湖西水關，使之着意舉行。”從之。教曰：“以有用之物，豈可作無用？況此歉歲，亦必有惠及小民之益，可謂一舉兩便。然此</p>

	<p>“쓸모 있는 물건을 쓸모 없게 버려서야 될 것인가. 더구나 이런 흉년에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기도 할 것이니 일거 양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뒤로는 집건 자리에서 여쭙어 윤행이 내려진 특별 전교에 의해 공문으로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일을 전례로 하여 원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後，除非筵稟允下之特教行會，切勿援例。”</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2월 27일(신묘) 1번째기사      명년 설 아침에 진전(眞殿)에 술잔을 올리고 종묘에 봄철 참배례를 행하도록 하다</p>	<p>전교하였다.</p> <p>“명년 계축년은 바로 선대왕이 탄생하신 갑술년 이후 꼭 1백년이 되는 해이라서 깊은 사모의 정이 더욱 새로워짐을 느끼겠다. 설날 아침에는 진전(眞殿)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고 또 종묘에 나아가 봄철 참배의 예를 행할 것이니 예조는 그리 알도록 하라.”</p>	<p>○辛卯/教曰：“明年癸丑，卽先大王誕降甲戌後恰爲百年之歲也，孺慕彌新。元朝祇詣眞殿，行酌獻禮，又詣太廟，行春展謁，令禮曹知悉。”</p>
<p>정조 36권, 16년 (1792 임자 / 청 건륭(乾隆) 57년) 12월 30일(갑오)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풍년을 비는 제사에 대한 서계를 행하다</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풍년을 비는 큰 제사에 대한 서계(誓戒)를 행하였다.</p>	<p>○甲午/御仁政殿，行祈穀大祭誓戒。</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1월 1일(을미) 4번째기사</p>	<p>명하여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과 서계군(西溪君) 이습(李燭)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넉넉하게 주도록 하였다. 인점은 선왕의 의빈(儀賓) 중 나이가 많아서이고, 습은 종친 중에서 가장 노인으로 직첩을 받은 지 60년이 되어서</p>	<p>○命昌城尉黃仁點、西溪君燭，優給衣資食物。以仁點，先朝儀賓中高年也，燭，宗親中最老，而付職過回甲也。又命耆社堂上夫妻偕老人，并加給米</p>

<p>창성위 황인점과 서계군 이습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리다</p>	<p>였다. 또 명하여 기사 당상(耆社堂上)으로 부부가 해로운 사람에게는 모두 쌀과 고기를 지급해 주어, 이 해에 늙은이를 높이는 뜻을 보이도록 하였다.</p>	<p>肉, 以示是歲尊年之意。</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1월 6일 (경자) 1번째기사 사직단에 나가 제사에 쓰일 희생과 그릇을 살피고 재계하며 목다</p>	<p>사직단에 나아가 제사에 쓰일 희생과 그릇들을 살피고 재계하면서 목었다.</p>	<p>○庚子/詣社稷, 省牲器齋宿。</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1월 1일 (을미) 3번째기사 백성 구휼을 위해 내탕고의 돈 4천 민과 호초 5백 근을 삼남에 내려 보내다</p>	<p>전교하기를, “설날 묘궁(廟宮)에 나아가 공경히 예를 올렸으니 이 해 이 배례(拜禮)를 올린 날에는 더욱 선대왕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저 세 지방의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능히 구렁에 쓰러져 죽어가는 것이나 면했을까 하는 생각에 밤낮으로 염려하는 것이 어느 때인들 간절하지 않았겠는가마는, 이날의 이 마음은 이 해에 이런 배례를 드리고 난 나머지라서 더욱 간절하구나. 연(輦)을 홍화문에 멈추고 호장들을 불러서 보았던 것은, 하나는 바로 그 문이 선왕이 사민(四民)에게 쌀을 내려주었던 문이어서였고, 하나는 진휼청에 내탕고의 물자를 내려서 규정에 따라 두루 배분하는 일 이외에 특별히 지급해주는 뜻을 그들로 하여금 먼저 돌아가 장리에게 반포하게 하고자 함에서였다. 내탕고의 보민(保民) 조항의 돈 4천 민(緡)과 호초(胡椒) 5백 근을 삼남에 나누어 내려보내서 각 해당 도신들로 하여금 교지 대로 거행하게 하라.”</p>	<p>○教曰：“元朝祇謁廟宮。 是年是拜之日， 尤當以先王之心， 爲心。 念彼三方待哺之民， 其能獲免溝壑否？ 宵旰念念， 何時不切， 而是日是心， 益切於是年是拜之餘。 駐輦弘化之門， 召見隨計之吏， 一則以是門卽先朝賜米四民之門也， 一則以內下賑廳應式排巡外別給之意， 俾先歸布長吏也。 內帑保民條錢四千緡， 胡椒五百斤， 分下三南， 令各該道臣， 依筵教舉行。” 【備邊司分俵錢、椒。 嶺南錢一千六百緡， 胡椒三百斤； 湖南、湖西各錢一千二百緡， 胡椒一百斤， 俾於春晷舒長時， 量定別送賑賑。】</p>

	하였다. 【비변사가 돈과 호초를 묶지어 나누니, 영남은 돈 1천 6백 민, 호초 3백 근이고, 호남과 호서는 각기 돈 1천 2백 민, 호초 1백 근이었다. 이것을 봄철 해가 길 때에 양을 정해 별도로 순방해서 지급해 구제하게 하였다.】	
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월 1일 (을미) 5번째기사 각도의 1백 세 이상 노인 56명에게 가자하 다	여러 도의 1백 세 이상 노인에게 가자하는 일을 하비(下批)하니 모두 56명이 었다.	○諸道百歲以上老人加資下批, 凡五十六人。
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월 6일 (경자) 1번째기사 사직단에 나가 제사에 쓰일 희생과 그릇을 살피고 재계하며 묵다	사직단에 나아가 제사에 쓰일 희생과 그릇들을 살피고 재계하면서 묵었다.	○庚子/詣社稷, 省牲器齋宿。
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2월 20 일(계미) 3번째기사 호조 판서 심이지가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연전에 강삼(江蔘)5506) 의 문제를 변통할 때에 미삼(尾蔘) 20근을 임시 왜 역(倭譯)으로부터 넘겨 받으면서 돈중[錢] 당 1냥 1전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까지를 합하면 4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미삼이 예	○戶曹判書沈頤之啓言: “年前江蔘變 通之時, 尾蔘二十斤, 姑爲移授倭譯, 而每錢添價一兩一錢, 餘合原價, 爲四 兩矣. 近來尾蔘, 比昔稍饒, 只以原 價貿用, 少無不足之慮. 當此財用苟



<p>미삼을 공물로 만들 것을 건의하니 그대로 시행하다</p>	<p>전에 비해 조금 넉넉한 편이니 원가로만 사서 쓰더라도 부족할 염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용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3천여 금(金)을 무단히 없어 주는 것은 더욱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또 듣건대 사람들의 생각도 만일 미삼을 영원히 공물로 만들어 준다면 값을 얹어주지 않아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공물로 만들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매년 천포(千包)의 쌀을 떼어 보관하는 일도 관계가 적지 않으니, 이대로 다시 규정을 정해서 공물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따랐다.</p>	<p>簡之時，三千餘金，無端添給，太無意義。且聞物情，若以尾蓼，永爲作貢，則雖無添價，可以擔當云。物情既願作貢，每年千包米之除留，所係不細。請以此更爲定式作貢。” 上詢于大臣，從之。</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3월 15일(무신) 2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의 건의에 따라 노인과 아이들의 진흙을 더욱 힘쓰도록 하다</p>	<p>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내버린 아이들을 찾아 돌보아줄 일로 치계하니, 전교하기를, “봄에 해는 길고 먹을 것은 없는 상황이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다. 건장한 자들이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어가는 것도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이겠는가. 다시 해당 진흙청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에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江原道觀察使尹師國，以遺棄兒搜訪事，馳啓，教曰：“春煦日長，艱食之狀，如在目中。壯者之墳壑，尙未能晷刻弛心，況老弱乎？更令該廳，嚴飭京外。”</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4월 7일 (기사) 1번째기사 태묘에서 하향의 희생 제기를 살피다. 비가</p>	<p>태묘에 나가 하향(夏享)의 희생과 제기들을 살피고 망묘루(望廟樓)에서 재숙하였다. 이때 비가 많이 내리자 대신과 약원의 여러 신료들이 섭행(攝行)의 의식을 청하려고 뵈기를 요구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己巳/詣太廟，省夏享牲器，齋宿于望廟樓。時，雨甚，大臣、藥院諸臣，爲請攝儀，求對，不許。</p>

<p>많이 오자 신료들이 섭행의 의식을 청했으 나 불허하다</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5월 17 일(무신) 1번째기사 사관과 선전관을 동· 서·남쪽 교외에 보내 농사를 살피게 하다</p>	<p>사관과 선전관을 동쪽 교외와 서쪽 교외와 남쪽 교외에 나누어 보내서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였다.</p>	<p>○戊申/分遣史官、宣傳官于東西南郊， 看審農形。</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5월 19 일(경술) 2번째기사 전 삼도 수군 통제사 이윤경이 진휼을 감독 한 비장 장교, 곡식을 낸 사람의 가자를 청 하나, 엄히 조치하게 하다</p>	<p>전 삼도 수군 통제사 이윤경이 진휼을 마친 전후 내용을 치계하고 또 진휼을 감독한 비장과 장교 및 재물을 내놓은 부유한 백성들에게 포상의 은전을 내 리기를 청하였는데, 병조가 아뢰기를, “진휼하는 정사는 도신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수신(帥臣)이 스스로 준비하 거나 부유한 백성이 자원 납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신이 열거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 원래 수신이 보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통 제사 이윤경이 진휼한 일을 가지고 상을 청한 일은 평상시의 법규와 어긋난 것이거니와 그가 아뢴 말 가운데도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아 예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비장과 장교의 포상에만 뜻이 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며 구절 구절이 외람스러우니,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조치하고, 부유한 백성으로 꼭 상문(上聞)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도신에게 맡겨 다시 사실을 조사해서 치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前三道水軍統制使李潤慶，以畢賑形 止，馳啓，且請監賑裨校及捐財富民褒 賞之典。兵曹啓言：“調賑之政，道臣 主之。故帥臣之自備，富民之願納， 必待道臣之論列，元無帥臣之登聞，而 今此前統制使李潤慶，以賑事請賞，事 異常規，其啓語首尾，初不及於民勢之 如何，意惟在於裨校之褒賞。事未前 有，節節猥越，請拿問嚴處，富民中不 可不上聞者，付之道臣，更爲查實馳 啓。”允之。</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5월 27 일(무오) 6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연해 어세의 폐단과 토산물 봉진의 폐단 시정을 청하다</p>	<p>경상도 관찰사 정대용(鄭大容)이 치계하기를, “경상우도 연해의 어세(漁稅)를 통영(統營)에 이속시킨 뒤로 농간의 폐단이 해마다 겹쳐 생겨나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여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를 논하 는 자들 중에는 혹 다시 지방 고을에 소속시키면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어세를 통영에 이속시킨 것은 단지 군사와 백성들에게만 은택을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상은 영(營)의 형편이 점 점 옛날만 못해져서 상환해야 할 허다한 빚들은 조처할 수가 없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만일 각 고을에 다시 소속시켜서 통영이 간여할 수 없게 해버린다면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이 실로 낭패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대체로 듣건대 종전에 각 고을에서 관장할 때에도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오 늘날의 통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이속된 초기에는 백성들 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는데, 금하는 법이 차츰 느슨해짐으로써 간교와 거짓이 수없이 생겨나고 새로 실시한 일이 많음으로 인해 폐단이 날로 불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통영에 이속시킨 지 20년도 채 안 되어서 처음에 그토록 편리하 고 말하던 것이 이제는 또 불편하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니, 각 고을에 환속 시켜서 오랜 햇수가 지난 뒤에는 다시 통영에 소속되기 바라는 일이 없으리 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제도를 고쳐서 효력이 없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두고 너무 심한 폐단만 제거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여깁니다.” 하고, 이어 폐단을 구제할 여러 조항들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었다. 그리 고 또 아뢰기를, “진상하는 마른 전복은 울산의 것이 잘다 하여 매년 사천(泗川)·거제(巨濟)</p>	<p>○慶尙道觀察使鄭大容馳啓言：“右沿 漁稅，移屬統營之後，奸弊歲益層生， 民情莫不怨咨。論者或謂還屬地方官 則可救其弊云，而前此漁稅之屬之統營 者，非直爲軍民之沾溉，實出於營樣之 漸不如古，而許多償債之無以區處也。 今若還屬各邑，使統營無所干與，則關 防重地，實有狼狽之慮。蓋聞從前各 邑句檢之時，責應侵徵，無異於今日之 統營，而及其移屬統營之初，民皆爲便 矣，禁網漸闊，奸僞百出，事多新創， 弊日滋蔓。統營移屬，未滿廿載，而 初言令便，今又有不便之言，還屬年久 之後，安知無更屬統營之願乎？臣意則 與其更張而蔑效，無寧仍置而去其太甚 之爲愈。”仍以揅弊諸條列以聞。 且言：“進供乾鰾，以蔚產之體小，每 貿於泗川、巨濟等地，此是濟州所產之 轉貿者也。高峻之元價，去來之雜費， 海民例爲策應。進上事體至重，雖不 敢輕議，而隨其土產封進，自是貢獻定 制。且有關東、湖南倣據之例，宜有 變通之道。”上下其啓于廟堂，命與曾 經道伯人，講確以聞。備邊司啓言：</p>
---	--	--

등지에서 사들이는데, 이는 바로 제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러 곳을 거쳐서 입수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높은 값과 거래 때에 드는 잡비를 바다 백성들이 으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상의 일은 사체가 지극히 중하므로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는 없으나, 그 지방 산물에 따라 봉진하는 것이 본시 공물을 바치는 제도이고 또 관동과 호남에 근거할 만한 전례도 있으니, 의당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계문을 묘당에 내리면서 일찍이 그 도의 도백을 지낸 사람과 확실하게 의논해서 아뢰도록 명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정유년(5543)의 경상우도 연해의 어세(漁稅)를 통영에 떼어줄 때의 거조(擧條)를 가져다 보니, 그 당시 대신과 여러 신료들이 균청 사목(均廳事目)이 지극히 엄격함을 들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가, 끝에 가서 균청의 대장에 올라 있지 않으면서 새로 설치하기에 가합한 곳이나 백성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곳들에 대하여 이 명목을 빌려 마지 못해 허락하였었습니다.

대체로 해세(海稅)를 통영에 떼어주는 것이 매년 1만 냥이고 또 장수와 사졸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도 연해의 어세를 떼어주었고 보면 조정에서 통영을 돌보아준 것은 그지없이 곡진하였는데, 균청의 사목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미 제도를 훼손시킨 데 대한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장수와 아전들의 간악한 폐단이 극히 심해져서 바닷가 백성들의 곤궁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양쪽을 다 편리하게 하는 효험은 없고 오랫동안 조정에 근심만 끼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본 고을에 환속시킨다면 여러 조목의 고질적인 폐단들을 제거하려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관찰사의 보고에서는 비록 통영의 형편이 옛날만 못한 것을 가지고 고려할 단서로 삼고 있으나, 바닷가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 시점에서는 사소한 거리낌들은 족히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생각에는

“臣等取見丁酉年右沿漁稅劃付時擧條，則其時大臣·諸臣，以均廳事目之至嚴，初則不許，末乃以均廳案付外，可合新設民力不及處，可惜廢棄者，借此名色，黽勉許之。大抵海稅之劃給統營，每年爲一萬兩，而又爲將士沾溉之資，又以右沿漁稅劃付，則朝家之軫恤統闕，曲盡無餘，而論以均廳事目，則已不無撓毀之歎矣。今者將吏之奸弊滋甚，海民之受困至此，未有兩便之效，久貽朝廷之憂。今若還付本邑，則諸條痼弊，不期去而自祛。道啓雖以營樣之不如古，爲却顧之端，而當此海民倒懸之日，些少窒礙，有不足恤。臣等謂右沿漁稅，一依均廳節目，依前還付各邑，統營則更不得管攝，方可爲十分救革之道。至於進上全鰔，係是沿邑應貢之物，進獻事體至重，道臣之以此陳聞，事涉未安。請推考。”允之。教曰：“隨其土產封進，勿拘大小，既有湖南、關東鰔弊之近例。蔚鰔事，依狀請施行，道臣勿推。”

	<p>우도 연해의 어세는 일체 균청의 절목에 의거하여 이전 대로 각 고을에 환속 시켜서 통영은 다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여야만 바야흐로 십분 구제하고 개혁하는 도리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p> <p>그리고 진상하는 전복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바닷가 고을에서 응당 바쳐야 할 물품이고 진헌하는 사체는 지극히 중한 것이니, 도신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일이 미안한 데에 관계됩니다. 추고하소서.”</p> <p>하니, 윤희하고, 전교하기를,</p> <p>“토산물을 봉진하는 데는 대소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이미 호남과 관동에서 폐단을 바로잡았던 가까운 사례가 있으니, 울산의 전복에 대한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도신은 추고하지 말라.”</p> <p>하였다.</p>	
<p>정조 37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6월 10 일(신미) 1번째기사 배에 곡식 싣는 것을 지연하여 배를 파선한 이최원을 유배보내다</p>	<p>이최원(李最源)을 밀양부에 귀양보냈다. 최원이 밀양 부사로 후조창(後漕倉)의 도차사원(都差使員)이 되었는데, 배에 곡식을 싣은 것이 때가 늦음으로 인해 안흥진(安興津) 뒤쪽 바다에서 파선되었으므로, 특명으로 그 고을에 정배한 것이다.</p>	<p>○辛未/配李最源于密陽府。 最源以密陽府使，爲後漕倉都差使員，裝載晚時，臭載於安興津後洋，特命卽其地定配。</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8월 1일 (신유) 3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와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였다.</p> <p>“단비가 콕콕 쏟아져서 거의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두루 흠족히 내렸다. 그러나 경기의 교동(喬桐)과 황해도 연안(延安)·배천(白川) 등지의 농사일에</p>	<p>○諭京畿、海西觀察使曰：“甘澍滂沱，幾乎高低遍洽，而畿邑之喬桐、海西觀之延白等處民事，極爲關心。 雖曰後時，今番之雨，果得均洽，而或有蘇醒</p>

<p>경기 관찰사와 황해도 관찰사에게 각 고을의 강우량을 보고하도록 유지하다</p>	<p>대하여는 지극히 마음에 걸린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비가 과연 골고루 흡족하여 곡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겠는가? 읍치에서 본 강우량만을 보고하지 말고 수령에게 관내를 두루 살피게 하고 겸하여 각종 곡식의 결실 상태를 덧붙여서 보고하도록 한 다음 장계로 보고하라.”</p>	<p>之效乎? 勿以邑治所見枚報, 令守宰遍審掌內, 兼附各穀之成實形止, 使之報來後狀聞。”</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8월 13일(계유) 2번째기사 남한 산성의 윤조를 약간의 풍년이 들거든 실시하도록 명하다</p>	<p>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윤조(輪操)를 내년부터는 합동 조련에 구애받지 말고 중지했다가 약간의 풍년이 들거든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수어사 이문원(李文源)의 건의를 따른 것이다.</p>	<p>○命南漢輪操, 自明年, 勿拘合操停止, 歲若稍登, 依例設行。 從守禦使李文源言也。</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8월 15일(을해) 1번째기사 선원전에서 차례를 올리다</p>	<p>선원전(璿源殿)에서 차례를 올렸다.</p>	<p>○乙亥/行茶禮于璿源殿。</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8월 22일(임오) 5번째기사 경기도 해안 고을의 쌀 1천 섬으로 교동부</p>	<p>경기도 바닷가에 있는 고을의 쌀 1천 섬을 교동(喬桐)으로 옮겨주었다. 그 섬에 흉년이 든 때문이었다.</p>	<p>○移京畿沿海邑米一千石于喬桐。 以該島饑荒也。</p>

의 백성을 구휼하다	<p>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영에서 급료로 주는 쌀이 아직도 넉넉하지 못하여 달리 융통하여 숫자를 채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혜청이 삼남에서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임시로 감해준 대가로 받은 쌀 1천 섬은 아직 귀속된 곳이 없고, 호남에 있는 호조가 사들인 쌀과 별검미(別檢米)5584 중에서 모조(耗條)를 합한 1천 섬 및 한성부에서 가져다가 쓰고 낸 모조 1천 섬은 진휼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만 진휼청은 다른 곳에서도 옮겨다 쓸 수 있는 형편이니, 이상의 것을 합한 쌀 3천 섬을 본영으로 떼어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부 항목의 본가(本價) 3천 냥은 본영에서 해마다 보내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본영에서 관할하는 둔토(屯土) 가운데 가산군(嘉山郡)의 논 17결(結) 68부(負) 9속(束)과 정주목(定州牧)의 논 2결 7부 2속은 미처 면세받지 못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면세하여 주소서</p>	<p>○壬辰/壯勇營提調鄭民始啓言：“本營支放米條，尚患不敷，不可不變通充數。惠廳三南進上藥材權減價米一千石，姑無歸屬處。湖南所在戶曹買米及別檢米中，合耗條一千石，漢城府取用耗條一千石，自賑廳請得，而賑廳事勢，亦可以從他推移。合米三千石，移劃本營，漢城府條本價三千兩，則自本營每年移送似宜。”從之。又啓言：“本營所管屯土中，嘉山郡水田十七結六十八負九束、定州牧水田二結七負二束，未及免稅。請依例免稅。”從之。</p>
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9월 16일(병오) 1번째기사 육상궁과 연호궁을 참배하고, 선희궁에 전작례를 행하다	<p>육상궁(毓祥宮)과 연호궁(延祐宮)을 참배하고 선희궁(宣禧宮)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p>	<p>○丙午/展拜于毓祥宮、延祐宮，行奠酌禮于宣禧宮。</p>
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

<p>(乾隆) 58년) 9월 25일(을묘) 1번째기사 영화당에 나아가 친시와 무예 시험을 실시하고 술과 음식을 내리다</p>	<p>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초계 문신(抄啓文臣)에게는 친시(親試)를, 가전 별초(駕前別抄)와 가후 금군(駕後禁軍)에게는 활쏘기 시험을, 무예청(武藝廳)에는 무예 시험을 실시하고, 연석(筵席)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렸다. 상이, 7언 율시 첫구를 직접 짓고는 제신들에게 연구(聯句)로 화답하게 하였다.</p>	<p>○乙卯/御映花堂， 行抄啓文臣親試， 試射駕前別抄、駕後禁軍， 武藝廳試藝。 宣酒饌于筵諸臣。 上親綴七言律起句， 命諸臣廣聯。</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0월 20일(경진) 4번째기사 종묘 추향 때 술잔을 엮질렀던 재랑 임광백을 문죄하다</p>	<p>이에 앞서 종묘 추향(秋享) 때 제례를 대행하면서 재랑(齋郎) 임광백(任光白)이 실수하여 술잔을 엮질렀다. 상이 붕심했던 사관(史官)을 통하여 이를 듣고는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다가 신문하고 죄를 논하게 하였다. 의금부가, 이에 대한 근거할 만한 법이 없다고 여쭙자, 상이 승정원에 명하여 고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의 연주(筵奏)를 찾아보고 결과를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종묘서지(宗廟署誌)》를 상고해 보니, 숙종(肅宗) 정묘년에 상이 영의정 남구만에게 물기를 ‘대왕의 신위 앞에 술잔을 드리고 나서 헌관(獻官)이 왕비 신위 앞에 이르렀을 때 촛불을 손질하는 사람이 만약 대왕 신위 앞에 드린 술잔을 엮질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구만이 아뢰기를, ‘이미 드린 술잔을 혹 엮질렀을 경우는 헌관이 다시 술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술을 다시 부어 올려야 할 것이니, 이로 미루어보면 제 10실에서 잔을 엮지르는 일이 있더라도 헌관이 그때 전(殿) 안에 있으면 다시 가서 술을 부어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초헌관(初獻官)이 전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뒤 아헌관(亞獻官)이 잔을 드릴 때 혹시 처음 드린 술잔을 엮지르거나, 아헌관(亞獻官)이 전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뒤 종헌관(終獻官)이 잔을 드릴 때 혹시 첫 번째 드린 잔이나 두 번째 드린 잔을 엮질렀을 때는 초헌관</p>	<p>○先是，太廟秋享攝儀也，齋郎任光白失措覆爵。 上因奉審史官聞之， 命義禁府拿問議罪。 義禁府以律無可據稟， 上命承政院， 考見故相臣南九萬筵奏以聞。 承政院啓：“取考《宗廟署誌》， 肅廟丁卯， 上下詢領議政南九萬曰：‘大王位獻爵後， 獻官詣王妃位， 而剪燭之人， 如覆大王位所奠之爵， 則何以爲之?’ 九萬曰：‘已奠之酌， 或致傾覆， 則獻官當更詣尊所， 斟酒以獻。’ 以此推之， 則雖第十室有覆爵事， 獻官方在殿內， 亦可更詣斟獻。 但初獻官降復位後， 亞獻官獻爵時， 或覆初獻之爵， 亞獻官降復位後， 終獻官獻爵時， 或覆初、亞獻之爵， 則初、亞獻官既已禮畢降階， 恐不可更陞進爵， 命以此定式。 先朝癸亥親行祈雨祭， 大祝李天輔讀祝， 還置故處， 袖觸爵傾酒， 濺御衣。</p>



	<p>과 아헌관이 벌써 예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올라가서 잔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렇게 예식을 정하도록 명하였습니다.</p> <p>또 선왕조 계해년에는 상이 친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대축(大祝) 이천보(李天輔)가 축문을 읽고 나서 본래 있던 자리로 되가져다 두려다가 소매에 술잔이 걸려 술이 쏟아져 어의(御衣)를 적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이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어찌할 것인가를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수복(守僕) 박진태(朴震泰)가 예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여쭙었으므로 호조에 명하여 쌀과 베를 제급(題給)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묘년 동향(冬享) 대제(大祭) 때는 제 1실의 대왕 신위 앞에 술잔을 드린 다음 왕비 신위에 드리던 술잔을 옆질렀는데 종묘령(宗廟令) 안종제(安宗悌)를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였다고 합니다”</p> <p>하였다. 이 때 이르러 의금부가 죄를 재심리하여 광백에게 탈고신 이등(奪告身二等)을 적용할 것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였다.</p>	<p>下詢諸執事，莫有對者。 守僕朴晨泰，以古例稟達，命戶曹題給米布。 己卯冬享大祭時，第一室大王位進爵後，王妃位奠獻之爵傾覆，宗廟令安宗悌，先罷後推”云。 至是，義禁府議讞，請光白奪告身二等，允之。</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11월 1일(경인) 2번째기사 예조가 왕대비 탄신일의 진하 절차를 여쭙다</p>	<p>예조가 10일의 왕대비 탄신일에 진하(陳賀)할 때 행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여쭙자, 전교하기를, “이미 자전의 전교를 받았고 또 내년 봄에 가서 다시 청해야 할 일도 있고 하니 올해의 탄신 축하는 자전의 전교에 따라 표리(表裏)를 올리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p>	<p>○禮曹以初十日王大妃殿誕日陳賀時應行節目，稟旨，教曰：“既承慈教，且有將待來春仰請之舉，今年誕賀，謹遵慈教，以進表裏磨鍊。”</p>
<p>정조 38권, 17년</p>		<p>○先是，司譯院啓言：“近來邊禁蕩然，</p>

<p>(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1월 17일(병오) 2번째기사 비변사가 의주 상인의 변경 무역에 관한 금령을 규정하여 올리다</p>	<p>이에 앞서 사역원이 아뢰기를, “근래 변경의 금령이 없다시피 되어 몰래 하는 장사치들이 득실대고 있는데, 차후 그것을 단속할 방법을 사행이 의주부에 갔을 때 의주 부윤과 상의하여 규정을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그 아뢴 말을 재가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변사가 그 절목을 올렸다. 【1. 잠상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 금·진주·초피·인삼 등은 휴대하기는 아주 쉽고 적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의주의 장사치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남모르게 물건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방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해삼을 담은 자루나 다시마를 넣은 포대 속 등 곳곳에 몰래 감추는 폐단이 있는데도 포대를 저울로 달 적에 낱알이 검색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뽑아서 검색할 적에는 검색하는 장교와 아전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리저리 둘러 맞추어 끝내기 때문에 언제나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많다. 지금부터는 저울로 달 때 포대를 무작위로 뽑아서 달지 말고 모조리 검색을 하여 빠뜨리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 또 영리한 장교를 선정하여 포대를 달 때 별도로 사찰하도록 하여 간사한 행위를 막는다. 1. 꾸러미 점검법의 의미는 본래 엄밀한 것인데도 근년 이래로 점차 해이해져서 유명 무실하게 되어 잠상의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되었다. 비단 종류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가령 한성부에서는 비단·공단의 값은 10여 냥이나 되고 팔사단(八絲緞)과 모단(冒緞)의 값은 5, 6냥이 되는데 꾸러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물건 이름만 들추어 은으로 환산한 값으로 감해 주고 몰래 정량을 초과한 수량은 이리저리 둘러 맞추어 넘겨버린다. 그리고 검색할 적에는 명주와 비단의 등급과 품질은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필 수의 많고 적음만을 따지기 때문에 기준 꾸러미 이외에 더 넣은 수량은 적발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낱알이 대조하고 살펴서 전과 같</p>	<p>潛商狼藉。嗣後申禁之方，請令使行到灣府後，與灣尹相議，成出節目上送。”上可其奏。至是，備邊司以節目進。【一，潛商物種中金、珠、貂、蔘，帶去至易，摘奸至，故灣商輩百般設巧，暗地潛越，不一其端。甚至有海蔘袋、海帶包中處處潛藏之弊，而稱包時，不爲一一搜檢，及其抽牲之際，搜檢將吏符同彌縫，每多弄奸之弊。自今以後，稱包雜物包，勿爲抽牲，盡數搜檢，俾無遺漏之患。又定伶俐將校，別爲伺察於稱包時，以防奸弊。一，比包法意，自來嚴密，而近年以來，漸次懈弛，有名無實，故潛商之弊，去而益滋。雖以緞屬言之，假令漢府緞貢緞之價爲十餘兩，八絲緞冒緞之價爲五六兩，而比包中搜其名色，減其折銀，彌縫其潛越之數，而搜檢時不分紬緞之等品，只計疋數之多少，故包外加數，無以摘發。從今以後，一一照察，俾無如前混雜之弊，而回卜搜檢，亦勿抽牲，盡數按閱，雖皮箱之屬，無一遺漏，以防奸竇。一，銀卜雜卜，有入北者，有落柵者，而落柵者，則初不入於比包冊中，非但疎漏忒甚，亦一潛商</p>
---	---	---

은 혼잡스러운 폐단이 없도록 하며 돌아오는 짐을 검색할 적에도 무작위로 골라서 하지 말고 몽땅 검열을 실시한다. 설사 가족을 담은 상자 따위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게 하여 간사한 농간을 부리는 틈을 막는다. 1. 은 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짐을 북경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책문에다 떨구어 놓는 것도 있는데, 책문에 떨구어 놓는 것은 애초 꾸러미를 점검 장부에 들어 있지도 않아 너무 허술한 정도뿐만이 아니므로 역시 잠상이 농간을 부리는 하나의 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세우지 않으면 안되므로 지금부터는 책문에 떨구어 놓은 짐의 수효를 책문에 들이고 난 다음 곧장 장부를 만들어 사신에게 바치고 돌아와서 강을 건넌 뒤에도 한결같이 북경으로 들어간 화물의 예대로 점검하여 간사한 농간의 폐단을 막는다. 1. 무역에 관한 규정은 비할 데 없이 엄격한데도 근래에 책문의 물품 중에 모자란 종류만 해도 명색 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다. 이른바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찾지 못한 자체가 벌써 법에 어긋난 일인데 더구나 이러저리 둘러맞추고 엉터리로 농간을 부리는 잔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일체 금지하되 만일 이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상을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라. 1. 잠상들의 물품을 포교들이 압수하여 바치면 그 절반을 상으로 주는 것이 전례이기는 하지만 매년 그들과 짜고 그대로 덮어두는 폐단이 많았다. 반드시 중한 상을 내려야지만 끝까지 뒤밧아서 잡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압수하여 바친 물품 전부를 상으로 주고 비단 포교들 뿐 아니라 관속(官屬)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압수하여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정한다. 1. 압록강 연안의 상하에는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길이 많다. 의주부에서는 지키는 파수꾼의 숫자를 종전에 비하여 더 많이 정해서 밤낮으로 염탐하고, 순찰하게 하고,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때없이 불법을 적발해서 소홀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청수(靑水)와 수구(水口) 두

之奸竇。此不可不嚴立科條。從今以後，落柵數爻，入柵後卽爲修成冊，呈納于使行，而還渡後一依北貨例比包，以杜奸弊。一，交易之法，何等嚴重，而近來柵貨中帽子一種，有未推名色，事之寒心，莫此爲甚。所謂未推者，果是真箇未推，已是法外，況出於彌縫幻弄之計，尤極痛駭。自今爲始，一切禁斷，如有犯者，施以潛商之律。一，潛商物種，捕校輩捉納，則折半賞給，雖是前例，而每多符同掩置之患，必有重賞，然後可責其盡力跟捕。從今以後，捉納物種，盡數賞給，非但捕校，勿論官屬良人，如有捉納者，則一體施行事，永爲定式。一，沿江上下，潛越多岐。自灣府防守把立之數，比前加定，晝夜詞察，別定將校無時摘奸，俾無踈忽之弊，而靑水、水口兩鎮，尤是要路。嚴飭鎮將，把守等節，各別舉行。兩鎮境內，或有潛商，而鎮將不能捉納，現發於本府摘奸，則該鎮將，各別論罪。該鎮境內捉納人施賞事，一依本府捉納人例施行。】且請自今番使行爲始，大小燕行，依此遵行，毋敢違越。”允之。

	<p>진(鎭)은 더욱 넘어가기 좋은 길목이므로 진장(鎭將)을 엄히 신칙하여 파수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하게 한다. 두 진의 경내에 만일 잠상이 있었는데도 진장이 이를 압수하여 바치지 못한 사실이 본부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는 해당 진장에 대해 각별히 죄를 논한다. 그리고 그 진의 경내에 사는 사람이 압수하여 바친 경우에는 본부의 사람이 압수하여 바친 예와 똑같이 시상을 한다.】</p> <p>그리고 이번 사행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북경 사행을 이 규정을 절대 준수하고 감히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11월 27일(병진) 2번째기사 삭선의 폐단을 바로 잡도록 교서를 내리다</p>	<p>-</p> <p>교서를 내렸다.</p> <p>“일찍이 듣건대 삭선(朔膳)으로 바치는 물품 중에 김·생선·알·광어 같은 종류는 정해진 길이와 넓이에 구애되어 풀로 붙이거나 침을 발라 규격에 맞춘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정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폐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잡히는 대로 규격에 구애받지 말고 바치라는 명이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을 언제나 살피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한 지 몇 해가 되었기에 지금쯤은 틀이 잡혔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래 들으니 영읍(營邑)에서 바치는 것들이 예전 그대로 폐단이 있다고 한다. 오늘 마침 김을 바쳐온 일이 있어 들으니 전에 비하여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침을 바르거나 풀로 붙이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한다. 묘당으로 하여금 영남·호남과 관동 지방에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도록 하라.”</p>	<p>-</p> <p>○教曰：“曾聞朔膳貢獻物種之如海衣、魚卵、廣魚等種，拘於長廣，糊付涎塗。不但事面之欠精，其爲民弊，想亦不些。有隨所捉勿拘尺度封進之命，而此等處，不能每每致察。意謂行之數年，令已行矣，近聞營邑之封進，依舊爲弊。今日適因海衣貢獻聞之，比前差減，塗付則一也。令廟堂，申加嚴飭兩南、關東。”</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2월 7 일(병인) 2번째기사 곡식을 비는 제사를 정월 첫 신일에 지내도록 하명하다</p>	<p>이에 앞서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내년은 입춘(立春)이 초나흘이고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첫 신일(辛日)은 초사흘에 들었습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원일(元日)의 곡식을 비는 의식을,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하는 의식을 행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일에 곡식을 비는 의식을 아마도 입춘의 뒤에 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내각과 홍문관에 명하여 널리 상고하게 하고 이어서 대신과 문임으로 하여금 의논을 올리게 하여 본조(本曹)에서 이를 하나로 만들어 품쳐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규장각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상고해보건대 우리 나라의 곡식을 비는 의식은 숙종 계해년(5621) 에 대신 김수흥(金壽興)의 차청(筭請)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22년 정월 첫 신일에 또 친향례(親享禮)를 거행하였습니다. 《속오례의(續五禮儀)》의 시일조(時日條)에는 ‘정월 첫 신일에 곡식을 빌고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 단지 새해의 가장 첫 신일만을 취하고 입춘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것은 그 취사(取捨)하는 데에 필시 근거한 바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 월령의 맹춘지월조(孟春之月條)에 ‘이달에는 천자(天子)가 초하룻날 상제(上帝)에게 곡식을 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첫 신일에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이른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 교외에서 후직(后稷)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것이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면 교제(郊祭)를 지내고 교제를 지낸 뒤에 논밭을 간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공영달(孔穎達)은 말하기를 ‘갑·을·병·정 등을 일(日)이라 하고 교제에 첫 신일(辛日)을 쓰는 것을 원일(元日)이라 한다. 《예기》 교특생(郊特牲)에는 교제에 신일을 쓴다[郊之用辛也]고 하여 교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곡식을 비는 데</p>	<p>○先是, 禮曹判書閔鍾顯啓言: “明年立春在於初四日上辛, 祈穀在於初三日矣。 《月令》, 元日祈穀在於迎春東郊之後, 則祈辛之禮, 恐當在於立春之後。” 命內閣、弘文館博考, 仍令大臣文任, 獻議本曹, 指一稟處。 至是, 奎章閣啓言: “臣等謹按國朝祈穀之禮, 始於肅廟癸亥, 因大臣金壽興筭請施行, 而二十二年正月上辛, 又行親享禮。 《續五禮儀》《時日》條有曰: ‘祈穀孟春上辛, 祭社稷。’ 其時只取歲首最上之辛, 不計立春先後者, 其所取捨, 必有所據, 而今不可考矣。 《禮記》《月令》孟春之月: ‘是月也, 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 鄭玄曰: ‘謂以上辛, 郊祭天也。 《春秋傳》, 郊祀后稷, 以祈農事。 是故啓蟄而郊, 郊而後耕。’ 孔穎達曰: ‘甲乙丙丁等謂之日, 郊之用辛云元日。 《郊特牲》, 郊之用辛也。 言郊不言祈穀, 此經言祈穀不言郊。 鄭既以二祭爲一, 故此註謂以上辛郊祭天也, 引《春秋傳》以明之。’ 又《禮記》《郊特牲》, 郊之用辛也, 周之始郊日以至。 鄭玄曰: ‘言日, 以周郊天之月,</p>
--	---	--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이 월령에서는 곡식 비는 것만을 말하고 교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정현은 이미 두 가지 제사를 한 가지 제사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주(註)에서 첫 신일에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낸다고 말하고 《춘추전》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기》 교특생에서 ‘교제에 신일을 쓰는 것은 주(周)나라가 처음 교제를 지낸 것이 동짓날이었기 때문이다.’ 한 데 대하여, 정현이 말하기를 ‘날이라고 말한 것은 곧 주나라가 하늘에 교제를 지내는 동짓달을 가리킨 것으로, 동지에는 양기(陽氣)가 새로 용사(用事)하므로 이에 순응하여 신일을 쓴다고 한 말인데, 이 말은 잘못되었다. 하늘에 교제 지내는 달에 동지가 드는 것은 바로 노(魯)나라의 예이다.’ 하였습니다.

제(齊) 무제(武帝) 영명(永明) 원년에는 입춘 전에 교제를 지냈는데, 왕검(王儉)이 아뢰기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경평(景平)5622) 원년 정월 3일 신축일에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해에는 11일이 입춘이었고, 원가(元嘉)5623) 16년에는 정월 6일 신미일에 교제를 지냈는데 이때는 그달 8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이는 근대의 명백한 전례인데 먼저 교제를 지내고 뒤에 입춘을 맞이하는 것을 혐의로 여기지 않았으니, 번거롭게 날짜를 옮기지 마소서.’ 하니, 무제가 따랐습니다.

양(梁) 무제(武帝)는 남쪽 교외에 제단을 만들고 정월 첫 신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오조지(吳操之)가 말하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릴 적에 교제를 지내는 것이니 교제는 응당 입춘 뒤에 지내야 합니다.’ 하니, 하동지(何修之)가 말하기를 ‘지금 행하는 교제는 바로 작년의 은공을 갚고 올해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쓰는 것이고 입춘의 선후는 구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경덕(景德)5624) 3년에 진팽년(陳彭年)이 아뢰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릴 적에 교제를 지내는 것은 곧 삼대(三代) 때의 몇몇한 법

而至，陽氣新用事，順之而用辛日，此說非也。 郊天之月日以至，魯禮也。’ 齊武帝永明元年，立春前郊祀。 王儉啓云：‘按宋景平元年正月三日辛丑南郊，其年十一日立春；元嘉十六年正月六日辛未郊，其月八日立春。 此近代明例， 不以先郊後春爲嫌， 無煩遷日。’ 帝從之。 梁武帝， 南郊爲壇， 正月上辛行事。 吳操之云：‘啓蟄而郊， 郊應在立春後。’ 何修之云：‘今之郊祀， 是報昔歲之功， 而祈今年之福。 故取歲首上辛， 不拘立春先後。’ 宋景德三年， 陳彭年奏言：‘啓蟄而郊， 乃三代彝章， 郊在春前， 乃後世變禮。 龔王儉之末議， 違《左氏》之明文， 禮有未安， 事當從古。’ 因詔有司詳定。 宋仁宗天禧元年， 禮儀院言：‘來年正月十七日， 祈穀前二日， 奏告太祖室， 緣歲以正月十五日朝拜玉清、 昭應宮。 景德四年以前， 祈穀止用上辛， 其後用立春後辛日， 蓋當時未有朝拜宮觀禮， 王儉啓不以先郊後春爲嫌。 宋武朝有司奏， 魏代郊天值雨， 更用後辛或上辛， 事有相妨， 并許互用， 在於禮典， 固亦無嫌。’ 宋徽宗大觀四年， 禮

이고 입춘 전에 교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후세의 변례(變禮)입니다. 왕검(王儉)의 변변찮은 의논을 답습하여 《좌전(左傳)》의 분명한 예문을 어기는 것은 예의에 있어 타당하지 않으니 당연히 옛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니, 그 대로 유사에게 명하여 이를 자세히 정하게 하였습니다.

송(宋) 인종(仁宗) 천희(天禧) 원년에는 예의원(禮儀院)에서 말하기를 ‘내년 정월 17일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2일 전에 태조(太祖)의 사당에 이를 고해야 하는데, 이는 해마다 정월 15일 아침에 옥청소응궁(玉淸昭應宮)을 참배하기 때문이다.景德(景德) 4년 이전에는 곡식을 비는 제사를 단지 첫 신일만을 썼으나 그 뒤로는 입춘을 지낸 뒤의 신일을 썼으니, 이는 대체로 그 당시에는 아침에 궁관(宮觀)을 참배하는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검(王儉)은 교제를 먼저 지내고 입춘을 뒤에 맞이하는 것을 혐의로 여기지 않았다고 아뢰었고, 송(宋) 무제(武帝) 때에는 유사가 아뢰기를 「위(魏)나라 때는 교제를 지낼 날에 비가 내리면 다시 그 다음 신일이나 혹은 첫 신일을 사용하기도 하여 행사에 서로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넘나들며 사용하는 것을 아울러 허용한 내용이 예전(禮典)에 있으니 진실로 혐의될 것이 없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송(宋) 휘종(徽宗) 대관(大觀) 4년에는 예국(禮局)이 입춘 뒤의 첫 신일에 곡식을 빌자고 의논을 드리자, 조서하기를 ‘올해 정월의 첫 신일은 신축일이고 다음의 신일은 신해일인데 축일에 빌지 않고 해일에 비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하고 끝내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명(明)나라 초기에는 곡식을 비는 제사를 일찍이 지내지 않다가 가정(嘉靖)5625) 10년에 처음으로 정월 첫 신일에 대사전(大祀殿)에서 곡식을 비는 의식을 행하였고, 얼마 후에는 경칩절(驚蟄節)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정 12년 경칩절에는 무정후(武定侯) 곽훈(郭勛)을 시켜 대신 술잔을 드리게 하자, 급사중(給事中) 섭홍(葉洪)이 말하기를 ‘곡식을 비는 제사나 하늘에 보답하는 제사

局議以立春後上辛祈穀，詔以今歲孟春上辛在丑，次辛在亥，遇丑不祈而祈於亥，非禮也，乃不果行。 皇明初，祈穀未嘗行，嘉靖十年，始以孟春上辛祈穀禮於大祀殿，尋用驚蟄節。 十二年驚蟄節，命武定侯郭勛代獻，給事中葉洪云：‘祈穀、大報，祀名不同，郊天一也。 祖宗無不親郊，成化、弘治或有故，寧展至三月。’ 竊念此乃前代已行之例，先儒異同之論也，互相牴牾，莫能合一，而其中鄭玄、吳操之、陳彭年等數說，乃主立春後祈穀之論，而鄭玄則但從《左傳》啓蟄而郊一句，釋《月令》則直以祈穀爲郊，釋《郊特牲》則直以周郊爲魯禮。 夫郊與祈穀，祀名既異，則乃以其同是祭天，而遂謂之一祭，未敢知也。 《左氏》雖可信，《郊特牲》亦經文，則信《左氏》之過，而遂以《郊特牲》爲非者，亦未敢知也。 吳操之、陳彭年，則襲《左氏》、鄭氏之餘論而立說也。 三王郊祀之禮，既未敢以鄭註爲必可從，則久遠難稽，而有不可質言矣。 其後諸代之只取歲首上辛，不拘立春先後者，出於傳記，歷歷如右。 春後祈穀，只宋

가 제사의 명칭은 다르지만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종(祖宗)께서는 교제를 친히 지내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성화(成化)·홍치(弘治) 연간에는 혹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물려서 3월에 거행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바로 전대에 이미 시행했던 전례이고 선유(先儒)들이 주장한 각기 다른 의논들인데, 서로 맞지 않아서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현·오조지·진팽년 등의 몇가지 설(說)은 곧 입춘 뒤에 곡식을 빌어야 한다는 의논이었으나, 정현의 경우는 단지 《좌전》의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면 교제를 지낸다.[啓蟄而郊]’는 한 구절을 따라, 《예기》의 월령을 해석할 적에는 곧장 곡식을 비는 제사를 교제라 하였고, 교특생을 해석할 적에는 곧장 주나라의 교제를 노나라의 예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교제와 곡식을 비는 제사는 제사의 명칭이 이미 다르니, 그 똑같이 하늘에 제사한다는 점만 가지고 마침내 하나의 제사라고 이르는 것이 감히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좌전》의 말이 비록 믿을 만하기는 하나 교특생도 경문(經文)이고 보면, 《좌전》의 말을 지나치게 믿어서 마침내 교특생의 말을 그르게 여기는 것도 감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조지·진팽년은 좌씨와 정씨의 의논을 답습하여 자신의 견해를 세운 것입니다. 삼왕(三王) 시대 교제의 예에 대하여 감히 정씨의 주석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할 수 없고 보면, 세대가 워낙 오래되어 상고하기 어려워져 질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여러 시대에 걸쳐 단지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썼다든지, 또는 입춘의 선후에 구애하지 않은 것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전기(傳記)에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입춘 뒤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만 송나라 경덕 연간에 진팽년의 요청에 의하여 거행하였으나 천희 연간에 이르러 이내 다시 예전대로 시행하여 그 기간은 고작 10여 년에 불과합니다.

위나라와 송나라는 입춘 뒤의 신일과 그해의 첫 신일을 모두 허용하여 번갈

景德中, 因陳彭年所請行之, 而至于天禧, 旋即仍舊, 其間不過十餘年也。魏、宋則後辛上辛, 并許互用, 皇明則始用上辛, 尋改驚蟄, 此則不特不以先郊後春爲嫌而已。歷代典禮之可據者如此矣。” 弘文館啓言: “元日祈穀, 始見於《禮記》。《月令》孟春之月註曰: ‘元日, 上辛也。’ 觀其文勢, 雖若在於迎春東郊之後, 而泛言是月元日, 其釋元辰則曰: ‘郊後吉日。’ 其釋元日, 則只曰上辛, 而無立春後上辛之明言者。《穀梁傳》曰: ‘以十二月下辛, 卜正月上辛; 如不從, 則以正月下辛, 卜二月上辛; 如不從, 則以二月下辛, 卜三月上辛。’ 註曰: ‘郊必用上辛者, 取其新潔也。’ 此則只用春之辛日, 而取其新潔之意而已, 亦無孟仲季一定之朔。《郊特牲》曰: ‘周之始郊日, 以至。’ 註云: ‘周家始郊祀, 適遇冬至, 是辛日, 自後用冬至後辛日。’ 又於《月令》註曰: ‘郊祭天而配以稷, 爲祈穀也。’ 然則郊亦祈穀, 而《郊特牲》之只用冬至後辛日, 不拘立春之先後, 概可見矣。蓋自三代以後, 莫不以祈穀爲重, 而至於立春先後之



아 썼고, 명나라는 처음에는 첫 신일을 썼다가 얼마 안 되어 경칩절로 고쳤는데, 이것은 교제를 먼저 지내고 입춘을 뒤에 맞이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의 근거할 만한 전례는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원일(元日)에 곡식을 빈다는 것은 《예기》 월령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맹춘지월조의 주석에 ‘원일은 첫 신일이다.’ 하였으니, 그 문세(文勢)를 살펴 보면 마치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달 원일’이라고 범범하게 말한 것으로서 원신(元辰)을 해석한 데는 ‘교제를 지낸 뒤의 길일(吉日)이다.’ 하였고, 원일(元日)을 해석한 데는 단지 ‘첫 신일’이라고만 하였을 뿐 ‘입춘 뒤의 첫 신일’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없습니다. 《곡량전(穀梁傳)》에 이르기를 ‘12월 끝 신일에 정월의 첫 신일을 받되 길(吉)하지 않으면 정월의 끝 신일에 2월의 첫 신일을 받으며, 이때도 만일 길하지 않으면 2월의 끝 신일에 3월의 첫 신일을 받는다.’ 하였는데, 그 주에서 ‘교제에 반드시 첫 신일을 쓰는 것은 새롭고 깨끗한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단지 봄의 신일을 사용하여 그 새롭고 깨끗한 뜻을 취한 것일 뿐이고 또한 정월·2월·3월의 일정한 달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특생의 ‘주(周)나라가 처음으로 교제를 지낸 것이 동짓날이었다.’고 한 주에는 ‘주나라의 처음 교제를 지낸 날이 마침 동짓날이었고 이날이 바로 신일이었으므로, 이 뒤로는 모두 동지 뒤의 신일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월령의 주에는 ‘하늘에 교제를 지내면서 후직을 배향하는 것은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제도 역시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으로서, 교특생에서는 동지 뒤의 신일만을 사용하였고 입춘의 앞이나 뒤이나 하는 것에는 구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삼대 이후로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입춘의 앞이나 뒤나 하는 설에 있어서는 경전(經傳)에서 별로

說, 經傳別無概見, 諸儒亦無的論。獨於宋景德間, 因陳彭年之言, 遂行立春後祈穀之禮。 《左氏》雖有可據, 《郊特牲》亦是經文, 則必從《左氏》之論而不從《郊特牲》之言, 臣未敢知矣。” 禮曹啓言: “問議于時原任大臣文任, 則領議政洪樂性以爲: ‘祈穀之行於立春前後, 先儒之說, 互相參差, 前代之規, 亦自異同, 各有所據, 迄無定論。 第伏念我朝典禮, 行之已久, 考之禮經, 既無明證, 仍舊遵行, 恐合率由之義’ 云。 右議政金憲以爲: ‘《月令》祈穀之在立春之後, 必有精義。 歷代所行, 雖有先後, 諸儒所論, 雖有異同, 直斷以經旨, 則似得其宜’ 云。 判中樞府事朴宗岳以爲: ‘《續五禮儀》曰, 只取歲首上辛; 聖教若曰, 神之格思, 在於誠敬, 不在於立春之前後。 大哉王言! 臣之淺見, 與其眩疑於諸儒之論, 無寧一從國朝故事, 勿拘立春先後, 只取歲首上辛, 則不害爲祭禮從先祖之義’ 云。 藝文館提學洪良浩以爲: ‘臣竊謂, 祈穀之禮, 雖是祭天, 有異於南郊之祭。 故我國得以倣行, 不必引郊天之日月也。 祈穀之名,

볼 수가 없고 제유(諸儒)들도 명확하게 논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송나라 경덕 연간에만 진평년의 말을 따라 마침내 입춘 뒤에 곡식을 비는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좌전》의 말이 근거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교특생도 경문이고 보면, 굳이 《좌전》의 말만 따르고 교특생의 말을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시임·원임 대신과 문임에게 문의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곡식을 비는 제사를 입춘의 앞이나 뒤에 거행하는 데에 대한 선유들의 설이 서로 들쭉날쭉하고 전대의 규례도 서로 다른 가운데 각각 근거가 있어 아직까지 정해진 의논이 없다. 다만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의 전례는 시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예경》을 상고해보아도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예전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선왕의 법을 따르는 뜻에 부합될 듯하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김희(金憲)는 말하기를 ‘일령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입춘 뒤에 거행하게 한 것은 반드시 정밀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역대에 행한 의식은 입춘의 전에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하였으며, 제유들이 논한 내용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곧장 경문의 뜻을 가지고 단정한다면 타당함을 얻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은 말하기를 《속오례의(續五禮儀)》에는 단지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하여 쓴다 하였고, 성교(聖教)에는, 신명이 감응하는 것은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고 입춘의 선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으니, 훌륭한 도다, 왕의 말씀이여. 신의 열은 소견으로는 제유들의 여러 의논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나라의 고사를 따라 입춘의 앞이나 뒤에 구애하지 말고 다만 그해의 첫 신일을 취해서 거행한다면 제례(祭禮)는 선조(先祖)를 따라 한다는 뜻에 해롭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예문관 제학 홍양호(洪良浩)는 말하기를 ‘신은 생각하건대 곡식을 비는 의식

始見於《月令》，而其文曰：「以元日祈穀于上帝。」疏曰：「元日，上辛也。」後世之用上辛，蓋本於此，未嘗言立春前後，而謹按《月令》上章曰：「立春之日，天子親率三公九卿，以迎春於東郊。」是迎春氣之禮也。下章言元日祈穀者，乃祈農事之禮也。禮義自異，而迎春則以立春日，祈穀則以上辛日，期日各異，恐不必視立春而進退。大抵歷代之以立春前後，獻議不一，而或許互用，或復仍舊，靡所適從。今當以古經爲準，而《左氏》則稱啓蟄而郊，啓蟄或在仲春，則不可以此時祈年也。《郊特牲》則謂冬至後辛日，其不拘於立春之前，可推而知’云。大凡議禮之家，箋註支離，枝葉紛紜，固難取舍，而至於立春前後祈穀當否，尤無的確之論。第以傳記所載言之，祈穀之禮，始見於《月令》，而在於迎春東郊之下、躬耕籍田之上，則立文記事，既有次第。且《月令》一篇，無非順時布政之方，而祈穀之祭，既是正月之令、孟春之事，則今以辛日在立春之前，而祈穀於季冬之節，終有所未敢知者。《春秋》傳曰：‘郊祀后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는 하지만 남쪽 교외에서 지내는 교제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이를 모방하여 행하였으니, 굳이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과 달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곡식을 비는 제사의 명칭이 월령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글에 「원일에 상제에게 곡식을 빈다.[以元日祈穀于上帝]」고 하였고, 그 소(疏)에 「원일은 첫 신일이다。」하였다. 후세에 첫 신일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일찍이 입춘의 앞이나 뒤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가 살펴보면, 월령의 상장(上章)에 이르기를 「입춘일에 천자가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친히 거느리고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봄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이고, 하장(下章)에서 「원일에 곡식을 빈다。」고 말한 것은 곧 농사가 잘되기를 비는 의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예의가 본디 서로 다른만큼, 봄을 맞이하는 것은 입춘일에 거행하고 곡식을 비는 것은 첫 신일에 거행하면 정한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아마도 입춘을 기준으로 날을 앞당기거나 뒤로 물릴 필요가 없을 듯하다. 대저 역대로 입춘의 앞이나 뒤냐에 대하여 올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서 혹은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예전대로 하기도 하여 어디도 따를 곳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옛 경서를 법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좌전》에는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하였는데,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시기는 혹 2월에 들기도 하니 이때에 풍년들기를 빌 수는 없다. 그리고 교특생에는 「동지 뒤의 신일에 거행한다。」하였으니 입춘 전의 날짜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미루어서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저 예를 논하는 사람들의 전주(箋註)가 지리멸렬하고 갈래가 잡다하여 참으로 취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춘 전이나 후의 어느 때에 곡식을 비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의논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傳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곡식을 비는 의식이 월령에

稷，以祈農事。是故啓蟄而郊，郊而後耕。’後世或以啓蟄爲正月中氣，或以爲二月節，歷代異用，而今按《夏小正》春正月，首書啓蟄，又《月令》孟春，蟄蟲始振，釋之者引《國語》土氣震發之語，以爲啓者始震之謂，非出蟄也。然則所謂啓蟄而郊者，亦恐指立春以後也。至若《郊特牲》所謂國之始郊日以至者，則似指冬至圜丘之祭，而孔穎達以爲，始郊者以冬至陽氣初動，天之始也，對啓蟄言，故云始。是則啓蟄祈穀與冬至郊天，各爲一祭，而祈穀之當待啓蟄，此亦可見矣。梁武帝時，吳操之建言啓蟄而郊，郊應在立春後，何修之則以爲，禮兼祈報，不得限以一途。當取上辛，不拘立春前後。此與齊王儉所謂義在祈天，事兼祈穀，既不全以祈農，何必俟夫啓蟄者，其說相符，而今之祈穀，既非兼祀，則王、何之言，皆不足爲證。梁朝亦用吳說，以爲祭天宜在冬至，祈穀必須啓蟄。自是冬至謂之祀天，啓蟄謂之祈穀。故當時詔令亦曰，太皞御氣，句芒首節。宋景德中用立春後上辛，行祈穀祭，而至天禧元年，因禮儀院所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문구가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迎春東郊]’의 아래, ‘몸소 적전을 간다.[躬耕籍田]’의 위에 있으니, 문장을 만들어 일을 기록한 데에 이미 순서가 있습니다. 또 월령편은 전체가 절기에 맞추어 정사를 펴는 방도로 되어 있는데, 곡식을 비는 제사는 바로 정월의 시령(時令)으로서 정월에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일이 입춘의 전에 들었는데도 끝겨울[季冬]의 절기에 곡식을 빈다는 것은 끝내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춘추전》에 ‘교외에서 후직에게 제사하여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이리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내고 교제를 지낸 다음 논밭을 간다.’고 하였는데, 후세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시기를 정월 중의 절기라고도 하고 혹은 2월의 절기라고도 하여 역대에 서로 다르게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고해보건대, 《대대례기(大戴禮記)》 하소정(夏小正)의 춘 정월조(春正月條)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댄다.’는 말을 제일 처음에 썼고, 또 《예기》 월령의 맹춘조(孟春條)에도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처음으로 꿈틀거린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은 《국어(國語)》의 ‘땅기운이 발동한다.[土氣震發]’는 말을 끌어다가 ‘꿈틀댄다는 것은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 것이고 겨울잠을 깨고 나온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는 것도 아마 입춘 뒤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교특생에서 이른바 ‘주(周)나라의 처음 거행한 교제를 동짓날에 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동짓날 환구(圜丘)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공영달은 말하기를 ‘처음 거행한 교제를 동지에 행한 것은 동지에 양기가 처음 발동하는 때가 바로 하늘의 시작이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는 것을 상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덜 적에 지내는 곡식을 비는 제사와 동짓날 교외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가 각각 별도의 한 제사라는 것으로,

奏, 始因王儉說及宋武朝有司所言魏代事事有相妨, 并許互用。此則以朝拜宮觀之適值祈穀前二日, 有此權宜之舉。大觀四年之用春前上辛, 亦以遇丑不祈而祈於亥, 非禮爲言, 則初非以景德詳定之禮爲不當遵行也。宋之樂章有云: ‘陽和啓蟄, 品物皆春。’ 豈其因時異制, 而終亦主於啓蟄之後歟? 謹稽傳記, 旁考故事, 祈穀之行於立春後, 其義似有可據。請上裁。” 批曰: “經曰: ‘天子元日祈穀。’ 先講元日之義, 然後始可議及於上辛, 而立春之前後, 亦可卜釋矣。大抵元日, 釋以上辛, 昉於鄭玄之註, 所釋者不甚分明, 則立春之前後, 當於何考據乎? 玄是漢人, 去古未遠, 尚且說得依條, 如吳操之、陳彭年輩臆決之論, 固不足爲有無輕重。禴祀烝嘗, 不以啓閉分至爲限, 而卜日必於上旬。考之古經, 既乏的證, 求諸通義, 的有明據。且況諸侯之禮, 異於天子, 于社不于郊。邇人猶於季冬而祈歲, 歲致大有, 頌騰屢豐。神其鑑茲, 貽以曾孫之慶者, 在予誠敬, 豈在立春前後乎? 祈穀之用正月上辛, 依時用之例。”

곡식을 비는 제사는 의당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려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양 무제 때 오조지는 건의하기를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면 교제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교제는 응당 입춘 뒤에 지내야 한다.’ 하였고, 하동지는 ‘이 교제의 의식은 곡식을 비는 일과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겸한 것이므로 한 가지 의미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정월의 첫 신일을 취해야 하고 입춘의 앞이나 뒤냐는 구애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제나라의 왕검이 이른바 ‘뜻은 하늘의 은공을 비는 데에 있고 일은 곡식 잘 되기를 비는 것도 겸하여 이미 전적으로 농사가 잘 되기만을 비는 것이 아닌데 어찌 꼭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한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곡식을 비는 행사는 이미 교제를 겸하여 지내는 것이 아니므로 왕검과 하동지의 말은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나라 시대에는 역시 오조지의 말을 써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당연히 동지에 지내고 곡식을 비는 제사는 반드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대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동지에 행하는 것을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 하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덜 때에 행하는 것을 곡식을 비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조령(詔令)에서도 ‘봄을 맡은 신인 태호가 봄기운을 부린다.[太皞御氣]’ 또는 ‘동방의 신인 구망의 첫 절기이다.[勾芒首節]’라고 하였습니다.

송나라 경덕 연간에는 입춘 뒤의 첫 신일을 써서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천희 원년에 와서는 예의원(禮儀院)이 아뢴 바를 인하여 비로소 왕검의 말 및 유송 무제(武帝) 때 유사가 말한 바 위나라 때의 일에 따라, 일에 서로 방해됨이 있으면 서로 번갈아 쓰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궁관(宮觀)에 참배하는 행사가 마침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2일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임시 방편의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관(大觀) 4년에는 입춘 전 첫 신

일을 사용하여 또한 ‘신축일을 만나서 곡식을 빌지 않고 신해일에 곡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애당초 경덕 연간에 상정(詳定)한 예를 그대로 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악장(樂章)에는 ‘양기가 온화하여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니 온갖 만물이 모두 봄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시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되 끝내는 또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꿈틀거리는 때를 주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전기를 상고하고 널리 고사를 고찰해본 결과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입춘 뒤에 거행한다는 것이 그 뜻에 있어 근거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經)에 이르기를 ‘천자가 원일에 곡식이 잘 되기를 빈다.’ 하였으니, 우선 원일의 뜻을 강정(講定)한 다음에 비로소 첫 신일에 대한 의논을 전개할 수 있고 입춘의 앞이나 뒤냐에 대해서도 변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원일을 정월의 첫 신일이라고 해석한 것은 정현의 주에서 시작되었지만 해석한 것이 그리 분명하지 못하니 입춘의 전인지 후인지를 어디에서 고증하겠는가. 정현은 한나라 사람이므로 옛 시대와 그다지 멀지 않은데도 오히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오조지·진팽년의 무리들이 억측으로 한 의논 따위야 진실로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禴)·사(祀)·증(烝)·상(嘗)의 네 계절 제사의 경우는 겨울잠에서 깨어 나오거나 겨울잠에 들어가거나 춘분·추분과 하지·동지로 한정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계절의 상순(上旬)으로 날을 받아 거행하는데, 옛 경서를 상고해보면 이미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통상적인 의리로 구하여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 더구나 제후의 예는 천자와 다르기에 사(社)에는 제사를 지내되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빈(飶) 땅 사람들은 설달[季冬]에 풍년을 빌어도 해마다 풍년이 들어 여러 차

	<p>례 풍년을 기렸으니, 신명이 굽어살펴서 자손들에게 경사를 끼쳐주는 것은 나의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입춘의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달렸겠는가. 곡식을 비는 제사를 정월 첫 신일로 쓰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예에 따라서 행하라.” 하였다.</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2월 17 일(병자) 6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조진택 의 치계에 따라 화전 의 금지를 명하다</p>	<p>경상도 관찰사 조진택(趙鎭宅)이 도내의 명산(名山)에는 현재 화전을 일구어 농사짓는 곳이 없다고 치계하니, 회유하기를, “근래 조금만 장마가 쳐도 곧바로 물이 범람한다고 한다. 연전의 양산(梁山) 등 몇 고을의 일에서 더욱 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어찌 강물 흐름이 더욱 빨라져서 그렇겠는가. 바로 산의 모습이 날로 벌거숭이가 되어가는 소치이다.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일 외에 화전을 일구는 것은 더욱 한계를 정하여 금지해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바로잡을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라.” 하였다.</p>	<p>○慶尙道觀察使趙鎭宅，以道內名山時無火田犯耕，馳啓，回諭曰：“近來少有霖雨，輒云汎濫。 年前梁山等數郡事， 尤可知之。 此豈江流益迅而然？ 職由山容日濯之致。 松禁之外， 火耕尤宜定限禁斷。 自今另究矯救之方。”</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2월 18 일(정축) 2번째기사 청죽과 닻나무의 공납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 명하다</p>	<p>내의원 제조 서유방(徐有防)이, 양남(兩南)에서 봉진하는 청죽(靑竹)의 길이와 굵기가 점차 정해진 척도를 어기고 있다는 이유로 도신과 수령을 다같이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우선 대나무의 재배를 권장하는 일을 묘당과 일찍이 도백을 지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정해진 다음부터 일체 법을 적용하게 하였다. 유방이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 나무를 심는 일에 대하여 전후에 신칙한 것이 대단히 엄격하고 명</p>	<p>○內醫院提調徐有防， 以兩南封進靑竹， 長短圓徑漸違尺式， 請道臣守令并推考。 上以宜先勸令栽培， 命廟堂與曾經道伯人， 相議定限， 自限後， 用一切之法。 有防又啓言：“朝家之於種樹一事， 前後申飭， 不啻嚴明。 況如種桑種楮， 卽守令七事中一條， 而守令看</p>

백하였습니다. 더구나 뽕나무와 닥나무를 심는 것은 곧 수령이 해야 할 칠사(七事)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수령은 한갓 형식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감사도 사실대로 아뢰는 일이 없어서 연말에 올리는 장계는 한갓 의례적인 관례만 따를 뿐입니다.

예컨대 이 양남 지방으로 말하자면 앞서 수십 년 전에는 대밭과 닥나무밭이 가는 곳마다 널려 있었는데, 근래에는 날로 황폐해져서 값이 날마다 뛰어오릅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더욱 신칙하여 대밭과 닥나무밭이 열흘 같이 넓이에 이르는 곳에 대해서는 수령이 직접 적간하여 사실대로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장계로 보고하여 상을 주되, 한결같이 연전에 규정하여 뽕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상을 준 예에 따라야겠습니다. 이밖에 여러 도의 각 고을들도 그 토질에 알맞은 나무를 일체 심어 가꾸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말이 비록 오찰한 듯하나 만일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만 하면 충분히 알찬 정사가 될 수 있다. ‘5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사람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은 습속이 사치해져서 어린아이들도 모두 명주옷을 입고 등급과 신분이 문란해져서 친한 자도 명주옷을 입는다. 그런데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하는 조치는 도리어 예전만 못하니, 맹자(孟子)의 가르침은 단지 종이 위의 빈말이 되어버렸고,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법조문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그리고 닥나무는 이웃 나라들과 외교하는 데에 쓰이고 대나무는 화살로 사용하니 그 용도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이 역시 엄명하게 신칙하여 울창하게 쭉쭉 자라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은 그래도 연말이면 장계를 올리는 일이 있으나 호남은 문서 까지도 폐지해버렸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거행할 방도에 대하여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규정을 정해서 공문으로 알리게 하라.”

作應文之具，監司亦無奏實之舉，年終之啓，徒歸循例。卽以兩南言之，前此數十年，竹田楮田到處彌望，邇來日就凋殘，價日騰踊。自今另加申飭，竹田種至十日耕、楮田種至十日耕者，守令親審摘奸，舉實報營，自營狀聞論賞，一依年前定式種桑論賞例。外此諸道各邑，亦令隨其宜土之樹，一體使之種植，恐合事宜。”批曰：“所奏雖似迂闊，苟有實效，足爲實政。五畝之宅，樹之以桑，則五十者可以衣帛。今也俗習侈泰，童子皆着，等分紊亂，賤者亦服，而其所種植之勸獎，反不如古，鄒聖之訓，但爲紙上空言，《大典》科條，未免束之高閣。更自廟堂別加嚴飭。至於楮之用於交隣，竹之用於箭幹，爲用固不重歟？亦不可不嚴明申飭，俾有菀然茁長之美，而嶺南猶有年終啓本，湖南則并與文簿廢却。自今修明之方，并令廟堂，定式行會。”備邊司啓請：“進上青竹，限五年長養，六年後始準尺量，如例封進。五年之後，竹田猶不廣闊，竹品猶不肥大，則道臣、守令，并勸以重律。”批曰：“牛山之木，未嘗不美矣，若彼其



	<p>하였다. 비변사가 계청하기를,  “진상하는 청죽은 5년을 한정하여 기르고 6년 뒤에 비로소 기준 척도에 준하여 규례대로 바치게 하되, 5년 뒤에도 대밭이 넓게 확장되지 않았거나 대나무의 품격이 굵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신과 수령을 모두 무거운 법으로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무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벌거숭이가 된 것은 아침마다 도끼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 베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나무의 성질은 죽순이 더욱 잘 나오는 것인데, 옛날에는 어찌 그다지도 무성하던 것이 지금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안 자란단 말인가.  이 회계를 보건대, 설령 이와 같이 엄하게 단속하여 베지 말고 기르도록 한다면 해도 알맹이 없는 법으로만 존재하여 시행되지 못할 데에 가깝다. 진실로 근본을 바르게 하는 정사를 하려면, 대를 기르는 데는 죽순을 잘 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초기(草記)에서 요청한 대로 하되, 먼저 죽순을 공납하는 것부터 특별히 기한이 되기 전에는 하지 말도록 하라. 어공(御供)을 이미 중지하였으니 비록 한 개나 반 개의 죽순이라도 그 경내를 넘어 나가면 도신과 수령의 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만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는 사체는 아주 중요하니, 기한 전에는 호남과 영남이 해를 나누어 돌려가면서 바치되 그 역시 광어(廣魚)·김·어란(魚卵)의 예에 따라 굵은 것으로 하기를 힘쓰지 말고 가는 죽순의 연한 것으로 바치도록 분부하라. 그리고 해마다 쑥쑥 잘 자라는 실정을 옛 규례에 따라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닥나무를 심는 것은 원래 중[僧]들의 업(業)이었으나 삼남(三南) 지방의 사찰(寺刹)이 모두 황폐해져서 중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림으로써 닥나무밭도 따라서 목어버렸는데, 진실로 그 근원을 캐어보면 벌써 오랫동안 흘러온 폐단입</p>	<p>濯濯者，以其斧斤之朝朝入山林也。況竹之性，尤易萌蘖，則昔何茸茸，今何濯濯？觀此回啓，雖如是嚴飭禁養，近於徒法，不能自行。苟欲爲端本之政，養竹莫如養筍。定限則依草記所請，而先自貢筍，特爲限前停封。御供既停，則雖一條半條，若踰境內，道臣守令，其罪何居乎？但薦獻，事體至重，限前則兩南分年輪封，而亦依廣魚、海衣、魚卵例，勿務體大，以細籜之軟嫩者封進事，分付，每歲以苗長形止，依舊例從實狀聞。”備邊司啓言：“種楮，本是僧業，而三南寺刹，盡爲凋弊，僧徒散亡，楮田隨荒。苟究其源，流弊已久，而至於種竹一款，私田姑無論，公田之如羅州三鄉一面，盡是竹田，竹亦最爲勁剛，一國之箭幹，皆出於此。公家之許置監官，守直禁養，法意嚴明，而奸弊多端，漸至童濯。公田如此，況私田乎？僧徒種楮，既無以復舊，則就其民田或村里，勸課栽植，而種至十日耕，復其戶，過此則除其身役，使之興起樂業。三鄉竹田，亦嚴立科條，進上外俾不得芟刈，限以數年，期有茂茁之效。始自公田，遂</p>
--	--	--

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심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사전(私田)은 아직 논할 것이 없거니와 공전(公田)인 나주(羅州) 삼향면(三鄉面) 같은 지역은 모두 대밭이고 대 또한 가장 굳세고 강하여 온 나라에서 쓰는 화살대가 모두 이곳에서 나옵니다. 조정에서 감관(監官)을 두어 지키면서 벌채를 금지하여 기르게 한 법의(法意)가 엄중하고 분명한데도 험잡을 부리는 폐단이 많아서 점차로 벌거숭이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전이 이러한데 더구나 사전이겠습니까.

중들이 닳나무를 심는 것은 이미 예전대로 복구할 수 없으니, 그 민전이나 혹은 마을에 닳나무를 심도록 권장하되, 열흘갈이의 밭에 심었을 적에는 복호(復戶)를 해주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신역(身役)을 면제해주어, 서로 흥기하여 생업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소서.

삼향면의 대밭에 대해서도 규정을 엄하게 세워 진상하는 것 외에는 베지 못하게 하여 몇년 동안을 한정해서 무성하게 자라는 성과가 있기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에 이르기까지 열흘 갈이의 밭에 이를 심었을 경우 복호해주고 신역을 면제해주기를 일체 닳나무밭의 예와 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찍이 호남의 조세를 징수한 대장을 보니 금양전(禁養田)에 대한 면세(免稅)의 규정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화살대는 군물(軍物)에 관계되는 것이고 닳종이는 크고 작은 일상 생활에 쓰이는 것이다. 무성하게 자라는 성과를 바치려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많이 심고 부지런히 번식시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른바 면세해 준 토지의 대나무와 닳나무가 모두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곳은 우선 조세를 징수하고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대로 즉시 도로 면세해주는 것도 혹 한 가지 방도가 될 듯하다. 이렇다 저렇다 논

及其私，種至十日耕，復戶除役，一如楮田之例爲宜。”批曰：“曾見湖南收租案，有禁養田免稅之規，而有名無實，爲弊至此。況箭竹之軍物所關，楮紙之小大日用，欲奏蔚然之效，則其所矯救，莫如多植勤播，而所謂免稅土地之皆歸烏有，可知此等處爲先出稅，看竹苗茂，隨即還免，抑或爲一道乎！毋論如此如彼，令道臣別具意見，成節目後錄狀聞。”

	<p>하지 말고 도신에게 별도로 의견을 갖추어 절목(節目)을 만든 다음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정조 38권, 17년 (1793 계축 / 청 건륭 (乾隆) 58년) 12월 25 일(갑신)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곡식을 비는 대제의 서계를 행하다</p>	<p>인정전에 나아가 곡식을 비는 큰 제사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p>	<p>○甲申/御仁政殿, 行祈穀大祭誓戒。</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1월 1일 (기축) 1번째기사 경모궁에 작헌례를 행 하다</p>	<p>경모궁에 작헌례를 행하였다. 이때 상이 슬픈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흐느껴 울면서 겨우 행례를 하고는 재전(齋殿)으로 돌아와 시임과 원임 대신·각신을 소견하였다. 영의정 홍낙성 등이 아뢰기를, “경사를 축하하는 의식이 바로 앞에 다가와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마구 뛰며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정상께서는 이것으로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를 모르겠는가마는 심회를 스스로 억제할 수 없다.” 하였다.</p>	<p>○己丑朔/行酌獻禮于景慕宮。時, 上掩抑悲泣, 僅以行禮。還御齋殿, 召見時原任大臣閣臣。領議政洪樂性等奏曰: “慶禮當前, 群情蹈忭。願聖上以此慰心。” 上曰: “予豈不知此, 而心懷自不抑制耳。”</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p>		<p>○辛卯/祈穀于社稷。仍詣太廟展謁</p>

<p>(乾隆) 59년) 1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사직단에 곡식이 잘 되길 비는 제사를 지 내고 태묘를 참배하다</p>	<p>사직단에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그대로 태묘를 참배하였다.</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3월 18 일(을사) 2번째기사 내탕고의 쌀 30포와 돈 백 폐미를 특별히 성균관에 주다</p>	<p>내탕고(內帑庫)의 쌀 30포(包)와 돈 백 폐미를 특별히 성균관에 주었다. 전교하기를, “제술 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에게 장전(帳殿)에 특별히 식당(食堂)을 베풀어 주라. 그런데 근래에 들으니 본관(本館)의 경비 중에서 이 행사에 쓴 것이 가 장 많다고 하는데 이는 드물게 베푸는 까닭이다. 내탕고의 쌀 30포와 돈 1백 폐미를 특별히 성균관에 지급하여 선비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보태고 아울러 선비를 예우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p>	<p>○特給內帑米三十包、錢百緡于成均館。 教曰：“應製入格儒生，特設食堂於帳殿，而近聞本館經用之費，此舉最多云。 此所以罕設也。 內帑米三十包、錢百緡，特給成均館，俾補養士之需，兼示禮士之意。”</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4월 13 일(기사) 1번째기사 내의원이 탕약을 받들 고 대비전의 합문 밖</p>	<p>내의원이 탕약을 받들고 곧바로 대비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아뢰니, 답하 기를, “상에게 강력히 철회하기를 요청하는 일을 어찌 경들의 말을 기다려서 하겠 는가. 도리로 따져보아도 어떻게 감히 곧장 요청하여 번거롭게 할 수 있겠는 가.”</p>	<p>○己巳/內醫院以奉湯劑， 直詣東朝閣外啓， 答曰：“力請豈待卿等之言？ 揆以道理， 豈敢直請仰瀆乎？”</p>

<p>에 나아가서 아뢰다</p>	<p>하였다.</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4월 13 일(기사) 2번째기사 사옹원 도제조 김이소가 왕대비전에 공상을 받아들여 아뢰다</p>	<p>사옹원 도제조 김이소가 왕대비전에 아뢰기를, “신이 전하의 전교를 받들고 방금 공상 물품을 모셔 올렸는데 지금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교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랫사람의 마음에 애타는 정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여쭙으니 특별히 받아들여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하니, 언문으로 비답하기를, “죄인이 성 안에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모르는 터에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쫓아보내는 일도 없으니 조정의 처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공상하는 물건을 어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교하였는데 지금 왜 올리는가.” 하였다.</p>	<p>○司饗院都提調金履素，啓于王大妃殿曰：“臣伏奉大殿下教，日供進上，今方陪進矣。即伏承勿捧之教，下情不勝焦迫，敢此仰稟。特許捧入，千萬伏望。”以諺書批曰：“罪人入城，不知爲幾日，而無人守之，又無逐送之事。朝廷舉措，豈如是乎？供上凡物，昨以勿捧下教，則今何捧之乎？”</p>
<p>정조 39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4월 13 일(기사) 4번째기사 사옹원 도제조 김이소가 왕대비전에 공상을 받아들여 재차 아뢰다</p>	<p>사옹원 도제조 김이소가 재차 왕대비전에 아뢰기를, “신이 전하의 하교를 받았는데 다시 대비전에 나아가 공상을 봉하여 들이려는 전교였습니다. 늘상 드시는 음식을 들지 않으시므로 전하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시고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올리는 공상을 다시 봉해 가지고 왔으니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언문으로 비답하기를, “나는 부녀자로서 지식은 없지만 국가를 위하여 피끓는 마음만은 이미 많은</p>	<p>○司饗院都提調金履素，再啓于王大妃殿曰：“臣伏奉大殿下教，以更爲進詣封入爲教。常膳未進，聖衷靡安，下情益不勝焦迫罔措。日供進上，更此封詣，伏乞即許捧入焉。”以諺書批曰： 予以婦女，雖無知識，爲國血心，則已至多日，而朝廷則無一助力者。名以大臣，始來請供上，予猶以爲有助，依舊昨日以前，實爲寒心。婦女之舉措，</p>

	<p>날을 쌓아왔건만 조정에는 한 사람도 힘을 도울 자가 없다. 명색이 대신이라는 사람이 처음 와서 공상을 받아들이라고 청하였으나 나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종전대로 해내려온 어제 이전에는 참으로 한심하였다.</p> <p>부녀자의 행동거지로 밖에 나가는 것이 괴이쩍기는 하지만 국가를 위하여 어제는 밤을 지새우며 내시와 액례들을 많이 보내어 죄인을 땅바닥에 꿰어앉히고 그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는 빨리 가도록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때문에 오늘은 궁방(宮房)에서 말과 사람을 구하여 자전의 명으로 돌려보내려 한다고 하여 이미 길을 떠났다. 대전이 자전의 전교를 받들어 ‘성문 밖으로 내 보내기는 하지만 전교를 하기 전에는 결코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전교하였으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채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 제신들이 전교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때에도 힘을 쓰지 않겠는가. 대신의 거행하는 일이 연전에 비하여 영 못하다. 나를 너무 만홀하게 대하므로 자리에 있기가 부끄럽다.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경은 그것을 알라.” 하였다.</p>	<p>雖怪於出外，爲國家，昨日達宵，而多送中官及掖屬，跪罪人於地而數其罪，使之速去而不去。故今日則自宮房覓出人馬，欲以慈旨還送云，已發程矣。大殿教以奉行慈教，雖出門外，傳教之前，決不可送，不去不來尚在。諸臣專輒雖難，此時亦不用力乎？大臣舉行，比年前殆不如。知予太慢，在位愧矣，有何意乎？卿其知之。</p>
<p>정조 40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5월 5일 (신묘) 1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조진택이 종이와 대나무 밭의 종양 절목을 올리다</p>	<p>--</p> <p>경상도 관찰사 조진택(趙鎭宅)이 저축전 종양 절목(楮竹田種養節目)을 올렸다. 이에 앞서 내의원 제조 서유방(徐有防)이, 양남(兩南)에 신칙하여 닻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기르도록 할 것을 주청하니, 전교하기를,</p> <p>“언젠가 호남의 수조안(收租案)에서 금양전(禁養田)에 대한 면세 규정이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유명 무실하여 그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더구나 살대[箭竹]는 군기(軍器)의 물자이고 닻종이는 날마다 수없이 쓰이는 물건인 것이다. 무성하게 되는 실효를 거두려고 할 경우, 그 폐단을</p>	<p>○辛卯/慶尙道觀察使趙鎭宅，進楮竹田種養節目。先是，內醫院提調徐有防奏請，申飭兩南培植楮竹，教曰：“曾見湖南收租案，有禁養田免稅之規，而有名無實，爲弊至此。況箭竹，軍物所關，楮紙，小大日用？欲責其蔚然之實效，則其所矯揉，莫如多植勤播，而所謂免稅土地之皆歸烏有，可知此等處出稅。看竹茁茂，隨即還免，抑或</p>

	<p>바로잡는 방법은 많이 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도이다. 그런데 이른바 면세의 토지들은 모두 유명무실해졌으니, 이들 토지에다 세금을 매겼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대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상태를 보아서 즉시 면세전으로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겠는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별도로 의견을 갖추어 절목후록(節目後錄)을 작성하여 장문(狀聞)하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진택이 절목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p>	<p>爲一道乎? 令道臣別具意見, 成節目後錄狀聞。”至是, 鎮宅成節目以聞。</p>
<p>정조 40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5월 6일 (임진) 2번째기사 비변사에서 금송(禁松) 지역인 경상도 욱지도의 개간을 건의하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통제사 신대현(申大顯)의 장계에 ‘본 통영의 비축은 이미 고갈되었고 세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통영의 형편이 점점 피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지 없이 놓고 먹는 이곳 백성들은 생업에 재미를 붙여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어서 재물이나 곡식을 생산해 낼 방도를 경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영에서 1백여 리 떨어진 곳에 욱지도(欲知島)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둘레가 30여 리나 되고 토질이 비옥합니다. 그러나 금송(禁松)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어 기르는 소나무들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누차의 풍재(風災)를 겪는 가운데 지금 이미 다 없어지고 그나마 남은 어린 나무마저도 자라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날 만약 이 섬의 개간을 허락한다면 백성들이 기꺼이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것이니, 해마다 여기에서 나는 이윤을 거두어들여서 지출에 보태어 쓰고 산 중턱 위로는 많은 솔씨를 뿌려서 엄한 법규로 보호한다면 공사(公私)간에 다 편할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p> <p>본 섬은 바다 가운데 위치해 있어 솔밭에 대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벌거</p>	<p>-</p> <p>○備邊司啓言: “統制使申大顯狀啓以爲: ‘本營庫儲既竭, 稅入漸縮, 營樣日漸凋弊。況此無土游食之民, 無以樂業資生, 生財生穀之方, 固難經紀, 而距本營水路百餘里, 有欲知島, 周回爲三十餘里, 土品膏沃, 而以松田搜討之故, 無人居接。所養之松, 禁護不周, 屢經風災, 今既罄盡, 餘存穉松, 亦無長養之勢。今若許民耕墾, 民亦樂赴奠居, 歲收其利, 以補支放。山腰以上, 廣播松子, 嚴法禁飭, 則可謂公私兩便。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島處在海中, 松田無人看護, 一任童濯, 不事播種。與其許久等棄, 便作無用</p>

	<p>송이산으로 방치하여 둔 채 심어 가꾸지를 앓았습니다. 마냥 내버려 두어서 쓸모없는 땅을 만들기보다는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작을 허가하는 한편 다시 보호할 방도를 신칙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송정(松政)에 관계되고 또 민간의 생산도 늘릴 수 있고 보면, 양쪽이 다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계에서 청한대로 시행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개간을 허락하면서 금송을 하라고 하니 어찌 두 가지를 병행할 방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통영의 사세는 검토하여야 될 일이나 명색이 봉산(封山)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찍이 경상도 관찰사 및 통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다들 좋다고 하거든 시행하고 그렇지 않거든 초기(草記)하라.”</p> <p>하였다.</p>	<p>之士，曷若聽民耕食，仍飭禁護之方乎？既關松政，又裕民產，則可謂兩便。請依狀請施行。”教曰：“許墾而禁松，豈有兩行之道？統營事勢，在所顧見。名以封山，理宜致慎。問于曾經嶺伯及統帥諸人，咸以爲然則行矣，否則草記。”</p>
<p>정조 40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7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봉상시 낭청 유사모를 불러보고 제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다</p>	<p>상이 봉상시에서 오래 근무한 낭청 유사모(柳師模)를 불러보고 이르기를,</p> <p>“내가 늘 걱정하는 것은 오직 제사인데,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니 제물이 상하지 않겠는가. 빙고 제조(冰庫提調)와 함께 각별히 얼음을 채워넣는 기구를 갖추도록 하라.”</p> <p>하였다. 이때 태묘(太廟)의 가을 제사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었다</p>	<p>-</p> <p>○戊子/召見奉常寺久任郎廳柳師模。上曰：“予之憧憧一念，惟在祀典。日熱如此，享品得無欠精？與冰庫提調，另備照冰之具。”時，太廟秋享隔日，故有是教。</p>
<p>정조 40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7월 5일 (경인) 1번째기사</p>	<p>장악원 제조에게 명하여 더위를 가시게 하는 약을 춤추는 공인(工人)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p>	<p>○庚寅/命樂院提調，以滌暑之藥，分給佾舞工人等。</p>



<p>장악원 제조로 하여금 더위를 가시게 하는 약을 찹추는 공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다</p>		
<p>정조 40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7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가뭄으로 기우제를 행하라 전교하다</p>	<p>이때에 달포 동안 계속 가뭄자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토록 심하니 걱정스러워 마음이 타는 듯할 뿐만이 아니다. 일찍이 폐백을 가지고 여러 제사를 두루 지냈으니 어찌 흑시라도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이 있겠는가. 경기와 호남·영남에 비가 그친 지가 10여 일 남짓 되었고 며칠 동안 무덥던 날씨도 비 올 가망이 있었다. 어제 대신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직 잠자코 기다리자고 하였는데, 석양이 되자 또 바람이 불어 말린 듯이 개이니 삼농(三農)에 대한 염려를 무어라고 형언할 길이 없다. 금년에는 비오고 개이는 것이 적절한가 했더니 요즘 들어 가뭄이 극심하니 재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책하느라 밤마다 날을 지새운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진실로 부덕한 탓이지 백성들이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번에는 정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날을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행하도록 명하는 것이니, 재계하는 제관은 재계를 충실히 하여 제사를 끝내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乙未/時, 閱月亢旱。 教曰: “旱氣如是太甚, 憂思不啻如焚。 夙將圭幣, 徧及群祀, 豈或佻泄至今, 而畿甸與湖嶺之收霽, 有匝旬之遠近, 數日蒸炎, 亦頗有其雨之望。 昨詢大臣, 姑且靜俟, 晚又反風, 杲杲如烘。 念及三農, 無以爲喻。 以今年雨暘之適宜, 有近日亢旱之爲愆。 災不虛生, 必有所召。 反躬咎責, 不覺每夜明發者久矣。 予誠否德, 百姓何辜? 到今齋誠虔禱之舉, 不容暫緩。” 仍命不卜日行祈雨祭, 飭齋官濯澣明潔, 禮畢前勿飲酒。</p>
<p>조 40권, 18년(1794 갑인 / 청 건륭(乾隆)</p>		<p>○甲辰/教曰: “旱災孔酷, 病衷焚灼, 寧欲無訛。 予則曰罪己貶躬之舉, 爲</p>

<p>59년) 7월 19일(갑진) 1번째기사 가뭄으로 반찬 수를 줄이고 정식 음악을 철회하라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가뭄의 피해가 매우 혹독하니 병든 속이 타는 듯하여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자 한다. 나는 내 몸을 닦하고 내 몸을 책망하는 일을 시급한 일로 여기니 오 늘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반찬 수를 줄이고 정식 음악을 철회하라.”</p>	<p>目下急務。 自今日限得雨間， 減常膳 撤法樂。”</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9월 13 일(정유) 1번째기사 선원전에서 차례를 지 내다</p>	<p>선원전(璿源殿)의 차례를 친히 지내면서 백관들에게 명하여 안팎의 뜰에서 반 열에 참가하게 하였다. 이날은 영종(英宗)의 탄신일이었다. 인하여 육상궁(毓 祥宮)에 나아가 배알하였으며 봉안각(奉安閣)에 나아가 개수한 곳을 살펴보고 어진(御眞)을 도로 받들어 모셨다. 연호궁(延祐宮)과 선희궁(宣禧宮)에도 들러 배알하였다.</p>	<p>○丁酉/親行璿源殿茶禮， 命百官參班 於內外庭， 是日英宗誕辰也。 仍詣毓 祥宮展拜， 詣奉安閣， 奉審修改處， 還 奉御眞， 歷拜于延祐宮、宣禧宮。</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9월 19 일(계묘) 2번째기사 팔도와 삼도에서 묵은 환자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시키다</p>	<p>팔도(八道)와 삼도(三都)에서 묵은 환자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시켰다. 하 교하기를, “농사 형편은 등급을 나누어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거의 넉넉히 알 수 있지만, 면과 리가 이미 피차 다르다고 한다면 고을마다 각기 다르고 도마다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힘을 퍼게 하고 생업을 안정시키는 제반 방법에 대해서는 형세가 장차 등급을 나누어 아뢰는 것을 기다려야 하 나 요컨대 올해의 농사는 동서 남북을 막론하고 조세를 독촉하여 햇것과 묵 은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의논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팔도와 삼 도에서 받아들일 묵은 환자곡식을 금년에는 특별히 모두 받지 말게 하라.”</p>	<p>○停八道、三都舊糶。 教曰：“農形不 待分等之啓， 庶可有略綽領會， 而面里 既有彼此云爾， 則邑各異而道不同可 知。 諸般紓民力、奠民業之方， 勢將 差待分等之啓， 而要之今年穡事， 無論 東西南北， 催科之新舊竝捧， 決難議 到。 八道、三都舊還， 今年則特竝勿 捧。”</p>

	하였다.	
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9월 19 일(계묘) 1번째기사 함흥과 영흥의 두 본 궁 제사에 쓸 의대와 제물을 전해 주다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에 제사에 쓸 의대(衣櫛)와 제물을 친히 전해 주었다.	○癸卯/親傳咸興、永興兩本宮衣櫛及祭品。
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9월 28 일(임자) 2번째기사 명릉에 제사지낼 때의 헌관 등에게 상을 주 다	명릉(明陵)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 아헌관(亞獻官) 박종악(朴宗岳)과 종헌관(終獻官) 이병모(李秉模)에게 호피 1장씩을 하사하고, 찬례(贊禮) 민종현(閔鍾顯)에게 반숙마(半熟馬) 1마리를 내려주며, 집례(執禮) 이상황(李相璜) 및 대축(大祝) 홍대협(洪大協)은 가자하고, 능사(陵司) 이종명(李宗明)은 품계를 올려주고, 이득양(李得養)은 6품으로 승급시키라고 명하였다.	○命明陵親祭時亞獻官朴宗岳、終獻官李秉模賜虎皮一令，贊禮閔鍾顯半熟馬一賜給，執禮李相璜及大祝洪大協加資，陵司李宗明陞敘，李得養陞六。
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 (乾隆) 59년) 9월 30 일(갑인) 10번째기사 하삼도에서 금위영과 어영청에 번들러 올라	경상도·충청도·전라도에서 금위영과 어영청에 번들러 올라오는 군사를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번들러 올라오는 것을 중지시키라고 명하였으니, 좌의정 김이소의 말을 따른 것이다.	○命嶺南、湖西、湖南，禁御兩營上番軍，限明年麥秋停番，從左議政金履素之言也。

<p>오는 군사를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중지하라 명하다</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10월 12일(병인) 2번째기사 제주도에 진휼할 곡식을 운반하는 문제로 바다에 제사하고 민정을 살피라고 검교 직각 서영보에게 유시하다</p>	<p>검교 직각 서영보에게 유시하였다. “조정의 연석에서 하교하여 행회하도록 하였는데 이미 소상하게 말을 만들었는가. 바람을 기다려 배를 출발시킬 곳으로는 소안도(所安島)나 추자도(楸子島)에 뜻을 두었기에 지난번 출발을 감독하라는 전교에서 비록 바다를 건너 가라는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다. 지금 들으니, 마땅히 고달도(古達島)에서 배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배에서 제사를 행한 뒤에 그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려 돌아오도록 하라. 근래 바닷가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자나깨나 가장 근심하고 있다. 각신이 이미 명을 받고 연로의 고을에 있으니, 그가 나의 근심 걱정하는 뜻을 선유하고 진달되지 못한 민정(民情)을 상세히 탐문하는 데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조정에 돌아온 후에 일일이 아뢰도록 하라. 옛사람은 오히려 황제의 명을 사칭하면서까지 창고를 열어 기민을 구제해준 자도 있었는데, 하물며 황급히 민정을 진무하여 안정시킴에 있어서라. 어제 전교하여 삼남에 은택을 시행한 것을 과연 이미 보고 곳곳마다 효유하였는가. 예컨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늦추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모쪼록 자신의 의견을 사리에 맞게 논하여 성화같이 아뢰도록 하고, 지나가는 길이 비록 멀리 둘러오는 길인 듯하여도 재해를 만약 가장 심하게 입었다고 하면 추솔(騶率)들을 놔두고 두루 다니면서 순시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백성들을 반드시 안집시킬 대책을 갖추어 말하</p>	<p>○諭檢校直閣徐榮輔曰：“朝筵有筵教，使之行會，已爲消詳措辭乎？候風發船，意或在於所安，或楸子島。向於監發之教，雖有駕海等句語，今聞當於古達島發船云，然則於其船所行祭後，待其發船復路。近於沿邊民事，最所寤寐耿耿。閣臣既銜命在沿邑地方，其所宣諭念念之意，詳探莫達之情，其敢一毫泛忽乎？仍將見聞。還朝後一一敷奏，而古人猶有發倉矯制者，況違急處民情之鎮安乎？昨下傳教之施惠於三南者，果已見之，而到處曉諭乎？如有當施而有難遲待還朝者，須以意見論理，星火登聞。行過雖似迂路，被災若云最甚，除騶率周行巡視，備說必集之策，細諭蠲免之利，無或一民轉而之他。”</p>

	<p>고, 견감해줄 이익을 상세히 효유하여 한 사람이라도 전전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라.”</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10월 23일(정축) 1번째기사 제주의 태풍으로 진흙 곡식을 더 보내달라고 제주 목사 심낙수가 장계하다</p>	<p>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를 올리기를, “8월 27일 큰바람이 분 뒤에 온 섬이 비로 쓴 듯하여 피차간에 별로 구별할 만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나누어 세 등급으로 만들어 보면, 본주의 78개 리(里) 중에 피해가 심한 마을이 32곳이고 대정현과 정의현도 모두 더욱 심한 편입니다. 환곡 중 기한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 1만 4백 60여 석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2천 2백 90여 석이며, 번이 면제된 군관의 신역에 대해서는 그 수량의 반을 기한을 물려주고, 노비 신공으로 바치는 쌀과 남정(男丁)의 대동미는 그 반을 탕감해주고 군병도 조련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 올벼는 자못 수확이 실향 것이 있었으므로 군영과 읍의 수미(需米)를 대략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사정은 시일이 급하여 늙고 병들어 의지할 데 없는 무리들을 뽑아 공해(公廩)나 토굴에 머무르게 해놓고 있으며 봄 사이에 그냥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1백 50석과 다른 데서 떼어온 1백여 석을 가지고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죽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피해가 아주 심하여 빌어먹는데도 가호(家戶)가 있어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봄 동안에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2백여 석과 보리 환곡의 남은 곡식 2천여 석으로 올 10월 초부터 인구를 계산하여 환자로 나누어주어 우선 살려내고 있습니다. 환자를 주어야 할 자가 장정 3만 7천 9백 18명이고, 노약자가 2만 4천 7백 80명입니다. 10월부터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우선 빌어먹고 있는 가호부터 차차로 더 주어 한 달에 세 번씩 돌려가면서 배정할 경우 들어와야 할 쌀이 2만 2천 2백여 석입니다. 본토의 곡식은 남아 있는</p>	<p>○丁丑/濟州牧使沈樂洙狀啓曰： 八月二十七日大風後，一島如掃，別無彼此之可以區別。就其中，分爲三等，則本州七十八里內，尤甚爲三十二里，大靜、旌義並爲尤甚。糶之當停者，一萬四百六十石零，當捧二千二百九十石零，除番軍官身役停其半，奴婢貢米，男丁大同米蕩其半，軍兵停操。水田早稻，頗有成實，營邑需米，略略收捧。卽今民情，時日爲急，抄其老弱無依之類，留接於公廩或土窟，以春間白給餘穀，一百五十石及從他區劃百餘石，分授各邑，使之饋粥。尤甚丐乞中，有家戶不入於抄飢者，以春間還分餘穀二百餘石及麥還餘穀二千餘石，自今十月初計口還分，先爲救活，而當付還者，壯爲三萬七千九百十八口，弱爲二萬四千七百八十口，自十月限明年麥登，先從丐乞之戶，次次加付，月三排巡，則容入米，當爲二萬二千二百餘石，而本土穀留在者二千餘石，新捧糶</p>

	<p>것이 2천여 석이고, 새로 받아들인 환곡이 2천여 석인데, 이것은 종자(種子)와 공미(公米)로 돌려야 합니다. 장계에서 옮겨줄 것을 청한 2만 석이 차차 들어오기를 온 섬의 백성들이 날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p> <p>“장계의 말을 보니, 바람이 쓸고 간 뒤로 백성들의 사정이 한층 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새 목사를 엄하게 신칙하여 배로 운반한 곡물 및 이미 떼어준 것 외에도 다시 부족한 것이 있거든 도신에게 연락하여 더 청하라고 하라.”</p> <p>하였다.</p>	<p>二千餘石，當歸於種子、公料。狀請移轉穀，限二萬石，次次入來，一島之民日日顛望。</p> <p>教曰：“觀於狀辭，益知滌場後民情之一倍顛頷。嚴飭新牧使，船運穀物及已區劃外，更有不足者，往復道臣加請。”</p> <p><b>【태백산사고본】</b></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10월 28일(임오) 1번째기사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3일간 반찬을 줄이고 삼사로 하여금 수성할 대책을 올리게 하다</p>	<p>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3일 동안 반찬을 줄이라고 명하고, 삼사의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각기 수성(修省)할 대책을 진달하게 하였다.</p>	<p>○壬午/雷雹。命減膳三日，命三司諸臣，各陳修省之策。</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11월 3일(정해) 3번째기사 진헌하는 물품을 중지</p>	<p>진헌하는 물품을 중지하였다. 공물과 부세를 관대하게 면제해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삼명일의 방물과 물선, 【우심한 고을은 내년 보리를 수확하는 가을까지 면제한다.】 신역에 대한 쌀·베·돈, 【우심한 고을 중 가장 우심한 호는 일체 기한을 물려주고, 우심한 호는 절반은 기한을 물려주고 절반은 돈으로</p>	<p>○進獻停封。貢賦寬免條件。三名日方物物膳，【尤甚邑，限明年麥秋停免。】身米布錢，【尤甚邑最尤甚戶，一竝停退；尤甚戶折半停退，折半代錢；之次戶三分一停退，三分二代錢；</p>

<p>하다. 공물과 조세를 견감하는 조건</p>	<p>대신 내게 하며, 지차 호는 3분의 1은 기한을 물려주고 3분의 2는 돈으로 대신 내게 한다. 지차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는 3분의 1은 기한을 물려주고 3분의 2는 돈으로 대신 내게 한다.】 환곡과 향곡, 【우심한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와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적당히 헤아려서 주선해준다. 지차 고을의 가장 우심한 호는 이미 기한을 물려준 것 외에 적당히 헤아려서 주선해준다.】 대동미, 【우심한 고을의 우심한 면리(面里)는 절반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고, 우심한 고을의 지차 면리와 지차 고을의 우심한 면리는 3분의 1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는다.】 결전(結錢), 【우심한 고을의 면리와 지차 고을의 우심한 면리, 2등급의 면은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 【우심한 연해 고을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리고, 지차의 연해 고을은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 내수사의 노비신공 및 구전(口錢)이다. 【우심한 고을은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린다.】</p>	<p>之次邑最尤甚戶三分一停退，三分二代錢。】 還餉，【尤甚邑最尤甚戶、尤甚戶，已停退外，量宜闊狹；之次邑最尤甚戶，已停退外，量宜闊狹。】 大同，【尤甚邑尤甚面里，折半退捧；尤甚邑之次面里、之次邑尤甚面里，三分一退捧。】 結錢，【尤甚邑里、之次邑尤甚面里、二等面，折半限明秋停退。】 魚鹽船稅，【尤甚沿邑，全數限明秋停退，之次沿邑，折半限明秋停退。】 內寺奴婢貢及口錢。【尤甚邑，全數限明秋停退。】</p>
<p>정조 41권, 18년 (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11월 6일(경인) 1번째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겨울 제향과 희생과 기물을 살펴보다</p>	<p>경모궁에 전배하고 겨울 제향의 희생과 기물을 살펴보고 이어서 의식을 미리 익히는 일을 행하였다.</p>	<p>○庚寅/展拜于景慕宮，省冬享牲器，仍行肄儀。</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1월 2일(을유) 2번째기사</p>	<p>조신(朝臣) 가운데 을묘생(乙卯生)인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이하에게 세찬(歲饌)을 내리고, 각 해부(該部)의 관원으로 하여금 존문(存問)하도록 명하는 한</p>	<p>○賜朝臣乙卯生人左議政金履素以下歲饌，命各該部官存問，仍令每年歲饌，依七十以上例，是年卽顯隆園、惠慶宮周甲也。</p>

<p>조신 가운데 을묘생에게 세찬을 내리고 각 해부의 관원은 존문하도록 명하다</p>	<p>편,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행하는 예(例)처럼 매년 세찬을 내리도록 명하였는데, 이 해는 바로 현릉원(顯隆園) 5738) 과 혜경궁(惠慶宮)의 주갑(周甲)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었다.</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1월 2일 (을유) 3번째기사 한성부가 노인에게 세찬을 내리는 별단을 아뢰다</p>	<p>한성부가 노인에게 세찬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별단(別單)을 아뢰었는데, 그 대상자가 모두 5백 90인이었다.</p>	<p>○漢城府以老人歲饌別單啓，凡五百九十人。</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2월 1일 (계축) 4번째기사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서 연회를 베풀 날짜를 잡으라고 명하다</p>	<p>상이 장차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화성(華城)으로 가려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 날짜를 잡으라고 명하였다.</p>	<p>○上將奉惠慶宮詣華城，命進饌日字涓吉。</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2월 1일 (계축) 5번째기사</p>	<p>정리소(整理所)가 아뢰기를, “혜경궁(惠慶宮)께서 현릉원(顯隆園)에 가실 때에 승지·사관(史官)·내국 제조(內局提調)·병조와 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과 낭관 등으로 분사(分司)를 차려</p>	<p>○整理所啓言：“惠慶宮詣顯隆園時，分承旨、史官、內局提調、兵曹、摠府堂郎，請令吏曹，依例差出。” 教</p>



<p>정리소가 혜경궁 행차의 분사 차출을 아뢰니 그만두도록 하교하다</p>	<p>야 할 터이니, 이조로 하여금 관례에 따라 차출토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행행(幸行)할 때에는 자궁(慈宮)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간소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더구나 자궁의 행차 뒤를 모시고 따라 가려고 하는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분사를 차출하는 일은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p>	<p>曰：“今番幸行時，凡事皆從省損，出於仰體。況慈宮駕後，欲爲陪詣？分司差出，竝除之。”</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2월 1일 (계축) 6번째기사 화성에서 연회를 베풀 때의 음악과 음식 대접, 각종 물력의 조달 등에 대해 명하다</p>	<p>화성(華城)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협률랑(協律郎)의 역할은 계라 선전관(啓螺宣傳官)5792) 이 대행하고, 음악 연주는 장용영(壯勇營)의 군악(軍樂)을 대신 쓰라고 명하고, 금원(禁園)에 행행할 때에 제신(諸臣)에 대한 음식 대접과 군병들에 대한 식사를 공급하면서 규례에 지나치지 않게 하라고 신칙하였다. 이어 노자(路資)는 정리소에서 내주고, 반열에 참여하는 내외의 손님 및 행차를 따르는 궁인(宮人)·여자 악공(樂工) 등의 옷감·말 값[馬貫]·노자와 군병에게 먹이는 데에 드는 물력(物力)도 정리소에서 내주도록 명하였다.</p>	<p>○命華城進饌時，協律郎以啓螺宣傳官代行，鼓樂以壯勇營軍樂代用，申禁園幸時諸臣飯供、軍兵饌具之過式者。仍命盤纏自整理所頒給，參班內外賓及隨駕宮人、女伶等衣資·馬貫·盤纏、軍兵犒饋物力，亦令整理所頒給。</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2월 1일 (계축) 7번째기사 화성의 연회에 노인과 사민에게 줄 술과 쌀을 유수가 마련하도록 명하다</p>	<p>화성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 본부(本府)의 노인에게 술과 사민(四民)에게 나누어 줄 쌀을 미리 유수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정리소로 보고토록 명하였다.</p>	<p>- ○命華城進饌日，本府老人饋酒、四民給米，預令留守，修報整理所。</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경모궁 참배 후 향축 에 친압하며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고 의식 의 예행 연습을 하다</p>	<p>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였다. 향축(香祝)에 친압(親押)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으며 의식의 예행 연습을 하였다.</p>	<p>○甲寅/展拜景慕宮。 親押香祝，省牲器、肄儀。</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8일 (경신) 1번째기사 화성의 궁중 연회 의 식을 예행 연습토록 우의정 채제공에게 명 하다</p>	<p>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명하여 정리소(整理所)의 당상과 함께 화성(華城)에 가서 궁중 연회의 의식을 예행 연습토록 하였다. 이때에 채제공이 화성의 성곽 공사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도 살펴 겸 가 보도록 명한 것이었다.</p>	<p>○庚申/命右議政蔡濟恭與整理堂上，詣華城，肄進饌儀。 時，濟恭總理華城城役，故有兼察往視之命。</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11 일(계해) 1번째기사 화성의 연회에 기로소 와 외방의 대신들도</p>	<p>화성부(華城府)에서 자궁(慈宮)을 위해 연회를 베풀 때 기로소(耆老所)의 대신들도 모두 먼저 나아와 반열에 참여토록 하고 외방에 있는 대신들도 구례(舊例)에 따라 돈유(敦諭)하여 부르라고 명하였다.</p>	<p>○癸亥/命華城府慈宮進饌時，耆老大臣竝令先詣參班， 在外大臣依舊例敦召。</p>

참여토록 명하다		
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15 일(정묘) 3번째기사 화성부의 사민 및 기 아자들에게 쌀과 돈을 주다	화성부(華城府)의 사민(四民) 및 의지할 곳 없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대궐에 서 내린 쌀과 돈을 주었다.	○抄華城府四民及飢民無依者，給內下 米錢。
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20 일(임신) 1번째기사 사민과 기민에게 줄 양식 증당에 쓸 5천 냥을 화성에 내려보내 도록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화성(華城) 행궁(行宮)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사민(四民)에게 쌀을 내려주고 기민(饑民)에게 양식을 지급하기로 한 일은 자궁(慈宮)의 뜻을 몸받아 자궁의 은덕을 알게끔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정리소(整理所)의 경비를 가지고 이 비용에 증당하면 번거롭게 되지야 않겠지만, 이 비용까지 떼어서 준다는 것은 본래의 의도에 벗어나는 일이니, 대내(大內)에서 내린 돈 5천 냥(兩)을 화성부에 내려보내 넉넉하게 주고 먹이도록 하라.”	○壬申/教曰：“華城行宮進饌時，四民 賜米，饑民給糧之舉，出於仰體慈意， 俾知慈恩也。整理所需，雖不煩費於 經用，就此劃給，亦非本意。內下錢 五千兩，下送于華城府，以爲優饋厚飼 之地。”
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22 일(갑술) 1번째기사 원소의 행행에 따른 고유제를 행하고 선농 제에 쓸 향축을 친압 하다	원소(園所)의 행행(幸行)에 따른 고유제(告由祭)를 경모궁에서 직접 행하였다. 환궁하다가 인정전(仁政殿)에 가서 선농제(先農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 을 친압(親押)하였다.	○甲戌/親行園幸告由祭于景慕宮，還 詣仁政殿，親押先農祭香祝。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2월 25 일(정축) 1번째기사 자궁의 가마를 메는 예행 연습을 행하다</p>	<p>자궁(慈宮)의 가마를 메는 예행 연습을 후원(後苑)에서 행하였다. 상이 현릉원(顯隆園)에 행차할 때 여러 날 수고롭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자궁을 직접 모시고 먼저 예행 연습을 한 것이었다. 농산정(籠山亭)에 이르러 행차를 수행한 신하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태백산사고본】</p>	<p>○丁丑/行慈宮駕轎習儀于後苑。上以園幸，將多日勞動，親陪慈宮，先行習儀，至籠山亭，宣饌隨駕諸臣，還內。</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윤2월 1 일(계미) 2번째기사 9일의 화성에서의 행 사 계획을 하교하다</p>	<p>하교하였다. “9일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서 참배드린 다음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가서 자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이어 양로연(養老宴)을 행할 것이다. 상이 성묘(聖廟)에 가서 선성(先聖)을 참배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행궁에 들러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고, 다음날 장대(將臺)에 올라 직접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본 다음 장사(將士)를 먹일 것이며, 16일에 환궁할 예정이다.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잘 알아두도록 하라.”</p>	<p>○教曰：“初九日陪慈宮，詣顯隆園展謁，至華城行宮，進饌于慈宮，仍行養老宴。上詣聖廟，拜于先聖，還至行宮，設科取人，翌日登將臺，親閱城操夜操，犒餉將士，當於十六日還宮，令整理所知悉。”</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윤2월 3 일(을유) 2번째기사 제주 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실은 전운선 5</p>	<p>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옮겨 전운(轉運)해 주는 곡식을 실은 배 5척(隻)이 파선된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탐라(耽羅)에 두번째로 전운해 주는 곡물 1만 1천 석(石)이 또 일제히 그쪽 언덕에 닿게 되어서 먹여주기를 원하는 섬 백성들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겼었는데, 밤에 장계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 나도 모르</p>	<p>○濟州牧使李禹鉉以移轉穀所載船五隻致敗事馳啓，教曰：“耽羅再運一萬一千石穀物之又能齊泊彼岸，庶慰島氓望哺之急，夜見狀本，自不覺蹶然。然以五隻幾百包之臭載，又不覺蹶然，更看結語，監官一名之澹死，尤爲驚惻，惟以近百名沙格之箇箇生還爲大</p>

척이 파선된 일을 치  
계하다

게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가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包)에 달하는 곡식이 못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래졌고, 다시 결론 부분의 말을 보다가 감관(監官) 1명이 익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더욱 놀랍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1백 명에 가까운 사격(沙格)이 개별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은 크나큰 다행이다. 익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백(道伯)을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보살펴 주는 동시에 그 족속을 뽑아 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격들 가운데 신역(身役)을 진 자가 있거든 일체 덜어 주도록 분부하라.

뒤떨어진 5척의 배가 침몰한 원인을 어찌 바람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영운(領運)하는 차원(差員)이 부적격자였다면 전운하기 이전에 벌써 고려했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그 책임은 도백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낮으로 차원의 죄를 청하겠는가. 당해(當該) 도신(道臣)을 먼저 월봉(越俸)토록 하고, 당해 차원에 대해서는 병사(兵使)로 하여금 해변가에 크게 위(威儀)를 펼쳐놓은 다음 그를 잡아들여 엄하게 곤장을 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일깨우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그저께 세번째 조운해 주는 곡물이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를 모르겠기에 묘당으로 하여금 막 관문(關文)을 띄워 목사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는데, 그 목사가 완백(完伯)5804)에게 먼저 보고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번에 특별히 내려보내는 곡물의 양이 목사가 더 청한 숫자보다 많은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뽑아낼 즈음에 균등하게 하지 못한 나머지 혹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걱정은 없겠는가. 세번째 조운해 주는 1만 포의 곡식이 그 해안에 닿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는데, 이를 어찌 처음 조운할 때나 두번째 조운할 때의 심경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향과 축문을 보내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경

幸。 滄水人嚴飭道伯，各別慰恤其家屬，拔薦其族屬，萬死生還沙格等之如有身役者，一竝除減事分付。 落後五隻之沈沒，豈諉之風力乎？ 領運差員之不得其人，未運時固已慮之。 然則其罪道伯當當之，以何顏請罪差員乎？ 當該道臣，爲先越俸，當該差員，令兵使大張威儀於海邊， 拿入嚴棍， 一以慰冤， 一以警惰事分付。 再昨以三運穀物之未知其有裕與不足， 纔令廟堂關問該牧矣。 際見該牧先報完伯之說， 今則始可降心， 況今番特下之數， 過於該牧之加請之數者乎？ 然抄拔之際， 能免不均， 而或至於填壑之患乎？ 三運萬包未泊之前， 予所一念懸懸， 豈比於初運再運之時乎？ 非不欲更送香祝， 虔禱利涉， 而數近於瀆， 瀆則易怠。 今方反求之方寸， 以祈心香之遠格， 令廟堂將此傳教， 別關嚴飭於道伯牧倅， 雖一粒一機之微， 在島民可敵千金， 則若以九百包穀之臭載本牧， 所請之數外， 不爲代送， 豈朝家本意？ 令完伯準此數， 鱗次入送。 島則一也， 珍島大同， 雖已減斗， 當此春窮， 勢難督捧， 限秋成停退， 以紓一分民力。”

	<p>건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만, 자주 하면 번독(煩瀆)스럽게 되기가 쉽고 번독스럽게 되면 소홀하게 대하기 십상이니, 지금은 내 마음속에 돌이켜 구함으로써 나의 심향(心香)이 멀리까지 이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전교를 가지고 별도로 도백과 목사에게 관문을 띄워 엄히 신칙토록 하라.</p> <p>날알 하나 기구 하나라도 섬 백성들에게는 천금(千金)과 맞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만약 9백 포의 곡식을 못쓰게 만들었다 하여 본 목사가 요청한 수량 이외의 다른 곡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조정의 본의이겠는가. 완백으로 하여금 이 수량에 맞춰 차례로 들여보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섬의 사정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진도(珍島)의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감해주도록 하였다마는, 이런 춘궁기(春窮期)를 당하여 형세상 독촉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추수 때까지 연기해 주어 조금이라도 백성의 힘을 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윤2월 10일(임진) 1번째기사 사근의 행궁에서 점심을 들고 화성의 행궁에 머물렀는데 비온 것을 기뻐하다</p>	<p>-</p> <p>사근(肆勤)의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화성(華城)의 행궁에 머물렀다. 이날 비가 왔는데, 험한 길이 나오기만 하면 상이 번번이 말에서 내려 자궁(慈宮)의 가마 앞으로 나아가 안부를 묻곤 하면서 옷이 비에 젖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저녁 때 유여택(維與宅)의 집에 머물렀는데, 시신(侍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p> <p>“오늘 온 비에 군병들의 옷이 젖은 것은 민망한 일이다마는, 이번의 행차야말로 지극히 성대한 거조이고 이 예(禮)야말로 크나큰 의절(儀節)이니, 일마다 완전히 원만하게 되기만을 구할 필요는 없다. 잠깐 비가 왔다가 바로 개면서</p>	<p>○壬辰/晝停于肆觀行宮，駕次華城行宮。是日雨，凡遇路險處，上輒下馬，進慈宮駕轎前問候，不覺御衣之沾濕。夕次維與宅，顧謂侍臣曰：“今日之雨，軍兵沾濕雖悶，此行至盛學也，是禮大儀節也，事事不必求十分圓滿。乍雨旋晴，以清蹕路，庸何傷乎？況田事將始，畦塍霑潤，豈非農夫之慶耶？”</p>

	<p>앞길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구나 농삿일이 시작될 즈음에 토지를 적서 주었으니 어찌 농부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윤2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화성의 성묘를 참배하고 사서 삼경 및 노비를 내려주다</p>	<p>화성(華城)의 성묘(聖廟)를 참배하고 새로 간행한 사서(四書) 삼경(三經) 및 노비를 내려주었다.</p>	<p>○癸巳/謁華城聖廟， 賜新印四書三經及臧獲。 【태백산사고본】</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윤2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봉수당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다</p>	<p>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하루 전에 상침(尙寢)이 소속 인원을 이끌고서, 자궁(慈宮)의 자리를 행궁(行宮)의 내전(內殿) 북쪽 벽에 남쪽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인안(印案)을 자리 동쪽에 설치하고 향안(香案) 두 개를 앞 기둥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궁의 자리 동쪽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섬돌 위에 북쪽을 향하게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내전 안쪽 한중앙에 북쪽을 향해서 욱위(褥位)를 설치하였다. 전찬(典贊)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簾] 안쪽에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오른편과 왼편에 설치하고, 외위(外位)를 뜰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또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 바깥쪽 좌우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좌우에 설치하면서 북쪽을 위로</p>	<p>○乙未/御奉壽堂，進饌于惠慶宮。前一日，尙寢帥其屬，設慈宮座於行宮內殿北壁南向，印案於座東，香案二於前楹左右。設御座於慈宮座東，拜位於階上北向，褥位於殿內當中北向。典贊設內外命婦侍位於前楹簾內，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外位於庭中，俱北向相對。又設儀賓、戚臣侍位於前楹簾外左右，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北上相對。典儀設陪從百官宣饌位於中陽門外，東西，北上相向，拜位於道之東西，北向相對。引儀設儀</p>

	<p>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p> <p>전의(典儀)가 모시고 따라온 백관들에게 음식상을 차려 줄 자리를 중앙문(中陽門)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길의 서쪽에 북쪽을 향해 서로 대칭되도록 설치하였다. 그리고 인의(引儀)가 의빈과 척신의 외위(外位)를 중앙문 밖에 설치하고, 모시고 따라 온 백관의 외위를 좌익문(左翊門) 밖에 설치하였다.</p> <p>이날에 이르러 여관(女官)이 사찬(司贊)·전빈(典賓)·여관의 자리를 받을 드리운 안쪽에 설치하였는데 전찬은 남쪽으로 조금 뒤에 있게 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좌통찬(左通贊)·우통찬(右通贊) 및 치사(致詞)를 대신 읽을 여집사의 자리를 섬돌 사이에 설치하고 찬창(贊唱)의 자리는 그 남쪽으로 조금 뒤에 설치하였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뒤 모두 북쪽을 위로 삼게 하였다.</p> <p>또 악장(樂章)을 선창(先唱)하고 후창(後唱)하는 여악공(女樂工)의 자리를 발의 바깥쪽으로 북쪽을 향하게 설치하고, 여집사 및 정재(呈才)5808) 담당 여악공의 자리를 동쪽과 서쪽 모서리의 섬돌 부근에 설치하였는데, 여집사는 좌우로 나뉘어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고 여악공은 북쪽을 향하게 하면서 서로 대칭되게 하였으며 박자를 맞추는 여악공은 또 그 앞쪽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여집사와 여악공의 외위(外位)를 뜰 한복판에 장막으로 막아 설치하고, 악공의 자리를 장막 밖에 설치하였다.</p> <p>여관이 자궁의 술그릇 탁자를 앞 기둥의 발을 드리운 안쪽에서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상의 술그릇 탁자를 자궁의 술그릇 탁자의 동쪽 앞에 설치하고, 명부(命婦) 및 의빈(儀賓)·척신(戚臣)의 술그릇 탁자를 시위(侍位) 남쪽에 설치하였다.</p> <p>또 꽃을 바칠 때 올려놓는 탁자를 발 안의 동쪽에 설치하고, 휘건함(揮巾函)을 올려놓은 탁자를 그 다음에 설치하고, 꽃을 흩뿌리는 소반을 올려놓은 탁자를 발 바깥의 서쪽에 설치하고, 꽃병을 올려놓은 탁자를 섬돌 위 동쪽과 서</p>	<p>賓、戚臣外位於中陽門外，陪從百官外位於左翊門外。至是日，女官設司贊、典賓、女官位於簾內，典贊在其南稍後。女執事設左右通贊及代致詞女執事位於階間，贊唱在其南稍後分東西，俱北上。又設女伶先後唱樂章位於簾外北向，女執事及呈才女伶位於東西偏階，女執事分左右，北上相向，女伶北向相對執拍，女伶又在其前，女執事、女伶外位於庭中隔帳，工人位於帳外。女官設慈宮壽酒亭於前楹簾內近南，御酒亭於壽酒亭之前在東，命婦及儀賓、戚臣酒卓於侍位之南。又設進花盤卓於簾內在東，揮巾函卓次之，散花盤卓於簾外在西，花樽卓於陞上東西，致詞案於御拜位之右。時至，整理大臣以下具戎服督諸衛，陳列於殿門外庭，儀仗於殿庭左右，繖扇、青蓋、紅蓋、旌節、鳳扇、雀扇各二於前楹簾外東西。前三刻，女官、女執事、女伶等各服其服，就外位，少頃各就位。整理使陳鼓樂於庭中帳外，儀賓、戚臣、陪從百官以戎服，儒生以青衿服，各就外位。前二刻，內外命婦各具禮服，就外位。引儀分引陪，從</p>
--	--	--



쪽에 설치하고, 치사(致詞)를 올려놓은 상을 임금의 배위(拜位)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때가 되자 정리소의 대신 이하가 용복(戎服)을 갖추어 입고 제위(諸衛)를 독촉하여 내전의 문 바깥쪽 뜰에 벌여 세웠으며, 내전의 뜰 왼쪽과 오른쪽에 의장(儀仗)을 설치하였다. 산선(繖扇)·청개(靑蓋)·홍개(紅蓋)·정절(旌節)·봉선(鳳扇)·작선(雀扇)을 각각 두 개씩 앞 기둥의 발 바깥쪽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행사 시작 3각(刻) 전에 여관·여집사·여악공 등이 각기 복장을 갖추고 외위(外位)로 나가 있다가 조금 뒤에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갔다. 정리사(整理使)가 뜰 한복판의 장막 바깥쪽에 악대(樂隊)를 벌여 세웠다. 의빈·척신·수행한 백관들은 용복 차림으로, 유생들은 청금(靑衿) 복장으로 각각 외위에 나아갔다.

행사 시작 2각 전에 내명부와 외명부가 각기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외위로 나아갔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행사 시작 1각 전에 여관 등이 모두 내합(內閣)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조금 뒤에 또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자궁이 예복 차림으로 나오자 여관이 앞으로 인도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는데, 자리에 오른 다음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자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내합(內閣)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대기하셔야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했다. 여관이 ‘재배(再拜)’라고 말하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국궁(鞠躬)’ ‘재배’ ‘흥(興)’ ‘평신(平身)’이라고 외치는 데에 따라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히고 두 번 절을 하고 일어나고 몸을 펴니 음악이 멎었다. 여관

百官入就拜位。前一刻，女官等俱詣內閣。女官跪，贊內嚴，少頃又跪，贊外備。慈宮具禮服，女官前導，樂作《與民樂令》，既陞座，鑪煙升，樂止。女執事詣內閣跪，啓中嚴。女官引內外命婦，入就拜位。女官曰再拜，樂作《洛陽春曲》。女官唱鞠躬、再拜、興、平身，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樂止。女官引內外命婦，各就侍位。女執事引儀賓、戚臣，入就拜位。女執事跪，啓外辦。上具戎服出，樂作《與民樂令》。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樂止。樂作《洛陽春曲》，上鞠躬、再拜、興、平身，樂止。上跪。女官唱進揮巾，整理使詣帳外進巾。樂作《與民樂令》，內侍傳捧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樂止。進饌案，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進花，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上俯伏、興、平身，女伶二人進止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長樂章》曰：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春長樂樂酌斗，華

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각각 시위(侍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상이 용복(戎服) 차림으로 나오자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집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연주를 그쳤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혔다가 절을 두 번 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휘건(揮巾)을 올리라고 외치니 정리사가 장막 밖으로 가서 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내시가 휘건을 전해 받아 여관에게 주었는데 여관이 전해 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음악이 그쳤다.

음식상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고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꽃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다 올리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폈다. 여악공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발 바깥쪽 한복판에 멈춘 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쪽을 향해 서서 어제(御製)인 장락장(長樂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성대한 연회는 태평 시대에나 있는 법, 오늘날 태평 시대의 기상이 넘쳐 흐르도다. 그 기상을 묻노니 어떤 것인가. 노인성(老人星)이 중천에 떠 밝게 빛나네. 봄철 장락궁(長樂宮)에 노인들 모여들고, 화봉인(華封人) 5809) 처럼 축하하러 부인들 참석했네. 긴긴 봄날 장락궁에서 술잔 올리며, 세 차례나 축원을 올리웁니다. 자손에게 끼쳐주신 어머니 은혜, 그 무엇이 이보다 높으리까. 복록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며 찬란하게 빛나옵니다. 함지(咸池)의 북소리에 운문(雲門)의 거문고, 신선주(神仙酒) 따라 올리면서 해마다 축원하오리다.”

하였다.

祝至三。壽母翼子詒孫，功何嵬穰穰？福祿光輝。咸池鼓，雲門琴，玉漿瓊液年年斟。

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至壽酒亭南，北向立。樂作《與民樂令》，女官酌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置于座前，上俯伏、興、平身，樂止。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上跪，女執事進上拜位前，北向跪，代致詞曰：

國王諱恭遇乾隆六十年閏二月十三日。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嗣京室徽，膺海屋壽，福流文孫，慶邁魯母。恭陪于華，敬斟以斗，喜深知年，頌騰如阜。於樂斯讌，萬品咸圍，迎春之和，答天之祐。萱暉彌永，萑祿誕受，太平萬億，無疆悠久。不勝慶忭之至，謹上千千歲壽。【藝文提學李秉鼎製進。】

上俯伏、興、平身，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上跪。女官進慈宮座前跪曰：“宣旨。”俯伏、興、西向跪。宣旨曰：“與殿下同慶，”慈宮舉爵，樂作《與民樂》《千歲萬歲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관이 이어 인도해서 자궁의 술그릇을 놓은 남쪽까지 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서 상에게 바치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술잔을 넘겨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 이르니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간 뒤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으니 여집사가 상의 배위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은 뒤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는데, 그 내용에,

“국왕 모(某)는 삼가 건륭(乾隆) 60년 윤2월 13일의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효강 자희 정선 휘목 혜빈(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 저하(邸下)께서는 우리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시어 장수하는 복을 받으셨으니 복록은 자손에게 흘러 넘치고 경사로움이 어머님에게 미쳤습니다. 삼가 축하하는 자리에 모시고서 경건히 술잔을 따라 올리오니 어머님의 연세를 아는 이 기쁜 날 칭송하는 소리 높이높이 울려 퍼집니다.

아, 즐거운 이 잔칫날 만물이 모두 다 은혜를 입고, 화창한 봄날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어머님은 더욱 오래 사시어 크나큰 복록 받을 것이며 태평 시대는 끝없이 이어져 가리이다. 경하하는 마음 누를 길 없어 삼가 만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 이병정(李秉鼎)이 지어 올렸다.】

상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펴자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이어 인도하여 전각 안의 옥위(褥位)로 나아갔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분부를 내리소서.’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이에

曲》，女官進受虛爵，復於壽酒亭，樂止。上俯伏、興、平身，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至拜位。上跪，女執事唱三叩頭，上三叩頭。唱山呼，上拱手加額曰千歲，唱山呼，曰千歲，唱再山呼，曰千歲。凡呼千歲，命婦及女官以下，皆於立位齊聲應之。樂作《洛陽春曲》，上俯伏、興、再拜、興、平身，樂止。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西向立，女執事分引儀賓、戚臣各就位。上跪，整理使進巾，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次進饌案，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女官設內外命婦饌卓，女執事設儀賓、戚臣饌卓。女官、女執事、散花執事者宣酒饌，散花于百官，百官離位飲訖四拜，引儀引陪從百官出。進湯于慈宮，傳捧如進饌案儀。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第一爵，奏《獻仙桃》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女官導上詣壽酒亭，女官酌壽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女官唱跪，上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慈宮舉酌進訖，以爵授女官。女官跪

분부를 내리기를 ‘전하와 경사를 함께 하겠다.’ 하고 자궁이 술잔을 드니 악대가 여민락의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그릇 탁자 위에 다시 놓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가 외치기를 ‘세 번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 또 외치기를 ‘천세(千歲)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손을 마주 잡고 이마 위에 올리며 ‘천세’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세’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거듭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천세’라고 하였다. 천세를 부를 때마다 명부(命婦)와 여관(女官) 이하가 모두 선 자리에서 일제히 소리쳐 호응하고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그 뒤를 이어 인도하여 내전 안 옥위(褥位)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자 정리사(整理使)가 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수건을 바치고 나니 연주가 그쳤다.

음식상을 차례로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의 음식상을 차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의 음식상을 차렸다. 여관과 여집사와 산화(散花)를 담당하는 자들이 백관에게 술과 음식을 차리고 꽃을 뿌렸다. 백관이 자리에서 나와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네 번 절을 하였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을 인도하여 나왔다.

자궁에게 탕(湯)을 올렸는데, 전해 받아 올리는 절차는 음식상을 올릴 때의 의례와 동일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다가 탕을 다 올리

受爵，詣上酒亭，以盞酌酒，進于慈宮，慈宮受盞授女官，女官跪受盞進于上，上跪受盞，舉飲訖，仍執盞，俯伏、興、平身，至酒亭，女官跪受盞，上還就座。行酒，女官行內外命婦酒，女執事行儀賓、戚臣酒。進湯于上，傳捧如上儀。女官、女執事分供湯于內外命婦及儀賓、戚臣，呈才訖，樂止。

第二爵，奏《金尺》呈才、受明命荷皇恩呈才，樂作《與民樂》《清平樂》，女官引進命婦，詣壽酒亭南，北向立。女官以爵酌壽酒，授命婦，命婦授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命婦俯伏。慈宮舉爵，女官受虛爵，以授命婦，命婦受爵，復於壽酒亭，女官引命婦還復位。

【第三爵至七爵，命婦及儀賓、戚臣中，稟承慈旨，以次進爵如上儀。儀賓、戚臣則進爵于慈宮，次詣酒亭，酌酒進于上，上舉爵飲訖授之，還捧復于酒亭而退。】進湯行酒，如第一爵儀。呈才訖，樂止。第三爵，奏《拋毬樂》呈才、《舞鼓》呈才，樂作《與民樂》《五雲開瑞朝曲》，呈才訖，樂止。第四爵，奏《牙拍》呈才、《響

자 연주를 그쳤다. 첫번째 술잔을 올릴 때 ‘선도(仙桃)를 바친다[獻仙桃]’는 정재(呈才)를 연희(演戲)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 상에게 올리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외치기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렸다. 자궁이 술잔을 들어 다 마신 다음에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에 상의 술 탁자 앞으로 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자궁에게 바쳤다. 자궁이 술잔을 받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 상에게 올렸다. 상이 무릎꿇고 술잔을 받아 다 마신 다음 잔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술 탁자 앞에까지 오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았다.

상이 자리로 돌아가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에게 술잔을 돌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에게 술잔을 돌렸다. 상에게 탕을 올렸는데 건네받은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여관과 여집사가 분담하여 내명부·외명부 및 의빈·척신에게 탕을 공급했다. 정재(呈才)의 연희가 끝나면서 연주가 멎었다.

두번째 잔을 올릴 때 ‘금척(金尺)’이라는 정재와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受明命荷皇恩]’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청평악(淸平樂)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명부(命婦)를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남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술잔에 따라 명부에게 주었다.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명부가 자리에 엎드렸다. 자궁이 술잔을 든 뒤 여관이 빈 술잔을 받아 명부에게 주니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 탁자 위에 다시 놓았다. 여관이 명부를 인도하

鉞》呈才，樂作鄉唐交奏《千歲萬歲曲》，呈才訖，樂止。第五爵，奏《鶴舞》呈才，樂作《與民樂》《惟皇曲》，呈才訖，樂止。第六爵，奏《蓮花臺》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呈才訖，樂止。第七爵，奏《壽延長》呈才，樂作《與民樂》《夏雲峯曲》，呈才訖，樂止。處容舞進，樂作鄉唐交奏《井邑樂》《與民樂》，尖袖舞進，奏《洛陽春曲》，呈才訖，樂止。女伶二人進至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觀華章》曰：慈德之純，厚載難名。默運弘慈，佑啓太平。百祿是適，其至如川。子孫振振，吉慶年年。如斗之邵，如嵩之高。瑤冊紀瑞，春酒燕毛。於休慈德，撫茲花甲。時觀于華，物采匝匝。樂此新邑，謠頌戶增。維萬維億，日月恒升。唱訖，降復位。女官進慈宮前，又進上前撤案。樂作《與民樂慢》，女官及女執事撤命婦及儀賓、戚臣卓，樂止。女官唱可起，女官導上出至簾外，女執事前導，至拜位。女執事引儀賓、戚臣，降就拜位，樂作《洛陽春

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세번째 잔부터 일곱번째 잔까지는 명부와 의빈·척신 중에서 자궁의 유지(有旨)를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는데, 그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의빈과 척신은 자궁에게 잔을 올린 다음에 상의 술 탁자로 가서 술을 따라 상에게 올렸는데, 상이 술잔을 들어 마신 다음 술잔을 주면 다시 술잔을 받아 술 탁자 위에 놓고 물러갔다.】 탕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는 절차는 첫번째 잔을 올렸을 때의 의례와 같았다. 정재가 끝나면서 음악도 멈췄다.

세번째 술잔을 올릴 때 ‘포구락(抛毬樂)’이라는 정재(呈才)와 ‘무고(舞鼓)’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與民樂)의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네번째 술잔을 올릴 때 ‘아박(牙拍)’이라는 정재와 ‘향발(響鉞)’이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가며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다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학무(鶴舞)’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유황곡(惟皇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연화대(蓮花臺)’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일곱번째 술잔을 올릴 때에 ‘수명을 연장한다[壽延長].’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하운봉곡(夏雲峰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처용무(處容舞)를 추자 악대가 정읍악(井邑樂)과 여민락을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 연주하였다. 침수무(尖袖舞)를 추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악공(女樂工) 두 사람이 나와 발[簾] 밖의 한복판에 이르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북쪽을 향해 선 다음 상이 지은 관화장(觀華章)을 불렀는데, 그

曲》，上鞠躬、再拜、興、平身，樂止。女執事導上出，樂作《與民樂令》，至閣內，樂止。女執事分引儀賓、戚臣出，女官分引內外命婦，還就拜位，樂作《洛陽春曲》，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樂止。女官進當慈宮座前，跪白禮畢，女官分引內外命婦出。慈宮降座，樂作《與民樂令》，還至閣內，樂止。上親定進饌儀，凡七則。

	<p>내용에,  “자궁의 덕 순일함이며, 대지(大地)와 같아 표현하기 어려워라. 말없이 은혜 널리 베푸심이며, 태평 시대 열리게 도와주셨도다. 온갖 복록이 모여들이며, 마치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다. 자손들 갈수록 번창함이며, 해마다 경사가 이어지도다. 북두성마냥 밝으심이며, 숭산(嵩山)처럼 높고 높도다. 보책(寶冊)에 상서(祥瑞)를 기록함이며, 봄날 잔치 열어 술을 따르도다. 아, 자궁의 덕 아름다워라, 이번에 회갑을 맞으셨도다. 화창한 이 시절 완상(玩賞)함이며, 만물이 어울려 화락하도다. 새로 지은 고을에서 기쁨을 누림이며, 집집마다 노랫소리 울려 퍼지네. 떠 오르는 저 해와 달처럼 천년토록 만년토록 오래 사소서.”</p> <p>하였다. 여악공이 노래를 마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관이 자궁의 앞에 나아가고 또 상의 앞에 나아가서 상을 치웠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다. 여관 및 여집사가 명부 및 의빈·척신의 상을 치웠다. 음악 연주가 그쳤다.</p> <p>여관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해 내려와 배위로 나아가게 하였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나가니 악대가 여민락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함문(閤門) 안에 이르니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p> <p>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도로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니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혀 두 번 절을 하고 몸을 펴니 연주를 멈췄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 자궁이 자리에서 내려오자 악대가 여민락령을 연주하고, 다시 함문 안에 이르</p>	
--	---	--

	<p>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직접 연회를 베푸는 의절(儀節)을 정하였는데 모두 7칙(則)으로 되어 있었다.</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윤2월 14일(병신) 1번째기사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기민에게 죽을 먹여주다</p>	<p>신평루(新豐樓)에 거동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눠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먹여주었다. 【수원부의 사민 5백 39구(口)에게 미곡 1백 98석(石) 10두(斗)를 주고, 진휼(賑恤) 대상인 백성 4천 8백 13구에게 미곡 1백 69석 9두(斗) 7승(升)과 소금 12석 12두 9승 9합(合)과 죽을 쑤 미곡 9석 9두 2승과 미역 9백 25립(立)과 간장 1석 12두 7승 4합을 주었다.】</p>	<p>○丙申/御新豐樓， 賜四民米、饋飢民粥。 【水原府四民五百三十九口， 米一百九十八石十斗， 賑民四千八百十三口， 米一百六十九石九斗七升、鹽十二石十二斗九升九合、粥米九石九斗二升、甘藷九百二十五立、艮醬一石十二斗七升四合。】</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윤2월 15일(정유) 1번째기사 혜경궁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리다</p>	<p>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렸다. 사근(肆覲)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밤에 시흥(始興) 행궁에서 유숙하였다.</p>	<p>- ○丁酉/上陪惠慶宮回鑾， 晝停于肆覲行宮， 夕次始興行宮。</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4월 13일(계사) 1번째기사 행궁을 보수하는 물력을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이라 이름하여 마</p>	<p>비변사가 아뢰기를, “행궁(行宮)을 보수하는 물력(物力)을 응당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행(幸行)하실 때의 포진(鋪陳)5864) 이나 도배(塗襜) 등의 일을 일단 탁지(度支)5865) 에 맡기지 않은 이상 본부(本府)에서 거행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성첩(城堞)을 수선하고 군영에 보급하는 것도 모두 여</p>	<p>○癸巳/備邊司啓言：“行宮修補物力， 在所當設， 而幸行時鋪陳、塗襜等事， 既不付度支， 則當自本府舉行。 外此城堞之修繕， 營樣之補給， 皆從此出， 則區劃穀物， 就本司管穀中， 以正穀一</p>



<p>런하도록 하다</p>	<p>기에서 내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일정량의 곡물을 구획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p> <p>본사(本司)에서 관장하는 곡물 중에서 정곡(正穀) 1만 석(石)과 피곡(皮穀) 2만 석을 기준으로 하고 그곳의 토산물과 곡총(穀總)5866)에 따라 적당히 마련하여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이라고 이름붙인 뒤 팔로(八路)에 나누어 배치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조적(糶糶)하여 모곡(耗穀)을 취하는 방도나 이를 팔아 수요에 대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로 하여금 본사와 왕복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낸 뒤 영구히 준행케 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p>	<p>萬石、皮穀二萬石爲準，隨其土產與穀總，酌量磨鍊，名曰華城行宮整理修城穀，分排八路，而若其糶糶取耗之方，發賣需用之道，請令行宮整理使，往復本司，成出節目，永久遵行。允之。</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4월 15일(을미) 1번째기사 비변사가 화성 행궁 정리수성곡의 조적 절목을 올리다</p>	<p>비변사가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의 조적 절목(糶糶節目)을 올렸다.</p> <p>【절목은 다음과 같다.“화성에 유수(留守)를 두고 나서 또 정리사(整理使)를 겸하게 한 것은 장차 행궁의 수리를 위임하고 성지(城池)의 수선을 책임지우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재력에 대해 아직 조치해 주지 못한 결과 형식과 내용이 서로 부응하지 못하니 사체(事體)로 볼 때 미안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은 건물이 낙성되고 누각과 망루가 완성을 본 뒤이니 더더욱 제때에 강구하여 억만년토록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화성의 일과 관련해서는 경비를 축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성상의 의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칸 되는 건물을 짓거나 몇 천 보(步) 되는 곳을 뚫고 쌓아올릴 때 일찍이 조금이라도 대농(大農)의 자분을 가져다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행(幸行)하실 때의 접대 비용이나 유생</p>	<p>○乙未/備邊司進華城行宮整理修城穀糶糶節目。【節目：華城之設置留後，又兼整理使者，將以任行宮葺理，責城池修繕，而所需財力，尙未措置，名實不副，事體未安。顧今棟宇奏功，樓櫓就完之後，尤宜及時講究，俾作億萬年鞏固悠久之圖，而竊伏念，華城凡事之不煩經費，聖意有在。幾百間營建，累千步鑿築，曾無纖毫之取資於大農，而以至幸行時供億、儒武試賞格，亦皆別爲蓄貯，隨時入用，則乃於葺理修繕之一事，反致因循於有司之辦備，牽連</p>

과 무인을 시험보이고 나서 상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별도로 비축해 두었다가 수시로 들여와 쓰곤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행궁을 수리하고 성지를 수선하는 하나의 일로 인해 그만 거꾸로 그동안 해오던 데에 따라 유사에게 마련하여 쓰도록 하거나 이웃 고을의 창고에서 끌어다 쓰도록 한다면 성상의 뜻을 받드는 도리가 결코 못될 것입니다. 삼가 품(稟)하여 떼어주기로 결재를 받은 3만 석의 곡물을 팔로(八路)의 주현(州縣)에 배정한 뒤 그 모곡(耗穀)을 취하여 돈으로 만들고 창고를 설치해 보관하게 하면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가령 곡물을 조적(糶糶)하고 돈으로 만들어 주선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정곡(正穀) 1만 석과 피곡(皮穀) 2만 석을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곡물 중에서 떼어주어 팔로에 골고루 나눠주되 육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은 물론이고 주현의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있게 배정한 뒤 그 곡식을 내주고 받아들이면서 모곡(耗穀)을 취하는 한편 이를 내다 팔아 수요에 대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이 곡식은 그 의미가 소중할 뿐더러 수요 역시 모두 정수(定數)가 있으니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늘거나 감축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정퇴(停退)시키거나 견감(蠲減)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은 절대로 거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대로 받아들인 상황을 매년 말에 비변사에 보고하고 화성부에 공문을 발송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내다 팔 즈음에 차인(差人)이 왕래하다 보면 자연히 폐단이 생길 것이니, 이 곡식에 대해서는 본부(本府)의 교리(校吏)를 보내지 말고 각기 그 도의 감영에서 주관하여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읍(列邑)에서는 내다 파는 데에 따라 편리할 대로 감영에 수송하고 태가(駄價)를 마련해서 모두 모아 화성부에 옮겨 납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 이 곡물을 설치한 것은 지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 돈으로 만들어 올려보낸 뒤에는 별도로 창고 하나에 쌓아두고 엄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於隣邑之倉廩者，甚非所以仰體之道。謹稟睿裁，劃得三萬石穀物，分置八路州縣，取耗作錢，設庫典守，以爲需用之地，而若其穀物糶糶，錢貨拮据等條件，別成節目，永久遵行。正穀一萬石、皮穀二萬石以備局句管劃出，均排於八路，而六鎭、三甲外，隨其州縣大小，差等分置，以爲斂散取耗，發賣需用之地。一，此穀不但有所重，且其需用，皆有定數，不可以豐歉，有所盈縮，雖值災歲，切勿舉論於停減之中，而準捧形止，每歲末修報備邊司，文移華城府。一，發賣之際，差人往來，自有弊端。此穀則勿送本府校吏，令各其道監營，主管舉行，而列邑則隨其發賣，從便輸送於監營，磨鍊駄價，都聚運納於華城府。一，今此設置所關至重，作錢上來之後，別峙一庫，嚴其典守。務從稱當，節其需用，以防滲洩之弊，期有蓄貯之效，而其用遺在數爻，每於歲末枚舉，修成冊報于備局及內營。一，行宮所御器用、什物，塗褻鋪陳、屏帳等屬，勿論大小，從前戶曹舉行者，竝爲停止，自本府量其容入，專擔措備，而新備及改備年限，一

리고 가능한 한 쓸 데에만 쓰면서 수요를 절약하여 새어나가는 폐단을 막음으로써 기필코 저축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쓰고 남은 것들은 그 수요를 매년 말에 낱낱이 기록하여 장부를 만든 뒤 비변사와 내영(內營)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기용(器用)·집물(什物) 및 도배하고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치는 일 등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종전에 호조에서 거행하던 것들을 일체 정지시키고 본부(本府)에서 가능성있는 수입을 헤아려 전담해서 조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하거나 바꾸는 연한(年限)에 대해서는 일체 정해진 규례(規例)를 따라 시행하게 함으로써 어긋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각종 물품은 원래 공가(貢價)와 시가(時價)가 다른 만큼 참작하여 절충해서 융통성있게 가격을 정해야 할 것인데, 각각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미리부터 경영하여 조치해 둬으로써 써야 할 시기를 당하여 균색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을 수리하거나 성첩(城堞)을 보수할 때에는 해야 할 일이 생기는 대로 장계로 보고하거나 연석(筵席)에서 품(稟)한 뒤 회답을 기다려서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히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감히 연한을 넘기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유수가 직접 집행하여 단속하면서 가능한 한 절약하게 하고 혹시라도 지나치게 쓰는 폐단이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1년에 들어올 수입을 적당히 헤아려 마련해서 3천 냥(兩)은 행궁의 물력에 소속시키고 2천 냥은 성역(城役)의 물력에 소속시키되, 수리하고 보수할 즈음에 피차간에 족하고 부족한 상황을 살펴서 서로들 조정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한쪽에만 편중되게 쓰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돈으로 환산되는 원래의 숫자가 일단 일정하게 매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치도 대부분 헛수를 띄워 거행하게 되어 있고 보면 지출한 금액을 빼고도 남는 돈이 자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숫

從定例施行，俾無違越之弊。一，諸般物種，自有貢價時直之不同，參量折衷，推移定價，各隨年限久近，預先經紀措備，俾無臨時窘束之弊。一，行宮葺理、城牒修補等事，狀聞或筵稟，待回下舉行，雖微細事，毋敢擅便，亦無敢違越年限，而工役之費，該留守親執句檢，務從節約，毋或有恣濫之弊。一，一年應入酌量磨鍊，三千兩屬之行宮物力，二千兩屬之城役物力，當其葺理修繕之際，察其彼此足不足，互相推移，毋或有偏用之患。一，作錢元數，既有每歲恒定，諸種措備，且多間年舉行，則其所用下，自有剩餘。此則計數除置，消詳入錄於歲末成冊。一，園所丁字閣、碑閣修理及紅箭門內外公廡，依前自筵千庫舉行，亦勿混用於修理物力。一，每十年行宮大修理，別劃整理物力舉行，本庫物力，勿爲取用，仍爲全數會錄。一，物種價直、修補年限，作爲定規，別成冊子，頒之本府，以爲永久遵行，毋敢違越之地。一，行宮修理及城役修補時，監董編、裨及校吏、工匠姓名，詳細錄置，以爲日後考勤慢勸懲之地。】

	<p>자를 계산해서 제해 두었다가 소상하게 기록하여 연말에 장부로 작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원소(園所)5867)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의 수리 및 홍전문(紅箭門) 내외의 공해(公廩)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완천고(筓千庫)에서 거행하게 하되 역시 수리하는 물력(物力)과는 뒤섞여 쓰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10년마다 행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되 정리소(整理所)의 물력을 따로 책정하여 거행하고 본고(本庫)의 물력은 가져다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전체 숫자를 회록(會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물품 가격과 수리 및 보수한 연한(年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따로 책자를 만든 뒤 이를 본부에 내주어 영구히 준행토록 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을 수리하고 성지를 보수할 때 감독한 편장(編將)·비장(裨將) 및 교리(校吏)·공장(工匠)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해 뒀으므로 뒷날 근무 태도를 상고해 장려하고 징계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4월 25일(을사) 1번째기사 경모궁을 참배하고, 제사에 돼지와 염소를 통용하고 육장을 쓰도록 하고하다</p>	<p>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였다. 재전(齋殿)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였다. “외방에서 제품(祭品)을 양 대신에 염소를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단생(單牲)인 상황에서 제품을 대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보면 염소나 돼지를 가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뒤로는 있는 데에 따라 편한 대로 통용토록 하라. 또 만약 염소와 돼지를 제품으로 함께 쓸 때에는 사슴 식혜 대신에 또 육장을 쓰도록 선조(先朝) 때 분부받은 사항을 준수토록 하라. 그리고 두 그릇을 피하는 법의(法意)를 돌아보지 않은 채 돼지고기 두 가지를 쓰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거나 혹은 닭고기로 대용(代用)하는 곳이 있다 하는데, 이 경</p>	<p>○乙巳/展拜景慕宮，次對于齋殿。 教曰：“外方祭品之以羔代羊處，既是單牲，則代品一也，羔豕何擇？此後隨其所有，從便通用。 又若羔豕并用之祭品，謹遵先朝受教中鹿醢代，又用醢醢。 不顧二器之嫌之法意，用豕二事定式，或有代用鷄牲處云，此則仍舊，牲品易具。 事體不苟，監憲而師古，可謂一舉而兩便，令廟堂分付諸道。”</p>

	<p>우는 옛날의 제품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갖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면 사체(事體)도 구차스럽게 되지 않을 뿐더러 법 정신에도 맞고 옛 법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분부토록 하라.”</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6월 4일 (계미) 2번째기사 이조 판서 윤시동이 울릉도의 산삼 채취시기를 앞당길 것을 아뢰다</p>	<p>이조 판서 윤시동(尹著東)이 아뢰기를, “울릉도는 본래 산삼(山蔘)이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한 해 걸러 산삼을 찾는 일이 늘 3,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캐낼 절기가 아니라서 번번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곤 합니다. 내의원의 의원들 모두 그 산삼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말하는 만큼 괜찮은 물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여 버린 물건 취급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애석합니다. 한 번 시험삼아 캐내게 하더라도 손해될 것은 없으니, 내년 봄에 찾아내기로 예정된 일을 금년 6, 7월로 앞당겨 정한 뒤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채삼군(採蔘軍) 약간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채취하게 했으면 합니다. 거행할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해영(該營)에 문의하면 보고해 올 것이니, 비국에서 편할 대로 통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吏曹判書尹著東啓言：“鬱陵島自是產蔘之地，而間年搜討，每在三四月間，故採非當節，便作無用之物，而局方諸醫皆以爲蔘品甚好云，明知其可用，而因循等棄，誠爲可惜，一番試採，亦無所損。明春搜討之當次，以今六七月進定，使三陟營將領率略干採蔘軍，入去採取。其舉行事例，則已問于該營，將有報來者，請自備局從便知委。”允之。</p>
<p>정조 42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6월 7일 (병술) 1번째기사 영의정·예조 판서 등</p>	<p>영의정·예조 판서·장용위 제조·정리소(整理所) 의례 당상(儀軌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궁께서 회갑을 맞는 탄신일이 머지 않으니 아랫사람의 심정으로서는 마냥 기뻐 축하드리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연회나 진하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자궁</p>	<p>○丙戌/召見領議政、禮曹判書、壯勇提調、整理儀軌堂上。上曰：“慈宮周甲，誕辰不遠，下情歡祝萬萬，而宴與賀，則慈心愴昔，一向固拒，有難如例。下情雖甚缺然，而若夫無賀宴之</p>

<p>을 소견하고, 자궁의 회갑연 의식에 관하여 의논하다</p>	<p>께서 옛날 일을 슬퍼하시어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고 계시니 규례처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섭섭하기는 하지만, 만약 진하나 연회와 같은 이름은 붙이지 않고 실제로 축하드리고 잔치를 베푸는 일을 행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나 경사를 축하하는 방도에 있어 어찌 양쪽 다 온당하게 되지 않겠는가.</p> <p>마땅히 18일에 치사(致辭)를 직접 올릴 것이며 표리(表裏)5907) 와 전문(箋文)도 직접 올리겠다. 그리고 음식 차리는 일도 그날 행할텐데, 찬품(饌品)에 대해서는 일찍이 현릉원(顯隆園)에 행차했을 때 정리소(整理所)에서 차려 올렸던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본영(本營)에서 거행하되 제조(提調)가 잘 살피도록 하라.</p> <p>자궁의 내·외 친족으로서 이번에 반열에 참여시킬 대상자는 동성(同姓) 10촌(寸)과 이성(異姓) 6촌으로 제한하라. 그러나 홍희영(洪喜榮) 부자는 모당(慕堂)을 받들어 제사올리는 사람인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들도 자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p> <p>하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들건대, 이는 그야말로 내용은 다 구비하면서 형식만 차리지 않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성상의 효심에서 나온 것이니, 신은 우러러 찬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자궁께서 환갑을 맞으시는 경사스러운 탄신일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는 그야말로 국조(國朝)에 처음 있는 경사이다. 그러니 진하하고 연회를 차려드리는 등 경축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느 예(禮)인들 거행할 수 없겠는가마는 자궁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때 억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은 경사스러운 탄신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통지해 주어야만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p>	<p>名, 有賀宴之實, 則在予順志之道、飾慶之方, 豈不兩得其宜乎? 當於十八日, 親進致詞, 表裏、箋文亦當親上, 而進饌亦行於當日, 饌品則曾於園行時, 自整理所有進饌之例, 今番亦自本營舉行, 而提調看審。慈宮內外親, 當今參班, 以同姓十寸、異姓六寸爲限, 而洪喜榮父子, 奉祀慕堂, 與他有異, 亦當使之與筵矣。” 領議政洪樂性曰: “伏承下教, 是誠有其實而無其名, 順志之聖孝, 臣不勝欽仰。” 教曰: “慈宮周甲, 慶辰在近, 卽國朝初有之慶也。 陳賀、進宴等飾慶之節, 何禮不可舉, 而慈心難抑。 今則慶辰隔日, 趁今指一知委, 然後可以舉行。 陳賀則丁卯已例, 明有可據, 卽亦每年當行之禮, 而此亦慈心甚難之。 此所以無賀之名, 有賀之實, 爲體慈心, 伸予誠之道, 爲說於禮堂陳請之時者也。 十八日慈宮周甲誕辰陳賀, 以進致詞、箋文、表裏稱號, 其日當行禮於明政殿月臺, 傳函呼嵩, 還內行親上之禮。 百官陳賀, 亦以進致詞、箋文、表裏稱號, 領相當進參於內班矣。 殿庭行禮後, 躬至內班, 以致詞、箋文、表裏,</p>
-------------------------------------	---	---

진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묘년에 행했던 전례를 분명히 근거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일이야말로 또한 매년 행해야 할 예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자궁께서 마음 속으로 매우 난처하게 여기고 계시므로, 진하한다는 형식은 차리지 않고 실제로 진하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궁의 마음을 몸받게 되는 동시에 나의 정성을 퍼는 방도가 될 수 있겠기에 예당(禮堂)이 진달하여 청한 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18일 자궁께서 회갑을 맞이하시는 탄신일에 진하하는 일은 치사(致辭)와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올린다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라. 그날 예식은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서 거행할 것이다. 그리고 함(函)을 전하고 만세를 부른 뒤 내전(內殿)으로 돌아와 직접 올리는 예식을 거행할 것이다. 백관이 진하할 때에도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올린다고 호칭하도록 하라. 영상은 내전의 반열에 나아와 참여해야 마땅하다. 궁궐 뜰에서 예식을 행한 뒤에야 직접 내전의 반열에 와서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전해 들이도록 할 것이다.

제도(諸道)에서 올리는 전문(箋文)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 주었으니 알아서 거행할 것이다. 경외에서 올리는 방물(方物)과 물선(物膳)도 자궁께서 분부하신 대로 놔두도록 하되 탄신일 명목의 물선만은 봉진토록 하라. 그리고 전각(殿閣)에 임하여 교서를 반포하는 일과 각 전(殿)에 진하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조(先朝) 정묘년에도 자전의 분부를 받들어 모두 임시로 정지했었는데, 더구나 금년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모두 정묘년의 예에 따라 그냥 놔두도록 하라.

또 연회를 차려드리는 예식으로 말하면 이 시점에서 자궁께서 마음 속으로 굳게 거부하시는 것이 진하하는 의식보다 훨씬 간절하실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정묘년에도 연회 대신 음식상을 차려드리는 일로 그 이튿날 대행했었다. 자궁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볼 길이 없는 이상 한결같이 곧장 그 뜻을 억지로 여기기보다는 그 뜻을 따르고 받들 방도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傳入。諸道封箋，已有知委，自可舉行。京外進獻方物物膳，亦依慈教置之，只以誕日物膳封進。至於臨殿頒教，各殿陳賀，則先朝丁卯，仰承慈教，而皆權停，況今年乎？竝依丁卯例置之。又若宴禮則此時慈心之固拒，比賀儀不趨采懇。丁卯年亦以進饌，代行於翌日，而慈心無以勉回，與其一直強拂，宜念順志承奉之方，待秋更當并請於殿宮，以冀俯詢。今番進宴之禮，勢當遲待，而其日略設饌品，當與內庭參班者，奉觴獻壽，而儀文不煩，有司自內行禮，以伸是日祝岡之情。致詞、箋文，即令文任撰進。自今日肄習，而百官外習儀及女官內習儀竝除之。大庭行禮，禮雖不可廢，內庭則仰體慈意，亦依今春上號時例，瞽師、女伶奏樂節次，竝除之可也。”禮曹判書閔鍾顯啓言：“今此慈宮周甲誕辰進致詞、箋文、表裏親傳後，內殿親上節次，請磨鍊。”從之。鍾顯曰：“自上親進致詞、箋文、表裏後，臨殿受賀及頒教中外等節，當磨鍊舉行矣。”教曰：“依丁卯年例置之，已有下教矣。”鍾顯曰：“以進致詞、箋文、表裏稱號

	<p>러다가 가을철이 되면 다시 자전과 자궁께 아울러 청하여 아랫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주시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p> <p>이번에 연회를 차려드리는 예식은 형편으로 볼 때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니 그날은 음식상만 간단히 차려 올리고 내전 뜰의 반열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술잔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문(儀文)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유사가 내전에서 예식을 행하면서 이날 장수를 축원하는 뜻을 펼치도록 하라.</p> <p>치사(致辭)와 전문(箋文)은 즉시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도록 하라. 오늘부터 예행 연습을 하되 백관이 밖에서 행하는 예행 연습과 여관(女官)이 안에서 행하는 예행 연습은 모두 없애도록 하라. 대궐 뜰에서 예를 행할 때에는 예를 없앨 수 없지마는, 내전 뜰에서 행할 때에는 자궁의 뜻을 몸받아 해야 할 것이니 역시 금년 봄 존호(尊號)를 올릴 때의 예에 의거하여 고사(瞽師)와 여령(女伶)의 주악(奏樂) 절차는 모두 없애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예조 판서 민중현(閔鍾顯)이 아뢰기를,  “이번 자궁의 회갑 탄신일에 올리는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직접 전해 주신 다음에 내전(內殿)에서 친히 올리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 중현이 아뢰기를,  “상께서 직접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올린 다음에 전각에 임하여 하례를 받는 일과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는 일 등의 절차도 마련해서 거행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까.”</p> <p>하니, 하교하기를,  “정묘년의 예에 의거하여 그냥 놔두라고 이미 하교하였다.”</p> <p>하였다. 중현이 아뢰기를,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올리는 것으로 호칭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만, 이렇듯 더없이 큰 경사를 맞이하여 예식을 행할 때 만세를 부르고 머리를 조아리</p>	<p>事命下矣。當此莫大之慶，行禮時山呼叩頭之節，不可不如例磨鍊矣。”從之。鍾顯曰：“取考孝廟朝丁酉年，自內設酌時《膳錄》，則自上以不可全無設樂之舉下教，其時大臣鄭太和、洪命夏等以若干瞽師，不足以成樣，請用女伶，而蒙允矣。今番進饌時用樂，當依此舉行乎？”教曰：“古今異宜，況於丁卯年不許，則此時慈心，誠難強拂，以予喜懼之心，亦不敢備例張大。仰體慈心，必欲省略，用樂一款，依初下教置之。至於儀節，雖不煩有司，卿既與聞於春間進饌時儀節，與其時整理諸堂，相議修潤。”</p>
--	---	--



	<p>는 절차만은 전례대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따랐다. 종현이 아뢰기를,  “효묘조(孝廟朝) 정유년에 내전에서 술자리를 벌였을 때의 등록을 가져다 상고해 보건대, 위에서 음악을 전혀 연주하지 않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자, 다시 대신인 정태화(鄭太和)와 홍명하(洪命夏) 등이 고사(瞽師) 약간 명만으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여령(女伶)을 쓰자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음식상을 차려 올릴 때의 음악도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더구나 정묘년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시점에서 자궁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시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뿐더러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나의 마음으로 볼 때에도 감히 전례대로 갖추어 판을 크게 벌이지는 못하겠다. 기필코 생략하시려는 자궁의 마음을 몸받는 뜻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교했던 대로 그냥 놔두도록 하라. 그리고 의절(儀節)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를 귀찮게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경이 이미 봄철 음식상을 차려 올릴 때에 참여했었으니 그 당시의 정리소(整理所) 당상들과 함께 상의하여 절목을 작성토록 하라.”  하였다.</p>	
정조 43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7월 15 일(갑자) 2번째기사 화성의 성역 및 물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 및 물역(物役)과 관련하여 직접 획금(劃給)한 것과 꾸어온 것과 도로 갚아야 할 것 등의 수효를 조목별로 구별하여 별단(別單)으	○備邊司啓言：“華城城役物役，直劃貸來還報數爰，秩秩區別，別單書入。待啓下，依此舉行之意，請知委於華城

과 관련한 별단

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대로 거행할 뜻을 화성 본부(本府) 및 경외(京外)의 각 해당 아문에 통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획급한 것. 평안 병영의 2만 냥(兩), 관서(關西)의 소미(小米)5949) 를 작전(作錢)5950) 한 2만 5천 냥, 본부(本府) 기부(記簿)의 1만 6천 냥, 각도(各道)에서 을묘년에 가분(加分)5951) 한 모조(耗條)5952) 8천 석(石)을 돈으로 대신 낸 2만 4천 냥, 영남(嶺南) 병영의 별별비(別別備) 2만 냥, 기영(箕營)5953) 의 별별비 2만 냥, 완영(完營)5954) 의 별비(別備) 1만 5천 냥 등 13만 냥. ○꾸어온 것. 장용영(壯勇營)의 25만 냥, 균역청(均役廳)의 30만 냥, 어영청(御營廳)의 4만 냥, 금위영(禁衛營)의 4만 냥 등 63만 냥으로 직접 획급해 준 것과 합치면 도합 76만 냥. ○도로 갚아야 할 것. 1. 장용영의 25만 냥. 5만 냥은 영남 병영의 남창(南倉) 별비전(別備錢)을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갚고, 7천 냥은 금위영의 을묘년 반 년 동안의 정번전(停番錢)5955) 으로 갚고, 6만 3천 냥은 금위영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임술년까지 매년 9천 냥씩 7년을 기한으로 하고, 4백 냥은 금위영의 계해년 정번전으로 갚고, 7천 냥은 어영청의 을묘년 반 년 동안의 정번전으로 갚고, 5만 6천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계해년까지 매년 7천 냥씩 8년 기한으로 하고, 5천 냥은 통영(統營)의 연례(年例) 별비전(別備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백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1만 8천 냥은 4 영문(營門)의 월과미(月課米)5956) 를 돈으로 대신 내게 해서 갚되 병진년에서 경신년까지 매년 3천 6백 냥씩 5년 기한으로 하고, 1만 냥은 선혜청(宣惠廳)의 별하고전(別下庫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1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5천 냥은 호조 작지색전(作紙色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백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1만 냥은 기영(箕營)의 을묘년 별비전(別備錢)

本府及京外各該衙門。” 允之。【直劃條：二萬兩平安矢營，二萬五千兩關西小米作錢，一六千兩本府記簿，二萬四千兩各道乙卯加分耗條八千石代錢，二萬兩嶺營別別備，二萬兩箕營別別備，一萬五千兩完營別備，以上十三萬兩。貸來條：二十五萬兩壯勇營，三十萬兩均役廳，四萬兩御營廳，四萬兩禁衛營，以上六十三萬兩，都以上七十六萬兩。還報條：壯勇營二十五萬兩內五萬兩，嶺營南倉別備錢，自乙卯，甲子至，每年五千兩式，限十年；七千兩，禁衛營乙卯半年停番錢；六萬三千兩，禁衛營停番錢，自丙辰，壬戌至，每年九千兩式，限七年；四百兩，禁營癸亥停番錢；七千兩，御營廳乙卯半年停番錢；五萬六千兩，御營廳停番錢，自丙辰，癸亥至，每年七千兩式，限八年；五千兩，統營年例別備錢，自乙卯，甲子至，每年五百兩式，限十年；一萬八千兩，四營門月課米代錢，自丙辰，庚申至，每年三千六百兩式，限五年；一萬兩，惠廳別下庫錢，自乙卯，甲子至，每年一千兩式，限十年；五千兩，戶曹作紙色錢，自乙卯，甲子至，

으로 갚고, 1만 2천 6백 냥은 기영의 연례 별비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1천 4백 냥씩 9년을 기한으로 하고, 6천 냥은 각도(各道)의 을묘년 가분(加分) 모조(耗條) 2천 석을 돈으로 대신 내게 하여 갚음. 2. 균역청의 30만 냥. 10만 냥은 완영(完營)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곡식을 돈으로 대신 내게 하여 갚되 8년 기한으로 하고, 7만 7천 4백 냥은 기영(箕營)의 연례(年例) 별비전(別備錢)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8천 6백 냥씩 9년 기한으로 하고, 3만 5천 냥은 금위영의 정번전(停番錢)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임술년까지 매년 5천 냥씩 7년 기한으로 하고, 1만 3천 6백 냥은 금위영의 계해년 정번전으로 갚고, 7만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을축년까지 매년 7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4천 냥은 어영청의 병인년 정번전으로 갚음. 3. 금위영의 4만 냥. 1만 4천 냥은 해영(該營)의 갑인년 정번전(停番錢)으로 이미 갚았고, 1만 4천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갑자년에서 을축년까지 매년 7천 냥씩 2년 기한으로 하고, 1만 4천 냥은 어영청의 병인년 정번전으로 갚고, 8천 냥은 어영청의 정묘년 정번전으로 갚음. 4. 어영청의 4만 냥. 1만 4천 냥은 해영(該營)의 갑인년 정번전으로 이미 갚았고, 1만 2천 냥은 해영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인년에서 정묘년까지 매년 6천 냥씩 2년 기한으로 하고, 1만 2천 냥은 해영의 무진년 정번전으로 갚음.】

每年五百兩式，限十年；一萬兩，箕營乙卯條別備錢；一萬二千六百兩，箕營年例別備錢，自丙辰，甲子至，每年一千四百兩式，限九年；六千兩，各道乙卯加分耗條二千石代錢。○均役廳三十萬兩內十萬兩，完營償債穀代錢限八年；七萬七千四百兩，箕營年例別備錢，自丙辰，甲子至，每年八千六百兩式，限九年；三萬五千兩，禁衛營停番錢，自丙辰，壬戌至，每年五千兩式，限七年；一萬三千六百兩，禁衛營癸亥條停番錢；七萬兩，御營廳停番錢，自丙辰，乙丑至，每年七千兩式，限十年；四千兩，御營廳丙寅條停番錢。○禁衛營四萬兩內一萬四千兩，該營甲寅條停番錢已報；一萬四千兩，御營廳停番錢，自甲子，乙丑至，每年七千兩式，限二年；一萬四千兩，御營廳丙寅條停番錢；八千兩，御營廳丁卯條停番錢。○御營廳四萬兩內一萬四千兩，該營甲寅條停番錢已報；一萬二千兩，該營停番錢，自丙寅，丁卯至，每年六千兩式，限二年；一萬二千兩，該營戊辰條停番錢。】

정조 43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11월 7  
일(갑인) 3번째기사  
화성의 둔전이 완성되  
다. 성 밖의 진진 개발  
과 품삯 등의 일로 윤  
음을 내리다

화성(華城)의 둔전(屯田)이 완성되었다.  
이에 앞서 갑인년에 화성의 축성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신하들에  
게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성이 뒷날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서리고 집  
지을 때 터를 다지듯이 견고하고 두텁게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  
하다. 내년 봄에 얼었던 땅이 녹을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성 밖의 거리가 가깝  
고 척박한 땅에다 깊이를 헤아려 1장(丈)이나 반 장 정도 땅을 파고 대략 백  
곡(斛)쯤 되는 씨앗을 파종할 만한 경계를 적당히 정한 뒤 그 흙을 거두어 성  
벽에 달라붙게 하되 말 다섯 필이나 수레 두 채가 그 지역을 종횡으로 달릴  
수 있게 하고 그 동남쪽 이랑을 깊이 파 경작하며 쉽게 김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자갈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  
어 마치 정경(鄭經)이나 사엽(史艱)의 경우처럼 성곽을 등진 좋은 토지를 몇  
천 경(頃)이나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1,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농기  
구를 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비 내린 눈에 물꼬를 트는 아름다운 광  
경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시킬 때에 품삯은 날수로 계산하지 말고 실적을 기준  
으로 삼되 원근(遠近)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힘이 센  
자는 넉넉히 백 전(錢)을 가져가고 약한 자도 한 몸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부(府)의 백성들만 혜택을 받는 일이겠는가. 동서 남  
북 어디를 가도 마땅한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품팔이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들 모두가 바람결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인데, 움집이나 상점을  
차리고 술도 팔고 밥도 팔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게 될 것  
이니, 이 또한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華城屯田成。 先是甲寅，以華城城  
役事，下綸音于董工諸臣曰：“城之有  
後托，猶木之蟠根，屋之築址，不可不  
堅且厚也明矣。 容待來春，地脈融解  
之際，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相其  
淺深，鑿得一丈或半丈，量定約播百斛  
之經界，然後收其土粘付城身，俾容五  
馬兩軌，卽其地橫縱東南之畝，深耕而  
易耨，則瘠可使肥，磽可使沃，而贏得  
如鄭涇、史艱之幾千頃負郭良田，不出  
一二年，將見荷鋤成雲，決渠降雨之  
美，而方其役也，雇直不以日，而以負  
立表，計遠近而差等，則强者優取百  
錢，弱者足庇一身，此豈特府民？往南  
北東西之不適有居，傭保資生者，皆可  
以聞風爭趨，而或窳或肆，爲酒爲食，  
以其所有，易其所無，亦矜寡之利也。  
夫如是，則城則奠萬世不拔之基，民則  
獲萬家如膏之地，倉則貯萬人足食之  
糧，一舉而衆美具，豈不誠休且美哉？”  
仍劃下設屯錢于本府留守，前後劃下  
者，摠二萬貫。 至是，留守趙心泰別  
單啓言：“本城長安門外北坪，新設屯

대저 이와 같이 하면, 성은 만세토록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백성은 1만 가구가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이며, 창고에는 1만 사람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될 것이니, 이 일 하나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이다. 이 어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둔(屯)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본부의 유수에게 떼어주었는데, 전후에 걸쳐 떼어준 돈이 모두 2만 관(貫)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별단(別單)으로 아뢰기를,

“본성(本城)의 장안문(長安門) 밖 북쪽 들판에 새로 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이 떼어주신 돈을 공경히 받아 시설하고 경영하면서 혹 매입(買入)하기도 하고 혹 새로 개간하기도 하여 두 항목의 논에 1백 석(石)을 파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랑을 파 물을 대고 제방을 설치해 물을 담아놓기 위해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토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토질이 서로 섞여 있고 새로 개간한 토지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관계로 옛날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서 생산된 것이 20두(斗)짜리 전석(全石)으로 7백 66석(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든 비용·새로 개간하는 데 따른 물력(物力), 수확한 수량, 종자와 세곡(稅穀)으로 덜어줄 양, 둔전 소속 원역(員役)에 지급한 요미(料米), 도랑을 파고 제방을 축조하는 데 지출된 비용 등을 모두 정연하게 구별한 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영(內營)에 올려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먼저 교리(校吏)들과 군졸·관예(官隸)부터 그 형세를 헤아리고 다소(多少)를 짐작하여 토지를 나누어주고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이로움을 알게 하는 동시에 기필코 실효를 거두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빈한하여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자와 게을러서 진작시킬 수 없는 자를 권유하며 신척하고, 조금 나은 자들에게는 대략 정전(井田)의 조법(助法)을 모

田。 臣所祇受劃下錢， 設施經紀， 或買得或新墾， 兩項水田， 準爲百石下種， 開渠灌溉， 築堰儲水， 使之大興土功， 而舊土沃瘠相錯， 新土墾闢稍晚， 新舊所出， 不過二十斗全石七百六十六石。 故買得價錢、新墾物力、收獲數爻、種稅應下、屯屬料條、開梁築堰等財力， 竝秩秩區別， 修正成冊上送內營。 明年則先自校吏輩、軍卒、官隸， 量其形勢， 斟酌多少， 分授頃畝， 使之耕作， 俾知稼穡之利， 期有食實之效， 而其中貧不得自力者， 懶不能振起者， 勸諭諷飭， 使其稍勝者， 略倣井田助法， 兩人作耦， 毋或怠忽， 以爲一分沾漑之道。”

	방하여 두 사람씩 짝을 지운 뒤 혹시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혜택이 넓혀질 수 있는 방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정조 43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11월 25 일(임신) 1번째기사 무과 회방일을 맞은 정헌 대부 박춘우 등 에게 가자와 연회 비 용의 지급을 명하다	무과(武科) 장원(壯元)의 회방(回榜)6093 을 맞은 정헌 대부(正憲大夫) 박춘우(朴春遇)에게 한 등급을 가자(加資)하고 연회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壬申/命武科壯元回榜人正憲朴春遇, 加一資, 給宴需。
정조 43권, 19년 (1795 을묘 / 청 건륭 (乾隆) 60년) 12월 10 일(정해) 1번째기사 무과 급제 회방일을 맞은 이후검에게 연회 비용의 지급과 가자를 명하다	무과 급제 60돌을 맞은 이후검(李厚儉)에게 연회 비용을 지급하고 한 등급 올려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丁亥/命武科回榜人李厚儉, 給宴需 加一資。
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1월 29일 (병자) 2번째기사	삼남(三南)의 도신(道臣)에게 닳나무와 대나무 기르는 일을 힘써 장려하도록 신칙하였다.	○飭三南道臣勤課楮竹之政。

<p>삼남의 도신에게 닥나무·대나무 기르는 일을 장려하도록 신칙하다</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3월 14일 (경신) 2번째기사 경진년 온천 행행시 배종한 이들에게 가자 또는 상을 내리다</p>	<p>명하여 경진년 온천(溫泉) 행행 때 행차를 따라던 군교(軍校)와 액속(掖屬)에게 가자하고 차등있게 쌀을 내리도록 하였다. 궁인(宮人)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 얼마 후 또 명하여 배종관(陪從官) 전 현감 권성응을 돈령부 도정으로 올려 제수하고, 온양군에서 일을 감독한 이교(吏校) 등에게도 각기 한 자급씩을 올려주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p>	<p>○命庚辰溫幸時隨駕軍校、掖屬加資，賜米有差，宮人亦如之。尋又命陪從官前縣監權聖應，陞拜敦寧府都正，溫陽郡董事吏校等，各加一資。</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3월 29일 (을해) 3번째기사 내일 있을 우단의 제사 때문에 편전에서 재속하다</p>	<p>편전에서 재속하였는데, 우단(霧壇)의 제사가 내일 있어서였다.</p>	<p>○齋宿于便殿。以霧壇祀在明也。</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p>	<p>상이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가 관동 지방을 유람하러 간다는 소식을</p>	<p>○上聞奉朝賀金鍾秀遊關東，命給馬饋糧，地方官存問以聞。</p>

<p>(順治) 1년) 4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관동 지방을 유람하러 가는 김중수에게 말과 양식을 지급하게 하다</p>	<p>듣고, 말과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지방관은 안부를 물어 상문하게 하였다.</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4월 4일 (기묘) 4번째기사 윤시동이 제주목의 공마 관리, 미삼에 대한 공납 문제 등을 아뢰다</p>	<p>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의 공마(貢馬)가 본 목장에 있을 때에는 모두 건강하여 걸음걸이가 씩씩하였는데, 진상할 때에 이르러서는 날씨가 매우 더운 계절에다 말을 모는 자들이 마구 몰아대어 말무리가 뒤엉켜 날뛰는 바람에 암말은 새끼가 떨어지고 숫말은 부상하게 됩니다. 또 각 목장의 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거의 이런 점에서 연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 싣고 육지에 내릴 때에 이미 심히 병들고 허약하며 몰아서 상경하는 과정에서 다수 죽게 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목사가 매년 가을에 연례적으로 두루 순찰하면서 말을 점검하는 것을 큰 법식으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목장마다 말을 점검할 때에 14필씩을 골라 내어 외양간에서 사육하여 겨울을 넘긴 뒤에 정해진 때에 바치게 한다면 우도(牛島) 말고도 13개 목장에서 1백 30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숙마(熟馬)는 야성이 길들여져 여물을 먹는 것이 평상시와 같으므로 비록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길에 오르더라도 병이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발(調發)할 때에 관민에 생기는 폐단과 몰고 다닐 때에 사고로 감소되는 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신은 전에 본 제주목에 재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고 또 섬 백성들의 말도 들어보았기에 지금 말이 난 김에 아뢰입니다. 이것으로 탐라의 목사에게 신칙하소서.”</p>	<p>○右議政尹著東啓言：“濟州貢馬，在本場時，舉皆體健有步趣，及當進貢之際，必值盛炎，動軍驅捉，馬群雜沓，橫跳亂蹴，牝者落雛，雄者致傷。各場馬額之漸縮，未必不由於此，而及其乘船下陸，病瘦已甚，驅策上京，輒多致斃，誠爲可惜。牧使每年秋，例爲歷巡，而點馬爲大政。自今年定式，每場各十匹，驅點時擇取，令喂養過冬，待時進貢，則牛島外十三場，當得一百三十四。熟馬性氣既馴，飲齕如常，雖駕海登程，庶無生病，又除調發時官民之弊，驅捉時減縮之患。臣曾待罪本牧，略知其便否，且採島民之言，今因言端仰達。請以此申飭耽羅守臣。”從之。又啓言：“倭學譯官擔當單蓼，近四十年，無弊舉行。癸丑以尾蓼添價事，不無隱情之可罰者，元</p>



	<p>하니, 따랐다. 윤시동이 또 아뢰기를,  “왜학 역관(倭學譯官)이 단삼(單蔘)을 담당한 지가 40년에 가까운데 아무런 폐단없이 거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년에 미삼(尾蔘)에 값을 덧붙인 것은 실정을 숨긴 점이 충분히 처벌할 만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하여 원공(元貢) 속에서 미삼 조항을 삭제하고서 외방인에게 따로 준 지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빼앗아 외방인에게 준 것은 소가 밭을 짓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소를 빼앗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미삼에 대한 공납을 왜학 역관에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p>	<p>貢中除出尾蔘條，而別給方外人，已三年矣。渠輩雖有罪，奪此畀彼，殆同蹊田而奪牛。自今年尾蔘作貢，還屬倭譯宜矣。”從之。</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4월 12일 (정해) 1번째기사  술에 취해 궁궐 담장 밑에 누워 있던 진사 이정용을 너그럽게 이해하다</p>	<p>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밤에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궁궐의 담장 아래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기에 호패(號牌)를 상고해 보니 진사 이정용(李正容)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마침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야금시간에 걸린 줄을 몰랐다고 하였는데, 법에 따라 형조로 넘겼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 근처의 민가는 집춘영(集春營) 건물과 지붕이 서로 잇닿아 있으니 야금시간을 범하였다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래에 조정의 관료나 유생들을 물론하고 주량이 너무 적어서 술의 풍류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 유생은 술의 멋을 알고 있으니 매우 가상스럽다. 군향(軍餉)을 맡은 고을에서 주채미(酒債米) 한 포대를 주어,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취한 중에서 덕을 관찰하는 뜻을 보여주라.”</p>	<p>○丁亥/訓諫都監啓: “去夜有白衣人, 醉臥宮牆下, 考號牌, 則進士李正容也。問之, 則言適入泮中, 酒後不知犯夜云, 依法移秋曹矣。”敎曰: “泮村民家, 與集春營舍, 薨桷連, 不可以犯夜論。近來無論朝官士子, 酒戶太窄, 未聞酩酊風流。此儒生能知酒趣, 極爲可嘉。自軍餉(邑) [色] 題給酒債米一包, 以示醉之以酒, 以觀其德之意。”</p>

	<p>하였다.</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4월 17일 (임진) 2번째기사 김종수에게 여행길에 식사를 더하고 명승지를 두루 찾도록 하유하다</p>	<p>강원 감사가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의 여행경로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들으니, 경이 대관령(大關嶺)을 넘고 경포대(鏡浦臺)에 올랐다가 오죽헌(烏竹軒)을 거쳐 송담 서원(松潭書院)을 찾아보고 양양(襄陽)으로 향할 것이라 하였는데, 여행길에서 식사를 더 많이 하고 명승지를 두루 찾는다면 세상의 잡념을 시원하게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금강산 아래의 김 봉조하에게 하유하게 하라.” 하였다.</p>	<p>○關東道臣，以奉朝賀金鍾秀行程啓，教曰：“聞卿踰大關嶺，登鏡浦臺，歷烏竹軒，訪松潭書院，將向襄陽云。在途加飧，遍踏勝區，能快滌塵垢之思乎？”令內閣，下諭于金剛山下金奉朝賀行中。</p>
<p>정조 44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6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 혜경궁에 의복을 진상하고, 음식을 올리는 예식을 거행하다</p>	<p>상이 친히 혜경궁(惠慶宮)에 의복을 진상하였다. 이어서 음식을 올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남여를 타고 만팔문(萬八門)을 나와 남여에서 내려 임시처소로 들어갔다. 종친들과 문무 2품 이상들이 【각신(閣臣), 옥당·정리소(整理所)의 당상과 낭관, 외교관인 중국 관리들이다.】 먼저 영춘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때가 되어 남여를 타고 천오문(千五門)으로 들어가 남여에서 내려 영춘헌 섬돌 위의 판위(版位)에 나아가 재배례(再拜禮)를 거행하였다. 원자(元子)도 당계(唐髻), 청포(靑袍), 흑화자(黑靴子) 차림을 하고 판위의 동쪽에서 재배례를 거행하였다. 뜰안에 들어온 모든 신하들이 예를 다 거행한 뒤에, 제용감이 예물함을 가져다가 꿇어앉아서 근시(近侍)에게 【승지 이만수(李晩秀).】 주었고, 근시가 상</p>	<p>○壬辰/親上表裏于惠慶宮，仍行進饌。具翼善冠、袞龍袍，乘輿出萬八門，降輿入小次。宗親文武二器以上，【閣臣、玉堂·整理堂郎、外賓中朝官。】先入迎春門內，就位。時至，乘輿入千五門，降輿，詣迎春軒階上版位，行再拜禮。元子亦以唐髻、靑袍、黑靴子，行再拜禮於版位之東。入庭諸臣，行禮訖，濟用監提調，捧禮物函，跪授近侍，【承旨李晩秀。】以進，上跪受以授近侍，還置於案。行禮如儀，禮畢還內，進饌于慈宮。仍</p>

	<p>에게 올리니 상이 꿰어앉아서 받았다. 다시 근시에게 되돌려 주어 상 위에 올려 놓았다. 의례대로 예식을 거행하였고, 예식이 끝난 뒤에 내전으로 돌아와 자궁에게 음식을 진상하였다. 또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에게 음식을 내리라고 명하였다.</p>	<p>命參班諸臣，竝賜饌。</p>
<p>정조 45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8월 1일 (계유) 3번째기사 임자도의 목장에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다</p>	<p>임자도(荏子島)의 목장에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고 그곳의 말들을 도내의 여러 목장으로 옮기고 새로 개간하는 데 따른 세입은 화성(華城)의 내용고(內用庫)에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 이시수의 아뢰임으로 인하여 호남의 도신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은 후에 본도의 민정에 의거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p>	<p>○命荏子島牧場，許民耕墾，移其馬於道內諸牧場，新墾稅入，屬之華城內用庫。因戶曹判書李時秀啓，關問湖南伯後，依本島民情，有是命。</p>
<p>정조 45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8월 13일 (을유) 3번째기사 호조에서, 올해는 풍년이므로 급재에 대해 거론하지 말자고 아뢰다</p>	<p>이해에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호조가, 올해 농사의 형편이 각종 곡식이 골고루 익었는데 모든 곳이 다 그러하니 급재(給災)하는 한 가지 조항을 아울러 거론하지 말자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올해 농사가 다행히 재해를 면했는데, 또 최근 동풍이 불어오던 끝에 오늘 단비가 내렸으므로 추수할 희망에 마음속으로 홀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팔도 3백 6주(州)의 논밭 가운데 낮은 땅이나 험소하고 경사진 땅까지 이것 저것 구분 없이 어찌 다 그러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경술년의 풍년 때에도 오히려 표결(俵結)을 하였는데, 올해의 연분(年分)을 단지 원총(原摠)만을 기준으로 하여 1부(負) 1속(束)도 급재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것을 덜어</p>	<p>○是歲熟。戶曹以今年農形，各穀均熟，諸路同然，給災一款，並不學論，啓聞，教曰：“今年農事，幸免災損，今日甘雨，又獲於近日東風之餘，有秋之望，心竊獨喜，而八路三百六〔十〕州，旱田水田之汚邪〔穡〕〔甗〕，無彼無此，何可一一取必？且況庚戌之豐，尙有俵結，今年年分之只準原摠，不給一負一束，有非損上益不之政。</p>

	아래를 더해주는 정사에 어긋난다. 경은 계목(啓目)을 자세히 상고하여 부표(付標)하여 계하(啓下)한 후에 각도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경기·삼남·관동·해서·수원·광주에 2천 8백 결을 급재해 주었다.	卿則推考啓目， 付標啓下後， 行會諸道”， 乃給京畿、三南、關東、海西、水原、廣州災二千八百結。
정조 45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11월 2일 (계묘) 1번째기사 경모궁의 겨울 제사를 직접 지내다	경모궁의 겨울 제사를 직접 지냈다.	○癸卯/親行于景慕宮冬享。
정조 45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11월 6일 (정미) 1번째기사 육상궁·선희궁·의소묘 에 술잔을 올리는 예 를 행하고, 봉안각에 참배하다	육상궁(毓祥宮)에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고, 봉안각(奉安閣)과 연호궁(延祐宮)에 참배하고 선희궁(宣禧宮)에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였다. 그리고는 창의궁(彰義宮)으로 가서 참배하고, 의소묘(懿昭廟)로 가서 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丁未/行奠酌禮于毓祥宮， 展拜于奉安閣、延祐宮， 行奠酌禮于宣禧宮。 仍詣彰義宮， 展拜， 詣懿昭廟， 行奠酌禮。
정조 45권, 20년 (1796 병진 / 청 순치 (順治) 1년) 12월 3일 (갑술) 2번째기사 서명선의 제사를 지내 주고, 김중수에게 음식 물을 하사하다	충헌공(忠憲公) 서명선(徐命善)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봉조하(奉朝賀) 김중수(金鍾秀)에게 음식물을 하사하였다. 전교하기를, “백 대 전이나 천 년 후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간사함이 정의를 침범하지 못하고 사람이 귀신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의리는 없어지는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자(程子)	○致祭于忠憲公徐命善， 賜食物于奉朝賀金鍾秀。 教曰：“百世在前， 千歲在後， 磨泐不得， 消躓不得， 邪不能干正， 人異於鬼者。 寔賴義理之不特無常泯而已， 而能常不泯也。 程夫子所謂雖謂之堯、舜至今在， 可也云者。 旨哉斯言！ 逢今日溯念疇昔， 恍如隔晨。

	<p>의 ‘요(堯)·순(舜)이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될 것이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니, 오늘 이 시점에서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진다. 아, 그 인(仁)은 천지와 같고 그 밝기는 일월(日月)과 같으셨으니,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다 선왕(先王)이 주신 것인데, 그 당시 충헌공이 한 손으로 떠받들어 신령스러운 계책을 힘써 도왔었다.</p> <p>대개 의리는 강구하면 밝아지고 강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법이니, 밝히고 또 밝혀 마치 거울처럼 텅비게 되어야만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풍이 날로 못해지고 습성이 날로 저속해진 탓으로 옛보기나 하는 풍속이 생겼으니 미약한 소인이라도 근심할 만하다. 한 권의 《춘추》를 읽은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정사에 수시로 더 유의함으로써 이날을 잊지 못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의리를 강구하여 밝히는 한 가지 단서가 되는 데에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고 영의정 충헌공 서명선(徐命善)의 사판(祠版)에 아직까지도 그 고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하니, 그의 아들 감찰 서노수(徐潞修)를 오늘 정사에서 수령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내어 그 사판이 관아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내주게 하라. 제문은 직접 지을 것이다.”</p> <p>하였다. 봉조하 김종수(金鐘秀)에게 하유하기를,  “해마다 이날을 한 번이라도 그냥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기에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입시하는 사관을 보내어 경의 안부를 물어보게 하면서 그 편에 음식물을 전하는 바이다.”</p> <p>하였다.</p>	<p>嗚呼! 天地其仁, 日月其明, 今日之有今日, 莫非先王之攸賜, 而時有忠憲, 隻手擎捧, 仰贊神度之功。大抵義理, 講之則明, 不講則晦。明之又明, 如鑑之空, 然後可以有辭。風氣日下, 習尚日卑, 窺覘之俗, 羸豕可慮。一部《春秋》, 無地可讀, 則須於記舊念故之政, 時加留意, 以示其不忘此日之意, 猶賢乎已, 而亦不害爲講明中一端。故領相忠憲公徐命善祠版, 尚不得官享, 其子監察潞修, 今日政, 差送守令, 待其祠版抵衙致祭, 而祭文當親撰矣。” 諭奉朝賀金鍾秀曰: “年年此日, 莫或虛度, 卿必記有。久阻之餘, 倍用翹想。遣入侍史官, 問卿起居, 附傳食物。”</p>
정조 46권, 21년		耆老大臣、宗臣、卿宰原歲饌外, 加賜

<p>(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1월 1일 (임인) 4번째기사 기로 대신·종신·경재에 게 쌀·고기 등을 하사하다</p>	<p>기로 대신(耆老大臣)·종신(宗臣)·경재(卿宰)에 대하여 기본적인 세찬(歲饌) 외에 쌀·고기·면주(綿紬)를 차등있게 추가로 하사하였다.</p>	<p>米、肉、紬綿有差。</p>
<p>정조 46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1월 3일 (갑진) 1번째기사 명정문에 나아가 곡식이 잘 되도록 하는 맹서를 하다</p>	<p>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기곡 대제(祈穀大祭)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p>	<p>○甲辰/御明政門，行祈穀大祭誓戒。</p>
<p>정조 46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2월 22일 (계사) 1번째기사 연경에 갈 때 은화 대신 모자와 가삼을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하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연초에 현릉원에 행차하였을 때 화성의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는데, 간곡하고 자세하였습니다. 명을 받들어 이행하여 주상의 뜻을 선양하는 일은 낭묘(廊廟)의 책임인데, 지금 시행할 만한 한두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혈(帽穴)에 관한 일이며 또 하나는 가삼(家蓆)에 관한 일입니다. 모자(帽子)는 공물(公物)이기는 하나 이미 개인 장사꾼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산매(散賣)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화성에 그 권한을 주어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사오거나 의주(義州)의 점포에서 사들여 화성의 시가에 따라 산매한다면 각처의 장사꾼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입니다. 가삼은 사사로운 물화이기는 하나 본래부터 부호(富戶)들이 전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화성에 예속시켜 화성 시장에 모이지 않고는 때</p>	<p>○癸巳/備邊司啓言：“歲初園幸時，以華城城內富實事，十行絲綸，丁寧諄復。祇奉成命，圖所以對揚，卽廊廟之責，而今有一二可行之策。其一帽穴事也，其一家蓆事也。帽子雖云公物，既給私商，任其散賣。今若專付之華城，或貿燕市，或買灣肆，自華城從時價散賣，則各處商賈，自當駢闐矣。家蓆雖是私貨，自來富戶專其興販，若又屬之華城，如非聚會於華市，俾不得賣買，則利之所在，物主富戶，</p>

	<p>매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이윤이 생기는 곳이므로 물주(物主)와 부호들이 틀림 없이 앞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 거리가 저절로 들어차게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유사 당상 정민시(鄭民始) 등을 불러 그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상이 이르기를,</p> <p>“모자와 가삼의 두 가지 건에 대하여 곧 시행하라고 허락하려 한다. 연경에 갈 때 가져가는 은화(銀貨)를 삼으로 대신 충당하도록 허락한다면 역관들의 폐단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편도 될 듯하다.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p> <p>하니, 민시가 아뢰기를,</p> <p>“연경에 갈 때 가져가는 물건은 원래 인삼을 썼는데, 이 일이 《통문관지(通門館志)》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으로 바꾼 것은 삼은 귀하고 은은 너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은화가 품귀해져 역관들이 그들의 포대를 채울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삼은 집에서 심기 때문에 숨겨 가지고 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금법을 무릅쓰고 숨겨 가지고 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옛날의 예에 따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양쪽 다 편리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은이 귀하면 삼을 가져가고 삼이 귀하면 다시 은을 가져가게 하여 무역의 권한이 우리 나라에 있게 하는 것이 실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획책하는 좋은 계책이다. 그리고 약조(約條) 중의 금제(禁制)와도 무관하니, 올해부터 사행(使行)이 갈 때 다시 삼포(蔘包)를 쓰더라도 불가한 줄을 모르겠다. 대신과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p> <p>“이와 같이 제도를 정한다면 반드시 부호를 화성에 옮겨서 무역의 권한을 주</p>	<p>必將應募爭趨。如此則井閭自然有櫛比之效，居民自然獲滲瀼之惠矣。請成節目遵行。”上，召有司堂上鄭民始等，詢便否。上曰：“帽蔘兩條，既將許施矣。若許赴燕銀貨，以蔘代充，則在象譯，亦可爲揀弊之一端。卿等之意如何？”民始曰：“燕行入也，本用人蔘，此載《通天館志》。而中間以銀代蔘，職由蔘貴而銀裕也。近因銀貨翔貴，譯官無以充其包，未免空還。蔘則以家種之故，潛越漸多，與其冒禁而潛越，無寧遵舊而許入之爲兩便矣。”上曰：“銀貴則用蔘，蔘貴則還用銀，使貿遷之權，在於我國，實爲籌邊之長策。且不關於約條中禁制，自今年使行，復用蔘包之式，未知其不可。其議大臣以聞。”上，又曰：“既如是定制，則必須移富戶於華城，使主其貨遷之權。大抵築城之役，爲拱護之方，則既已築之，不可不思所以實之。雖以古人已行之例言之，漢武帝徙十萬富戶於茂陵。苟可以興利安業，富實城內，則何事之可靳？既已募入，則其在激勵之道，宜有獎拔之舉，其有地處履歷人，當觀其勤怠，另加收用。</p>
--	--	--

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성을 쌓은 것도 백성을 보살펴 주기 위한 방도이고 보면, 이미 쌓았으니 이를 알차게 할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이 이미 행하였던 예로 말하더라도 한(漢) 무제(武帝)는 10만의 부호(富戶)를 무릉(茂陵)에 옮겼었다. 진실로 이익을 일으키고 생업을 안정시켜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미 모집해 들였으면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의당 발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중에 지위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근실한지의 여부를 보아 별도로 수용(收用)하여야 할 것이다. 경들은 이로써 효유하여 각자 즐거이 모여들게 하라.”

하고, 드디어 비변사의 초기(草記)를 운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참으로 시험하여 보고자 한다면 먼저 중신(重臣)의 말대로 구례(舊例)를 다시 살려 팔포삼(八包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화성에 성을 쌓은 것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나라 때 무릉에 부호가(富豪家)를 이주시켰는데 더구나 이 성의 소중함은 선침(仙寢)6219) 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옹호하는 데에 있으니, 그 체모(體貌)의 존엄하기가 무릉에 비하여 더욱 다른 바가 있는 것이다. 경외(京外) 사방의 부호(富戶)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들게끔 하되, 마치 물이 아래로 내리흘러 밤낮으로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여들어 서로 앞다투어 직업을 권면하고 자기 일을 즐기며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이득을 이롭게 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소중함으로 인해 이 성을 쌓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성실하고 근실하게 하였는가를 살펴서 차례로 발탁하여 임금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경들은 잘 알아서 분부하라.”

하니, 민시가 아뢰기를,

卿等以此曉諭，俾各樂赴。”遂允備邊司草記。且教曰：“苟欲試之，先從八包蔘復舊例，如重臣言爲可。大抵城于華，爲所重也。漢時徙豪富戶於茂陵，況此城所重，在於拱衛仙寢，環護行宮，其體貌之尊嚴，比茂陵尤有別焉。使京外四方之富戶，聞風爭集，若水趨下，日夜無休時，不召而自來，不求而自至，爭相勸其業樂其事，安其土利其利，然後始可言爲所重築斯城之效。當觀誠實勤恪之如何，次第拔擢，以示信王言之義，卿等知悉，分付。”

民始啓言：“華城新募之富戶，宜先有以悅其心厚其生。尾蔘作契之後，移屬無常，別無關緊處，請屬之華城，新募富戶，以二十人作契，俾作恒業，而或有遷居者，拔之契中，以他築室者代充。且以若干公貨許貸，然後可以添補貨本。請以慶尙監營所管南倉錢五萬兩，平安兵營所在備局旬管及該營錢中限五萬兩，并移屬華城，從便區處。”從之。



	<p>“화성에 새로 모집하는 부호는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생활을 풍족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삼계(尾蔘契)를 만든 뒤에 종없이 이속(移屬)된 바람에 별로 긴하게 여기는 곳이 없으니, 이를 화성에 예속시키되, 새로 모집하는 부호는 20인으로 계를 만들어 항업(恒業)을 삼게 하고 혹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계 중에서 빼어버리고 다른 축실(築實)한 자로 대충하게 하소서. 그리고 약간의 공화(公貨)를 빌려주어야만 재물의 밀천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 감영의 소관인 남창(南倉)의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에 있는 비국의 관리하는 것과 해영(該營) 소관의 돈 중에 5만 냥을 한도로 모두 화성에 이속(移屬)시켜 편의에 따라 변통하여 쓰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정조 46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5월 1일 (경자) 1번째기사 경모궁에 전배하고 의 식 연습을 행하다</p>	<p>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다. 하향(夏享)의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으며 이어 의식 연습을 행하였다.</p>	<p>○庚子朔/展拜于景慕宮。 省夏享牲器，仍行肄儀。</p>
<p>정조 46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5월 3일 (임인) 1번째기사 심환지가 매년 단오에 각 전궁에 제호탕을 봉진하는 일을 아뢰다</p>	<p>차대(次對)를 하였다. 내의원 제조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매년 단오에 각 전궁(殿宮)에 제호탕(醞酬湯)을 봉진하는데 중궁전(中宮殿)에는 봉진한 사례가 없기에 등록(臚錄)을 가져다 상고하니 선조(先朝) 을미년(6262) 이전에는 봉진하였는데 병신년(6263) 이후로는 빠졌습니다. 금년부터는 구례대로 봉진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p>	<p>○壬寅/次對。 內醫院提調沈煥之啓言：“每年端午，封進醞酬湯于各殿宮，而中宮殿無封進之例，取考臚錄，先朝乙未以前封進，而丙申以後闕封。請自今年，依舊例封進。” 允之。</p>

<p>정조 46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6월 12일 (신사) 1번째기사 농사를 소중히 여길 것을 유시하고, 동·서 교외에 대를 쌓게 하 다</p>	<p>하교하였다. “기억하기로는 옛날 선조(先朝)에서는 오직 농사를 소중히 여겨 경작하고 김 매는 절기에는 일찍 행차하여 직접 살펴보며 매년 성남(城南)의 들판에 계셨 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로(父老)들이 성적(聖蹟)을 더듬으면서 성덕(聖德)을 칭송하여 그곳에다 대(臺)를 만들고 이름을 ‘성경(省耕)’이라고 하였다. 내가 여러 번 수레를 모셨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좌상 에게 말하여 다시 대(臺) 이름 세 글자를 써서 새기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생각하니 동·서 두 교외에도 역시 성경(省耕)하는 곳이 있어야 마땅한 데 아직 겨를하지 못하였다. 《시경(詩經)》에 ‘때를 맞춘 반가운 비가 이미 내렸거늘 수레를 담당한 자에게 명하였네, 별이 보이는 이른 새벽에 행차해서 상전(桑田)에 머물겠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대체로 봄이 한창인 때 에 때맞은 비가 처음으로 내려 농상(農桑)이 시작되면 반드시 직접 가서 위로 하고 권면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 조정의 가법(家法)은 농사를 소중히 여기는 데 있으니, 이번의 유시는 선조(先朝)를 추모하고 계승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 이다. 그러니 해조로 하여금 동·서 교외에 각각 하나의 대를 쌓되 남쪽 교외 에 수축한 것과 비교해서 옛 것보다 사치스러움이 없게 하라.” 【태백산사고본】</p>	<p>○辛巳/教曰：“記昔先朝惟農是重，耕 耘之節，夙駕親省，每在於城南之野。 至今父老，攀聖蹟而頌聖德，臺其地而 名之曰省耕。予屢陪鑾蹕，尚今記 有。令內閣言于左相，更書臺號三字 刻之。因此思之，東西兩郊，亦宜有 省耕之所，而迄未遑焉。《詩》不云 乎，‘靈雨既零，命彼倌人，星言夙駕， 稅于桑田？’蓋於方春時雨初降，農桑 伊始，必親莅而勞勸之也。況我朝家 法，在於重農，今茲之諭，由於追述。 令該曹，各築一臺於東西郊，而與南郊 修築之所，無侈於舊觀。”</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7월 8일 (을해) 2번째기사 박배를 돌로 쌓는 문</p>	<p>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상이 사복시 제조 이병모(李秉模)에게 하문하기를, “동교(東郊)의 목장에 놓아 먹이는 말은 몇 필인가?” 하니, 병모가 대답하기를,</p>	<p>○次對。上，問司僕提調李秉模曰： “東郊牧場，放馬幾匹？”秉模對以四百 餘匹。上曰：“所謂朴排，漸不成樣。</p>

<p>제, 남초를 심지 말 것 등을 하교하다</p>	<p>“4백여 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박배(朴排)란 것이 점차 불품없이 되어가고 있다. 【세속에서 목장에 나무를 심어 우리를 만들어서 말이 뛰쳐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일컬어 박배(朴排)라 한다.】 고 정승 상진(尙震)이 돌로 성을 쌓아 박배로 삼았는데 그 견고함이 도성(都城)과 같았다 하니, 옛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평원(宏遠)함이 이와 같았다.”      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그때 물의가 분분하였으나, 고 정승이 원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단연코 실행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고금을 막론하고 일을 행하려 하면 어찌 갑론을박이 없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초(南草)6292) 를 심은 전지에 모두 곡식을 심게 하면 몇 만 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기름진 토지에 다 남초를 심었는데 서로(西路)가 더욱 심하니, 이것이 가장 애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체 금지시킬 수는 없는가?”      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남초를 금지하는 것은 술을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니, 만일 금지하려 하면 어려울 바가 없을 듯합니다만, 신은 삼가 기수(氣數)와 상관이 있다고 여깁니다. 청(淸)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돌아갈 적에 군중(軍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음에는 금지하였으나, 군사의 마음이 변함이 있음을 보고서는 드</p>	<p>【俗稱牧場植木爲圍，以防馬逸曰朴排。】故相尙震，以石築城爲朴排，而其完固，等於都城云，古人之處事，宏遠如此矣。” 秉模曰：“伊時物議，亦爲紛紜，故相以長遠之慮，斷然行之。” 上曰：“無論古今，如欲做事，豈能無甲乙之論乎？” 上曰：“種南草之田，皆令播穀，則可得幾許萬石。” 秉模曰：“膏沃之土，盡種南草，西路尤甚，此最可惜。” 上曰：“未可一切禁之耶？” 秉模曰：“禁草，異於禁酒，如欲禁之，似無所難，而臣則竊以爲有關氣數矣。 清人之自我國還歸也，軍中吸草者，初禁之，及見軍心有變，遂撤令云。 今乃通行于天下，豈非氣數之使然乎？” 上曰：“然矣。 南草始出於南方海外之國，而實則自西洋來。 大抵西方之學，駸駸行乎中國，抑由西方之風氣晚開而然乎？ 又有一事不可不禁者。 我國書冊，不無忌諱文字，而赴燕之物，率多以書冊休紙裹之，印書未久，遽作休紙，此專由休紙之利於買賣而然。 今若嚴禁，則其於典守書冊，不爲無助。” 秉模曰：“此當痛禁。” 上曰：“此雖小事，亦有關係，不可等</p>
------------------------------	--	--

	<p>디어 그 명령을 철회하였다 합니다. 지금 천하에 통행하니, 어찌 기수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담배가 남방 해외의 나라에서 처음 나왔으나, 사실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대체로 서방의 학문이 점차 중국에 행해지고 있으니, 어찌면 서방의 풍기(風氣)가 늦게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금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우리 나라의 서책에 기휘(忌諱)하는 문자가 없지 않은데, 연경(燕京)으로 가는 물건을 대부분 서책의 휴지로 싸므로 책을 인출(印出)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휴지가 되어버리니, 이것은 오로지 휴지가 매매에 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만일 엄금하면 서책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p> <p>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이것은 통렬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나 또한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등한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만일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게을리 하며 이미 금하였다가 곧바로 중지하면 명령을 믿지 않는 탄식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하였다.</p>	<p>閑看過。 但若始勤終怠， 既禁旋止， 則徒致不信令之歎矣。”</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7월 29일  (병신) 2번째기사  가뭄때문에 송이를 더</p>	<p>충청도 관찰사 한용화(韓用和)가 장계를 올리기를,  “술밭이 가뭄 끝에 땅이 말라서 진공(進供)하는 송이(松茸)를 기한까지 봉진(封進)하지 못하겠습니다.”</p>	<p>○忠清道觀察使韓用和狀啓言：“松田旱餘土乾， 進供松茸， 不得越限封進。” 回諭曰：“今年雨水， 既不頻仍， 松茸必當難覓。 令前已捧者外， 竝勿封進， 以除民弊。”</p>

<p>이상 봉진하지 말도록 명하다</p>	<p>하니, 회유(回諭)하기를,  “금년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았으니 송이를 반드시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전에 이미 봉진한 것 이외에는 모두 봉진하지 말아 백성의 폐해를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9월 4일 (경오) 2번째기사 송환기가 하사한 음식을 사양하니, 이조 판서직을 수락할 것을 명하다</p>	<p>대사헌 송환기가 현(縣)과 도(道)를 통해 상소하여 음식을 하사하라는 명을 사양하니, 【봉장(封章)은 이조 판서로 옮겨 제수되기 전에 있었다.】 비답하기를,  “월름(廩月)을 사양하기에 음식을 대신 보냈는데, 음식까지 사양하다니 또 어찌 그다지도 지나침이 심한가. 이조 판서의 새로운 명이 어찌 억지로 하기 어려운데 억지로 시킨 것이겠는가. 대신은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을 섬기는 법인데, 경의 이름을 거론하며 천거 단자(單子)에 써서 올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경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사(私)이고 대신을 공경하는 것은 공(公)이다. 여기에서 공사 구분이 판명되니 경중(輕重)을 혹시라도 서로 혼동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외방에 있는 유신(儒臣)으로서 이 직임을 담당할 이로는 경의 집 두 선정(先正)이 가장 오래된 경우이고, 근세에 초빙한 신하 중에 간혹 담당할 이가 있었으나, 또한 어찌 억지로 하기 어려운 바를 억지로 하여 변연(幡然)히 마음을 고쳐 출사(出仕)하도록 권하는 시기에 베풀 것이겠는가. 전의 일로 말미암아 본다면 고사(故事)를 전술(傳述)할 만하고 뒤의 일로 보더라도 정례(政例)6357) 가 곧 그러하니, 경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하물며 전조(銓曹)를 관장하기 전에도 오히려 세도(世道)로 책임</p>	<p>○大司憲宋煥箕，從縣道上疏，辭賜食物之命。【封章在移拜吏判之前】 批曰：“月稟辭巽，代送食物，食物辭巽，又何其過當之甚？ 冢宰新命，是豈難可強而強之哉？ 大臣以人事君，舉卿之名，書進于剡單已久矣。 體卿心，私也，敬大臣，公也。 於是乎公私之分判，而輕重莫或相混。 且在外儒臣之叨是任者，卿家兩先正尚耳，近世旌招之臣，間有爲者，亦豈強所難強，施之於勸令幡然之時也？ 由前而故事可述，由後而政例即然，謂之非卿，莫可亦可。 況在掌銓之前，猶欲責之以世道，望其遐心之勉回，既掌銓矣，安得不益以是期待之也？ 卿須即起登途，以副延佇之至意。”</p>

	<p>지워 그 멀리하는 마음을 힘써 돌리기를 바라려 했었는데, 이미 전조를 맡았으니 어찌 더욱 이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곧바로 길에 올라 간절히 바라는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9월 10일 (병자) 2번째기사 관서의 소미를 진휼청에 떼어주어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p>	<p>호조 판서 김화진이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한 해 주조(鑄造)하는 본전(本錢)이 10만 냥인데, 경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마다 가져다 써서 지금은 남은 것이 없으니, 당장의 수용(需用)이 또한 매우 구차합니다. 관서(關西)의 세로 받은 소미(小米)6362) 3만 석을 진휼청(賑恤廳)에 떼어주어 관리하게 하되, 곡물은海道(該道)에 그대로 놔두고 모곡(耗穀)만 받아서 가져다 쓰게 하는 한편 그 가전(價錢)을 진휼청으로부터 본조에 이송(移送)케 하면 곡부(穀簿)도 감손의 염려가 없고 본전도 도로 충당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묻자,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호조의 곡물이든 진휼청의 곡물이든 그것이 공곡(公穀)임은 매한가지이고 돈으로 곡물을 바꿔도 별로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관서의 곡부가 근년에 매우 넉넉하지 않으므로 고 정승 김익(金燧)이 소미(小米)로 구획(區劃)하여 일체 시행하지 말자는 일로 연석(筵席)에서 아뢴 바가 있고, 일찍이 도신(道臣)을 지낸 바 있는 중신(重臣) 이명식(李命植)도 또한 이 일로써 누차 말하였습니다. 지금 서로 바꾼 뒤에 진휼청이 만일 혹 가져다 쓰기를 청한다면 호조가 곧바로 내어 파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별도로 엄히 신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p>	<p>○戶曹判書金華鎮啓言：“本曹歲鑄本錢十萬兩，因經費不足，逐年取用，今既無餘，目下需用，亦甚苟簡。關西稅小米三萬石，劃付賑廳，作為旬管，而穀物仍留該道，取耗取用，價錢自賑廳，移送本曹，則穀簿無減損之慮，本錢有還充之道。”上，詢于大臣，右議政李秉模曰：“無論戶曹穀賑廳穀，其爲公穀一也，以錢換穀，別無損益。而關西穀簿，近甚不敷，故相金燧，以小米區劃，一切勿施事，有所筵白，重臣李命植，曾經道臣，亦以此屢以爲言。今於相換之後，賑廳如或請得取用，則與戶曹之直爲發賣，別無異同。此則別加嚴飭爲宜。”從之。</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11월 18 일(계미)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대신 들과 활을 쏘고, 고기 와 꿩을 제신들에게 먹이다</p>	<p>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작은 표적을 설치하고 상이 활 7순(巡)을 쏘아서 15 발을 맞혔다. 각신(閣臣)·승지·사관·장신(將臣)에게 명하여 짝을 지어 활쏘게 하고 장막에 나아가 고기를 삶고 꿩을 구워 제신(諸臣)들에게 나누어 먹였다.</p>	<p>○癸未/御春塘臺，設小的，御射七巡， 獲十五矢。命閣臣、承、史、將臣耦 射，御帟幕，煮肉燒雉，分饋諸臣。</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11월 29 일(갑오) 2번째기사 영남의 진자로 상진미 5천 석과 조모 5만 석 의 획급을 허락하다</p>	<p>영남의 진자(賑資)로 상진미(常賑米) 5천 석과 조모(租麴)6406) 5만 석의 획 급(劃給)을 허락하였으니, 관찰사 이형원(李亨元)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p>	<p>許劃嶺南賑資，常賑米五千石，租麴五 萬石，從觀察使李亨元啓請也。</p>
<p>정조 47권, 21년 (1797 정사 / 청 가경 (嘉慶) 2년) 12월 11 일(병오) 1번째기사</p>	<p>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고 납향(臘享)의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다. <b>【태백산사고본】</b></p>	<p>丙午/展拜于景慕宮，省臘享牲器。</p>

<p>경모궁을 참배하고 납향의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다</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嘉慶) 3년) 1월 1일 (병인) 1번째기사 팔도와 사도(四都)에 권농의 윤음을 내리다</p>	<p>윤음(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다음과 같이 내렸다.  “풍년이 가장 으뜸가는 상서이고, 상서는 반드시 사전의 징험이 있는 법인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반드시 ‘내년에 크게 풍년들 조짐이 납전삼백(臘前三白)6429) 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입동(立冬)에서 납(臘)까지 모두 70여 일 동안에 27번의 대설(大雪)이 내려, 3을 세 번 곱하여 9가 된 데에다 다시 3을 곱한 숫자가 되었으니, 풍년상서와 상서의 조짐이 어찌 꼭 태인의 점[大人之占]6430) 과 목인의 꿈[牧人之夢]6431) 을 기다려 결정할 바 이겠는가. 그러나 즉공(卽功)6432) 의 방도를 크게 도모하고, 상서를 내려주신 하늘의 권고(眷顧)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권농(勸農)’ 두 글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남묘(南畝)에 점심 내다 먹는 것이 권농관(勸農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가 가서 기뻐하였던가.6433) 심지어 가래·호미 등의 농기구와 하급 농관(農官)들까지 동원되어 미리미리 씨 뿌리고 가꾸는 일을 갖추 다스려주던 사실이 농업을 중시하던 민속(飢俗)6434) 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농부는 일에 민첩하고 농관은 늘 가서 상담(相談)을 하여야만 벼가 자라 밭이랑에 꽂차서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장차 곡식이 지붕처럼 높이 쌓이고 곳집이 섬처럼 커져서, 집집마다 배불리 먹게 되고 증손(曾孫)이 노하지 않게 되리라.6435) 아, 너희 방백(方伯)과 유수(留守) 등의 신하들은 곧 옛날의 이른바 농관들이므로, 위로는 임금이 노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책임이 오직 경(卿)들에게 달려 있으니, 경들이 책임을 홀만히 하고자 해서야 되겠는가. 봄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 한결같이 종사해서 추수 뒤까지 홀만함이 없이 한다면</p>	<p>○丙寅朔/下綸音于八道四都曰: “豐年爲上瑞, 瑞必有徵驗, 人之恒言, 必曰: ‘來年大有之驗, 徵於臘前三白。’ 顧今立冬抵臘, 七十有日, 得廿七番大雪, 三之倍, 而又倍, 積爲九而倍三, 豐之瑞, 瑞之徵, 豈待大人之占、牧人之夢而決者然? 而不圖卽功之方, 用答降康之眷, 惟係勸農二字。南畝之饑, 何與於田峻, 而其至也喜? 以至錢鏹之具, 保介之徵, 備治播脩, 其早其豫, 于以見飢俗之重本。大抵農夫克敏, 農官來茹, 然後禾易長畝, 歲取十千, 將使稼如茨而庾如坻, 家家含哺, 曾孫不怒。咨! 爾方伯居留之臣, 卽古所謂農官, 上而不怒, 下而克敏, 其責惟卿等, 卿等欲放忽, 得乎? 始自東作之前, 悉力悉心, 一此莫忽於西成之後, 則屢豐之慶, 亶在於斯, 卿等勉旃。”</p>



	해마다 풍년드는 경사가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니, 경들은 힘써 하라.”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월 5일 (경오)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친히 기곡대제축을 주관하 다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친히 기곡대제축(祈穀大祭祝)을 주관하고 사직단(社稷壇)에서 재숙하였다.	○庚午/御仁政殿, 親押祈穀大祭祝, 齋宿于社壇。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월 7일 (임신)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군졸 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가 군졸들을 호궐(犒饋)하였다.	○壬申/御春塘臺, 犒饋軍兵。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월 15일 (경진) 2번째기사 나리포창의 곡식을 여 러 고을에 나누어 담 당케 하다	나리포창(羅離舖倉)의 곡식을 여러 고을에 나누는 것과 한 고을로 합하는 데에 대한 편리 여부를 의논하였는데, 정민시(鄭民始)·서용보(徐龍輔) 등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로 옮겨 운반할 즈음에 많은 폐단이 있게 될 것이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으나 그렇게 하여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 고을에 죄다 모아두어 한 고을만 오로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정사이고, 또 운반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체되	○議羅里舖穀, 分合便否, 鄭民始、徐龍輔等曰: “濟州移轉之際, 爲弊多端, 使各邑分當, 猶不能堪。 今茲都置一邑, 使之專當, 決是行不得之政, 且轉輸之節, 亦必有遲滯難便之患矣。” 廟堂請更關問該道臣, 從之。

	<p>어 불편한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므로, 묘당(廟堂)이 다시 관문을 내어 해당 도신(道臣)에게 물어서 처리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월 15일      (경진) 3번째기사      위화도에서 농사짓는      일에 대해 그 가부를      의논하다</p>	<p>비국 당상 정민시가 아뢰기를,      “의주부(義州府)는 본디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데, 그중 위화도(威化島)는 토지가 비옥한데도 오랫동안 버려져왔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나, 의논하는 자가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성조(聖祖)6454) 께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또는 ‘연변(沿邊)의 땅이다.’ 또는 ‘오래 버려진 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 읍지(邑誌)에 의하면 ‘땅이 매우 비옥하여 농사지은 백성이 많았는데, 천순(天順)6455) 5년에 우리 농민이 야인(野人)에게 피납당한 일이 있어 이때부터 관(官)에서 농사짓는 것을 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졌다는 것은 곧 야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본디 성조께서 군대를 주둔시킨 곳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영흥(永興) 흑석리(黑石里)의 소중함은 위화도보다도 더욱 자별하지만 그곳은 오히려 경작을 허락하였고 보면, 유독 이 위화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한 말인 듯합니다. 서쪽으로 강가의 칠읍(七邑)과 북쪽으로 삼수(三水)·갑산(甲山)과 육진(六鎭)은 모두가 연변의 땅인데도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찌하여 유독 이 위화도에 대해서만 어렵게 여긴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 위화도 밖으로는 또 일곱 개의 섬이 강 가운데에 나열해 있는데, 그 섬들은 모두 농사를 지어먹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섬은 저</p>	<p>○備堂鄭民始啓言：“義州府，人多地狹，而威化島土膏沃久棄。民願許耕，而議者難之曰：‘聖祖駐軍之地也。’曰：‘沿邊之地也。’曰：‘久棄之地也。’此有不然者。邑誌曰：‘地甚沃饒，民多耕墾，天順五年，農民爲野人所擄，自後官禁耕墾。’然則其棄也，由於野人之侵掠，本非爲駐軍之地而然也。且永興黑石里所重，比威化尤別，而尙許耕墾，獨於此島云然，未聞事實之言也。西之江邊七邑，北之三、甲、六鎭，均是邊之地，而民皆居且耕焉，則奚獨於此島持難乎？況此島之外，又有七島，羅列江中，皆許耕食，此島在七島之內，便是內地，尤無可拘。至於久棄云云，本緣因循未遑，非有關係。而且慈城、厚州，亦是久廢之地，而今皆許民耕墾，尤不必致疑也。邑誌又曰：‘島中有二碑，字沒不可記。’今若豎碑，以表洪烈，復舊許</p>

	<p>일곱 섬의 안에 있어 곧 내지(內地)인 만큼 더욱이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오래 버려진 땅이라 한 데에 이르러서는 본디 고식적인 데에 젖어 일을 미처 착수하지 못한 소치일 뿐이요, 별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성(慈城)·후주(厚州)도 역시 오래 버려진 땅이지만 지금은 모두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하고 있으니, 더욱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읍지에는 또 ‘섬 가운데 비석이 두 개가 있는데, 글자가 마멸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하였으니, 지금 만일 비를 다시 세워서 큰 업적을 표하고, 예전대로 경작을 허락한다면 실로 사의에 합당하겠습니다.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이 섬은 큰물을 만날 때마다 매양 잠기는 걱정이 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봄·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되지 못하고 허술한 단서도 많습니다.”</p> <p>하여, 마침내 그 의논을 정지시켰다</p>	<p>耕，實合事宜。命廟堂稟處。”備邊司覆啓：“此島值潦水，每被沈滄之患，令民春夏耕作，秋穫而歸，非久長之計，且多踈虞之端。”遂寢其議。</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嘉慶) 3년) 2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화성의 백성들에 대해 환곡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하다</p>	<p>제신이 안부를 묻고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을묘년, 정리곡을 설치할 적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려고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자혜를 널리 펴는 뜻이라고는 하나, 3백여 주군에서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즘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지금 이 곡식을 모조리 본부에 붙여서 화성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니, 대신 이하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p>	<p>○丁酉/諸臣承候入侍。上曰：“乙卯整理穀設置也，欲屬之華城，仍除其耗，因諸議不一，分給各道。雖曰廣慈惠之意，三百州郡，斂散之際，不無貽弊，大非予本意。今以此穀，盡屬本府，使華城一府，永無還穀之耗何如？”大臣以下皆稱善。上曰：“西京去古未遠，故爲民施惠，輒減田租之半。今則異於是，有田者率多豪富，故減租之惠，不及於小民。以今言之，必除其耗，然後還耗之除，專爲小民之</p>

	<p>“서경(西京) 시대는 옛 시대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베푸는 데 있어 매양 전조(田租)의 절반을 감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달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거개가 부호이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사세로 말하자면 반드시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만이 오로지 서민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다.</p>	<p>惠矣。”</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2월 4일 (무술) 3번째기사 화성 이외의 제도에 유치한 정리곡(整理穀) 들을 모두 상진청에 소속시키다</p>	<p>명하여 화성 이외의 제도(諸道)에 유치한 정리곡들을 모두 상진청(常賑廳)에 소속시켜, 해당 청으로 하여금 관례대로 조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변사의 아뢰는 말에 따른 것이다. 【심도(沁都)6472) 의 경우는 상진청이 없으므로, 군향(軍餉)을 더 만들도록 명하였다.】</p>	<p>○命華城外諸道所置整理穀，屬之常賑穀，令該廳，依例糶糴，從備邊司啓也。【沁都則無常賑穀，故命添作軍餉。】。 【태백산사고본】</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3월 18일 (임오) 3번째기사 해서 지방에 있는 둔 전의 폐단을 고치도록 하다</p>	<p>각신(閣臣) 이시원(李始源)이 막 안악 군수(安岳郡守)가 되었는데, 들어와 연석에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한 것은 본디 용정(戎政)을 다스리고 경비(經費)를 감소시키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미 군영을 설치했으면 또 둔전(屯田)도 설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서(海西)의 봉산(鳳山) 등 여러 군에도 또한 훈련원·총융청 등 여러 군영의 제도를 모방하여 둔소(屯所)를 나누어 설치해서 장사(將士)들에 대한 봉급의 수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p>	<p>○閣臣李始源，方爲安岳郡守，登筵啓言：“朝家之設置壯勇營，本出於詰戎，政減經費之至意，既設軍營，又不可不置屯土，故海西鳳山等諸郡，亦倣訓、摠諸營之制，分設屯所，以爲將士支放之需。而收稅之法，只取三分一，民樂其利，爭趨佃作，中間任事之人，恣</p>

리고 세금을 거두는 데는 3분의 1만을 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이익을 좋아하여 서로 다투어 와서 소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재능을 과시하여 집복(執卜)의 법(6485)을 새로 만들고, 수확기가 되면 농사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는 짐[卜] 수를 강제로 정하고 받아들이는 두곡(斗斛)을 매우 넘치게 하고 있으니, 명칭은 비록 3분의 1만을 취한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종자조(種子條)나 수세조(水稅條)나 하는 것도 백성들에게만 모조리 담당하게 하므로,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성상께서는 모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사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비록 소중한 경상 비용에 관계가 되더라도 매양 차라리 법을 느슨하게 해주는 실책을 범하리라는 뜻에 진념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둔감(屯監) 무리들이 오직 제 뜻대로 조종하여 끝내 백성들과 서로 이익을 다투는 꼴이 되었는데도, 해당 수령들은 또한 본영(本營)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여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서 감히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본의이며 성상께서 고심하신 뜻이겠습니까. 신이 마침 그 이웃 고을을 지키면서 이런 폐단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백성의 고통에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비록 일정하게 수납하는 정공(正供)에 대해서도 경상비의 부족함은 고려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 주어 어느 고통이든 모두 견감해서 일체 나의 고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찮은 둔감 무리들이 백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 소행이 매우 가증스럽도다. 해당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일체 백성의 뜻에 따라서 세법(稅法)을 개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한 뒤에도 혹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여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인습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해당 수령부터 현고(現告)를 받고 이에 따라 엄격히 감죄(勘罪)하도록 하되, 묘

意銜能，始創執卜之法，秋成看坪，勒定卜數，所捧斗斛，極其濫峻，名雖三分取一，而實則不然。且所謂種子條、收稅條，使民全當，怨言頗聞。惟我聖上，凡係恤隱蠲瘼之政，雖關經用之重，每軫寧失之義。屯監輩，惟意操縱，終未免與民爭利，而守土之臣，又以事關本營，疑畏囁嚅，不敢出一言，此豈朝廷本意，聖上苦心乎？臣適守隣郡，慣聞此弊，故敢達矣。”教曰：“事有關於民隱，雖惟正常供，不恤經費之欠縮，有願必從，無瘼不蠲，卽一副當苦心。則何物屯監輩，行此侵擾之舉者，所爲痛惡。令邑倅，一從民情，改定稅式。如是下教之後，又或却顧趑趄，致或如前循襲，先自該倅，隨現嚴勘，令廟堂措辭關飭該道臣。而海西如此，則關西可知，亦令關西道臣，查問屯弊於屯在各邑，使之據實狀聞。”

	당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로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해당 도신에게 신칙하도록 하라. 그런데 해서 지방이 이러하다면 관서 지방도 알 수 있으니, 또한 관서의 도신으로 하여금 둔전이 있는 각읍의 둔전에 대한 폐단을 조사하여 사실에 의거해서 장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3월 30일 (갑오) 1번째기사 우유선 이정보에게 쌀과 고기를 보내도록 하다	우유선 이정보(李城輔)가 이르자, 호조에 명하여 쌀과 고기를 보내도록 하였다	○甲午/右諭善李城輔至， 命戶曹， 輸送米肉。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4월 7일 (신축) 1번째기사 이정보에게 식물을 전하도록 하다	승지를 보내어 우유선 이정보에게 하유를 전하고, 지방관을 신칙하여 이정보에게 식물(食物)을 전하도록 하였다.	○辛丑/遣承旨， 傳諭右諭善李城輔， 飭地方官， 傳致食物。
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4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해서 지방의 미곡정책에 대해 의논하다	차대가 있었다. 문무신의 전경강(專經講)과 윤대(輪對)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서(海西)의 상채조(償債條)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우의정 이병모가 말하기를, “원수(元數)가 4만 냥이라고 하더이다.”	○乙巳/次對。 行文武臣專經講輪對。 上曰：“海西尙參奚爲幾許?” 右議政李秉模曰：“元數爲四萬兩云矣。” 上曰：“蕩債者幾許云耶?” 秉模曰：“聞是二萬餘兩。 而所謂償債穀， 則反不無祛弊生弊之端， 此則道臣， 自當從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탕채(蕩債)된 것은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2만여 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상채곡(償債穀)은 폐단을 제거하려다  도리어 폐단을 만드는 단서도 없지 않으니, 이는 도신이 스스로 의당 편리할  대로 좇아 바로잡아서 물분조(勿分條)에 붙여야 할 것이요, 또한 꼭 조정이  하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분곡(加分穀)이 상채곡과 서로 다른가?”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가분곡이 상채곡에 첨입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분곡(加分穀)의 경우는 지방(支放)이 부족한 때문에 전 도백 이태영(李泰  永)이 청하여 얻어간 것인데, 지금은 잉여분이 이미 많아졌으니, 이들 잡명색  (雜名色)을 물분조에 붙여버린 다음에야 병폐의 근원을 막을 수 있겠다. 그리  고 이밖의 여러 가지 곡식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일일이 다 받은 유치하고  받은 나누어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만일 정퇴(停退)만 하지 않는다면 비록 반분법(半分法)을 모조리 시행하더라  도 지방(支放)이 부족하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정퇴  가 잦아서 비록 양남(兩南)으로 말하더라도, 작년도의 진곡(賑穀)은 10만 석  인데 정퇴한 것이 또한 수십만 석에 가까와 이미 30만 석을 잃은 셈입니다.  지금 만일 일일이 반만 나누어준다면 반드시 점차 재정이 감축될 터라 이것  이 가장 난처한 일이고, 순영(巡營) 곡식의 경우도 반만 나누어주는 법을 적  용한다면 순영의 비용 또한 장차 탕진되어 일마다 모두 장애의 단서가 있게</p>	<p>便矯揉，屬之勿分，而亦不必待朝家知  委矣。”上曰：“加分穀，與償債穀有  異乎？”秉模曰：“以加分穀而有添入於  償債云矣。”上曰：“加穀則以支放不  足之故，前道伯李泰永之所請得，而今  則剩餘既多，此等雜名色，付之勿分  條，然後弊源可杜。而此外諸穀，無  論某模，一一半留半分，爲便好矣。”  秉模曰：“若非停退，則雖盡行半分之  法，支放可不至不足。而近年則停退  頻數，雖以兩南言之，昨年賑穀爲十萬  石，停退者亦近數十萬石，已失却三十  萬石。今若一一半分，則必漸就減縮，  此最難處，而至若巡營穀，亦用半分之  法，則巡營所用，亦將蕩然，事事皆有  掣礙之端。而海伯則殆同見牛未見  羊。故以道內還弊，爲尤甚云，而近  來則到處皆然矣。”上又曰：“古則曰  徹曰貢，不過爲升一、九一之法，皆有  依據。我朝則自來田賦之制，猶不及  於升一，而近則各樣橫斂，百弊俱生，  所謂結役之弊，殆爲升之五、六，此宜  矯革。而至於簽丁之弊，壬辰以前所  無之軍額，如各營門新設之軍丁，不知  爲幾十萬名，如是而冗費安得不日增</p>
--	---	--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해도 관찰사는 마치 소만 보고 염소는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환곡에 대한 폐단이 더욱 심하다고 한 것이지만, 근래에는 어느 곳이나 다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옛날에는 철법(徹法)이니 공법(貢法)이니 한 것이 고작 십일세(什一稅)·구일세(九一稅)에 불과했던 법으로서 모두 의거한 데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조정의 경우는 원래부터 전부(田賦)의 제도가 십일세에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각종의 불법적인 세금 징수로 온갖 폐단이 함께 생겨서, 이른바 결역(結役)의 폐단은 거의 십오세·십륙세나 되고 있으니, 이는 의당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정(簽丁)의 폐단으로 말하자면, 임진년 이전에는 없었던 군역(軍額)으로서 지금 각 영문(營門)에 새로 설치된 군정(軍丁)이 몇 십만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조차 없을 정도이니, 이렇고도 어떻게 불필요한 비용이 날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근래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매우 많아서 그 대신을 충당하지 못하여, 전일의 낭비는 감소시키지 못하고 후일의 낭비는 점차 더해지니, 이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인데도 탁지(度支)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흔히 이 격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고금의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살면 반드시 지금 세상의 일에 익숙한 다음에야 고례(古禮)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삼대(三代) 이전의 훌륭한 법과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는 것도 또한 많다. 그러므로 비록 공자 같은 성인으로도 일찍이 태묘(太廟)에 들어가 매사를 물었으니, 성인이 때에 따라 타당하게 조처한 데서 지금의 풍속을 인하여 옛 제도를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사람으로서 지금의 예를 모른 자가 어떻게 옛 예에 미처갈 수 있으며, 지금의 법식을 모른 자가 어떻게 옛 법식에 익숙할 수 있겠는가. 한림(翰林)·주서(注書)도 출신한 처음부터 만일 후일 이런 직업에 쓰일 것을 안다면 반드시

乎?大抵近來冗費甚多, 而不能充其代, 前冗未減, 後冗漸加, 此爲今日之痼弊, 而度支之長, 多不識格例矣。古今異宜, 居今之世, 必也鍊習於今事, 然後可斟酌乎古禮。雖有三代以前良法義制, 其不當於今者亦多矣。故雖以夫子之聖, 而亦嘗入廟問事, 聖人時措之宜, 可見其因今之俗, 行古之制。則爲今人而不識今禮者, 其何以及於古(例)禮, 不解今式者, 其何以練於古式乎? 自翰、注出身之初, 若知需用於此日, 則必思鍊熟於式例。而近來之人, 凡干式例, 初不留意, 以至筵體政格, 一切擺脫, 所謂政事也文學也財賦也, 一皆茫昧, 則他日朝廷事, 其何以鍊達乎?”



	<p>시 이런 식례에 익숙하기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모든 식례에 관계된 것들은 애당초 마음에 두지도 않고, 경연의 체례와 정사의 격식에 이르러서도 일체 배제해버리니, 이른바 정사(政事)며 문학(文學)이며 재부(財賦)에 대해서 모두 어두우면 후일 조정의 일에 어떻게 숙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4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 벼와 묘목을 손상시키는 벌레를 제거하기를 당부하다</p>	<p>전교하였다. “벌레가 벼와 묘목(墓木)을 손상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잡아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사(經史)에서 상고해보면 옛부터 그러하였으니,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전씨(剪氏)의 직(職)이 모두 이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벼 줄기를 갹아먹는 것은 명(螟)이고 잎을 갹아먹는 것은 등(騰)이며, 뿌리를 갹아먹는 것은 모(蠹)이고, 마디를 갹아먹는 것은 적(賊)이다. 그리하여 못된 벌레를 불태워달라.[秉卑炎火]는 것은 전조(田祖)의 신령께 비는 말이고, 구덩이를 파고 태워서 묻는 것은 당(唐)나라 때 요숭(姚崇)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역대에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성헌(成憲)으로 만들고 모두 민력(民力)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자양(紫陽)6532)의 훈계에도 이르기를 ‘어찌 사람들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다만 견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利害)의 실상을 잘 파악하여 자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안일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서 스스로 원망하지 않을 뿐이다. 근자에 원침(園寢)의 뽕나무·가래나무에도 충해(蟲害)가 있어, 나무를 심은 10읍의 수령들로 하여금 관속들을 거느리고 벌레를 제거하게 해서 잠시 수고로움이 길이 안일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을 부쳤다. 그러나 관속들도 백성인지라 그들이 뜨거운 벌에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니, 자못 침식할 마음도 잊게 된</p>	<p>○教曰：“蟲損嘉禾宰樹，安得不捕，而除之攷之？經史自昔伊然，《周官》庶(民) [氏]，剪氏之職，皆爲是而設耳。食苗者螟，食葉者騰，食根者蠹，食節者賊。秉畀炎火，祝于田祖之神，掘坑焚瘞，始於唐時姚崇，歷代因之，遂爲成憲，皆用民力。紫陽之訓有云，‘豈能不役人，徒而坐致成功？’但有見識人，見得利害之實，知其勞我者，乃所以逸我，自不怨耳。近者園寢桑梓，有蟲損之害，使植木十邑守宰，率官隸捕除之，以寓暫勞永逸之意。而官隸亦民也，念其烈陽使役，殆忘寢食。乃引(歐陽脩) [歐陽修] 詩：‘官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之句，特創買蟲之式，幸得事半而功倍。於予心猶有不自安者，是蟲也，既蔑蜂蠶之功，較甚蚊蠃之毒。然且卽蠢動之</p>

다. 이에 구양수(歐陽脩)의 시에 ‘관전 스무 냥으로 한 말씩을 사들이니, 잠시 동안에 산더미같이 쌓이누나.[官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특별히 벌레를 사들이는 방식을 창안하고 나니, 어찌면 일은 절반만 하고도 공은 갑절이나 얻을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도 스스로 편치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벌레는 이미 벌이나 누에와 같은 공이 없는데다 해독은 모기나 등에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꿈틀거리는 생물이니, 성인이 벌레에 대해서 그의 공도 기록하고 그의 해독도 명시한 뜻을 준수하여 의당 잡아 제거해야 할 것이나, 그 제거하는 즈음에도 방편적인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의당 생물 살리는 덕을 그 사이에 병행하도록 해야 하니 해독이 되는 것도 그 종류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다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서 늪으로 내친 것은 또한 불질러 태워버린 것 보다는 나은 것이다. 더구나 ‘잡아서 불태워달라.[乘卑炎火]’는 짓귀는 그냥 의탁하는 말일 뿐이고, 불태워 묻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 상고와 후세의 구별을 또한 족히 볼 수가 있다.

일찍이 듣건대, 벌레가 날아서 바다에 들어가면 어하(魚蝦)로 변화한다고 하였고,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밝은 징험도 아직까지 전하고 있으므로, 여러날을 조용히 연구한 끝에 법령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앞으로는 벌레를 주워서 구포(鷗浦)와 해구포(海口浦)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그곳은 나무 심은 곳과 멀지 않아서 20리 거리밖에 되지 않으므로, 벌레를 사는 데 있어서는 인력(人力)을 줄일 수 있고, 벌레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를 본받는 일이니, 의리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수신(守臣)을 소견하고 이 뜻을 하유하라. 그리고 또 여강(驪江)의 능수(陵樹)에도 충해가 있다고 하니, 벌레를 사는 일과 바다에 던지는 일을 각각 일체 화성(華城)에 새로 반포한 식령(式令)에 의거해서 하면 결코 추호도 안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어서 도백의 장계를 보니, 벌레를 다 주워내기는 아직 묘연한 실정인데, 이때에 백성을

生物也，遵聖人錄其功明其毒之義，固可捕而除之，除之之際，亦應有方便之方。宜令曰生之德，並行於其間，莫曰爲害隨其爲物，而有巨細之各異。驅而放菹，勝於烈而焚之。況乘畀之詠，託辭也，焚瘞之舉，實事也，邃古後世之別，亦足可觀。嘗聞蟲飛入海，化爲魚蝦，(化)[伏]波之治武陵，明驗尙傳，多日潛究，決意著令。此後拾投鷗淵海口浦之，距植木所不遠，而近爲二十里，買蟲省人力，投海述古事，於義有何害乎？召見守臣，面諭此意。而又於驪江陵樹，亦云蟲損，買蟲與投水，各一依華城新頒式令用之，而決知其毫無不可。續見道伯之狀，畢拾姑杳然，比時役民，有妨農政，不勝耿耿。呼燭書下，卽令廟堂，知委該道。而今後餘皆以爲例事，分付禮曹、漢城府。”

	<p>부리는 것은 농정(農政)에 방해가 될 것이라, 걱정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에 당장 촛불을 밝히도록 하여 이 내용을 써서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도(該道)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디든지 모두 이것을 예로 삼을 일로 예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4월 25일 (기미) 3번째기사 벌레 잡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도록 명하다</p>	<p>상이 또 수원부 유수 서유린(徐有隣)에게 하교하기를, “더위가 이러한데 벌레 잡는 일을 장차 시작하게 되었는지라, 각읍 수령들이 숲속을 왕래하면서 뜨거운 벌을 받고 벌레에 쏘이어 살이 부르트곤 할 것을 생각하니, 그 모양이 안 봐도 눈에 선하고, 그 수고로움을 완연히 내가 겪는 듯하다. 더구나 피폐한 고을의 이례(吏隸)와 교졸(校卒)들은 봄이면 나무 심는 일, 여름이면 벌레 잡는 일, 가을이면 집짓는 일로 해마다 노역이 끝이 없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잠시도 내 마음에서 놓을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조정에서 몸소 나가 친히 감독하고자 한 일인데, 수신에게만 맡겨두고 보니, 수신이 오히려 미처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리고 10읍의 수령들과 10읍의 이례와 교졸들의 과외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찌 그들을 진념하는 거조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특별히 제조한 제중단(濟衆丹) 1천 정(錠), 광제단(廣濟丹) 3천 정, 청심원(淸心元) 1백 환(丸)을 내리노니 이것을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제중단 3천 정, 향유산(香薷散) 4백 첩은 이례와 교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경이 이를 지수(祇受)한 후에는 이 전령(傳令)을 등사(謄寫)하여 10읍의 수령들에게 반시(頒示)해서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그들에게까지 미쳤음을 알게 하고, 또 내영(內營)의 교졸들을 보내서 양식과 약물을 지급하여 수령들과</p>	<p>○上, 又敎水原府留守徐有隣曰: “日熱如此, 而拾蟲之役將始, 言念各邑守宰, 往來林木之中, 衝炎負暄, 冒螫生繭, 其狀長如在目, 其勞宛若在己。何況殘邑吏隸校卒之春而植役, 夏而拾役, 秋而搆役, 役役年年偏苦者爾曹, 爾曹之效力至此, 尤不勝暫釋。此皆朝家所欲躬莅而親檢之事也, 委之守臣, 尚有靡及之懷。如十邑守宰, 十邑吏隸校卒科外役身, 豈無軫念之舉乎? 今下別製濟衆丹一千錠, 廣濟丹三千錠, 淸心元一百丸, 分給守宰等處, 濟衆丹三千錠, 香薷散四百貼, 分給吏隸校卒等處。卿其祇受後, 謄出此傳令, 頒示十邑守宰, 俾知爲所重之思, 暨于渠輩, 又遣內營校卒, 給糧資藥物, 與守宰分力。” 役既訖, 有隣具別單以聞, 命効勞人等, 施賞有差。</p>

	<p>나누어 먹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서유린이 별단(別單)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차등 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p>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6월 5일          (정유) 1번째기사          화성부에 미곡대신 메          밀을 심도록 하다</p>	<p>비가 내리자 특별히 화성부(華城府)에 하유하기를,          “농사란 천시(天時)를 준수하고 토의(土宜)를 관찰하고 인력(人力)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어야만 풍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곡식 중에는 네 철[四節]을 지나서 먹는 것이 있고, 세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고, 두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으며, 또는 평야 지대에 알맞고 산간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이 있고, 산간 지대에 알맞고 비습한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시기의 조만과 토질의 건조하고 비습함에 따라 서로 알맞은 곡식이 한두 종자가 아니니, 종자를 잘 불리어 싹틔우고 잘 가꾸어 여물게 하는 것이나 땅을 묵히어 잡초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모두 사람이 힘을 다하고 안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비록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읽지 않았으나, 모든 일은 분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메밀[木麥]이 대신 파종하기에 가장 알맞으니, 그것은 맨 나중에 심고 맨 먼저 익기 때문이다. 또 맨 뒤에 심고 맨 먼저 익는 것을 올려라 하는데, 이것은 빈풍(飊風)의 시(詩)에서 읊었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대체로 이른바 대신 파종한다는 것은 곧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로 인하여 절서가 이미 지났는데 들에는 심지 못한 모가 많으나 밭에는 뿌릴 만한 종자가 없을 경우에 오만 곡식 중에서 반드시 뒤에 심고 먼저 익는 것을 가져다가 대신 파종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유족하게 하는 것을 이른</p>	<p>○丁酉/雨。 別諭華城府曰：“農者律天時相土宜盡人力，三者無失然後，可獲有秋。 穀有經四節而食者，經三節而食者，經二節而食者，又有宜於野而不宜於山者， 宜於山而不宜於水者。 時之早晚， 土之原隰， 百穀不一其種， 而苞粟汙菜， 係乎人力之盡不盡焉耳。 予雖未讀《農政全書》， 而百千萬事， 不出於分數。 木麥之最宜代播， 以其後種而先熟也。 後種先熟曰(穆)穆， 已自《豳詩》著詠， 周公豈欺我哉？ 夫所謂代播云者， 水旱爲災， 節序過愆， 野多未移之秧， 田乏可降之種， 則乃於百穀之中， 必取後種先熟者， 代而播之， 俾裕民食之謂。 而其間首尾， 優免霜信， 可以爲不托， 可以當雕胡， 其療飢救荒之功， 頓勝於西之蹲鴟， 南之甘藷， 惟木麥爲良， 此予所以或值秧節之衍期， 必勸木麥之代播者也。 昨見廟堂草記， 以木麥外， 亦多宜播之穀爲</p>

말이다. 그런데 결실 때까지의 전후 기간이 충분히 서리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수[不托]도 만들 수 있고 조호(雕胡)6544)의 맛과 영양을 당할 만도 하여, 흉년의 기근을 구제하는 공이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오직 메밀이므로, 내가 이 때문에 흑 모를 심지 못하고 철을 넘긴 때를 만나면 반드시 이 메밀을 대신 파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어제 묘당의 초기(草記)를 보니, 메밀 외에도 파종하기에 알맞은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콩을 심으면 가꾸기 쉬운 것이 메밀에 다음가는 하나, 토질(土質)과 농사일이 삼남(三南)·경기(京畿)·호서(湖西) 지역이 서로 같지 않고, 절후(節候) 또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달라서 이모작(二毛作)의 시기를 놓치면 모내기를 제때에 못하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니 그루갈이에 쓰이는 곡종을 대용갈이에 사용해서 제도(諸道)가 모두 그 곡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기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장은 비록 비습한 땅에서 잘되기는 하나, 파종에서 수확 때까지가 1백일 안팎이 드는데 한로절(寒露節)이 8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고 보면, 미처 익지 못하여 마치 채권(債券)만 보류하고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늦기장 종자의 경우는 귀하기가 마치 황금 같아서 창고에도 매매되는 것이 없고 민간에도 간수해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이를 구해다가 전국에 보급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메밀을 대신 파종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경기 지방의 수령과 백성들로서 불편함을 말하는 자들은 매양 ‘수전(水田)은 비습하여 비가 많이 오면 종자가 녹아버릴 것이다.’고 한다. 그러나 조정에서 파종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런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높고 건조하여 모내기를 못한 곳을 말하였고, 또는 구룡(邱隴)·천맥(阡陌) 등 세금도 안 내는 불모지에다 호미와 쟁기로 갈아 일구는 법을 쓰도록 하였던 것이니, 땅이 비습하여 종자가 녹아버리는 걱정은 애당초 논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메밀 종자를 산간 고을로부터 연안의 군읍

言。種菽之易爲力，次於木麥，而土性田功，不竝以南、畿、湖，節候雖似各異，根耕之過期，與移秧一般。以用於根耕者，用於代播，而諸路之一齊食實，固未可必。稷雖就濕之性，播之距(獲)穫，費却百日內外，而寒露入節隔在八十餘日，則未及成熟，如執左契。至於晚稷之種，其貴如金，倉無糶糶，村無蓋藏，將覓來何處，可以派及乎？今於木麥代播之令，畿內守令民人之言不便者，輒云‘水田沮洳，雨洽則當消瀝。’朝家之所勸播者，非此之謂也，實在於高燥未移之處，而又於邱隴阡陌不稅不毛之地，俾用鋤農耨耕之法，則沮洳消瀝之患，初非可論。木麥種子之自巖邑移沿郡也，東風送帆，無脛而至，可謂天公會事發。況又官給其種，公蠲其稅，諸凡易簡便當之策，靡所不用其極，無論所收之多少贏縮，一切委之於民人，粒粒皆我充腸，飽腹之惟意，則此豈非回咷爲笑，反歎如稔，以人功奪造化之一大關捩，而亦足謂之藏富於民，君孰與不足乎？外此不言所利之美利，指不勝(撻) [儂]，而下民蚩蚩，不可與之謀始。畿之俗，

으로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동풍만 순조로이 불어주면 다리가 없이도 절로 이송될 것이니, 참으로 하늘만이 아는 일이 발설되었다고 이를 만하다. 더구나 또 고을에서 종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견면해주며 모든 간편하고 편익한 계획을 힘이 닿는데까지 다 베풀어주고도, 수확의 많고 적고 남고 부족함을 막론하고 일체 백성들에게 맡겨서 한알한알을 모두 백성들이 자신의 배채우는 데에만 마음을 쓰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울음을 웃음으로 돌리고 흉년을 풍년으로 돌리어 인공(人功)으로 천지조화를 빼앗는 일대 관건이 되고, 또한 백성이 부유해지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가난하겠느냐고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밖에도 미처 말로 열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로움이 이루 다 꼽을 수도 없건만, 백성들은 워낙 어리석어서 함께 일의 시작을 피할 수가 없다. 경기 지방의 풍속은 또 농삿일에 게을러서, 한때의 눈을 깊이 가는 일을 기피하여 장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그만한 수확을 내버리곤 한다. 그리하여 해마다 당연히 해야 할 농공업(農工業)도 오히려 부지런히 할 뜻이 없는 실정이니, 지금 대신 파종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며 눈을 흘기고 앞으로 나가려다가도 머뭇거리곤 하는 것은 다만 그 형세가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러나 농관(農官)이 된 자로서는 계획을 내서 그들의 게으름을 채찍질하여 일깨우는 것이 바로 그 직무인데, 도리어 백성들에게 부화 뇌동하여 시끄러이 떠들어대면서, 백성들을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는 방도에 전혀 어두워 이를 따르기 어려운 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명령이 나갔으면 그대로 행할 뿐이요 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조정의 명령이 반하된 지 이미 오래이니, 묘당에서는 의당 동책(董責)하는 일을 굳게 지켜 수시로 고찰을 가해서, 만일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먼저 방백으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령과 백성들이 절로 의당 분주히 농사에 임하여, 들에는 개간 안된 땅이 없고 땅에는 노는 밭이 없게 될 것이다.

且懶於農，作避一時深耕之苦，捨將來必食之功。年年應爲之農工，猶忽服勤之意，則惟今代播之令，却顧而睥睨，將進而越趨，特其勢耳。身爲田畷之官者，出謀發慮，策懶警惰，乃職之宜，而反爲隨衆雷同，焚芻聒聒，專味克敏之方，認作難從之事，抑何故也？令出惟行，不惟反朝令之頒下久矣，廟堂但當堅守董責，時加考察，如其不率令者，先從方伯而糾之。正之則守令與民人，自當奔走趨事，野無曠土，土無閒畝。《書》曰‘曷敢不終’，朕畝既始之，便不圖終，顧何異於農夫之耕而不播，播而不耘乎？以時則可，以穀則宜，何苦而不勸，何憚而不爲？王畿，四方之標準，先從畿邑之議論携異處，專精費力，篤信奉行，可使湖、嶺，觀感影從。秧不移而有粟，秋則熟而無稅，和以稻粱之味，替作饘粥之需，則博哉之利，可爲萬歲法程，奚但止於一年掇荒之資而已哉？烹阿非但貪也，卽田野不闢，則朝令之下，跡不緣畝，而一任其荒穢不治者，顧其罪欲道阿大夫已施之典得乎？昔朱夫子之知南康也，日日勞農，山間車徒，至及

그리고 《서경》 대고(大誥)에 이르기를 ‘내 어찌 나의 밭일을 끝맺지 않으리오.’ 하였으니, 이미 시작만 해놓고 끝맺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농부가 밭을 갈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씨를 뿌리기만 하고 김매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시기로 보아도 적절하고 곡식으로 보아도 알맞은데, 무엇이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고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왕기(王畿) 지역은 전국의 표준이니, 먼저 기읍(畿邑) 중에서 의논이 엇갈린 곳에서부터 정력을 오로지 들어 명령을 독실히 믿고 받들어 준행하여야만 호남·영남 지방까지도 보고 느끼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내기를 하지 않고도 곡식이 있게 되고, 가을에는 곡식을 수확하여도 세금이 없는데다, 도량(稻梁)의 좋은 맛을 섞어 진죽(饘粥)의 재료로 대신 쓰게 한다면, 그 광박한 이익이 만세의 법식도 될 수 있으리니, 어찌 1년 동안의 기근 구제하는 재료에만 그칠 뿐이겠는가.

옛날에 아 대부(阿大夫)를 삼아 죽인 것은 그가 탐오해서만이 아니라, 즉 전야(田野)를 개간하지 않은 것(6545) 때문이었으니, 지금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는 데에도 감히 전야를 개간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고 일체 묵은 대로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은 자의 경우는, 그 죄가 아 대부에게 시행했던 형벌을 피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옛날에 주 부자(朱夫子)가 남강(南康)을 다스릴 적에는 날마다 산간 지역에 농사일을 경영하느라 거마와 보졸(步卒)이 성자현(星子縣) 같은 궁벽한 작은 고을까지 들어갔었다. 그런데 지금의 수령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감히 관아에 가만히 드러누워서 임금과 근심을 나누는 의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화성은 탕목읍(湯沐邑)이요 또 왕기(王畿)에서 표준이 되는 곳이니, 먼저 본부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비록 손바닥 발바닥만한 땅이라도 제때에 다 파종을 해서 기읍(畿邑)의 선도(先導)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於星子之小縣僻壤。則今之長吏，是何人，乃敢偃臥鈴閣，太不識分憂之義，寧不痛惋？華城，湯沐邑也，又爲標準於王畿，先自本府，悉心對颺，雖側趾盈掌之地，及時播厥，俾爲畿邑之倡。”

<p>정조 48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6월 20일 (임자) 1번째기사</p> <p>혜경궁 홍씨의 탄신에 진찬하다</p>	<p>자궁(慈宮)에게 진찬(進饌)하였는데, 자궁의 탄신은 18일이었으나 자궁에게 사사로운 복(服)이 있었기 때문에 진찬을 이날에 추후해서 행한 것이다.</p>	<p>壬子/進饌于慈宮。以誕辰在十八，而慈宮有私服，追行于是日。</p>
<p>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7월 20일 (임오) 2번째기사</p> <p>제주에 비축할만한 곡 식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토록 하다</p>	<p>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곡식을 비축하자는 의논이야말로 육지나 섬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듣건대 섬에 계속 풍년이 들고 있다 하니 이런 때에 거두어 모아 관고(官庫)에 비축해 둬으로써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목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역해 두게 하고 몇 석(石)이나 되는지 장계로 보고토록 하라.” 하였다.</p>	<p>○右議政李秉模啓言：“濟州儲穀之論，實是島陸莫大之利。近聞島中連豐，及此收聚儲之官庫，以作不虞之備爲便。”教曰：“嚴飭牧使，卽爲拮据貿置，以其石數狀聞。”</p>
<p>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8월 7일 (무술) 1번째기사</p> <p>문묘에 제향할 때, 예</p>	<p>하교하였다. “문묘(文廟)에서 제향을 드릴 때 특별히 사관(史官)을 보내어 주밀하게 살펴 보도록 하였는데, 헌관(獻官)이 본관(本館)6661) 의 당랑(堂郎)6662) 이었는데도 뒤에까지 머물러 살펴보지 않고 먼저 배종(配從)하는 반열로 나아갔다니</p>	<p>○戊戌/教曰：“文廟享事之，別遣史官周察，獻官之爲本館堂郎，而不爲留看，徑詣陪班者，極爲駭然。領、左相之爲親享獻官者，猶留身監眊，撤邊</p>



<p>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사성과 사성을 벌하다</p>	<p>지극히 놀랍다. 영상이나 좌상이 친향(親享) 때 헌관이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끝까지 남아 감시하며 제기(祭器)를 치우게 하는데, 붉고 푸른 옷에 은빛 띠를 맨 대사성과 사성이 어찌 감히 스스로 편한 대로 한단 말인가. 당해(當該) 헌관인 대사성 남공철(南公轍)과 사성 이현묵(李顯默)에게 모두 서용(敍用)하지 않는 벌을 내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 뒤로는 일체 제향소(諸享所)의 예에 따라 끝까지 남아 감시하도록 본관에 엄히 신칙하는 동시에 법전에 기록하여 성문화(成文化)해서 준행토록 하라.”</p>	<p>豆, 則緋緣銀(臺) [帶] 之大司成、司成, 何敢自便乃爾? 當該獻官大司成南公轍、司成李顯默, 竝施不敍之典。此後一依諸享所例, 留身監視事嚴飭本館, 仍令載錄, 成典遵行。”</p>
<p>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嘉慶) 3년) 8월 19일 (경술) 2번째기사 수령이 해야하는 권농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p>	<p>지평 박효성(朴孝成)이 상소하기를,  “삼남(三南)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똑같은 만큼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서(湖西)는 진휼곡(賑恤穀)을 약간 배정해 준 것이 있는 데 반하여 호남(湖南)의 경우는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돈이 혹 저지되기도 하고 영남(嶺南)의 경우는 아예 흉년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방백이 태연히 재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묘당의 의논이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경사(京師)야말로 팔로(八路)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서 공가(公家)의 조부(租賦)나 사실(私室)의 의식(衣食)을 모두 전적으로 외방에서 수송해 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각도(各道)가 모두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 애달픈 백성들을 장차 어떻게 구해낸단 말입니까. 이들을 어여삐 여겨 보살피는 일 역시 삼남보다 뒤에 두면 안될 것인데 아직도 낭묘(廊廟)의 신하가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어 생각건대 곡식을 허비하는 것으로는 술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고 여겨</p>	<p>○持平朴孝成上疏曰:  “三南之被災同也, 接濟之策, 宜無異同。而湖西則分賑之穀, 略有區劃, 湖南則請貸之 [錢] 或歸防塞, 嶺南則初不以災歲爲言, 藩臬之臣, 恬於諱災歟, 廟堂之議, 過於特重歟? 且京師八路之根本也, 公家之租賦, 私室之衣食, 專仰於委輸, 而今也各道皆已告歉, 哀我蒼生, 將何以救活乎? 其所矜恤, 不當在三南之後, 而尙未聞廊廟之臣, 有所區劃何也? 仍念糜穀之甚者, 莫過於酒。一甕之釀, 足以博十家數日之食, 一筵之醉, 足以費中人一年之產。朱門湛樂之席, 博徒號呶之場, 自歸尾閭之泄, 苟能家家而禁釀, 人人而斷飲, 則八路之中, 一歲之內, 可得</p>

집니다. 한 동이의 술을 담그는 곡식으로 열 집의 며칠 간 양식을 충분히 덜 수가 있고 잔칫집에서 취하게 마시고 보면 중인(中人)의 한 해 소득은 후딱 날아가버리게 마련입니다. 권세가에서 흥청 망청 놓고 노름꾼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마셔대는 양이 밀빠진 독에 물 붓듯하다고 할 것인데 진정 집집마다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사람마다 술 마시는 일을 끊게 한다면 팔로(八路)에서 1년 안에 얻을 수 있는 곡식이 수만 석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행불행은 실로 수령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명(剛明)한 자세를 갖추고 어진 정사를 행할 수 있는 재질의 소유자가 아니면 아전들의 간사한 행동을 막기 어려워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지 못하게 될 것이니 아무리 위에서 인정(仁政)을 베푼다 하더라도 아래에서는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일의 모내기를 예로 들어 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백성을 여지없이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모내기를 할 만한 비가 너무 늦게 와 장차 중복(中伏)이 되려고 하였으므로 입 가진 자는 모두 한 목소리로 모내기 할 시기가 지났다고 말했는데도 그 고을 수령들이 그저 권농(勸農)했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안달한 나머지 백성을 억박질러 강제로 모를 심게 하면서 매를 때리기까지 하는 등 인력과 재물을 허비함은 물론 민간이 소요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신 파종(播種)한 다른 곡식의 싹이 거의 나왔는데도 오히려 갈아 엮고 물을 대게 한 뒤 일제히 모를 심게 하였는데 가을철이 반이나 지난 지금 아직도 이삭이 패지 않고 있습니다. 대저 전토(田土)가 모두 자기들의 것인 만큼 진정 조금이라도 결실을 맺을 희망이 있었다면 스스로 알아서 힘을 썼지 어찌 매를 때릴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혹은 ‘지금 강제로 모를 심게 한 것은 뒷날 세금을 징수할 구실을 삼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민정(民情)이 야박하다고 말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관장(官長)이 된 자가 자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穀幾萬石。至若生民之休戚，實係於守令之賢愚。苟非剛明之姿循良之材，則吏奸難防，民隱莫察，仁政雖行於上，而實惠未究於下也。雖以向日移秧事言之，罔民極矣。蓋秧雨既晚，中伏將屆，萬口一談，皆曰無及，而守土之臣，只慕勸農之名，毆民強插，至於鞭撻，費力耗財，民間騷擾。甚者代播他種，幾乎立苗，而反耕灌水，一齊插秧，秋序過半，尙未吐穎。夫各田其田，各土其土，苟有一分成實之望，自當服力，何待鞭朴乎？或以爲‘今日強插，他日徵稅之計’，於民情雖云淪薄，爲官長者，不其自取乎？當初代播之令，許以免稅，蓋以示朝廷之意，急於懷保。而守臣之舉行，若是相反，其可曰闡明聖旨乎？第今日俵災之守令，卽向者勒插之守令也，安保其綜核虛實，權度精切乎？臣以爲嚴飭各道道臣，如有衆所共知貪婪昏愎者，依甲寅已行之例，不待殿最，啓聞勸罪宜矣。且嶺南殿最，無一居下，已非嚴明考績之意，而銓曹陞降，循例請罷者，亦令仍任。殿最之法，無則已矣，有則決不當如是也，亟令依例改差，以

당초 다른 곡식으로 대신 과중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허락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조정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령이 거행한 것을 보면 이처럼 상반되기만 하니 성상의 뜻을 드러내 밝혔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날 재해를 나누어 준 수령은 바로 저번에 억지로 모를 심게 한 수령이라 할 것이니, 그들이 허실(虛實)을 속속들이 밝혀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밀하게 처리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각도의 도신(道臣)에게 엄히 신칙하여 만약 대중이 공통적으로 아는 바 탐욕스럽고 일을 혼란스럽게 처리한 수령이 있거든 갑인년에 이미 행했던 전례에 따라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계문(啓聞)하여 논죄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영남에서 근무 성적을 고과한 것을 보면 하(下)에 속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고과를 엄하게 해야 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인데, 전조(銓曹)에서 오르고 내린 것을 보면 또 관례적으로 과직을 청한 자까지 잉임(仍任)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을 고과하는 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에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속히 관례대로 개차(改差)하게 함으로써 출척(黜陟)하는 법이 엄해지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가 성균관에서 공부만 하던 유생 출신인데도 백성의 일을 가지고 장황하게 말을 하며 조언을 구하려는 나의 뜻에 그런 대로 부응하였으니 자못 가상하다. 흉년이 든 해를 어찌 다 셀 수 있겠는가마는 올해의 경우는 몇 달 동안 가뭄이 들고 열흘이 넘게 바람이 부는 등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겹쳐 일어나 자못 처음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기아선상의 막다른 길목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할 계책이 쉽게 마련되지 않아 밤낮으로 걱정하고 애태우느라 편안히 설 여가가 없다.

嚴黜陟之法。”

批曰：“爾是遊泮樂育中一人，乃以民事，開口張皇，能副求助之意，殊可尚也。年穀之不登何限，而今年則屢朔之旱，兼旬之風，互發而層有，殆似初見，而賙飢恤窮，其策未易，所以日夕憂悶，不遑寧處者。第欲申加留意，附陳酒禁一款。祀茲酒而已。其次服田力穡，純其藝黍稷，暇又肇牽車牛遠服賈，事其父母，父母慶然後洗腆用酒。顧今農夫不敏，秧馬乖方，人功之虧墮，甚於時行災沴，祀享之外，竝與洗腆之需，而定限禁止，固不可已。然令出惟行，萬有一攸司失其職，有其號而無其實。則荒歲之巨弊，一曰擾民，二曰擾民，未有甚於擾之爲弊。惟今紀綱立乎否乎？觀於紀綱之立不立，而酒禁之當爲不當，爲可以決之。爾若以紀綱謂尚可，令行便宜，更陳一疏也。代播之發令，仍許蠲稅，出於苦心。而今見爾疏，既播反耕，勒令改插，從又以鞭朴從事，是誠何心？雖未知何道某邑之若是無狀，而‘今日俵災之守令，卽向者勒插之守令也，難責權度之精切’云者，爾言誠是。依

다만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그대가 덧붙여 진달한 바 주금(酒禁)에 관한 한 조목이다. 술은 제사 때에나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힘껏 농사를 지어 서직(黍稷)을 풍성하게 가꾸고, 여가가 있으면 또 민첩하게 우마차를 끌고 멀리 나가 장사를 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행복해지게 되면 정결하고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하면서 술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 보건대 지금 농부들은 불민한 탓으로 농사마저도 잘못 짓고 있는데 공력을 들이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것이 철따라 발생하는 재해보다도 더욱 심하니 제사 때 쓰는 술 이외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술까지도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진정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나 일단 명령을 하면 행해져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유사(攸司)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나머지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게 되면 백성을 동요시킬 따름이다. 흉년의 큰 폐단은 첫째도 백성을 동요시키는 일이요 둘째도 백성을 동요시키는 일로서 동요시키는 것보다 큰 폐단은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강의 확립 여부를 살펴보고나서 주금(酒禁)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만약 현재의 기강으로 볼 때 그래도 명령이 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편의(便宜) 여부에 대해 한 번 더 상소하여 진달하도록 하라.

다른 곡식을 대신 과중하라고 명을 내릴 때 세금을 건감(蠲減)해 주도록 동시에 허락한 것은 고심(苦心)에서 나온 결단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소를 보건대, 이미 과중했는데도 도로 갈아 엮고 강제로 다시 모를 심도록 하는가 하면 또 매질하며 일을 하게 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정말 무슨 심보란 말인가. 어느 도의 어느 고을이 이처럼 형편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날 재해를 나누어 준 수령은 바로 전에 억지로 모를 심게 한 수령이니 균형감각을 갖고 정밀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한 그대의

‘甲寅已行之例，衆所共知貪婪昏愎之守令，不待殿最，啓聞勘罪’事，依施。卽令廟堂，拔例嚴飭三南伯，無憚大吏，無拘曲嫌，各卽狀聞，趙趙因循者，廟堂糾察論勘。‘嶺南殿最陞降請罷者，勿爲仍任事’，只將題目，類聚觀之，取捨猶且不稱當，與其倖漏而愈不知懼，曷若同罪之許令自新乎?’

	<p>말이 참으로 옳다. ‘갑인년에 이미 행한 예에 따라 대중이 공통적으로 아는 바 탐욕스럽고 어수선하게 일을 처리한 수령에 대해서는 고과를 기다릴 것 없이 계문하여 논죄케 하라.’고 청한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그리고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특별히 삼남(三南)의 방백에게 엄히 신칙하여 대리(大吏)를 두려워하거나 혐의에 구애받지 말고서 즉각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주저하며 구습(舊習)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묘당이 규찰하여 논죄토록 하라.</p> <p>그리고 ‘영남에서 고과를 하면서 「전조가 올리고 내릴 때 파직시키라.」고 청한 자는 잉임(仍任)시키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 일은 단지 제목(題目)6674) 을 가지고 종류별로 모아 살펴 보더라도 취사(取捨)한 것마저 타당하지 못하니, 요행히 누락되어 더욱 두려워할줄 모르게 되도록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같이 죄를 준 뒤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p>	
<p>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8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금주에 대해 의논하다</p>	<p>지평 박효성(朴孝成)이 상소하여 또 주금(酒禁)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아뢰니, 비답하기를, “기강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대 역시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확립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주금의 명령이 행해지리라고 믿는다면 연(燕)나라 수레를 타고 월(越)나라 땅으로 건너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빈대(賓對)하는 일을 내일 열어 와서 모이도록 하였으니 그대도 따라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p>	<p>○辛亥/持平朴孝成上疏又言，酒禁之便，批曰：“紀綱之不立，予既知之，爾亦不能質言，其眞箇不然。然而欲望其令行，何異於燕轅而適越乎？賓對使之明日來會，爾宜隨入。”</p>
<p>정조 49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p>		<p>○雷，減膳三日。教曰：“嶺南民事，詳問於奉使之承宣，筵退而已舉燭矣，</p>

<p>(嘉慶) 3년 10월 5일 (을미) 2번째기사 우레가 일자 3일 동안 수라상 음식물을 줄이 게 하다</p>	<p>우레가 일자 3일 동안 감선(減膳)6769) 하라고 하교하였다. “영남 백성의 일을 봉명 사신(奉命使臣)인 승선(承宣)에게 자세히 물은 뒤 연석(筵席)을 물러나와 촛불을 켜고는 운관(雲觀)6770) 의 서주(書奏)를 보고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천둥소리가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령 끊임없이 대월(對越)6771) 하는 정성을 간직하고 있었던들 놀라운 재이(災異)가 접견하는 때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혹시라도 듣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정성이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 또한 전일하지 못하니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듣는다는 것은 더더욱 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렇듯 듣고서도 듣지 못하다니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모든 조치와 행동에 있어 이르는 곳마다 법도에 맞지 않음을 더욱 알겠다. 재이를 불러오는 단서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하도록 하라.”</p>	<p>見雲觀書奏，始覺有微雷之響。苟使對越之誠，無所間斷，則警異在於晉接之時，而豈或未之聞焉乎？誠之未篤，心亦不專，聽於無聲尚矣。聽而不聞若此，觀於方寸之不能持敬，益知其施諸事爲之隨處不中矩矣。致災之端，莫過於此，悸懼愴傷，若無所容。自今日減膳三日。”</p>
<p>정조 50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2월 7일 (병신)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월령의 약재를 공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뢰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월령(月令)의 약재(藥材)를 공물로 만드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내의원(內醫院)에 물어보았더니 ‘본도의 크고 작은 영(令)에 정비(情費)로 들어가는 것이 본디 몹시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비록 경공(京貢)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의관(醫官) 이하에게 크게 손해나거나 이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공물로 만드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호서 한 도에 정비(情費)로 책정한 것이 겨우 4백여 냥 뿐인데 비인(庇仁) 한 고을에서만 2백 냥이 넘는다는 것은 반드시 영(營)에서 함부로 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고을도 이를 미루어서 알 수 있으니 이처럼 보고하는 기회를 인해서 별도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각</p>	<p>○丙申/備邊司啓言：“月令藥材作貢便否，問於內醫院，則以爲：‘本道大小令情費，本甚零瑣，雖作京貢，醫官以下，無大損益。而作貢便否，有難質言’云。湖西一道情費折價，僅爲四百餘兩，庇仁一邑之過二百餘金者，必營下濫費也。他邑可以推知，因此登徹之會，別般釐正，在所不已。令道臣，聚各邑草材上納，雜費以本院所費準之，營下雜費，可以昭著，枚舉報來，更加商量稟處。”允之。</p>

	<p>고을의 약재를 모아서 상납하게 하되 잡비는 본원에서 쓰는 잡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주고, 영에서 쓰는 잡비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 뒤 다시 헤아려서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희하였다.</p>	
<p>정조 50권, 22년 (1798 무오 / 청 가경 (嘉慶) 3년) 12월 26일(을묘) 1번째기사 후주 유학 우만훈이 토지 개간과 농법에 대해 상소하다</p>	<p>후주(厚州)에 사는 유학 우만훈(禹萬勳)이 상소하기를, “후주(厚州)·무창(茂昌)·여연(閻延)·우예(虞芮)·자성(慈城) 등 7백 리 땅은 바로 우리 나라의 기름진 땅인데도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지난 갑인년에 서쪽에 자성을 설치하고 북쪽에 후주를 설치하자 동서 남북의 백성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짐을 싸들고 모여들어 서쪽으로 자성에 들어간 자가 1천여 호이고 북쪽으로 후주에 들어간 자 역시 1천여 호입니다. 자성은 자성강(慈城江)을 경계로 삼고 후주는 박철구비(朴喆仇非)와 입암(立巖)을 경계로 삼고 있는데, 이른바 입암이란 곳은 후주진으로부터 10여 리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역이 이와 같이 좁고 백성들이 이처럼 모여들었는데도 강을 경계로 한 금법에 구애되어 날마다 모여드는 백성들로 하여금 개간하여 농사짓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농사를 권장하고 근본에 힘쓰는 정사이겠습니까.</p> <p>대개 후주란 땅은 연지평(蓮池坪)과 상패평(祥霸坪) 두 평원이 북쪽으로 압록강을 베고 있어 지형이 아주 낮고 기후도 자못 따스하며 또 서리가 늦게 내리는 관계로 오곡이 잘 익고 삼과 목화가 잘 자라니, 이곳이야말로 사람이 살 만한 좋은 땅입니다. 그외에 고을 남쪽에 있는 금신(金申)·대호지(大好地)·소호지(小好地) 등의 지역은 압록강으로부터 1백여 리 떨어져 있는데, 긴 골짜기와 깊은 산으로 이루어져 한가닥 고갯길이 하늘까지 닿아 있으며, 토질과</p>	<p>-</p> <p>○乙卯/厚州幼學禹萬勳上疏曰： “厚州、茂昌、閻延、虞芮、慈城等七百里地，即我國中膏腴之土，而空然廢棄。曩在甲寅，西設慈城，北設厚州，東西南北之民，負戴相望，西入慈城者千餘戶，北入厚州者亦千餘戶。慈城以慈城江爲限，厚州以朴喆仇非、立巖爲限，所謂立巖距厚州鎮十里許也。地界如彼狹窄，生民如彼成聚，而拘於江界之防禁，使日聚之民，不許懇闢而作農，此豈勸農務本之政也哉？蓋厚州之爲地也，蓮池、祥霸兩坪，北枕鴨綠，地勢最下，風氣頗溫，霜信且晚，五穀成熟，麻綿苗長，此誠樂土可居之地。其餘州南金申、大·小好地等處，距鴨綠百餘里，而長谷層巒，鳥道極天，其土利時候，不及蓮、祥兩坪。</p>

기후가 연지평이나 상패평만 못합니다. 이 때문에 흘러들어와 농사짓는 백성들이 연지·상패 두 곳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 나머지 다른 곳에는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먼저 들어온 자라도 매호마다 농사짓는 전지가 많아야 3, 4식경을 넘지 못하고 적을 경우에는 1, 2식경에도 차지 않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벌거숭이가 되어 다시 개간할 수 있는 땅은 송곳 꽃을 만한 곳도 없는데도 온 가족을 이끌고 오는 자들이 하루하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락을 이루어 살기를 바라면서 경계를 한정하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자 하면서 문을 닫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여들어 살면서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고자 하더라도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신은 북쪽 변경에서 성장하여 이곳의 산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후주에서 서쪽으로 80리쯤 되는 곳에 무창(茂昌) 두지동(斗之洞)의 죽전령(竹田嶺)이 있습니다. 이 고개를 경계로 해서 서도와 북도로 나누어 고개 서쪽은 평안도에서 관할하고, 고개 동쪽은 본도에서 관할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하나의 큰 지역으로 삼은 다음, 쟁기를 지고 모여드는 백성들로 하여금 토질의 마땅함을 살피고 수리를 잘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 수차(水車)를 이용하지 않고 서도 물길이 순조롭게 흐르고, 제언을 쌓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물이 새거나 허물어지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주석을 보니, 여연(閔延)은 본디 함길도(咸吉道) 갑산군(甲山郡) 여연촌(閔延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여연 역시 본도의 지역인데 더구나 무창은 또 여연의 동쪽에 있으니 그곳이 본도의 지역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하기를 ‘무창은 바로 강계(江界)의 삼을 공납하는 지역이니 경솔하게 미리 농사꾼이 들어가도록 허락해서 후주에 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이 후주에 살고 있으면서 강계의 삼 캐는 사람들을 직접 보니, 대부분 험한 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후주 경내의 금신·호지(好地) 등처까지 오는데, 후

是故流民作農者，願入兩坪，不願入於諸處。先入者每戶所起田，多不過三四息耕，少不滿一二息耕。山童野脫，更無立錐可起之地，而携室負襁而來者，一日多於一日。今者待成聚而限境界，猶欲其入而閉之門也。雖欲成聚而勸農，其可得乎？臣生長北邊，熟習山川。厚州西八十里許，有茂昌斗之洞之竹田嶺。以此分西北兩道界，嶺以西則關西主管，嶺以東則本道主管，以爲一大勸農之土，而使耒負坌集之民，相土地之宜，興水功之利。則不待水車之法，而有水道之順軌，不勞堤堰之築，而無水患之滲圯。且臣考見《龍飛御天歌》註，閔延本咸吉道甲山郡閔延村。以此言之，閔延亦本道之地，況茂昌又在閔延之東，則其爲本道之地無疑。今其言曰：‘茂昌，乃是江界貢蔘之地，不可輕先許入農民，以屬厚州也。’此有不然者。臣居在厚州，目擊江界採蔘人，則多入於亂山窮谷之中，以至于厚州境金申、好地等處，而厚州初不防禁。至若茂昌沿江平野可闢可墾之地，則江人之採蔘者不到，而厚民之欲墾者，則江界之防禁至



주에서는 애당초 금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창의 개간할 만한 땅인 강 연안의 평야 지대에는 삼을 캐는 강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개간하고자 하는 후주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계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삼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나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를 놓고 본다면, 평야 지대의 경우는 반드시 삼이 적게 나고 산골짜기는 반드시 많이 날 것인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엄하게 금지시키는 것은, 장차 후주에다 삼의 공납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이 만약 개간되어 백성들이 부유하게 된다면 누가 감히 땅에서 나는 토산물을 바치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평야 지대에 삼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배로 삼는 것은 토지와 백성과 오곡에 있지 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또 삼의 이익 때문에 농사의 이익을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평야 지대에는 삼의 이익이 전혀 없는 데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무창·여연·우예의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개간하도록 허락하여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가서 농사짓게 하소서. 그러면 이 역시 농사를 권장하는 하나의 큰 정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는 칠사(七事)를 담당하는 수령이 아니면 시행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관부(官府)를 설치하여 토지를 넓히고 농사를 권장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서북 지방의 백성들 중 그 누가 기뻐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멀리 떨어진 후주에 사는 백성이 천리 먼길을 달려와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짓게 하는 방도를 진달하였다. 너의 상소를 정원으로 하여금 뒤에 기록해 서북 지방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각자 수령에게 물어보게 하겠다.”

하였다.

嚴。夫以採蓼人之所到與不到處而觀之，平野則〔山蓼必少，山谷則〕產蓼必多，而其所以執言嚴禁者，將欲移貢厚州歟？地若墾闢，民則殷富，則孰敢不竭力盡誠於任土之貢乎？設若平野之蓼多云，而國家之所寶，在乎土地人民五穀，而不在於蓼也。則又不當以蓼利而禁農利也。況平野之萬萬無蓼利者乎？伏願許關茂昌、閻延、虞芮久廢之土，使四集之民，入此作農。則此亦勸農之一大政。然而勸農之政，非七事之官則不可行也。許設官府，以廣土地，以勸農桑，則西北之民，孰不蹈舞也哉？”

批曰：“遜矣居在厚州之人，千里跋涉，陳此闢土趨農之方。爾疏令政院後錄，下諭西北道臣，俾各問于守令。”

<p>정조 51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1월 1일 (경신) 1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의 수령들 에게 권농에 대한 의 견을 진술토록 하다</p>	<p>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윤음(綸音)을 내려 이르기를, “권농(勸農)의 유시를 세전(歲前)에 먼저 반포하여 매우 일찍 풍년을 기원하 는 뜻을 보였는지라, 부지런하거나 홀만함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당 감별할 것 이니, 어찌 꼭 다시 애써 사교(辭敎)를 내리겠는가. 그리고 지금 사람이 비록 옛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만일 농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농 관(農官)이 될 수 있겠는가. 옛날 우리 선조(先朝) 때에는 방백(方伯)과 거류 신(居留臣) 및 수령(守令)들에게 명하여 각각 그 지방 풍속과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시(詩)나 문(文)을 지어 올리도록 했었으니, 지금 나 또한 그 농사에 밝은 소견들을 모두 진술하게 해서 감히 선조의 고사를 계승하려 하지 않겠 는가. 아, 너희 각도 관찰사와 각도 유수들이 먼저 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수 있는 경륜(經綸)을 진술하고, 인하여 수령들에게도 신칙하여 각각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세전에 윤음을 반하(頒下)한 이후로 방백이나 수령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분부 에 응한 자가 없었다. 지금 널리 자문하는 이 일은 곧 선조 때 백성의 고통에 대하여 널리 자문하던 고사를 우러러 계승하는 것이니, 방백과 수령은 모두 각각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행하되, 특히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 수령들은 경륜 책자(經綸冊子)를 작성해서 뜻에 따라 조목조목 진술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庚申朔/下綸音于八道四都曰：“勸農 之諭，先頒於歲前，而示祈年孔夙之 意，惟勤惟慢，追當鑑別，何必更勞辭 敎？今人雖不及古人，如曰不知農，何 以做農官？昔我先朝，命方伯居留之臣 及守令，各以土俗民隱，爲詩若文而進 之，今欲叩其所存於明農，敢不修述先 朝故事？咨爾諸道觀察使各都留守，先 陳對揚之經綸，仍飭守土者，各陳意 見。”又敎曰：“歲前綸音頒下之後， 在分憂之列者，無一人應旨。今茲博 詢之舉，卽仰述先朝諮訪民隱之故事， 方伯邑倅，其各悉心對揚，文蔭守令， 以經綸冊子，隨意條陳。” 【태백산사고본】</p>
<p>정조 51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p>	<p>진휼청이 아뢰기를,</p>	<p>○丙申/賑恤廳啓言：“饑餘病餘，非救 濟，無力自賴給米者一百六十二人。”</p>

<p>(嘉慶) 4년) 2월 8일 (병신)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162명에게 쌀을 지급하다</p>	<p>“기근이 들고 병든 나머지, 구제해 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자 1백 62인에게 쌀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한성부에 엄히 신칙하여, 만일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 당 부관(部官)을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엄히 처단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번에 제급(題給)한 무리에 대해서 이달 그믐날 적간(摘奸)을 한 다음에 다시 더 지 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사리에 입각해서 논하여 초기하도 록 하라. 이것은 주구(賙救)하는 것도 아니요 발매(發賣)하는 것도 아니나, 저 궁핍한 백성 진휼하는 뜻에서 반드시 주구와 발매의 실효를 독책하려는 것이 니, 유사가 된 신하들은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 뜻을 엄히 신 칙하여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관(部官)들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 금 들은 대로 감죄(勘罪)해서 일을 신중히 거행할 뒷받침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批曰：“嚴飭漢城府， 若有一名遺漏， 當該部官， 當隨現嚴處。 而今番題給 之類， 待今月晦日摘奸然後， 更給與 否， 令該府論理草記。 此乃非賙救非 發賣， 而必欲責賑賣之實效於賑乏之 意， 有司之臣， 何敢泛忽乎。 此意嚴 飭， 部官之不勤， [令] 廟堂臺閣， 隨 聞論勘， 以爲小心之地。”</p>
<p>정조 51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4월 19일 (정미) 5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신기가 토산물의 진상 폐단에 대한 장계를 올리다</p>	<p>이에 앞서 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상도(李尙度)가 상소하여, 공납하는 토산물 을 전무(轉貿)하는 폐단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관찰사에게 명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신기(申耆)가 장계를 올리기를, “진헌하는 물품은 가격이 비싸고 싼 차이가 있고 양도 많고 적은 것이 정해 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 토산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더 보내기만 하고 덜어주 지 않는다면 실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바닷가의 고을부터 토산물과 전무해야 할 것을 분별하여 두번 세번 전무하여 차차로 서로 바꾸어 적절하게 바로잡도록 할 것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사오거나 이웃 고을에 가서 캐오는 경우에 서로의 거리가 1백 리</p>	<p>○先是，昌原府使李尙度疏論，土產之 貢轉貿之弊，命道臣釐正。慶尙道觀 察使申耆狀啓曰： “進獻物種，貴歇不同，多寡有定。今 若只憑土產，有添送而無減給，則實有 偏重之歎。先從海邑，分別土產與轉 貿，再轉三轉，次次互換，量宜釐正。 接境貿取隣邑移採之相距百里內外者， 措備比土產無甚難， 竝令依前封進。 陸邑則封進諸需，多是果品，幾皆土</p>

내외일 경우에는 마련하기가 토산물에 비하여 큰 어려움이 없으니, 아울러 전례대로 봉진하도록 했습니다.

육지 고을은 봉진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과일이므로 거의 다 토산물이지만 더러 3, 4개 고을에서 서로 사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바로잡았습니다. 전복(全鮑) 한 종류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봉진하는 것이 대부분 제주의 장사치에게서 사 와서 사천(泗川)에서 파는 것입니다. 근자에 울산과 동래는 감사정대용(鄭大容)의 장계로 인하여 모두 토산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경주에서 캐는 것은 울산의 전복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장(機長)·장기(長鬢)·연일(延日)은 동래·울산·경주 세 고을과 더불어 바다와 서로 접해 있으니, 필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제(巨濟)·진주(晉州)·사천(泗川)은 본래 전복이 나는 곳으로 일컬어졌으니, 마땅히 토산물로 봉진하여야 합니다. 창원(昌原)·김해(金海)·하동(河東)·고성(固城)·남해(南海)·웅천(熊川)·진해(鎭海)·칠원(漆原)은 원래 나는 것이 없는데, 지금 만약 8개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 보낸다면 3개 고을은 원래 바치던 것도 오히려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수량 외에 더 정하는 것은 애당초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득이 전처럼 사다가 봉진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값을 더 보태는 것은 이미 전에 계획했던 것이니, 이 때문에 폐단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유자(柚子)는 병진년에 큰 바람이 분 뒤에, 응당 바쳐야 하는 거제·고성·남해 등 3개 고을의 유자나무는 모두 얼어 죽었고, 진주 경내의 창선도(昌善島)·적량진(赤梁鎭)에만 10여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위의 세 고을은 모두 여기서 사 가기 때문에 세 고을에서 봉진하던 유자를 전적으로 진주에 붙여놓은 뒤에 해당 주에 옮겨 채취케 하는 물종을 적당히 3개 고을에 바꾸어 보내 주어야 합니다. 세 고을의 유자나무 중에 간혹 무더기져 자라는 곳이 있으니,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 각각 본 고을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 유자나무는 이미 수요가 보잘 것 없고 풍작이 들 때와 흉작이 들 때가 있으니,

産，而或有三四邑互相侵貿之舉，故亦爲釐正。至於全鮑一種，道內封進，舉皆移貿於濟州商賈，來賣泗川者矣。近者蔚山、東萊，則因道臣鄭大容狀啓，俱以土産封進，而慶州所採，與蔚鮑無異。機張、長鬢、延日，與萊、蔚、慶三邑，海水相接，必不難得。巨濟、晉州、泗川，素稱産鮑，當以土産封進。昌原、金海、河東、固城、南海、熊川、鎭海、柒原，元無所産，今若爲八邑之釐正，移送他邑，則三邑元封，猶難充備。數外加定，初非可論。不得不依前貿封。而概此添價，既有流來措劃，無因此爲弊之慮。柚子則丙辰大風之後，應封之巨濟、固城、南海等三邑柚木，舉皆凍死，獨於晉州境內昌善島、赤梁鎭，有十餘株生全者。上三邑，竝爲移貿於此，故三邑所封之柚子，專屬晉州後，該州移採物種，量宜換送於三邑。而三邑柚木，間或有叢生者，差待成實，各還本邑。而晉州柚木，數既零星，結顆亦有豐歉，萬一不足於元封之數，則臨時代封之意，狀聞計料。請令廟堂稟旨。”

備邊司覆奏曰：“進上物種之移來移去

	<p>만일 원래 바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때를 당해서 대신 바치게 하겠다는 뜻으로 장계로 보고할 생각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복주하기를,  “진상하는 물품을 옮겨 오고 옮겨 가는 것을 합하면 23개 고을인데, 진실로 전혀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니, 각 고을에서 기꺼이 따르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렇게 바꾸어 정한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알고 충분히 헤아렸을 것이니, 모두 우선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p>	<p>者，合爲二十三邑，苟非十分無弊，各邑似不樂從。而道臣之如是換定，必有的知而熟量者，竝姑依施。”從之。</p>
<p>정조 51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6월 2일 (기축) 4번째기사  예조 판서가 온릉의 작헌례 때 사용할 제기(祭器) 숫자에 대해 아뢰다</p>	<p>예조 판서 서용보가 아뢰기를,  “온릉에 대신을 보내 작헌례를 집행하게 하는 일은 전고에도 없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이므로 제사 음식의 그릇 숫자와 술잔을 올리는 숫자에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는데,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해 보아도 달리 방증할 만한 전례가 없고, 다만 《오례의》에 ‘능(陵)과 전(殿)은 일체로 한다.’는 글이 있는데, 이것을 끌어다 원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희전(永禧殿)에 작헌례를 올릴 때의 제사 음식의 그릇 숫자는 한결같이 명절날 지내는 제사의 그릇 숫자와 같았고 술잔은 단지 한 번만 올렸기 때문에 육상궁(毓祥宮) 및 여러 궁의 작헌례에도 모두 이 예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에 의거하여, 제사 음식의 그릇 숫자는 능에 행행하여 구역 안의 여러 능에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집행하게 할 때에 사용하는 그릇 숫자로 마련하게 하고 술잔은 한 번만 올리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 뒤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아 시행하소서.”</p>	<p>○禮曹判書徐龍輔啓言：“溫陵遣大臣攝行酌獻禮，係是曠古初有之舉，祭品爵數，不可無一定之制，而博考典禮，無他傍照之例，獨《五禮儀》，‘陵殿一體’之文，足爲可援之證。永禧殿酌獻禮時，祭品器數，一依名日祭品，而只行單獻，故毓祥宮及諸宮酌獻禮，亦皆遵用是禮矣。今亦依此例，祭品則以陵幸時局內諸陵，遣大臣攝行祭，祭品磨鍊，而爵用一獻，恐合事宜。此後如此之時，請以此定式施行。”從之。龍輔曰：“今此酌獻禮，雖是攝行，不可無用齋之舉。只當日用齋之意，請分付。”從之。</p>

	<p>하였는데, 따랐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이번의 이 작헌례가 비록 집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계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일만이라도 재계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p>	
<p>정조 51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6월 26일  (계축) 1번째기사  전 전라도 관찰사가  호남의 사치 풍속과  모내기에 대해 아뢰다</p>	<p>전 전라도 관찰사 이득신(李得臣)이 아뢰기를,  “호남의 습속은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그릇이나 옷을 남보다 낮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관혼 상제인 경우에는 더욱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으니 폐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신이 본도에 재임할 당시에 엄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습속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되어 변화시켜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영읍(營邑)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무릇 복식과 혼례와 상례에는 차라리 검소하게 할지언정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깨우쳐 주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따랐다. 또 아뢰기를,  “호남의 올해의 가뭄은 지난해와 다름이 없었는데도 모내기를 갑절이나 많이 한 것은 모두가 지난해에 제방에 대하여 신칙을 한 결과입니다. 대개 지방의 토호들과 간사한 백성 가운데에는 금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방 안에서 함부로 경작을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폐단을 따져보면 이익은 하나이고 폐해는 백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미 경작지를 측량하여 장부에 올려 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간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는 즉시 도로 물려서 예전대로 복구하고 하나 하나 물질을 뚫으라는 뜻으로 묘당으로 하여금 관문을 띄워 엄하게 신</p>	<p>○癸丑/前全羅道觀察使李得臣啓言：  “湖南習俗，競尙侈靡，器用服飾，務勝於人，冠婚喪祭，尤無限節。浸浸漸染，爲害滋多。臣於待罪本道時，非不嚴加禁斷，而俗尙已久，變改未易。請令廟堂，關飭營邑，凡於服飾婚喪，寧儉無侈，另加曉諭，著爲科條，俾有實效。”從之。又啓言：“湖南今年之旱，無異昨年，而移秧倍多者，莫非向來申飭堤堰之效也。大抵豪右奸民，不畏法禁，堤內冒耕者甚多。苟求其弊，利一害百。其中有已量付納稅者，雖難學論，至如新起轉賣之類，俾卽還退，仍舊逐一疏鑿之意，令廟堂，發關嚴飭好矣。”從之。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五十一終</p>

	<p>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따랐다.</p>	
<p>정조 52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7월 1일          (정사) 3번째기사          태묘 추향의 제관들에          게 제호탕과 환약을          내려주다</p>	<p>태묘 추향의 제관들에게 제호탕(醍醐湯)7010) 과 환약을 내려보내주고 전교          하기를,          “금년의 태묘 추향은 내가 직접 지내려 했다가 그대로 못하지만 걱정 되고          그리는 마음이야 어찌 감히 조금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날씨가 또 이처럼 무          덥기는 근래에 드문 일이다. 여러 제관들이 나를 위해 대신 수고하는 것을 생          각하여 변변치 않은 것으로나마 위로해주는 뜻으로 이 약물을 내려보내 더위          를 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니, 여러 집사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며 아래          로 춤추는 자들과 악공들까지 빠짐없이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이          뜻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p>	<p>○下醍醐湯藥丸于太廟秋享享官等，教          曰：“今年太廟秋享，擬欲親將而未果，          憧憧耿慕，曷敢少弛？日熱又是，近來          所罕。予念諸享官爲予替勞，特以投          醪之意，下此藥物，俾爲滌暑之資，須          與諸執事分喫，而下逮佾舞工人，無遺          分給，俾知此意。”</p>
<p>정조 52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          (嘉慶) 4년) 9월 6일          (신유) 2번째기사          육상궁 등에서 작헌례          를 거행하다</p>	<p>육상궁(毓祥宮)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봉안각(奉安閣)에 나아가 참배          한 뒤에 연호궁(延祐宮)·선희궁(宣禧宮)·장보각(藏譜閣)·의소묘(懿昭廟)에 나아          가 작헌례를 거행하였다.</p>	<p>行酌獻禮于毓祥宮，詣奉安閣展拜，詣          延祐宮、宣禧宮、藏譜閣、懿昭廟，行          酌獻禮。</p>
<p>정조 52권, 23년          (1799 기미 / 청 가경</p>	<p>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당상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p>	<p>○迎接都監堂上趙鎭寬啓言：“迎送勅          茶禮時，每用蓼茶，而蓼雖珍品，旣非</p>

<p>(嘉慶) 4년) 12월 27일(경술) 2번째기사 영접 도감 당상 조진관이 칙사 대접에 쓰는 인삼차를 바꿔 줄 것을 아뢰다</p>	<p>“칙사를 맞아들이고 보내면서 다례(茶禮)를 행할 때 매번 인삼차를 쓰고 있는데, 인삼이 진귀한 식품이기는 하지만 일단 늘 마시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알지 못해 거꾸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올 봄에 다례를 행할 때 직접 본 것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객사(客使)가 찻잔을 받아 들고 한 번 맛보더니 마시지를 앓았으니, 그 뜻을 알만합니다. 만약 품질이 좋은 다른 차를 가져다 쓰면 온당하게 될 듯싶으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p>	<p>恒茶，故未能知味，反不悅口。雖以今春茶禮時所目睹言之，客使受鐘，嘗而不飲，其意可知也。如取他茶之佳品而用之，則恐得宜，請以此定式。”從之。</p>
<p>정조 53권,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2월 2일(을유) 10번째기사 호조에 명하여 검 찬선 송환기에게 쌀·고기 등을 전달토록 하다</p>	<p>호조에 명하여 쌀·고기·멜감·숯 등을 검 찬선 송환기에게 실어보내게 하였다.</p>	<p>○命戶曹，以米、肉、柴、炭，輸送于兼贊善宋煥箕。</p>
<p>정조 54권,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윤4월 17일(기사) 2번째기사 화성에 소속된 다섯 고을의 곡물을 상평창</p>	<p>화성에 소속된 다섯 고을의 곡물을 호조와 상평창(常平倉) 등 곡식으로 환작(換作)하고 《통편(通編)》의 법에 따라 모곡(耗穀)을 받아 본읍의 공적인 비용으로 보충할 것을 명하였다.</p>	<p>命華城所屬五邑穀物，換作戶曹常平等穀，依《通編》法，取耗以補本邑公用。</p>



<p>의 곡식으로 환작하다</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5월 22일 (계묘) 2번째기사 평고기를 산 닭으로 바꾸어 진상하도록 규정을 바꾸다</p>	<p>주원(廚院)으로 하여금 평고기를 살아 있는 닭으로 대신 받아 봉진(封進)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삭선(朔膳)의 재료를 대신 받아들이는 것도 일공례(日供例)를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p>	<p>命廚院雉鮮，代捧以活鷄封進著爲式，仍命朔膳物膳代捧，亦用日供例。</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갈이의 땅을 개간한 수원 판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p>	<p>앞서 수원 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하유하기를, “번갈아 돌아가는 오행(五行) 가운데 토공(土功)이 크고 팔괘의 순서를 매길 때는 감궁(坎宮)이 앞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주(周) 문왕(文王)이 기읍(岐邑)을 다스릴 때 토지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조세를 정하는 법을 세웠고 한나라 고제(高帝)는 관중(關中)을 안정시킨 뒤에 조세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조정이 화성(華城)을 보는 비중도 주나라의 기읍이나 한나라의 관중과 다름 없으니, 백성의 생활 터전을 중시하는 정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만 석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뚫고 아홉 길 높이의 보를 성 서쪽에 쌓음으로써 관개 용수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는 온 경내에 미치고 다시 그 경내에서 멀리 팔도에까지 두루 미쳐간다면 그로 인한 이로운이 어찌 넓고 크지 않겠는가. 팔달문(八達門) 밖에서부터 유천(柳川) 이포(泥浦)까지 그 토지가 넓은데도 경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경기 백성들이 농사에 게을러 힘들게 노력하려 하지 않아서이지만 대체로 그 마음과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漢)나라 선비의 말에 ‘능히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힘을 다할 수 없고 능히 그 힘</p>	<p>○壬子朔/先是，諭水原留守徐有隣曰：“五行迭運，土功爲大，八卦分序，坎宮居先。故周文王治岐而建任土之法，漢高帝定關而立租賦之制，朝家之視華城，有如周之岐，漢之關，則元元重本之政，不可以少緩。萬石之渠，開於城北，九仞之埭，築於城西，自西而南，遂及一境，自一境而遠，遍至於八路，則不言所利之利，豈不淵乎博哉？自八達門外，至柳川、泥淵之間，厥土廣斥，耕犁不及者，畿民懶於農，不欲昏作，蓋其心力，不能及也。漢儒之言曰：‘不能盡其心則不能盡其力，不能盡其力則不能成其功’云者，政謂此也。雖有心力，足以闢荒，而無財力則不能焉，雖有財力足以墾土，而無官</p>

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은 곧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다. 충분히 황무지를 개척할 만한 마음과 힘이 있더라도 재력이 없으면 해낼 수 없고 충분히 땅을 일구어낼 만한 재력이 있더라도 관력(官力)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높고 메마른 땅은 물을 끌어가기가 어렵고 시골백성은 함께 모여 농사짓는 방법에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밭모양이 이미 갖추어져 씨를 부리면 당장 거두어 먹을 땅이라 해도 명을 내걸어 대중에게 고하기를 ‘백성들이 마음대로 경작하여 먹게 하고 고을 관아에서 조세를 거두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심으로는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래먼지만 부영계 날리고 있으니 비록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부름에 응해 나와서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이면 거두어 노적가리가 즐비한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것인가. 한나라 때 조과(趙過)7463 등 여러 사람이 백성을 위해 농사를 장려하면서 농기구와 소를 모두 관가에서 마련해 주었고 수령으로 있는 자가 삼태기며 삽을 들고 밭두둑을 밟고 다님으로써 묵혔던 땅이 옥토가 되고 놀던 사람이 농부가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함께 더불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옛법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오늘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둔전(營屯田)을 인부를 모집해 경작하는 법에 따라, 본부(本府)에서 재력을 들여 땅을 일구고 그 역사가 끝난 뒤에 일정한 면적의 밭을 나누어주어 관용(官用)에도 보태고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는 곡물을 바치면 벼슬을 주는 법에 따라, 며칠갈이의 면적을 개간했는가를 보아서 당나라 때의 공명 고신(空名告身)이나 송나라 때 적공랑(迪功郎) 이하의 품계를 줬던 사례와 같이 각자의 소원대로 향품(鄉品)은 향임(鄉任)을 시키고 교리(校吏)는 빈 벼슬자리를 주되, 한달같이 면적을 넘어 쌀 백 석을 수확할 만한 경우에는 증추부 직함이나 변방 장수 자리에 그 공로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묵은

力則不遂焉，況高燥之地，難於引水，沿野之民，昧於結耦乎？雖以田形已具，布種即食之土，揭令而號於衆曰：‘任民耕食而縣官不收稅。’以今人心，尚不欲勇前。今者茫然風涉，雖許以十年免稅，有誰應募而出，朝耕暮穫，有如櫛(如)比之美乎？自漢之趙過諸人爲民勸耕，田器農牛，皆有官備，爲長吏者，操畚鍤履畎畝，而汚萊爲膏沃，遊手爲農夫，此所謂可與樂成者也。事不師古，曷云食效？今之爲計，有二。一則依營屯募耕之規，而自本府捐財起墾，待其告功，限田分授，以爲補官用裕民食之資，一則依入粟拜官之式，墾土爲幾日耕者，如唐之空名告身，宋之由功以下之階，鄉品之爲鄉任，校吏之爲任窠，一循其願，而若過一朔之耕，可以收百石者，樞銜邊將，計勞填差，則庶有日關之效矣。水口虛廣，民不饒富，或者有云然之說，蔽一言曰，不經也匪彝也。先看水口之論，不在都邑，求之堪輿，而如執左契。若造山於城外，勢將俯瞰，若設堰於水下，理便橫遮，由前而失於周遭樓櫓之(而)義，由後而違於澄清明堂之

	<p>땅이 날로 개간이 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p> <p>수구(水口)가 크고 넓으면 백성이 요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먼저 수구에 관한 설을 볼 때 도회지나 고을과는 관계가 없으니 풍수에 관한 책에서 찾아보면 분명하다. 만일 성 밖에 산을 만든다면 그 형편이 성 안을 내려다 보기가 쉬울 것이고 물 아래쪽에 제방을 만든다면 물길을 가로막기가 편할 것인데, 앞서의 경우는 성 주변에 초루(譙樓)를 배치하는 뜻에 어긋나고 뒤의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명당(明堂)의 금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과거 명사들의 큰 계책을 참고해 보면 평양(平壤)의 성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길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역시 거대한 숲을 설치하였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뽕나무·개암나무·밤나무 등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치해야 할 일이다. 부읍(府邑)과 역마을에 집집마다 나무를 심으라고 예전에 여러 번 지시한 적도 있지만, 집안에 나무를 심지 않을 경우 구실을 징수한 것은 곧 주관(周官)7464)에서 정한 법이다. 경은 부디 편할 대로 잘 조치하여 조정이 화성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개간하는 문제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채집하여 조리있게 보고하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유린(有隣)이 3백 60일 갈이의 면적을 권장해 개간하였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p> <p>“농업을 중시하는 정사는 개간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 있겠는가. 본부(本府)는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되는데 3백 60여 일 갈이의 면적을 특별히 유지한 뒤에 개간했다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우선 그 당사자부터 포상한다는 도리로 볼 때 장려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판관(判官) 김</p>	<p>戒。以名碩之宏謨參之，則平壤之城說，而養長林於江右，善山之治完，而置巨藪於溪左。古語不云乎，‘百家之聚，十室之市，亦必依山帶溪者是也。’先從今年，種以樹木，無論楊柳桑柘榛栗，廣植而成林，俾有蔚然改觀之盛，亦屬先務。若府治驛村，逐戶種樹，前已屢飭，而宅不毛則有征，自是周官成憲。卿須便宜從事，毋負朝家爲華民夙夜憧憧之至意，起墾一款，博採衆見，論理登聞。”有隣以勸關三百六十日耕啓，教曰：“重農之政，豈有過於勸關？本府爲諸路之所取則，而三百六十餘日耕之起墾於別諭之後者，極爲可嘉。其在先從隗始之道，不可無獎勸之舉，判官金思義，內下鹿皮一令賜給。官耕外，又有自墾三十日耕者，尤爲嘉尙。令該曹，付嘉善衛將。將此意令廟堂，下諭諸道，視此競相趨功，如有超異之可合勸獎者，考其實績狀聞。”</p>
--	--	--

	<p>사회(金思義)에게 내하(內下)한 녹피(鹿皮) 1령(令)을 내려주라. 관가에서 개간한 것 이외에 또 30일 갈이를 사적으로 개간한 자가 있다 하니 더욱 가상하다. 해조로 하여금 가선(嘉善) 품계인 위장(衛將)을 임명하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묘당으로 하여금 각도에 유지하되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서로 힘써 공을 세우게 하고 만일 그 공이 뛰어나 장려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실적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0일 (신미) 2번째기사 유분탁리산과 삼인전 라고 및 메밀밥을 지 어 들여오라고 명하다</p>	<p>가감소요산(加減逍遙散)은 중지하고 유분탁리산(乳粉托裏散) 1첩, 삼인전라고(三仁田螺膏) 및 메밀밥을 지어 들여오라고 명하였다.</p>	<p>命加減逍遙散停止，製入乳粉托裏散一貼，三仁田螺膏及木麥飯</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2일 (계유) 3번째기사 향유조중탕과 향귤음 을 조제해 들여올 것 을 명하다</p>	<p>또 향유조중탕(香薷調中湯) 한 첩과 향귤음(香橘飲) 한 첩을 조제해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p>	<p>又命製入香薷調中湯一貼，香橘飲一貼。</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p>	<p>성전고(聖傳膏)와 연훈방(烟熏方)을 조제해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p>	<p>○命製入聖傳膏烟熏方。</p>

<p>(嘉慶) 5년) 6월 24일 (을해) 5번째기사 성전고와 연훈방을 조 제해 들어올 것을 명 하다</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5일 (병자) 5번째기사 용뇌안신환과 우황청 심원을 들어올 것을 명하다</p>	<p>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한 알과 댓잎을 달인 물에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한 알을 넣어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p>	<p>○命入龍腦安神丸一丸, 竹葉煎水, 入 牛黃清心元一丸。</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7일 (무인) 2번째기사 가미팔물탕 한 첩을 달여 들어올 것을 명 하다</p>	<p>가미팔물탕 한 첩을 달여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p>	<p>命煎入加味八物湯一貼。</p>
<p>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7일 (무인) 6번째기사 인삼 5돈종과 좁쌀 미</p>	<p>인삼 5돈종과 좁쌀 미음을 끓여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p>	<p>○命煎入人蔘五錢重粟米飲。</p>

음을 끓여 들여올 것 을 명하다		
정조 54권, 24년 (1800 경신 / 청 가경 (嘉慶) 5년) 6월 27일 (무인) 9번째기사 약원 제신을 접견하고 인삼 1냥종과 좁쌀 미 음을 들여올 것을 명 하다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인삼 1냥종과 좁쌀 미음을 끓여 들여올 것을 명하였다.	召見藥院諸臣。 命煎入人蔘一兩重粟米飲。